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본 보고서를 2003년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04. 2.

주관연구기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목 차례>

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6
가.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적용실태	6
나. 한국전쟁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5
다. 한국전쟁 이후 2.4파동(3차 개정)과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6
라. 4차 개정시기(1960.6.10.~반공법 제정 전)	18
2. 반공법 제정 및 유신헌정하에서의 적용실태(1961.5.~1980.)	20
가. 개관	20
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23
다. 이 시기 적용의 특징	26
3. 국가보안법 6차 개정의 시기 및 5공화국 적용실태(1980년~1987년)	29
가. 반공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개관	29
나. 시기별(연도별) 적용실태	30
다. 적용조항별 실태	32
라.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3
4. 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적용실태(1988~1992)	35
가. 6공화국 출범 및 ‘공안정국’ 조성 시기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35
나. 국가보안법 제7차 개정이후 적용현황	39
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2
5.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44
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용실태(1993.2.~1994.6.)	46
나. 94년 조문파동, 주사파 발언에 이은 신공안정국(1994.7.~)	48
다. 김영삼 정권 중반기(1995~1996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51
라. 김영삼 정권 말기(1997년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58
마.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65
6.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66
가. 김대중 정권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66
나. 김대중 정부 초기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69
다.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74
라. 6·15남북공동선언 시기(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82
마. 김대중 정부 말기(2001~2002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89
바. 김대중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특징	95

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5항)과 표현의 자유	103
가. 7조 개관	104
1) 국가보안법 7조 연혁	104
2) 국가보안법 7조 적용현황	106
3)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	109
1-1.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13
가. 개관	113
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	116
1-2. 예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33
가. 문학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133
나. 영화와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141
다. 미술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145
라. 음악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150
1-3.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54
가.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155
나. 민중언론과 국가보안법	167
1) 대자보와 국가보안법	168
2) 교지 및 학보와 국가보안법	169
3) 단체 기관지 및 잡지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171
4) 현수막, 표비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174
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178
라. ‘막걸리 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188
1-4.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193
가. 국가보안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193
나.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적용실태	194
2.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과 인권침해 실태	211
가. 국가보안법과 ‘조직사건’	211
나.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 적용실태	215
다. 최근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대표적 사례	221
1) ‘영남위원회’ 사건 개요	221
2)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 개요 및 분석	227
3)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개요 및 분석	237
4)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 개요 및 분석	244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253
가. 국가기밀 조항 입법 및 개정 연혁	253
나. 국가기밀 조항 적용경향	256
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이후 국가기밀 적용사례	261
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272
가. 잠입·탈출 조항 개관	272
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사건 실태	273
다. 잠입탈출 조항의 문제점	281
5.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과 인권침해	283
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 개관	283
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사건 적용 실태	284
다. 회합·통신 조항의 문제점	293
6.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295
가. 편의제공 조항 개관	295
나. 편의제공 사건 실태	297
다. 편의제공 조항의 문제점	302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	305
가. 개관	305
나. 불고지 조항 적용실태 및 인권침해 유형	306
1) 불고지죄 신설시기부터 반공법 적용시기	306
2) 최근의 대표적 사건	308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1. 경 찰	316
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연혁	316
나. ‘대공분실’과 보안수사대	321
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325
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330
가. 국군기무사의 변천과정(연혁)	330
나.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보안사	332
다. 국군기무사령부로의 개칭	334
라. 국가보안법 수사권과 최근의 수사 경향	336
3.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339
가. 국가정보원의 연혁 및 역할	339

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문제	341
4. 검찰	346
가. 검찰의 위상변화 과정	346
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수사 및 지휘	349
다. 공안대책협의회	350
5. 공안관련 연구소	355
가.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355
1) 공안문제연구소 연혁	356
2)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356
3)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357
나.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 연구소	364
6. 사법부(법원)	365
가. 국가보안법과 사법부	365
나. 판결경향 : 높아지는 집행유예율·보석율, 낮아지는 실형율	367
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판결 경향	370
7. 소결	375

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1.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과 인권	382
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따른 특별형사소송규정의 변천과정	382
나.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386
1) 제18조 : 참고인의 구인·유치	386
2)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	388
3) 제20조 : 공소보류	391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394
2-1. 수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395
가. 체포·구속	395
1) ‘조작간첩’ 사건과 불법 체포·감금	396
2) 1990년대 이후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문제	402
3) 영장기재장소와 다른 곳에 피의자 유치	411
나. 고문	411
1) ‘조작간첩’ 사건과 고문	412
2) 국가보안법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420
3)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고문	423
4) 1995년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	428

5) 고문피해 후유증 및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례	432
6)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433
다. 피의사실 공표	435
1) 간첩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	436
2)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재판	439
3) 피의사실 공표와 인격권침해	440
라. 집견교통권	442
마. 압수수색	446
바. 기타	448
1)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	449
2) 프락치공작	451
3) 민간인사찰	454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456
가. 검찰에 의한 가혹행위	456
나. 검찰의 기소과정	460
다. 10여년전이나 똑같은 공소장 모두(冒頭)사실	461
2-3.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462
가. 비공개 재판	463
나.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465
다. 중형선고	468
라. 사상재판	472
2-4.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474
가.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	474
나. 장기구금	480
다. 그 외 차별적 처우(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482
2-5. 석방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실태(보안관찰을 중심으로)	484
2-6. 그 외 - 연좌제 등	488

5장 국가보안법 개정사

1. 국가보안법 제정(법률 제10호) : 1948.12.1	497
가. 제정 배경 및 과정	497
나. 제정과정과 논란	500
다. 법의 성격	504
라. 제정 국가보안법의 내용(총6조)	505
2.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 제85호) : 1949.12.19	506

가. 개정배경	506
나. 개정내용	507
3. 국가보안법 2차 개정(법률 제128호) : 1950.4.21	508
가. 개정이유	509
나. 개정내용	509
4. 형법제정(1953년)과 국가보안법	511
가. 국가보안법 흡수를 전제로 한 형법 조문작업	511
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포함된 형법 부칙	512
5. 국가보안법 3차 개정(법률 제500호) : 1958.12.26 “2·4파동”	514
가. 개정배경	515
나. ‘2·4파동’의 경과	515
다. 개정법안의 내용	517
6. 국가보안법 4차 개정(법률 제549호) : 1960.6.10	519
가. 개정배경과 경과	519
나. 개정 내용과 한계	520
나. 반공임시특별법안	520
7. 반공법 제정 및 5차 개정(법률 제1151호) 1962.9.4	521
가. 반공법 제정	521
나. 5차개정 내용	523
8. 국가보안법 6차 개정 (법률 제3318호) : 1980.12.31	523
가. 개정의 배경	524
나. 6차 개정내용(법률 제3318호)	524
다. 개정절차의 문제점	526
9.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	527
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1990.4)	527
나. 국가보안법 7차 개정 내용	529
10.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이후 1997년까지	533
가.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	534
나. 7차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위헌제청	534
11. 김대중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 논쟁	536
가. 개관	536
나. 김대중 정부하의 국가보안법 논의	537
12. 소결	542
 ■ 주요사례 찾기	 547

실태조사 및 연구목적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1948년 제정된 이후 55년동안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국민의 자유 확보” 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기능해 왔다. 이 법이 명분으로 삼았던 국가안보 논리, 냉전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사회·경제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민주화 요구, 민중의 생존권적인 요구를 가로막아 왔으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핵심요체인 표현·양심·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였고, 오로지 정권안보의 도구로 작용해온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의 시민적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약, 심각하게 침해당해왔던 불행한 현대사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법이기에 앞서 분단현실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상징성을 획득하였고, 냉전체제의 법제화로 굳어져 왔기 때문일 터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보안법은 법 이전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쳐왔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체제라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떨쳐왔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적인 대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양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이며, 국가안보 논리(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시 당하고, 침해 당해온 “인권”의 문제를 올바르게 세워내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국가가 주창하는 생각과 동일한 것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다른 생각은 불온한 것, 틀린 것으로 간주하여 탄압해온 이분법적인 사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전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실시하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조사는 무엇보다 인권의 기준, 인권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법이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법률일 수 있는가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인권의 원칙에서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적용실태를 검토함으로써 ‘자의적 남용’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

내 보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의적 남용’은 국가보안법 법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구의 정비와 혁신의 문제, 더 나아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재화된 자기검열, 통제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의 과정, 법제도의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국가보안법 제정시기부터 2002년까지의 적용실태를 조사,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적용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 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연구목적과 방향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래 일곱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의 시대 배경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지를 받는 두 정부가 수립된 직후였고, 이무렵 남쪽에서는 ‘내란’ 상태에 비준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정 국가보안법은 모두 6개 조문에 불과했으며, 특히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란상태가 끝나고 좌익관련 조직이 거의 궤멸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일곱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제정 및 개정된 시기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와 때를 같이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법으로 자리하였을 만큼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성격과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별 적용실태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연구하는 일은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나눠볼 시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살펴본다.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 △2차 개정이후 4차 개정시기까지 △반공법 제정과 유신시대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제 5공화국의 적용실태 △제 6공화국의 적용실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시기이다.

특히 위 시기 가운데 1990년대 이후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제정시기의 ‘내란행위의 처벌’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기능 하였다는 지적이 높은 데, 제정시기와 정치적·사회적 지형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 시기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집필방향은 ① 전체적인 개관(특히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②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적용상황 ③ 시기적인 특징 등의 내용이 될 것이다.

적용상황은 주로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 가능한 한 정부의 통계자료를 원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정시기 국가보안법 관련 정부측 통계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는 6.25 전쟁으로 인한 기록의 유실과 그 당시 미흡했던 통계능력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나타나는데(사법연감, 법원행정처 발간), 이 통계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 시기의 적용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의 통계는 민간단체의 적용통계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본다.

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까지

적용실태(1948.12.1~1961.5.)

가.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적용실태

1) 개관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 20일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조치법 제정 동의안으로 제기되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 사장되어 있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으로 명칭이 바뀌어 1948년 12월 1일 제정된다.

제정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내란행위 자체보다는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써 특정 조직이 구체적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조직의 구성·가입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치안유지법의 사상탄압 방식이 그대로 계승¹⁾된 것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은 당시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구형법 등 일본법제와 군정법령 등에 의하여 폭동과 반란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위기적 상황인식이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가져왔던 것이다²⁾.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의 적용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으나 다만 당시 언론보도, 국회기록 등을 통해 그 윤곽을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제정 시기의 국가보안법은 당시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처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대체적으로 남로당이 궤멸한 한국전쟁 전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국가보안법 관계 사범은 당시 전체 형사사건의 8할을 차지³⁾할 만큼 급증하였는

1)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로 공포,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서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및 가입’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 규정은 행위자의 희망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결과발생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국, 「사상의 자유」, 살림터, 1992. 73쪽 치안유지법 제정 부분 참고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민주악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1989.2. 18~19쪽

3) 국가보안법 제정당시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1년에 10만 건 정도를 검사가 기소하는데 그 중에서 8할이 좌익사건입니다. … 1년에 8만 건 가까운 사건에서 3할 가량이 상

바, 이로인해 형사절차 상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기소 및 재판이 1년이 넘도록 지연⁴⁾되기도 하였으며, 업무의 폭주로 인해 1950년 12월 7일에는 ‘판사 및 검사 특별 임용시험법’이 제정, 공포되어 충원하였으며, 1953년 8월에 실시된 공무원 감원조치에서도 판사와 검사는 그 대상에 제외되기도 했다⁵⁾.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범죄가 격증하여 형무소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에 ‘형무소 설치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부친과 영등포에 형무소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⁶⁾ 형무소 직원도 계속 충원하여 정부수립 당시 3,372명에서 한국전쟁 전후하여 3,605명으로 증가하였다⁷⁾.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약 1년동안 시행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급증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위외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것이 바로 1차 개정이었다(1949년 12월 19일). 이 개정법률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무엇보다 단심제를 신설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단심제 신설에 대한 여론의 반론이 거세어지자 단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차 개정(1950년 4월 21일)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1, 2차 개정법률은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겪게 되

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5만건” 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90쪽. 권승렬 법무부장관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 역비사, 1989년. 108쪽

4) 이러한 형사상의 문제는 당시 언론에 보도될 만큼 사회문제화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유민보 기사를 살펴보면, “인권옹호의 창달을 위하여 재판사건의 신속처리가 요망되고 있는데 최근 국가보안법 관계법의 격증과 재판관의 인원부족 등 제반 원인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 중에는 기소된 지 1년이 가까이 되도록 공판에 회부되지 못한 피의자도 있는 형편이라 한다. 즉 법무부 사법행정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9월 말 현재까지 남한전역에 걸쳐 기소된 재판사건은 총계 3만 2,329건인데 그 중 처리된 건수는 2만 5,917건이며 미처리로 남아 있는 건수는 6,402건으로 총 건수의 20%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판회부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금년 초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이래 동 법의 위반자가 총 건수의 8%라는 압도적인 수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1949년 1월~9월 기소된 재판건수 현황>, 「자유민보」, 1949년 12월 25일

5)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사」, 1985. 85쪽;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07쪽.

6) “1949년 8월 28일, 감옥 포화상태를 해소하고자 영등포에 교도소를 증축할 계획” 행정국장 윤용섭씨의 말에 의하면 현재 남한 전지역 18개 형무소에 약 3만 명의 囚人을 수용하고 있다는데 이는 수용능력수 보다 1만 6,000명을 초과한 수효로 남한의 형무소는 글자 그대로 포화상태에 있다고 한다. 실례를 들면 해방 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자는 3,000명 정도까지 감소되었는데 현재는 그 배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지난달의 수감자만도 1,700명에 달하는 경이적 숫자를 내었다 한다. 이렇게 포화상태에 빠진 형무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당국에서는 형무소의 증설을 꾀하고자 방금 영등포에 있는 적산 판지공장 및 중기공장 등 2개 공장을 접수하여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개축할 예정이라는데 동 공장을 형무소로 개축하게 되면 수용능력 6,000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보아 반드시 영등포 적산공장을 이용하여 형무소를 증축할 길 밖에는 없는 긴박한 사태에 있다 하는데 동 공사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만 통과되면 곧 착수하리라 한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08월 28일

7) 법무부, 「법무부사」, 1988. 53-57쪽;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07쪽.

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후에 개정되는 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⁸⁾. 여기서 분명히 언급해야 할 점은 당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제정 국회의원이나 정부 인사들조차도 당시의 상황이 극도의 비상한 상태이기에 ‘일시적으로’ 비상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한시적 법률⁹⁾이라는 것이다.

특히 1953년 형법전 제정 당시 그 초안자(김병로 대법원장)는 국가보안법을 형법속에 흡수할 것을 전제로 충분한 조문화 작업이 이루어졌다¹⁰⁾.

2)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가) 적용통계

먼저 법 제정 초기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포고후 12월 8일까지 6일동안 서울에서만도 100여 건의 영장이 발부되었고¹¹⁾, 춘천경찰서는 동 기간내에 30명을 검거¹²⁾했

8) 민변, 「반민주악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19쪽 ; 1차 개정법률은 부칙에서 “본 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동령이 제정되지 않아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9) 예컨대 당시 법무장관 권승렬은 1차 개정이후, 각계의 비난 여론이 빚발치자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염려는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와 같은 법률은 영구히 시행될 것이 아니고 다만 잠정적인 비상시의 탄환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서울신문」 1949년 12월 9일

10) 신동운, 「형사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72~173쪽. “대법원장(김병로) … 이 형법 개정된 것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 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고려해 보았습니다. …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국가보안법 조문을 가지고 대조해서 검토해 볼 때, 국가보안법에 대한 범죄사실을, 혹 형에 가서 다소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나, 이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의 가능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습니다. … 그외에도 편찬자의 생각으로서는 형법전문만 갖더라도 거기 대상이 되는 것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이 형법을 편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 형법제정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에 대한 논의는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1) “기묘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이미 지난 12월 1일부터 공포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 하오 1시 10분부터 금6일 정오까지 성북서의 40여 건을 필두로 50여 건이 보안법 위반으로 피의자에게 영장이 발부되고 있어 서울 관하만 하더라도 1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본법 실시 이래 맨 처음 구속된 자는 지난 3일 하오 7시경 종로 2가 노상에서 불온 시위타가 종로서에 피검된 김창호(17세)라고 한다.” 「서울신문」, 1948년 12월 08일

12) “춘천 경찰서, 보안법 포고후 위반자 30명을 검거” 지난 1일부로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즉일 발동하여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춘천서 관내에서 동법의 발동으로 검거된 수는 3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동법은 왜정시의 치안유지법과 같다 하여 국회 내에서 많은 시비가 거듭된 것인 만큼, 광범위로 적용될 동법의 금후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다수의 피검자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강원일보」, 1948.12.8.

으며, 박승관 철도경찰청장은 국가보안법 발동이후 9일동안 총 270명을 구속했다¹³⁾는 기록이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통계계의 기록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발효 이래 2월말까지 3개월동안 국가보안법 수리건수는 120건, 402명이 수리¹⁴⁾되었으며, 전라남도 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4월말까지 2개월동안의 관하 각서에서 취급한 국가보안법 위반 건수는 467건, 877명이라는 보도¹⁵⁾도 있다.

또한 1949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년동안 서울시 경찰국 산하 각 경찰서에서 취급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4,216건이라는 기록¹⁶⁾이 있으며, 전남 경찰국에 따르면 1949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관하 각 경찰서에서 취급한 범죄 총 4,878건(검거인원 7,554명) 가운데 1,040건(검거인원 1,7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나타나 포고령 위반 발생건수 다음으로 높은 수치(전체의 21% 차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법무부 사법행정처¹⁸⁾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다음해인 194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남한전역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건수는 총 기소사건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¹⁹⁾”는 보고도 있다.

13) “박승관 철도경찰청장, 국가보안법 위반자 175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철도경찰청장 朴承琯씨는 14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지난 4일 국가보안법 발동 이후 동법에 저촉되는 자를 9일 현재 총270명을 구속하고 95명을 석방하였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자는 175명이고 앞으로도 속속 검거하리라고 발표하였다. 「서울신문」, 1948년 12월 15일

14) “광주지방검찰청 통계계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검 및 동 목포·장흥지청에서 수리한 건수는 1월 말 현재로 13건 39명에 불과하던 것이 2월 달에 들어서는 갑자기 불어 2월 한 달 동안에 107건, 36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상 작년 12월 1일부터 국가보안법 발효 이래 2월 말일까지 120건, 402명이 수리된 셈이다. 한편 광주지검에서 3월 1일부터 금 11일까지 수리한 수는 33건, 97명이라고 한다.” 「호남신문」, 1949년 3월 13일

15) “경찰통계로 본 전라남도 사회상”, 「동광신문」, 1949년 5월 25일

16) 서울특별시 경찰국 관하 각 경찰서에서 취급한 지난 1949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년 간에 걸쳐 서울시내에서 발생된 범죄 사건수와 검거건수를 보면 범죄의 수위는 절도 5,668건이며 다음은 국가보안법 위반 4,216건의 순서로 되어 있다. 범죄발생 총 건수는 1만 9,726건 검거는 1만 8,045건에 2만 2,526명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 범죄건수 40% 감소” 「수산경제신문」, 1949년 12월 29일.

17) “전라남도 경찰국, 6월 중 범죄상황 발표”, 「동광신문」, 1949년 7월 29일

18) “법무부 사법행정처, 총 기소건수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80%를 차지” 국도신문, 1949년 12월 24일. 당시 재판에 회부된 총 건수는 3만 2,329건이었으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약 2만 5,863건이 될 것이다. 이 수치는 건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19) 한국현대사연구회, 「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 공동체, 1988, 139-140쪽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보면 결국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1년을 전후하여 수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구체적인 적용사례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일단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1948. 12.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12.13. 수도권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12.29. 현재 부산형무소 수형자는 여자 2명을 합하여 577명, 형사피고인 39명, 피의자는 193명이라고 하는데, 미결에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32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부산신문, 1948년 12월 30일)

1949. 1.19.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에서 취급한 사건 : 남로당 기관지 노력인민 비밀인쇄소 검거, 남로당 서울시 당조직부 검거, 남로당 중앙당부 연락책임자 검거, 민애청 동대문구 세포 검거, 민애청 서대문구 세포 검거, 민애청 종로구 세포 검거, 남로당 고양군당부 검거, 남로당 경기도 선전부 검거, 남로당원 인공기 계양 검거사건, 중·대학 민주학련 세포 검거, 정치요인 암살 의혈사 검거, 민애청 선행대원 국군 김석원대령 암살음모 사건, 남로당 서울시당지건 선전부 검거, 남로당 동대문구 선행대 검거, 전북 폭동사건 도피자 검거, 남로당 서울시 유격대 사건, 인민공화당 중앙간부급 검거(한성일보, 1949년 1월 19일).

2.15. 계엄령 해제된 광주지검 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 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3.27. 검찰, 민족공화당 프락치 활동 혐의로 남로당 프락치부원 연희대학 강사 박남수(36)와 용산구 이태원동 이종혁(24) 기소. 이들은 작년 12월 중순경 남로당 서울시당부 프락치부 책임자 오(도주)의 지령을 받고 민독당 프락치 책임자로 취임한 후 전후 20여회에 걸쳐 민주독립당 중앙위원 민중식씨 등에게 인공노선 지지를 권고하였다는 것. (동아일보, 1949년 3월 27일)

4.16.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장 이환기(26), 남로당 중앙당원 이명복(30), 동 김동진(24) 외 3명 국가보안법 포고령 2호 위반 등으로 기소.

5.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처분**.

5.6. 정당 프락치 활동 강화를 꾀한 남조선로동당원 서홍옥(동아문화사 편집국장), 전우진, 정해근 등 3명 기소.

6.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5.20~6.20 속칭 '**국회프락치사건**' - 국회의원 이문원 노일환(징역 10년), 김약수 박윤원(징역 8년), 김옥주 강옥중 황운호 김병희(징역 6년), 오택관(징역 4년), 이구수 최태규 신성균 서용길 배중혁(징역 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6.21. **대검찰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김약수 국회의장 등 7명의 국회의원을 체포했다고 발표.** 강옥중·김병희·노일환·박윤원·김옥주 5의원은 헌병에, 황운호 의원은 경찰에 각각 체포되었다고 보고. (1949.6.23. 조선중앙일보)

7.6. **남조선로동당 중앙청 세포조직 관계자** 총무처 비서실 수석서기(남로 종로구 책임자) 남홍진(28) 이경호(31) 권상택(28), 서울지검으로 송청. (경향신문, 1949.7.7.)

7.11.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여명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좀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치안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수는 도합 551건이고 그의 인원은 2,18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71건이고 그의 인원은 560명이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수는 126건이고 인원은 1,04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의 170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1건이나 증가한 19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7.18.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8.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조선중앙일보, 1949.8.4.)

8.11. **원장길 등 5명의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서 김약수 의원 외 10의원이 피검된 후 일시 잠잠하던 국회의원 체포사건은 금번 국회 휴회를 계기로 재연되어 전기 10의원사건과의 관련자로서 원장길·배중혁·김영기·김익로·차경모 등 5의원에게도 지난 11일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49.8.17.)

8.24. 보안법 영장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법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8.29. **체포된 소련 영사관직원과 처, 검찰에 송청** 지난 11일 서울시 경찰국에 검거 소련영사관 관리인 니콜라이 크레오세프(37) 및 그의 처 줄리안(34)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9일 송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 사건은 국제적 관련성에 비추어 그간 외무장관과 유엔한위 사이에 교환된 서한을 비롯하여 검찰청의 이에 대한 견해 파문을 던지고 있었는데, 시경에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 추방 정도의 미온적인 처리를 떠나 단호한 국법의 재결을 받도록 하게 한 것이라 한다. 피의자 니콜라이는 20세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제2차 미소공위시에 쉬티코프씨를 따라 남하해 온 자인데, 그후 남북연락이라는 구실 밑에 10여 차에 걸쳐 남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자유신문, 1949.8.30.)

8.3. **서울 중부경찰서, 서울시내 금융기관 직원 21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중부서에서는 지난 31일 식산은행원 조영희(22)를 비롯하여 시내 각 은행원 근 30명을 검거하고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 한편 도주한 은행원을 수사중에 있다. 그런데 사건 내용이 업무횡령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남로당 자금융자 세포에 관한 것으로서 직원을 이용하여 남로당에 자금을 변통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1949.9.4.)

9.6. **검찰청, 남조선노동당 관련으로 구속된 신문기자 19명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

9.8. 김두한 대한청년단 건설국장,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검에 송청.

9.20.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평가입과 임금인상 파업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

10.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사건과 관련자 고흥상의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11.18. **국회프락치사건 관련 김약수 의원에 대한 재정지원자 구속** 김의원이 동래에서 입후보 당시 500만원의 재정원조를 한 부호 모씨를 구속. (경향신문, 1949.11.20.)

11.14.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기간 중 자수자 2300명.

11.25 **남로당원 자수 서울시내만 4천명 돌파**

11.25. **인천시내 부호 남조선노동당 자금조달사건 언도공판이 개정** 30만 시민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던 세칭 '시내 부호 남로당 자금 조달' 사건 언도공판은 작 25일 상오 11시 반부터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대법정에서 열렸는데 본 사건의 주동인물인 심만택에 국가보안법 제1조 1호를 적용하여 10년 징역을 언도하였으며, 조상길외 5명에 대하여는 각각 무죄를 언도하였다. (대중일보, 1949.11.26.)

12.5. **정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남한 총책임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송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총책임자로 파견되어 11월 4일 평양으로부터 서울에 잠입하여 맹활동을 전개해 오던 정치위원회 파견수습원 정백(52)은 11월 16일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에 피검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송청되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49.12.5.)

12.14. **서울지방검찰청, 판사와 검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지난 9일 새벽 4시경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호 배심판사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하고, 계속하여 14일 현재 김판사 외에 김모 판사 양, 이모 검사 등 4명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이태희씨는 14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약 수개월 전부터 법원과 검찰청 내에 좌익프락치가 있는 것을 알고

검사에게 특별지시를 하여 이에 수사를 하여 오던 바, 드디어 법원측으로 판사 2명과 검찰청측으로 검사 2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경찰 내에도 연루자가 있는 듯하여 이미 시경찰국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서울신문, 1949.12.14.)

12.16. **법조계 프락치 사건으로 충주지방법원 모 판사, 음성경찰서원 7명 구속인치.** 이들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중에 있는 전 음성경찰서장 최기홍과 더불어 경찰세포조직 혐의자들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1949.12.18.)

1950. 1.18. **김진홍 전 판사 외 5인, 법조프락치사건으로 기소** (1949년 12월) 28일 서울지검에 송치된 이래 담당 정희택 검사의 준열한 문초를 받아오던 새로운 법조프락치사건 관계자 다음의 7명은 문초 결과, 남로당에 가입하고 법원 내에 새로운 프락치를 조직하여 남로당 노선을 지지·추진시킨 죄상이 명백히 드러나 1월 16일 드디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하며, 아직 관계자 1명에 대하여서는 불구속으로 문초를 계속중이라 한다. 김진홍(전 서울지법 판사) 김두식(전 서울지법 판사) 강일구(전 서울지법 판사) 이사묵(전 서울지검 검사) 이정남(전 서울지검 검사) 김영하(부산지법 판사) 백상덕(일반인) (국도신문, 1950.1.18.)

1.24. **서울시 前 사찰과 부과장 공하윤(45),** 체신부 박석주, 상공부 최대식 등 12명, 남조선노동당 활동 혐의로 기소 (평화일보, 1950.1.25.)

3.6. **서울시 경찰국, 신문사 언론인들을 남조선노동당 선전부 공작혐의로 송청 3·1절을 전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시내 수개 신문사에서 언론인들을 다수 검거하여 그간 여러 명은 석방되었으나 3월 6일 일부 언론인 19명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청되었다. 이들은 남로당 중앙선전부원으로, 국가보안법 단심제 결사 반대 등 당상부의 지령에 따라 신문 잡지를 이용, 활동한 것이라 한다. 구속 11명, 불구속 8명. (조선일보, 1950.3.7.)

3.10. **국민보도연맹 경상북도 간사장 백기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 백기호는 취임당시 남로당 지령을 받고 보련 간사장에 취임, 야산유대를 자기 주택 내에 은폐, 치료 혹은 야산유대에 의약품을 구입 제공하고 진심으로 자수하여 경찰 기타 기관과 협력 갱생코자 약동하는 자는 반동분자로 규정하여 기피 욕설하는 등 보련을 악용하여 자당세력을 확대강화기관으로 오인하고 만행을 자행하므로 단호 적발 검거 취조중이다. (영남일보, 1950.3.12.)

3.25. 1차 법조프락치사건 언도공판에서 김영재 전 차장검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5.30. **조선노동당 남반부정치위원회 관련자들을 1차로 구속·송청** 그동안 군·검·경 합동수사진 지휘 아래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 분실에서 직접 취급하여 오던 북로당 남반부정치위원회 사건은 지난 5월 31일로써 그 수사의 일단락을 보았다는 바, 30일 동 사건의 주범인 성시백 외에 동 사건 주모자급 1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청되었다 한다. 앞으로 동 사건은 선우종원 검사의 문초를 받게될것 이라는데 남은 100여 명은 계속하여 경찰의 취조를 받고 있다 한다. (한성일보, 1950.6.3.)

3)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 시기 국가보안법에 의한 적용실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으나, 단편적인 기록과 법 제정 목적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계열, 그리고 그에 동조한 수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정 국가보안법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행위 뿐 아니라 단순히 “그 정을 알고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실제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둘째, 이 시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대상은 남로당 간부 및 외곽조직의 조직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판사, 검사, 신문기자 등 언론인, 경찰국 간부 등 매우 다양한 세력²⁰⁾들로 나타났으며 특히 당시 공무원 사건의 8할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²¹⁾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어떠한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남로당을 지원했다거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셋째, 이 시기 발생한 사건 가운데서는 조작의혹이 일거나 ‘모함’에 의해 대량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령, 1949년 5~6월에 발생한 ‘국회프락치 사건’은 사건 발생시기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 까지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제헌국회에서 ‘반민특위’의 설치와 운영을 주장하였고,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기에,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보복”에 의한 사건이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데 악용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1949년 5월 발생한 세칭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등을 살펴볼 때, 이 당시 얼마나 많

20) 예컨대 1949년 5월 18일부터 1949년 8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61명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국회의원 19명, 법조계 11명, 언론계 31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실질적으로 발효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8월 22일 정오 현재까지 동 법 위반에 의한 영장발부는 당국의 공식발표가 없어 명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수개월 간에 있어서 만도 동 법에 저촉된 영장발부 수는 상당히 많다고 한다. 그런데 5월 18일부터 8월 22일 현재로 국회의원, 법조계 관계자, 언론인 등의 영장발부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19명) : 제1차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제2차 김약수 황윤호 김병희 박윤원 강옥중 김옥주 노일환(이상 1·2차 전부 기소) 제3차 김봉두 신성균 서용길 차경모 배중혁(이상 예비문초), 김명동(송청), 김영기 김익로 원장길(이상 미체포) (이상 국회의원은 전부 同成會 의원)

■ 법조계(11명) : 서울지방검찰청 차석검사 김영재(송청), 변호사 윤학기 백석환 오규석 조평재 강중인 이경용 오관 김승필(이상 8명 체포), 장진호 조노현(이상 2명 미체포)

■ 언론계(31명) : 김성호 이민철 강경구 권중남 소진현 김덕중 민병호 석복길 이항 이문용 최광연 장현운 이주영 조경호 이시우 심일석 오인규 김신규 박종옥 이환 이영진 고병순 최남훈 이장영 최치규 박기화(이상 전부 송청, 5명 미체포)” 「조선중앙일보」, 1949년 8월 24일

21) “실로 지금 국가보안법은 쏘형사사건의 약 반절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관계의 사건 즉 수사 보고를 받는 방면에 있어서는 약 8할이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 권승렬 검찰총장, 제3회 1차 국회본회의에서의 발언, 국회속기록 제1호, 20~24쪽. 1949년 5월 21일.

은 조작과 무고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사건²²⁾은 국방부 정보원이 조작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고한 이를 체포하였다가 결국 자신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죄²³⁾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외에도 1949년 9월 음성경찰서장을 비롯한 현직 공무원 2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거 구속되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모함에 의한 것²⁴⁾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나. 한국전쟁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선의 전국적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적 치하’에서의 수많은 ‘부역자’를 양산하였다. 부역자는 일반적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전쟁은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법을 요구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당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바로 그것인데,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이어 서울지검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²⁵⁾

-
- 22) “정치공작대 책임자인 김영은 국방부 정보원이며 부책임자인 정현에게 정보기관을 만들 것을 제의하여 그 명칭을 ‘대한정치공작대’라 정하였다. … 그들은 과거에 근로인민당에 관계하였으나 현재에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안일의 집에 가택수색을 하면서 권총과 불온신문을 투입시켜 놓고 재차 들어가서 그것을 압수하면서 안일이 인민군부사령이라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전향자로서 성동경찰서 분실 정보원으로 있는 최동석과 공모하여 그를 인민군특수사령이라고 한 다음 미국인 고문들과 군, 경, 검찰을 동원하여 무기를 수색하는 한편 최동석을 체포하는 연극을 꾸몄다.”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국회사」 1, 1971, 310~311쪽(국회 내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현영 의원의 국회보고내용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18~19쪽 재인용

한편 이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국가보안법 제6조로 기소되었고, 35명은 풀려났다. 「국도신문」, 1950.5.21.

- 23) 제정 국가보안법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하는 자는 해당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 한편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나 그 이후 개정법에서도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건이 횡행하였던 것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 24) 1949.9.2. 충청북도 경찰국은 충북 음성경찰서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모함임을 밝혀내고 관련자 26명을 석방했다고 발표했다. 한때 세간에 파문을 던진 세칭 충북음성경찰서장 사건은 현직 공무원 2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대량 검거에까지 이르러 그의 귀추가 주목되던 바, 2일 충청북도 경찰국에서는 이번 사건은 일부 악질도배의 모함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어 다시금 세인을 아연케 하였다. 22일부터 25일까지 검거되었던 사람은 도합 경찰관이 13명, 군직원 1명, 면직원 7명, 교직원 4명 도합 26명이다. 이들은 8월 31일 전원석방 되었다. 「동아일보」, 1949.9.6.

- 25) 법무부, <1989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집>, 19쪽. 이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지검 정보부의 오제도 부장검사와 정희택, 선우종원, 이주영 검사들이 지휘하였으며 “북로당 남반부정치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한다.

되었다. 특별조치령은 국가보안법보다 형량이 높았으며, 절차 또한 간결하여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았다. 특별조치령과 국가보안법으로 전쟁기간 중 대량 처벌한 것이 바로 부역자이다. 한국전쟁 전기간을 통해 부역자로 처리된 자는 550,915명에 이르고 있으나²⁶⁾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았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 시기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부역자’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을 뿐 아니라 정권의 정적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대표적 예가 바로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생한 “국제공산당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이 시기 국가보안법의 적용양상을 엿볼 수 있다.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은 1952년 5월 25일 부산, 경남, 전남북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다음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헌병대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5.26부산정치파동') 연행된 국회의원 47명 가운데 서범석·임홍순·김의준·이용설·이석기 의원 등 5명이 구속되고 뒤이어 곽상훈·권중돈 의원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국제공산당의 비밀공작비를 받고 정부정복을 음모”한 혐의를 받았다²⁷⁾. 그러나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1952년 6월 29일 검찰에서 공소를 취하함으로써 스스로 부당한 기소였음을 자인하였다.

이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내각제 개헌안을 추진하던 그룹을 제거하려는 음모에서 조작한 사건이었으며, 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구속의원석방요구결의안을 정면으로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정적 제거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다. 한국전쟁 이후 2.4파동(3차 개정)과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한국전쟁은 이 사회 전반에 반공을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국가보안법은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 구축의 차원에서 광범위 하게 적용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법적 기제로 남용되기에 이른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사건은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 대한 사형집행 일 것이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효표의 23.8%를 얻은 조봉암은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1959년 7월 31일 사형 당했다. 그리고 진보당은 해산 당했다. 한편 ‘사사오입개헌’(1954.11.29.) 이후 국회 내 반대파의 증가와 민중의 반이승만 기운이 높아지자, 이승만 정권은 정권에 대한 비판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종신집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8년 8월 11일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를 통

26)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Ⅱ, 1973, 547쪽; 박원순, 앞의 책, 19~22쪽 재인용

27) 서병조, 「주권자의 증언」, 모음출판사, 1963, 139쪽

과한 개정법률은 종전의 법률보다 훨씬 확대되고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조항이 있었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 무술경위 수백명을 동원하여 농성중인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채 여당의원들 만으로 날치기 통과하였다.

이른바 2.4과동²⁸⁾으로 불리우는 국가보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확대하고, ‘인심혹란죄’²⁹⁾를 신설하였으며, 대통령 등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3차 개정은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가 아닌 이미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정권’의 안보를 위한 기제로 굳혀지게 되었다.

실제 개정 국가보안법은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사표현마저 처벌해 나갔다. 이 당시 적용된 ‘헌법기관 명예훼손’에 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³⁰⁾의 사례를 통해 법적용의 일단을 살펴보자.

▶ 이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폭언을 하여 경찰의 수배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1960년 2월 14일 자유당 전남도당부에 있는 임모씨가 동당 계서판에 이대통령의 사진을 제시하자 이때 돌연 한 청년이 나타나 “너도 오래 살려면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협박 후 사진을 가리켜 또한 비슷한 폭언을 하고 도주하였다고 한다”

▶ 대법원 형사부는 1960년 3월 31일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헌법기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선우만혁 피고의 상고심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만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확정하였다.

또한 2.4과동은 당시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반대세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강화할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³¹⁾ 였다.

28) 2.4 과동은 1950년대 후반기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위기중의 하나였다. 1958년 후반기와 다음해 까지 진행된 국가보안법 파동은 후의 1960년 3.15부정선거와 그후의 자유당 몰락을 초래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결국 이 파동은 자유당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한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완범, <1950년대 후반기의 정치위기와 미국의 대응>, 「한국현대사의 재인식4」, 정신문화연구원, 1998 참고

29) 제17조(약속, 협의, 선동, 선전등) 5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0) 앞 기사 「동아일보」, 1960년 2월 18일자 기사; 뒤의 기사 「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자; 박원순 앞의책2, 23쪽

31)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의견서>,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경향신문 폐간조치” 등 일련의 정치적 탄압행위에 의하여 분명히 드러났으며, 특히 언론을 탄압할 방편으로 새로이 신설된 ‘인심혹란죄’가 그 근거조항이 되었다.

2.4과동 이후 1959년 「경향신문」 폐간 및 기자 구속사건을 비롯해 1955년 「대구매일 신문」 주필구속, 1956년 「경인일보」 사장 및 주간구속, 1958년 「사상계」, 「코리아타임즈」, 「동아일보」 기자와 필자 구속 등 언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크게 두드러졌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4월 30일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경향신문」은 1959년 1월 11일자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제목의 사설과 2월 4일자(조간) “여적(餘滴)”란을 통해 “혁명에 의할지라도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는 등 이승만 정권을 공격했다. 또한 4월 3일자(조간) 3면에 “간첩 하씨를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재함으로써 “간첩 하모와 앞으로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차에 걸친 중대한 위법사실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폐해를 더욱 조장”하였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이유로 경향신문은 폐간조치되고, 특히 “간첩 하모씨 체포”라는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 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소백 사회부장, 이관구 주필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라. 4차 개정시기(1960.6.10.~반공법 제정 전)

1950년대 후반부터 이승만 정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승만 정권은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위태로워진 권력유지를 위해 노골적이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196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민중항쟁이 시작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은 4월 26일 붕괴되고 말았다.

4.19 혁명의 결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된 민주당 정권은 4.19 직후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지목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서두르게 되는데, ‘정보수집죄’, ‘인심혹란죄’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진다(4차 개정, 1960년 6월 10일).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발효로 구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상당수의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 선고전인 경우에는 공소취소, 1심판결 선고이후 계류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면소판결,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면제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³³⁾.

이 개정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새로 신설된 ‘불고지죄’로 논란이 일었다. 1960년 9월 당시 유명한 공안검사였던 부산지검 정보부(현 공안부)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과 1961년 4월 영문학자 연세대 오화섭 교수 구속사건이 대표적이다³⁴⁾.

1989, 19쪽

32) “경향신문 폐간조치에 대한 공보실 발표”(1959년 4월 30일); 1975,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중앙일보사 165~167쪽

33) 「동아일보」, 1960년 6월 10일. ; 박원순 앞의책 2, 24쪽

34) 이 사건은 이 보고서의 <적용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의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한편 민주당 정권은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이 성장하자 '데모규제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해 이를 탄압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한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1961년 3월 4월에 걸쳐 "반공임시조치법·데모규제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2대악법' 반대운동³⁵⁾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한채 '반공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맞게 된다.

죄와 인권침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5)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선언 ; 4월 혁명연구소, <한국사회 변혁운동과 4월혁명>, 1990. 2,298쪽

2. 반공법 제정 및 유신정권하에서의 적용실태(1961.5.~1980.)

가. 개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육사 5기생,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영관급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은 장면 정권을 붕괴시키고 장도영과 박정희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는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반공체제 강화를 최우선의 국가과제³⁶⁾로 삼았으며 그 구체적인 작업으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³⁷⁾과 '반공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각 제정 또는 보완, 개정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

군사정권은 또한 그해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하여 한국중앙정보부(KCIA)를 창설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국내외의 모든 비판세력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사찰하고 규제하는 '정보공작정치'의 본거지, '국가위의 국가'가 되었다³⁸⁾.

한편 박정희 정권은 3선을 목적으로 제6차 개헌을 추진하는데 바로 1969년 8월 7일의 3선 개헌³⁹⁾이다. 이로써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

36)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장도영, 1961.5.16. 군사혁명위원회 성명 발표,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 하권, 7~8쪽

37)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22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는 정당·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칙에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점이 특징인데, 이는 4.19 이후 민주당 집권 기간의 혁신인사를 소급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89~195쪽 참조. 또한 특수반국가행위죄와 관련하여 혁명검찰부가 처리한 사건의 죄명별 직업별 통계는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7~29쪽 참조.

38) 조국, 「사상의 자유」, 살림터, 1992, 90~91쪽 참조.

39) 이 개헌안의 요지는 첫째, 대통령의 연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3번 연임을 허용, 둘째, 대통령 탄핵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하며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를 과반수에서 2/3로 상향조정, 셋째,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장·차관 겸직 허용, 넷째, 국회의원 최대정수를 200명에서 250명으로 증가시킨 것 등이다. 3선개헌 이전인 1962년 12월 26일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연임규정이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2차까지 연임했던 박정희는 헌법상 다시 출마할 수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 추진은 1967년 6월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공화당)이 개헌가능선인 2/3 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기 위해 부정

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당선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학생, 재야인사들의 격렬한 저항⁴⁰⁾으로 정권의 총체적 위기가 일게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으며, 10월 9일에는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했다. 뒤이어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 선포,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1972년 7월 4일, 그동안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뒤,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계엄포고 1호를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대학을 폐쇄했다. 그후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시켰다. 이로써 1인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유신체제가 성립되었다⁴¹⁾.

유신체제는 단정 수립 이후 집권층이 내걸어 온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마저 전면 부정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자본주의와 반공 분단체제를 유지시키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화를 압살하는 테러통치체제⁴²⁾였다.

전국적으로 유신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자 박정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긴급조치권을 9호까지 발동하여 모든 민주화세력을 탄압했음은 물론, 유신체제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규제입법을 만들어 정권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표> 역대정권의 주요 규제입법⁴³⁾에서와 같이 이승만, 장면 정권보다도 많은 규제입법을

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해, 일요일인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 모인 122명의 여당계 의원에 의해 기명투표방식을 통해 변칙·통과되었다. 당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1,200여 명의 기동경찰이 통행을 차단했고, 비밀투표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과 학생들의 치열한 개헌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 3선 개헌으로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1972년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후 10년간 집권을 연장하는 길을 마련한 셈이다.

40)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 삼선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었다. 이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2000년 7월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이 법이 정하는 ‘민주화운동’의 시점을 <1969년 8월 7일 이후 (3선개헌 발의일)>로 정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 시킨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그만큼 3선개헌 및 개헌반대 투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41) 김인걸 외, 「한국현대사강의」, 돌베개, 1998, 323쪽

42) 조국, 앞의 책, 95쪽

지니고 있었던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과 같은 각종 법률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표> 역대 정권의 주요 규제입법

이승만 정권	장면 정권	박정희 정권
국가보안법 (58.12.24. 강화개정)	국가보안법 (60.6.10.개정)	*국가보안법(62.9.24.강화개정) *반공법(61.7.3.) *정치활동정화법(62.3.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62.12.31.) *사회안전법(75.7.16.)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77.12.31.) *형법개정(75.3. 국가비방 금지) *언론윤리위원회법(64.8.5.)

위와 같은 규제입법에 의하여 검거,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아래 <표>44)와 같다. 이와 같은 일상화된 국가권력의 공권력 행사 속에서 반독재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각종 규제입법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가운데서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가장 지속적인 규제수단으로 되었고 이는 곧 군사독재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43) 자료:소법전(현암사간, 1982);한국연감(1958~79);강민, “한국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한국정치발전의 특성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1984). 68쪽;김영래, <한국이익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분석>, 연세대 박사학위, 1986, 77쪽 참조

44) 1961,1963년 통계는 국립경찰, 「경찰통계 연보」 / 1964~1974년 통계는 법원행정처, 「법원통계 연보」 1964~1974./ 1975~1980년 통계는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6~1981. / 1964~1980년의 통계는 제1심재판인원

a) 한국사료연구소 편 「해방삼십년사 제4권 : 제3공화국」 (서울, 성문각, 1976) 119쪽 ; 「한국연감」 (1963) 205~224쪽. 동법은 62년 3월 16일 제정.

b) 정치활동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제대상자임. 동법은 1980년 11월 12일 제정·공포되었는데, 이에겐 언론계, 노동계 등이 포함되어 있음. 「동아연감」 (1981), 826~829쪽 ; 김영래, <한국이익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분석>, 연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1986, 78쪽

<표> 1961~1980년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 인원

	국가 보안법	반공법	정치 활동 정화법	사회 안전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긴급 조치 제9호	계
1961	296					1			297
1962			3,038						3,038 a)
1963	102	86			239				427
1964	29	79			18				126
1965	37	84			98	3			222
1966	44	104			7	2			157
1967	44	110			4	6			164
1968	83	168			37	1			289
1969	81	323			27	1			432
1970	204	368			25				597
1971	217	276			49				543
1972	175	507			24	1			706
1973	164	260			37				461
1974	152	228			7				87
1975	74	328		5	13				420
1976	121	386		9	29			198	738
1977	35	322		1				157	515
1978	30	208		3	6		11	215	473
1979	57	199		1	2			160	414
1980	23	136	811 b)		3		4	1	978
계	1,968	4,167	3,849	19	625	15	15	726	11,384

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반공법은 “국가재건 과업의 제 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법 제1조)을 목적으로 1961년 7월 3일 제정되었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반공법은 5.16 군사정권이 내세운 반공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전의 국가보안법과 달리 그 처벌범위나 대상, 형량에 있어서 훨씬 강화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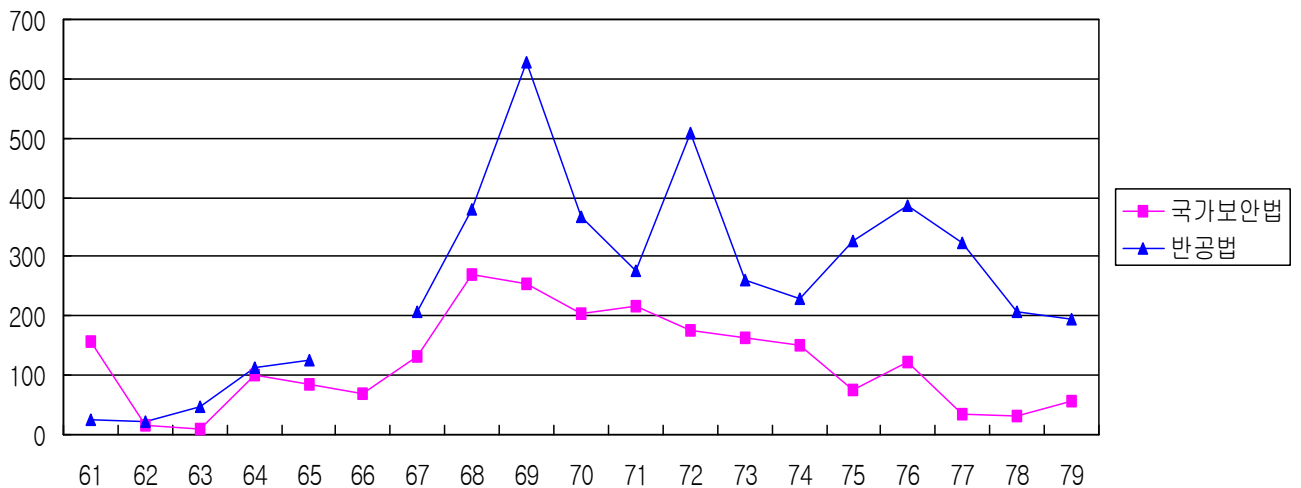
아래 <표>⁴⁵⁾ 사범연감 통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누년 비교표>에 의하면, 1961년부터

45) * 법원통계연보는 1964년~1974년에 걸쳐 발행되었고, 사범연감은 1960년, 1976년~2003년까지 발행되었다. 따라서 위 통계 가운데 1961년~1970년 자료는 법원행정처 간, <법원통계연보 1970>에서 취했으며 1971년 이후의 자료는 사범연감에 근거하였다.

1979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1964년 이후부터는 국가보안법에 비해 반공법이 평균 2배 이상 더 많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제1심 형사 공판사건 누년비교 - 접수(기소인원)

연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국가보안법	156	15	9	100	86	69	131	270	254	204	217	175	164	152	74	121	35	30	57
반공법	26	23	48	112	124	-	207	381	627	368	276	507	260	228	328	386	322	208	194



이 시기동안 반공법 적용자가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반공법 4조(찬양·고무)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공법 제4조의 고무·찬양죄는 그 이전의 국가보안법에는 없었던 조항으로써 찬양, 고무, 동조행위가 어떤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결과만 초래하면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예컨대 술자리에서 사소한 농담, 경찰관과의 다툼에서 생긴 언동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활동을 동조, 고무, 찬양”한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6.25의 도발은 소련놈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⁴⁶⁾이라고 언동하였거나, 술자리에서 북한의 군가를 부른 경우⁴⁷⁾, 전문적인 우표수집가가 북한의 선전문구가 있는 우표를 매수, 취득한 경우⁴⁸⁾에도 반공법 제4조 1항의 동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벌하기도 하였다.

* 통계연보와 사법연감에서는 ‘공판사건 접수’ 또는 ‘신수’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법원에 재판이 제기된, 즉 기소된 수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46)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325 판결

47) 피고인이 김용섭 외 2명과 음주하다가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라는 북괴군가를 인민항쟁가를 동석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기 노래를 제창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괴집단의 구성원인 빨치산의 활동을 찬양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67.7.29. 69도825.

또한 유죄판결은 나지 않았으나, 가옥을 철거하려는 철거반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⁴⁹⁾,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 곳에 가서 수 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한 경우⁵⁰⁾에 대해서도 체포하여 구속처벌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술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언동에 대해서마저 반공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함으로써 반공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 기제가 되었다. 또한 ‘반공’이 최우선적 가치가 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차단, 결국 권력이 요구하는 가치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써 반공법은 법 이상의 거대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반공법의 추상적 조항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무제한적인 자의적 남용의 가능성⁵¹⁾은 재판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 <표>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사무보고서에서 작성한 1967년부터 197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처리된 반공법 4조 위반 혐의자들의 재판결과⁵²⁾

48)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우표수집가이고 평소의 성향이 반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북한 괴뢰집단의 우표를 매수 취득하는 행위는 북한괴뢰집단의 우표판매와 보급활동에 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도2243 판결

49)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8.31. 선고 70도1486 판결

50)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 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공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2602 판결

51)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 정보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제10조 상금)까지 새로 삽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신 체포 남발을 부추켰다. 이외에도 5조(회합 통신)도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지극히 모호한 개념으로 자의적 남용을 가능하게 했으며, 잠입탈출(6조)의 경우는 무조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그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빚게 되었다. 이렇듯 반공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위와 같은 문제의 조항들은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었어도, 국가보안법으로 포섭되어 현재의 국가보안법에까지 계승되었다.

52) 최대현, <북괴의 대중동원 공작전술과 이에 관련된 반국가사범 재판결과 분석고찰>, 대검찰청, 「검찰」, 1971년 12월호, 46쪽 이하. ; 민변,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통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349쪽

를 보면, 반공법 제4조 위반사건의 1심 집행유예율이 53.8%를 기록, 절반이 1심에서 풀려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죄사건도 2건으로 나타났다.

<표> 반공법 제4조 위반 혐의자들의 1, 2심 재판결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면소, 형면제	가정법원 송치	무죄	계
1심인원 (%)	67 41.9%	86 53.8%	3 1.9%	- -	2 1.2%	2 1.2%	160 100%
항소심인원 (%)	26 34.67%	47 62.67%	2 2.67%	- -	- -	- -	75 100%
항소후집계 (%)	53 33.1%	100 62.5%	3 2.0%	- -	2 1.2%	2 1.2%	160 100%

따라서 자의적 법적용의 가능성 그리고 형법상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공법은 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통합 되는 방식으로 폐지될 때까지 20년동안 국가보안법 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민중운동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적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동백림 사건(1967), 통혁당 사건(1968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 민청학련 사건(1975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1979년), 남민전 사건(1979년)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정치조직들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대량구속 사태가 빚어졌으며 사형, 무기 등을 비롯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 시기에는 언론, 학문연구, 예술창작 등에 대한 탄압도 극심했는데, 그 실례를 살펴보면, 유엔남북한동시가입, 남북연방론, 남북간불가침조약체결, 남북군대감축을 주장했던 「세대」 지 황용주 사장 사건(1964.11), 대전방송국 편집부장 김정옥씨 사건(일명 송아지 사건, 1965.3.), 남정현씨의 소설 「분지」 사건(1965.7.), 김지하의 풍자시<오적>(1970.5.), <비어>(1972.4.), <고행-1974>(1975.3.) 사건, 한승헌 변호사의 글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 어떤 조사> 사건(1975.3.), 리영희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 사건(1977.11.) 등이 있었다.

또한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는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1965.9.),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1974.4.)이 발생하였으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으로는 민사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대표 서민호 의원 김일성 면담용의 발언관련 사건(1966.6.), 통일사회당 위원장 김철씨 남북유엔동시가입, 북한 실체인정발언관련 구속사건(1971.11.), 종교인에 대한 탄압으로는 박형규 목사 등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사건(1976.5.)과 강희남 목사 설교관련 구속사건(1977.5.)등이 발생했다.

다. 이 시기 적용의 특징

이 시기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적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³⁾.

첫째, 이 시기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전기간을 통하여 가장 많이 꾸준히 적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보다는 반공법이 훨씬 더 애용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반공법 제4조(고무·찬양)의 남용에 따른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둘째, 1972년 이후의 유신 시기에는 다른 기간보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1975년 5월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1979년 12월 해제)⁵⁴⁾의 영향으로 보인다.

셋째,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69년 삼선개헌과 이어진 1971년 제7대 대선, 1972년 유신헌법 제정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인한 구속자 급증사태를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이 시기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에서는 한결같이 불법체포, 고문 등의 시비가 일지 않을 때가 없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이시기 ‘고문으로 인한 조작 사건’의 대표적 실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인한 사형율은 전체 형사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잔혹한 적용실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바로 다음날 사형집행을 당하였으며, 남민전 간부들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사형·무기선고율 보다 국가보안법의 사형·무기선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수치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특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 시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남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53)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32~33쪽 참조

54)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구금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전까지의 긴급조치 제1호부터 7호까지를 총괄하고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한 것이었다.

<표> 제1심 형사공판 전체사건과 국가보안법사건 처리 인원비율 비교⁵⁵⁾ (단위 :%)

연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형 선고율	전체	0.04	0.05	0.03	0.02	0.03	0.03	0.03	0.01	0.02	0.02
	국보	3.54	5.95	5.78	1.08	4.49	8.99	3.60	2.44	-	2.44
	반공	-	4.80	0.20	0.62	0.44	-	-	0.70	-	0.94
무기 선고율	전체	0.05	0.05	0.06	0.04	0.06	0.05	0.05	0.06	0.07	0.07
	국보	2.02	2.02	5.41	2.67	4.32	4.49	2.16	2.44	-	4.88
	반공	-	-	0.60	0.62	0.88	0.29	-	1.05	-	1.41
무죄 선고율	전체	0.88	0.62	0.51	0.55	0.42	0.32	0.39	0.48	0.50	0.46
	국보	5.05	0.54	-	2.16	1.28	1.12	-	-	3.03	-
	반공	7.96	7.01	0.99	2.18	2.64	2.06	1.24	0.35	0.43	0.47
집유 선고율	전체	-	-	-	-	-	43.25	43.23	42.97	43.39	44.03
	국보	40.90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12.12	9.76
	반공	37.24	40.22	47.42	42.68	31.28	26.55	22.83	26.92	22.84	25.35

55) 1970~1979년 「사법연감」에서 발췌

3. 국가보안법 6차 개정의 시기 및 5공화국 적용실태(1980년~1987년)

가. 반공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개관

12.12, 5.17 쿠데타와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이하 군부 내 강경세력은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쿠데타 입법기구를 만들어 여기에서 5공화국 강권통치의 기본이 되는 각종 악법들을 제정 혹은 개악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⁵⁶⁾는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의 자문기관이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개편한 것이었는데, 국민의 대표기구와는 거리가 먼 바로 이 기구가 1980년 12월, 반공법을 흡수통합하여 국가보안법을 전면개정하고(법률 제 3318호) 그에 따라 반공법을 폐지하였던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반공법을 폐지한 진정한 의도는 첫째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내용면에서도 중복되는 부분⁵⁷⁾이 많았을 뿐 아니라,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므로, 이를 조정 통합하여 법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반공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인권침해로 말미암아 국내외의 인권단체에서 반공법 폐지의 요구가 많았고, 또한 당시 한국이 ‘반공법’(Anti-communist Law)이라는 이름의 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적성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공법을 형식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인권탄압법이라는 악명을 가진 법률을 폐지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두 법을 보완한 체계화된 법률로써 보안 및 사상관계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이점⁵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존속, 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반공법의 온갖 독소조항들이 흡수되었으며, 각 조

56)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른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하여 그 이름을 바꾸고 자기 자신에게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 기관이며 후에 제5공화국 헌법 부칙으로 사후적으로 정당화된 기관이었다. 따라서 이 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구라고 볼 만한 어떠한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형벌법규는 말하자면 “성문화된 관습법”에 불과하다. 조용환, <재판을 통해서 본 90년대의 인권>, 「1990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1990, 384쪽

57) 중복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 5조와 반공법 7조(편의제공), 국가보안법 6조와 반공법 6조 1항(탈출, 잠입 조항), 국가보안법 7조와 반공법 6조4항(미수범 처벌 조항), 국가보안법 9조와 반공법 8조(불고지 조항) 등

5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법과 민주화-현행 정치악법 연구」, 1986.8. 27~28쪽

항별 정한 형량은 상향 조절되었고 처벌범위 또한 확대되었으니 5공화국은 이를 통해 유례없는 인권탄압, 정권유지의 도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는 바로 ‘국가보안법의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국가보안법에 의한 남용 처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은 5공화국의 몰락을 불러온 1987년 6월 항쟁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나. 시기별(연도별) 적용실태

이 시기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적용실태를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 접수(국가보안법 · 반공법 기소인원)⁵⁹⁾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계
국가보안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535
반공법	136	65	13	-	3	2	5	-	224
계	159	234	184	153	96	178	323	432	1,759

59) * 자료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1~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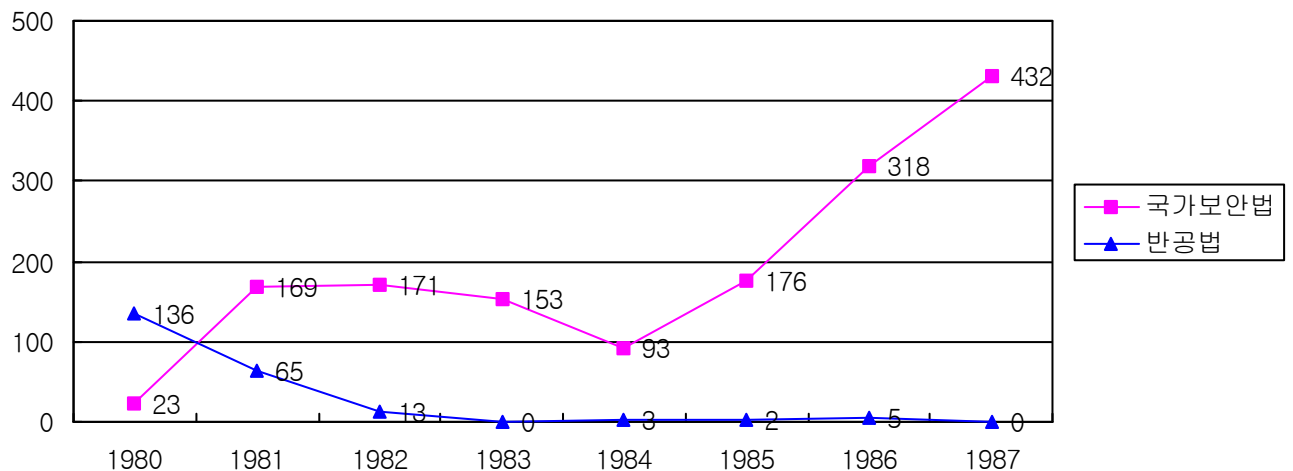
* 한편 위 법원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기소인원에 대한 통계수치는 검찰연감의 수치와 많은 차이가 있다. 검찰연감에서는 해당년도에 송치받은 인원(처리)과 기소 및 불기소 인원이 나타나 있는데, 사법연감에 비해 수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검찰연감에서 발췌한 표 참조

<표>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사건의 처리인원 및 기소율 누년 비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처리	-	-	-	-	60	156	420	583	209	485	638	601	414
기소	-	-	-	-	36	119	339	431	111	320	426	358	304
불기소	-	-	-	-	24	37	81	152	98	163	211	238	104
기소율	-	-	-	-	60.0	76.3	80.7	73.9	53.1	66.0	66.8	59.6	73.4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2년 *1980년부터 1983년까지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 한편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었음에도, 1980년 이후 반공법 위반자가 발생한 것은 6차 개정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에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0년 12월 30일 반공법을 흡수한 국가보안법은 법원자료에서 발췌한 위 <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접수인원에서 나타나듯이 1980년대 내내 그 위력을 떨쳤다.

위 표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으로 기소된 이들이 1981년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였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1984년에는 96명의 기소인원을 보인다. 그러나 1985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가 1986년 들어 약 2배 가량이 증가하였으며, 1987년에는 더욱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성립과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원이 늘어난 시기는 바로 전두환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은 물론, 민주화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억압의 수단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1980년대 초반 5.17 내란에 대한 저항시기와 1981년 수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수많은 애국민주인사, 학생,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조직적인 민주화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민주화운동 세력은 더욱 조직적인 양상을 띄게 되는데,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조직화는 곧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등 조직사건이 양상되는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인원도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5공화국 시대는 가히 '국가보안법의 시대'로 일컬어질 만큼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었고, 고문수사, '용공조작'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1981년에는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6월)이 반국가단체로 처벌받았는데, 이를 필두로 각종 정치조직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대량 구속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향은 1984년 일시적 유화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이어졌다.

1985년 들어서는 삼민투위,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 사건, 10월) 사건, <민중교육>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9월)이 발생하여 학생운동이 '간첩'의 지령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왜곡, 발표되기도 했다.

한편 사회 민주화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가 표출되었던 1986년과 1987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6년 서울운동연합(5월), 맑스·레닌주의당 사건(10월), 반제동맹당 사건(11월), 구국학생연맹 사건(12월)이 당사자들의 고문으로 인한 조작이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처벌받았으며, 1987년만 해도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1월), 제헌의회 구성기도 사건(2월), 민중미학연구소(1월), 남노련(5월), 반외세 반독재 청년학생투쟁위원회사건(5월), 고려대 정치학교 사건(9월), 성남지역민해노선 현장활동가그룹사건(10월), 애국크리스찬청년학생공투위사건(10월)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조직 사건들은 실제 모임을 과대하게 포장되어 언론에 발표되기도 하였고, 또한 수사과정에서도 고문시비, 왜곡 조작 시비가 술하게 일기도 했다.

다. 적용조항별 실태

한편 1980~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입건자, 구속자 수치(<표>60))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입건자 구속자 1,565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가 적용된 인원은 1,495명으로 전체의 95.5%에 이른다.

<표> 1980~1987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입건자·구속자수

	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2,232	167	270	234	121	106	127	527	489
(입건/구속)	1,565	116	116	166	108	94	101	365	302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8 8		19 5	1 1	1 1			17 1	
잠입·탈출	39 29	3 2	7 4	11 6	7 6	2 2	2 2	7 7	
찬양·고무	2,072 1,495	148 110	225 151	201 153	106 96	2 2	2 2	7 7	
회합·통신	9 7	1 1			3 2	2 2	2 1	1 1	
편의제공	14 3		2	8 1			3 1		
불고지	42 8	13 1	12 1	11 4		2 1	4 1		
무 고	12 11	1 1	2 2		4 3	3 3	1 1		1 1

60) 내무부,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박원순, 앞의 책, 37쪽 이하. 이 수치는 검찰연감 및 사법연감의 수치와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공법 4조가 원형이 된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하여 이적단체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였으며, 이적표현물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적표현물 사건 가운데서는 특히 출판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및 출판인들에 대한 대량 검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서적상들에 대한 무작위적 구속사태도 발생하였다. 1981년 민중문화사 사건, 광민사 사건을 필두로 1987년 한국민중사(풀빛) 사건, 1988년 자본론(이성과 현실) 사건 등으로 출판인들이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5공시기 동안 출판인에 대한 구속은 1980년 2명, 1981년 4명, 1985년 1명, 1986년 12명, 1987년 22명으로 모두 41명이 구속되었다⁶¹⁾. 이렇듯 국가보안법을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휘둘러온 5공 군사정권은, 결국 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된다. 즉, 전두환 정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와 교우관계에 있던 서울대생 박종철 씨를 불법 강제 연행하였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5층 제9호실로 끌고가 집단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바로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사건과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6월민중항쟁에 의해 5공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남용의 결과가 자신의 종말을 가져온 것이다.

라.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 시기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1980년 광주항쟁이후 반독재 저항운동은 점차 이론화, 조직화 되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국가보안법 적용도 점차 확대, 강화되었다. 즉, 운동의 이론화는 운동론을 둘러싼 사상과 노선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같은 운동론이 국가보안법의 좋은 표적이 된 것이다⁶²⁾. 특히 운동의 조직화는 그만큼 수많은 조직사건을 만들어냈는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등 조직사건은 5공화국에 들어와서 그 이전의 어떠한 시기보다 대폭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에 집중적으로 남용됨으로써,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졌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재판결과에 있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위하력을 감소⁶³⁾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형사사건 전체의 집행유예비율보다는 국가보안법의 1심 집행유예율이 점점 증가해온 것이다.

61) 신형식, “국가보안법과 출판·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47쪽.

62) 박원순, 앞의책 2권, 40~42쪽

63) 박원순, 앞의 책, 41~42쪽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사형·무기·무죄·집행유예 선고율⁶⁴⁾(단위 : %)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사형 선고율	전체	0.03	0.03	0.03	0.02	0.02	0.01	0.02	0.01	-
	국보	-	0.10	2.33	3.31	0.82	0.97	0.40	-	-
	반공	2.14	-	-	-	-	-	-	-	-
무기 선고율	전체	0.06	0.07	0.08	0.08	0.10	0.10	0.08	0.07	0.06
	국보	3.92	0.51	3.26	2.48	3.28	4.85	1.62	-	0.43
	반공	1.43	-	3.03	-	-	50.00	14.29	-	-
무죄 선고율	전체	0.49	0.53	0.52	0.51	0.49	0.44	0.40	0.42	0.40
	국보	-	-	0.93	-	-	5.83	-	-	-
	반공	-	-	-	-	-	-	-	-	-
집행유예 선고율	전체	44.13	41.71	41.16	41.28	40.23	40.38	41.67	44.24	46.40
	국보	15.69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70.51
	반공	26.43	1.86	6.06	-	33.33	-	14.29	-	-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1심 집행유예율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여 1987년 31.17%, 1988년도에는 70.51%를 기록,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6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0~1979년에서 발췌

4. 6공화국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적용실태(1988~1992)

가. 6공화국 출범 및 ‘공안정국’ 조성 시기의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987년 6월항쟁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권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구실삼아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등한시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강압과 밀실 안에서의 고문이 묵인되던 날들도 이제 지나갔습니다”(1988.2.25. 취임사)라며, 형식적이거나 인권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1988년 4.26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국민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 개폐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였다⁶⁵⁾.

이에 1988년 7월, 국회에는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국가보안법 등 38건의 법률을 개폐검토 대상 법률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1989년 전반기에는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논의되었다⁶⁶⁾.

그러나 이와같은 반민주악법 개폐에 대한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악법에 의한 탄압⁶⁷⁾은 오히려 거세어졌다. 특히 1989년 중간평가를 철회하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표방한 노태우 정권은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소위 공안정국을 조성하였고, 그해 5월 3일 동의대 사건이 발생하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탄압을 강화하였다. 이로인해 6공화국 출범과 함께 개폐 논의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은 제자리 걸음질 치고 있었다.

다음은 법원자료에서 발췌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제6공화국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기소인원 도표⁶⁸⁾이다.

65) 1988년 11월 26개의 사회단체는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민주악법의 즉각적인 철폐와 개정을 요구하며 특히 야 3당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변은 1989년 2월,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법률의 폐지 및 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당시 반민주악법으로 지목된 법률 가운데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은 완전 폐지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농업관계법, 교육법, 언론관계법 등 9개 분야 관계법은 개정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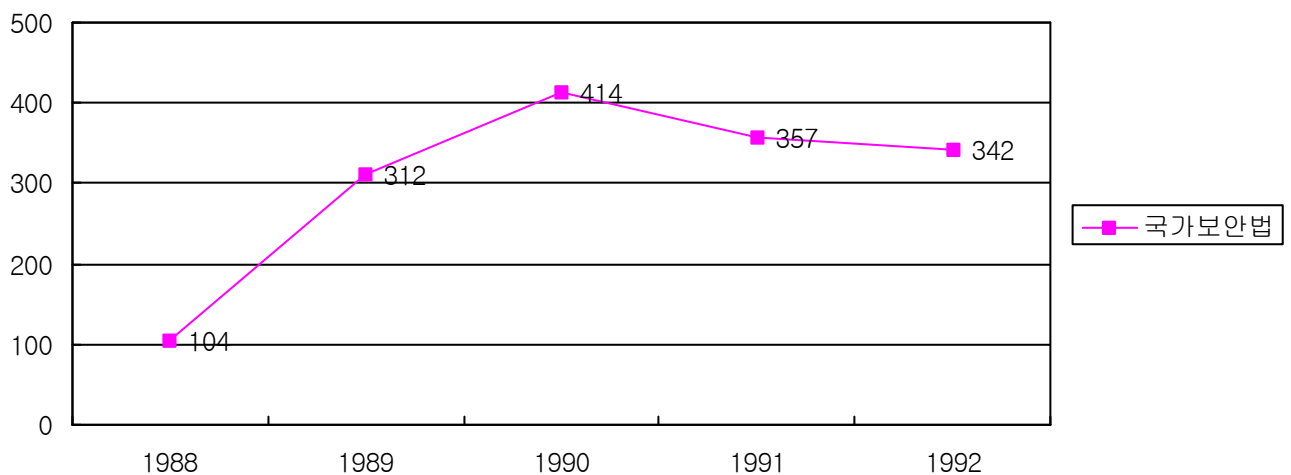
66)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천정배, “반민주악법개폐의 진전상황과 사례”, 「대한변협 1989 인 권보고서」, 역사비평사, 1989. 참조

67) 가령, 1988년 들어 정부는 철도기관사파업과 관련하여 3천5백여 명의 경찰을 투입, 농성을 진압하고 9개 지역에서 1,349명을 연행, 1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대엔진 파업과 관련하여 3월 18일 4명, 3월 21일 5명, 3월 23일 7명 등 모두 1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운동」, 1988. 21쪽

이 도표를 살펴보면 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인원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권 출범초기 유화적 제스처와 무엇보다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이 개혁입법의 과제로 등장하면서 이 법의 개폐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 접수(국가보안법 · 반공법 기소인원)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국가보안법	104	312	414	357	342	1,529
계	104	312	414	357	342	1,529



그러나 1989년 들어서면서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인원이 급증하게 되는데, 1989년의 기소인원은 1988년에 비해 약 3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⁶⁹⁾ 때문이며 특히 1989년 4월 발족한 공안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진개 대검공안부장)에 의해 대량구속 사태가 빚어졌다.

68)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9~1993년에서 발췌. 국가보안법 적용사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통계가 작성되었다. 한편 대검찰청의 통계자료는 위 사법연감 자료와는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사건의 처리인원 및 기소율 - 검찰연감(대검찰청)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처리	209	485	638	601	414
기소	111	320	426	358	304
불기소	98	163	211	238	104

69) 정부는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재야단체의 조직적인 체제도전행위’로 간주,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월 3일 전민련, 서총련 등 재야단체의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혐의에 대한 사실상의 일제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1989년 4월 3일치.

공안합동수사본부는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가 참여하여 상설수사기관으로 운용되었는데, 단순한 업무협조체제가 아닌 상설기관으로서의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에 계엄 선포시 외에는 전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불법적 기구였고, 더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에 군수사기관인 보안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불법성⁷⁰⁾을 부인하기 힘든 징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안합수부가 설치된 이후 전민련 등 민주화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뒤따랐으며, 합수부가 활동한 77일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재야단체 인원만 무려 85명이 구속되었다.

이 기간중의 공안합동수사본부 사건처리 현황은 다음 표⁷¹⁾와 같다.

<표> 공안합동수사본부 사건처리현황

지역별	죄명별		신병관계	
	국가보안법 위반	기타	구속	불구속
본부				
서울	68	79	92	55
인천		45	34	11
수원	1	53	35	19
춘천		17	17	
대전		5	3	2
청주	12	4	11	5
대구	1	24	19	6
부산		42	26	16
마산		28	36	2
광주		41	26	5
전주	3	8	6	5
제주		2	2	
합계	85	348	307	126

공안합수부는 발족이후 307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433명을 사법처리하는 기록⁷²⁾을 세웠다.

70) 이는 결국 안기부, 보안사 등 정권 안보적 수사기관이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장악하여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건처리 방침을 결정하면서도 이들 수사기관만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경우, 과거의 오명 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마치 검찰이 자신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들 수사기관을 지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합동수사본부라는 틀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불법적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수사권의 행사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김한주, “신체의 자유”,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1989년. 33~34쪽

71) 법무부, <1989년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1989.9.

72) 공안합수부는 발족 이후 - 문익환 등 밀입북 사건 및 재야 좌경주동인물수사 : 8명 수사, 26명

한편 1989년도에는 인천부천지역 노동자회사건(인노회, 2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사건(인민노련, 10월), 민족자주통일중앙협회사건(7월) 등 크고 작은 조직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이던 조선대생 이철규군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이던 동료의 은신처를 대라며 국군보안사 요원들에게 '생매장' 위협을 당한 국민대생 김정환씨 사건,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체포, 고문수사를 당한 화가 차일환, 홍성담 씨 사건 등 군사정권 시절의 구태와 강압이 재등장하였다.

또한 1990년은 1989년에 비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급증하게 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집권당이 3당합당을 통해 거대여당으로 돌변하면서, 초기의 개량적인 민주화 조치마저도 퇴색되고 공안통치로 회귀하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1990년 4월 인민노련 사건 관련자 10명이 “노동자들의 의식적 각성을 위해 활동한 정당한 노동운동 단체였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중민주정부수립을 꾀한 이적단체’를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시작된 공안돌풍은 한해동안 노동계급 사건(1월)을 필두로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사건(2월), 마산의 일꾼노동상담소 사건, 인천 노동자 대학 사건(3월),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사건(4월),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8월), 사노맹 사건(10월),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사건(11월) 등 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을 비롯, 자민통 사건(11월),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 사건(12월) 등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으로 인한 대량 구속사태를 빚으면서, 결국 6공화국 통털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기소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조직사건으로 몰려다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사건으로 구속·기소한 사건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북부지역 노동자연맹 사건(2월), 인천노동상담소 사건⁷³⁾(4월)이 그것이다. 이는 이 시기의 이적단체로의 무리한 법적용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1989년 합수부 구성이후 1990년까지 노동상담소, 문화단체 등 공개적인 노동운동 단체등에 국가보안법 적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90년 6월 11일 현재, 노동자 구속자 40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구속

불구속 - 인노회 등 이적단체 수사 : 21명 구속, 3명 불구속 - 반인권적 악성 노사분규 주동 및 의식화배후 조종자 수사 : 60명 구속 - 노학연계 주동자 검거수사 : 25명 구속 - 인권윤리침해 학원폭력 및 극렬시위 주동자 검거, 수사 : 105명 구속 - 좌경의식화 교사학습사건 수사 : 3명 구속 - 평양집회 관련사범 수사 : 5명 구속 - 좌경이념출판물 유인물 관련수사 : 8명 구속, 5명 불구속 - 기타 노사분규, 학원사태 등 관련사범 수사 : 72명 구속, 92명 불구속했다. 법무부, 앞 국정감사 자료

73) 인천노동상담소 관련하여 1990년 4월 치안본부(대공3부)는 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이념을 고취시키고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였다 하여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소지했던 서적과 유인물은 기존의 시사잡지 기사를 전제한 것으로 이적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고, 찬양·고무 혐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소극적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다. 「한겨레신문」, 1990.4.14.

된 노동자는 전체의 23.1%인 1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업무방해로 인한 구속자 121명(전체의 27.7%)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 구속노동자 4명 가운데 1명 가량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운동 탄압에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남용되었는지 짐작하게 한다⁷⁴⁾.

1991년 4월 강경대 학생 타살사건 이후로 13명의 젊은이들이 분신하였던 5, 6월시기에는 국민들의 민주화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 시기에도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안동대 반미애국학생회 사건, 상지대 민학련 사건(6월),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사건(9월) 등 학생운동내 조직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이는 대량구속사태를 가져왔으며, 특히 군입대한 군인들에게도 학생운동 전력을 문제삼아 자주대오 조직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가 상실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여전히 이어졌다.

인천지역노동자 그룹사건(1월),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사건(2월), 사노맹, 전민학련 사건(5월), 민족한남대활동가조직사건(7월)이 발생하였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색깔논쟁이 유발되었고, 집권여당은 이를 당선에 크게 이용하기도 하였다.

나. 국가보안법 제7차 개정이후 적용현황

한편 노태우 정권은 1991년 5월 11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다.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뒤쪽 중앙 통로에서 이 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둘러 세워놓고 무선 마이크를 들고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날치기’로 처리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그동안의 여섯 번에 걸친 개정 때와 달리 1991년 개정 당시는 국가보안법이 개혁입법의

74)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공청회 자료집>, 장명국 원장과 구속노동자석방을 위한 준비모임, 1990년 7월 21일. ;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이 외부 불순 세력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실제로는 노동운동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공안당국의 이런 사건의 왜곡, 확대는 이적단체 혐의로 체포했다가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가택수색 당시 나온 노동자교육용 책자를 빌미로 구속시키는 사례로 빈발했다. 그럼에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혐의사실을 기정사실로 굳혀놓고는 몇가지 유인물과 책자를 빌미로 단순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구속시키는 것이 고정 순서로 되고 있다. 특히 지방신문에는 사회면 1면에 “00지역 산업체 침투를 목적으로... 00을 사주, 00분규에 개입...” 이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그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노동운동 자체를 불온시하고 외면하도록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운동 탄압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 민가협 등, 1990, 10.에서 인용

상징으로 부상했고, 19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⁷⁵⁾으로 인해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 등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한 것과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주의적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남용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찰이나 법원의 국가보안법 해석과 적용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개정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확대 적용되었다.

아래 <표>는 구속되어 있는 전체 양심수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양심수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74명이 구속취소 또는 가석방의 형식으로 석방되었음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⁷⁶⁾.

<표> 시기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

시기	1990. 6. 현재	1990.10. 현재	1991. 4. 현재	1991. 6. 현재	1991. 9. 현재
구속자수	389명 (전체 양심수의 32%)	513명(40%)	539명(48%)	537명(41%)	539명(41%)

특히 7차 개정으로 이적단체(7조3항)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로써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넓히는 결과가 발생⁷⁷⁾했다.

75) 현재 1990.4.2. 선고89헌가113 판결 ; 현재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에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다. 현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위 조항들의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 다섯군데의 용어가 자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해서,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 운영할 경우에는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법 운영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으며, 헌법 전문과 헌법 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 조항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위헌적 요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처벌범위를 축소제한 하는 경우에는 합헌”이라는 ‘한정합헌’ 해석을 도출하였다.

7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91년 양심수 현황>, 「민주가족」 21호, 1991.11.

77) 예컨대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룹사건의 경우, 7차 개정 이전에는 이적단체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7차 개정 이후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은 1992년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변

예컨대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지 않고(또는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변혁이론 및 사상을 지닌 이들(조직)에 대해서는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으므로, 기존 국가보안법 규정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였으나, 7차 개정에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북한의 군이 동조한 사상이 아니더라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단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1992년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인권보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1992년 7월 13일부터 열린 제45차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⁷⁸⁾에서는, 1990년 이전 인권규약을 준수할 당사국의 하나로 가입하는 절차를 마친 뒤, 1990년 7월 1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 제40조에 따라 1991년 7월 제출한 최초보고서를 검토⁷⁹⁾하였다.

그 결과 이사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⁸⁰⁾하였다.

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는 판결(서울고법 제5형사부, 92노 3315 판결, 1992.11.17.)을 받았다. IS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19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한 것으로, 검찰은 법 개정 이전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구소련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비판해온 ‘트로츠키주의’를 신봉해온 IS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조직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해온 단체’로 규정, 1992년 2월경 IS 조직원들을 대거 구속기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IS에 가입한 이들은 법정형이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했으나, 단체 구성을 처음에 주도하거나 활동기간이 오래된 이들은 오히려 법정형이 낮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78) 유엔인권이사회는 B규약의 운영과 직무를 수행할 기구로 B규약 제4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주요한 직무로는 첫째,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 둘째 인권규약 제41조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 뒤 그 두 국가사이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아 그것이 이사회에 회부되는 경우 그것을 심의하는 것, 셋째, 당사국의 관할아래 있는 사람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에 통보(Communication)한 경우, 그것을 심의하는 것 등이다.

79) 이 규약 제 40조에 따르면 가입국은 규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약에 보장된 인권의 실사를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후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1991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이사회는 1992년 7월 제45차 회기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였던 것이다.

80) “a serious attempt ought to be made to phase out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the committee perceives as a major obstacle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venant and, in the meanwhile, not to derogate from certain basic rights.” CCPR/C/79/Add.6 25 September 1992.

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1988년 이후 국가보안법은 개혁입법의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제기되면서, 폐지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6공화국 들어서서 국가보안법은 오히려 수많은 조직사건과 술한 구속자를 발생시키면서 처벌 범위는 더욱 넓어져 갔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는 국가보안법 특히 7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7조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조에 의한 구속자가 잇달았고, 따라서 7조에 의한 구속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령, 1989년, 1990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에게 적용된 조항별 분류를 살펴보면 단연 7조(이적표현물, 찬양고무, 이적단체 등)에 의한 구속 비율이 (1), (2) 시기 모두 9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가운데 이적표현물 비율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적단체 사건의 경우는 (1)시기에 비해 (2)시기에 2배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적용조항별 분류⁸¹⁾

적용조항 시기	이적표현물	찬양·고무·동조	이적단체	간첩	기타
(1) 1989.9~90.8(759명)	418(55.1%)	173(22.8%)	136(17.9%)	9(1.2%)	23(3.0%)
(2) 1990.9~91.8(724명)	324(44.8%)	128(17.7%)	234(32.3%)	2(0.3%)	36(4.9%)

둘째, 이적표현물 적용에 의한 구속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출판물, 예술 작품 등에 대한 탄압이 일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1989년 4월 공안합수부의 발족과 8월 '좌익 출판물, 유인물 대책위원회'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하여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5공때보다 무려 3배가 넘는 103명의 출판인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외 5백여회에 걸친 압수수색과 15만권 이상의 도서를 압수하는 '출판탄압'⁸²⁾이 자행되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도 심각했는데 화가, 시인등이 창작한 예술작

한편 1992년 7월 열린 위 유엔인권이사회 제45차 회의 참관기와 이 회의에서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의견에 대한 요지는 천정배, <유엔인권이사회 참관기>, 1992년 인권보고서, 대한변협, 1993. 253~283쪽 참조.

81) 대검찰청 제출자료,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1990년, 1991년. ;민변·KNCC 「한국인권의 실상」, 역사비평사, 1992. 88쪽 재인용

82) <출판의 자유보장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1991.4.25.

품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적용되었다. 예컨대 신학철 <모내기>, 홍성담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등 1989년 8월 한달 동안에 무려 8명의 화가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시인 이산하의 <한라산>, 이기형의 <지리산> 등이 이적표현물이 되었으며, 특히 창작중인 작품에도 국가보안법이 적용, 백진기씨 등이 구속(1989년 7월)된 사실은 6공화국의 예술의 자유 침해 실상을 엿보게 한다.

셋째, 1991년 5월, ‘주관주의적 구성요건’을 강화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7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역시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 또는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결국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자의적 해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성요건일 뿐이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찰, 검찰이나 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과 해석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인 남용사태는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형사절차 과정에서도 특히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었다.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구금은 물론,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자행하는 구시대적 행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기부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이유없이 접견거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접견거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⁸³⁾이 잇달아 발생하기도 하였다.

83) 대표적 사례로는 1989년 7월 서경원의원 사건(홍영기 변호사에 대한 접견불허), 1989년 8월 문부식 사건(김동현 변호사에 대하여 안기부의 접견 불허), 1989년 8월 홍성담 사건(윤종현 변호사 외, 안기부), 1991년 3월 박노해 사건(유선호 변호사 외, 안기부), 1992년 9월 김낙중 사건(박성민 변호사 외, 안기부), 1992년 9월 장기표 사건(윤종현 변호사 외, 안기부) 등이 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5. 김영삼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1993.2.25.~1998.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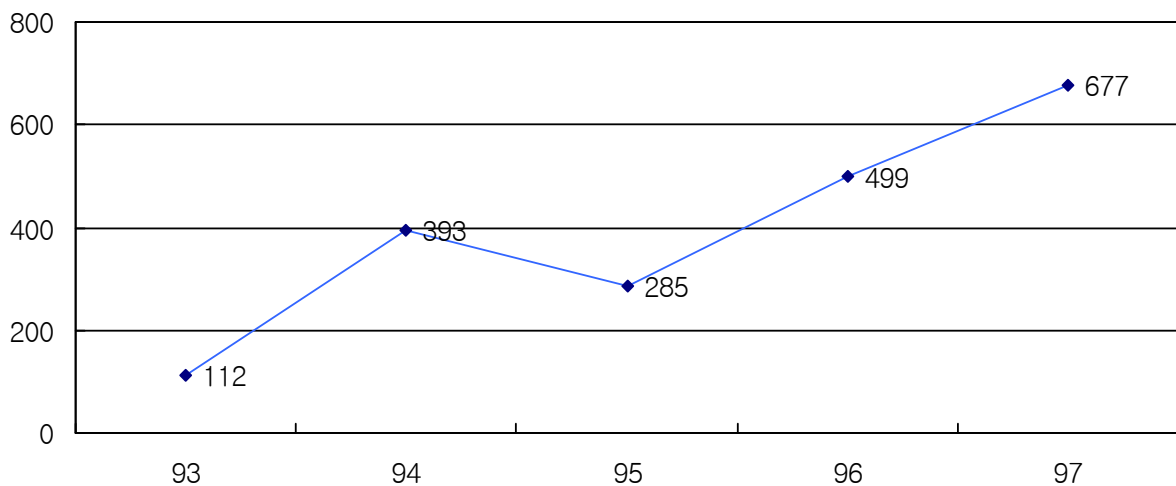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줄을 이었고 집권기간 5년동안 1,98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정권 초기에는 그 이전 정권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신구속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기도 했으나 1994년 7월 김주석 사망에 따른 조문 파동과 잇따른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으로 파생된 ‘신공안정국’의 조성 이후 구속자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구속자 급증사태는 1996년 들어 49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정권 말기인 1997년에는 677명의 구속자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국가보안법 적용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표> 김영삼 정권 5년동안 연도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⁸⁴⁾

연도	93	94	95	96	97	98	총
구속인원	112	393	285	499	677	23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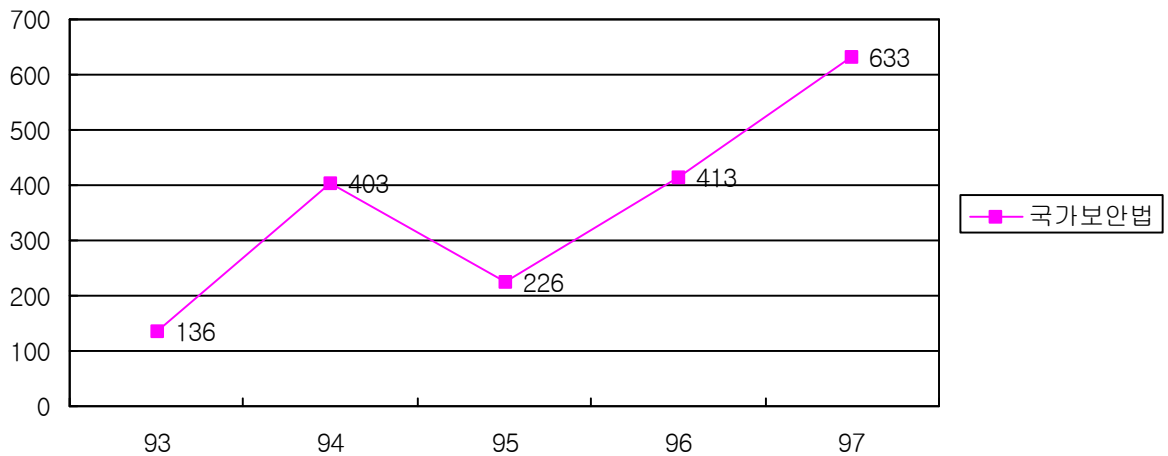
한편 아래 <표> 및 그래프는 사법연감에서 발췌한 김영삼 정권 5년동안의 기소인원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제1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접수(국가보안법 기소인원)⁸⁵⁾

연도	93	94	95	96	97	계
기소인원	136	403	226	413	633	1,811

8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조사 및 통계. 1993년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부터 통계이고, 1998년은 2월 24일까지의 통계이다.

85)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3년~1997년.



이 시기에는 과거에 비해 조직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른바 ‘간첩사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과거 정권하에서 민주화운동 전력을 이유로, 또는 단순 찬양·고무 행위로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직사건의 경우, 과거의 실례와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들에 대해서까지 이적단체로 기소, 판결함으로써 7조 위반 사건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래 <표>는 김영삼 정권시절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1,989명을 적용된 법조항별로 살펴본 것이다. 김영삼 정권시절 7조 위반 구속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0.1%인 1,791명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적용법조별 현황⁸⁶⁾

연도 적용조항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7조(고무·찬양)	69	339	244	450	666	23	1,791
3조(반국가단체)	30	24	28	28	-		110
6조(잠입탈출)	4	·	4	3	3		14
8조(회합통신)	8	23	4	15	3		53
4조(국가기밀)	1	2	1	1	-		5
9조(편의제공)	·	5	-	2	5		12
10조(불고지죄)	·		4				4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86) 민가협 조사통계. 이는 구속될 당시 적용된 법조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 주요 기소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1993년도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부터 통계이다. 1998년 통계는 98년 2월 24일까지 통계이다.

또한 이를 신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시기에 학생 구속자가 1,159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된 군인의 경우, 모두 학생운동 경력이 문제가 되어 구속된 경우에 속하므로 학생 구속자는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인다.

<표> 신분별 현황⁸⁷⁾

연도 직업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학생	31	193	102	318	500	15	1,159
노동자	5	38	20	38	44		145
재야	63	128	110	92	89	8	490
군인	13	34	53	51	44		195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표> 90년 이후 공안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율, 1심 실행율⁸⁸⁾

년도별	구속영장 신청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구속영장 기각율(%)	기소인원	실행인원	실행율(%)
1990	600	23	3.8	860	269	31.2
1991	637	18	2.8	902	356	39.4
1992	244	2	0.8	565	174	30.7
1993	247	3	1.21	243	97	39.9
1994	516	7	1.3	533	99	18.5
1995	381	24	6.2	361	76	21.0
1996 (1.1.-8.31)	337	20	5.9	291	49	16.8

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용실태(1993.2.~1994.6.)

1)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개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1년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1994.2.25.)는 143명으로 집계되

87) 민가협 조사 및 통계.

88) 대법원 제출자료, 국정감사, 1996년

었다. 이는 6공화국 시기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치와 비교할 때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창한 문민정부 출범 초기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특징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본질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1년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7조 적용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과거 6공 시절 발생했던 사건을 우려먹기식으로 재탕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인신구속이 남발했다.

7조위반 구속자는 전체 구속자 143명의 67.1%인 96명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통신에 <공산당 선언> 일부를 게재한 통신인⁸⁹⁾, 창작노래극을 준비하던 노래극단 '희망새'의 노래대본이 이적표현물이라며 단원들이 구속당한 사건, 합법적으로 출판된 사회과학 서적들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적용하여 출판사 대표가 대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태는 1994.3.12. 검찰총장(김도언)의 "문학, 연극 등 예술활동과 컴퓨터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라"는 지시⁹⁰⁾에 따른 것으로, 이 시기 이적표현물 조항은 유인물 뿐 아니라 노래대본, 출판물 등에 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출판물의 경우 검찰이 문제삼은 책들은 이미 수년 전에 출판된 도서이고, 이전 군사정권 하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문민정부하에서 새삼스레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으로, 출판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난이 일었다. 또한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공안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1989년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 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적용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위 표현물 가운데 북한소설 <용해공들>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항소부)는 1995.4.21.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적용 사례를 증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의 또하나의 특징은 6공시기 발생한 조직사건 관련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1993.6.),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사건(93.8.),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사건(93.8) 등 상당수 조직들에 대해 '사노맹'(90년 발생) 등 과거 조직사건과 무리하게 연루시키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들 세사건 관련자 34명 가운데 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89) 서울경찰청은 12.8.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회장 김형렬씨를 이적표현물 반포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한 위 천리안에 '공산당선언'을 일부 게재한 혐의로 진상호씨등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법원은(서울지방법원 항소5부) 1995.5.17. "공산당 선언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0) 전국 50개 지검 및 지청公安부장검사 회의, 한겨레신문 1994.3.13.

<표> 출판사 대표 구속현황⁹¹⁾

출판사	출판인	구속일	서적
일빛 출판사	대표 이성우	1994.3.19.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1990.5.발행) 강의 노동자의 철학(1990.8.) 등 5권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	1994.3.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1990.10.) 90년대 도약 청년학생운동(90.3.) 등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1994.4.20.	용해공들(북한소설)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	1994.6.10.	레닌의 제국주의론(1981.12.) 등 4권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권	1994.8.20.	세기와 더불어(김일성 회고록)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1994.8.30.	벗(북한소설)

이러한 통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과거에 비해 크게 신중해진 반면, 수사당국의 마구잡이식 구속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94년 조문파동, 주사파 발언에 이은 신공안정국(1994.7.~)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뒤이은 ‘조문논쟁’과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으로 인해 공안당국은 강경기류를 조성하였고, 그에 정부와 여당, 언론까지 가세하면서 메카시 선풍에 비견될 만한 신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른바 ‘주사파’ 조직사건 등으로 인해 1994년 6월부터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5월 구속자가 8명인데 반해, 6월 구속자 49명, 7월 구속자 62명, 8월 구속자 58명으로 구속자가 점차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994년 국가보안법 구속자 월별 현황⁹²⁾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구속자수	4	35	18	15	8	49	62	58	43	53	19	29	393

1) 조문파동에 따른 국가보안법 사건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사회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7월 11일 임시국회에서의 이부영 의원의 조문관련 발언을 기화로 여당과 일부언론은 조문이 곧 ‘김일성주의 찬양’인양 몰아대면서, 애초의 취지는 간과되고 조문논쟁으로 급격히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 방침⁹³⁾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대량 구속과 대

91) 민가협 조사

92) 민가협 조사 및 통계

학가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및 병력배치 등으로 인해 공안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7월 16일, 김일성 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조문간다, 길 비켜라”라는 종이를 들고 판문점을 향하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예비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대학 교정에 “김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시립대 부총학생회장 최인규씨가 7월 18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김주석 장례식 전날인 7월 18일 한양대 안산교정 게시판에 총학생회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이유로 이 대학 총여학생회장 김진숙씨가 7월 23일 구속되기도 했다.

2) 박홍총장의 “주사파” 발언에 이어 발생한 이른바 “주사파” 조직사건 실태

이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 김정일이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후 이른바 “주사파” 관련 조직사건이 우후죽순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들이 1심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왔으며, 안기부 검찰 등이 발표한 수사내용이 기소단계에서 크게 축소되거나 심지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을 무리하게 끼워넣어 발표한 것으로 밝혀져 결국 경찰 등 공안기관들이 무리하게 이들 사건을 과대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구국전위, 김일성청년동맹, 성남노동자회, 한누리 노동청년회, 노민문연 사건 등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54명의 1심 재판결과 실행을 선고받은 이는 16명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38명은 집행유예(30명), 보석(4명), 구속취소(1명), 공소보류(1명), 구속적부심(2명) 등으로 석방됨으로써 1심 과정에서의 석방율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사건발표와는 다르게 기소된 사례가 많았는데, 구국전위 사건의 경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관련자를 23명으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23명 가운데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이는 7명에 불과하였으며 그외 구속자는 구국전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모두 7조 적용이 되었다.

12명이 기소된 김청동 사건 역시 4명에 대해서만 이적단체 가입죄로 기소했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조항만을 적용하였다. 경찰이 ‘북한을 동조한 이적단체’로 발표했던 한누리노동청년회, 성남노동자회 경우 기소과정에서 모두 이적표현물 제

93) 대검 공안부(최환 공안부장)는 1994.7.9. 김일성 주석 사망과 관련해 “한총련과 노동계 등 재야의 주사파 학생·인사들이 김일성 추도행위를 벌일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 및 찬양) 혐의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가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특히 김일성 주석 장례식일인 7월 19일은 조문대자보, 프랑카드 철거를 명목으로 전국 181개 대학 주변에 233개 중대 2만7천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작, 배포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안정국을 이용한 국가보안법의 남용 현상임이 증명되었다.

<표> 신공안정국 하의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이른바 ‘주사파’ 조직사건) 결과⁹⁴⁾

사 건 명	구속일	구속인원	1심재판결과	비고
구국전위	7.28	23명	실형 12명 집행유예 11명	7명만 반국가단체 가입 적용, 그외는 7조 적용
김일성주의청년동맹	8.4	12명	집행유예 9명 구속취소 1명 실형 2명	구속자 가운데 8명은 이적표현 물 소지로만 기소
노민문연	9.27	7명	보석 4명 구속적부심 2명 공소보류 1명	이적단체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전에 모두 석방
성남노동자회	9.3	5명	집행유예 3명 실형 2명	이적단체 가입으로 구속되었으 나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등으 로 기소
한누리노동청년회	9.7	4명	집행유예 4명	위와 동일
샘	9.2	3명(12명 연행)	집행유예 3명	위와 동일

한편 이 시기에는 검찰이 대학교재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 침해 논쟁이 가속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배경은 “주사파 배후”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박홍 총장이 8월 1일 일본의 한 일간지와 회견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며 또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롯되었다.

다음날인 8월 2일 대검 공안부(최환 공안부장)는 경상대 장상환 교수 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대립을 강조, 계급혁명과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당국은 장교수 등 9명이 1999년 집필하여 4년동안 대학교재로 사용해온 「한국사회의 이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들 집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며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장교수 등은 이를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4년전에 출간된 대학교재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문제삼겠다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학문사상의 자유에 위배됨을 물론 교육권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를 주축으로 공동대응에 나섰다. 결국 장교수 등 8명은 8월 30일, 경찰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하였고, 검찰은 이 가운데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후 검찰은 11.30.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2000

94) 민가협 조사 및 통계

년 7월 24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02년 7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다⁹⁵⁾.

다. 김영삼 정권 중반기(1995~1996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국가보안법 적용 개관

1995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285명으로, 이는 신공안정국의 조성으로 급격한 구속사태가 발생했던 1994년에 비해(393명)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년 접어들면서 다시 구속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499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1995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월별 분류⁹⁶⁾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구속인원	10	22	27	13	40	25	18	34	8	21	61	6	285

<표>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월별 분류⁹⁷⁾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구속인원	21	27	19	24	37	44	49	60	54	86	73	5	499

이러한 급증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 1996년 4.11 총선이후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달아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단”, “좌익세력 척결” 발언 및 지시 등 정부의 공안분위기 조성⁹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95) 7월 24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를 제작하여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2명에게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7년여만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한국사회의 이해」가 비판적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재로 사용돼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를 제작, 반포하였고, 강의를 하여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02년 7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는 역시 무죄판결을 내렸다.

96) 민가협 조사 및 통계

97) 민가협 조사 및 통계

98) ▲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8.15 한총련 통일집회를 계기로 ‘한총련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북한 잠수함 출현사건에 따른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조장⁹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8.15 한총련 통일집회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경방침은 결국 학생 2,193명 연행, 470명 구속으로 나타났다¹⁰⁰⁾. 한편 9월 2일 대검찰청은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등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공식발족시켰다. 합동수사본부는 한총련의 친북 이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인물 및 그 배후세력 척결에 가용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¹⁰¹⁾을 세웠다. 이러한 시국상황의 영향으로 8.15 한총련 사태이후 학생양심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동해안에 출현한 북한 잠수함 사건(9월 18일)을 계기로 정국은 ‘안보태세무장’논리로 뒤덮혀졌고 남북관계는 다시 초긴장상태로 변했다. 10월 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전면전 불사’를 천명했고 언론 역시 국가안보위기를 강조하며 연일 공안분위기 조성에 일관하였다. 이러한 공안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급증(9월 54명, 10월 86명, 11월 73명 구속)했고 무리한 인신구속 사태가 속출했다. 이 기간에는 “무장공비”와 관련하여 학보(동국대, 상지대)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의견(무장공비 사건과 관련한 의혹 제기)이 문제가 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2)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가) 지난 시기 활동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잇달아

1995년에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50%이상이 이미 해체된 조직이나 활동을 그만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히 대응하라”고 이총리 발언. ▲ 5월 17일 공안 유관부처 회의, 최병국 대검공안부장 “자유민주체제 위협 세력의 활동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유관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로 대공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

따라서 이러한 발표 이후 실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차별 인신구속이 이뤄졌으며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강경진압과 처벌이 이어졌다.

- 99) 4.11총선의 약진으로 고무받은 정부는 공안위기분위기를 조장하며 대량구속사태를 유발하다가 한총련의 8. 15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를 전후해서는 더욱 극단적인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다. ▲ 8월 9일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안기부, 경찰청 등 8개 공안 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어 “통일대축전 행사를 불허하기로 하고 학생들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 8월 17일 대검찰청 최병국 공안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의 모든 산하 기구-조직들을 이적단체로 보고,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등으로 전원 사범조치함으로써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 100) 경찰은 8월 17일 연세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학생들을 연행하려 했다. 이에 학생들은 연세대 종합관과 과학관에 피신, 점거에 이르게 된다. 경찰은 8월 20일 오전 5시 45분경 연세대 종합관에 경찰특공대 2천여명 등 32개 중대 4천여명의 병력과, 테러진압용 헬기 4대를 동원하여 이 건물에 있던 학생 2,193명 전원을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470명을 구속했다.

- 101) 1996년 국정감사제출자료(내무위)

둔 사람들을 2~3년전의 활동을 빌미삼아 구속시킨 사례였다.

90년초 학생회 간부들을(구속 당시 대부분이 학생회 활동을 중단하고 학업이나 사회 활동 중이거나 군복무중이었음) 조직사건으로 엮어 대량구속한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6공 당시 조직사건으로 수많은 구속자가 양산되었던 사건들이 다시 '조직재건 혐의'라는 이름으로 대량 구속사태가 잇달았다.

▲ 90년초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이른바 '자주대오' 조직사건으로 대량구속

95년 2월 부산대를 시작으로 5개 대학(부산대, 경기대, 이리 원광대, 전주 우석대, 충남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자주대오'(혹은 활동가 조직)사건은 96년에는 전남대, 상지대, 부산외국어대, 제주대, 강원대, 진주경상대 등 6개 대학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95년에는 64명이, 96년에는 55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군복무 중인 군인도 95년에 33명, 96년 12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자주대오' 사건을 발표하며 한결같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이적단체를 결성하여 학내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조직원들을 한총련 지도부나 총학생회 간부로 진출시켜 친북활동을 배후조종해왔다"고 밝혔다.

각 사건 발생시마다 10여명이 넘는 대량구속 사태가 빚어진 '자주대오'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속자들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개적인 총학생회 간부들이라는 점, 둘째 2, 3년전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다 할지라도 구속 당시에는 활동을 마치고 군복무 중이거나 졸업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셋째 96년도 자주대오 사건은 정부당국의 한총련 탄압이 극을 치달았던 8월을 전후해서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대부분 사건 발생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의장 또는 지역총련 의장(부산외대-부경총련 조통위원장, 전남대- 한총련 의장, 강원대-강총련 의장, 제주대-제총협 의장) 등 주요 간부직을 맡고 있어 한총련 탄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10여명이 넘는 이들을 긴급구속할 당시에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가 부산대의 경우 이적단체 혐의는 삭제되고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나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축소되었다. 아래 <표>는 1995년, 1996년 잇달아 발생한 자주대오(활동가조직)사건에 대한 재판결과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도 1심 재판결과 1~2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1995년의 경우 자주대오 구속자 64명의 90.6%에 달하는 58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1996년 구속자 55명 가운데 72.7%인 40명이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또 실형선고자들도 다른 조직사건과 달리 6월에서 8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표> 1995년 이른바 자주대오(활동가 조직) 사건 결과¹⁰²⁾

102) 민가협 조사

사 건 명	구속일	구속인원	재판결과	비고
부산대 활동가조직	95.2.12 9.19.	20명 (군인 9명)	18명 1심집유, 2명 2심집유	1심결과이적표현물 소지· 탐독 혐의만적용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95.3.15	16명 (군인 9명) (불구속1명)	14명 1심집유, 1명 2심집유, 1명 실형	대부분 93년도 총학생회 간부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95.5.1(6명) 8.1(2명)	8명 (군인 5명)	보석 2명, 6명 1심집유	93년 총학생회, 여학생회 간부
전주우석대 자주대오	95.8.29 12.24.	8명 (군인 4명)	전원 1심 집유	93년 총학생회, 단과대 학 생회 간부
충남대 활동가조직	95.10.18	12명 (군인 6명)	10명 1심집유, 1명 2심집유, 1명 실형	

<표> 1996년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결과¹⁰³⁾

사건명	구속일	구속인원	구속처	적용법조항	재판결과
전남대 자주대오	6. 30	14명 (1명 불구속)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국보법 7조3항	1명 보석, 10명 1심 집유 2명 2심 집유
상지대 활동가조직	7. 27 8. 31	9명 (군인 4명)	강원경찰청 기무부대	국보법 7조3항	6명 1심 집유, 3명 2심집 유(1심 1년형)
부산외대 자주대오	9. 2 10.	13명 (군인2명)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	국보법 7조3항	1명 구속취소, 3명 보석 4명 1심집유, 2명 2심집유 3명 실형
제주대 활동가조직	9.20	4명 (군인 3명)	제주경찰청 기무부대	국보법 7조3항	1명 보석, 3명 1심집유
강원대 자주대오	11.29	7명 (군인 1명)	강원경찰청 기무부대	국보법 7조3항	5명 1심집유, 1명 2심집유 1명 실형
진주경상대 활동가조직	11.29	6명 (군인 1명)	경남경찰청 기무부대	국보법 7조3항	4명 1심집유, 2명 실형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3.1	3명 (군인1명)	전북경찰청	국보법 7조3항	3명 1심집유

나) 1996년, 조직사건 발생 최대

103) 민가협 조사

또한 이 시기에는 조직사건(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사건)이 수없이 발생하였는데, 1995년에는 16건, 1996년에는 29건이 발생하였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조직사건 구속자가 전체 구속자의 75.7%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95년 국가보안법 법조항별 분류¹⁰⁴⁾

구분	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계	285	206	71	8
구속	243	184(75.7%)	53(21.8%)	6
불구속	31	19	11	1
이첩	11	3	7	1

<표> 1996년 분류(1. 1 ~ 9. 16 현재)

구분	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계	360	209	145	6
구속	307	180(58.6%)	121(39.4%)	6
불구속	38	20	18	
이첩	15	9	6	

96년도에 발생한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의 경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 ‘해체’된 조직의 회원들을 지난 3, 4년 전의 과거 활동을 뒤늦게 문제 삼아 대량구속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구지방경찰청은 96년 5월 29일, 해방노동자통일전선이라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4명을 구속했으나 이 단체는 91년 만들어져 노동자대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며 6개월동안 활동하다가 자진해산한 단체였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1월 30일, 현역군인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이 대학 재학시(91~93년) 전민학련을 결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였는데, 이 단체는 92년 회원다수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 구속자들은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었는데, 제대를 앞두고 구속된 것이었다.

둘째,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제7조 3항)가 적용된 사건 가운데는 공개단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회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활동 또한 신문이나 잡지,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온 단체들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

104) 1996년 국정감사(내무위) 제출자료. 아래 1996년 통계도 동일함. 단위 : 명

화 경향에 힘입은 무분별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애청)은 1989년 창립하여 7년동안 활동해온 교회청년단체였다. 그런데 창립 7년후인 1996년 갑자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대량구속사태는 많은 경우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거나 1심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이 풀려나는 등(조직사건 구속자 213명의 86.9%인 185명이 보석,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1심 재판과정에서 풀려났다. 아래 표 참조) 무리한 법 적용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예컨대 1월 9일 발생한 농민동맹 사건의 경우, 92년 발생한 중부지역당 사건과의 관련여부를 두고 7명을 긴급구속했다. 그러나 5명이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구속기소된 2명도 재판결과 반국가단체 가입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또한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사건은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면서 3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변경을 하기도 했다. 1995년 11월 이 단체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재건을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 “사노맹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고 공소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노맹 동조 혐의마저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1996년 4월 선고직전 “사노맹이 아닌 북한에 동조한 이적단체”라고 공소내용을 또다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광주지법은 이들을 모두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했던 것이다.

<표> 1996년 발생한 조직사건 일람

사 건 명	구속 일	구속 인원	구 속 처	적용법조	재판결과	비 고
농민동맹	1.11	2명	강원경찰청 보안분실	국보법 3조 등	전원 1심집유	연행7명중 5명 무혐의/ 재판 결과 3조는 무 죄판결
전국민족민주 학생연합	1.31	5명	기무사	국보법 7조 3항	4명 1심 집유 1명 2심 집유	모두 현역군인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1.12/ 1.20/ 6.15	11명	전남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보법 7조 3항	1명 기소유예 8명 보석 2명구속적부심	95.11.21. 12명 긴급구속,법원 영장기각/11.23 영장 재청구 6 명 구속.
사노맹 재건 사건	2.4	9명	서울청 장안동 보안분실	국보법 3조	1명 보석 8명 1심 집유	10명 연행, 1명 무혐의 풀려남
노나매기	2.25	9명	경찰청 홍제동 보안분실	국보법 7조 3항	전원 1심집유	

사 건 명	구속 일	구속 인원	구 속 처	적용법조	재판결과	비 고
사회주의 학생연합	3.28 11.3	15명	서울청(장안동) 기무사	국보법 7조 3항	3명 기소유예 ¹⁰ 1명 1심집유 1명 2심집유 1명 실형	현역군인 4명 구속
애국동맹	4.23	3명	경기경찰청 보안분실	국보법 3조 등	전원 1심집유	92년 발생한 사건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4.24/ 5.28	12명	서울청(옥인동) 부산청보안분 실	국보법 7조 3항	1명 보석 11명 1심집유	
전국학생 정치연합	5.8	13명	경찰청 홍제동 보안분실	국보법 7조 3항	1명 기소유예 ¹² 1명 1심집유	현역군인 4명 구속
나라사랑 청년회	5.29	3명	경찰청 남영동 보안분실	국보법 7조 5항	2명 보석 1명 1심집유	공개적인 청년단 체
해방노동자 통일전선	5.30	4명	대구경찰청 보안분실	국보법 7조 3항	전원 1심집유	해체된 단체
사노맹(대구)	5.30	5명	경북경찰청 보안3대(포항)	국보법 3조	전원 1심집유	90년 발생한 사 건
범민련	6.7	2명	1명 안기부/1명 서울청(옥인동)	국보법 7, 8조	2명 실형	
전주대단기 학생동맹	6.21	8명	전북경찰청, 기무사	국보법 7조3항	8명 1심 집유	군인 3명 구속
남총련 민족해방군	6.26	6명	기무사	국보법 7조3항	6명 2심 집유	모두 현역군인
21C진보 학생연합	7.6 7.15	14명	경찰청 홍제동 보안분실, 기무사	국보법 7조3항	5명 기소유예 3명 구속취소 6명 1심 집유	7.6. 15명 연행, 4 명 무혐의 / 군인3명,구속취소
애국크리스 찬청년연합	7.11	구속 8명	서울청 장안동 보안분실	국보법 7조3항	3명 보석 3명 1심 집유 2명2심집유	13명 연행, 5명 불구속
서울대 애국청년	9.5, 9.10	9명	서울청 옥인동 보안분실	국보법 7조3항	8명 1심 집유 1명 2심 집유	군인 2명 구속
노진추	10.7	27명	경찰청(홍제동 보안분실), 경남경찰청, 기무사	국보법 7조3항	3명 보석 13명 1심집유 3명 2심집유 8명 실형	군인 1명 구속

사 건 명	구속 일	구속 인원	구 속 처	적용법조	재판결과	비 고
노래패 천리마	10.1	7명	경기경찰청	국보법 7조3항	7명 1심 집유	이적단체 구성 가입 무죄판결
공산주의자 연합	10.30	7명	경찰청 홍제동 보안분실	국보법 7조3항	5명 1심집유 2명 실형	9명 연행, 2명 무혐의석방
남총련 민족해방군	11.12	30명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 기무사	국보법 7조3항	2명 기소유 예25명 1심집 유 1명 2심집유 2명 보석	32명 연행, 2명 무혐의석방. 군인 5명 구속
전국학생 정치연합	11.15	총 4명	성동경찰서	국보법 7조3항	4명 1심집유	

라. 김영삼 정권 말기(1997년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개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에는 677명을 기록,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구속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황장엽 망명 직후의 ‘좌익사범 합수부’ 확대개편과 1997년 5월 한총련 출범식 사건 이후 대검공안부의 한총련 와해방침 및 이적단체 규정에 따른 한총련 대의원 대량 구속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공안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표>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월별 분류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8년1월	2월
국보법	10	20	30	61	32	144	107	59	83	74	30	27	12	11

가) 황장엽 망명 직후의 ‘좌익사범 합수부’ 확대개편 이후 구속자 증가

1997년은 가장 많은 구속자를 기록한 해였다.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는 북한의 황장엽 망명이후, 4월 24일 한총련 좌익사범 합수부를 좌익사범 합수부로 확대개편 하는 등 정부당국이 밝힌 ‘재야, 노동계 등 사회 각분야에 침투한 좌익조직 수사 방침¹⁰⁵⁾과 무관하지 않

105) 4월 24일,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희 검사장)는 황장엽씨 망명을 계기로 고정간첩을 포함, 각계에 침투한 좌익세력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기존의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황씨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내 좌익세

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총련 출범식 사건 이후 대검공안부의 한총련 와해방침

공안당국이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이석씨 치사사건을 계기로 한총련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와해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등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6월 한달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44명에 이른다.

이는 94년 박흥 전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파동'과 관련하여 94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0~60명이 구속됐던 것, 부여무장간첩 사건(이른바 김동식 사건)이 발생한 95년 11월의 61명 구속과 96년 10월 한달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86명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그 이전의 구속치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급격히 증가했다. 김영삼 정권에서의 최대 구속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당국의 방침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월 10일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안기부, 경찰, 교육부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제5기 한총련 소속 총학생회별로 오는 7월말까지 자진탈퇴를 종용하고 계속 남고자 하는 대학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친북이적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 지도부 구성원들을 전원 이적단체 가입·구성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6월 21일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총련 핵심지도부 1백 40명을 오는 7월 말까지 공개수배를 통해 모두 검거하기로 하면서 △검거대상자별로 '개인별 수사전담반' 편성 △수사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 지원 △검거 경찰관에 대한 특전부여 확대 △제보자 현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7월 30일 안기부·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6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오늘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736명을 8월 1일부터 공개소환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한총련 중앙조직원 가운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학생 69명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공안사건들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울산 부부간첩" 사건 및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사건에 이어 검찰은 11월 25일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법학)가 집필한 초등학교 교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26일 성균관대 앞 논장서점 이재필씨 등 대학가 서점 주인 2명을 이적표현물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광주대 박지동(언론대학원장) 교수에 대해서도 강의교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공안 사

력의 신원이 밝혀질 경우 즉각 수사에 나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관계자들도 참여시켜 북한 침투공작 연계 혐의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고정간첩을 색출하고 재야,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좌익조직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2)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가) 국가보안법 7조 사건, 전체의 98.4% 기록

1997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7명이고, 이 가운데 7조에 의한 구속자는 666명으로 전체의 98.4%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무부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바, 법무부가 97년 국감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인 아래 표에서 보듯 1월부터 6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209명 가운데 90.4%인 189명이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구속되어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서도 인권침해의 논란이 가장 큰 7조에 의한 자의적 적용 양상이 두드러졌다.

<표> 국가보안법 사범 구속현황¹⁰⁶⁾

간첩(4명)		찬양고무				회합통신 (15명)		좌익출판물 유인물사범 (56명)		편의제공 (4명)		탈출잠입 (1명)	
		이적단체 (146명)		이적동조 (0)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1	3	138	8			14	1	51	5	4		1	

이는 국가보안법 7조 수사에 대한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¹⁰⁷⁾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인지수사를 강화하고 매분기 1회, 좌익출판물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이적표현물 분석, 수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대검 산하에 ‘민주이념 연구소’가 설치됨으로써, 이적표현물에 대한 단속이 더욱 집중되었다. 민주이념연구소는 97년 1월 10일, “이적표현물에 대한 분석업무를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이적표현물 사범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설치”¹⁰⁸⁾ 하였다.

이로써 1997년 들어 사회과학서적상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하였다.(표 참조)

또한 폐업한 출판사 직원들을 수년전 발행한 책자들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죄로 구속기소하였다. 1997년 10월 9일 정우창(전 이웃출판사 사장)씨 등 3명은 <사회주의 서정시 강좌>(92년 발행), <조국통일론>(93년), <통일만들기>(94년), <벗이여 어서 오게나

106) 법무부, <97년 1월부터 6월 국가보안법 구속현황>, 1997년 국감 법사위 제출자료

107) 94년 1월 25일, 법무부 업무보고시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108) 법무부, 97년 국감 법사위 제출자료

>(94년) 등 4권이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이웃출판사는 94년 이후 재정상의 이유로 책 출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문을 닫았으며, 문제의 책들은 출판된지 3-5년이나 지나 이미 절판된 책들이었다.

<표> 1997년 구속된 사회과학 서점 대표

서점명	구속자	구속일	구속사유	결과
그날이오면(서울대)	유정희	97.4.15.	<녹슬은해방구> <국가와혁명> 등 이적표현물 반포, IS그룹기관지 판매	구속취소
풀무질(성균관대)	은중복	97.4.15.	<일보전진 이보후퇴> 등 이적표현물 판매 및 IS그룹기관지 판매	구속취소
장백(고려대)	김용운	97.4.15.	IS그룹, 혁명적사회주의그룹 기관지 판매 혐의	1심 징유
오늘의책(연세대)	김봉환	97.10.29.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 40여종 판매	보석
서강인(서강대)	신영균	97.10.29.		보석
장백(고려대)	김용운	97.10.29.		구속취소
논장(성균관대)	이재필	97.10.29.		보석

이외에도 단순 이적표현물로 인한 구속자가 증가했는데, <미래통신> 사건¹⁰⁹⁾, <레트헌트>를 상영해 구속된 인권운동가 서준식 사건¹¹⁰⁾이 대표적이다.

이 두 사건은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실태를 보여주었다.

나)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사건 다수 발생

1997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77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가입(7조 3항)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15명에 이르러 국가보안법 전체 구속자의 46.7%를

109) 서울경찰청(옥인동 분실)은 12월 28일, 백성기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사유는 미래정보센타(준)에서 발간한 <미래통신>의 글들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6.5. 선고 97고합405, 98고합85(병합)판결

110)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97년 11월 5일,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를 구속했다. 서씨가 ‘이적표현물’인 제주도 4·3항쟁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소지하였고, 자택에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참된 시작>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이다.

차지한다.

1997년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구속된 사건의 특징은 첫째, 단기동맹 사건(94년), 빛나는 전망(94년) 등 현재 활동중인 조직이 아닌 3~4년전 이미 해체된 조직을 뒤늦게 문제삼은 사건으로, 대부분의 구속자들은 졸업을 해 취직한 회사원이거나 활동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었다.

둘째, 노동정치연대, 노진추, 북부노동자회, 참여노련 등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신문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활동을 공개하던 단체의 회원들이 이적단체 혐의를 받아 대량구속된 경우로 대부분 수사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까지 붙잡아 가져나 혐의를 터무니 없이 부풀리기도 하고 잠을 안재우고 구타에 의한 자백강요 등 구시대의 반민주적인 수사관행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셋째, 이 시기에도 부산동아대, 단국대 천안, 연세대 원주, 전북대 등 자주대오 사건이 발생하여 대량 구속사태를 빚었다. 특히 부산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은 이적단체 조항 외에도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하였다. 자주대오 활동을 한 학생 가운데 제일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국가기밀 누설 등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학생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이례적인 이 사건은 그러나 재판결과 간첩죄에 대해 무죄 판결¹¹¹⁾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남용 현상을 증명하였다.

또한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적단체 부분에서 무죄판결¹¹²⁾을 내리기도 하였다.

넷째, 1997년 발생한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1심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구속자 248명 가운데 220명이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기소유예를 비롯하여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는 전체의 8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높은 집행유예율은 법 적용에서 있어서 무리한

111) 1999년 1월 27일, 대법원은 동아대 졸업생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간첩 등)로 구속한 이른바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간첩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1997년 9월 당시 안기부와 기무사, 경찰 등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학원가에 활동가 조직을 꾸민 '동아대 자주대오'를 적발했다"며 배아무씨 등 이 학교 졸업생과 휴학생, 군복무자 등 1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무더기 구속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배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일본유학 중 간첩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으나,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으며 범행의 단서도 수사기록상 자백뿐이지만 자백내용도 객관적 상황과 중요부분에서 합치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따라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의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12)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1998년 2월 26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용실태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 1997년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일람

사건명	구속일	구속자수	구속처	적용법 조	재판결과	비고
빛나는 전망	3월 5일	3명	부산경찰청	7조3항	전원 1심집유	95년 3월 해체
전국학생연 대	2월 25일	7명 (현역군인 3명 포함)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기무부대	7조 3항	6명 1심집유 1명 2심집유	92년 결성된 공 개적인 학생운 동 조직
사회민주주의 청년연합	3월 18일4월 10일	20명 (14명/6명)	경찰청(홍제동)	7조 3항	1명 보석 15명 1심집유 2명 2심집유 2명 실형	공개적인 청년단체
단기학생 동맹	3월 24일	4명(모두 군인)	기무부대	7조 3항	1심 전원 집행유예	
전국학생 정치연합	4월 4일 6월 20일	12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7조 3항	2명 구속적부심 10명 1심집유	92년 결성
21세기프로 메테우스	4월 7일 6월 30일	연행7명, 구속6명	강원경찰청 보안수사대	7조 3항	3명 보석 3명 1심집유	94년 해체된 전학련 회원
노동자 진보정당건 설추진위원 회	4월 11일 5월29일 6월 16일	12명	부산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7조 3항	2명 보석 10명 1심집유	조직재건 혐의를 두었으나 95년 구속자 대책위 모임
노동정치 연대	4월15일 6월 2일	8명	경찰청홍제동분 실, 인천경찰청	7조 3항	7명 1심집유 1명 실형	93년 결성
서울대 학생연대	4월 24일 8월 25일	14명(현역군 인 2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기무부대	7조 3항	전원 1심 집행유예	공개적인 학생운동 조직
북부 노동자회	5월 9일 6월 18월	11명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7조 3항	1명 기소유예 8명 1심집유 2명 실형	
서울대 애국청년선 봉대	6월 9일 7월	연행8명, 구속7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7조 3항	전원 1심 집행유예	

사건명	구속일	구속자수	구속처	적용법조	재판결과	비고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6월 12일	24명 (현역군인 9명)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기무사	7조 3항	3명 기소유예 1명 보석 19명 1심집유 1명 2심집유	95년 결성된 공개적인 학생운동 조직.
부산지역 학생연대	6월 14일	10명	경남경찰청 대공분실	7조 3항	1명 보석 9명 1심 집유	공개적인 학생운동 조직
한국노동 청년연대	6월 20일	9명	서울경찰청 옥인동 분실	7조 3항	전원 1심 집유	공개적인 청년단체
전북대 자주혁신 대오	6월 27일	18명 (군인 8명)	전북경찰청 대공분실, 기무사	7조 3항	1명 구속취소 7명 보석 4명 1심집유 4명 2심집유 1명 실형	1심 재판결과 이적단체에 대해서 무죄판결,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죄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	6월 30일	11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7조 3항	1명 기소유예 8명 1심집유 2명 2심집유	구로지역에서 노동상담하는공개단 체
성균관대 학생연대	7월 1일	5명		7조3항	1명 기소유예 4명 1심집유	노동자교실등 공개적인 활동전개
인천교대 '통일을여는 사람들'	7월 24일	15명 (군인2명)	경찰청 홍제동	7조 3항	13명 1심집유 2명 실형	96년 해체
부산동아대 자주대오	9월11일	13명(현역 군인 2명)	부산경찰청, 안기부	7조 3항 (5명은 4조적용)	2명 기소유예 6명 1심집유 5명 2심 집유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했으나 간첩죄 무죄판결
단국대 천안 자주대오사건	9월30일	11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7조3항	9명 1심집유 2명 2심 집유	
연세대 원주 자주대오	10월4일	10명 (군인3명)	강원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사	7조 3항	6명 보석 3명 1심 집유 1명 2심집유	모두 졸업생. 94년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음.
코문주의 그룹(전국학 생연대)	10월20 일	7명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7조 3항	6명 1심 집유 1명 2심 집유	전국학생연대
부천민주 노동청년회	10월17 일	11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7조 3항	10명 1심 집유 1명 2심중 보석	93년결성 대중단체, 정치학교 등 공개활동

마.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이미 살펴본 대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구속자가 급증하였으며,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다른 시기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속자 급증의 원인은 공안당국의 공안분위기 조성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증한 것은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과거 안기부가 주도했던 ‘공안’부분을 검찰(대검 공안부)이 적극적으로 떠맡게 되는데, 대검 공안부는 1996년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 1997년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등 사회적인 많은 이슈(학원, 노동 등)들을 ‘공안’이라는 영역으로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민주화운동 영역까지도 공안의 잣대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국가보안법은 공안논리의 합목적적인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매우 높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치는,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더할 수 없이 비대한 공안수사기관과 공안경찰이 자신의 존재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전에 비해 더욱 높아진 집행유예율과 무죄 선고율이 이를 입증한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권에서는 정부당국이 96년 연세대 사건과 97년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한총련 와해” 방침을 내세우면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대량구속이 이어졌다.

또한 김영삼 정권에서도 7조 위반 사건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조직사건의 대량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발생한 조직사건의 특징은 첫째,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인신구속을 자행했다는 점, 둘째,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적단체를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 이적표현물 사건에서 보듯이 양심, 표현, 학문 예술의 자유가 여전히 침해당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6.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가. 김대중 정권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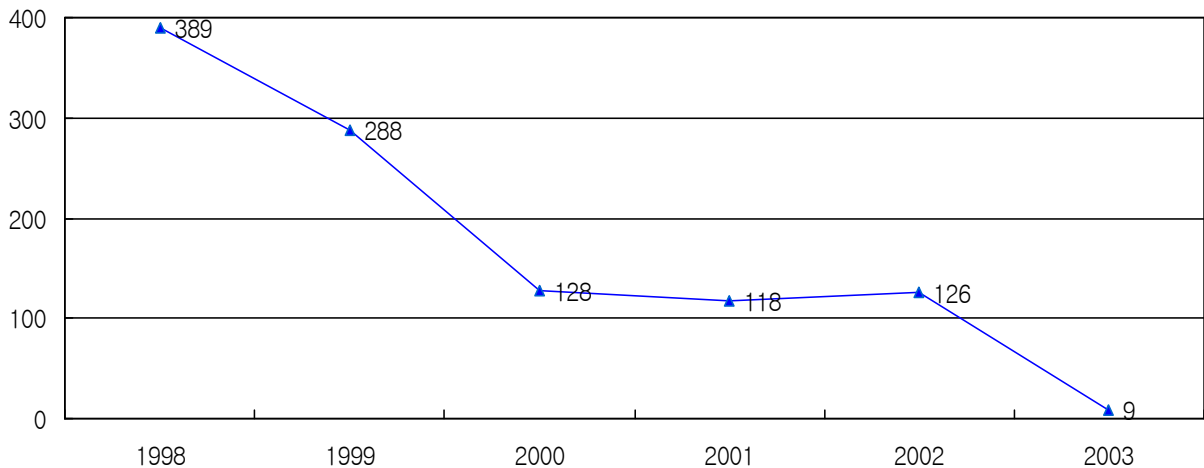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0년만에 정치권의 의제로 상정되었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고, 공안당국이 '신공안'을 주창하며 국가보안법을 엄격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김대중 정권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김대중 정부 5년(1998.2.25.~2003.2.24.)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는 민가협 조사결과 1,05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출범 첫 해인 1998년도 구속자는 389명으로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권 첫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높은 구속수치는 1999년 접어들면서 288명으로 줄어들었고, 2000년도에는 그 전해의 절반이하인 128명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김대중 정권 후반기까지 동일한 양상으로 이어졌다.

<표>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연도별 현황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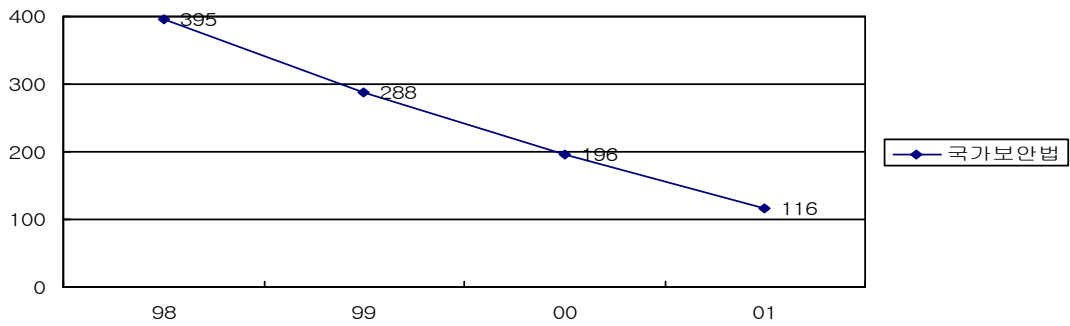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구속인원	389	288	128	118	126	9	1,058



한편 아래 그래프¹¹⁴⁾는 사법연감에서 발췌한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인원>을 연도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정권출범 초기 비교적 높았던 기소인원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위 조사결과에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113) 민가협 조사통계. 1998년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이고, 2003년은 2월 24일까지의 통계이다.

11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8년~2001년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를 적용 법조항별로 살펴보면 7조(찬양·고무) 위반 구속자가 971명으로 전체의 91.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67명이 구속되었고,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54명), 자주대오 사건(49명) 등 이적단체 사건으로 구속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 김대중 정권 5년동안 적용조항별 분류¹¹⁵⁾

년도별 적용조항별	1998 (2.25~)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합계
7조(고무·찬양)	354명	263	117	106	122	9	971
3조(반국가단체)	15명	0	5	1	1		22
6조(잠입탈출)	5명	10	1	7			23
8조(회합통신)	9명	10	3	4	2		28
4조(국가기밀)	2명	5	1	.			8
9조(편의제공)	4명		1		1		6
10조(불고지죄)	.						
계	389	288	128	118	126	9명	1,058

또한 반국가단체(3조) 사건은 1998년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재판과정에서 이적단체(7조)로 판결난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5명이 구속되었으며, 민혁명 사건(3조)으로 1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6조(잠입탈출) 사건은 대부분 방북 관련 사건인데, 방북을 했거나 방북을 교사한 혐의가 적용된 한총련 학생들 이외에도 IMF 이후 생계형 방북 사건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6조 위반 방북사건은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1년 8.15 정부당국의 승인아래 방북했던 인사들 가운데 범민련 간부들이 탈출죄의 적용을 받아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과도한 법적용으로 비난이 일었다. 그외 범민련(범청학련) 해

115) 민가협 조사통계. 이는 구속될 당시 적용된 법조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2개 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 주요 기소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93년도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2월 25일부터 통계이다. 98년 통계는 98년 2월 24일까지 통계이다.

외본부와 팩스를 주고 받았다거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났다는 이유로 회합통신죄가 적용되어 구속된 이는 28명으로 집계되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 발생한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요사건별 현황

신분	한총련 사건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자주대오 사건	영남위원회 사건	민혁명 사건	잠입탈출 사건	국가기밀 사건
구속인원	567명	54명	49명	15명	12명	23명	8명

이 표를 보면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로 처벌받은 학생이 전체 구속자의 53.6%인 567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으로 49명이 구속되었으며, 국제사회주의자들(IS)사건으로 54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외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5명, 민혁명 사건으로 12명이 구속되었으며, 잠입·탈출(국가보안법 6조) 사건으로 23명, 국가기밀(국가보안법 4조) 사건으로 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 비율¹¹⁶⁾

구분 \ 연도	1998 (2.25~12.31.)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합계
국가보안법 위반 총 구속인원(명)	389	288	128	118	126	9	1,058
한총련 대의원 구속인원(명)	170	157	71	72	90	7	567
비율(%)	43.7%	54.5%	55.5%	61%	71.4%	77.8%	53.6%

한편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6) 민가협 조사·통계. 한편 법무부 자료(01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에 따르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기소된 시점인 1997년 이후부터 2001년 8월까지 한총련 관련 구속자는 모두 594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아래 <표> **한총련 관련 구속 및 기소현황** 참조. 아래 표에서 연도 기준일자는 '당해연도 사법처리 착수시점부터 다음해 사법처리 착수시점 전까지'이다.

연도 \ 구분	구속인원	기소	불기소	수사중
1997	191	191		
1998	127	121	6	
1999	162	149	13	
2000	101	95	6	
2001(1월~8월)	13	4		9
계	594	560	25	9

출범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43.7%의 구속비율을 보이던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1999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55.5%를, 2001년도에 접어들어서는 61%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줄어들었음에도, 한총련은 매해 새롭게 출범하는 기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적단체로 기소하여 대의원들을 다수 사법처리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 구속자가 매우 높은 구속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분류해보면, 학생이 839명으로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79.3%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인 구속자는 대부분 자주대오 사건 관련인데, 군입대전의 학생운동 경력이 문제가 되어 입대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에 해당한다.

<표> 신분별 현황

연 도 직업	1998년 (2.25~)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24)	합 계
학생	295	227	104	91	114	8	839
노동자	18	1	2	10			31
재야	63	46	16	15	9	1	150
군인	13	14	6	2	3		38
계	389	288	128	118	126	9	1,058

나. 김대중 정부 초기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개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어도 남용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4월 6일 진형구 대검公安부장은 안기부와 경찰 등公安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가진 후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춘 ‘신공안’ 개념을 설명하면서 특히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천 법무장관은 98년 9월 10일,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언젠가는 모호한 내용이 정리돼야겠지만 IMF 상황에서 경제회복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금 이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과도적 조치로 현행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 적용함으로써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검公安부장, 법무장관 등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의 1년간 국가보안법 운용실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즉,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2월 25일부터 1999년 2월 24일까지 1년동안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인원이 416명으로 집계(민가협 조사) 되는 등 대량구속이 이뤄진 점, 인신구속 사건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7조 사건인 점, 1심 석방율이 90%를 넘는 점 등 국가보안법이 심각하게 남용 되었다. 이는 지난 시기 정권 출범 1년간(80년, 88년, 93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인원수와 비교할 때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5공정권이 출범한 80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1980년 12월 30일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폐지)으로 기소한 인원 159명에 비해 2.6배가 증가했고, 6공정권이 출범한 88년 한 해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104명에 비해 3.95배 증가했으며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93년 한해와 비교해볼 때 무려 3배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표> 국가보안법 · 반공법 기소인원¹¹⁷⁾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국보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04	312	414	357	342	136	403	226	413	633
반공법	136	65	13	-	3	2	5	-	-	-	-	-	-	-	-	-	-	

한편 이 시기 국가보안법 구속자에게 적용된 법 조항별로 살펴보면 7조에 의한 구속자가 전체 구속자 416명의 91.6%인 38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구속자 비율¹¹⁸⁾

각 조	7조 (고무찬양)	3조 (반국가단체)	4조 (국가기밀)	6조 (잠입탈출)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
인원	381명	15명	2명	4명	10명	4명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381명에 대한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이적행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문제는 무엇보다 7조의 무리한 적용과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었다. 이 시기 7조 사건은 대체적으로 1997년부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한 학생 구속자, 그 외 각종 조직사건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대량구속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3조 사건은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인데, 이 사건은 검찰이 반국가단체로 기소하고, 1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로 판결났으나, 2심에서 반국가단체 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11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0~1995. 반공법은 80년 12월 30일 폐지되었다. 이후의 기소인원은 구반공법이 적용된 경우이다.

118) 민가협 통계. 두개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 주요 기소내용에 따라 하나의 조항만 적용했다.

이적단체로 판결난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 ‘반국가단체’로 기소된 사건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이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의 무리한 공소를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 되었다.

6조가 적용되어 처벌된 사건은 문규현 신부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문규현 신부가 정부의 승인조건을 어기고, 금수산기념관을 방문 김일성을 참배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가) 7조의 무리한 적용으로 인신구속 남발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1년동안 국가보안법 7조 3항을 적용한 사건 중 기소, 판결난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이 가운데는 지난 정권에서 이미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경우(북부노동자회, 범민련, 국제사회주의자들, 학생연대 등)와 그 회원들을 뒤늦게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기소한 경우가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이적단체(안민청, 진보민청, 민애청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에서 모두 기소내용대로 이적단체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의 죄로 기소된 조직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회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활동 또한 공개적으로 해온 안양민주화청년운동연합(88년 창립), 북부노동자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89년 창립) 등 단체에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과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수년전 해체된 단체의 회원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위 각 사건을 종합해볼 때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동이 아닌,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에 그친다거나(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진보민청),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진보민청, 북부노동자회) 단체로서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거나(북부노동자회), 이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 단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국가단체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항소심 재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나고, 구속자 가운데 일부는 이적단체 가입죄 마저도 무죄판결난 사건이 일어났다. 1998년 7월 22일, 부산·울산 지역 활동가 14명이 구속된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이 그것인데, 이 사건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최초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주목되었으나, 재판과정에서 장기간 감청 등의 증거능력 여부와 조작의혹,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일었고, 결국 이적단체로 판결남으로써公安 수사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 제기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한편 위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사건의 경우 체포된 106명의 18.9%인 20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풀려났다. 특히 7조사건에서 1심 재판이 끝난 96명 가운데 85.4%에 해당하는 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따라서 1심 실행율은 14.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판결과 통계치수를 살펴볼 때 국가보안법 7조의 무리한

<표7>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 사건 일람

사건명	구속일	체포 인원	구속 인원	조사기관	적용 법조	재판결과	비고
국제사회주의자들(IS)	98.5.7	26명	26명	경찰청 남영동 홍제동 분실	국보 7조	21명1심집유 5명 실형	1992년 발생한 사건, 집회에서 신문 판매한 혐의
북부 노동자회	98.5.13	7명	7명	서울경찰청 장안동분실	국보 7조	1심 전원집유	공개적인 노동단체. 97년 5월 첫 사건발생 이후 <u>사실상 활동중단된 상태.</u>
부산인제대 자주대오	98.5.29	13명	10명	경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부대	국보 7조	9명1심집유 1명2심집유	
안양민주화 운동청년 연합	98.6.2	12명	9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국보 7조	8명1심집유 1명2심집유	88년 창립되어 야학, 법률상담, 무의탁노인돕기 등 공개적인 지역활동 전개.
전국 학생연대	98.6.9	10명	7명	서울경찰청 장안동/경찰청 남영동/기무부대	국보 7조	1심 전원집유	공개적인 학생운동조직. 2, 3년전의 활동을 뒤늦게 문제삼아 구속.
진보민중 청년단체 연합	98.6.24	6명	6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국보 7조	4명 1심집유 2명 2심집유	92년 창립이후 수차례 강령을 개정했으나, 93년 당시의 강령을 문제삼아 이적단체로 구속기소.
영남위원회	98.7.25	17명	15명	부산경찰청	국보 3조	1심 전원실형	반국가단체를 이적단체로 예비적기소, <u>다수 이적단체 가입 죄무죄판결</u>
울산대 혁신대오	98.7.25	5명	5명	경남지방경찰청	국보 7조	1심전원실형	총학생등 간부
범민련	98.8	9명	6명	서울경찰청 옥인동분실	국보 7조	1심 전원집유	2명 구속적부심, 2명 보석 석방
민족통일 애국청년회	98.11.3	12명	3명	경찰청 홍제동분실	국보 7조	1심 전원집유	89년 창립. 공개적인 청년단체. 12명 연행, 9명 무혐의로 풀려남.
민족사랑 청년노동자 회	98.12.3	9명	7명	인천경찰청 보안분실	국보 7조	재판중	95년 창립한 공개단체.

법적용으로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적표현물’ 사건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2곳의 출판사 대표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컴퓨터 통신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통신인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이 문제삼은 출판물 가운데는 수년전 발행하여 시내 유명서적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라든지, 레닌의 저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¹¹⁹⁾, 컴퓨터 통신에 전공수업 교재를 발췌하여 올려둔 자료를 문제삼았는데¹²⁰⁾, 이는 애매모호한 국가보안법 조항을公安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억지 구속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가 1998년 국가보안법 7조 사건에 대한 ‘통보’결정을 통해 이 사건들(박태훈, 김근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¹²¹⁾을 내리기도 한 시점에서, 여전히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적용 여전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문제는 7조의 무리한 적용 외에도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 법적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체포인원 및 구속인원의 비교 즉 영장기각율과 1심 실행율을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먼저 민가협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역의 수사기구들을 분석해보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1명을 체포해 20명을 구속했고,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36명을 체포, 27명을 구속했으며 장안동 대공분실은 36명

119) 가령 대동출판사에서 1988년 출판한 「한국사회 성격논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적표현물로 기소하였는데, 출판사 대표 이상관씨가 이 책을 1996년 재인쇄를 해서 판매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죄를 적용하였다. 또한 같은 출판사의 「끝나지 않은 여정」은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증언반에서 1996년 엮은 책이었으며, 「북한 여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는 1997년 3월 발간되어 많은 언론에서 화제의 책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풀무질 출판사에서 발행한 「일보 전진 이보후퇴」는 레닌의 고전으로 각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수년전에 발간된 책을, 더구나 영업행위로서 책을 출판 판매한 출판사 대표들만을 구속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120) 한양대 하영준씨는 사학과 전공수업 교재 「Race and Class」의 일부를 요약하여 하이텔 동호회 ‘인터넷서날’에 게시하였는데, 이것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가 되었다. 재판에서 하씨의 담당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적목적이 아님을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121)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제64차 회기(1998년 10월 6일~11월 6일)중인 10월 20일(박태훈 사건)과 같은 해 11월 3일(김근태 사건) 연속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3항, 5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자유권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보안법>,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사람생각, 1999. 135쪽~154쪽 참조

을 연행,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했다. 또한 구로수사대에서도 6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 영장기각률이 0%에 가깝게 나타났던 과거의 통계에 비해 최근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안경찰들이 구체적인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인신 구속수사 관행에 따라 체포영장을 남발, 혐의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체포부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1심 실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면 위의 수사기구들에서 구속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1심 재판결과 집행유예율이 평균 8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들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벌여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표> 경찰청, 서울경찰청 각 분실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¹²²⁾

인원 / 분실	경찰청 남영동	경찰청 홍제동	서울경찰청 장안동	서울경찰청 옥인동	서울경찰청 구로동
체포인원	21명	36명	37명	9명	6명
구속인원	20명	27명	33명	6명	6명
1심재판결과 집행유예인원	20/16명 (80%)	26/22명 (84.6%)	27/22명 (81.5%)	6/6명 (100%)	6/6명 (100%)

한편 이러한 현상은 정권교체후 공무원 인원 감축 및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 등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염려한 공안수사 기구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이 무리한 실적 올리기식으로, 각 대공분실끼리 경쟁때문에 결국 자기 생존의 논리에 따라 무작위적인 인신구속을 일삼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개관

1999년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이후 10년만에 다시 정치권의 의제로 떠오른 시기라 할 수 있다. 먼저 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민가협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오찬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 당정에 개정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2건의 한국 국가보안법 7조 사건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의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특히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개폐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국가보안법 개정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색깔시비를 벌이며 반대하고 나섰고 자민련 역시 시기상조론, 신중론으로 개정작업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122) 민가협 통계

그러나 199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 2차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¹²³⁾.

이런 과정에서 결국 정부여당인 국민회의는 11월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2조 반국가단체 정의 중 '정부참칭' 부분 삭제, △10조 불고지죄 폐지, △7조 찬양고무죄 가운데 3항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 △7조3항의 내용은 요건을 강화해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고 선전·선동행위에 나설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2조와 7조의 일부조항을 고치는데 머무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법안조차 제출하지 못한채 15대 국회에서 무산되고 말았다.(2000년 1월)

1999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국가보안법이 주요 인권개혁과제의 하나로 논의되던 그 시점,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정치권에서도 완전삭제나 부분삭제나 논의되던 순간에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99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88명이다. 이 수치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숫자에 비해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속 실태를 분석해 볼 때,公安수사기관의 무리한 체포 연행, 우려먹기식 수사, 공정하지 못한 재판 과정과 사법부의 태도 등 인권침해는 지난 정권과 커다란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아래 <표>는 서울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전담해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소속 대공분실의 1999년 한해 체포 및 구속자 현황이다.

123) 유엔인권이사회는 1999년 11월 5일, 한국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보고서(1991년1월~1995년12월)에 대한 심의결과(UN DOC CCPR/C/79/Add.114 1 November 1999)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phase out)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규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특히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7조가 자유권규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거나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에 이른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어 규약에서 인정하는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urgently amend)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변·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 <UN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 제2차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2000. 187~220쪽 참조

<표> 경찰청, 서울경찰청 소속 대공분실 구속자 현황¹²⁴⁾

	남영동	홍제동	구로동	옥인동	장안동
연행 인원	3	25명	8명	9명	27명
구속 인원	3	18명	8명	5명	10명

이 조사에 따르면, 경찰청 홍제동 분실은 25명을 연행해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으며, 남영동 분실은 3명 연행하여 3명을 구속했으며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은 연행한 27명 가운데 1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경찰청 옥인동 분실은 9명을 연행, 5명을 구속했으며 구로수사대도 8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안동 분실의 경우 37%의 구속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처럼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신병확보 후 자백에 의해 혐의를 입증하려는 잘못된 인신체포관행은 지난해 이어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처럼 마구잡이 체포, 증거없는 인신체포 등 구시대적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무리한 인신구속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들을 적용된 법 조항별로 살펴보면, 7조가 적용된 이는 263명으로 국가보안법 전체 구속자 288명의 91.3%에 이른다. 이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총련 대의원 숫자가 157명이며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¹²⁵⁾으로 인해 대량구속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총련 불탈퇴 혐의로 구속된 157명은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 288명의 54.5%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999년 국가보안법 구속자 적용조항별 분류¹²⁶⁾

조항	7조 (찬양·고무)	4조 (국가기밀)	6조 (잠입·탈출)	8조 (회합·통신)	합계
인원	263명	5명	10명	10명	288명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 박태훈 사건¹²⁷⁾에 이어 1999년 2월 김근태 국가

124) 민가협 조사, 집계

125) 1999년 들어 과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5명, 동서대 자주대오 사건 5명, 반미구국한양 사건 16명, 광운대 자주대오 사건 4명 등 잇달아 자주대오 사건이 발생했다.

126) 두 개 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 주요 기소 내용에 따라 하나의 조항만 적용했다.

127) 박태훈 씨는 1989년 국가보안법 7조 1항 및 3항 위반으로 구속되어 동년 12월 22일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93년 5월 11일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93년 12월 24일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유죄판결 내용은 박씨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유학중 ‘이적단체’인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박씨는 94년 8월, 이 사건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보했다.

보안법 위반 사건¹²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사회는 김근태 사건에 대한 결정문¹²⁹⁾에서 “한국정부는 김 씨가 행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해 생겼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며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국가보안법의 처벌조항을 세심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음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1999년에 발생한 7조 사건의 대부분은, 문제로 삼은 표현이나 행위의 어떠한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또한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 납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이적성’을 추정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자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수사기관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계속된 것이다.

가) 수사기관의 자의적 인신체포 관행 여전

1999년에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획사 직원 11명을 연행했다가, 아무런 혐의점이 없자 반성문을 강요한 후 풀어준 사건이 발생하였고, 한총련 간부를 구속하면서 “인터넷 간첩체포”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이 없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8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인신체포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1999년은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체포가 말썽을 빚기도 했다. 즉, 수배자로 오인하여 시민을 불법연행, 감금한 사건¹³⁰⁾이라든지, 수배중인 학생을 붙잡기 위해 버스를 통째로 경찰서로 연행한 사건¹³¹⁾ 등이 그것이다.

① 물증없이 11명 연행, 반성문 강요 후 모두 풀어줘

4월 1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소속 수사관 30여명은 서울시 성수동에 소재한 <홍>기획(대학교지 등 편집)에 들이닥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회사 직원 9명을 연행했다. 수사관들은 이들을 연행하면

128) 김근태씨는 89년 전민련 출범식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배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9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93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

129) Human Rights Committee, Communication No 574/1994, CCPR/C/64/D/574/1994

130) 1999년 6월 26일 경찰청 홍제동 보안수사대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박관조, 김태훈 씨를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였다. 이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마구잡이로 경찰차에 실었으며, 잘못 체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등 한시간이 넘도록 불법구금을 했다.

131) 1999년 4월 3일, 광운대생 8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경찰에 의해 노원경찰서 안까지 연행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경찰이 수배자를 붙잡기 위해 버스 운전사를 위협하여 경찰서 안으로 버스를 몰고 간 것이었다.

서 체포영장 등 어떠한 체포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건물에 자리한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명마저 연행한 수사관들은 연구원들이 기획사 직원이 아니라며 불법체포에 항의했으나 장안동 분실까지 끌고 가 조사실로 데려간 후 체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수사관들은 이들에게 “앞으로 이적표현물이 될만한 것을 제작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강요하였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자 모두 석방했다.

② “인터넷 간첩” 과장, 허위보도와 무리한 수사

1999년 한총련 조통위 정책실장인 이창호(동아대 졸)는 5월 21일 서울 경찰청 장안동 분실에 의해 구속되었다. 장안동 분실은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간첩체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주요일간지¹³²⁾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했다. 경찰이 이씨의 ‘간첩’ 활동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이씨가 게임방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 일본에 있는 범청학련 해외본부 사무국장 과 파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간첩’ 혐의는 과장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이창호는 회합·통신(8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③ 출판사 대표 같은 책의 출판으로 두 번 구속

책갈피 출판사 대표인 홍교선은 같은 책을 재차 출판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98년에 이어 1999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98년 책갈피 출판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이던 홍교선이 1998년 11월 25일 제작·판매한 <마르크스 혁명적 사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 정성진 역) 등 11종의 서적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홍씨는 위의 책들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을 받고 1999년 1월 26일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방 후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확정(99년 4월 28일)되었다. 그런데 1999년 6월 9일, 경찰청 남영동 분실은 홍교선을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첫 번째 구속되었다 풀려난 1999년 2월경부터 다시 위의 책들을 판매, 취득, 소지한 혐의라는 것이었다.

나) 이적단체 사건 다수 발생

199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7조 3항을 적용한 사건은 한총련 불탈퇴 사건이 대다수를

132) 1999.5.28.자 <동아일보>는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E메일 이용 복집속 ‘인터넷 간첩’ 구속-범청학련 간부 군동향 등 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27일 인터넷을 이용해 북한측과 1백60차례에 걸쳐 E메일을 주고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 통신)로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정책실장 이우신(27·가명)을 구속하고 송수신 문건 3백 1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5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산하 대구경북총련 사무실에서 E메일을 이용해 북한의 함경남도 학생위원회로 북한의 남침시 한국과 미국의 단계별 대응전략인 ‘5027작전계획’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고하는 등 지난 해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군사동향과 한총련의 대정부 투쟁일정 및 내용을 북측에 전달해 준 혐의다.”

이루는 가운데 각 대학의 ‘자주대오’ 조직사건(5곳의 대학)과 공개적인 청년단체(2곳) 등에 무리하게 ‘이적단체’를 적용한 사건이다.

‘자주대오’ 사건은 1999년에 과기대, 동서대, 한양대, 광운대, 원광대 등 5곳에서 발생했다. 다섯 사건 모두 검찰의 주요 기소내용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각 대학 내의 활동가 조직으로서 민족해방계 학생회를 배후조정 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던 서울진보청년회와 안양사랑청년회도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회원들이 다수 구속되었으며, 이들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았다.

① 자주대오 사건 발생, 대량구속

1999년에 이른바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60명이 체포되어 34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주대오’ 사건은 1994년부터 발생했는데 이들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속자 대부분이 학생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학생회 대중간부라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적단체라 인정될만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³⁾. 특히 자주대오 사건 관련해서는 대거 체포된 점이 특징인데, 구속자들 가운데는 활동을 중단하고 군 입대하거나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대거 체포하면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들을 무작위적으로 체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와 기무사가 1999년 3월 동서대학교 자주대오 사건 관련으로 14명을 체포했는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2명이 풀려난 일, 10명이 자주대오 사건 관련으로 연행되었으나 5명은 불구속으로, 5명은 기소유예로 풀려난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재판결과는 대부분 1심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90%가 넘는 석방율을 나타냄으로써 경·검의 자의적 법적용임을 반증하였다.

② 공개단체에 이적단체 적용

1999년 한해동안에는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청년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회원들을 구속한 사건이 2건 발생했다. 서울진보청년회(이하 서진청) 사건은 서진청이 가입했던 상급단체인 ‘진보민중청년연합(이하 진보민청)’이 해산했고, 그 산하 단체의 회원들이 차례로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구속¹³⁴⁾되고 처벌받은 상태 후 서진청 역시 99년 1월 공식적

133) 구속자들은 학생운동 내에서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자주대오’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NL(민족해방계열) 계통의 학생회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경향성에 대한 분류방법이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34) 특히 서진청의 상급단체인 진보민청의 소속 청년단체들은 1994년부터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94년 3월, 97년 4월 30여명 구속), 우리청년회(94년 12월, 6명 구속), 부천민주노동청년회(97년 10월, 11명 구속), 관악노동청년회(98년 2월, 8명 구속),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98년 6월, 9명 구속), 진보민중청년연합(98년 6월, 6명 구속) 등 이적단체 결성, 가입 등의 혐의로 단체 회원이 전원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는 경찰이 위 단체들의 활동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필요에

으로 해산한 상태였으나 과거 활동을 뒤늦게 문제삼은 사건이다. 또한 안양사랑청년회 사건은 결성 후 8년 동안 공개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를 돌연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회원들을 구속한 사건이다.

다) 재판결과 1심 집행유예율 높아졌으나 대부분 유죄판결

한편 아래 <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결과 현황에 대한 법원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집행유예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74.2%를 보이던 집행유예율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도에는 79.8%로 높아졌으며, 특히 1999년도에는 80%를 웃도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결과 현황¹³⁵⁾

년도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1~6)
구속인원		465	641	465	312	61
재 판	실형 (실형율)	95 (21.7%)	88 (14.3%)	40 (9%)	10 (3.5%)	
	집행유예 (비율)	325 (74.2%)	494 (80.2%)	356 (79.8%)	231 (80.5%)	30 (53.6%)
	선고유예 (비율)	14 (3.2%)	16 (2.6%)	6 (1.3%)	1 (0.3%)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1심 재판과정에서 풀려난 이는 2000년 3월 현재 191명으로 1심 집행유예 석방률이 7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도 16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기소유예로 풀려난 이도 10명이고,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볼 수 없었던 ‘보석’ 석방조치도 20명에 이른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5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무죄판결도 4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실형율, 이례적인 무죄판결 사건에도 불구하고, 1999년의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에서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다. 특히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례가 대다수”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깨고 유죄로 판결하고 말았다¹³⁶⁾.

따라 시차를 두고 이들을 구속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의 실적올리기식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135) 법원 자료, 2000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

136) 1999년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난 판결은 “제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판결, “독자적으로 이적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적단체로 인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98조선 녹두대사건(전상규사건), “지시·명령을 주고받는 종속관계가 아닌

또한 아래 <표>는 1999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가보안법 주요 사건의 1심 재판결과이다.

<표> 1999년 발생한 주요 조직사건의 1심 재판결과¹³⁷⁾

사건명	일자	구속인원	수사기관	적용법조	재판결과	비고
I·S 사건		9명	경찰청(홍제동·남영동)	7조 5항	7명 집행유예	노동자 집회 등지에서 신문을 판매한 혐의
서울진보청년회	4.15.	5명	경찰청(홍제동)	7조 3항	전원 집행유예	94년 결성된 청년운동단체. 99년 1월 공식적으로 해산했는데 뒤늦게 구속.
민혁명 사건	8.19.	3명	국정원	3,4,5조	전원 실형	김영환씨 등 공소보류, 형평성 문제 제기됨
안양사랑청년회	9.30.	6명 (9명 체포)	경찰청(홍제동)	7조 3항	5명 집행유예	92년 창립된 공개적인 청년단체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7.2.	10명 체포 5명 구속	전북경찰청 기무부대	7조 3항	5명 기소유예	연행자 대부분이 95년경 총학생회장, 단대 학생회장 출신. 10명 체포하여 5명 무혐의석방.
과기대 자주대오 사건	3.16.	5명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7조 3항	1심 3명 집유 2심 2명 실형	자주대오 결성의 유일한 증거로 경찰이 제출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동서대 자주대오 사건	3.21.	14명 체포 2명 구속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	7조3항	1심 전원 집행유예	총장의 공금횡령사건에 대응하고자 만든 동아리로 공개적인 모임을 가졌다.
반미구국한양 사건	6.7.	23명 체포 16명 구속 (군8명)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기무부대	7조3항	1심 8명 집유 2심 7명 집유 군인 1명 실형	구속자 대부분이 학생회 간부로서 증거는 진술밖에 없다. 구속된 8명이 보석조치로 모두 풀려나온 이례적인 사건
광운대 자주대오	11.4.	8명 체포 6명 구속 (군2명)	경찰청(홍제동) 기무부대	7조3항	전원 1심 집유	강령, 규약 없다. 경찰이 제시한 조직원은 학생회 간부들이고 활동도 학생회 활동을 문제삼았다.

대등한 지위로 상호연락을 통해 입북했으므로 특수잠입·탈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울지법의 사건(황선 방북사건)이다. 또한 반국가단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 2심에서 검찰의 ‘이적단체’로의 공소변경, 대법원에서 결국 이적단체 부분에서도 무죄판결이 난 ‘영남위원회’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가운데 대전지법, 서울지법의 판결은 각 고등법원에 의해 유죄판결로 뒤집어 지고 말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가협·민변·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과 구속실태 보고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2000.

라. 6·15남북공동선언 시기(2000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1) 개관

2000년 한해는 1999년에 이어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치권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논쟁을 벌였고,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개폐에 대한 의지 및 기대가 높았던 해였다. 그 중심에는 2000.6.15. 남북 두 정상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이에 조성된 화해협력과 교류 분위기가 있었다.

제15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제출되지 못한채 결국 무산되고 말았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2000년 4.13총선 때까지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6.15정상회담의 개최와 함께 다시 개폐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찬성이 높았고, 정부는 남북정상의 6.14 합의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개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탄력적인 법적용을 하겠다¹³⁸⁾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은 8월 22일 보안법 연내 개정 추진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주당 송석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등 여야 의원 21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에 제출¹³⁹⁾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월 19일 이회창 총재가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남북한 이중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존재해야 한다”며 폐지불가 입장을 밝혔다¹⁴⁰⁾. 한편 민주당은 회기내 개정, 개정 포기등의 입장을

138) 2000년6월15일 인터넷한겨레 <정부, “국가보안법 정비”> 정부는 남북 정상의 6·14합의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를 적극 추진하고 개폐 전까지는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남북교류문제는 지금까지 통치행위 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폭넓게 해석해 적용해 왔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여러 개의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상천 전 장관시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3~4가지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개폐가 북한쪽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개폐 전까지는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임희운 서울지검장은 이날 “법은 그대로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은 동기·배경을 잘 따져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139) 송석찬 의원은 8월 16일,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법, 계엄법, 군사법원법 등 23개 관련 법률조항의 개정 및 삭제에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마련, 의원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에 착수하였으며, 11월 27일 여야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국보폐지 국민연대>는 각계대표 201명의 서명과 여야 국회의원 17명의 청원소개로 10월25일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을 했다.

140) 이회창 총재는 8월 30일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와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총재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실체에 대한 방어조치가 있어야 하는 반면 (남북한)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2중구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국가보안

변복하다가 12월 6일 인권향상특위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¹⁴¹⁾을 심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개정방향에 대해 결국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결국 정기국회 회기내 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조차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2000년 한해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재차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결국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 및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¹⁴²⁾.

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도 접어들어서는 구속자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99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288명을 기록한 데 반해 2000년도에 들어서는 128명으로 절반 이하의 수준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양상은 김대중 정부 말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7조에 의한 구속남용 사태는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조건에서 그 동안 개폐에 동의하지 않던 일부 야당의원들조차 “상황 변화로 보안법 손질이 불가피해졌다”¹⁴³⁾고 하거나 “고무찬양 등 시류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발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의견이 높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7조의 손질 문제가 중심으로 거론되었으나, 그러한 논란 속에서도 7조에 의한 구속비율은 90%를 상회하였다.

법은 전자를 위한 하나의 법적 체계”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는 이런 2중구조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하였다. 또한 12월 8일 열린 한나라당 당3역회의에서 이회창 총재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도 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하기도 하였다.

141)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정대철 최고위원)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즉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부분삭제, △제10조 불고지죄 조항 폐지, △7조(찬양·고무)의 경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 △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2항, 19조(구속기간의 연장), 21조(상금) 2·3항을 삭제한다는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했다. 특히 7조3항의 경우, 아예 폐지하는 방안, 현행처럼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방안, 이적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뒤 구체적인 선전·선동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이었다.

142) 자세한 내용은 백승헌,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001. 참조하기

143) 인터넷한국일보(<http://www.hankooki.com>), 2000.07.04 <자민련 “개정은 몰라도 폐지 절대안 돼”> ‘원조 보수’를 내건 자민련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후 이완구, 김학원 의원 등 일부 소장파는 “국보법 등 관련법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도 국보법 폐지에는 손을 내젓고 있다. 정우택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국보법 7조, 10조 등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폐지는 부적절하다”며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표> 2000년 국가보안법 구속사건 적용조항별 분류¹⁴⁴⁾

조 항	7조 (고무·찬양)	3조 (반국가단체)	6조 (잠입·탈출)	8조 (회합·통신)	4조 (국가기밀)	9조 (편의제공)	총
인 원	117명	5명	1명	3명	1명	1명	128명

2000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가 적용되어 구속된 이는 117명으로,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 128명의 91.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7조 사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한총련 불탈퇴 대의원 76명, 기타 한총련 관련 12명 등 한총련 사건으로 모두 88명이 대량구속 되었고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서 발행한 신문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14명 구속, 한신대 등 이른바 자주대오 관련 사건으로 8명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한신대 활동가 조직 사건의 경우, 군복무 만료 기간을 몇일 남겨두지 않은 병장 등 4명의 군인이 기무사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군입대 전의 학생회 활동 등이 문제가 되어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받았다. 그외 1999년 발생한 광운대 자주대오, 한양대 반미구국한양 사건 등 자주대오 사건 관련으로 4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7조 5항(이적표현물)이 적용된 이도 7명으로 집계되었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서 <청년학생 반미구국 결사대 6인 미대사관 점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하다가, ‘유인물 불법 부착’ 혐의라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경찰에 체포된 학생이 체포당시 가방속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송범근 사건)되거나, 각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에서 취득한 영상 자료등을 동영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수배해제 농성’을 벌이던 수배자들을 대신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농성 관련 글을 올려주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한 대학생(황선동 사건)이 구속되었는데, 국가보안법의 과잉적용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그외 이 시기에는 회합통신 사건도 발생했는데, 1999년 범민족대회 당시, 북측 범민족대회 준비위원회에 팩스를 이용해 <99범민족대회 공동결정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 대변인이 구속되었다. 또한 베이징에서 열린 ‘미군의 학살만행 전민특위’ 실무회담에 참석하여 북측 전민특위 대표와 회합한 전민특위 간부 이덕준씨가 구속되었는데, 이씨는 구속당시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었으나,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가 적용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이씨가 북측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 구속 때와는 다르게 ‘이적성’ 여부를 추단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편의적인 남용사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책자 출판하는 과정에서 연락한 것이 문제가 되어 출판인(살림터 송영현 사건)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가 적용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아래 <표>는 2000년 월별 구속자 현황인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남북정상회담이

144) 민가협 조사, 집계. 이는 구속될 당시 적용된 법조항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조항이 적용된 경우, 주요 기소 내용에 따라 하나의 조항만 적용하였다.

열린 6월 13일을 기준으로 볼 때, 6·13 이전까지 47명이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6월 13일 이후 81명으로 증가한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크나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체포, 구속의 악습이 되풀이 되었던 것이다.

<표> 국가보안법 구속자 월별 분류¹⁴⁵⁾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보법	2	6	12	7	13	16	16	17	7	10	13	9

나) 남북정상회담과 검찰

남북정상이 만난 6월 13일부터 서울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에 북한 인공기가 내걸린 것¹⁴⁶⁾에 대해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엄중 대처’ 입장¹⁴⁷⁾을 내세움으로써, 남북한의 화해분위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박윤희)는 6월 14일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윤희 부장은 이날 “학생들이 인공기를 게양한 의도가 중요하다”며 “이 일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¹⁴⁸⁾고 말했다. 비록 ‘환영! 정상회담’이라는 구호와 함께 태극기·한반도기를 함께 게양했지만,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맞춰 치밀하게 인공기 게양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불온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니 ‘이적성’이 있다¹⁴⁹⁾”는 것이다.

145) 민가협 조사·집계

146) 남북정상이 처음 만난 6월 13일부터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내에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나란히 내걸렸다. 걸개그림 밑부분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걸개그림에는 게양 주체가 써여 있지 않았는데도 검찰과 경찰은 한총련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라고 ‘단정’하고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147) 인공기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은 “인공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표상으로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목적, 경위, 형태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이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 논리를 엿볼 수 있다.(아시아게임관련하여 북한 인공기 게양과 서포터들의 인공기 사용 등에 대한 헌법 및 헌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검찰의 답변)

148) 인터넷한겨레hani.co.kr, ‘인공기게양 검·경 접근방법 대조’, 2000년6월14일

149) 특히 서울지검 공안2부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정상회담기간을 이용해 인공기를 내걸 경우 국민들의 의식이 무너지고 수사당국도 함부로 못하리라는 점을 악용한 만큼 엄중대처할 수밖에 없다”(hankooki.com, “대학 인공기 어쩌나”, 2000.6.14.)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16. 임희윤 서울지검장은 “법은 그대로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은 동기·배경을 잘 따져서 탄력적으로 유연

실제 6.15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 대학 정문에 한반도기, 태극기와 함께 인공기를 그려 부착했다는 이유로 한 대학생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동조죄로 구속기소(2002)된 사건¹⁵⁰⁾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김정일”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경찰에 소환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조사 받은 사건¹⁵¹⁾도 있었다.

다)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판결경향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된 현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1999년 3.83%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도에는 4.17%로 증가했으며, 이를 1997년 기각율 1.04%와 비교하면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0년도의 통계는 8월 31일까지의 것이지만, 4건의 기각 사례는 모두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나타났다.

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은 “인공기만이 아니고 태극기·한반도기를 함께 내걸어 찬양·고무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며 “설사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남북화해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0. 6. 16.

150) 홍익대생 이윤진씨는 2002년 11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6.13.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홍익대 조국통일위원회 명의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제작, 부착하기로 결정하고, 하얀 대형천(가로 2.5m, 세로 약4미터)에 페인트로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리고 ‘철책을 넘어 이념 사상을 넘어 민족대단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홍익대학교 정문 옆에 부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다.

151)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나이트클럽의 홍보를 위해 지난 10일째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인공기가 그려진 간이 현수막을 부착해 대구 시내 중심가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일’이란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돌리던 전모(30.나이트클럽종업원.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씨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다. 경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김정일’이라는 가명과 인공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보고 손님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킹위원장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훈방조치 되었으나 당시 전씨는 며칠을 경찰서를 오가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대구/연합뉴스 2000년 7월 19일 참조

<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현황¹⁵²⁾

구분	구속영장 청구건수	구속영장 발부건수	판사기각 건 수	기각율 (%)
1997년	670	663	7	1.04
1998년	472	454	18	3.81
1999년	313	301	12	3.83
2000년 (~8.31.)	96	92	4	4.17

이러한 법원의 영장기각 사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분위기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석율에 있어서도 14.2%(민가협 통계)로 나타나 1999년 0.4%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다. 예컨대 의정부 지원 김동윤 판사는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철구씨에 대해 보석을 결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보안법 개폐논의가 일 수도 있어서 판결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보석을 결정한 대부분의 재판부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¹⁵³⁾.

아래 <표>는 법원이 제출한 보석현황 자료인데, 1997년 이후 보석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던 2000년도의 보석율은 1999년의 11.9%보다 3%이상 증가했으며, 2001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보석조치를 좀체로 볼 수 없었던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는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기소자 보석현황¹⁵⁴⁾

연도 \ 구분	구속기소	보석	보석율
1997	611	53	8.7%
1998	441	45	10.2
1999	286	34	11.9
2000	118	18	15.3
2001(~8말)	74	12	16.2

152) 경찰청 자료, 2000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 제출. 2000년은 8월 31일까지의 통계이다.

153) 이외에도 6월 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부장판사)는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정(출판사 근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석결정을 내리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 한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154) 2001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자료

또한 2000년도에는 <한국사회의 이해>, <미래통신> 등 이적표현물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고,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 나왔다¹⁵⁵⁾.

7월 24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은 <한국사회의 이해>를 제작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2명에게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7년여만의 일이었다.

또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미래통신>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씨의 3명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지법(형사합의22부 최병덕 부장판사)는 5월 26일, 북한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밀입북하여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죄로 기소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에게 잠입탈출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문신부의 방북이 당국의 적법한 방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북한 것으로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 행위였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외에도 검찰의 ‘이적성 추정원칙’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는데, 2001년 1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서경희 판사는 2000년 10월 10일 공무방해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기성(경일대 96학번)씨의 1심 판결에서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표현물을 취득하고, 집회에서 대량살포되는 유인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부받은 행위만으로 국가보안법상 7조 5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일보한 조치는 일부였고, 대부분의 재판부는 상황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현행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¹⁵⁶⁾.

155) 무죄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가협,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참조

156) 대법원은 6.15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여전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536 판결

마. 김대중 정부 말기(2001~2002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하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6월, 국가보안법 개정 6인소위에서 개정안¹⁵⁷⁾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정치권 논의조차 거의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로 접어드는 2001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118명이었으며, 2002년에는 126명으로, 집권 초기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된 학생들이 6, 70%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2002년에는 부산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이 행사를 전후해 ‘인공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대검 공안부는 2002년 9월 17일, 부산아시안게임(9.29~10.14) 개최와 관련, 통일부 국정원 경찰청 교육부 등 6개 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인공기 사용 문제 등에 관한 공안대책을 확정했다. “한총련 등 이적단체는 물론, 대회 조직위가 구성한 ‘북한서포터스’와 일반 시민등이 경기장 안팎에서 인공기를 게양 및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차단하고 법에 따라 엄단할 방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인공기 게양은 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에서만 허용하고 그 외 장소와 온라인상에서 내국인이 인공기를 사용하거나 게양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었다¹⁵⁸⁾.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스포츠 행사를 국가보안법 잣대로 제약하고, 유독 인공기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논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안적인 논리로 일관하였으며 이런 방침에 따라 인공기를 판매하려던 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¹⁵⁹⁾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57) 제10조 불고지죄 삭제, 2조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부참칭’ 부분삭제, 18조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 19조 피의자 구속기간연장, 21조 2항 수사기관 포상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7조 가운데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고 선전선동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목적행위를 분명히 하고 형량도 7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2000년에 상정된 개정시안과 유사한데, 7조3항에 대해 좀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158) 한편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검찰이 인터넷상 인공기 사용은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www.busanasiangames.org) 참가국 소개란에 인공기 자리를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최근 북한 축구팀 서포터스(응원단)가 제작한 카페 배경화면으로 인공기가 사용된 사례를 발견, 관리자에게 이를 자진 삭제토록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2002.9.27.)

159) 부산 동래경찰서는 9월 29일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에서 인공기와 티셔츠를 판매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56)씨를 붙잡아 보안수사기관에 넘겼다. 경찰에 따

1) 2001년 구속실태

2001년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모두 11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을 조항별로 분류하면(아래 <표> 참조), 7조 적용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89.8%인 106명으로 나타났다.

<표> 2001년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자 조항별 현황

조 항	7조5항 (이적표현물)	7조3항 (이적단체)	7조1항 (고무·찬양)	3조 (반국가단체)	6조 (잠입·탈출)	8조 (회합·통신)	합계
인 원	13명	92명	1명	1명	7명	4명	118명

7조 적용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한총련 대의원 72명이 대량구속되었고, 서울 민주노동자회 9명,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되어 이적단체(7조3항) 구속자가 92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1998년 결성된 공개적인 모임인 ‘서울민주노동자회’에 대해 경찰은 이 단체가 북한사회주의 헌법에 나온 민주집중제라는 조직원리를 채택하였고,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민족해방민주주의의 혁명노선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이적단체로 기소하였다. 또한 전, 현직 학생회 간부들에게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하여 구속한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발생했던 자주대오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구체적인 조직의 형태나 활동내용이 없었음에도 이적단체로 구속, 기소, 판결이 났다.

또한 이적표현물 조항을 적용¹⁶⁰⁾하여 구속된 이들은 모두 13명으로 나타났는데 국제사회주의자들에서 발행한 기관지를 판매하거나 소지 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조항이 적용, 구속된 이가 11명, 그외 한총련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취득,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구속되었다.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후,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고무찬양 혐의)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경·검찰은 이 혐의 외에 수년전 작성한 ‘학회논문’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를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01년 12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어, 그

르면 김씨는 서울에서 응원용 소형 인공기 500여개를 제작해 부산으로 내려와 이날 오후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서 티셔츠와 인공기를 5천원에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공기의 경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복측 응원단을 제외한 국내외 응원단 및 서포터스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판매도 금지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2002.9.29.)

160) 한편 국가보안법상의 다른 조항(3조, 7조3항 등)으로 구속된 이들 대부분에게도 7조5항은 ‘약방의 감초’격으로 적용되었으며 집시법 등 다른 법 적용을 받은 이들도 이 조항을 대부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혐의로 체포하였다가 물증이 없자,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별건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2001년 한해동안 발생한 118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은 모두 이적표현물 조항을 적용 받았다.

동안 교도소 반입이 금지되었던 책 1,220종의 ‘열독불허도서 목록’을 폐기하였다¹⁶¹⁾. 이 목록 가운데는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중 교양서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아리랑>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한 사건이 발생¹⁶²⁾하여 적용의 모순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외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던 김규철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상 탈출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정부의 방북승인을 얻어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점, 설령 방북조건을 어겼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회합통신 사건으로 모두 4명이 구속되었는데, 한국 법정에 증언(살림터 출판사 송영현 사건 재판)하러 입국했다가 「김정일의 통일전략」의 저자 김명철과 회합·통신, 북한 방문(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미시민권자 송학삼씨는 기소과정에서 회합·통신죄가 제외됨으로써 국정원의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또한 월간 <자주민보> 기자 3명 역시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되었는데, 잡지의 필자 섭외를 위해 재일 한통련 곽동익씨 등과 전화통화, 전자메일을 교환하였다는 이유였다.

그외에도 월간 <자주민보>의 필자인 김명철에게 ‘한글’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스켓 1장을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자주민보> 기자 1인이 편의제공죄로 구속기소되었다.

2) 2002년 구속실태

2002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은 모두 126명이다. 이들을 적용된 법 조항별로 분류하면, 7조 적용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의 96.8%인 122명으로 나타났다.

<표> 2002년 구속된 국가보안법 위반자 적용법조항별 분류

조 항	7조5항 (이적표현물)	7조3항 (이적단체)	7조1항 (찬양고무동조)	3조 (반국가단체)	9조 (편의제공)	8조 (회합·통신)	합계
인 원	20명	100명	2명	1명	1명	2명	126명

161) 법무부는 그동안 법원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1,220종의 책 목록을 폐기하라는 공문을 2001년 12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시달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적표현물로 낙인찍혀 교도소 내 반입이 금지되었던 책 가운데는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중국 공산당에 참여했던 조선인 혁명가의 삶을 다룬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교양 대중서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제는 이데올로기 서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범죄나 풍기문란을 조장하는 책은 소장의 재량으로 계속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적표현물 1,220종 교도소 반입금지 폐지” 인터넷한겨레, 2002.11.27일치 기사

162) 2002년 군내에서의 발언내용이 문제(이적동조죄)가 되어 구속된 이영규씨는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적용되었다. 군검찰은 이씨를 이적동조혐의로 구속하면서, 이씨가 입대전 머물던 고향집을 압수수색 하였고, <아리랑>, <변증법적 유물론>, <임노동과 자본>, <참된시작> 등 보관중이던 책들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한 것이었다.

여전히 7조 적용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총련 대의원 90명이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대량구속된 데서 비롯되었다. 그외 범청학련 사건,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사건, 자주대오 사건 관련 등으로 10명이 이적단체 가입으로 7조 3항이 적용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한청’은 전국 51개 청년단체의 협의체 조직으로 2001년 2월 창립되었는데, 경찰은 한청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규정, 3명의 간부를 구속기소했다.

이적표현물 판매·소지(7조5항) 혐의로 구속된 이는 20명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이적표현물 반포 등의 혐의로 네티즌 5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성공회대생 전지윤씨는 조선일보를 비판한 글, 법정 최후진술문 등을 인터넷상의 카페에 올려두었는데, 이 글들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으며, 네티즌 이재윤, 이성우씨는 인터넷의 한 카페에 다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또한 인터넷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주체사상 토론을 벌인 네티즌 김강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표현 등이 문제되어 구속된 네티즌이 늘어난 한 해였다.

그외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이들 가운데 5명이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가 적용되었다. 또한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된 이들 가운데 구체적 물증 등 혐의점이 없자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3명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사회주의자들 관련 유인물을 판매(소지)한 혐의로 3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이미 한총련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검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7조3항이 재적용되지 않고, 이적표현물 조항이 적용된 사례도 있으며, 한총련(지역총련)에서 활동을 했으나 대의원이 아닌 경우, 예외없이 이적표현물 조항이 적용되어 구속기소되었다.

특히 찬양고무동조(7조1항)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문제가 되어 이적동조죄로 구속기소된 군인(이영규 사건)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앞에 인공기와 태극기를 그림으로 그려 걸었던 학생(이윤진 사건)이 이적동조죄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그외 민혁명 사건으로 반국가단체 가입(3조)이 적용되었거나, 편의제공 사건으로 각 1명이 구속되었다. 또한 범청학련 해외본부와 교신했다는 이유로 회합·통신죄(제8조)가 적용되어 구속된 이도 2명으로 나타났다.

3) 이 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상의 특징

김대중 정권 말기에 해당하는 2001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의 실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구나 7조 위반 사건을 살펴볼 때,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안정을 해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성”에 의한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에 따른 법적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7조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10기 한총련에 대해서 검찰이 이적단체로 기소한 점이다. 10기 한총련은 출범한 이후 벌인 활동은 주로 강령 및 규약의 전면적 개정과 한총련 합법화 운동 등으로

이적시비를 일으킬만한 특이한 활동이 없었음에도, 검찰은 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활동이 이적성을 띠는지에 대해 명확히 증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이적단체로 기소¹⁶³⁾했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¹⁶⁴⁾한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식 수사의 관행이 지속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는 2001년 발생한 진보의련 사건이다. 2001년 10월 8일,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홍제동 대공분실)는 의사, 대학교수 등 진보의련 회원 8명을 체포했다¹⁶⁵⁾. 그러나 이들 8명 가운데 4명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영장자체가 청구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에 대해 법원(한주한 영장전담 판사)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 모두 풀려났다. 검찰은 11월 2일,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역시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당했다¹⁶⁶⁾.

경찰의 무리한 체포는 ‘공소시효’ 문제를 살펴볼 때, 결국 실적올리기식 수사였다는 점을

163) 검찰은 제10기 한총련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제9기 한총련의 강령, 규약등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 조정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제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나타난 강령 규약(개정안 포함) 총노선 등에 있어서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민중민주주의 구현을 주장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적극수용하는 등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여전히 추종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는 이적단체라고 기소했다. 광주지검 검사 유재영, 공소장, 광주지검 2002형 제32439, 2002.6.24

164)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제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한총련=이적단체’라는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법원은 “제10기 한총련이 그 강령규약을 온건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전술적 조치일 뿐”이라고 단언하면서, “제10기 한총련은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국가보안법 7조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것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2002고합 236, 선재성 판사, 2002.11.18)

또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제1형사부 2002노724, 박삼봉 판사, 2003.1.16), 대법원(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역시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165)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을 구성하고 가입했다”는 혐의였다. 또한 기관지 <보건의료와 전망>을 제작, 반포하여 조직원 사상교양 자료로 활용했다는 혐의도 두었다.

166) 한편 검찰은 2002년 10월 진보의련 회원 가운데 권정기, 이상이씨를 결국 기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 재판장 전봉진)은 2003년 12월 9일, 진보의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한 원심(서울지법, 2003년 6월)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적단체로 유죄판결했다. 서울고법 2003노1579판결

명확히 알 수 있다. 진보의련은 1995년 2월 결성된 단체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볼 경우, 이적단체 구성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된다. 따라서 2002년 2월이 지나면 이적단체 구성죄로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의련은 최근 1, 2년동안 활동을 거의 중단했으며 결국 2001년 6월경 단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진보의련 사건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줄어들고, 더구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와 관련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공안수사기관이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자 무리하게 인신을 체포하여 이적단체 혐의를 둔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2002년 국정원이 이적단체 가입(범청학련 남측본부)혐의로 4명을 체포구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들 가운데 3명은 범청학련 후원회원일 뿐 범청학련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혐의를 발견할 수 없자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이적단체 가입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함으로써, 국정원의 무리한 법적용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경찰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사건(반미구국한양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수배조치 되지 않았던 이를, 공익근무 시간에 체포하기도 하는 등 우려먹기식 수사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셋째, 이 시기 발생한 사건 재판결과, 1심 재판 과정에서 8~90%가 풀려¹⁶⁷⁾ 남으로써 높은 석방율을 보였다.

또한 법원은 이적표현물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자유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이장희교수 사건) 라거나, 제작동기에 이적성이 없었다(‘잠들지 않는 함성 4.3사건’ 비디오)거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레드헌트 사건)고 무죄판결한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90%에 달하는 높은 집행유예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위 <표> 재판결과 참조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강령을 변경한 제9기,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 법원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인공기’ 계양 사건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유죄판결을 내리기도¹⁶⁸⁾ 하였다. 인공기를 계양한 것은 북한동조 목적이라는 판결은 1993년 대법원 판례¹⁶⁹⁾에 따른 것으로 그때로부터 이미 10년이 지

167) 민가협 조사에 따르면,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118명의 89.8%인 106명이 1심재판과정에서 풀려났으며(보석 21명, 집행유예 84명 등), 2002년도에는 126명 가운데 91.3%에 이르는 115명이 1심 재판과정에서 풀려났다(1심 집행유예 102명, 보석 12명, 선고유예 1명)

168)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 2002도4737)는 11월 14일 교내에서 열린 ‘대동제’ 행사때 북한 인공기를 계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규관(경원대 부총학생회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비록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인공기를 계양했다 하더라도 인공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상징물인데다가 반미통일을 주장하면서 계양한 점,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할때 반국가단체인 북한활동에 동조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1년 5월, 대동제 행사에서 태극기, 한반도기와 함께 인공기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한 것이다.

났지만, 대법원은 시대적 변화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표>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¹⁷⁰⁾

사건명	인원	기소내용	재판결과	판결내용	보석
한총련대의원	90명	이적단체가입 (7조3항)	1심집유 85명 / 2심집유 4명, / 실형 1명	이적단체	3명
이적표현물 사건	15명	이적표현물 (7조5항)	집유 10명 / 실형 4명(2심집유 3명, 형확정 1명) 재판중 1명	이적표현물	3명
국제사회주의자들 유인물 사건	3명	이적표현물	집유 3명	이적표현물	2명
찬양고무동조사건	2명	찬양, 동조	집유 1명 / 실형 1명		
한청 사건	3명	이적단체	재판중	재판중	3명
자주대오 관련사건	4명	이적단체가입	집유 3명/2심집유	이 적 단 체 가입	
범청학련 사건	2명	이적단체 가 입, 회합통신	집유 1명 / 실형 1명	이 적 단 체, 회합통신	
범청학련 후원회 사건	3명	이적단체->이적 표현물,편의제공	집유 2명 / 2심집유 1명	이적표현물	1명
민혁명 사건	1명	반국가단체	실형 1명	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사건	1명	회합통신(8조)	집유 1명	회합통신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명	이적단체	향소심 선고유예	이 적 단 체 가입	
진보의련 사건	2명	이적단체	1심 집행유예	이 적 단 체 구성	불구속 기소
민족해방군 사건	1명	이적단체	2심 집유	이 적 단 체 가입	

바. 김대중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특징

이제까지 김대중 정권 5년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는 구속자, 기소율, 실형율은 다른 정권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 수치상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치의 변화를 단순비교하여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인권신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시대적인

169) “인공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상징하는 표시물이므로 북한의 노선이나 활동에 동조할 의사로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북한의 실체와 권위를 인정하여 그 존재와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적동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9.28. 93도 1730호

170) 민가협 조사

변화추세와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그런 견지에서 살펴볼 때 구속인원이 감소했다는 것만으로 국가보안법 적용실태가 개선되었다거나 완화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객관적 조건의 결정적인 변화를 감안한다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권시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나라안팎의 인권침해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자가 91.8%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 발생한 7조 사건의 대부분은, 문제로 삼은 표현이나 행위의 어떠한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또한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 납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히 ‘이적성’을 추정해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자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수사기관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계속된 것이다. 이처럼 7조 위반 비율이 점차 높아 가는 점은, 국가보안법이 외부의 적을 상대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이 아니라 ‘내부의 국민’을 상대로 ‘정권안보’를 지키는 법률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 한총련 구속자가 대량 양산되었다는 점이다. 제5기 한총련(1997)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수로 출범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의 여부는 그 구성원이 해마다 교체되므로 매 기수별로 판단되어야 한다¹⁷¹⁾.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총련은 문제시되어온 강령을 개정하고 활동방향을 대폭 변경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제9기 및 10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법원 판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한총련이 강령을 바꿨지만, 대외적 위장일 뿐 본질적으로 연방제 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9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적단체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또한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법원(광주지법, 광주고법, 대법원)은 “제10기 한총련이 그 강령규약을 온전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전술적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171) 대법원(제1부 재판장 최종영 주심 이임수 이돈희 서성), 1998.7.28. 선고, 98도 1395 판결)은 1998년 7월, 제5기 한총련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 선동 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1기부터 4기까지의 한총련과 달리 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 “한총련은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매년 전원 교체되므로 그 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기를 별도로 이적단체로 판결한다고 했다. 이는 곧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여부는 기수별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이후 각급 법원은 6기, 7기, 8기, 9기에 대해서 “제5기 한총련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다”는 이유로 천편일률적으로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말았다. 이렇듯 한총련에 대한 연이은 이적단체 판결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와 관련한 점이다. “한총련 탈퇴=불구속, 불탈퇴=구속”의 잣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후퇴시킨 처사이다. 또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한 이러한 법적용은 국가보안법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특정 주장(예컨대 북한과 같은 주장 등)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셋째, 국가보안법 사건을 전담하는公安수사기관들의 자의적 법적용, 무리한 인신체포의 폐단이 여전했다는 점이다. 2001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 가운데서 불구속 비율을 살펴보면, 수사기관들의 마구잡이 구속수사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¹⁷²⁾

년도별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6.30)
계	276	213	467	286	534	877	688	509	237	99
구속	192	113	338	243	459	663	454	302	123	66
불구속	84	100	129	43	75	214	234	207	114	33
불구속 비율	30.4%	46.9%	27.6%	15%	14%	24.4%	34%	40.6%	48.1%	33.4%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 한해동안 구속된 688명 가운데 34%인 234명이 불구속처리되었다. 또한 1999년 40.6%, 2000년 48.1%, 2001년(6.30.까지)은 33.4%로, 갈수록 불구속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97년 이후 불구속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검거한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을 불구속 처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본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인신체포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체포는 특진제도에 따른 실적올리기식 수사과 무관하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21조 ‘상금’ 조항 등은 이러한 관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제도적 장치 없이는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식 인신 체포 관행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김대중 정권은 ‘신공안’을 역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5년간의 실태를 살펴볼 때, 검찰은 적용완화도, 경찰의 무리한 인신체포에 대한 제동도 걸지 못했다. <표> 연도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기소율이 90%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찰의 ‘공안’ 기능에 대한 재검토 등 제도적 개혁없는 ‘신공안’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이 증명된 것이다.

172) 2001년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

<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입건자수 및 구속자수 등 현황¹⁷³⁾

구 분 연 도	입건자수	구 속 자				
		구속인원	기소율	불기소현황		
				계	기소유예	기타
1997	946	641	96%	25	24	1
1998	785	465	96.1%	18	17	1
1999	506	312	91.9%	25	23	2
2000	286	130	95.4%	6	5	1
2001	247	126	95.2%	6	6	0
2002(1.~8.)	151	92	98.9%	1	1	0

다섯째, 김대중 정권 시기동안 보석율, 1심 집행유예율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처벌이 매우 경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심 재판결과 실행은 한자리 비율에 머물고, 집행유예율은 8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표>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실행율 등 현황¹⁷⁴⁾

구분 연도	구속인원	기소유예 (비율)	기소인원 (기소율)	실행 (실행율)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선고유예 (선고유예율)
1996	465	18 (3.9%)	438 (94.2%)	95 (21.7%)	325 (74.2%)	14 (3.2%)
1997	641	25 (3.9%)	616 (96.1%)	88 (14.3%)	494 (80.2%)	16 (2.6%)
1998	465	17 (3.7%)	446 (95.9%)	40 (9%)	356 (79.8%)	6 (1.3%)
1999	312	23 (7.4%)	287 (92%)	10 (3.5%)	231 (80.5%)	1 (0.3%)
2000(1~6)	61		56 (91.8%)		30 (53.6%)	

이는 민간정부의 등장, 그에 따른 국민의식의 성숙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의 '처벌가치'가 격감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행위가 이제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법, 제도적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판결내용에 있어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개폐논란이 끊임없었던 김대중 정권 시절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반인권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73) 김찰청 제출자료, 2002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제출자료, 단위 : 명

174) 2000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 재판결과는 최종심기준이며 1999년 구속인원 중 2명은 공소보류에 해당함,

2장 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조사·연구 목적과 방향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라고 인정되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가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1992년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 한국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 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국가보안법의 입법과 시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 한국이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등의 국제 인권법에 규정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하는 데 실패하였다. …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일치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52차 회의에서 공식문서로 채택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의 보고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이 법의 제7조에 있는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 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 한국정부는 인권규약에 맞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를 반드시,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 - 199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 한국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자유권 규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

제정시기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던 국가보안법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재는 으뜸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이와같은 인권수준의 척도로 일컬어지기 까지는 법률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그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적 요소에서 기인한 바 크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장관, 국회의원, 대학총장,公安검사를 비롯해 노동자와 일반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변론, 신문기사, 그림, 영화, 소설, 심지어는 취중 농담까지 이 법에 의해 단죄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보안법 위반 각 사건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체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안보” 또는 “반공·반북”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부차적인 것이고, 국가(정권)가 인정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생각, 사상은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을 주입하는데 유효한 매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55년동안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적용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밝혀 보도록 하겠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민주주의 자체의 토대를 어떻게 부정하여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인 국가보안법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본 장의 집필방향은 국가보안법의 각 처벌조항에 대한 연혁과 적용양상을 살펴보고, 각 조항별 발생한 인권침해 유형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5항)과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 등은 의사표현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은 명확성이 요구됨에도¹⁾, 이 조항은 매우 광범위하고 애매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핵심권리인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와 가장 배치되는 조항이다. 역대 국가보안법 적용사를 살펴볼 때도 국가보안법 제7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를 위배해 왔으며, 그러한 자유의 전제가 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에도 배치되었다²⁾. 또한 이 7조는 북한 및 그와 연계된 자와의 관계가 없어도 처벌 가능하므로³⁾,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행위든지 손쉽게 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었고, 따라서 7조(특히 이적표현물 조항)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별칭을 얻을만큼 남용실태가 심각하다.

이로인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일 때마다 가장 표면위로 떠오른 조항이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의 핵심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왔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이 조항에 의한 인권침해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인 학문, 예술, 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적용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변정수 재판관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된다”면서 7조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명백한 현실적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리지 않고,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뚜렷한 법률이라고 주장하였다. 헌재결정 89헌가 113

2)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도 정당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이 ‘반공국가’ 방위적 형벌법으로부터 ‘독재정권’ 방위법으로 변신하는 데 법적 밑받침을 해준 조항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인 것이다. 한인섭, <국가보안법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관훈저널 2000년 여름」, 통권75호(제40권 제2호)

가. 7조 개관

1) 국가보안법 7조 연혁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가)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7조

국가보안법의 여타 조항들이 형법 등과 중복되고 있는 데 반해, 제7조는 다른 법에는 없는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조항은 원래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당시에는 없었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반공법 제4조⁴⁾5)로 부터 출발했다.

반공법은 제4조 1항에서 고무찬양 및 이적단체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반국가단

-
- 4) 반공법 제4조(찬양, 고무등)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전항의 항과 같다. ③전항의 표현물을 취득하고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그 사실을 고지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 한편 '이적단체'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1949년 개정된 (구)국가보안법(법률제85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개정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제1조)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1958년 개정된 (구)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7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제6조)으로 조직된 결사 또는 집단을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운영되는 단체"를 구성, 가입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국가보안법이 '이적단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반공법은 이외에도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⁶⁾)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국외공산계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또한 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항에서는 '이적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의결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시켜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원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 반공법의 찬양·고무 조항은 개정 국가보안법의 제7조로 재편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 개정에서의 '목적요건' 추가 개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1980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즉 헌법재판소는 (구)국가보안법 제7조1항, 5항이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운영할 경우에는, 첫째로 헌법상의 언론·출판,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자유의 전제가 되는 양심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로 법운영 당국의 자의적(恣意的)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헌법 제11조)의 침해가 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생기고, 셋째로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가 천명한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완전폐기에서 오는 법의 혼란과 공백을 막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 제한하면 "헌법합치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⁸⁾.

6) 1961년 7월 제정 반공법 제4조에는 "국외공산계열"과 관련한 이적활동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나 1963년 10월 8일 3차개정 반공법(법률 제1412호)에서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이는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6차 개정된 국가보안법(법률 제3318호)의 제7조 2항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91년 7차 개정에서 "국외공산계열과 관련된 찬양·고무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7)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89헌가113 판결

8)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변정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위헌성이 너무나 뚜렷한 법률"이라면서 "한정적으로 제한해석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며 위 한정합헌결정을 비판하였다. 또한 변 재판관은 의사표현 행위의 처벌 기준에 대해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에따라 이 조항은 1991년 5월 31일 법 제4296호로 개정 (국가보안법 제7차 개정) 되었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고, “기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이라는 기존의 구성요건이 삭제되는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⁹⁾.

그러나 현재의 한정합헌결정 이후, ‘목적요건’을 추가하여 확대해석의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고 한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제7조 남용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모호함과 따라서 자의적 법적용이 원천적으로 가능한 점 등 조항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헌성이 법개정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았던 데¹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일었고, 그 시기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첫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 때 삭제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폐지는커녕 여전히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국가보안법 7조 적용현황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가운데 제7조가 적용되어 구속기소된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체 사건의 90%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¹¹⁾ 1980~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입건자, 구속자 수치를 살펴보면 1980년부터 1987년까지 5공화국 전체 국가보안법 입건자, 구속자 1,565명 가운데 제7조(찬양·고무)가 적용된 인원은 1,495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헌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헌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9) 이처럼 목적요건을 강화한 7차 개정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서도 다시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1996. 10. 4, 95헌가2).

10) 헌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4일, 95헌가2결정에서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역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에서 조승형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는데,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가 문언해석상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구)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상의 문언 중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에 대하여서만 개정하였을 뿐,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문언을 여전히 존치시키고 있는 바, 지적한 문언 중 과반수가 넘는 문언에 대하여 입법자가 우리 재판소의 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에서도 현재는 “아직도 구법 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은 조금은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현재는 위 결정에서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일부개념도 신설된 주관적 구성요건(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과 결합하여 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89헌가 113 결정과 같이 제한해석한다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11) 내무부,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표> 1980~1987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입건자·구속자수

	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2,232	167	270	234	121	106	127	527	489
(입건/구속)	1,565	116	116	166	108	94	101	365	302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8 8		19 5	1 1	1 1			17 1	
잠입·탈출	39 29	3 2	7 4	11 6	7 6	2 2	2 2	7 7	
찬양·고무	2,072 1,495	148 110	225 151	201 153	106 96	2 2	2 2	7 7	
회합·통신	9 7	1 1			3 2	2 2	2 1	1 1	
편의제공	14 3		2	8 1			3 1		
불고지	42 8	13 1	12 1	11 4		2 1	4 1		
무 고	12 11	1 1	2 2		4 3	3 3	1 1		1 1

이러한 경향은 ‘목적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한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아래 표12)에서 보듯이 7조의 비율은 여전히 90%를 웃돌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일고, 국제사회의 7조 폐지 권고가 잇달았던 시점에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한 구속기소는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표> 1996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및 제7조 위반 입건현황

구분 \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1~8월)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465	641	465	312	93
제7조위반 입건(구속자)	395	603	387	279	84
7조 구속비율	84.9%	94.1%	83.2%	89.4%	90.3%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는 표현의 자유와 가장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조항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12) 2000년 국정감사(법제사법위) 제출자료. 1996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 등 현황과 국가보안법(제7조 및 제10조) 위반 입건·처리 현황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적용상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의 문제는 7조에서 연유한 바가 크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적용실태는 국가보안법 7조와 표현의 자유의 상관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7조의 광범위한 적용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조 ‘범죄’의 구성요건이 개정 이후에도 대단히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행위자가 사전에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등 법 적용자의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얼마든지 확대해석 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법집행 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특권인 셈이다. 예컨대 이 조항의 전제가 되는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동조하기 위해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 하기 위한”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적표현물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적용상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적표현물’ 조항이 여전히 인신구속의 남용 및 자의적 적용을 가능케 하는 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피의자 거주지에 대한 수색 도중 압수한 서적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죄를 적용, 애초 체포의 사유와 무관한 데도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 인신구속을 남용케 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¹³⁾.

또한 국가보안법상 다른 조항(3조 내지 9조 등)으로 구속된 이들 대부분에게도 ‘약방의 감초’격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이 적용되었으며 더 나아가 집시법 등 다른 법규 위반으로 구속된 이들에게도 적용되기도 했다.

또한 적용대상을 ‘문서, 도화 기타표현물’로 적시하고 있어 어떠한 표현물도 무제한으로 이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이다. 그리하여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 학술연구 결과

13)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으나 이에 대한 혐의가 없자 체포시 압수했던 유인물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조항을 적용한 사건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므로, 최근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단국대생 정인철씨는 2001년 5월 14일 ‘단국대 활동가조직’ 가입 혐의로 경찰청 홍제동 분실 수사관들에게 체포, 7조3항이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그러나 기소시에는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만이 적용되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가 2001년 애국가대회에 참석하여 “단국대 활동가조직에서 조직보위를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후,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환영함으로써 단국대 활동가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2·25 애국가대회에 참석하여 조직에 가입했다”는 점은 모두 삭제된 채 다만 “2001년 단국대 총학생회장인 단국대 활동가 조직원 이산라를 도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으로서 활동하여 오던중”이라고 기입 되어있을 뿐이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적단체 가입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되자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정씨가 학생회실 등지에서 9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결정서를 읽어보았으며 인터넷상에서 ‘2001년 범민련 특별임시의장 단회의’ 문건을 내려받아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 집에 보관해오므로써 위 문건들을 취득, 소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문건들은 경찰이 정씨를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하면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것이다. 문제가 된 위 문건들을 과연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적표현물’ 조항은 체포의 사유(이적단체 가입)와 무관한데도 피의자의 구속을 유지, 인신구속을 남용케 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유인물 뿐 아니라 출판물, 현수막,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토론내용 등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였다.

그런데 ‘이적표현물’ 등을 처벌하는 죄의 본질은 그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유형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상과 학문, 예술의 자유 그 자체에 대한 탄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적목적의 자의적으로 추단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결국 이 조항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을 처벌할 수 있기에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조항이라 할 것이다.

3)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법원의 판결경향

수사기관의 이러한 자의적 법적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경향은 여전히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는데 이르지 못한채, 오히려 법적용의 오·남용을 방치해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1990년 한정합헌결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7조 ‘이적성’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에도 대법원은 7조의 해석기준을 전혀 변경하지 않은 채 종전의 판례를 답습해온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각급 법원의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대법원(전원합의체)¹⁴⁾은 1992년 이적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따라서 이는 현재가 합헌의 전제로 제시한 “명백한 위험성”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¹⁵⁾.

또한 대법원은 이적목적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았다.

한편 1992년 위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의견¹⁶⁾이 제시한 이적성의 기준은 “국가의 안전등

14)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판결

1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기준과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 견해를 같이 하거나 비슷한 취지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곧 “법해석의 혼란”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점은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성에 관한 두가지 견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1999.9. 논문 참조

16) 소수의견은 표현물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비판하거나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야만

을 위협하는 표현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협”의 기준이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1990년 헌재의 결정 취지와 유사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적성(이적표현)”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서로 다른 해석기준은 결국 하급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¹⁷⁾.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의 주장과 “상통한다” 또는 “케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며, 이적목적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미필적 인식”에 따른 이적성 추정원칙이라는 1992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경향은 수사기관의 법적용의 오·남용을 부채질하였으며, 더 나아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하였다.

먼저,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제출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은 보고서¹⁸⁾를 통해 “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으며, 어떤 결과가 수반되며, 왜 그 같은 결과가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제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할 다른 수단을 생각하도록 매우 강하게 권고” 하였다.

또한 1998년 10월 20일과 1998년 11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의 박태훈 사건과 김근태 사건에 대한 유죄선고는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의 위반이라는 결정을 각각 내리면서 특히 사법부의 판결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유엔인권이사회는 박태훈씨의 국가보안법 7조 위반사건 관련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협성 있는 불법한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대법원 1992.3.3.1. 90도 2033 판결(대법관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의 소수의견)

17) 가령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1, 2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창복 사건(대법원 1996.12.23. 선고 95도1035 판결)과 모내기 사건(대법원 1998.3.13. 선고 95도 117판결) 이 있다.

18) 또한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동”한다거나 “적에게 이로운 자료”등의 주요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법원의 해석에 따라 공공연히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학술적 내용의 자료를 소지한 데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포함한 공공문제에 관한 사고, 믿음, 의사표현까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인용하고, 매우 일반적이거나 사소하기까지 한 발언을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불명확한 근거로 처벌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가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3/45에 의거 한국방문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 ECOSOC E/CN.4/1996/39/Add.1, 1995.11.21.

결정¹⁹⁾에서 “이사회는 당사국이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당사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으며 당사국이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제19조 3항에 따라서 통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사회는 통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당사국의 주장 어느 것도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통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통보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김근태씨 사건에서도 인권이사회²⁰⁾는 김근태씨가 북한을 위해 반국가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의 연설이나 배포된 전단이 국가의 존립과 민주적 자유질서에 분명한 위협을 제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이적행위인지, 그러한 표현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도록 청중이나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대법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는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국가보안법의 처벌조항을 세심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에 충고하였다.

결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표현행위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표현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해당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인권위가 적용하는 기준의 핵심이다²¹⁾.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 더 나아가 국제인권규약과 양립할 수 없는 반인권적 조항임에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앞서 살펴본 대로 반공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반공법은 박정희 군사쿠데타 정권이 “반공”을 빌미삼아 반독재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 및 법적 정당성 조차 가질 수 없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는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차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7조는 여전히 법 자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수사기관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 등으로 국가보안법 남용시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어왔고, 이처럼 국가보안법 7조가 빚어내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특히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 사건에 대해 거듭하

19) HumanRightsCommittee, CommunicationNo628/1995,CCPR/C/64/D/628/1995 3November1998

20) HumanRightsCommittee,CommunicationNo574/1994,CCPR/C/64/D/574/1994 20November1998

21) 장호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9년 6/7월호 (통권30호),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68~72쪽 참조

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 등을 내림으로써, 국가보안법 7조는 국제사회에서 조차 한국의 인권개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언론·출판, 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했는지를 그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1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가. 개관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문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밝혀두고 있다. 헌법에서 의미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는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받지 아니할 자유²²⁾” 또는 “진리와 진실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인식하는 자유²³⁾”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설명한다면 연구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 교수(강학, *Lehrfreiheit*)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뜻하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대학의 자치(자유)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²⁴⁾.

한편 학문의 자유도 법률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해서 헌법학자들은 학문의 자유 가운데 ‘연구의 자유는 외부와의 연계성이 비교적 희박하고 내면적인 자유이므로 절대적 자유권에 속한다 할 것이나, 반면 연구결과 발표나 강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학문의 자유의 외부적 표현은 사회적 전파성으로 인해 헌법 37조 2항²⁵⁾에 의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학문의 자유를 제한함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확립된 ‘명백·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²⁶⁾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문활동이 일단 학문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을 발표하는 것 역시 연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장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결국 학문의 자유의 핵심은 연구자체의 자유가 아닌, 연구결과발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발표의 자

22)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497~500쪽 참조

23)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94, 434쪽

24) 권영성, 앞의책, 498~499쪽 참조. 여기서 ①“연구의 자유”는 “강학의 자유와 더불어 유보없이 보장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선택,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시기, 연구장소 등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세력이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② “연구결과발표의 자유”는 “대학의 강의실 이외의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논문 또는 저서로써 발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권영성은 연구결과발표는 그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적 제한에 따른다고 보고 있다. ③강학의 자유는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하거나 강의하는 자유”를 말하며 연구의 자유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본다. ④학문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학문을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발표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자유를 말한다”.

25)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6) 권영성, 앞의 책, 501쪽

유 없는 연구의 자유나 교수의 자유란 이미 연구의 폭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으로서 진리 탐구 행위로서 정의되는 학문의 정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다²⁷⁾.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영역에 미쳐 그 자유를 침해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설사 학문탐구 목적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사법적 제재를 동반하는 공권력이 개입한 경우가 허다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매우 좁게 해석함으로써, 수사기관들이 학문연구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던 현상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질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²⁸⁾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연구의 자유는 학문연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지는 경우, 예컨대 구반공법 제4조 제2항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반국가단체 또는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기타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학문연구활동을 병자하여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운반 또는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이미 학문의 연구라고 볼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²⁹⁾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학문을 하거나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을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추정하거나 이적목적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오로지 그가 전공하는 학문에만 관련이 있다거나 그 분야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추정받을 수 있다”³⁰⁾고 판결함으로써 여전히 학문의 자

27) 김종서,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8호, 관악사, 1994.11.15.

28) 대법원 1986.6.24. 선고86도403판결; 또한 이와 유사한 판결로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784 판결

29) 대법원 1982.5.25 선고, 82도716판결. 기타 1986.9.23, 86도149판결; 1986.9.9. 선고, 86도1187판결; 1983.6.14. 선고, 83도647판결 등도 같은 취지이다.

30) “일반적으로는 이적표현물을 그 이적성을 인식하면서 소지한 경우에는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학문을 하거나 지식습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전공분야에 관련한 서적이나 자료를 소지한 경우에는 거기에 이적성을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을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추정하거나 이적목적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이라도 다른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하는 이적표현물을 오로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소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 그가 소지하는 이적표현물이 그가 저지른 다른 국가보안법 위

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결국 위 판결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학문연구에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할 목적, 즉 “이적목적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적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목적이 없음을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대법원은 “기록상 피고인의 행위가 학문연구의 목적 등으로 한 것이었는지 이적의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인정³¹⁾하였다. 또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한다고 판결³²⁾하기도 하였다.

즉, 검찰은 이적 목적을 명확히 증명하지도 못한채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이적목적이 있는 것으로 단정해왔으며, 법원은 이적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이적 목적으로 보아 유죄판결해 왔던 것이다³³⁾.

이는 국가(검찰)가 부담해야 할 이적목적 입증책임을 합리적 이유없이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 점과 관련해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주목할 만하다.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권 행사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 어떤 결과가 수반되며, 왜 그 같은 결과가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³⁴⁾

그런데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은 연구물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표현인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도 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애매 모호한 이유로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학교수의 강연내용, 대학

반행위와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그가 전공하는 학문에만 관련이 있다거나 그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추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31) 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 1711판결

32) 학문적인 연구 등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된다.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1711판결

33)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기준이었다.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도1624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도1035 판결.

34)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 씨가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3/45에 의거하여 한국방문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 ECOSOC E/CN.4/1996/39/Add.1, 1995.11.21.

교재, 학술용 도서, 논문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목적의 표현물’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이다.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전문적인 집단에서의 민주적 토론, 상호비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잣대에 의해 판단되었던 것이다.

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

이승만 정권시기에는 학자들도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제정 국가보안법 시기에는 대학강사들이 ‘남로당의 프락치위원’이라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가 나타난다.

예컨대 1949년 5월경 기소된 상과대학 강사 정해근은 남로당 서울시당부 프락치 위원이라는 혐의로, 연희대학 강사 박남수는 남로당 프락치부원이라는 혐의로 1949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불고지 사건으로 연세대 오화섭 교수가 구속기소되었다. 이는 학문적 연구와 관련한 처벌이 아닌, 여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다. 연구물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시기에는 반공법 제4조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기제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처벌받은 사건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1967년 7월), 조선대 임영천 교수 사건(1977년 9월), 리영희 교수 사건(1977년)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처벌받은 사건을 살펴보면, 대개 원론적 의미의 학문연구에 대한 탄압이라기 보다는 공안사건에 연루되어 학문 연구자(교수 등)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가안보라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유로운 연구나 사상의 표현 자체가 심각하게 억압당하였고, 학문연구를 표현하기 위한 연구발표나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³⁵⁾. 또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적 한계는 필연적으로 학자들 의식속에 내면화됨으로써 스스로 자기검열하는 등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왔던 것에서도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5, 6공화국에 접어들어서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의 단순 서적 소지에서부터 집필한 역사서적, 나아가 학술적인 연구단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학문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시기에는 주로 진보적 이론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그 대상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침해한 학문의 자유 침해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수의 연구(물) 및 강학(교수) 내용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비롯하여 일반 연구단체의 연구원의 연구물, 저작 그리고 위 표현물(서적 등)을 단순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도 학문

35) 김귀옥, <한국전쟁과 레드콤플렉스, 학문의 자유>,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전쟁5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0.6. 이 글에서 김귀옥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학문의 자유를 논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공이데올로기, 레드콤플렉스와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의 자유 영역으로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이동화 교수 사건

이 사건은 시험에 출제한 내용과 강의내용을 문제삼아 담당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사례이다. 성균관대 법대 주임교수인 이동화 교수가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된 것은 1955년 5월 19일자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소련외교정책의 변화와 해부”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내용 때문이었다.

“강연에서 나는 원자력의 놀랄 만한 발전과 가공할 엄청난 파괴력은 결국 미·소 양국이나 그밖의 어느 나라의 전쟁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의 평화적인 공존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동서진영의 평화적인 공존을 강조하고 있어 반공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³⁶⁾. 이렇게 시작된 이교수에 대한 혐의는 시험문제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공존할 수 있는 불세비키들의 주장을 설명하라”, 맑스주의국가론을 간단히 설명하라”는 등의 출제를 하였고 대학 강의시에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은 공존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확대되어 1955년 5월 27일 구속되었다³⁷⁾. 1955년 7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② 신홍대학 조영식 총장 사건

“치안국 특정과에서는 지난 1955년 7월 31일 신홍대학 총장 조영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문초중에 있다. 경찰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조씨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1951년 7월에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저서를 발간하였는데, 동 서적 내용에 있어 반국가적 구절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런데 조씨는 전 북괴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당국에서는 전기서적 어느 구절이 어떻게 반국가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거절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이같은 치안국의 구속조치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난이 들끓었고 심지어 문교당국조차도 항의할 뜻을 비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신홍대학 총장자리를 놓고 재단 내부의 싸움에 이용된 사건이라는 의심을 받았다³⁹⁾. 조총장은 이와같은 비난과 여론 때문에 얼마가지 않아 적부심으로 석방되었다.

③ 학구적 목적과 ‘불온서적 소지’에 관한 몇 건의 사건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자를 소지하는 것은, 그 목적에 관

36) 김학준, 「이동화평전」, 민음사, 1987, 189쪽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비사, 1992, 195쪽 재인용

37) 「동아일보」 1955년 6월 5일자 기사 ; 박원순, 앞의 책, 인용

38) 「동아일보」 1955년 8월 3일자 ; 박원순, 앞의 책, 195~196쪽 재인용

39) 「동아일보」 1955년 8월 7일자

계없이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 이적표현물의 적용을 받았으며, 중국 <북경중의학원>이 펴낸 침구에 관한 의술서적도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절이 있기에 반공법의 적용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뒤의 2 사례는 역시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례들은 반공법이 기승을 부렸던 1970년 초중반 시기 발생한 사건으로, 이 시기 학문연구와 반공법(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을 사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었다 하더라도 반공법상의 불고지죄와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⁴⁰⁾.

○ 『침구임상취혈도』라는 중공 북경중의학원이 펴낸 일어번역판 책자에는 여러 군데에 모택동을 찬양하는 구절 등이 적혀져 있어 그 책자를 읽는 자로 하여금 얼른 쉽게 그 찬양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책자가 비록 침구에 관한 의술서적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을 알고 이를 복사, 판매하였다면 반공법 제4조 제2항에 해당된다⁴¹⁾.

○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60년 6월경 국무원사무처 인사과 임시촉탁으로 근무할 당시 서울 신문로 광화문 부근 서점에서 기초공산주의 이론 내지 그 실천에 관한 일 본서적을 매권당 250원 내지 600원씩에 구입하여 탐독한 다음, 피고인의 집 후정 별통 속에 은닉하여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피고인의 경력과 사상관계 등으로 보아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에 동조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공판정에 이르기까지 다만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학구적 이념에서 위와 같은 서적을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보관한 것은 장서육에서 엮을 뿐이라고 시종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하여 이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⁴²⁾.

○ 대학 정치학과 학생이 재학중 또는 졸업 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노트하거나 책자를 빌리거나 혹은 빌려준 사실만으로 반국가단체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 할 수 없다⁴³⁾.

40) 대법원 1970년 5월 12일 선고, 69도 제80호 사건 판결요지

41) 대법원 1978년 10월 31일 선고, 78도 제2254호 사건 판결요지

42) 대법원 1971년 9월 28일 선고, 71도 제1414호 사건 판결문

43) 대법원 1976년 7월 13일 선고, 74도 제 1236호 사건 판결요지

④ 임영천 교수의 반공법 위반사건⁴⁴⁾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임영천 교수가 1977년 9월 9일 반공법 및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임교수가 행한 1977년 1학기 강의내용 일부가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하였다는 혐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교수의 일부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977년 6월 중순경 조선대학교 본관 409호 강의실에서 동교 공과대학 1년생 120명을 상대로 국어과목 중 맹자의 인·의·예·지 4덕중 ‘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식량을 원조해준다고 하더라도 국제여론이나 체면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여태까지 굶주리면서도 참고 평등하게 살아온 정신력이 강인한 사람들인데 그 제의를 받아줄 것이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나라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까지 도와줄 식량이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였다.

이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만든 것은 바로 그의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었다. 해직교수협 의회는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그 불행한 현실을 통탄했다.

“자유롭게 진리를 피력해야 하는 교단에서도 교수들은 마음놓고 강의를 할 수 없다. 학원 내에 우글거리는 정보원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붓을 들고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도 경계해야 되게 되었다. 1주일에 걸친 모진 고문으로 말미암아 말하지도 않은 것을 시인하고 반공법에 걸려 3년 6개월이라는 언도를 받은 조선대 임영천 교수의 건은 그 좋은 예이다.”

⑤ 리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 사건

1977년 11월 23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한양대 해직교수인 리영희씨를 연행, 반공법 제4조2항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은 1976년 9월경 유럽·미국 및 일본학자 등 21명과 미국에 있는 아시아연구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공에 대한 연구논문 또는 중공방문 기행문 등 22편을 번역하고 피고인 백낙청이 경영하는 창작과 비평사에서 『8억인과의 대화』라는 단행본으로 편역 발행하기로 하였던 바, 위 22편의 글 중에는 중국대륙에서의 공산혁명의 필연성 내지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중공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그 부분은 잘못 평가된 것이라는 번역자의 의견을 삽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공의 경제활동을 찬양하는 등 중공을 이롭게 ...⁴⁵⁾”하였다고 기소한 것이다.

검찰의 주 기소 내용은 유럽, 미국등 서방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쓴 체험기를 모아서 번역한 책 『8억인과의 대화』 내용 가운데 중공에 유익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잘못 평가될

4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Ⅳ」, 1987, 1644~1646쪽

45) 서울지방법검찰청 77형 제65795호 반공법 위반 사건 공소장. 이 공소장에는 「8억인과의 대화」 뿐만 아니라 리교수가 집필한 「우상과 이성」의 일부도 문제삼고 있다.

염려가 있는 부분은 주를 달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리영희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였다.

“학자의 가장 비열한 행동은 남의 글을 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열한 것은 남의 글은 마음대로 삭제하는 행위이다. 국가권력인 법의 대행자가 남의 글을 삭제하라고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 번역자의 견해를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번역한 글의 저자들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진 학자들이다. 그들의 글을 내가 평가할 수 없다.”⁴⁶⁾

이 명백한 학문의 자유 침해사건에서 국내외의 뜨거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이교수는 1980년 1월 9일 석방되었다.

⑥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⁴⁷⁾

1979년 4월 16일 중앙정보부는 불법지하 용공씨클을 구성,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근로자·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 집단이론 강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현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 한명숙, 황한식, 장상환, 신인령, 김세균씨 등 6명과 한양대 정창렬 교수를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도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학문의 자유가 유린되었다는 항의와 비난이 계속되었다⁴⁸⁾.

특히 한국근대사를 전공하는 한양대 정창렬 교수의 경우 남북문제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학자의 입장에서 학교의 연구실에서 사회주의 서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과거 대학강사였으며 현재 농민에 대한 의식화 교육 주무담당 강사인 이우재씨에게 빌려준 것이 이처럼 문제시된다면 이는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당국이 남북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반공법으로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학계·언론계·종교계의 남북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⁴⁹⁾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원 최고 징역 7년에서 1년 6월까지의 실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유신정권이 붕괴된 후인 1980년 1월 항소심이 열려 정창렬·황한식씨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형이 경감되었다.

4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리영희 교수 반공법 위반사건」, 1979, 12~13쪽

47) 박원순, 앞의책, 201쪽

48) 이상우, 「권력의 몰락」, 동아일보, 1987, 83쪽(1979년 4월 20일자 크리스찬 아카데미사 대책위원회 발표성명서) “우리는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들과 같은 인사들에게서 공산권 책자 및 자료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자·농민·여성의 권익을 위해 일할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최대한의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9) 위의책, 89쪽(1979년 5월의 크리스찬 아카데미사건 구속자 일동 명의의 호소문)

⑦ 이재화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12월 1일 '이재화'라는 필명으로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를 집필하고 서울대 및 전남대학보 등에 <항일무장투쟁사>에 관한 글을 기고한 혐의로 이승환씨를 국가보안법에 의거 구속하였다⁵⁰⁾. 검찰은 위 책에 대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으므로 민족해방운동의 주류가 아니며,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경부터 동만주 일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김일성 등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항일무장투쟁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주류운동이고 일제의 패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운동이며… 해방 후 이것들이 북한의 정권과 헌법에 이어지고 있으므로 항일무장투쟁사를 학습하여… 친미사대주의, 반북이데올로기를 극복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⁵¹⁾”이라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다. 법원은 이승환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당시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시점에서 발간된 이 책은 '일제시대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사와 김일성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국가보안법 아래에서는 김일성 또는 항일무장투쟁사를 연구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⑧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1월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생 박태호(필명 이진경)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 등)혐의로 구속했다. 영장에 따르면 박씨는 1987년 7월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아침출판사)과 1988년 10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논쟁」(벼리)에 실린 <성격과 임무와 비판의 논쟁에 대한 개괄적 평가> 등의 논문에서 “민중민주주의 혁명으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이다⁵²⁾. 특히 공안당국은 이진경씨가 이미 6개월~3년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논문과 저서를 뒤늦게서야 새삼스럽게 문제삼았다.

80년대 학계의 최대 논쟁인 동시에 가장 가치있는 수확의 하나로 꼽히는 '사회구성체론'의 핵심적 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 꼽혔던 이진경씨 구속 사건과 관련하여 학술단체협의회에서는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등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그 뒤 이진경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노동계급' 사건)혐의가 추가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⑨ '아라리연구원'의 「제주4·3민중항쟁」 사건⁵³⁾

치안본부 대공3부는 1990년 7월 12일과 7월 13일에 걸쳐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50) 「한겨레신문」 1989년 12월 2일자 기사

51) 서울지방검찰청 89형 제105445호 사건의 공소장, 19쪽

52) 「한겨레신문」, 1990.1.18. 기사

53) 박원순, 앞의책, 212쪽

연구원의 김명식 원장, 사무국장 부좌현, 이재호 연구원 등과 함께 소나무출판사 대표 유재현씨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반세기 가까이 왜곡·은폐되어온 제주 4·3항쟁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집 형식으로 출간한 「제주4·3민중항쟁」의 내용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었다. 문제된 이 책자의 서문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3봉기는 오히려 미제국주의가 먼저 민중을 유도하여 민중이 일어나면 되받아 치는 작전으로서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하나의 민중공격작전이었다. 이 민중공격작전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 제주도 4·3민중봉기인 것이지, 제주도 민중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빨갱이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었다. 미점령군의 빨갱이몰이작전과 그 작전의 행동대원이 된 이승만집단과 극우세력의 용병적 만행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었다⁵⁴⁾.”

「제주4·3민중항쟁」은 당시 비로소 조명을 받기 시작한 제주 4.3 사건에 관해 당시 신문, 잡지기사, 미군정보고서, 체험기, 해외논문, 통계자료 등을 엮은 것으로 현대사연구를 위한 1차자료로 당국의 이적표현물 규정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⑩ 서관모 교수 논문 사건

1988.6.3-4. 한양대에서는 그동안 진보적 학술운동을 벌여온 학술단체들이 ‘제1회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진보적 학자들의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가운데 서관모 교수(충북대 사회학)의 논문 <중간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위치>를 문제삼아 서울지검 공안부가 서 교수를 소환하려고 했던 일이 발생했다. 6월 14일 서울지검이 서교수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는데, 검찰의 소환요구에 대해 서 교수는 출두를 거부했고, 심포지엄 주최측은 위 소환조치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심포지엄에 참가한 10개 학술단체와 전국의 전임급 강사이상 학자 300여명이 서명운동을 폈다. 진보학계의 발빠른 대응과 사회 전반의 민주화 영향 때문으로 당시 대부분의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보도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이경재 검사는 출석대신에 ‘우편진술요망서⁵⁵⁾’를 보내고

54) 서울지방검찰청 90형 제70450호, 제70452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소장 4~5쪽

55) 1988년 6월 21일자 ‘우편진술요청서’에는 당초 ‘진술서’라는 이름아래 질문사항을 ‘신문사항’이라고 표현하여 ‘피의자’ 취급을 하고 있고, ‘일반적 신문사항’ 10개 문항, ‘구체사안 신문사항’ 38개 문항을 담고 있었는데, 나중에 ‘질문사항’이라고 고치고, ‘피의자 취급’의 질문내용도 바뀌었다. 검찰은 당시 신문보도만으로 알 수 없는 서 교수논문의 정확한 내용, 발표 진의 등을 참고로 알기 위해서라고 소환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이에 담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문사항’을 살펴보면 검찰이 서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려 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진술인은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시오 ○ 진술인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민족해방민주민주주의변혁이 요청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논리적 근거와 성격, 형태 등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진술인은 위 논문에서 민중민주주의변혁, 민주주의혁명 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교수의 견해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뒤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였다. 조사차원에서 끝나긴 했지만 ‘진보적’ 학술운동(학술논문)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사법적 대응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학문연구에 대해서 마저 쉽사리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⑪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

이 사건은 1991년 6월 서사연⁵⁶⁾ 소속(출신) 연구자들의 학위논문 작성과 연구과정에서 쓴 연구물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학문적 토론과 논쟁으로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잣대로 인신을 구속하는 학문·사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서사연 사건은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함께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배경은 1991년 6월 27일 국군기무사령부와 치안본부(대공3부)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출신으로 육군 방위병 복무중이었던 이창휘(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사건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송주명(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한준(서울대 사회학과 석사졸업,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홍성태(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중) 등 4명과 신현준(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당시 경기대 강사), 권현정(서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등 연구원 2명을 강제연행, 이 가운데 이창휘씨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구속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안당국이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유는 연구원들의 연구 및 저작활동의 내용이 ‘남한 현실을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 독점자본가계급에 의하여 노동자계급 등 민중이 착취당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 계급동맹을 형성하여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파쇼정권을 타도’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변혁과 혁명의 개념적 차이는 어떠한가요? ○진술인의 위 논문을 정사하면 진술인은 계급투쟁사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이상 박원순, 앞의책 제2권 208~209쪽 참조 ;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1988.6.20. 참조

56) 서사연은 80년 초반, 당시 해직중이던 서울대 사회학과 김진균 교수를 중심으로 사회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만들었던 ‘상도연구실’이 모태가 되어 1990.3. 창립한 학술단체로, 당시 사회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 대학교수 20여명과 대학원 과정의 연구자 40여명이 회원이었다. 서사연은 80년대 발전해온 민중운동, 지식인운동의 주요관심사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미국, 일본 등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에 종속되어 이루어지는 독점재벌과 국가권력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권 변혁에 대한 학계의 폭넓은 논의와 관련하여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정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무크지 <현실과 과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왔으며, 이를 통해 주체사상 비판, 페레스트로이카 비판의 이론적 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과학연구 및 논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7조5항) 제작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안당국이 문제삼은 저작 가운데 「현실과 과학」 3집에 실린 이창휘씨의 <러시아혁명과 레닌의 인민민주주의혁명론>, 같은책 5집에 실린 신현준씨의 <1960~1970년대 초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논쟁의 재검토>, 단행본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시론적 분석」(새길, 1991), 「사회주의 이론·역사·현실」(민맥, 1991) 등 문제가 된 논문들은 모두 학위 논문작성과 연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쓴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라는 비난이 빚발친 것이다⁵⁷⁾.

그런데 검찰은 글 내용의 전체적인 함의와는 무관한 지엽말단적인 문구들을 자의적으로 선별, 나열하면서 ‘피고인들은 순수학술연구자들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자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을 각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기소 하였던 것이다. 또한 위 연구자들이 그들의 글을 통해 남한사회를 신식국독자로 파악하고 그 모순구조의 해결책으로서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에서 주장했던 이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이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었음에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적성이 없다”는 서울대 소속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배척한 채, 학문적 업적과 그 전력이 불분명한 관변 연구자들의 증언 내지 감정서만으로 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관변 증인들의 증언이 국내외에서 학문적인

57) 이와 관련하여 ‘학문과 사상의 자유 탄압 및 학술연구자 불법연행·구속에 대한 공대위’는 문제가 된 저서 가운데, 「사회주의 이론·역사·현실」은 신현준 연구원이 손호철 교수와 함께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소장 이인호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공개적으로 모집한 대우학술재단 연구비 지원에 응모한 연구과정에서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써 “공식학술재단이 지원하고 대학연구소자 선발한 전문적 연구결과를 당국이 공안적 시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권현정씨의 경우 구속사유가 된 공동연구서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시론적 분석」 가운데 권씨가 쓴 부분은 “지도교수(변형운)의 내락을 받아 석사논문 제출 준비용으로 쓰인 것”이라며 “학위논문과 대학원 과정에서의 연구논문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등 당국이 궁색한 논리로 학문, 사상의 자유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1991.7.6. / 1991.7.11. 기사

58) 이 사건 재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장 김영학, 전 내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홍지영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이 사건 관련 논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측 신청의 증인 즉, 안병직, 김수행, 최명, 김세균, 이인호 서울대 교수등은 감정서나 증언으로 위 글들이 모두 학문적 성과이며 북한의 주장과 다름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위 관변증인들의 증언을 채택,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적목적성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성립되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면 이적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1993.2.9.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론은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는 정치적 행동을 주창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우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앞지를 만큼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큰 의문을 남겼다.

결국,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 보면 서사연 연구원의 개별적인 활동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라 하여 기소한 것이지만, 진보적 소장학자들을 동시에 수사대상화함으로써, 진보적 학술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계에서 뿌리내린 진보적 학맥을 제한하려는데 수사목적이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학문활동에 제한을 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⁵⁹⁾.

⑫ 빨치산 글을 문제삼은 방통대 강사 김무용 사건

1995년 3월 23일 경찰청 보안국(남영동 대공분실)은 방송통신대학교 역사학과 강사인 김무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 구속했다. 역사학연구소가 만든 기행 자료집 <빨치산 역사기행> 가운데 김씨가 집필한 “한국현대사와 빨치산 활동”이라는 글이 “과거 빨치산 활동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였다. 또한 김씨의 가택수사에서 나온 장기수 한아무개씨가 쓴 「남부군 실록」 3권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두었다.

그러나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발표, “김무용씨는 한국현대사에 대해 여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한 현대사 전공 연구자로서 한국의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차원에서 문헌자료와 증언을 기록”했으며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한 「한국현대사와 빨치산 활동」은 역사기행 참가자에게 배포한 ‘역사기행 자료집’”이라고 반박하였고, “이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라고 강력 비난하였다⁶⁰⁾.

한국 현대사를 바로 잡으려는 한 역사학자의 연구활동은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학문적 성과로 수렴되기도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되고 말았던 것이다. 김무용씨는 1심에

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고 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북한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결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1711.

59) 신장수,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김영삼 정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토론회> 자료집, 1994.8.29.

60) 현대사 연구자인 김무용 씨는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문헌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연구한 역사의 현장을 답사한다는 의미의 ‘역사기행’을 기획하였다. 한겨레 신문 등에 광고를 내어 관심 있는 일반인들과 함께 출소한 장기수 몇분을 안내자로 삼아 역사기행을 다녀왔다. 그 즈음은 이태가 쓴 <남부군>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을 뿐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져 방영되었고 TV에 재방영된 후였기 때문에 ‘남부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 있던 해였다.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격동의 우리 현대사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는 역사기행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청은 역사기행에 참가했던 80여명이 모두 빨치산 출신 및 비전향장기수들이나 것처럼 발표하고 ‘전적지 순례답사’로 왜곡하여 발표하였다. <김무용 구속과 관련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성명>, 1995년 3월 24일.

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1995년 10월 20일 서울경찰청은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 이찬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씨가 집필하여 1994년에 발간한 『인간 김정일 수령 김정일』(열린 세상)이라는 도서가 “북한의 부자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한 혐의”라는 것이었다.

⑬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1994년 7월 1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의 14개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서강대 박홍 총장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그뒤에는 사로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는 돌출발언을 하였다. 논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었으나, 그럼에도 이 발언은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과 조문과동 등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안세력의 신공안정국 구성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실제 박 총장의 발언이후 이른바 “주사파 조직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7월 27일 경남경찰청은 진주 우리서점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 「한국사회의 이해」 등 13권 90여권의 서적을 압수하고, 서점 대표 정대인씨를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체포하여 책 판매 부수 등을 조사한 후 풀어주었다. 그런데 다시 8월 1일, 박홍총장은 동경에서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인 8월 2일, 대검 공안부(최환 공안부장)가 장상환 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대립을 강조, 계급혁명과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창원지검이 진주경상대 장상환 교수 9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교수들은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안당국에 의해 제단되어서도 안되고, 될 수도 없다”고 소환에 불응,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30일, 집필 교수들은 검찰의 구인에 응하고 나머지 6명은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교수들 가운데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31일 창원지방법원 최인석 판사는 장상환 교수 등이 불구속처리하기로 한 나머지 5명의 교수들과 신병처리를 달리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데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이나 간행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며,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검찰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로 장교수 등을 기소한 것이다⁶¹⁾. 이 사건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한 공안당국의 폭거라는 비난이 일었다.

61)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서,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제8호, 관악사 발행, 1994.11.15. 참조

한편 2000년 7월 24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2명에게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7년여만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판단여부와 관련하여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행위나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제되는 표현행위나 표현물의 내용이 전문분야를 다루는 것일 경우에는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그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⁶²⁾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한국사회의 이해」가 비판적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재로 사용돼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를 제작, 반포하였고, 강의를 하여 이에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또한 2002년 7월 24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수형)도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의 내용이 당시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책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마저 검찰이公安적 잣대를 들이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7년만에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증명된 셈이다.

⑭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이장희 교수 사건

1997년 대선을 앞둔 11월 25일, 서울지검公安1부는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 한국의국어대 이장희 교수와 이 책을 출판한 천재출판사 김지화 편집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법(홍중표 판사)이 “이적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그에 맞서 검찰은 다시 12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서울지법(최중현 판사)은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영장이

62) 사건 94고합502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강석규, 권성우), 2000.7.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와 별도로 학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에 우월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학문은 학문내의 자율적인 통제력에 의하여 더 큰 발전과 성숙함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사상, 학문이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사상, 학문의 자유로운 경쟁과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학문내의 자율적인 통제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속 기각되자 검찰은 1997년 12월 29일 이씨를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장희 교수가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천재출판사)를 제작, 편집하면서 북한의 ‘국가’ 등을 소개하는 등의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1995년 10월 발행되어 통일원에 의해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이 책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월간조선> 등에 이 책에 이적성이 있는냐 보도되면서부터였다⁶³⁾.

한편 법원은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판사는 2001년 2월 23일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교수와 출판사 직원 김지화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는 국가존립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 적용범위를 극히 축소해야 한다”며 “책자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작동기와 출판당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적성이나 찬양·고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중춘 부장판사)는 6월 26일, 항소심 공판에서 “「나는야 통일1세대」는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인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발행된 후 2년동안 문제없이 잘 팔리던 책자가 한 언론의 “용공서적”이라는 왜곡보도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에 편승한 검찰의 공안 드라이브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일부 극우언론의 냉전적 잣대에 의한 보도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⑮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강의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사건

1997년 11월 26일 검찰은 광주대 박지동(언론대학원장) 교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는 서울대 고영복 교수 간첩사건, 이

63) 「월간조선」 7월호는 <통일원의 이상한 통일캠페인 - 통일되면 수도와 나라꽃이 바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1995년 10월에 발행된 이 책은 표지에 ‘어린이들이 정말 알아야 할 27가지 통일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장희 교수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북한이야기’라는 제목으로 27편의 북한실상을 소개해 놓았다”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교수는 통일원의 정책자문위원 이기도 했다. 또한 민족안보구국통일협회(회장 오제도)의 소식지인 월간 <신문고>에는 ‘어린이 용공도서 전량수거하고 저자 이장희를 구속 수사하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또한 <한국논단>은 계속 이장희 교수와 권오기 장관을 문제시하는 글을 실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장희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는 “통일교육용 교재를 이적표현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씨 등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001년 9월 26일 “모두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한국논단>이 이적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아 이 교수가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등 문제된 기사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이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오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 등 고통을 당한 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희 교수 사건 등 공안성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시점이었다⁶⁴⁾.

박지동 교수에 대해 검찰은 “저서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일월서각, 1996)이 주체사상과 유물론에 의거 남한의 역사를 왜곡, 비난하였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여 이들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책을 제작, 반포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고 박 교수는 11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책⁶⁵⁾은 1997.4.에 발간되어 신문방송학과 3학년의 강의 교재로 사용해왔고, 1997.5.말에 이미 전남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교수를 입건 이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1997.11. 말에 가서야 이장희 교수의 구속영장 신청과 일치되는 시기에 박교수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공안정국의 조성을 위한 시도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⁶⁶⁾.

박 교수는 구속된지 두달여 만에 병보석으로 나왔지만, 6년여동안 국가보안법 혐의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검찰은 2003년 7월 16일 박 교수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03년 8월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공소 사실에 기재된 발췌 부분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다”며 “피고의 저서가 이적 표현물이거나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해석도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기록을 검토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⁶⁷⁾.

64)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11월 28일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박교수의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최근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 사건을 계기로 지식인 사회에서 안보의식의 틈이 벌어진 것을 크게 우려하는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했다고 밝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적표현물 단속에 나선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65) 이 저서는 논술교재로 집필되었고, 다른 논문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서 검찰의 ‘이적표현물’이라는 주장은 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책에 대해서 ‘사회과학과 철학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인식론에 관한 연구문헌이고 인식론의 주요명제를 한국언론사에 적용해 본 순수학술논문’이라는 학계의 견해가 있었다. 건국대 유일상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올바른 논리 전개를 위한 안내서로서 논술자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 전체성, 심층성을 고려하면서 논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1997년 6월 4일자

66) 박 교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순수한 법리적 판단만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책은 이미 대학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박교수는 당시 지병(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앓고 있었으며 현직교수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 “표현의 자유”, 「1997 인권보고서」, 대한변협, 1998. 68쪽 참조

67) 「한겨레신문」, 2003년 8월 28일 기사

⑩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되었다가 학회논문까지 보안법 적용된 강정구 교수 사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옥인동 대공분실)는 2001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가한 후 8월 21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정구(동국대 사학과)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강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애초 평양에서 개최된 8. 15. 민2족대축전에 방북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가 2001. 8. 17. 만경대에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면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는 만경대발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상 제7조1항(고무·찬양)⁶⁸⁾ 혐의 뿐 아니라, 나아가 그동안 발표한 모든 논문, 강의안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였고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였다. 즉, 경찰은 강교수 체포이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대학가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의 자료집(3회)⁶⁹⁾, 그리고 <한국전쟁과 민족통일> 제하 논문 1편에 대해서까지 기소하기에 이른다.

이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⁷⁰⁾한 검·경이 압수수색을 벌여

68) 강교수가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만경대 방문과정에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강정구”라고 방명록에 작성한 것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주장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7조 1항)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정부에 의해 참가가 금지되었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 개최된 개막식 행사에 참가한 사실도 문제삼아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69) 이 자료집은 강씨 체포이후, 강씨 자택에 대한 두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여 압수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집을 기초로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등을 적용했는데 2001년 4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주체사상 토론회에 참가한 사실과 6월 11일 고려대 총학생회 주최의 ‘주체사상과 이북사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 7월 31일~8월 3일 연세대에서 열린 ‘북녘 바로 알기 통일강좌’, 8월 8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에 참가한 사실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제7조 3항)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주체사상 토론회 개최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그 행사 내용을 기사화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후 고려대, 경북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토론회가 열렸지만 검찰은 법 적용검토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만경대 방명록 사건이 발생하자 새삼스레 문제가 되었고, 강씨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들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었음에도 유독 강씨를 기소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법 적용일 뿐더러,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편의적인 법적용 실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70) 검찰은 문제가 된 “만경대 방명록” 사건에 대해 “강씨가 평소 소신대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일성 정신 내지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만경대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강씨가 평소 주체사상, 김일성 정신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예단한 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검찰은 강씨가 지난해 대학내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고, 참석 행위 그 자체를 곧 주체사상 신봉자로

2001년 대학가에서 공개적으로 열렸던 토론회의 발제문을 발견하여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함의를 추가로 적용하였고, 동국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을 뒤늦게 문제삼은 것으로 인신구속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표현물 조항을 남용한 행위이다. 먼저 주체사상 토론회 관련 자료집은 2001년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열린 ‘주체사상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던 이들의 토론자료를 모은 것이다. 그 토론회가 열릴 당시 언론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졌고, 당시 검찰은 법 적용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⁷¹⁾.

다음으로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강 교수의 논문 <한국전쟁과 민족통일>(「경제와 사회」, 2000년 겨울호 게재)⁷²⁾은 2000년도 한국산업사회학회 학술대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논문이었다.

학자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학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학문적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적 잣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논문을 국가보안법으로 문제삼는 것은 학문의 자유 영역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강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받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의 제기되었다. 한편 변호인단은 검찰의 ‘만경대 발언’ 관련 공소제기는 만경대에 김일성 생가가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상상과 추론을 이어서, 피고인을 ‘주체사상의 신봉자’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만경대 정신’이라는 용어가 곧바로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사상’으로 대체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백승현, <강정구 사건에 대한 변론요지서>, 2002.

71) 경찰, 검찰이 당시 주최측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사람과 사회 - 주체사상 대놓고 말하자> 「한겨레21」 제357호, 2001년 5월2일 참조.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첫날 토론회(서울대 총학생회 주최, 주체사상 대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고려대 김형찬 교수), ‘주체사상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가’(동국대 강정구 교수), ‘주체사상은 금기시되어야 하는가’(민주노동당 최규엽 자주통일위원장) 등 3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언론은 주최쪽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썼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북한의 주체사상 관련 공식문건이 사전토론자료 가운데 하나로 뿌려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만 관심을 보인 셈이다. 물론 주최쪽이 사전배포한 자료에는 “주체사상이 북한식 개발이데올로기”라는 시각에서 비판한 글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지적 때문인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주최측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72) 검찰이 문제삼은 위 논문은 강씨가 1993년 발표한 <미국과 한국전쟁>(「역사비평」 1993년 여름호 게재)이라는 논문과 초점만 다를 뿐, 한국전쟁에 대해 동일한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 분석도 유사한 논문이라고 한다. <미국과 한국전쟁>이라는 논문은 1994년 조문파동이 일어난 당시 ‘베트남참전용사회’ 등 수십개 단체에 의해 이적표현물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이 학술논문이라며 사법처리가 어렵다고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논문과 유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논문을 갑자기 문제삼은 것은 법집행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만경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주체사상 토론회 발표문과 한국전쟁 관련 논문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않다가 방명록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계기로 강씨의 학문체계 및 사상체계를 편의에 따라 분해하여 마녀사냥식으로 ‘김일성 신봉자’로 만들고 있는 과정”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14단독)는 “더 이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강교수에게 보석을 허가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 예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학문의 자유와 더불어 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술활동은 인간의 창조적 정신의 표현이며,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보장은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술의 자유는 그 내용으로 예술작품의 창작에 이르는 전 과정, 즉 창작을 위한 준비·연습, 소재선택, 작품형태의 선택, 창작 진행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예술창작의 자유’가 있고, 창작한 예술작품을 외부에 표현하고 전파하는 ‘예술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⁷³⁾.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예술의 영역에도 침입하여 예술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표현력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해왔다.

이는 민예총이 2001년 8, 9월 예술가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⁷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예술인의 75.9%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보안법을 지적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예술가의 35%가 작품 창작시 자기검열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65.7%가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대답했다.

국가보안법이 문화예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예술적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기제로 작용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예술가들의 ‘자기검열’은 작품 제작과정에서부터 대중에게 다가가는 순간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억압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과 이로 인한 자기검열은 예술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무한한 상상력과 표현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문학, 영화, 연극, 음악 등 예술분야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기제로 작용하였는지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문학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해방 후 좌익활동을 벌였던 문인과 예술가들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정초기의 시기에는 수많은 진보적 문인들이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 등 진보적 성향의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술하게 처벌을 받았다. 이 시기에 진보적 성향의 좌익지식인들은 월북 또는 감옥의 길을 택하거나 전향을 강

73)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501~504쪽 참조

74)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침해백서>, 2001.10. 민예총과 문화연대가 예술인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요당했다. 그런 까닭에 1950년대 이후에는 지극히 우연적 사건을 제외하고는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여지조차 별로 없었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문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주로 남로당에 연결되어 정치활동 또는 문학활동을 벌였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 월북하지 않고 남아있던 문인들은 주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산하의 문학가동맹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6.25 전쟁이후에는 “지나칠 만큼 경색된 반공문화정책으로 이데올로기성의 모든 해외저작물의 국내 출판이 불허되었으며, 6.25를 치른 문화인들은 굳이 이런 출판물들을 간행하고자 하지도 않았던 상태⁷⁵⁾”여서 원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관여할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

한편 박정희 정권 시기에는 간헐적으로 문학작품에 대해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가 나타났는데, 대표적 사건으로 남정현, 김지하, 한승헌, 정공채 사건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 시대로 불려졌던 제5공화국에서는 의외로 문학작품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용된 사례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무협소설사건과 이산하의 시 <한라산> 사건이 있다. 6공화국 시기에는 문인들이 창작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운동, 출판운동, 조직운동 등을 벌이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① 남정현의 「분지」 사건

1965년 7월 9일 작가 남정현씨가 그 해 3월호 『현대문학』 지에 게재한 단편소설 「분지」가 반공법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⁷⁶⁾. 남씨는 검찰에 송치되어 보름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었으나 서울지검公安부 김태현 부장검사는 1년여의 조사 끝에 남씨를 기소하였다⁷⁷⁾. 남씨에게는 당시 반공법 제4

75) 김삼웅, 「금서」, 백산서당, 1987, 71쪽

76) 남정현씨의 소설 「분지」는 발표된지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삼웅은 “이 작품이 북한노동당의 기관지인 <조국통일> 5월 8일자에 전재되어, 작품이 발표되었을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가 북한 선전기관에 의해 전재가 됨으로써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지식인 사이에는 “만약 북한의 신문, 잡지에 실리게 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우리 작가들의 운명은 북한이 쥐게 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김삼웅, 「한국필화사」, 166쪽

77) 당시 남정현씨는公安부장이던 김태현 검사로부터 1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는데, 그는 그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예술작품이 공권력의 잣대로 난도질 당할 때, 그 고통은 창작자의 열망을 짓누르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담당검사의 주장도 정보부의 수사관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분지>는 공산혁명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불온문서지 그게 어디 소설이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찌자고 거의 일년여나 기소도 하지 않고, 조사를 질질 끌었다. 이삼일이 한번씩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혹은 십여일 단위로 나를 불러내서는 심문도 하는 등 마는 둥이었다. 하루종일 앉혀만 놓았다가 다시 해가 떨어지면 그냥 돌려보내는 적도 많았다.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는 아무래도 내가 아무일도 못하게 정신적으로 꾀꾀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아닌게 아니라 “너 이런 소설 앞으로 또 쓸래 안쓸래” 하는 고함소리를 계속 듣고

조1항(찬양·고무)이 적용되었는데, “...남한의 현실을 왜곡, 허위선전하며, 빈민 대중에게 계급 및 반정부 의식을 부식 조장하고, ...반공의식을 해이케 하는 동시에, 반미감정을 조성·격화시켜 반미사상을 고취하여 한미유대를 이간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편소설 분지라는 제목의 작품을 창작하여, 현대문학지에 게재, 공포케 함으로써 북괴의 대남적화전락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것이었다(공소장).

이 사건은 1967년 6월 28일에서야 1심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날 “소설 분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피고인의 염원을 소설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작품을 집필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호응, 가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작품을 읽은 독자 중 많은 사람에게 반미적, 반정부적 감동을 일으키게 하고 심지어 계급의식을 고취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6월과 자격정지 6월에 처할 것이나 정상을 참작,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결했다⁷⁸⁾.

②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弔辭)」 사건

1975년 3월 21일 한승헌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한 변호사가 2년 6개월전인 1972년 <여성동아> 9월호에 쓴 「어떤 조사」라는 수필에서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 사건 관련 사형수 김규남”의 사형집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고무하였다”는 혐의였다.

한변호사는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그 수필 마지막 부분에 “... 그러나 아직은 살아서 숨쉬는 ‘남은 자’ 또한 잠재적인 범인이요, 언젠가는 죽어갈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해서 당신의 그 처참한 길을 뒤따를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은 곧 앞날의 ‘미확정 사형수’를 위한 인간의 절규를 높이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사라져야 할 최후의 야만에 희생된 당신에게 뼈아픈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된 당신의 소망이 명부의 하늘 밑에서나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썼는데, 이 구절이 북한 간첩 김규남을 애도함으로써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며 반공법 4조1항, 국가보안법 11조, 형법 57조, 62조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⁷⁹⁾.

나면 웬지 그렇게도 정겹던 원고지가 정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니 원고지뿐 아니라 매사에 입맛이 싹 가시는 것이었다.” 남정현, <민족자주의 문학적 열망>, 「분단시대의 피고들」, 한승헌, 범우사, 1995.

78) 김삼웅, 앞의 책, 162~166쪽 참조.

79)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수필의 내용 및 발표행위가 북괴 간첩 김규남을 애국인사로 보고 동인이 마치 사회질서와 국가방어라는 전체 위주를 내건 한국에 잘못 태어나고, 권력과 법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법적으로 살해된 것 같이 표현하여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그 구성원인 동인의 활동을 찬양고무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삼웅, 「한국 필화사」, 249~258쪽

그러나 <어떤 조사>에는 김규남의 ‘김’자도 들어 있지 않았으며, 이 글의 목적에 대해서 한 변호사는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평소 내가 지녀온 사형제도에 대한 의문과 국제앰네스티의 사형폐지운동 등이 머리에 떠올라서 수필체로 사형비판을 시도해본 글”⁸⁰⁾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반성하고 그 완화를 호소한 수필 한편이, 너무나 가당(?)한 혹형 비판의 의사표현이 ‘용공’이란 누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4만 몇 천부나 팔렸다는 이름 있는 잡지에 실려나간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그 누구하나(사직당국을 포함하여) 이론이나 항의나 혐의를 제기해온 바 없는 이 글이 어찌하여 하필이면 1975년 초두라는 그 시기에 와서 ‘용공’으로 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된 저의 글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 생명의 존엄과 인간에 의한 심판의 상대성, 그리고 입법의 재고 등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인본주의를 그 사상적 토양으로 하지 않고는 제기될 수가 없는 명제들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변호사의 구속에 대해 야당은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위원 김대중, 김지하씨의 변호인인 한변호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탄압”⁸¹⁾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9월 11일,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⁸²⁾하였고, 한변호사는 징역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한 변호사는 자격정지까지 되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으나, 1983년 복권이 되어 다시 변호사 직업을 재개했다.

③ 김지하의 「고행-1974」 사건

「고행-1974」는 김지하 시인이 1974년 4월 25일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75년 2월 15일 석방되어 바로 그 달 25일에서 27일까지 3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발표한 옥중수기이다.

동아일보 1면에 연재된 이 글 때문에 김지하는 3월 13일 중앙정보부 요원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당하였다.

이 수기에는 교도소에서 만났던 인혁당 사건 피고인 하재완씨(1975년 4월 9일 사형)와 나누었던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이 실려있었다.

80) 한승헌, “<어떤조사> 필화사건”, 「분단시대의 피고들」, 범우사, 1994,

81) 1975년 3월 25일자 통일사회당 성명서(같은 날짜 「동아일보」 기사 참조)

82) 그런데 법원은 한변호사에게 반공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유죄판결하였다. ; “검찰의 공소장 가운데 “북괴 간첩 김규남을 애도함으로써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1심 판결의 판시사실에는 ‘김규남 애도’ 운운은 간 곳이 없고, 난데없이 “북괴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되어 있었다. 공소사실에 나온 혐의(김규남 애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에 나와 있지 않은 혐의(반공법 폐지 등의 주장)를 질문 한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정해버렸다.” 한승헌, <어떤조사> 필화사건, 「분단시대의 피고들」, 범우사, 1994

“누군가 가래 끓는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더군요. 나는 뽕끼통(감방 변소)으로 들어가 창에 붙어서서 누구냐고 큰 소리로 물었죠. 하재완입니다/ 하재완이 누구니까?/ 인혁당입니다/ 아항, 그래요! 인혁당 그것 진짜입니까?/ 물론 가짜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갇혀 계슈?/ 고문 때문이지러/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말 마이소! 창자가 다 빠져나와버리고 부서져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저런 쫓쫓/ 즈그들도 나보고 정치문제이니께로 쩌끔만 참 아달라고 합디더/ 아항, 그래요!”

- 김지하, <고행-1974>

김지하 자신이 “소위 인혁당이라는 것이 조작극이며 고문으로 이루어지는 저들의 전가비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삼아 반공법 위반으로 재구속한 것이다.

그 후 김지하는 감옥 속에서 작품구상을 위하여 메모한 <말뚝>과 <장일담>의 내용이 공산혁명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추가 기소되어 1976년 12월 3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아 고법에 항소 중 10.26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1980년 12월 20일 6년여만에 석방되었다.

④ 박영창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 사건

무협소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사건은 1981년 9월 12일 구속된 연세대생 박영창씨 경우이다.

박씨는 군입대를 위해 휴학하고 있는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무림파천황」이라는 다섯 권짜리 무협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씨가 이 무협소설을 발표한 것은 1980년 가을. 주 내용은 “절정의 무공을 익힌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고 정파와 사파가 대립하던 무림을 평정한다”는, 무협소설의 정석이라고 할만한 이야기를 세로쓰기 다섯권으로 출간했다. 그 내용 중에서 정파와 사파가 벌이는 무협지의 대결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었다. 또한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주장한 것도 말썽이 됐다.

“...대립물의 모순과 투쟁을 통하여 양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돌연 비약적이고 질적 전환을 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모든 사회는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따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양분된다.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이며 그것은 서로 모순되면서 통일되어 한 사회를 이룬다.”

“...인간사회의 내부 모순은 계급간의 모순이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그 반대 계급은 모순되고 적대된다.”

겨우 두쪽 분량의 이 대목 때문에 박영창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무려 열일곱가지나 되는 죄목으로 7년형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3년, 2심에서 2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만기출소를 한달 앞둔 1984년 광복절 특사로 출감했다⁸³⁾.

⑤ 이산하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 사건

“햇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 / 민족해방을 위해 장렬히 산화해 가신 전사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로 시작된 장시 <한라산>은 1987년 3월 사회과학 무크지 『녹두서평』 창간호에 게재된 서사시이다.

제주 4·3항쟁을 다룬 이 시를 검찰은 “남한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사회로 규정하고 무장폭동을 민족해방을 위한 도민항쟁으로 미화하며, 인공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깃발)를 찬양하는 등 북한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혐의로 문제삼았으며, 1987년 11월 11일 필자 이산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⁸⁴⁾.

고은 시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에 대한 하나의 자기요청적 산물인 <한라산>이 확일적인 냉전사관에 의해 재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변론하였으나 결국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말았다.

⑥ 집필중이던 공동창작 <어머니의 길>사건

시 “한 나라의 역사가 침략사일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학살의 핏자욱이 흩뿌려져 있다. 그 핏방울이 튄 곳에서는 언제나 혁명이라는 씨앗이 움텄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해방투쟁사가 있었다. ... 꺼져가는 아메리카를 위해 춤을 추라 ... 해방을 위해 춤을 추라. 아메리카를 위해 칼춤을 추라 ... 언제든지 고문실에서 한밤중 어느 수원지에서 버려질 식민지청년의 운명을 위해...”

소설 “인민공화국인가 뭔가 하는 만세를 불러싸면서 죽어갔다더라. 그것도 웃으면서. ... 허나 이 애비가 느그 큰아버지한테 원망을 품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 시절이야 똑똑하고 양심 바른 사람이면 죄다 빨갱이로 몰렸으니까...”

창작보고서 “통일투쟁의 전개는 미제국주의와 매관파쇼정권의 음흉한 음모를 분쇄해 나가는 중요고리이다. 통일투쟁으로서의 단결은 이철규 열사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를 진상규명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사에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⁸⁵⁾.

이상은 1989년 7월 12일 문학평론가 백진기씨 등 6명⁸⁶⁾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면서 이들이 작성한 문학작품에 대하여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의 사례들이다.

문제가 된 작품은 수배학생을 아들로 둔 어머니의 아픔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과 연관지어 다룬 단편소설 <어머니의 길>과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83) 육홍타 전문기자, “느와르 무협10선 - 박영창 작, 무림파천황”, 「일간스포츠」, 2000.7.22.

84) 이산하, <저자후기>, 「한라산」, 시학사, 2003.

85)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58776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공소장 ;박원순, 앞의책, 191쪽 재인용

86) 구속된 6명 가운데 유명희·고영숙씨는 <어머니의 길>을 공동창작한 혐의를, 임형진·안현숙씨는 장시를 공동창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백진기·오승준씨는 이들 작품들의 창작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창작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았다.

명동성당 단식농성과정을 기록한 장시이다. 이들은 이철규씨 사건을 주제로 단편소설, 시, 창작보고서를 집단창작하기로 하여 초고를 작성하던 단계에서 구속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문학작품은 창작과정에서 수많은 퇴고가 된 후 공표되는 것이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데도 창작과정 중의 작품, 그것도 발표되기 전의 초고를 이적표현물로 단정짓는 것은 창작의 자유마저 압살하려는 기도”라며 비난했다⁸⁷⁾.

⑦ 「사람이 살고 있었네」 사건⁸⁸⁾

이 사건은 황석영씨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창작과 비평사의 주간 이시영씨를 구속한 경우이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실상을 비방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을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침해이며 이미 같은 글이 『신동아』에 1·2회 게재되었음에도 ‘창비’의 게재분만을 문제삼는 것은 『창작과 비평』에 대한 의도적인 탄압이라고 ‘창비’측은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전에도 북한의 방문기가 문제된 경우가 두 차례나 있었다. 1987년 5월 재미교포 북한방문기 『분단을 뛰어넘어』와 관련 예림기획 대표 정병국, 지평 대표 김영식씨가 구속되었고, 1988년 11월에는 홍동근 목사의 북한기행문 『미완의 귀향일기』를 펴낸 한울출판사의 김종수씨가 구속되었던 바 있다.

⑧ 이기형의 시 「지리산」 사건⁸⁹⁾

시집 「지리산」이 빨치산 활동을 미화하였다는 혐의로 저자인 이기형 시인과 이를 출판한 정동익씨가 함께 입건되었다. 담당변호인인 박용일 변호사는 “그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 잊혀 가던 빨치산의 활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발상 부터가 시대 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989년 10월 12일 이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⑨ 오봉옥의 시 「붉은 산 검은 피」 사건

치안본부 대공2부는 1990년 2월 21일 시 「붉은산 검은피」를 쓴 시인 오봉옥씨 및 이 시집을 펴낸 실천문학사 전 대표 이문구(소설가)씨와 실천문학사 전 주간 송기원(소설가)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혐의로 연행하여 이 가운데 시인 오봉옥씨와 송기원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문구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조치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 시집을 통해 “서사시 형식으로 남한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판하고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그리고 ‘김일성을 항일투쟁의 영웅이자 민족의 지도자로’ 묘

87) 「한겨레신문」, 1989년 7월 15일자 기사

88)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역비사, 1992. 192쪽.

89) 박원순, 앞의 책, 218쪽.

사”했으며, 이씨와 송씨는 이 시집이 출간된 지난 1989년 5월 실천문학사의 대표와 주간으로 있으면서 「붉은산 검은피」 상·하권을 각 2천부씩 제작해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붉은산 검은피>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진전에 발맞춰 1940년대의 상황을 서사시적으로 그려내 문단 및 독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집”이라면서 “이미 1년 전에 출판된 시집을 뒤늦게 문제삼은 것은 국민의 입과 귀를 봉쇄하려는 반민주세력의 사상·문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⁹⁰⁾.

서울형사지법 이창학 판사는 1990년 5월 30일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출판,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씨에게 징역6월에 자격정지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시인 오봉옥씨에게 징역8월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⑩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사건

이 사건은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한파월유공전우회 등 8개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작가와 책을 펴낸 한길사 대표 김연호씨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서 시작된다.

경찰(경찰청 보안4과, 홍제동 대공분실)은 이에 따라 94년 6월 7일, 조정래씨를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경찰은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학계 및 평론가들의 견해 등을 수집하고 소설의 무대가 되었던 전남 벌교 등지의 증언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⁹¹⁾.

당시 경찰은 「태백산맥」이 “이승만 정부를 친미괴뢰정부로, 빨치산을 인민해방전사로 묘사하고, 여순사건을 미화”한 점 등이 이적성을 띤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994년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9년 9월경 조정래씨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소설의 이적표현물 여부를 조사하였다.

사실이 아닌 허구에 바탕을 둔 창작물에 대해, 그것도 작품의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소설속의 한 부분, 한 문장을 따로 떼 내어 이적표현이라 규정하여 작가와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문학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냉전적 사고의 발상이라는 문단내외의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⁹²⁾. 그러나 이 사건은 2003년

90)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22일자 기사

91) 「한겨레신문」 1994년 6월 9일 기사

92) 「태백산맥 다시 읽기」를 펴낸 문학평론가 권영민씨는 “「태백산맥」은 역사가 아니다.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허구의 형식인 하나의 소설이다. 보안법 위반이니,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이니 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분간하지 못한 과거 냉전·이념시대의 소산이다. 이제 문학은 문학적 판단에 맡기고 재단은 독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라며 「태백산맥」의 사법처리를 비

지금까지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검찰의 손에 쥐어져 있다.

소설 <태백산맥>은 1986년 첫 출간 이래 3백 50여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발간 당시부터 현역작가·평론가 50명이 선정한 '한국의 최고소설', 독자 5백명이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1위 등 각종 기록을 휩쓸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영화로 상영되기도 했다.

나. 영화와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① 이만희 감독의 영화 <7인의 여포로>사건

이 영화는 영화를 반공법으로 문제삼은 최초의 사건이다. 1964년 12월 18일 서울지검공안부는 합동영화배급회사가 제작한 영화 <7인의 여포로>(흑백)가 “감상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군을 무기력한 군대로 그린 반면, 북괴의 인민군을 찬양하고 미군에게 학대받는 양공주들의 비참상을 가장묘사, 미군철수 등 외세배격풍조를 고취하였다”는 혐의로 제작자 이종순, 감독 이만희씨를 반공법 제4조 제1항(①북괴의 국제적 지위향상, ②반미감정고취, ③군사력의 위약화 책동, ④북괴 찬양) 위반으로 입건하였다⁹³⁾.

이 영화는 북한군에 잡힌 여자포로를 겁탈하려는 중국인민군을 북한군 장교가 막아낸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는데 한 여 포로가 그 북한군 장교에 대해 “참 멋진 남자야. 여자라면 누구나 사랑을 안 하고는 못 배길거야 ...” 라고 독백한 것(‘북괴군’을 멋지게 본 죄), ‘북괴군’이 ‘중공군’의 범죄를 막는다는, 요컨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묘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공소장에서는 군사력의 취약화를 꾀했다는 지적 외에도 “공산 계열인 북괴와 중공은 공산주의 이념이 동일하고 대한민국을 침해함으로써 상호간 무력충동을 몽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이 여군들을 겁탈하려 드는 것을 괴뢰군 수색대장으로 하여금 제지케 하여 위안부로 하여금 ‘장교님의 행위는 훌륭했어요’라는 등 칭찬을 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찬양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⁹⁴⁾.

당시 한국영화인협회 감독분과 위원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만희 감독에 대한 신중하고도 관대한 처리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영화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을 포함해 여러 곳을 삭제하거나 새로 촬영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돌아온 여군>이란 제목으로 바뀌 상영하게 되었다⁹⁵⁾.

판했다.

93) 검찰은 이어 위 영화에 출연한 장동휘, 문정숙, 허장강 등 배우전원을 조사하고 상영중인 위 영화의 예고편을 상영중지시키고 압수조치하라는 지시를 중앙정보부에 내리는 한편 이만희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영화를 관람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필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동아일보」 1964년 12월 21일자 기사

94) 김종원, 「영상시대의 우화」, 제3기획, 1985, 50~54쪽

95)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lab/W_FAHF_lab02-3.asp. 결국 영화는 제목을 <7

② 유현목 감독의 발표문 <은막의 자유> 사건

영화감독 유현목씨는 1965년 3월 23일 신문회관에서 열린 세계자유문화회의 한국지부 주최 세미나에서 <은막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반공법으로 입건당하였다.

위 발표에서 유감독은 “작가의 내면세계는 어떠한 법조문에 의하여도 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공사상이나 반공영화도 이제 새로운 고차원적인 면에서 계몽 주입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이러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예술인이 때의 흐름에 따라 애국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차디찬 형벌로서 보상받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반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만희의 제작태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만일 반공이라는 국시 때문에 언제까지나 괴뢰군을 인형으로만 설정하고 생명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대저 갈등은 어디서 만들어내고 드라마는 어떻게 꾸려가며 영화예술의 차원은 어떻게 높여 가는가”라고 항변하였다⁹⁶⁾.

유감독은 1심에서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으나 1967년 3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반공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③ 대학가 북한영화 <소금>, <탈출기> 상영사건

1990년 10월 10일 고려대와 연세대 총학생회는 ‘90 고연제’ 행사중의 하나로 두 학교 대강당 등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알고 남북간의 자주적인 문화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로 북한영화 <소금>과 <탈출기> 2편⁹⁷⁾을 공개 상영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국의 승인 없는 북한영화 상영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배포’(제7조5항) 조항에 위배된다고 교내에 진입하여 영화상영을 중단시켰다. 이에 서총련은 두 대학에서의 영화 상영시도가 경찰의 교내 진입으로 좌절되자 이에 반발⁹⁸⁾, 서울시내

인의 여포로>에서 <돌아온 여군>으로 고쳐 상영되었다. 여포로란 제목은 국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북한쪽 중심으로 붙여진 것이라는 이유였다.

96) 서울형사지법 1967년 3월 10일 선고, 66고 제89호 사건 판결문 ; 유현목, <우리의 국시가 자유민주주의임을 아느냐?>, 「씨네21」, 2001.2.8. 참조

97) 학생들이 상영하기로 한 <소금>은 한국판 <어머니>(러시아작가 고리키의 소설)로 불리는 일제시대 여류작가 강경애의 작품을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으로 영화화한 것이고, <탈출기>는 최서해의 작품을 역시 신상옥 감독이 영화화한 것으로 모두 1920년대와 30년대의 항일투쟁을 담고 있다. 또 이번에 학생들이 추가 상영하기로 한 <꽃파는 처녀>는 북한의 혁명가극을 영화화한 것으로 1989년 11월엔 이 가극의 공연문제로 남북고향방문단 교환회담이 막바지에 결렬됐었다. 「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27일자 기사

98)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북한영화가 지난 4월부터 통일원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남북통일 축구 등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막는 처사는 남북한의 문화교류를 정부가 독점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대표적 영화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차원에서 상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앞 기사

각 대학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추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화상영을 시도했던 연·고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진호, 권오중 씨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고, 영화상영이 예상되는 서울시내 17개 대학 모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소금> <탈출기> <임수경 방북> 관련 비디오 등을 상영할 계획을 세워놓은 경희대와 서울시립대를 대상으로 청량리경찰서가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10월 23일)한 서울형사지법 북부지원 이홍철 판사는 16절지 5장 분량의 장문의 기각사유서를 통해 “영장에는 이 두 영화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현재 합법적으로 출판된 국내의 문학작품들 가운데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소금>의 경우 국토통일원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찬양한 내용이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해 놓고 있어 이 작품들이 단지 북한에서 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⁹⁹⁾.

이 사건은 남북한 교류의 정부단일창구 유지, 정치성 있는 교류의 배제라는 정부의 원칙을 확인케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그 목적에 따라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④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사건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해 검찰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1998년 2월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어 출국하려는 제작자이자 감독 조성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4.3 사건을 민중에 의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 즉 민중항쟁이며 조국통일투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해명전략에 의한 선전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¹⁰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법 우성만 판사는 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레드헌트>가 이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으로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인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와 인권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인 김동원(푸른영상 대표)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8년 1월 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삼척대, 창원대 등 대학교 내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대학생들을 이적표현물 상영 혐의로 잇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이강남)은 1998년 12월 28일 제주 4·3항쟁을

99) 「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31일자 기사. 한편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자, 기각사유서를 떼내고 재청구취지를 밝히지 않은채 공연법 위반혐의만 추가해 새로 영장을 신청해 이원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런데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에는 앞서 기각된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기각사유서는 당연히 재영장청구에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떼낸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법관들의 항의가 있었다.

100) 이에 대한 자세한 반박은 김순태,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인가?”, 「민주법학」 1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7. 참조

다른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대학 안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송익근씨의 재판에서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001년 3월 15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헌트>는 4·3사건의 발생 배경 등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 진실의 재 규명과 무고한 주민의 희생을 부각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영화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¹⁰¹⁾.

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예정작 <탈출기> 제한상영

2001년 11월 15일, 부산에서 열린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던 신상옥 감독의 영화 <탈출기>의 일반상영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찰청이 <탈출기>의 국내 상영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일반상영을 취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리 표를 예매했던 일반 관람객들은 환불을 받고 되돌아와야 했으며, 이 영화는 기자와 게스트만을 대상으로 제한 상영되었다.

검찰은 “<탈출기>가 신 감독이 지난 84년 북한 체류당시 제작한 작품으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영화 상영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탈출기>는 ‘한국영화의 거인 신상옥’의 영화세계를 기리기 위해 기획된 ‘신상옥 회고전’ 상영작 9편 가운데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영화제 초청작은 “등급면제 일괄심의”를 통해 영화제 기간 동안 일반에 상영되는 것이 국제관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개입하여 제한상영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은 영화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영화제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비난이 일었다.

101)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경환)은 1998년 4월 학교 동아리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척대생 김태훈 씨에 대해 <레드헌트> 상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1999년 4월 14일 판결, 99고단220호). 서경환 판사는 “레드헌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를 내린 영화일 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의 요건과 기준에 대해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격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전제한 뒤,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 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2001.3.9. 선고 99도4777 판결

⑥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 사건

1998년 4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독일유학시절 북한주민으로부터 북한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 받았다고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종대씨에 대해 “<꽃파는 처녀>는 일제시대의 슬픈 가족사와 가족애를 담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영화들도 공산주의 이념에 충성이나 혁명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북한 산간벽지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애기를 담은 농촌개발운동영화거나 안중근과 이준 열사 등 역사적 사실에 바탕해 항일운동을 그린 영화들이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 미술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① <깡순이>의 작가 이은홍씨 구속사건¹⁰²⁾

서울노동운동연합이 발행하는 「서노련신문」(나중에 「노동자신문」으로 개칭)에 네칸만화 <깡순이>를 그린 이은홍씨가 1986년 5월 서노련 사건 관련자와 함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1984년 이후 공개적인 노동운동단체들이 결성되면서 다른 문화운동과 함께 만화작업도 “노동운동의 투쟁선상에서 각종 선전매체(전단, 팜플렛, 신문, 소식지)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 상황하에서 노동미술활동에 대한 탄압이 저질러진 것이고 이은홍씨는 그 최초의 적용자”가 된 것이다.

②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1989년 7월 31일 안기부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이를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민중민족미술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장)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했다. 또한 8월 4일에는 공동제작에 가담한 화가 차일환(미술집단 ‘가는파’ 대표), 정하수, 백운일, 전승일씨 등이 연달아 구속되었다.

1989년 4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전시되었던 <민족해방운동사>는 갑오농민전쟁에서부터 통일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근현대사를 민중적인 관점에서 형상화한, 가로 77m, 세로 2.6m 짜리 대형 걸개그림이다. 이 그림은 13개의 역사적 사건을 단위로 하여 민족민중운동전국연합(민미련) 건준위에 속해있는 전국 6개 지역의 미술단체와 학생미술패 연합 산하 30여개 대학 미술패 동아리가 함께 분담하여 공동 제작한 것이다. 200여명의 미술인이 동원되었고, 1989년 1월부터 3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된 이 걸개그림은 11폭으로 이뤄져 있었다¹⁰³⁾.

102) 박원순, 앞의 책, 218쪽

103) 이태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사건 재판정에 보낸 의견서>, 1989. ; 홍성담, <항소이유서>.

홍성담씨는 그 해 6월경 그림을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그해 8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 학생 축전에 보냈다. 그런데 안기부와 검찰은 <민족해방운동사>를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였고, 이 그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화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더 나아가 홍성담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까지 적용하였다¹⁰⁴).

그러나 <민해운사>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처사는 “화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몰수하는 미술탄압”이며 예술창작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대법원은 민해운사를 이적표현물로 판결하였다¹⁰⁵).

이 사건은 화가들의 창조적 예술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곧 헌법에 보장된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할 것이다.

③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

1989년 8월 17일, 서울시경 대공과는 1980년대 민족미술의 대표적 작가이며 민족미술협회의 전 대표 신학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¹⁰⁶하였다. 1987년 8월 제작되어 그해 8월 중순경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전시되고, 1988년 10월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된 바 있는 그림 <모내기>가 김일성 생가를 그리고 북한의 폭력혁명

1990.6. 위 글에는 민해운사 제작과정과 미술사적 의미가 잘 나와 있다. 한편 이 걸개그림 11폭의 제작진과 구성팀은 다음과 같다. 시작부분은 전주 겨레미술연구소의 <갑오농민전쟁>이며 서울 대학미술운동연합이 그린 <3·1 민족해방운동>과 <항일무장투쟁>, 대구 민중문화운동연합(민문련) 미술분과와 대구지역 미술대 학생모임의 <민족해방>(8.15, 대구10월항쟁, 여운사건, 제주 4·3항쟁), 부산미술연구소와 부산미술대학생연합 준비연합의 <4.19와 반공정권>과 <유신정권과 70년대 민주화 투쟁>, 광주 시각매체연구소의 <광주오월민중항쟁>과 전남·광주지역대학생미술패연합의 <민중생존권투쟁-6월 항쟁>, 서울 청년미술공동체 <민족자주화운동>에 이어 미술집단 가는패의 <조국통일운동>으로 마감하였다. 그런데 1989년 6월 한양대에서 전시되고 있던 이 그림은 경찰에 의해 찢기고 소실되고 말았다.

104) 홍성담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죄 및 회합통신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05)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긴 하나 무제한 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족해방운동사>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7조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대법원은 이 그림이 국가안전보장 등에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위법행위라고 하였지만, 그 위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그림으로 인해 위협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106) 신화백은 1989년 11월 15일, 구속된지 3개월 만에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에 동조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¹⁰⁷⁾에 따르면 “...북한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의 상단에는 북한에서 소위 혁명의 성산이라 일컬어지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둘러앉거나 서서 춤을 추며 노는 장면과 좌측 상단부분에는 북한에서 혁명의 요람이라 일컬어지는 만경대의 김일성 생가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릉도원 같은 시골마을을 그려 넣는 등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하고...”라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은 그림 상단부는 북한을 의미하는데 매우 풍요롭게 그려져 있고, 하단은 남한을 상징하는 것으로 매관자본과 독재권력을 묘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내기>에 대한 검찰의 이적표현물 기소에 대해 미술계는 “검찰의 편견에 찬 해석, 일종의 공안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¹⁰⁸⁾.

모내기예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8년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 판결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은 다시 거듭되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 판사는 1992년 11월 12일, 신학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에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예술작품에 대한 실정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그림의 하반부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의 외세와 저질외래문화를 배척하고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여 자주적,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 한다는 조국통일예의 의지 및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하반부의 그림 중에 탱크, 미사일 등 무기를 썰레질하는 모양은 비인간적이고 평화와는 상치되는 무기의 배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림의 상반부는 통일이 주는 기쁨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모습을 이상향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적표현물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무죄로 판결하였다¹⁰⁹⁾.

107) 서울지방법검찰청 89형 제70046호 사건 공소장

108) 특히 미술평론가 성완경은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를 통해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렇다해도 이것이 예술의 경우에 적용될 때는 훨씬 섬세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예술적인 언어는 일상언어와는 달리 매우 주관적이고 복합적 다의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일상적인 문자적 진술과 등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것을 일상언어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 미술비평가나 미술사가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미술작품의 내용을 두고 미술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인이라 할 수 있는 행정당국이 구체적인 어떤 주장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본다. 성완경, <모내기감정서>, 1991.1.

109) 1심 재판부는 “첫째, 그림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이념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위반되는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하여 그림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 미술품이 실정법위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대법원¹¹⁰⁾은 1,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통일 저해 요소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한을 미·일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한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열린 환송심(1999년 8월 13일)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건홍 부장판사)는 신화백에게 대법원 판시대로 <모내기>에 대해 이적표현물로 유죄 판결하였고(98노2857),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그 해 11월에 신화백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99도3839).

한편 서울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 및 대법원이 <모내기>를 ‘이적표현물’이라고 판정하는데 주요증거가 된 감정서를 제출한 홍종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과정에서 홍씨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이 아니라 1980년 5월 광주항쟁 직전에 북한에서 납파된 간첩으로, 체포된 후 전향하여 경찰청 산하의 대공전술연구소에서 일해 왔으며 미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술평론가 성완경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출석하여 신화백의 그림이 ‘이적표현물’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홍종수씨의 ‘감정’이 잘못된 것임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미술평론가의 의견보다 아무런 전문지식 없는 북한 대남공작원 출신 증인의 의견을 판결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남겼다.

한편 신학철 화백의 대리인 조용환 변호사는 2000년 5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모내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한국이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B규약) 19조를 위반했다”며 개인통보를 제출했다. 동시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한국정부가 모내기 그림을 폐기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2000년 5월 30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신학철씨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한국정부에게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¹¹¹⁾.

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일적, 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여야 하며, 셋째, 회화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이적성을 띠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각개의 구성부분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넷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그 제한 법규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방법을 기초로 무죄판결하였다. 서울지법 89고단7174. 한편 1994년 11월 16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서울고법(재판장 김영기 판사)은 역시 무죄판결을 내린다. 서울형사지법 1994.11.16. 선고 93노7620 판결

11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95도117)

이 사건은 발생당시부터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 사례로써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적감정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감정’의 기준과 방향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릴 때,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미술분야에 비전문인(검찰, 감정인 홍종수-1980년 남파된 간첩으로, 전향한 후 경찰의 대공전술연구소에서 활동)의 감정, 즉 ‘공안적 상상력’에 의해 예술작품이 재단되고, 또한 그림이 이적표현물로 규정됨으로써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여있는 극단적인 사실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예술과 표현의 자유 억압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④ <모내기>부채 제작사건

한편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부채로 제작한 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도 발생했다. 1989년 7월 4일 이상욱씨는 이 그림을 도안으로 한 부채 1천여개를 제작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강용현 판사는 1990년 2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죄가 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이 피고인의 경우는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¹¹²⁾했다.

⑤ 2001년도 ‘노컷전’에 출품예정이던 안성금 화백의 <아! 한반도> 제한 전시

2001년에도 전시회에 출품될 예정이던 작품이 제작되기도 전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약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갤러리 ‘사비나’ 전시기획자 이희정 씨는 1년여 동안 준비해 오던 ‘노컷(No Cut, 無삭제)전’ 전시를 열흘 앞둔 2001년 2월 20일,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은 “전시회 작품 중 김정일, 김일성 부자의 얼굴이 들어가고 인공기가 표현된 <아! 한반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아! 한반도>를 전시할 경우 작가는 물론 진행자도 구속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¹¹³⁾.

111) 그림 <모내기>는 신화백의 구속과 함께 당국에 압수되었다. 그런데 이적표현물로 확정 판결 남으로써 그림이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민가협, 민예총, 민미협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엔의 결정으로 <모내기> 폐기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돼 안도한다”고 밝히고 “<모내기>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유엔의 심리를 받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예술품 파괴 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유엔의 결정을 수용하여 그림을 폐기하지 말고 작가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가협·민예총·민미협, <모내기 그림 폐기해서는 안된다>, 2000.5.30.

112) 이 사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혐의에 대해 내려진 6공화국 최초의 무죄판결이었으며 신화백의 모내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신체의 자유>, 「1990 인권 보고서」, 역사비평사, 1991.

113) 이러한 형사들의 ‘위협’은 전시회가 시작되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정보과, 보안과, 수사과 형사

안성금 화백 <아! 한반도>는 인사동 거리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쪽에는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합성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공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들어간 작품이었다.

경찰은 이 작품이 제작되기도 전, 그래픽으로 제작되어 도록에 실린 것을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작가의 작품 제작을 방해하고 전시회 기획자를 위협하였던 것이다.

‘노컷전’은 일정대로 진행되었지만 애초 인사동 거리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아! 한반도」는 실내에 전시되었다. 결국 화가는 자신이 의도한 작품을 전시하지 못했으며, 전시기획자 또한 자신의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말았다.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던 ‘No Cut(無삭제)展’은 결국 작품을 전시하기도 전에 예술가들의 창작아이디어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금기에 의해 검열당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에 의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한 사건이었다.

라. 음악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① 가수 남인수, 계수남 사건¹¹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유명한 대중가수들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다. 그 가운데 남인수씨는 좌익문화단체 관련으로, 계수남씨는 부역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9년 1월 4일 서울시경 사찰과는 가수 남인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하여 수사를 벌였다. 해방전 ‘오케 레코드’ 전속 유행가수로 유명하였던 남인수씨의 혐의 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시의 좌익문화조직과의 관련인 것으로 보인다¹¹⁵⁾.

1950년 11월 15일 왕년의 연예계 스타 가수 계수남(본명 정덕희)씨가 부역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6·25 당시 가극동맹의 서기장을 맡아 평양 등지에서 공연한 혐의였다. 7년을 복역하고 난 뒤 석방된 계수남씨는 1955년 9월 24일 시행된 신형사소송법에 의한 첫 재심을 신청하여 국가보안법으로 3년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4년의 징역을 더 산 셈이었다¹¹⁶⁾.

②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 만든 작곡가 박종화 사건

민중가요 작곡가이자 가수인 박종화씨는 1990년 박종화 창작 2집 <고난의 행군> 발표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되었다. <고난의 행군>은 1910년 전후부터 1945

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찾아와 “국가보안법은 특별법이라 보석도 안되고 사돈의 8촌까지 모조리 조사받는다”, “앞으로 취직도 못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114)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223쪽 참조

115)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5일자 기사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223쪽 재인용

116) 김태호, 「법정에 선 사람들」, 삼민사, 1982, 179쪽 이하

년 광복까지 항일투쟁을 회고하면서 독립투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노래집인데, 그 내용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의 역할을 드러냈고 북쪽의 항일투쟁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박종화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박종화씨는 2001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범민련 간부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그런데 박씨에게는 이 혐의 외에도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 10곡 등에 대해 이적표현물죄를 적용받았다. 이 노래는 2001년 1월경 박씨가 총감독하고 범민련이 제작한 <잡은 손 놓지 말자>라는 음반에 실려있는데, 검찰은 이 음반에 대해 “북한의 반미자주화 노선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정당화하고 이를 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음반에 실린 노래 중 일부는 MBC <여성시대> 등 방송에서도 “통일노래”로 소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노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으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다. 또한 음반이 제작, 판매될 당시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가 박씨가 통일축전 사건으로 구속되자 본래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의 창작물을 문제삼아 처벌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수사기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③ 노래패 <희망새> 사건

경찰은 1994년 2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 등 3명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 순회공연예정인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한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월 24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노래극단 희망새의 단원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노래극단 <희망새>는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순회 공연을 준비중이었는데, 경찰은 시인 오봉옥씨의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참고한 대본과 이 시의 일부를 공연홍보 차원에서 컴퓨터 통신 전자게시판에 올린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 혐의를 적용한 것이었다.

한편 6월 15일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렬 판사)는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면서 희망새 단원 허명순, 안성혜, 최경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고, 6월 29일 서울형사지법 2단독(재판장 부구욱 판사)도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며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창작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려는 검열행위이며, 다시 삭제하고 덧붙여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완성되지 않은 대본을 문제삼은 것은 결국 머리속의 생각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는 예술계의 비판이 일었다.

④ 노래책 만들었다고 구속된 노래패 꽃다지 사건

서울지방경찰청(장안동 보안분실)은 1996년 2월 3일 이은진(노래패 ‘꽃다지’ 대표)씨와 원용호(‘민맥’ 출판사 대표)¹¹⁷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 상의 혐의는 노래책 『희망의 노래』(민맥출판사)에 실린 일부 노래가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있다는 점과 노래를 선곡하여 편집(이은진)하고 제작, 인쇄, 판매(원용호)한 것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적표현물로 문제삼은 노래책 『희망의 노래』는 1992년 1집이 출간된 이후 매년 1권씩 출판되어 1995년까지 4권이 출판되었으며, 출판이래 시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창작자와 수용자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기획과 유통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예술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3월 23일, 이은진씨와 원용호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⑤ 노래패 중 첫 이적단체 적용된 노래패 <천리마>,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

경인총련 노래패 <천리마> 사건은 노래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3항) 혐의로 구속 기소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나 법원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무리한 법 적용이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1996년 10월 1일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총학생회연합(경인총련) 산하 노래패 <천리마> 단장 강상구씨(아주대)와 연출팀장 한선희씨(중앙대)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이에 앞서 9월 22일, 이들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노래의 일부 내용이 과격한 것은 사실이나, 위협성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자¹¹⁸, 영장을 재 청구하여 이들을 구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우의형)는 1998년 5월 14일,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¹¹⁹했다.

117) 노래패 ‘꽃다지’는 1989년에 결성된 ‘노동자노래단’과 ‘삶의 노래 예울림’이 1992년 3월 통합하여 창립된 대표적인 노동민중가요 집단이다. 사건 발생 당시 KBS의 ‘열린음악회’, MBC의 ‘샘이 깊은 물’ 등 공중파 방송의 노래 프로그램에 여러회 출연한 바 있었다. 또한 민맥 출판사는 1989년 7월에 설립되어 수백권의 책을 낸 출판사이다.

118) 수원지법 정일연 판사는 1996년 9월 23일 경찰이 경기남부총학생회연합 소속 노래패 <천리마> 단장 강상구씨 등 대학생 1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판사는 “강씨 등이 제작 배포한 일부 노래의 내용이 혁명사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노래의 위협성이 우리 사회를 위협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강씨 등이 초범인데다 시위전력이 없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시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6년 9월 24일자 기사

119)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1998.5.14. 선고 97노147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는 이적목적과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라며 이적단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제시하였

재판부는 먼저 천리마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천리마> 조직 및 활동체계라면 구성원도 소수일 뿐 아니라, 팀별 구성이라는 것도 공연을 위한 역할 분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결국 대표자가 존재하는 이외에는 조직으로서 이적목적 수행을 위한 별다른 체계를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고, 별다른 지휘통솔체제가 보이지도 아니하며, 그 활동에 있어서도 이적단체로서의 특징인 밀행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천리마가 이적단체로서 요구되는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이적성과 관련해서는 “어느 집단의 행위 중에 일부 이적성을 띤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 전부를 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집단이 제작한 표현물 중에 일부가 이적성을 띤다고 하여 그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 될지언정 그 집단이 바로 이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천리마가 그 상위조직인 경기남부총련 더 나아가 경인총련, 한총련의 강화를 위한 조직일 뿐 따로 독자적인 혁명노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별개의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결국 천리마가 이적단체로서 갖추어야 할 단체성과 이적성을 충분히 구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이적단체를 적용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다. 또한 재판부는 노래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고 기소한 점에 대해서는 “문예활동에 있어서 표현물에 나타난 이적성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이 비록 운동권가요 및 북한가요(일부 표현이 과격하거나 자신들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사하였다)를 부르고 그 중에 내용이 과격하여 혁명을 부추기거나 미국을 배척하는 부분 등 이적성이 있는 가사들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 피고인들의 활동 전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며 신중한 판결을 내렸다.

1-3. 언론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¹²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언론의 자유¹²¹⁾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각 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적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간에 정치·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정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¹²²⁾. 그러기에 우리 헌법에서도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 가치를 가지는 언론의 자유를 출판의 자유와 함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절대적 자유’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¹²³⁾.

언론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은 적지 아니한데, 예를 들면 형법(제243조, 307조, 제101조 2항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4조), 경범죄처벌법(제1조 13호),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률(제3조, 제6조, 제7조) 등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120)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464쪽

121)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토론·연설·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고, ‘출판’은 문서·도화·사진·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대내외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권영성, 앞의 책, 463쪽~476쪽

122) 김형태, <언론·출판의 자유>, 「1988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역사비평사, 1989.1.

123)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제한의 방식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야 하며, 제한의 정도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 아니라,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영성 앞의 책, 483~487쪽. 한편 권영성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위의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과 함께 사후제한의 요건으로서 긴급명령과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으로는 명확성의 이론,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 형량 이론,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로 국가보안법외에 계엄법(제9조1항),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도록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온 법은 단연 국가보안법이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언론’의 범주에 대해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언론의 자유”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도언론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중언론’(민족 민주 민중언론 등으로도 표기 가능)의 부분까지 포괄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지칭하는 ‘민중언론’은 (군사독재 시절) 대항매체가 전무하던 시절에 매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제도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민중의 현실을 알려온 저항의 의미를 내포한 매체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언론은 주로 각 단체(합, 비합)들이 만들어낸 각종 기관지를 비롯하여 학생운동권에서 발행한 유인물·대자보를 비롯, 교지, 대학신문까지 아울러서 살펴보겠다.

이와는 달리 자신들의 매체를 전혀 가지지 못하여 사소한 불만과 비판의 언동 등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국가보안법(또는 반공법)에 의해 구속처벌 당한 대다수 민중들의 사건을 통털어 ‘막걸리 보안법’으로 지칭하여 그 부분을 따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1990년 후반 들어 급격히 늘어난 PC통신 및 인터넷은 의사소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토론행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도언론, 민중언론, 그리고 인터넷 통신공간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그로인한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1) 개관

국가보안법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언론탄압의 수단이었다.

1958년 24과동 이후의 3차 개정법률은 소위 ‘언론조항’이라 불리는 제17조 5항의 인심혹란죄와 제22조의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을 신설함으로써 언론과 야당을 노골적으로 위협하였고, 이 시기에 경향신문 폐간 및 기자 구속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법을 제정, 제4조의 찬양·고무 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데, 이 시기에 동아일보 사설(1962년 8월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 한국일보 보도기사(1962년 11월 29일 “가칭 사회노동당주비설”) 등에 대한 처벌이 가해졌고,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 동아일보 황산덕 논설위원, 고재욱 주필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한 MBC 황용주 사장 구속사건(1964년 11월 11일 <세대>지,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 조선일보 리영희 기자 및 선우휘 편집국장 구속사건(1964년 11월 21일,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 있어서의 중립국의 동향” 기사), 그리고 대전방송국의 일명 “송아지” 사건(1965년 3월 4일, 방송극 송아지 작자 김정욱 편집부장 구속) 등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의 기능을 갖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언론에 대한 탄압을 가했는데, 이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로는 「민족일보」 사건¹²⁴⁾이 있다.

유신시기는 긴급조치를 비롯하여 언론의 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였다. 이에따라 언론은 “정부의 기관지화”하였고 권력과는 “하나의 복합체¹²⁵⁾”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시기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의하여 처벌된 언론인은 오히려 그 전 시대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일부는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되었다¹²⁶⁾.

제5공화국은 반공법을 흡수시켜 개정한 국가보안법, 특히 7조 고무·찬양·동조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사실 5공화국의 언론상황은 유신독재 시기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언론의 통·폐합¹²⁷⁾, 기자 대량 해직조치 등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언론통폐합을 계기로 살아남은 언론기관은 독과점 자본으로서 거대자본화 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는 언론이 자본의 대열에 들어서서 제도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카르텔, 언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언론종사자들에

124) 4.19혁명 이듬해인 1961년 2월 13일 창간된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혁신계에서 주장하는 남북협상, 중립화 통일, 민족자주 통일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창간사에서는 ‘우리는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천명했다. 민족일보의 반향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나자 장면 정부는 배후의 자금관계에 주목하였고, 정계일각에서는 배후에 일본 조총련계가 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런데 5.16직후인 5월 19일 폐간의 통보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을 구속했다. 혁명재판소는 이들 가운데 발행인인 조용수, 송지영, 안신규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종률, 이상두에게는 징역 10년, 양수정 이건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송지영 안신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조용수는 12월 21일 오후 서대문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삼웅, <민족일보 필화사건>, 「한국필화사」, 동광출판사, 1987, 105~109쪽.

125) 박원순, 앞의 책, 80쪽 재인용

126) * 반공법 처벌 언론인 1972년 3월 30일, <동아일보> 의정부 주재 장봉진 기자 전차고철 필화사건으로 반공법 위반혐의 구속, 1974년 5월 30일,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인호, 정치부장 이영석 등 5명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제37화 ‘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에 연행

* 긴급조치처벌 언론인 1975.8.21. <동아일보> 성락오 기자, 장준하 사인보도와 관련 긴조 9호 위반혐의 구속. 1977.2.15. <경향신문> 춘천주재 윤대중 기자, 긴조 9호 위반으로 서울고법서 징역1년 집유2년 받음. 1978.11.10.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4주년을 맞아 발표된 ‘민주인권사건일지’로 안종필 장윤환 안성열 등 동아투위 소속 해직언론인 긴조 9호 위반으로 무더기 구속. ; 박원순, 앞의책 2권 81쪽

127) 언론 통폐합은 기존 언론기관들이 스스로 거대자본이 되어 철저히 제도언론화 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물론 1980년의 언론통폐합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것이긴 하나, 그 결과 언론사들은 더욱더 독과점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권력과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하게 된다. 김형태, <언론·출판의 자유>, 「1988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역비사, 1989. 107~110쪽 참조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¹²⁸⁾. 따라서 언론은 국가권력이 더 이상 강압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개를 수그리고 자발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는 통치체제의 일원이 되고 말았다¹²⁹⁾.

이와 같은 언론의 모습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와 탄압의 가능성을 오히려 줄게 하였고, 이 시기에는 제도언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수치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의해 유언비어 유포 등 포고령 위반과 함께 반공법 위반으로 몇몇 언론이 연행, 처벌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제5공화국 후기 「말」지 사건이 있을 뿐이다.

특히 「말」지 사건은 1986년 9월, 민언협이 말지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 사례집>¹³⁰⁾을 발표하였는 바, 이에 대해 서울지검은 외교상의 기밀누설, 국가모독죄,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태홍, 김주언 씨 등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보도지침>의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기밀누설죄를 적용하였고, 국가보안법은 집에서 압수수색한 일

12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태, 앞의 책 참조

129) 박원순, 앞의책 2권, 81~82쪽. 한편 전두환 정권 시기의 언론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참조하자. “전두환 정권의 언론이라고 하면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저마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언론의 다양성이 부존재 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무자비한 학살로 진압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위한 언론 통제는 필수적이 되었고 이미 ‘보도지침’과 ‘언론인 개별접촉’으로 언론 통제의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였다. 또 박정권 보다는 더욱 치밀한 언론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언론의 기를 꺾어놓고 정통성이 없는 신군부의 적극적 홍보와 자발적 충성을 유도했다. 당시의 언론이 나름대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신군부 통제하에서 허위, 과장, 왜곡 보도로 신군부를 거드는 역할을 했고 일부 언론은 적극적으로 신군부를 지지해서 기회주의적 변신을 했으며 그 대표적인 신문이 조선일보였다. 당시의 언론통제가 단순히 탄압이나 압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언론 자체내에도 있었다. 출세를 위해 정권에 아첨하는 언론인들이 부지기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서울신문의 이진희의 경우엔 군부세력을 지지하는 글을 실어서 경향신문의 사장으로 영전했고 그후에도 전두환 찬양의 글을 시리즈로 게재하기도 했다.” 민주법학회 심포지엄 연구글, <언론의 자유>,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1년 가을호 게재

130) ‘보도지침’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에서 매일 각 언론사 편집국(보도국)에 은밀하게 시달하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86년 9월,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가 《말》 특집호를 통해 정부의 보도지침을 원문 형태로 폭로함으로써 처음 알려졌다. 1986년 《말》지 9월호에는 당시 한국일보의 김주언 기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 10월부터 1986년 8월까지 문화공보부가 각 언론사에 시달한 보도지침 584건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지의 발행인 김태홍 언협 의장과 신흥범 실행의원,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되었다. 보도지침에서는 ‘가, 불가, 절대불가’ 등의 구분을 통해 각종 사건이나 상황, 사태 등의 보도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해 시달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의 제작까지 정부기관이 전담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주언 씨등 3명의 전현직 기자는 오랜 법정투쟁 끝에 1994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보도지침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주언 김태홍 신흥범 <5공 언론통제에 대한 일격>, 「분단시대의 피고들」, 한승헌, 범우사, 1994. 491~500쪽 참조

부 책자를 빌미삼아 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적용하였을 뿐이었다.

제6공화국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표적인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은 무엇보다 한겨레신문의 이영희 논설고문 구속사건(1989)과 윤재걸 기자 불고지죄 사건(1989)을 들 수 있다. 6.29 선언이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홍보조정실이 폐지되었으며, 언론 스스로에 의해서도 언론노동조합운동, 방송민주화 운동 등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보듯이 6공화국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건은 여전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¹⁾.

제도언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2)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① 「동아일보」 오식(誤植) 사건

1955년 3월 15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석유협정 관계를 다룬 기사의 제목에 엉뚱하게 ‘괴뢰’라는 글자가 잘못 끼워 넣어져 있었다. 1면의 2단 짜리 ‘고위층 재가 대기중 한미 석유협정 초안’이라는 제목 위에다 다른 기사 제목에 쓰기 위해 채자해 두었던 ‘괴뢰’라는 두 자를 착오로 첨가하였던 것이다. ‘괴뢰’라는 단어는 같은 페이지의 ‘괴뢰 휴전 위반을 미 중대시’에 쓰려고 준비했던 것인데, 정판공(整版工)의 실수로 다른 기사 제목 위에 첨가된 것이었다.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과정에서 잘못 끼여 들어간 순전한 실수였다. 그러나 신문의 지상엔 ‘괴뢰 고위층 재가 대기중’이라는 엉뚱한 내용으로 찍혔는데, 당시 신문들이 썼던 ‘고위층’이라는 말은 보통 대통령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괴뢰 고위층’이란 ‘괴뢰 대통령’과 같은 말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동아일보」에서는 이 실수를 발견한 즉시로 연판(鉛版)을 수정하여 재인쇄하는 한편, 잘못 인쇄된 신문을 폐기처분하고, 이미 가판(架版)에 나간 신문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즉각, 수정 인쇄된 신문에 사고(社告)를 통해 오식으로 인한 실수를 사과하고, 가판에 나간 신문 회수에 나서, 2백 부 상당이 독자의 수중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량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정부 당국은 평소 「동아일보」 친야적인 논조를 내심 불쾌하게 여겼는데, 그러던 중 이 오식 사건이 일어나자, 신문이 발간된 지 5일 후인 3월 20일 정리부장 권오철과 문선공 원동찬을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발행인 국태일, 주필 및 편집국장 고재욱 등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이어 3월 17일에는 공보실에서 「동아일보」를 무기 정간 처분했다. 정간 한 달 뒤 「동아일보」는 법무부와 공보실의 공동담화에 의해 4월 16일 정간이 해제된다¹³²⁾.

131) 한편 1990년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도권 언론이 구속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오히려 제도언론을 대신하여 비제도권 매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가 줄을 이었고, 재야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학생운동권의 각종 대자보·유인물을 비롯, 대학의 교지, 신문들이 국가보안법의 표적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중언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②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사건

1955년 9월 17일 「대구매일신문」 최석채 주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은 단순한 정부비판 논조에도 참을 수 없었던 이승만 정권의 언론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었다. 최주필은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할 때,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환영한 처사를 비난한 내용의 사설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를 9월 13일 자에 게재하였는데, 이 사설이 ‘적성감시위원단 축출데모’를 모독, 멸시 하였고 이러한 사설이 북한 방송에 인용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대구매일신문」은 이 사설에서 ‘... 특히 우리가 괴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학교 당사자들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갑자기 행해졌다는 것을 들을 때, 고급행정관리들의 상부교제를 위한 도구로 학생들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입을 벌리면 학생들의 질을 개탄하고 학도들의 풍기를 운위하는 지도층이 도리어 학생들을 이용하고 마치 자기네 집안의 종 부려먹듯이 공부시간도 고려에 넣지 않는 것을 볼 때, 상부의 무쾌도한 탈선과 그 부당한 지시에 유유낙낙하게 순종하는 무기력한 학교 당국에 대해 우리는 학부형 입장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다.

「대구매일신문」의 이 사설이 나간 다음날인 14일 오후, 국민회 경북도본부 총무차장 김민과 자유당 경북도 검찰부장 홍명섭이 지휘하는 청년 40여 명이 사설을 트집잡아 신문사에 난입, 몽둥이와 해머로 인쇄시설을 파괴하고 발송중인 신문 봉치를 탈취해 갔다. 이들의 난동으로 9명의 사원이 부상하고, 인쇄기가 파손되었다. 이에 앞서 「대구매일신문」사에서는 사전에 습격정보를 입수하고 남대구서에 경호를 부탁한 바 있으나, 경찰은 형사 2명을 파견했을 뿐 별다른 대비를 해주지 않는 가운데 그와 같은 피습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파괴한 것은, 당국이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망언을 한 데 이어 사설의 필자를 이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7일 전격 구속한 것이다. 자유당 정부는 테러범들은 소재 불명이란 구실로 체포하지 않고 엉뚱하게 최 주필을 구속한 것이다¹³³⁾. 그동안 자유당 정권의 폭정과 비리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야당적인 논조를 펴는 「대구매일신문」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이 명백하였다¹³⁴⁾.

구속되었던 최석채는 테러사건이 있는 지 한 달 만인 10월 14일 불구속 기소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1심부터 이듬해인 5월 8일 대법원(대법원장 김병로)에 이르기까지 대법관 전원합의로 모두 무죄 판결¹³⁵⁾이 내려졌다.

132) 김삼웅, 「한국필화사」, 동광출판사, 1987. 43~44쪽

133) 김삼웅, 앞의 책, 45~49쪽

134) 대구매일신문사, 「매일신문사사」, 1982, 299쪽. ; 박원순 앞의책 2권, 60~61쪽 재인용

135) 이 사건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사설을 쓴 것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이나 또는 동 집단과 일련의 관련성 있는 ‘적성감시위원단’의 사기를 조장하는 목적사항의 실행을 자진방조한 것인가에 관하여 판단해 보건대, 피고인이 위 사설을 쓰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에 피고인이 위

이 사건은 경북도경 사찰과장 신상수의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유행어를 유포시켰으며, 해방 후 필화 사건으로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첫 케이스였다. 한편으로, 당시 정부 관료들 및 의원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겠다.

③ 경향신문 폐간조치 및 기자 구속 사건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3차개정(2·4파동)은 차기집권에 불안을 느낀 이승만 정부가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에서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이러한 의도는 자유당 정권에 가장 날카로운 필봉을 휘둘러온 경향신문에 대해 1959년 4월 30일자로 군정법령 제88호¹³⁶⁾에 의거, 폐간조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향신문>에 발행허가 취소라는 강경책을 쓰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1959년 2월 5일자의 고정 칼럼 <여적>의 내용이었다. 경향신문은 2월 4일자 조간 “여적(餘滴)”란을 통해 ‘헤멘스’ 교수의 ‘다수의 폭력’이라는 논문을 인용함에 있어 “...물론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가 진정 다수의 결정에 무능할 때는 결론으로는 또 한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한 다수의 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하는 등 이승만 정권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경향신문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은 위 <여적>이 발단이 되었을 뿐 사실은 그 전부터 정부의 미움을 받아온 터였다. 즉, 1959년 1월 11일자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제목하에 “이기봉 의장은 병구를 끌고 나와 스코필드 박사를 친히 방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근력이 있었다 하거니와 그 동기는 아마도 스코필드 박사가 시내 모지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판 때문이었으리라는 것도 상상되는 것이며 동 박사가 의장의 ‘권고’에 격분한 어조로 거부한 데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찢림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일이다”라고 썼으며, 또한 4월 3일자 조간 3면에 <간첩 하씨를 체포>라는 제목

사설을 복한 괴뢰집단의 선전자료에 제공할 목적으로 썼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쓰면 위 집단에서 대한민국을 악선전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사실을 썼다고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고 도리어 평양방송이 악선전을 하였으나 그것은 피고인이 쓴 사설이 선전재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로 말미암은 테러가 그 선전재료가 된 것임을 규지못할 바 아닐뿐더러”라며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 「매일신문사사」, 323쪽; 박원순, 앞의책 2권, 61쪽, 재인용

136) 군정법령 제88호는 1946년 5월 29일 공포된 것으로, 제4조에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허가신청서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신고 또는 태만이 있을 때, 위에 요구한 바와 같은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유탈이 있을 때, 법률에 위반이 있을 때 등에는 허가당국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하고,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를 수리하면 즉시 신문 기타 정간물은 허가당국에게 그 허가증을 양도 및 교부하고 발행배부를 중지할 것과 허가당국이 허가증을 반환복구 또는 재발행하지 않는 때는 발행배포를 계속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었다. 한편 경향신문 폐간조치에 대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5월 9일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폐간처분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이를 청원하기도 하였다.

의 기사를 기재함으로써 “당국의 개재금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게재함으로써 간첩 ‘하’모와 앞으로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4월 15일자 석간에 이승만의 기자회견을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보도” 하는 등 “수차에 걸친 중대한 위법사실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폐해를 더욱 조장”¹³⁷⁾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향신문은 폐간조치되고, 특히 “간첩 하모씨 체포”라는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 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소백 사회부장, 이관구 주필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그 뒤 경향신문은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자 대법원의 ‘발행허가정지처분의 집행정지’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1년만인 1960년 4월 27일 복간되었다.

④ MBC 황용주 사장 사건

월간 「세대」 지 1965년 11월호에 실린 당시 MBC 황용주 사장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논문이 반공법 4조 1항 위반 혐의로 필화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1964년 11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삼민회 소속 한건수 의원이 황 사장의 글이 “국시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따진 데서 발단이 되었다. 특히 필자인 황용주가 친여계 인사였고 박정희와의 친분 관계, 그리고 문화 방송의 사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한 필화사건이 아니라 권력다툼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하였다.

검찰은 11월 19일 황용주를 구속하는 동시에 「세대」의 발행인 이철원, 주간 이준희, 편집장 이광훈, 기자 김달현 등을 모두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하였고, 문공부는 잡지를 전부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검찰은 황용주를 기소하면서 반공법 위반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① 황씨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전체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유엔의 남북한 동시가입과 남북연방 등을 제창하여 북괴집단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그는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을 합헌국가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 ② 유엔군의 한국주둔은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해진 무자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이며 미군의 한국주둔은 미국의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점령이라고 주장하여 한미간의 유대가 가일층 강화되어야 할 이 마당에 반미사상을 고취했다.
- ③ ‘중공군은 만주로, 미군은 오키나와로 철수하라’는 미군철수를 내세우는 동시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폐기를 주장하여 한미간의 이간을 책동했다.
- ④ 남북한의 불가침이란 민족정기의 이름 아래 명백한 약속을 지켜야하고 이에 따른 군비 축소화도 당연한 정도라고 하여 남북한의 불가침조약과 남북군대의 감축을 주창하여 북괴

137) “경향신문 폐간조치에 대한 공보실 발표”(1959년 4월 30일),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1975, 중앙일보사. 165~167쪽 참조

의 주장에 뇌동했다.

⑤ ‘국토양단의 현실적인 비극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대국의 협상이 개시되지 않을 수 없게끔 남북한 적대상황의 해방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등의 주장을 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고무·찬양했다¹³⁸⁾.

황용주 사장은 이듬해인 1965년 4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선고¹³⁹⁾를 받았다. 이 사건은 1966년 9월 23일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5년만에 마무리 되었다. 한편 「세대」지 발행인 이철원 씨를 비롯한 잡지 관계자 4명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⑤ 조선일보 리영희 기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 사건

조선일보는 1964년 11월 21일자 1면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라는 표제로 아랍공화국 등 중립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활동사항을 분석·보도 하면서, 한국정부가 현실적 대응으로서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 제안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이 연례보고에서 제의한 것을 공식화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아랍공화국·알제리·캄보디아·말리 등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안을 총회 개막전에 정식의제로 제출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해외공관으로부터 받았다고 20일 정부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고위소식통은 이 제안이 있을 경우에 남한 단독가입문제는 유엔 의제에서 탈락되어 금년총회를 마지막으로 한국문제 토의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기사는 당시 「조선일보」 리영희 외무부 출입기자가 취재한 내용으로, 외무부의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토론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한국외교의 진로를 전망하는 기사였다. 정부는 이 기사가 보도되자 ‘대한민국의 비영속성에 관한 회의를 시사했다’는 혐의로 1964년 11월 21일, 선우회 편집국장과 리 기자를 반공법 및 임시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지방에 발송한 신문을 회수했다.

138) 김삼웅, 앞의책, 157~161쪽

139)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하였다. “유엔에의 남북한 동시가입과 남북연방론 등을 주장하여 북한괴뢰집단을 대한민국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여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대한민국의 합헌국가임을 부인하고 미군의 한국주둔은 8·15해방 이후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리 계획된 군사적 점령이라고 주장하여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미국의 거대한 기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이익에 이로운 존재인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여 감축을 주장하고 남북협상을 촉구하는 등 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동조하는 원고를 탈고, 월간 잡지사인 세대사에 기고, 그 해 11월 1일 발행 「세대」 제11월호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게재 보도하여 동지 1,100부를 발간, 이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65년 4월 30일 선고, 64고 제18111호 사건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은 “이 기사가 하나의 정책적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피력한 것으로 이는 정부 외교정책의 지향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기자의 구속을 반대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김형욱) 등은 리 기자는 물론 편집국장의 구속까지 강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11월 24일 기자회견은 “이 사태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에 본질에 대한 중대한 침해, 그리고 위협이라는 점”을 항의하는 서한을 대통령 등에 보내기도 하였다¹⁴⁰⁾.

이 사건을 맡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64년 11월 27일 구속적부심에서 선우회 편집국장을 석방하고, 서울지검 공안부는 12월 6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리영희 기자는 12월 17일 구속만기로 27일만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언론계를 떠나게 되었다.

⑥ 대전 방송국 <송아지> 대본 사건

1965년 3월 3일 연행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대전방송국 편집부장 김정욱 사건을 흔히 <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른다. 이 사건은 1964년 11월에 그 방송국에서 방송된 <송아지>라는 방송국의 대본이 문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도 포기하였다¹⁴¹⁾.

<검찰의 기소요지>

전후 2회에 걸쳐 자신이 집필·제작한 단막극 <송아지>를 대전방송국에서 방송케 하였는 바 동 작품은 순희의 가정을 무산계급의 표본으로, 숙향의 부녀를 유산계급의 표본으로 각각 설정하여 무산자의 집 순희네의 피땀맺힌 유일한 산업수단인 송아지가 자본가의 하찮은 유희욕, 즉흥적 기분에 의하여 잔인하게 수탈되는 것으로 대조시켜 유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의 피수탈상을 묘사하여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의하여 숙명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불합리한 지배관계를 낳는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제시함과 아울러 송아지의 역사 등 있을 수 있는 프로를 설정, 유산계급의 횡포와 잔학성을 과장 묘사하여 청취자로 하여금 의분과 유산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북돋우어서 모순된 사회구조의 타파를 위한 무산계급의 봉기를 선동한 내용으로서,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이론을 자연스럽게 전개·선전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자극시켜 북괴 및 공산계열의 상투적인 선전에 동조하고 북괴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요지>

그렇다면 그러한 개개인의 빈부의 차는 어느 사회이든 있는 현실이요, 본 작품은 중점을 도시처녀와 농촌소녀의 심리적 갈등을 그린 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어느 계급에 중점을 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일부 구절의 서투른 표현을 가지고 전체를 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북괴의 활동을 고무·찬양하기 위하여 방송원고 <송아지>를 집필하였다거나 그러한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집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

140) 김삼웅, 앞의책, 154~156쪽

141) 박원순, 앞의책, 71~73쪽 참조

인즉 순전히 언론자유 의 범주 안에서 도시처녀의 철없는 전후파적인 기질을 규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¹⁴²⁾.

⑦ ‘간첩사건의 보도’와 관련된 사건¹⁴³⁾

국가보안법(반공법)은 간첩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이를 기사화한 기자를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구속처벌하기도 하였다. 특히 3공화국 시기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65년 12월 23일 구속된 「대구매일신문」사건이다. 이 사건은 「매일신문」 12월 18일자 8면에 게재된 <권총, 무전기 등 발견>이란 표제의 단순한 간첩검거 보도기사에 불과하였으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이후 전국 최초의 필화사건이란 점에서 언론계의 비상한 충격과 항의를 야기하였다. “북괴간첩이 침투하여 대남공작용으로 가지고온 무전기, 권총 등을 밀장하여 둔 것을 발견한 영덕경찰서에서는 동 간첩이 발굴차 출현하면 검거코자 비밀리에 공작진행중인 사실을 현지 특파기자가 입수하고 단순히 정보보고로서 우송한 데 대하여 동 사실이 보도되면 경찰의 위 간첩체포 공작이 와해되고 따라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보도금지요청이 있음’이라는 주의의 첨가를 삭제하고… 기사로 게재할 것을 결정하여 편집하고 이를 공무국에 인계하여 보도함으로써 북괴의 간첩활동을 이롭게 한 것”이라는 것이 공소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동 수사계장이 경비전화로 경찰국에 간첩 출현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동 기사에 대한 보도관제 요청이 종전의 예대로 경찰서장이나 정보부 및 방첩대의 책임자로부터 서면 등의 형식으로 정식 보도관제의 요청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사실은 영덕부근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사실 등을 보면 동 사건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보도관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민주 정치의 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만 이상적인 국민전체의 의사가 형성되고 국가권력에 대해 민권을 방어하고 비판과 사실보도로써 조국발전의 창의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사활의 문제라는 것에서 보면 더구나 대중적 성격을 가진 신문의 언론을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정식으로 보도관제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방첩대 및 공보장관의 공문과 같이 국가안위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할 주의를 요할 뿐, 반공과 보도가치를 비교·교량해서 그 보도의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일개 수사기관의 보조자인 수사 담당자들이 보도관제의 요청이 있다는 지의 문구가 기사표제에 부기된 것을 지실하고, 주선으로 삭제하고, 그 부분을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의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의 간첩 체포, 공작을 방해하여 간첩을 도피시켜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한 소위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악의 중대한 발생이 긴급하고 절박하여 이러한 언론 소위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반

142) 대전지방법원 1967년 5월 18일 선고, 66고 제2067호 판결(「판례총람」23-1(A), 712~12쪽)

143) 박원순, 앞의책, 74~76쪽 참조

공법 제4조 제1항을 확장해석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압할 위험이 있는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¹⁴⁴⁾.”

이 판결은 소위 미국 판례에 의하여 언론자유 제한의 법리로 확립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중요성을 시인하면서 보도관제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것이다.

둘째로 문제된 사건은 1971년 7월 20일 「중앙일보」 대전주재 박영수 기자의 간첩보도이다. 이 사건도 “간첩이 검거된 사실을 신문지상에 보도함으로써 다른 간첩 검거에 큰 지장을 주고, 나아가 간첩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본사에 송고·보도케 함으로써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 구속이유였다. 박영수 기자는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의 두 사건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언론인에 대한 구속·입건자체가 언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구속사건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설치된 합동수사본부는 1989년 4월 12일 「한겨레신문」 리영희 논설고문을 문익환 목사의 북한방문 사전협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4월 14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 계획과 관련하여 리 논설고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일본인 야스에 료스케에게 「한겨레신문」기자단의 북한방문 취재활동을 주선해주고 가능하면 김일성과의 인터뷰를 주선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하였다¹⁴⁵⁾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신문사 임재경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연행하고, 장운환 편집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정태기 개발본부장과 장운환 편집위원장을 방북취재과정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구인한 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겨레신문사의 방북취재계획은 그 구상단계에서 이를 취소한 것이고, 또 다른 신문사의 경우 미국시민권을 가진 특파원을 북한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는데도 유독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아 다수의 언론인을 연행하고 구속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남용이며, 이는 공안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¹⁴⁶⁾, 그리고 언론사의 북한방문취재 계획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언론 탄압¹⁴⁷⁾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144) 대구지법 1967년 19월 13일 선고, 65고 제8762호 사건(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288쪽에 수록)

145) 「한겨레신문」 1989년 4월 15일자 기사,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참조

146) 기자협회보, 제540호(1989.4.21.), 1쪽

147) 안상운, <언론·출판의 자유>, 「1989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역비사, 1990.

⑨ 윤재결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

윤재결 기자의 불고지죄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사건은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이 정계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면서 일어났다. 1989년 7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는 「한겨레신문」의 윤재결 기자가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터뷰 과정에서 알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중이던 윤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의 문제, 불고지죄의 위헌성 등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7월 12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관련하여 사전에 서의원과 방북사실에 관한 인터뷰를 한 한겨레신문 윤재결 기자의 취재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10개 중대 1,500여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한겨레신문사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윤기자의 사물함에서 취재수첩 및 사진 21장 등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겨레신문사가 안기부가 발부받은 영장취소를 위한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결정이 있기 전에 압수수색을 감행함으로써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⑩ 몽고 취재중 북한대사 인터뷰 한 KBS PD 2명 보안법 입건

취재를 위해 몽고에 갔다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몽고주재 북한대사를 인터뷰한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2명이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990년 12월 7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기부는 한국방송공사 기획제작국 소속 프로듀서 조대현, 고희일 씨 등 2명을 지난 1990년 9월 12일과 13일에 걸쳐 불러 북한대사와의 접촉사실을 조사한 뒤 2개월여만인 지난 7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공안1부에 송치했다. 공산권 국가들과의 잇따른 수교에 따라 공산권을 상대로 한 각 언론사의 취재활동이 활발해진 뒤 북한공관원을 인터뷰한 취재진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첫 사건이다. 이들 프로듀서는 몽고 취재중 현지에서 갑작스레 몽고주재 북한대사를 회견, 몽고 마사회가 우리나라에 선물하려는 몽고말을 북한을 거쳐 육로로 가져올 수 없겠느냐고 물어본 것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이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조씨 등이 인터뷰 뒤 통일원으로부터 사후 접촉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처리결과가 주목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홍경식 검사는 곧 조씨 등을 불러 북한대사와의 접촉경위와 대화내용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¹⁴⁸⁾.

148) 「한겨레신문」, 1990년 12월 12일치 기사

나. 민중언론과 국가보안법

민중언론이 탄생, 확대의 길을 걷게 된 배경은 제도언론이 정치권력의 통치기관화 하여 더 이상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민중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알 권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한 자신의 표현수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수많은 단체들이 자신의 회지, 회보 기관지 등의 매체를 발행하였고, 일정 계층과 지역 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민중언론의 형태가 다양하게 탄생하였다¹⁴⁹⁾.

한국사회에 민중언론이 대량으로 산출되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제5공화국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민족·민주운동의 확산, 민중이념의 심화, 인쇄와 복사시설의 발전 등의 요인이 있었고, 이는 곧 비제도권 운동세력이 자체적으로 발행·배포하는 유인물·팜플렛·신문 등의 숫자와 양의 비약적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¹⁵⁰⁾이다.

민중언론은 한편으로는 대항 매체적(저항언론)인 의미와 함께 민중들의 표현수단으로서의 내용을 함께 담보하였는바, 이로 인해 정치권력의 탄압의 정면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기제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제7조 5항(고무·찬양 등의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방법으로 표현물을 제작·소지·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반공법 제4조 2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찬양·동조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보관·반포하는 경우)이 주로 이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뒷받침 해주고, 강화 시켜주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부당국의 발표와는 다른 견해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표현하는 내용은 대부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았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진실을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9) 박원순은 제도언론과 민중언론의 개념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나, 그 구별의 요점은 단순히 물적, 형식적으로 언론기관화 되어 있느냐에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 내용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글에서의 민중언론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다. 한편 민중언론의 의미, 탄생배경과 여러 형태에 대해서는 박원순, 앞의책, 89쪽 이하 참조

150) 박원순, 앞의책, 93쪽 이하 참조. 한편 5공화국 이전 발생했던 민중언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당시 「민중의 소리」(1977년 3월 장기표 등 구속)와 전남대 「합성」지 사건(1973년 3월 이강, 김남주 등 구속)을 들 수 있다. 「합성」지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당사자로 구속수감되었던 박석무가 쓴 <반유신운동의 효시 전남대 합성지 사건>,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가을호에 실린 글을 참조하라.

여기서는 이와 같은 민중언론의 대표적 양태로 볼 수 있는 대학교지 및 학보(신문)와 대자보 그리고 각 사회단체의 기관지(회보 등)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자보와 국가보안법

5공화국 당시부터 대학가에서 가장 주요한 언론매체로 등장한 것이 바로 대자보였다. 주로 대학건물 내에 부착했던 대자보는 당시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표현하는 주요한 의사표현 수단이었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대자보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7년 이후 광범위하게 일어난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차원에서 북한관련 정보를 대자보로 게시한 경우와 19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생하였던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해 정부발표에 의문을 표한 내용을 실은 대자보 사건을 들 수 있다. 또한 1990년 중후반 이후 북한대학과 자주적 교류를 주장하며, 북측 대학에서 온 편지를 대자보에 전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가 추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① 북한관련 정보를 대자보에 실었다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

1986년 서울대학교 건물에 북한의 <민주조선>과 평양방송을 전재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6년 10월 17일 서울대 구국학생연맹 소속 서진석 씨등 2명이 구속되었는데, 이들은 학교 건물에 “미국과 남한당국자들의 반평화적 입장과 자세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평화가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요지의 북한방송을 전재했다는 혐의였다. 또한 1987년 11월 6일에는 연세대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하여>라는 취지문에서 “민족의 3분의 1이 사는 이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하고 건설적으로 말하면 불온시하고 위협시 하는 반민족적 정신착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시작하는 대자보가 발견되어 이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광씨가 경찰에 수배되기도 했다¹⁵¹⁾.

또한 1987년 11월 북한을 다녀온 재미동포들의 방문기를 엮은 「분단을 뛰어넘어」라는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대자보로 게시한 부산대 조은하 씨 등 수명이 구속, 수배되었다.

②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정부발표와 다른 의견을 실은 대자보,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글을 대자보에 게재하거나 유인물을 만들어 뿌린 대학생들이 전국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¹⁵²⁾.

151) 앞의 사례는 <조선일보>, 1986년 10월 12일자 기사, 뒤 사례는 <조선일보> 1987년 11월 5일자 기사 ;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94~95쪽 재인용

152) 박원순, 앞의 책, 98~99쪽 참조

1988년 2월에 구속된 성균관대의 이철진, 같은해 3월에 구속된 성균관대의 김순영, 같은해 4월 19일에 구속된 서울대의 박창용, 같은 해 7월에 구속된 전남대 윤준서 안규심 김원중 정영준 등은 KAL기 사건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발표가 헛점투성이라며 이에 의문점과 조작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그 내용이 곧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었다.

③ 북한학생의 편지 담은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생 6명 구속

1997년 2월 23일 서울경찰청은 북한 대학생들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 보낸 새해 인사 편지를 교내 게시판에 게재한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김은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올해에는 범청학련을 더욱더 강화해 통일의 주역이 되자”는 내용의 북한 평양시 학생위원회가 보낸 편지를 대자보로 써 게시판에 부착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경찰은 김씨외에도 대자보 작성에 함께 했던 총학생회 간부들을 모두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컴퓨터 통신 나우누리를 이용하여 글을 내려받은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민정 씨, 모조전지 5매를 이용하여 대자보를 작성한 김은희씨, 1월 30일 덕성여대 민주당 게시판에 대자보를 고정시킨 자연대 학생회장 문지연씨,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문지연과 함께 대자보를 부착한 김은희씨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이다.

이후 명지대 총학생회장 한영진씨, 광운대 부총학생회장 현재순씨, 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유해정씨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2) 교지 및 학보와 국가보안법

6공화국에 접어들면서 대학의 언론매체들이 ‘좌경용공화’ 논란 속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교지 및 학보에서 주요하게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은 내용은 주로 북한에 대한 소개 글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에도 대자보에 실은 내용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1996년 9월 18일 북한 잠수함의 출현 사건과 관련하여 2곳의 대학학보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이는 “안보무장”논리로 일관한 당시 정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① 주체사상 관련 글을 실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된 대학 교지 및 학보¹⁵³⁾

1988년 서울대 「대학신문」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 논문을 기고한 최연구씨가, 부산여대 「부산여대 학보」에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을 가다”(루이제 린저의 북한기행 또 하나의 조국에 대한 독후감)를 썼던 안상연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53) 박원순, 앞의책, 97~98쪽 참조

또한 1989년에는 국민대 교지 「북악」(제40집)이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제본 중이던 책자 9천부가 압수되고 편집장 및 편집위원이 수배되었으며, 5월 31일에는 세종대 교지 「세종」(제18호)이 제본중인 상태에서 평양측 전 관계 사진, 기사 등이 문제되어 5천여부가 압수, 편집장 및 편집위원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외에도 호남대 무역학과, 경북대, 경상대 학회지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으며, 1989년 6월초 전북대 교지 「황토현」(제15호)에 실린 <주체사상>, <북한사회의 재인식>, <한국전쟁의 기원> 등 문제된 논문이 백지로 발행되기도 하였다.

1988년 9월 5일, 북한의 통일정책을 전제한 외국어대 학생회지 「청맥」으로 장남룡 군이 구속되었으며, 1988년 9월 28일에는 「동아대학보」에 주체사상에 대한 글을 기고한 김종보군이, 10월 1일에는 전남대학보에 북한의 실상과 주체사상을 소개한 김성철군이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② 고 이철규 씨 추모 행사중 당시 교지 내용 전시한 민주조선 편집장 구속 사례

고 이철규 씨는 1989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서 자신이 집필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 내용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89년 4월 이후 수배되었다. 그런데 도피중이던 1989년 5월,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학생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이후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는 이씨 추모행사 기간에 문제가 되었던 글을 발췌하여 전시해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경찰청은 1996년 6월 17일 유혜숙(1996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씨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씨가 1993년 4월과 1994년 4월, 고 이철규씨 추모행사 기간동안 1989년 교지에 실린 ‘북한바로알기’ 원고를 판넬로 제작하여 전시한 것이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한 행위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것이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97년 1월 22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③ 무장공비 관련 글 전제하여 국보법 적용된 상지대학보 사건

강원지방경찰청은 1996년 9월 26일 상지대 학보사 여론매체부 기자 박윤주씨를, 9월 30일 사회부장 장용근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 23일자 『상지대학보』 4면에 ‘그들은 무장간첩인가?’라는 제목으로 무장공비 사건 조작설을 게재,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이다.

문제가 된 이 글은 9월 18일 동해안에서 무장공비가 출현한 다음날인 9월 19일에 PC통신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게시된 “그들은 무장간첩인가?”(ID ; OLDGUN)라는 제하의 글로서 상지대 학보사는 이 글을 4면 독자투고란에 전제하여 20일 인쇄를 마쳤다. 그러나 무장공비가 발견된 지 4일 만인 21일과 22일 한사람을 생포하고 국군이 사망하는 등 상황 변화가 생기자 기사내용이 다소 물의를 빚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학보사측은 23일 학보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된 학보를 회수, 소각 처리했다.(8천부 중 7천 9백부 회

수)

학보사 측은 학보에 문제의 글이 게재될 당시는 북한 잠수함 출현사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언론조차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기자가 직접 쓴 기사도 아닌 독자투고란에 실은 점등을 들어 애당초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이적목적을 가지고 실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조연호지원장)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상지대당국은 학보에 대해 무기정간, 주간교수편집장 해임, 기자 교체, 주간교수관련 기자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를 내렸다.

④ 무장공비 관련 독자의견 실어 국보법 적용된 동국대 학보사 사건

상지대 학보 사건 이후 동국대에서도 학보에 게재한 글을 문제삼아 학보사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1996년 10월 16일 중부경찰서는 무장간첩을 동정하는 내용의 독자의견을 동국대 학보에 실은 혐의로 이 신문 편집장 곽주영씨와 여론매체부 차장 양지연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7일 발행한 <동대신문> 제1210호 자유게시판 '소나기'란에 "불쌍한 공비 아저씨 죽지말고 무사히 탈출하세요"라는 문구 등을 게재하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문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소나기'란은 매주 특정주제를 정해놓고 이에 대해 학생들의 재치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는 란으로, 제1210호는 '무장간첩 사건을 보고'로 주제를 설정하였고,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실렸다고 주장하였다¹⁵⁴⁾. 곽주영씨는 11. 12 구속취소로, 양지연씨는 같은 날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서 풀려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임이 드러났다.

3) 단체 기관지 및 잡지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그동안 각종 노동·청년·사회단체에서 발간된 기관지 및 회보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7조5항) 적용을 받아 기소되었고, 또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980년대의 경우에는 비합법 조직에서 발행한 유인물이 그 대상이었다고 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공개적인 단체에서 발행하는 잡지 등에 대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다거나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므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기소 되었다.

또한 1980년대는 대체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발행된 잡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주를 이뤘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학생운동 조직들에서 발행한 기관지가, 1990년대 후반이후에

154) '소나기' 란에는 경찰이 문제삼은 "불쌍한 공비 아저씨 죽지말고 무사히 탈출하세요"라는 독자의견 뿐 아니라 "국군 장병 아저씨들! 무장공비 아저씨들이 세군데만 내려오면 우리나라 다 디비지겠다. 똑바로 잡아라!", "한총련! 간첩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라"라는 내용의 의견 등 다양한 독자투고가 실렸다. 그러나 경찰은 그중 한 문장만 문제삼아 '무장공비를 동정했다'며 편집장과 그 주제를 선정한 기자를 구속시킨 것이다.

는 공개적인 노동·사회단체 등에서 발행한 기관지가 그 표적이 되었다. 특히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국가보안법 7조 3항이 적용되었던 사건의 경우, 그 단체에서 발간한 잡지, 기관지는 모두 이적표현물 적용을 받았다. 여기서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그 단체에서 펴내는 유인물(기관지)에 이적표현물 조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입장 담은 내용, 회보에 실어 구속된 평불협 법타스님 사건

통일원에 정식등록된 단체인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이하 평불협)의 회보 <하나로> 기사와 관련하여 1994년 7월 20일 법타스님이 구속되었다. 4월 23일 발행한 <하나로> 11호(5, 6월호)에 「김일성 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 일부를 게재한 것이 구속 사유이다.

이에 대해 평불협은 “북한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게재하였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기 위한 이적표현물로 기소한 처사를 반박하였다. 특히 발행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3달이 지난 7월 20일 뒤늦게 문제 삼는 구속시킨 것은 김주석 조문파동과 관련한 공안물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② 나라사랑청년회 기관지 <장산꽃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국가보안법 적용

1996년 5월 29일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회장 서형준(컴퓨터회사 네오넷 직원), 서미연(전 사무처장), 황윤미(조국통일위원장)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7조 1항(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나사청의 기관지 <장산꽃매>에 실린 연방제 통일 방안 관련 기사,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기사, 그리고 90년부터 8.15를 앞두고 매년 열어온 ‘범민족대회’ 관련 기사내용이 북한을 찬양고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형준씨 등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학계에서도 여러 통일방안의 하나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단지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북한을 찬양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이며,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이 법의 부당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유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¹⁵⁵⁾.

서미연, 황윤미씨는 보석으로, 서형준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55) 나사청이 1988년 창간한 <장산꽃매>는 매주 발간되는 회원 소식지로, 사건 당시 지령 346호가 발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수련회, 단합대회, 문화제, 회원의 날 등 나사청의 활동과 여러 소모임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치정세,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그런데 특정부분만을 문제삼아 이 잡지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이적표현물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글 전체적인 내용, 작성 동기 등을 종합하여 이적목적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표현물이 일부분의 문구나 표현만으로 이적표현물로 기소되었고,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것이다.

③ 서청협 기관지 「서울청년」 발행한 대표 구속

경찰청 보안국(남영동 대공분실)은 1997년 10월 27일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 의장 전상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가 서청협 5, 6, 7기 의장을 지내며 이 단체의 기관지인 「서울청년」 및 5, 6, 7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출범식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서청협 회지 「서울청년」이 “미군철수 주장과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부 퇴진을 주장”한 대목이 청소년에게 해롭다며 이 잡지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매체’로 판정¹⁵⁶⁾했으며, 이에 대해 서청협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④ 법원에서 무죄판결난 <미래통신> 사건

서울경찰청(옥인동 분실)은 1997년 12월 28일, 백성기(미래사회문화사 대표)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사유는 미래정보센타(준)에서 발간한 <미래통신>의 글들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으로 경찰은 이 단체의 대표 백씨를 비롯해 이 책의 편집책임자(강공우), 정보팀장(김치영), 회원(정문일)을 연행해 구속했다.

경찰이 문제삼은 <미래통신>은 미래정보센타(준)에서 발간한 정보잡지로 97년초 창간하여 6월 16일자 5호를 마지막으로 냈다. <미래통신>은 정치, 사회, 경제, 노동 등 사회 각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등을 신문, 잡지, 컴퓨터통신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 각 분야의 쟁점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정권교체 이후 국보법 7조 5항이 적용된 첫 사례였는데, 법원은 미래통신에 대해 이 표현물이 “적극적,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지 않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2000년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미래통신> 등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백성기 씨 외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¹⁵⁷⁾에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할 당시 운동권에서는 소위

156) <한겨레신문> 1997년 9월 11일자 기사. “재야단체 간행물에 ‘청소년보호법’ 적용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1997년 8월19일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서청협·의장 전상봉)의 계간 회원지 「서울청년」 8호를 심의한 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이를 서청협에 통고했다. 위원회는 이 계간지에 실린 ‘7·4남북 공동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 담긴 미군철수 주장과 ‘민족민주진영의 주도로 통일 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자금 공개와 김영삼 정부의 퇴진을 주장한 대목이 특히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8월25일 관보에 「서울청년」 8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서청협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어 “500부 정도를 찍어 주로 회원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에게 배포되는 회원지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 것은 청소년보호를 내세워 정부에 반대하는 주장을 막는 검열과 마찬가지로”라고 비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157) 사건 98노1497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국수 김필곤 홍승철), 2000. 4. 19

‘사회주의노동당’의 실패로 기존의 교조적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고 있었고, 정치권에서는 한보사태, 대선 자금 문제 등에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총파업 사태 까지 터져 정국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적 사회단체들 내에서 노동자들의 세력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¹⁵⁸⁾다며 “각 표현물의 기재 자체의 내용, 그 작성 동기,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¹⁵⁹⁾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¹⁵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적표현물로 판단함에 있어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판결한 것이다.

4) 현수막, 표비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대학교지, 대학학보, 대자보 외에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적용을 받은 표현물로 ‘현수막’을 들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의를 표시한 현수막,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학내에 걸렸다가 국가보안법을 적용당한 현수막, 그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인공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등의 행사를 전후로 하여 ‘인공기’ 문제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시점에는 위 행사를 지지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내에 태극기와 함께 인공기를 내건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1993년 “인공기를 게시하는 행위는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¹⁵⁹⁾에 따른 것으로 그때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시대적 변화추세를 감안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적용상이 지속되어온 것이다. 또한 2001년에는 빨치산을 추모하기 위해 제작된 표비가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사건도 발생하였다.

① 김일성 주석 사망 조의 표시 현수막, 북한을 동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도에는 이른바 ‘조문논쟁’이 벌어지면서, ‘조문=김일성 찬양’

15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6.5. 선고 97고합405, 98고합85(병합)판결;1심 재판부는 미래통신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국가변란을 선동·선전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59) “인공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상징하는 표시물이므로 북한의 노선이나 활동에 동조할 의사로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북한의 실체와 권위를 인정하여 그 존재와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적동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9.28. 93도 1730호

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속에서 신공안정국이 조성되었다. 특히 김주석 장례일인 7월 19일은 조문 대자보, 프랑카드 철거를 명목으로 전국 181개 대학 주변에 233개 중대 2만7천명의 병력을 배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는 공권력의 남용을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를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에 조의를 표시하여 현수막 등을 대학 내에 부착한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4년 7월 18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교정에 “김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됩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시립대 부총학생회장 최인규씨가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김주석 장례식 전날인 7월 18일 한양대 안산교정 게시판에 총학생회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이유로 한양대 안산 교정 총학생회장 김진숙씨가 7월 23일 구속되었다. 대자보의 내용은 17일자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요약한 것으로 김씨는 작성도 부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② 비전향장기수 장례의식 문제삼아 장례위원장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

경찰이 비전향장기수의 장례의식을 문제삼아 장례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5년 3월 12일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기세문씨(당 60세)를 비전향장기수 윤기남씨의 장례를 주관한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기세문씨는 빨치산 활동으로 붙잡혀 감옥생활을 시작한 이래 28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윤기남씨가 1995년 2월 24일 위암으로 사망하자 고인의 동료, 성직자, 교수 등 133명과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이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광주지검과 전남경찰청은 윤씨의 장례과정에서 “미전향장기수를 애국투사로 부르고 지난해 6월 범민련 남측본부 전남지역 창립준비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을 위반한 혐의로 장례집행위원장이었던 기세문씨를 연행하여 구속한 것이다¹⁶⁰).

특히 윤기남씨 장례의식과 관련하여 검찰이 문제삼은 부분은 이적표현물 제작과 동조혐의였는데, 윤씨가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 등 반국가활동만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비전향 좌익수일 뿐,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활동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2월 24일 동인이 사망하자 피고인이 자진하여 윤기남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고, 장례명을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이라고 정한” 다음, 첫째, 윤기남의 행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의 추도문과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 제하의 팜플렛을 제작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사실, 둘째, 윤기남의 빈소(조선대학교병원 영안실) 부근과 묘지 부근(망월동)에 <근조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내용 등의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놓음으로써 북한공산집단의 활동

160) 다음날인 3월 13일 경찰은 장례위원회의 홍보위원장을 맡아 추도문을 낭독했던 광주전남연합사무처장인 이경률(35세)씨를 지난해 8월 이전 범민족대회 집회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을 적용해 구속했다.

에 동조¹⁶¹⁾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검찰은 기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죄¹⁶²⁾를 적용했는데, 이는 기씨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사유가 되었던 장례식에 대하여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기 힘들자 이적표현물 조항을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례의식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유례없는 이 사건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무리한 법적용”이며 “죽은 자를 추모한 60대 장례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¹⁶³⁾. 그러나 1심 재판부는 5월 30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세문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기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③ 학교 대동제 기간에 한반도, 인공기, 태극기를 함께 내건 학생, 유죄판결

2001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황규관씨는 2001년 5월, 대동제 행사에서 태극기, 한반도기와 함께 인공기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 2002도4737)는 2002년 11월 14일, 교내에서 열린 ‘대동제’ 행사때 북한 인공기를 게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규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비록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했다 하더라도 인공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상징물인 데다가 반미통일을 주장하면서 게양한 점,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할때 반국가단체인 북한활동에 동조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61) 판결문에 실시된 구체적인 ‘범범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망인의 행적을 정당화하는 등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테러활동 등을 벌일 것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의 추도문과 망 윤기남의 약력, 장례위원 명단 등의 내용으로 된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이라는 제하의 문서초안을 작성하여 팜플렛을 제작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사실, 둘째, “1995.2.26.조선대학교 부속병원 영안실에 있는 윤기남의 빈소 입구에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이라는 플래카드(폭60cm×길이6m)를 부착하고, 같은날 광주 망월동 소재 5.18묘역과 인접한 부근에서 미리 제작한 폭 60센티미터, 길이 6미터 정도의 검정 바탕에 흰글씨로 <근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조>라고 쓴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위 강신석의 기도 등으로 하관식을 진행함으로써 ... 망 윤기남의 활동을 민중의 해방을 위한 활동 내지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애국적인 활동이라고 미화, 찬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광환, 사건 95고단 799, 1995.5.30.

162) 경·검찰은 기세문씨에게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를 적용하였는데, 자택 수색시 발견한 「비트」(김세원 저), 황석영의 북한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와 그외 광주전남연합 및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행한 유인물등을 취득한 혐의를 둔 것이다.

163) <장기수 장례위원장 보안법 구속>, 「한겨레신문」, 1995년 3월 13일치 기사

④ 6.15정상회담 축하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린 현수막에 동조죄 적용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축하 하기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려 부착한 것이 “북한을 동조”한 행위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홍익대생 이윤진씨는 2002년 11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공소사실에 나타난 이씨의 혐의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6월 13일 오후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홍익대 조국통일위원회 명의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를 제작, 부착하기로 결정하고, 하얀 대형천(가로 2.5m, 세로 약4미터)에 페인트로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리고 ‘철책을 넘어 이념 사상을 넘어 민족대단결!’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홍익대학교 정문 옆에 부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하여 홍익대 정문 옆에 부착한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가 그려진 걸개그림’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안 논리에 의한 것이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에는 남북통일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때 북측 응원단의 남측 방문, 그리고 육로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 남과 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어떤 경우는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북의 국기를 그려 게시한 것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⑤ 빨치산 추모 비문에 이적표현물 적용

2001년 11월, 광주지검은 빨치산 투쟁을 전개한 인민유격대의 활동을 미화 찬양하는 표석 비문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기세문, 유락진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기소하고, 이명남씨를 기소유예 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2001년 3월 중순경, 백운산 디딜방아터에 표석을 설치하기 위해 표석에 들어갈 글귀를 작성하였고, 유씨는 이 글귀를 표석에 새길 수 있도록 붓글씨로 작성하였으며, 이명남씨는 이들에게 표석비문 제작업체를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문제삼은 표석의 글귀는 전면에 들어갈 “겨레에 바친 녀 하나된 조국의 찬란한 내일을 위해 영원한 깃발로 지켜서리라”와 후면의 “백운산은 1948년 여순 인민항쟁 시기와 1950년에서 1955년까지 활동한 전남인민유격대의 근거지였으며 격전지였다. 여기 88비트의 능선과 골짜기는 전남도당, 유격대 총 사령부 인민위원회 등 각급 중요기관과 박영달 도당위원장, 김선우 사령관, 김백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밀영지였으며 2000여 빨치산의 열과 땀이 묻히고 피가 적셔있는 곳이다. 2001년 4월 8일, 산자의 뜻을 모아” 라는 글로, 이 글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공산혁명을 위해 빨치산 투쟁을 전개한 인민유격대의 활동을 미화 찬양하는 좌익표현물”이고, 따라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유죄판결¹⁶⁴⁾하였다.

164) 광주지방법원(윤상도 판사) 2002.5.30. 판결 2001고단4981

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한 1990년 중후반 이후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조항(제7조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컴퓨터 통신이 사용되던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처벌을 하는 경향이었으나(현철동 사건 등),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내용을 문제삼아(전지윤, 이재윤, 김강필 사건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조항을 적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¹⁶⁵⁾은 누구든지 손쉽게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환경(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곧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확장을 요구¹⁶⁶⁾한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토론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열린 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인터넷 공간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론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쌍방향식 토론 공간이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의 전제가 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일반 표현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현존 헌법질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사이버 공간속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는 명백히 자의적인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이는 곧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저해하기 위해 “자체 검열”의 효과를 노리는 행위로 보인다.

165) 인터넷에 대하여 미국의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한 미연방항소법원 제3순회재판소는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에 걸친 인간 소통의 새로운 매체다”라고 하였다. 황승흠,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http://myhome.netsgo.com/shwang/>

166)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완, <불온통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창간호, 한국언론법학회, 2002.10. 참조. 즉,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다대다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쌍방향 매체이고,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체가 뚜렷이 없다는 점,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권이 높아진 점, 매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기준에 가장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불러일으킨 인터넷의 특질에 대해서는 장여경,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2002년 제주인권학술회의 자료집」. 참조

여기서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컴퓨터 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첫 구속사례 - 현철동 사건

대검찰청公安부는 1993년 11월 18일 데이콤의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에 게재된 진보적 학술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어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1993년 12월 7일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실은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문제삼은 글은 무크지 「우리사상」 3호(새벽별출판사 간)에 실린 “사노맹 중앙재건위원회 입장”과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입장”등의 글을 천리안 게시판에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컴퓨터 통신에 올린 글이 문제돼 구속된 첫 사례였다¹⁶⁷⁾.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4.5.10.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내보낸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토론 자료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¹⁶⁸⁾하나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고 편향돼 있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다”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노맹의 입장을 그대로 통신망을 통해 내보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¹⁶⁹⁾.

② 토론을 돕고자 올린 글에 이적목적이 있다며 이적표현물죄 적용한 통신인 사건

한편 김씨의 구속 이후 현대철학동호회 임시회장을 맡은 김영선씨(방위병)가 3월 9일 기무사에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현철동 게시판에 “나는 아나키스트다”를 게재하고, 천리안 토론실(forum) 중 “남한사회주의 운동에 관하여” 내용을 갈무리하여 보관하고, ‘신문모니터 동호회’에서 “새로운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을 갈무리하여 보관한 사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문제삼은 글 가운데 “나는 아나키스트다”라는 제하의 글은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이란 제목으로 발행된 서적의 저자 머리말과 도입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김

167) PC통신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사건이 발생하면서 컴퓨터 통신상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즉,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진 글이 일반적인 문서의 개념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전달행위를 기존 법개념상의 ‘반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다. 김도형,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9년 6·7월호, 민변 ; <천리안 철학동호회 수사 법률논란>, 「한겨레신문」 1993.11.19.기사 참조

168) 김씨는 “현대철학동호회는 컴퓨터 게시판에 각종 철학사조를 소개”하고 있다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도, 푸코의 분석철학도, 실증주의 철학 등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었는데 왜 이 글만 문제 삼는가”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노맹의 글은 이미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실은 것은 이적목적이 있다며 유죄판결한 것이다.

169) 「한겨레신문」, 1994년 5월 11일치 기사 참조

씨는 글을 게재할 당시 “나는 아나키즘에 동의하므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며 아나키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또한 사라져버린 조류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씌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적목적의 인정하여 유죄판결하고 말았다.

③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공산당선언> 올린 네티즌, 법원에서 무죄판결

건국대 학생인 진상호(현철동 운영위원)씨는 1993년 9월 천리안 내의 철학학술연구전문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오다가 문서자료실에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의 전문을 게재하였는데, 이것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의 이적표현물 반포행위”가 되어 1994년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1995년 5월 17일 열린 항소심(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 김영기 판사)에서는 무죄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공산당선언>은 발표된지 140여년이 지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상실한채 역사적 고전이 되었고, 현재 각급 도서관에서 쉽게 대출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출판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씨의 행위도 이적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¹⁷⁰⁾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진씨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④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김일성 신년사>를 올린 이창렬 구속사건

경찰은 1994년, 천리안의 사회비평모임 희망터 게시판에 오봉옥씨의 시 <붉은산 검은피>의 전문을 게재하고, <1994년 김일성 신년사>와 <현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조직과제>라는 글을 게재한 희망터 회원 이창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런데 <김일성 신년사>는 내외통신이 보도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도, 유독 이씨에게 “이적목적”을 추정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적 기준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170) 서울지방법원 94노3827호, 1995.5.17.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산당선언>의 내용이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적소유 폐지를 주장하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상충되고 계급투쟁적 시각에서 남한의 공산화를 꾀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응 맥락을 같이 하고는 있음. 그러나 <공산당 선언>은 발표된지 140여년이나 지나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상실한채 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적 고전이 되었음. 또한 <공산당 선언> 당시의 초기 공산주의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공산주의와 현저하게 상이하고, <공산당 선언>은 현재 각급 도서관에서 쉽게 대출이 가능하며 법문사 등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진씨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적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검찰이 <공산당선언>에 대해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표현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표현물”로 기소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한다. 대검찰청,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343쪽 각주 참조

법원은 “기존의 언론사 등에서 보도한 내용이라도 그중 일부를 특정목적으로 발췌하는 것은 이적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⑤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린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개인의견 처벌

1996년 9월 18일, 북한 잠수함의 출현으로 인해 정국은 ‘안보태세무장’ 논리로 뒤덮혔고 남북관계는 다시 초긴장상태로 변했다. 10월 7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전면전 불사’를 천명했고 야당총재들도 ‘안보공조’ 태세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안분위기 속에서 무장공비 사건에 대해 개인의견을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린 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1996년 10월 31일, “PC통신을 통해 강릉 무장공비 사건이 조작극이라는 등의 통신문을 게재한 33명을 30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힌 다음 31일 컴퓨터통신 게시판에서 강릉 무장간첩 사건이 조작극일 가능성 따위를 제기한 윤석진(서강대 사학술)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로 구속했다.

윤씨는 자신의 ID(OLDGUN)를 이용해 9. 18. 동해에 무장공비가 출현한 다음날인 9월 19일 PC통신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그들은 무장간첩인가?”라는 제목의 글¹⁷¹⁾을 올렸는데, 검찰은 이 글이 “무장간첩 침투활동을 고무하고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 공산집단의 상투적인 조작극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위 게시판에 게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반포”했다며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이 글이 게재될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글은 당시 중앙일간지의 보도 논조¹⁷²⁾와 비슷

171) 윤씨가 PC통신에 올린 글은 “무장간첩이라...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그들이 무장간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11명이 권총 1정이면 그들을 과연 무장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중략) 가슴 아프다... 어쨌든 11명이 집단자살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그들도 가족이 있을텐데... 어쨌든 그들은 아직 우리 사람들을 한사람도 해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 내가 그들을 사실 확인도 안하고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

172) 당시 중앙일간지에 실린 무장간첩 관련 기사내용을 살펴보자.

“군 당국은 이들이 무력도발 침투요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간첩이 아닌 공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공비는 커녕 간첩으로서도 수준미달’이라고 할 만큼 엉성하기 짝이 없어 갈수록 의혹을 키우고 있다.....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너무 엉성하고 암전했다.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진짜 특수 요원들의 도피를 도와주기 위해 20여명의 비핵심이 희생양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억지에 가깝다.”(「조선일보」 9.21자)

“잠수정이 침투중 좌초된 것인지, 훈련중 좌초된 것인지를 좀더 조사해봐야 할 것” - 18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보고서 이양호 국방장관 발언(「한겨레신문」 9.19자)

“한국군 지도부는 북한요원들이 무장간첩인지, 통상적인 훈련 도중 좌초한 것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겨레신문」 9.20자, CNN 인용보도)

이상의 보도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적어도 23일(충격전, 무장간첩 생포)전까지는 중앙 일간지

하게 ‘무장’간첩의 ‘무장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을 뿐이다. 특히 북한의 공식적 입장이 9월 23일 ‘인민무력부’ 성명발표(9.24.신문보도)를 통해 비로소 나타났던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은 윤씨가 이 글을 통신에 올린지 40여일이 지난 후에 문제를 삼아 구속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북한잠수함 출현사건 이후 조성된 공안분위기에 편승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 박찬)은 1997년 4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글을 게시판에 올린 시점이 무장공비사건 관련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또 “윤씨의 글이 나름대로 근거를 대면서 추측, 가정, 의문 등의 표현법을 사용해 무장공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상투적인 조작극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심 재판부(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 정배훈 부장판사)는 1998년 8월 12일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 고무찬양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윤씨가 「변증법적 유물론」 등 5권의 책을 보관한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⑥ 인터넷에 올린 대학교재에 이적표현물 적용

인터넷에 올린 전공수업교재 내용의 일부 글도 이적표현물 적용을 받았다. 한양대 사학과 학생인 하영준씨는 PC통신 하이텔 ‘인터내셔널’ 동호회 게시판에 1997년 6월경부터 「Race and Class」(민족과 계급, 캘리니코스 저), 「광란의 자본주의」(크리스 하먼 저, 책갈피 출판사) 등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하여 게시했다 하여 98년 4월 13일 구속되었다.

그러나 「Race and Class」는 하씨가 재학중인 한양대 사학과 전공수업교재로 이용되었던 책으로 담당교수인 임지현 교수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강의계획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서유럽 각국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인종문제를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사적으로 접근한 캘리니코스의 「Race and Class」를 기본교재로 삼아 학생들에게 윤독을 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씨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문연구를 위해 위 서적들을 탐독하거나 소지했다고 주장¹⁷³⁾했으나 재판부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목적의 이적표현물”로 판

역시 ‘무장공비’ 사건에 대해 PC통신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다양한 정보들과 의견들이 넘쳐나며, 한 의견과 그에 대한 반론, 토론들이 항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 공간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비판했다.

결, 하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⑦ 영상기록에 대한 이적적용, 인터넷 방송 ‘청춘’ 사건

2000년 10월 24일 인터넷 방송 ‘청춘’의 대표 윤여창씨와 제작팀장 신봉구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에 체포, 구속되었다. 인터넷 방송 ‘청춘’을 개국하여 제8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한총련 출범식 장면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고, ‘96 연대항쟁’ 동영상도 게시했으며, 인터넷에서 취득한 <반미자료집> 등의 자료를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제작,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제8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96년 연대항쟁’, 제8기 한총련 출범식 동영상을 모두 이적표현물로 기소했다. 그러나 위 행사는 인터넷방송 ‘청춘’ 뿐 아니라 여타 공중파 방송 등 언론매체가 취재 보도한 것으로 영상기록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유독 ‘청춘’만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달라지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애초 경찰은 윤씨 등에 대해 “8기 한총련 문화국장 및 국원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 조직원인 자들”로 단정하고 ‘청춘’이 한총련 산하 조직일 것이라고 예단¹⁷⁴⁾하여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전자우편, 전화 등 장기간에 걸친 감청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적용, 구속·기소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사례이다. 또한 인터넷 방송 ‘청춘’이 기존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네티즌들이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차원에서 동영상을 올린 것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7단독(이한주 판사)은 윤씨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⑧ 인터넷 공간에 올린 조선일보 비판글, 최후진술문에 이적표현물 적용

173) 또한 하씨는 문제가 된 위 책들이 시내 유명서적 어디에서나 판매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대학 도서관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는 점을 들어 이적표현물 규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씨는 교보문고에서 사들인 이 책들의 영수증과 국회도서관에서 대여한 기록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Race and Class」의 저자 Alex Callinicos(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교수는 97년 3월 35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초청으로 고려대 대강당에서 강연을 한 바 있으며 김수행(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견서를 통해 “캘리니코스과 크리스 하먼의 저서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말로 번역되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저서나 논문을 읽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174) 경찰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신봉구 등은 8기 「한총련」 문화국장 및 국원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의 조직원인 자들으로써, 신대방1동 방을 한총련 문화국 조직의 활동근거지로 입주하여, 이적단체인 「한총련」 조직의 선전·선동 전용매체인 인터넷 방송국 ‘청춘’ 개설을 추진중에 있는 자들”로 적시되어 있다.

성공회대생 전지윤(02년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장)씨는 인터넷상의 다음(Daum) 카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2002년 5월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의정부) 수사관들에게 체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씨가 2000년 11월경부터 위 게시판에 올린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 문안”, “쫓선은 꺼져라”, “나의 과거전력과 의도”, “아셈유감 비판”, “마혁사 3, 4장 발제문”, “2002년 겨울 다함께 토론광장 기획서”, “실천활동 길라잡이” 등 7개의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 구속당시 경찰은 이 글외에도 월간 <다함께>에 투고한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제하의 글과 지난 1999년 전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재판정에서의 최후진술문에 대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이 글들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남용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문제삼았던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 제하의 글은 당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병역비리를 비판했던 글¹⁷⁵⁾이고, “나의 과거전력과 의도” 제하의 글은 최후진술문으로, 전씨는 위 카페 게시판에 한 학생이 자신의 운동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자신의 운동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전 사건 최후진술문¹⁷⁶⁾을 게시판에 올렸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자기변론권 행사를 국가보안법으로 문제삼은 것은 유례 없는 일이며 당시 법원은 전씨의 최후진술 내용까지 포함해 선고를 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이 부분을 “선전선동”이 아닌, “자신의 사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주장”으로 정정함으로써 전씨의 사상을 문제삼았다.

이렇듯 수사기관은 전씨가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모든 글들을 문제삼았는데, 검경이 문제삼은 글을 검토해 볼 때, 글 전체의 맥락이나 작성의도는 배제한 채, 몇몇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문제삼아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유게시판에 쓴 “쫓선은 꺼져라”는 조선일보를 비판한 글¹⁷⁷⁾임에도 검찰은 “마르크

175) 전씨는 이 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고위공직자와 그 자식뿐만 아니라 이들과 정치자금 등으로 연결된 지역유지, 기업인, 언론사 간부, 군 기관 등 거대하게 얹히고 설킨 병역비리의 부패사슬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이 글이 “사회변혁을 주장했다”며 이적표현물로 구속하였던 것이다.

176) 그런데 위 글 중 “저는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봉건제가 그랬듯이 자본주의도 영원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추장스럽고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더 발전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라는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177) 전씨는 그 글에서 “우리가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며 극우적 이념을 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일보와의 이념투쟁을 결코 회

스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기소했다. 이 글은 “조선일보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위를 고발하는 취지”로 쓴 것인데, 이것을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정당화’한 글이라고 끼워 맞춘 것은 검경이 글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전씨가 게시판에 올린 “토론광장 기획서”에 대해서도 “반자본주의 운동, 반전운동, 민중투쟁의 시각에서 한국사회의 반자본주의 체제, 반정부적인 토론의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사회주의 계급론적 사상과 전략상의 주장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글은 2002년 1월, <다함께>가 주최한 토론광장 ‘변혁인가 야만인가’ 행사 기획서로서 이 행사는 홍세화, 김수행(서울대 교수),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씨 등이 강사로 참가하여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 전쟁, 세계화와 환경문제, 남북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린 행사였다. 전씨는 이 행사에 시민사회단체의 후원을 받기 위하여 이 문서를 게시하였던 것이다. 실제 이 후원제안에 따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행사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씨가 위 게시판에 올린 학교내 대자보 문안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이라고 기소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자치활동마저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전씨가 글을 올린 인터넷상의 카페는 <성공회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카페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논쟁을 펼쳐온 공개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이다. 카페에 등록되어 있는 이들은 모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당원)으로서, 일방적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장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토론과 논쟁, 의사소통의 공간에 대해서마저 경찰이 일상적으로 사찰을 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다.

이 사건은 이적표현물 조항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터무니없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며, 자율적인 토론공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민주주의 기본핵심인 토론문화를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에 대한 기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다.

⑨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글에 이적표현물 적용

이재윤(인쇄업)씨는 2002년 3월 1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수사관에 의해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 카페 <북한사랑>, <통일로 가는 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유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직접 작성(4종) 하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한 자료를 전재(20여종)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 또는 제작 및 반포)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직접 작성하여 제시

피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조선일보와 선명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보며 노동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문제의 글들은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다른 회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었다. 따라서 대화내용이 “역대정권이 빨갱이로 잡아가서 고문하고 폭행하고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여 좌경용공으로 몰아버려서...” 라는 등의 내용으로, 매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글이어서 정제되지 않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¹⁷⁸⁾은 이 카페를 1년에 걸쳐 ‘내사¹⁷⁹⁾’한 끝에, 인터넷의 특성상 남아있는 기록을 증거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토론(기록)을 검열하여, 정제되지 않은 대화마저 처벌하는 것은 사인간의 일상적인 대화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씨는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신년사, 북한의 정강, 노동신문 기사 또는 김남식, 한호석 등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쓴 글 등 20여종의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위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시 게시(일명 ‘퍼온 글’)한 것으로 처벌받았는데,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카페에서 발생한 일들을 모두 이적행위로 단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⑩ 수배자 학생 붙잡기 위해 인터넷 카페 내사하던 경찰, 카페 운영자를 구속

이성우(고려대 대학원생)씨는 2002년 5월 3일, 조치원 경찰서 형사들에게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인터넷 카페 <문예비평회>와 <범민련전사>를 개설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다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후, 이를 위 홈페이지들에 게시하여 각 반포하고, <8기 한총련자료집> 등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이적표현물은 모두 이씨가 작성한 글들이 아니고 다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행위만으로 이적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178) 인터넷 공간에 대한 내사 및 수사는 전 수사기관이 모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까지 인터넷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였는데, 국정원은 “인터넷을 통한 간첩통신을 색출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학수사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힌바 있다(2000년 11월 3일,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국감보고에서 발언한 내용). 이후로 인터넷상에서 “이적표현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체포된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지태환, 이은경 씨 사건 등).

179)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0조(범죄의 내사) 1항에 따르면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내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의미하는 내사는 그 범위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렇듯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규제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보듯이 국정원은 이씨에 대해 장기간 내사를 해왔는데,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의 ‘내사’는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가 양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내사를 명목으로 한 사찰활동은 언제든지 수행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씨가 조치원경찰서에 체포되기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건수 올리기’ 방편으로 이씨를 무리하게 체포하여 구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씨는 조치원경찰서 형사들에게 체포, 수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조치원경찰서는 한충련 대의원(제7기)으로 1999년부터 수배를 받았던 박재화씨를 붙잡기 위해 박씨가 활동했던 동아리인 <문예비평회> 인터넷 카페를 자주 드나들며 동태를 살펴왔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조치원경찰서가 아닌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에 의해 2001년 체포, 구속되었다. 이에 조치원경찰서는 그 카페 자료실에 올려진 표현물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카페 개설자였던 이성우씨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경찰이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를 내사한다는 명목으로 그 수배자가 속했던 학내 동아리의 인터넷 카페를 장기간동안 내사 하다가 그 수배자와는 무관한 이씨를 이적표현물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⑪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이에게 실형선고

김강필(컴퓨터 프로그래머)씨는 2002년 7월 25일 집 앞에서 서울경찰청 옥인동 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씨는 2001년 12월부터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진 주체사상 논쟁에 실명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글들을 1월 30일부터 7월 1일 까지 여러차례 게시판에 올렸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인터넷 잡지인 <인터넷 백두산>, <통일아리랑> 등을 링크형식으로 첨부하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실명게시판 및 문서자료실 등에 수차례 퍼 올린 점, ②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세계관으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등의 표현물을 위 민주노동당 토론방에서 토론 중에 게시한 점, ③ 「조선노동당략사」 「참된 봄을 부르며」 등의 북한관련 서적이거나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을 적용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 및 반포”했다며 이를 공소사유로 삼았다.

김씨는 검찰의 이같은 공소사실, 즉 <통일아리랑> 관련 글들을 위 게시판에 다시 올린 것은 북한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밀어내기식 글에 항의할 목적”¹⁸⁰⁾이라고 주

180) 즉, 김씨는 통일아리랑 편집부가 위 게시판에 최초로 올린 “<통일아리랑> 4호 수정본”이 주체사상에 비판적이던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 ‘밀어내기식’(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올림으로써 앞서 올린 문서를 점차 뒤로 가게 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것, 결국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지워지자, 그러한 ‘밀어내기식’은 건전한 논쟁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네티즌들의 태도에 항의할 목적”으로 다시 위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김씨는 위 글을 올릴때 ‘밀어내기식 글에 항의하며’라는 글제목을 달았다. 김씨는 자신이 이 논쟁에 참가한 배경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터부를 극복하고 공개적인 담론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주체사상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장했다.

특히 김씨는 토론과정에서 “토론자의 책임성과 토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명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황은 김씨의 토론 참가가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이 아닌, 네티즌으로서 토론문화의 형성을 위한 나름의 책임의식에 따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서울지법)은 김강필씨가 북한 관련 자료를 게시판에 올린 횟수가 많은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찬양고무’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 1년형의 실형을 선고하였다¹⁸¹⁾.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의 사상의 옳고 그름은 형벌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공안당국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네티즌들의 논쟁을 검열하여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논쟁을 통한 사상형성의 자유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일이며, 그것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김씨를 비롯한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의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공권력으로부터의 구속’ 등 불리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실명으로 논쟁에 참여할 만큼 사회의 의식은 열려있으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매우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라. ‘막걸리 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불법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정권은 ‘반공’을 내세워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유린하였으며, 정권이 심어주는 가치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강요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일명 막걸리 반공법, 막걸리 국가보안법 사건이라 할 것이다.

막걸리 반공법의 연원은 1961년 제정된 반공법에서 비롯되었다. 제정 반공법에는 ‘찬양·고무’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찬양·고무·동조 등 의사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이었다. 그런데 찬양·고무·동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기에, 반공법 제4조에 의한 적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반민중들이 술김에 격분으로 또는 농담 삼아 토로한 언동조차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되었는데, 바로 이처럼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빚낸 표현이 ‘막걸리 반공법’ 또는 ‘막걸리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이었다.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불만이라도

181) 재판부의 입장대로 게시판에 자료를 올린 횟수의 많음이 곧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협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또한 주체사상을 따르는 <한민전>과 <구국전선> 등은 공식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그것을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여러 방송매체에서 북한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것이 매우 흔한 현상이 된 현실에서, 단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주체사상 관련 인터넷 잡지를 퍼 나르고 링크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은 과도한 법적용이다.

그것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며, 곧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논리비약, 침소봉대 되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다.

‘막걸리 보안법’ 사건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초보적이고 원천적인 언론자유 유린”¹⁸²⁾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취중이나 꿈속에서라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호의심과 긴장의 생활을 일반국민에게 강요하여, 민주주의의 질식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안당국은 이러한 막걸리 국가보안법마저 북한의 대중동원공작에 관련된 사범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고무·찬양하는 범법행위를 차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일정한 침해적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단가 우발적인 범행 또는 경미한 범죄라는 식의 지극히 간략한 정상론을 이유로 일반사건의 예와 같이 즉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안보의 앞날을 위하여 재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¹⁸³⁾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우발적인 언동으로 인해 ‘침해된 결과’가 없어도 처벌하였다. 이러한 적용양상은 곧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신고’를 떠올리는 강박에 사로잡히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의 의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 막걸리 반공법 사건 사례

다음의 사례는 파출소로 연행된 이들이 경찰 앞에서 격분에 못이겨 한 언동, 술자리에서 술김에 떠든 이야기가 문제가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 사례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1969년 피고인 김쌍근(직업 구두닦이)은 파출소에 연행되어 방범대원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박○○ 도당 개새끼다. 김일성 동무를 지지한다. 김일성은 참 정치를 잘한다. 내가 이렇게 잡혀올 줄 알았다”고 발설하여 북괴를 찬양 : 69고38279 반공법 위반, 재판결과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 1968년 요리사인 김종천 씨는 파출소에 연행되자 “선량한 국민을 왜 못살게 구느냐. 공화당은 공산당만도 못하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살기 좋으니 북한으로 가겠다”고 한 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 피고인 이득춘(직업 다이야 공원)은 주석(酒席)에서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대통령이다.

182)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2」, 역비사, 1992. 100쪽

183) 최대현, 「북괴의 대중동원 공작전술과 이에 관련된 반국가사범 재판결과 분석 고찰」, 『검찰』 1971년 12월호, 46쪽 ; 박원순 앞의책, 100~101쪽 재인용. 이어지는 막걸리 반공법 사례들도 이 자료를 참조했다.

대한민국은 거짓투성이다. 박○○는 싸 죽여야 한다. 이북으로 가자”고 고함을 치는 등 북괴에 동조 : 69고46201 반공법 위반사건, 1심 징역8월 자격정지 8월 / 2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한편 아래의 사례들은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난 이례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희귀한 예일 뿐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수사기관의 기소 자체가 민중의 사소한 표현조차 질식시켰음을 알 수 있다.

△ 1970년 김○○씨는 집을 철거하는 철거반원들을 향해 “김일성이 보다 더한 놈”이라고 발언하여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북괴의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1970년 8월 31일 대법원은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¹⁸⁴⁾했다.

△ 피고인은 예비군훈련통지서를 받으면서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수 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하여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북괴의 허위선전 활동에 동조, 찬양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며 반공법상 제4조1항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 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¹⁸⁵⁾했다.

△경찰관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아주 나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악법인 “빨갱이 법보다 우리나라 법이 나쁘다”고 말한 것이라면 북괴의 찬양고무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1년 12월 28일 선고, 71도제20222호

△ 영문을 읽을 줄 모르는 피고인들이 붉은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도안과 영문자(North Korea, Land of the Free)가 들어있는 잠바를 미군인의 주문에 의하여 제조하여 진열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북한괴뢰집단을 고무·찬양하는 등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71년 5월 24일 선고, 71도 제466호

184) 대법원 1970년 8월 31일 선고 70도제1486호

185) 대법원 1973년 12월 11일 선고 73도제1602호

2) 1980년 이후 발생한 ‘막걸리 보안법’ 사건 사례¹⁸⁶⁾

‘막걸리 보안법’은 1980년 중반까지도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술 먹고 노상에 누워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3차례, 김정일 만세 2차례

“1986년 5월30일 새벽 2시께 서대문구 남가좌동 ㄷ빌딩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술기운이 올라 같은 장소에 있는 남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 같은 장소에 있는 빌딩 야간 경비원이 시비를 말리던 중 갑자기 큰 소리로 ‘김대중 만세’라고 외친 뒤, 노상에 드러누워 두팔을 어깨 위로 번쩍 올리면서 ‘김정일 만세’를 3차례, ‘김일성 만세’를 2차례 반복해 고창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수괴 김일성과 그 후계자 김정일을 찬양·고무하여 그들을 이롭게 한 것임.” (86년 6월 불구속 입건된 도아무개(당시 32살)씨 송치기록)

② 술에 취해 버스안에서 “나는 공산당이다 잡아넣어라”고 발언

“1986년 11월22일 낮 12시께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사찰에서 열린 친형의 칠순 잔치에 참석해 소주 1병을 마시고 놀다가 오후 5시께 귀가하기 위해 돈암동에서 시내버스로 홍제동 정류장에 내려, 다시 서울역과 금촌간 운행하는 버스에 요금을 내지 않고 승차하자 운전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니 ‘운전이나 잘하라’고 소리치며 ‘요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술주정을 하다가, 승객 30여명을 향해 ‘나는 공산당이다’ ‘왜 공산당이 나쁘냐. 공산당을 잡는 놈이 더 나쁜 놈들이다’ ‘왜 데모하는 학생들을 잡아넣느냐. 잡아넣는 놈이 더 나쁘다’ ‘김일성은 위대한 인물이다’ ‘잡아넣어라 이 새끼들아’ ‘박 정권이 나쁘다더니 현 정권은 더 나쁜 놈들이다’ 라고 10여분간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괴 공산당과 그 수괴인 김일성을 찬양고무·동조해 그들을 이롭게 한 자임.”

(86년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당시 55살)씨 송치기록)

③ 술에 취해 다방안에서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

1986년 11월29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만리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강아무개(당시 45살)씨는 부근 구멍가게에서 빈 속에 깡소주를 들이부었다. ... 취기는 어느새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다. 몇시간 뒤 중구 정동의 한 다방에 나타난 강씨는 소리지르기 시작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게 해달라. 김일성은 정치 1인자다.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갈매기다.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 약속한 시간에 넘어가야 한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별것 아니다”며 20여분간 소란을 벌인 끝에 경찰에 연행된 그는 며칠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막걸리 반공법’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은 이론적 근거를 갖춘 정교한 발언이 아

186) 이하 사례는 <사람과 사회-부어라 마셔라 족쳐라>, 정인환, 「한겨레21」 406호, 2002년 4월 24일, 기사 참조. 이 기사는 2002년 「한겨레21」이 입수한, 한 경찰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기록에 의한 것이다.

나라, 취중이나 격분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화끈에 발설한 것들로 그 내용이 단순하고 우발적인 가창 또는 고함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려는 인식조차 없는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처벌할 가치가 없는 사건을 끊임없이 문제삼아 처벌해온 검찰과 사법부의 관행은 언론의 자유와 그것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의 질식을 가져왔던 것¹⁸⁷⁾이다.

3) 1990년 이후 ‘막걸리보안법’ 사건 사례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노골적인 ‘막걸리 보안법’ 사건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부대 내에서 나눈 이야기가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상 찬양, 동조죄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 군검찰은 이것만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발언의 이적목적¹⁸⁸⁾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군입대전 소지하였던 책자를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가령 1993년 6월, 군기무사는 제대일을 얼마 남기지 않는 군인(병장) 박영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전방 GOP에서 금강산 경치에 대해 부러운 말을 몇마디 하면서 “금강산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가 적용된 것이다. 이외에도 박영생씨에게는 시내서점에서 판매한 책을 소지했다며 이적표현물 죄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군부대 안에서 동료 신병들과 나눈 이야기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가 되어 군입대 4개월째인 신병이 구속기소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① 군부대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현역군인 사건

제17보병사단 소속 이병 이영규씨는 2002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고무찬양)로 군기무사에 구속되었다. 공소사실에 나타난 이씨의 혐의사실은 2002년 6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소속 부대 신병 교육대 막사 내무실 등에서 훈령병인 동료들과 휴식 등을 취하는 자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축출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6.25전쟁 북침설, 미국의 남한 식민지론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군검찰이 문제삼은 이씨의 발언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불바다가 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민족공멸을 뜻하는 것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6.25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일 가능성이 있다.... 민족분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으며 우리의 적은 북녘이 아닌 미국이다”, “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반드시 연방제로 되어야 한다. 6.15남북정상회담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남측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지향해서 통일을 하면 된다”, “군사적으로 예측, 자주적이지 못한 미국 식민지인 땅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미국의 전쟁놀이에 희생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만약 최전방에 자대를 배치 받았다면 북녘 땅을 밟았을지도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씨는 훈련이 끝난 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별다른 목적없이

187) 박원순, 앞의책, 118쪽

이야기 한 것인데, 국가보안법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는 것은 군인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하나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닐 수 없다¹⁸⁸⁾.

188) 한편 이씨에게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가 적용되었는데 「다시쓰는 한국현대사2, 3」, 「변증법적 유물론」, 「임노동과 자본」, 「참된시작」,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 「강철서신」, 「아리랑」, 「우리사상의 혁명」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들은 군수사관들이 이씨를 체포한 직후 이씨의 고향집을 압수수색하여 발견한 것이었다. 군검찰은 이씨가 입대전부터 위 이적표현물을 탐독하였으며, 따라서 군부대 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적목적을 추정하여 기소하였고 군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1-4.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가. 국가보안법과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출판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 토론, 연설, 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고, 출판은 문서, 도화, 사진, 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¹⁸⁹⁾.

표현의 자유 가운데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각 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적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인격발전을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구성원간에 정치,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정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다¹⁹⁰⁾. 특히 민주정치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기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치적, 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⁹¹⁾.

특히 출판의 산물인 서적은 '학문 사상의 체계적 외화물'이라는 성격을 가지는데, 출판의 자유는 학문,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조건¹⁹²⁾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 가치를 지니므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제한의 경우에도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출판에 의하여 야기되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헌법 제37조2항)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 규정은 명확해야 하며 제한방법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출판의 자유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한 것이다¹⁹³⁾.

189)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2. 463~465쪽

190) 김형태, <언론·출판의 자유>,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3집, 1988. 역사비평사, 104~105쪽

191) 권영성, 앞의 책, 463~465쪽

19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비사, 1992, 119쪽

193) 권영성, 앞의 책, 479쪽 참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모두 출판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그럼에도 출판의 자유는 하위법인 경범죄 처벌법,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 긴급조치, 계엄법,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에 의해 쉽게 유린되어 왔다¹⁹⁴⁾. 그 가운데서도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대표적으로 적용되어왔던 조항은 반공법 제4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반공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이적표현물 조항을 이용하여 각종 출판물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나. 출판물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적용실태

1)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1공화국 시기 출판물 탄압 실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전쟁 전후까지 국가보안법¹⁹⁵⁾에 의해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한 출판물은 좌익계열의 출판물 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전쟁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까지 남한 사회에 존재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하려 했던 좌익세력의 이데올로기 투쟁에 대한 규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⁹⁶⁾.

제 1공화국의 출판 통제 정책의 일관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산주의 계열의 저작물-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등의 저작반입, 번역 금지 ② 월북(혹은 남북) 좌익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출판금지-일제때의 작품이나 순수문학에 대해서도 적용
- ③ 공산권 작가 작품-고리끼의 「어머니」, 파스테르나크 「의사 지바고」, 미하일 솔로호프 「고요한 돈강」 등 ④ 중립화 이론에 관한 작품 ⑤ 지방색을 부추키는 작품 등의 출

194) 가령 5공화국 시기에서는 사전검열, 간행물 내용수정 요구, 판매중지 종용, 세무사찰, 압수수색, 출판사 등록의 취소와 신규등록 규제, 경범죄처벌법상의 '유언비어유포'죄를 적용한 구류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등 출판사 및 출판인, 저자에 대한 탄압이 행해진 한편, 납본필증 미교부에 의한 판금, 판매중지 종용, 서점에 대한 탄압, 광고기회의 봉쇄 등 도서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탄압이 행해짐으로써 실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입체적 출판탄압이 자행되기도 했다.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출판탄압백서」 1987.6.10, 머리말 ; 박원순, 앞의책, 각주 (3) 재인용

195) 이 당시 출판물에 적용되었던 법조항은 제정 국가보안법 제3조(2조의 목적 또는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을 협의, 책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이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 바로 2.4파동의 3차 개정법률이었다. 3차 개정에서는 제17조(약속, 협의, 선동, 선전 등) 3항(제6조 내지 제8조(결사·집단의 구성, 단체의 구성, 군사단체의 구성)의 결사, 집단 또는 단체의 목적인 사항을 선전하기 위하여 문서, 녹음반, 도서 기타 표현물을 제작, 복사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신설함으로써 출판, 언론 등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법체계를 마련한다.

196) 이병량, <국가의 사상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 출판통제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이 시기에는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일제시대 이후 내려온 “광무신문지법”이나 미군정 법령등이 적용되기도 했다.

판을 금지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식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성의 모든 해외출판물의 국내출판이 불허되는 등 정부의 지나치게 경색된 반공문화정책 때문에, 제1공화국의 시기에는 오히려 금서가 될 만한 책이 별로 없었고, 서적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도 비교적 적었다¹⁹⁷⁾.

반면 1공화국의 시기에는 “필화사건”으로 지칭되는 언론에 대한 규제가 강했었는데, 집권 말기 <경향신문>의 폐간으로 이어진 언론규제는 주로 민주당과의 권력 다툼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언론 필화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을 반공이라는 굴레를 씌워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⁹⁸⁾.

2) 박정희 정권 시기 출판물 탄압 실태

한편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공법’을 제정함으로써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표현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한다. 여기에 적극 활용된 것이 바로 반공법 제4조¹⁹⁹⁾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시기에는 국가보안법 보다 반공법이 훨씬 더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바로 반공법 4조의 남용에 따른 것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반공법)이 표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안점으로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유신시기는 온갖 법적, 탈법적 방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했던 시기인데,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5년 5월 발동한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출판물에 대한 통제정책을 수행한다.

긴급조치는 발동직후부터 15종의 출판물을 판금 조치하는 등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10.26에 이르기까지 50여종의 출판물이 ‘불온’을 이유로 이것에 의하여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에 의한 출판 탄압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통일문제나 공산권 국가의 실상에 관한 내용, 북한과 연관된 내용,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학술서적 등이 집중적으로 반공법의 표적이 되어 탄압을 받았다²⁰⁰⁾.

<표> 억압적 법적기구의 변화(이병량, 107쪽)

197) 김삼웅, 「금서」, 백산서당, 1987년. 71쪽

198) 이병량, 위 논문, 55쪽

199)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 등) 2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보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 박원순, 앞의 책, 132쪽

시기	법적기구	행정기구
1공화국 1948~1960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보안법 3차개정(제17조 약속, 협의, 선동, 선전)	
2공화국 1960~1961	국가보안법 개정, 소위 언론조항 폐지	
5.16이후 3공화국 1961~1972	특별조치법 반공법 제정(제4조 찬양·고무 조항) 출판법	*국가재건최고회의 *중앙정보부 신설
4공화국 1972~1979	긴급조치 9호	
10.26이후 5공화국 1979~1987	국가보안법 개정 반공법 흡수, 제7조 찬양·고무 언론기본법	*계엄사 합수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 *관계기관대책회의(문공부, 경찰 등 불온책자에 대한 유관기관 실무대책반)
6공화국 1987~	국가보안법 개정(7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안합동수사본부(좌익출판물, 유인물 대책위원회)

3) 제5공화국 출판탄압 실태

제5공화국은 이전에 비해 확대된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직면하여 법적기구와 행정적 억압 기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반공법의 흡수를 통한 국가보안법의 제정(제7조 찬양·고무 조항), 안전기획부, 관계기관 대책위원회를 통한 출판물의 통제는 1985년 이후 ‘금서사태’²⁰¹⁾라는 사회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1985년 2.12 총선 직후부터 민주화운동세력은 대정부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는데, 이에 대하여 군사정권은 탄압을 한 단계 높여 이른바 ‘좌경·용공’으로 사회운동을 매도하면서 본격적인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탄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제반 사회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남용이 급속히 증대되었다. 출판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 압수수색 사례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 였다.

1985년 5월 1일 문공부와 경찰이 합동으로 “이념서적 및 불법유인물”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서 대학가 주변의 서점을 대상으로 풀빛출판사 등 23개 출판사의 단행본 50여종과 각

201) 이병량, 위 논문, 109쪽

단체의 유인물 46종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연행해 간 것을 계기로 하여 정부의 종래의 출판정책은 일변하였다. 위 조치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같은달 9일 문공부와 경찰은 다시 “이념서적 및 불온유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압수 대상서적 및 유인물의 종류를 306종으로 확대하고 출판사, 인쇄소 등 28개업소에 대한 일제수사를 시작하였다. 압수대상 서적들 중 다수는 문공부에 정식 납본절차를 필한 후 출판된 서적들이었으며 또 개중에는 국내외에서 널리 대학교재로 사용되고 있거나 각 전공분야의 필독서로 인정되고 있는 학술서적, 및 좌경·용공 이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대변한 내용의 출판물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²⁰²⁾. 이러한 도서 및 유인물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5공화국 말기까지 이어져, 출판물에 대한 압수영장이 1985년에 183건, 1986년에 207건, 1987년 82건이나 발부될 만큼 압수수색이 극에 달하였다²⁰³⁾.

또한 5공화국의 출판의 자유 탄압양상은 출판사,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뿐 아니라 출판사 대표, 서적상을 구속하는 데 까지 이른다.

1985년 8월, 실천문학사에서 발행하는 부정기 간행물 「민중교육」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씨와 필자 김진경(교사), 윤재철(교사)씨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1987년 4월까지 출판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출판사 대표, 편집부원, 필자 및 역자, 서점상은 29명에 달했다.

5공화국 시기의 출판사 대표 및 서적상에 대한 구속현황²⁰⁴⁾은 다음과 같다.

① 1987년 이후 출판사 대표 및 편집부원

1985. 8. 송기원(실천문학사 주간), 무크 『민중교육』 발간

1986. 3. 이범(백산서당 대표), 출판기획실 다산·보임 사건

1986. 5. 박윤배(거름 대표), 『불세비키와 러시아 혁명』 I·II·III 발간

1986. 7. 정동익(아침 대표)·박태호(기획위원)·위성부(편집국장)·강성모(동녘 편집위원),

202) 대한변협, 「1985년 인권보고서」, 1986

203) 보통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4호(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이나 7조4항(허위사실 날조, 유포 또는 사실 왜곡전파)위반 혐의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가 하위법규인 법률등에 의해 본질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1982년부터 1987년 사이에 출판사나 제작처를 수색, 압수해 간 서적은 7만여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공동대책위원회가 편집하고 민중사에서 제작중이던 <고문·성고문1> 2천부가 영장없이 압수된 것을 비롯, 수십회에 걸쳐 압수, 수색이 행해졌고, 1988년에도 대표적인 예로 도서출판 남풍 서울사무소에서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1천부를 압수하였으며, 다락방, 올, 오늘의 책, 지평, 창조, 젊은예수, 열린글방, 풀무질 등의 서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김형태, <언론출판의 자유>, 「1988년 인권보고서」, 대한변협, 역비사, 1989. 127쪽 참조

204)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출판탄압백서」, 1987년 6월, 133~143쪽의 출판탄압 관계일지에서 작성. 이밖에 불구속 입건 사례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는 구속현황만 다루었다.

- 『원전 공산주의 대계』 (극동문제연구소 발간) 소지(출판기획 참고용)
1986. 10. 고규태(광주 편집부장), 『마르크스 자본론 해설』 편집·발간
1986. 12. 신흥범(두레 대표), 『보도지침』 제작
1986. 12. 이민섭(거름 편집부원), 『인민민주주의 연구』 번역원고 소지
1987. 2. 나병식(풀빛 대표), 『한국민중사』 I · II 발간
1987. 3. 김준묵(미래사 대표), 『러시아 농민운동』 발간
1987. 3. 정병국(예림기획 대표), 『분단을 뛰어넘어』 복제판 발간
1987. 3. 정성현(청년사 대표), 『알기 쉬운 철학』 발간 기도
1987. 4. 강정철(거름 편집부장), 『노동자의 철학』 I · II,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I · II
편집·발간
1987. 4. 김영호(녹두 대표)·신행식(편집부장), 『세계철학사』 I · II · III, 『정치경제학원론』,
『녹두서평』 I 발간
1987. 4. 김홍범(인간사 주간)·이만근(편집부장), 『마르크스 철학사상의 기원』 발간 기도
1987. 4. 윤후덕(세계 대표), 『강좌철학』 I · II, 『경제사 학습』 발간
1987. 4. 이건복(동녘 대표), 『클라라 체트킨 선집』 발간

필자·역자

1985. 8. 17 김진경(교사)·윤재철(교사), 『민중교육』 지 기고

서점상

1986. 8. 12 김현(이어도), ‘불온서적’ 판매혐의
1986. 8. 12 김태문(다락방), ‘불온서적’ 판매혐의
1986. 8. 12 이상호(겨레터), ‘불온서적’ 판매혐의
1987. 1. 5 김원표(한마당), ‘불온서적’ 판매혐의
1987. 5. 29 장창호(한마당), ‘불온서적’ 판매혐의

6·29 선언 이후부터 이듬해 2월 제6공화국으로 접어들 때까지의 서점 및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과 출판사 대표 및 직원, 역자 및 필자, 서점주인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현황은 다음과 같다²⁰⁵⁾.

② 6·29 선언 이후 출판사 대표 및 직원 구속

1987. 9. 김영식(지평 대표), 『분단을 뛰어넘어』 발간
1987. 11. 박종규(지명 대표)·유환옥(영업부장)·홍대옥(직원), 『자본론』 (마르크스), 『레닌독본』 등 발간

205)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 자료, 1988에서 작성

1987. 12. 여국동(인간사랑 대표)

1988. 1. 이상경(친구 대표), 『마르크스주의 철학사전』, 『사이공의 흰 옷』 (구엔반 붕)
발간

필자·역자

1987. 9. 28 박기주, 『정치경제학 원론』 (녹두) 번역

1987. 이상백, 『녹두서평』 (1)(녹두) 게재 「한라산」 저술

서점주인 구속 사례

1987. 11. 14 방은호(풀무질 서점) 『자본』 I-1·2·3, 『자본론 해설』 I·II·III 판매

4) 제6공화국 출판의 자유 침해 실태

6공화국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출판의 자유 침해 사건은 5공화국의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더욱 격화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1989년 4월 공안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시점으로 시작한 공안정국하에서 출판물에 대한 탄압은 극도로 강화되었는데, 4월 9일 공안합수부는 11개 출판사와 전국 296개 서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1종 도서 1만 191권을 압수했다²⁰⁶⁾.

1989년 1월부터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7월까지의 사이에 26명의 출판 관계자가 구속되었고, 출판사 압수수색이 93회, 서점 압수수색이 21회 실시되었다.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7월 이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8월 1일, 정부는 출판물에 대한 정책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대검 산하에 대검공안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부처 관계관을 위원으로 하는 <좌익출판물, 유인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대검 공안담당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2개부처 관계관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출판탄압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행할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출판인 및 서점인의 구속²⁰⁷⁾과 출판사와 서점의 압수수색²⁰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표> 1980년대 구속자 현황(괄호안은 연행자수)

206) 「중앙일보」 1989년 4월 10일자 ; 박원순, 앞의책, 162쪽 재인용

207)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6공화국과 출판탄압>, 1990. 9쪽.

208)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위 자료집, 1990. 14쪽.

연도	구속자	구속자비율	출판인	서점인	기타
1980	2				
1981	4				
1982	0				
1983	0				
1984	0				
1985	1(14)	7.1%	1(6)	0(5)	0(3)
1986	12(68)	17.6%	9(11)	3(53)	0(4)
1987	22(85)	25.9%	19(50)	3(17)	0(18)
1988	10(31)	32.3%	8(26)	2(5)	0(0)
1989	43(79)	55.1%	39(71)	3(5)	1(2)
1990	19(22)	65.5%	14(23)	1(2)	4(4)

<표> 출판사,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횟수-도서권수)

연도	계	출판사	서점
1985	94-39631	55-38094	39-1537
1986	98-12478	7-8278	91-4200
1987	61-26331	21-19759	40-6572
1988	58-10427	8-4386	50-6059
1989	195-46432	121-39941	74-6491
1990	38-81918	15-81737	23-176

이러한 출판물에 대한 압수수색, 출판사 대표 및 서적상에 대한 구속사태는 그 시기 일었던 출판운동의 추이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 광주항쟁이후 민주화운동은 보다 높은 이론적, 조직적 기초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진보적인 이론을 담은 사회과학 서적 출판이 이뤄진다.

위 표 구속자 현황을 살펴보면 1986~1987년, 1989년 그리고 1990년에 출판탄압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시기별 출판물의 양상과 그에 따른 당국의 탄압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주로 제3세계와 서구 좌파 지식인의 저작에 대한 탄압이 판금, 판매 중지 종용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1985~1987년 시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서적 및 원전에 대한 탄압이, 1987년 이후에는 북한바로알기 운동²⁰⁹⁾으로 비롯된 북한관련 출판물과 6월 국민대항쟁, 7, 8월 노동자 대투쟁 등으로 본격

209) 한편 노태우 정권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확산되자 통일논의와 남북한 접촉창구를 일원하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한편,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통일열기를 감안하여 1988년 7.7특별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이후 정부는 북한 자료에 대한 일련의 개방방침을 표명한다. 또한 “1988년 9월 3일부터 북한 및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가 선전목적으로 발행한 명백히 국헌에 위배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산권 자료는 모두 공개하고, <로동신문>과 영상자료를

개시된 민중투쟁과 관련된 책자, 국내 연구 성과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²¹⁰⁾.

제6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출판사 대표 및 직원, 역자 혹은 필자, 서점주인을 구속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6공화국 구속된 출판사 대표 및 직원

1988. 5. 7 정성진(온누리 편집부장), 『좌익소아병과 두가지 전술』 발간
1988. 6. 10 반병찬(남풍 편집부장),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편집·발간
1988. 8. 김종식(전진 대표), 『레닌저작집』 I 발간
1988. 8. 김태경(이론과 실천사 대표), 『자본』 I-1·2·3 발간
1988. 10. 이재선(과학과 사상사 전임 대표), 『해방조선』 발간
1988. 11. 김중수(한울 대표), 『미완의 귀향일기』 상·하 발간
1988. 11. 김문권(진달래 대표),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간
1989. 1. 19 배정규(대동 대표), 『항일무장투쟁사』, 『김일성 선집』 발간
1989. 1. 19 최필승(한마당 대표), 『민중의 바다』 상·하 발간
1989. 1. 19 백용(신학문사 대표), 『북한현대사』 발간
1989. 2. 8 김성재(형성사 출판부장), 『전기 김일성』 상·하 발간
1989. 2. 18 고규태(인동 주간), 『주체의 학습론』, 『조선문학개관』, 『북한의 문예이론』 발간
1989. 3. 1 김연인(힘 대표), 『민족해방철학』 1, 『철학사전』 발간
1989. 3. 29 정지석(백두 대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발간
1989. 3. 29 강병선(푸른숲 대표), 『조선전사』 (근대 1·2·3) 발간
1989. 4. 8 이춘호(눈 대표)·소정철(편집부원)·김은교(편집부원), 『강철서신』 발간
1989. 4. 24 정지환(대학의 소리사 기자), 월간 『대학의 소리』 창간호에 「미래의 주인은 청년학생들」 집필·편집
1989. 5. 3 박강희(논장 대표), 『조선근대사』, 『마르크스·엥겔스의 문학예술론』 발간
1989. 5. 4 최광렬(갈무지 대표), 『항일혁명문학예술』, 『혁명전통강좌』 발간
1989. 5. 29 김사인(노동문학사 대표)·임규찬(편집국장), 『노동해방문학』 5월호에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 게재
1989. 6. 8 김제완(오월 대표), 『조선통사』 상·하 발간
1989. 6. 23 김선호(열사람 대표), 『문학예술사전』, 『꽃파는 처녀』 상·하 발간

일반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며, 일반공개에서 제외된 자료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열람, 대출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북한 및 공산권 자료 이용을 위한 종합자료센터의 설치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바로알기’를 실천하고 있던 출판사에 대해서는 1988년 내내 끊임없는 압수수색, 구속이 행해졌다.

210) 신형식, <국가보안법과 출판·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토론회」, 민가협·출판탄압공대위 등, 1990.10.10

1989. 6. 23 노승일(그날 대표), 『변혁과 통일』, 『현대민족사의 재인식』 발간
1989. 6. 26 김준기(함께하는 농민 대표) · 이삼행(기자), 월간 『함께하는 농민』에 북한의 농업정책에 관한 글 게재
1989. 6. 28 류시균(아리랑 대표), 『북으로 가는 동지에게』, 『조선문화어사전』 발간
1989. 7. 5 임승남(돌배개 대표), 『조선노동당략사』 I · II, 『북한 조선노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1989. 7. 6 김용항(온누리 대표), 『북한통일정책변천사』 상 · 하 발간
1989. 7. 7 정동익(아침 대표), 『꽃파는 처녀』 상 · 하, 『지리산』 발간
1989. 7. 7 이승철(황토 대표), 『꽃파는 처녀』 발간
1989. 8. 6 조남일(죽산 대표), 『평양축전』 발간
1989. 8. 9 김홍조(한 대표), 『새 삶을 위하여』,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발간
1989. 8. 26 조성일(남녘 대표) · 이병훈(편집부장), 『조국통일전선』, 『미제침략사』 발간
1989. 8. 30 박종규(백의 대표) · 이상돈(편집부장), 『원전 맑스-레닌주의 입문』, 『현대조선말사전』 상 · 하, 『우리나라에서의 어휘정리』,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발간 · 편집
1989. 9. 26 최해성(함성 대표), 『레닌그라드에서 평양까지』, 『반』, 『다국적기업과 제국주의』, 『레닌의 청년 · 여성론』 발간
1989. 10. 9 강영길(태백 대표), 『사회주의 · 공산주의 건설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발간
1989. 10. 17 이재연(새날 대표), 『철학의 기초』,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발간
1989. 10. 25 남은경(대동 편집부장), 『항일무장투쟁사』 편집 · 발간
1989. 10. 26 김영중(사계절 대표), 『사회과학사전』, 『사회구성체이행론서설』, 『일하는 자의 철학』,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발간
1989. 11. 25 이시형(계간 『창작과 비평』 주간), 『창작과 비평』 1989년 겨울호에 황석영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 게재
1989. 11. 29 하태완(청년세대 대표), 『아침해』 상 · 하, 『북한 보건의료 연구』 발간
1990. 1. 10 박인혜(형성사 대표), 『노동계급의 민족이론』 발간
1990. 1. 17 전용호(광주 편집부장), 『혁명적 세계관과 청년』 편집 · 발간
1990. 1. 22 김선호(열사람 대표), 『꽃파는 처녀』 상 · 하 발간
1990. 2. 12 김태중(노동문학사 발행인 대리), 『노동해방문학』 1989년 5월호~12월호 발간
1990. 2. 22 송기원(실천문학사 주간), 『붉은 산 검은 피』 발간
1990. 2. 28 정성현(청년사 대표), 『조선전사』, 『실학파와 정다산』, 『공산당 선언』 발간
1990. 3. 10 정수웅(일송정 대표), 『현대조선역사』, 『근대조선역사』 발간
1990. 3. 13 유창선(두리 대표), 『대중활동가론』, 『종파주의 연구』 발간
1990. 3. 23 임성안(함성 대표), 『레닌그라드로부터 평양까지』 발간
1990. 3. 23 유환옥(백의 영업부장), 『북한 현대사 입문』 편집 · 발간
1990. 4. 3 김연인(힘 대표), 『맞은 올랐다』, 『혁명의 여명』 발간

1990. 4. 15 신형식(녹두 대표), 『녹두서평』 2, 『애국민주운동론』 발간

구속된 서점주인

1988. 3. 31 배노연(글방 서강인)

1988. 3. 31 오근갑(명륜동 논장서점)

1989. 8. 1 김용환(인천 만두리서점)

1989. 11. 17 권형우(대구 마가서점)

1989. 11. 20 이외원(대전 창의서점)

1990. 1. 6 곽한왕(인천 광야서점)

5)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그 이후 적용실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의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은 국가보안법, 그 가운데서도 바로 7조 5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역시 ‘명백한 위험’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1991년 5월 헌법재판소²¹¹⁾는 구(개정전)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대해 “.... 문언대로 라면 북한을 비롯한 공산국가가 발행한 서적이라면 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공산화를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까지도 이적표현물이 되어 이에의 접근이 무제한하게 금기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1991년 5월 31일, 주관주의적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7차)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의 이후, 헌재 결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재판부 사이에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로인해 북한원전을 펴낸 출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다시 이틀만에 다른 판사에 의해 재발부된 사건이 발생²¹²⁾하기도 했다.

211)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113 결정

212) 서울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1990년 12월 17일 북한 원전 「정치사전」 「력사사전」 「조국광복회운동사」 등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이 도서출판 지양사 대표 박경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이들 서적이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는 이상 출판행위에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12월 15일 같은 법원의 방희선 판사는 “박씨가 펴낸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임은 인정되나 단순한 판매이득 목적 외에 공산주의혁명을 선전·선동하거나 찬양·동조하려는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영장을 기각했던 방판사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은 이제까지 이 조항 위반자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가 지나치게 폭넓은 해석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박씨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적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한 나판사는 “헌법재

그러나 7차 개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표현물의 “명백한 위험성”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산주의 또는 북한관련 서적은 모두 이적표현물로 규정하여 출판사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구태를 반복했다. 특히 이러한 책자들을 판매한 서적상 까지 이적목적의 추단하여 처벌, 유죄판결²¹³⁾ 하였던 것이다.

6) 김영삼 정부 출판의 자유 침해 실태

김영삼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출판의 자유 탄압사태가 5, 6공화국 정권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출판물에 대한 단속은 여전했는데, 특히 1994년 들어서 출판사 대표들의 구속사태가 잇달아 6명의 출판인들이 구속되었다. 1991년 3명, 1992년 1명, 1993년 3명이 구속되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늘어난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1994.3.12. 검찰총장(김도언)의 “문학, 연극 등 예술활동과 컴퓨터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라”는 지시²¹⁴⁾를 내리고, 특히 4.15.에는 전국 검찰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좌익출판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²¹⁵⁾.

그러나 출판인들이 구속된 계기가 된 문제의 책들은 모두 수년 전에 출판된 도서로서, 이전 군사정권 하에서도 문제삼지 않았음에도 문민정부하에서 새삼스레 국가보안법 이적표

판소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문제가 된 서적들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박씨에게 이 법의 구성요건인 주관적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0년 12월 18일

213) 대법원은 개정전의 ‘미필적 인식’으로 이적성을 추정해 유죄판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법원 1992.3.31. 전원합의체판결 90도2033) 또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은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라면서 이적성 추정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대법원 1997.7.25.선고 97도1386판결)

214) “전국 50개 지검 및 지청 공안부장검사 회의”, 「한겨레신문」 1994년 3월 13일.

215) 대검 공안부(부장 최환 검사장)는 4월 15일 좌익 출판물과 유인물 일제단속을 벌인다는 방침 아래 전국 검찰과 경찰에 ‘좌익출판물 등 실태조사 및 수집계획’ 지시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23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 대학가의 사회과학 전문서점 및 복사점과 마산, 창원 등 대규모 공단 주변 및 역 주변의 서점 등을 중심으로 이적표현물 압수수색 등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앞으로 경찰청·문화체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좌익출판물 합동색출전담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북한을 찬양하는 이념도서 및 유인물의 진열·판매 △이적성을 띤 연극 및 영화 등 문화·예술활동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전파 등 문화·예술활동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4년 4월 16일.

현물로 규정한 것이었다. 특히 당시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공안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군사정권시절인 1989년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 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이라는 반발이 일었다²¹⁶⁾.

또한 이 시기에는 군사정권시절에서 행했던 압수수색이 또다시 재현되기도 했다. 예컨대 부산지검公安부는 4월 14일, 부산대와 동아대, 경상대 등 대학가 주변 서점들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회과학 서적 3백여권을 압수하는 등 출판물 압수사태도 다시 빚어졌다.

김영삼 정부 후반기인 1996년, 1997년에도 출판사 대표들이 구속되었는데, 노래책(『희망의 노래』)에 실린 일부 노래가 북한을 찬양, 고무했다는 이유로 민맥출판사 대표와 이 책에 실린 노래를 선곡하여 편집한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씨가 함께 구속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이웃출판사 대표 등 3인이 구속되었는데, 이 출판사는 1994년 이후 재정상의 이유로 책출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7월에 폐업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출판사가 펴낸 책들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구속했는데, 문제의 책들은 출판된지 3-5년이나 지나 이미 절판된 책들이었다. 한편 이시기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적용된 북한소설 「용해공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는등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적용 사례를 증명하기도 했다²¹⁷⁾.

<표> 김영삼 정권 하에서 출판사 대표 구속현황

216) 당국의 이런 출판인 구속조처에 대해 87개국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217) 서울지방법원(항소부)는 1995.4.21. 북한소설 「용해공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자 내용의 일부가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세계관과 애국주의로 무장한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고,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면서 찬양·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찬양이 일상화되어 있는 북한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이는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으로, 위 책자들의 줄거리나 주요내용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주체사상의 내용을 그대로 선전·선동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급투쟁, 폭력혁명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은 들어있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 피고인이 이적행위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을 부인하면서, 1988년 이후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어 나가자 이에 적극 참여하는 의미로 위 책자들을 출판하거나 출판준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의식화 교육을 받고 위장취업자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서울지법 94노4599호)”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소설 「용해공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의 또는 이적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1998.5.22. 선고 95도 1152 판결

출판사	출판인	구속일	서적
일빛 출판사	대표 이성우	1994.3.19.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1990.5.발행) 강의 노동자의 철학(1990.8.) 등 5권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	1994.3.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1990.10.) 90년대 도약 청년학생운동(90.3.) 등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1994.4.20.	용해공들(북한소설)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	1994.6.10.	레닌의 제국주의론(1981.12.) 등 4권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권	1994.8.20.	세기와 더불어(김일성 회고록)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	1994.8.30.	벗(북한소설)
도서출판 한	대표 류덕렬 김천희	1995.7.17.	북한 원전
민맥 출판사	대표 원용호,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	1996.2.3.	희망의 노래(노래책)
이웃출판사	대표 정우창 등 3명	1997.10.9.	사회주의 서정시 강좌(92년 발행), 조 국통일론(93년), 통일만들기(94년), 벗 이여 어서 오게나(94년) 등 4권

또한 1997년 접어들어서는 사회과학 서적상들이 대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1997년에는 대검찰청 산하에 <민주이념 연구소>가 설치됨으로써, 이적표현물에 대한 단속이 더욱 집중되었다. 민주이념연구소는 97년 1월 10일, “이적표현물에 대한 분석업무를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이적표현물 사범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²¹⁸⁾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였다.

<표> 1997년 구속된 사회과학 서점 대표

서점명	구속자	구속일	구속사유	결과
그날이오면(서울대)	유정희	97.4.15.	<녹슬은해방구> <국가와혁명> 등 이적표현물 반포, IS그룹기관지 판매	구속취소
풀무질(성균관대)	은종복	97.4.15.	<일보전진 이보후퇴> 등 이적표현물 판매 및 IS그룹기관지 판매	구속취소
장백(고려대)	김용운	97.4.15.	IS그룹, 혁명적사회주의그룹 기관지 판매 협의	1심 집유
오늘의책(연세대)	김봉환	97.10.29.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 40여종 판매	보석
서강인(서강대)	신영균	97.10.29.		보석
장백(고려대)	김용운	97.10.29.		구속취소
논장(성균관대)	이재필	97.10.29.		보석

그러나 서적상에 대해서 ‘이적목적’을 추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매우 과

218) 법무부, 97년 국감 법사위 제출자료

도한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서점은 대중매체들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사상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전제하면서, “각 수사기관 등에서 어떠한 책자들이 불법한 내용의 책자이거나 용공표현물인지에 대해 그 기준이나 목록을 서점에 전달한 바 없고”, 특히 “신문에 간헐적으로 판금서적의 명단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그 명단의 출처, 법적근거가 모호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적목적’에서가 아니라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책자들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죄라고 한 법원의 판결²¹⁹⁾은 출판, 판매 행위를 국민의 알권리와 사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7) 김대중 정권의 출판의 자유 침해 실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5곳의 출판사 대표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반포(제7조5항)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적용을 받은 서적 대부분은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거나 외국서적을 번역해 출판한 것인데,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부 문구를 문제삼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더구나 문제된 서적들은 이미 사건 발생 2, 3년 전에 발행되어 시내 유명서적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국회도서관 등에 비치되거나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김·정은 ‘이적표현물’의 제작자들에 대해서만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자의적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1년, 2002년도에는 출판사 대표들에 대해 이적표현물 조항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제8조(회합·통신) 혐의를 추가하여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출판사 측에서 책

219) 전주지방법원은 1992.11.10. 피고인 김형근(1989년 4월 28일 구속, 황토서점 운영)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서점은 출간된 책자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서 출간 즉시 화물로 우송받고 신간매장에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실, 수사기관 및 유관 기관에서도 어떠한 책자들이 불법한 내용의 책자이거나 용공표현물인지에 관하여 그 기준이나 목록을 서점에 전달한 바 없으며, 신문지상에만 판금서적들의 명단이 간헐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으나, 그 판금서적 명단의 출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위 황토서점에 약 3만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어 위 10종의 책의 비중이 극히 낮은 점, 국민의 알권리와 사상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서점 역시 대중매체들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와 사상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위 책자들을 소지·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전주지방법원 90노627호 선고) 또한 대법원(92도3188호) 역시 1993.3.13. 선고공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학문적인 연구나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이적목적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들을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소지·판매 하였을 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을 출판하기 위해 저자와 전화, 팩스, 전자메일을 통해 통신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책의 저자들이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이들 사건은 이적표현물 여부에 대해 논란을 빚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각 사건 모두 유죄판결 하고 말았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구속기소된 출판사 대표들의 사건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출판사 대표

출판사	출판인	구속일	서적	비고
대동출판사	대표 이상관	1998.4.29.	끝나지 않은 여정,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있을까 등 11종	
풀무질출판사	전편집장양효식(대학강사)	1998.11.25.	일보전진 이보후퇴(레닌저) 등 8종	모두 번역서, 역자들은 대학강사
책갈피출판사	대표 홍교선	1998.11.25. 1999.6.9.	마르크스의 혁명적사상, 레닌1,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등 11종	1차구속 뒤 풀려난 이후, 다시 문제의 책들을 판매했다는 혐의
살림터출판사	대표 송영현	2000.11.8.	김정일의 통일전략 등	출판 대리인 송학삼(재미동포)씨 구속, 회합통신죄 적용
월간자주민보	대표 이창기 기자 2인	2001.10.23.	자주민보 등	저자들과 통화한 것을 문제로 회합통신죄 적용

① 현대사 연구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대동출판사 사건

대동출판사 발행인 이상관씨는 98년 4월 29일, 출소장기수들의 증언록 『끝나지 않은 여정』과 북한여성의 생활상을 담은 자료집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등 도서 11종을 발행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는 대학 강사인 여성사회학자들이 통일원 자료실에 비치된 <로동신문> <조선녀성>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1차 자료를 토대로 집필한 것으로, 발간 당시 <한겨레신문>, KBS 등 각종 언론에서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또한 『끝나지 않은 여정』은 현대사 연구 전문팀인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증언반’이 해방직후의 사회상황에 대해 좌·우익 인사를 망라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증언을 채록하여 총 3권의 시리즈물로 기획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정치적 사건을 직접 겪은 장기수의 증언을 통해 해방전후의 상황과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위 도서들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판결했다.

② 레닌 저서 등 번역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풀무질 출판사

풀무질 출판사에서 출판한 『일보전진 이보후퇴』(레닌 저) 등 8종의 번역서가 모두 이적표현물로 유죄 판결 받았다. 이는 풀무질 출판사 전 편집장인 양효식씨(대학강사, 역사학)가 98년 11월 25일 위 번역서 출판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음으로써 이적표현물로 ‘낙인’된 것이다. 위 도서는 양씨가 편집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95년과 96년에 펴낸 번역서로서 역

자들은 역사학을 전공한 대학강사들이었다. 그러나 풀무질 출판사는 96년 말경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실상 출판업무를 중단한 상태였고, 위 도서들은 출판된 지 2~3년이 지났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 받던 그 시점까지도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도서들에 대해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출판인을 구속한데 대해 출판계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책갈피 출판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이 소장 보관하고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죄가 적용되었다. 책갈피 출판사가 출간한 『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알렉스 캘리니코프 저, 정성진 역), 『레닌1』,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등 11종의 서적이 바로 그것이다. 위 출판사 대표 홍교선씨는 위 서적 출판을 이유로 98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구속되었다.²²⁰⁾ 그러나 위 출판사 출간 도서 11종 중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를 제외한 10권의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국회도서관에도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 포함하여 7종이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 도서는 서울대 등 다수 대학의 사회과학 계열 교재 및 참고도서로 채택되었다.

④ 6·15 이후 북한관련 서적 이적표현물 적용 - 살림터 출판사 사건

일본에서 발간된 재일교포 김명철씨의 저서인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살림터 출판사에서 한글판으로 출판하였다 하여, 2000년 11월 8일 출판사 대표 송영현씨와 저자의 출판대리인인 재미교포 송학삼씨가 각 국정원에 체포, 구속되었다.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200년 5월 17일 제1판 인쇄를 시작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사회에 일기 시작한 북한 및 김정일 국방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것에 힘입어 3쇄를 거듭하여 출판되었다. 또한 6·15 직후 김정일 위원장을 여러 각도로 조명한 출판물²²¹⁾이 쏟아졌고 위 책자들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굳이 살림터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만을 문제삼는 것은 법 적용에서조차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⑤ 원고청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회합·통신죄 적용 - 자주민보 사건

국정원은 2001년 10월23일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씨와 기자 2인을 체포, 국가보

220) 1998년 11월 25일, 위 서적 출판을 이유로 구속된 홍교선씨는 1999년 6월 9일 경찰청 남영동 본실에 재차 구속되었다. 첫번째 구속 후 석방된 1999년 2월경부터 다시 위 서적을 판매, 취득, 소지한 혐의라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2단독)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21) 6·15 선언 이후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책들이 다량 출판되어 관심을 끌었는데 정창현 저 「결에서 본 김정일」, 이주철 저 「김정일의 생각읽기」, 서대숙 저 「현대 북한의 지도자」 등이 있다.

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9년 8월 10일 자주민보를 설립한 이후, 해외 친북인사들의 글을 싣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총련 구성원인 김명철, 조총련 산하단체 ‘조청’의 기관지 <세세대> 편집인 김운순, 재일 한통련 의장 곽동의씨의 글을 게재하기 위해 이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전자메일을 교환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각 통신·연락했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김명철에게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내장된 디스켓 1장을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제공(제9조) 혐의를 두었으며 자주민보에서 발행한 단행본과 「자주민보」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판매·소지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잡지사가 원고청탁을 위해 필자와 통신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통신 행위인지 의문점이 있으며, 특히 단지 저자들이 조총련, 한통련계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2.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과 인권침해 실태

가. 국가보안법과 ‘조직사건’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은 크게 이적단체(국가보안법 제7조3항) 사건과 반국가단체(제3조) 사건으로 나뉜다. 국가보안법은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적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제7조 3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얼핏 분별하기 어려운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의 차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 것에 귀결된다 할 것이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²²⁾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요건 자체에서 보듯이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면 “반국가단체”이고,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면 “이적단체”라는 것인데 실제 사건에서 살펴볼 때는 구별짓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²²³⁾.

가령 1998년 발생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은 검찰과 1심 법원은 반국가단체로 보았고, 2심과 대법원에서는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는바 결국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확정짓는 그러한 차이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상당히 모호한 것이 현실

222) 대법원 1996.9.6. 선고 94도1020 판결,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 1995.7.28. 선고 95도1121 판결 등

223) 조직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나 조직의 “수괴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형량과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구분이 아닐 수 없다. 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기만 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적단체의 경우, 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조직의 성격여하에 따라 실제 형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다²²⁴⁾.

특히 “정부참칭”, “국가변란”은 모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렵고 모호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자의적인 반국가단체를 양산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이렇듯 모호한 ‘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을 국가보안법의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보안법의 모든 조항이 덩달아 자의적으로 해석, 운영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사건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이적단체’의 문제이다. 이적단체 조항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구성되며, 제7조의 1항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소가 그 기본적 구성요건이 된다.

법원²²⁵⁾은 “어떠한 조직이 ‘이적단체’를 이루기 위하여는 ①단체성 ②이적성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단체성에 대해서는 “이적단체로서 요구되는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경인총련 노래패 천리마’ 사건(1998.5.14. 서울고법),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1998.2.26. 전주지법)에서 이적단체 구성·가입의 점에 대해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사건들과 유사한 조직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자주대오 사건들에서는 “단체로서의 실체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조직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조직’의 계속성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고,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그해 총학생회 후보를 뽑고 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자 일시적으로 모임을 한 경우라거나(조선대 자주대오 사건), 과거 조직활동이 있었다 해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 조직이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거나, 조직원 대부분이 활동을 정리한 사

224) 또한 법원은 반국가단체로 기소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에서 반국가단체에 무죄를,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 그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이론을 연구하여 이를 선전·전파하고 장차 성립하게 될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을 기초함으로써 전체 사회주의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고,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4도1813 판결. 한편 1993.8. 검찰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국씨 등 7명을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 가입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먼저 판결을 선고한 일부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반국가단체 가입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법 1994.3.9. 선고 93노3727판결). 재판부의 무죄선고가 나자마자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예비적으로 이적단체 조항을 추가하여 기소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반국가단체 기소가 무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셈이다.

225)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우의형), 천리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 사건97노147, 1998.5.14.

건의 경우(2001년 진보의련, 1999년 서진청 사건) 라든지, 활동을 정리하고 군에 입대한 이들이 군입대전의 활동이 문제가 되어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조직의 독자성 여부도 이적단체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대법원은 ‘조선대 98녹두대’ 사건(이적단체 기소, 1, 2심 이적단체로 판결)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8일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는 독자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해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원심 판결은 98조선녹두대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과는 별개의 독립된 이적단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기에 무죄로 판결²²⁶⁾하였던 것이다.

1999년 4월 발생한 서울진보청년회(이하 서진청)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서진청이 가입한 진보민청의 강령과 간행물을 들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서진청이 독자적인 이적단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진청에서 작성한 글이나 문서, 그리고 강령 규약 등이 있어야 함에도 검찰은 서진청이 가입한 상급조직인 진보민청의 기관지 <당당하게> 등을 이적단체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²²⁷⁾. 특히 서진청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99년 1월, 공식 해산하여 조직의 계속성 여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또한 단체의 활동내용과 관련하여 지인간의 단순한 모임을 조직으로 확대, 과장하여 이적단체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자주대오 사건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2001년)의 경우,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모두 총학생회 전·현직 간부로서 검찰이 문제삼은 단체의 행위는 학생회 간부들이 모여 총학생회 활동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였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이것을 총학생회 조직과 달리 이적단체로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적성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

226) 대법원은 독자적인 조직체라는 점과 관련하여 “‘98조선녹두대’가 남총련 ‘민족해방군’과 별개의 독립된 이적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98조선녹두대’가 독자적으로 이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98조선녹두대’가 남총련 의장의 지시를 받아 그 하수인으로서 단순히 이를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을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 ‘민족해방군’과 ‘98조선녹두대’가 1998년 들어서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각 단체 자체의 성격에서 변화가 왔기 때문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후에 ‘98조선녹두대’가 이적단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이적단체로 인정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돈희, 지창권, 송진훈), 1999.10.8. 선고, 99도 2437 판결.

227) 서울진보청년회 외에도 진보민청 가입 청년단체들은 모두 이러한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는데,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1994년), 우리청년회(1994년), 부친민주노동청년회(1997년) 등 단체가 그것이다. 결국 경찰은 이들의 모든 활동을 파악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각 단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찰의 실적을리기식 수사관행으로 파행된 ‘우려먹기식’ 수사의 전향이라고 볼 수 있다.

령을 받은 자의),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의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따라서 법적용기관의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위 두 단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²²⁸⁾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혼란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하였다. 가령,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 사건에서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면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공소변경을 했다. 즉, 95년 11월 전남경찰청은 이 단체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재건을 기도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 “사노맹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에 가입했다”고 혐의내용을 변경하였으며, 1심 선고 직전에 “사노맹이 아닌 북한에 동조한 이적단체”로 다시 공소변경을 하였던 것이다.

1991년 6월 발생한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에서도 이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은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집필한 글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북한의 사회구성체 인식 방법과는 다르게 남한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파악하였고, 그 모순구조의 해결책으로 ‘반제반독점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주장했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이론을 반박하기 위하여 집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북한의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도 결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²²⁹⁾함으로써, 법 적용의 자의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와같은 법적용의 자의성, 공소권의 남용은 무엇보다 제7조3항의 애매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는 곧 수많은 이적단체를 양산해내는 결과를 빚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체의 이적성과 관련하여 법원(서울고법)은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느 집단의 행위 중에 일부 이적성을 띤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 전부를 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집단이 제작한 표현물 중에 일부가 이적성을 띤다고 하여 그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 될지언정 그 집단이 바로 이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28) 법원은 주로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등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판결하고 있으며(한총련, 자주대오 사건 등), “사회주의를 선전·선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진보민청 사건 등)한 경우라고 판결하고 있다.

229)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1711. 특히 이 판결은 학문적 연구의 틀을 공안적 논리구조인 국가보안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비학문적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 판결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이적단체 사건에서 검찰이 이적단체를 증거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던 점은 바로 단체에서 발행한 유인물, 기관지의 이적성 여부였다. 이러한 이적표현물 제작이 곧 단체의 이적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예컨대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단체에서 발행한 표현물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시되었는데, 바로 유인물 판매행위가 곧 이적단체 조직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기소되었고 이적단체로 판결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단체에서 발행한 표현물이 설령 ‘이적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이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증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 적용실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배경이 ‘여순사건’을 계기로 남로당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던 과정에 비추어볼 때,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많은 좌익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제정 시기의 주요한 적용대상²³⁰⁾이 되었다.

유신시기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수많은 정치조직들이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의율되었다.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동백림 사건(1967년), 통혁당 사건(1968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1974년), 민청학련 사건(1975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1979년), 남민전 사건(1979년)등이 대표적인 조직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시기 발생한 조직 사건에서는 예외없이 불법체포, 감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 기본적인 형사절차상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인권유린 시비가 일지 않을 때가 없었으며, 지인간의 친목모임을 조직사건으로 조작하였다는 의혹마저 종종 일었다.

제5공화국에서는 기존의 반공법이 폐지,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면서 “국가보안법의 시대”라 불릴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씨를 비롯, 70년대 유신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재야인사들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독재정권의 반대자였던 재야인사, 학생, 노동자 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230) 제정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변란의 결사 집단죄’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오제도 검사는 “8.15해방 직후 소위 좌익단체인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조선문화단체총연맹,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반일운동자구원회 등의 결사, 기타 상기 결사에 가입한 각 부분의 산하단체 또는 동 결사 및 집단의 재건준비와 지원하기 위한 집단을 창설 또는 가입 당시는 합법 공연(公然)이었다 하더라도 그후 동 결사집단이 단기 4281년(1948년) 7월 12일 역사적 우리 국회에서 제정되고, 동월 17일 발포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그후 수립된 당당한 우리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이북괴뢰집단인 인민공화국 같은 것을 지지하며 그 확대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법 공포 시행일인 1948년 12월 1일 이전까지 반대 탈퇴하지 않는 한, 기일 이후 하등 동 목적수행 행위가 없어도 본법에 저촉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오제도, 「국가보안법실무제요」, 서울지방검찰청, 1949. 46쪽.

으로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1986년 이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 과정에서 조직사건이 무수히 발생²³¹⁾하였다.

1) 제5공화국 노동운동 조직사건

1981년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1981.6.)을 필두로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1986.5),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 사건(1986.10), 마르크스·레닌주의당(노동당) 결성기도 사건(1986.10), 반제동맹당 사건(1986.11),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사건(1987.1), 노동운동후원회사건(1987.1), 사상정치교양학교사건(1987), 진북괴반미공산혁명기도사건(1987.2),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사건(1987.2),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사건(1987.5), 성남지역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노선 현장활동가그룹사건(1987.10)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대량 구속사태를 빚었다. 또한 이러한 조직사건에서는 고문과 장기불법감금, 용공조작 사건이라는 주장이 당사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제기되었다.

2) 제6공화국 노동운동 조직사건

또한 제6공화국에서도 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이 빈발했는데, 주요 사건으로는 반제반과쇼한국민중전선사건(1988.5.3.)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사건(1989.2.) 안양민주노동자일동그룹사건(1989.9)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사건(1989.10.) 인천지역노동자그룹 사건(1989.12.19) 노동계급 사건(1990.1.)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사건(1990.2.) 일꾼노동문제연구회 사건(1990.3.) 노동자대학 사건(1990.3.)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사건(1990.4.) 민주민주주의노동자투쟁 동맹 사건(1990.11.)이 있다.

3) 1990년 이후 이적단체 사건 - 학생운동 청년운동 조직

한편 1990년 이후에는 학생운동, 청년운동 조직들에 대해 이적단체 적용이 줄을 이었다. 특히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6년과 1997에는 수많은 단체, 조직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대량구속 사태가 빚어졌다. 또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1997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조직사건 구속자는 한총련 대의원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지금껏 발생한 조직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제7조3항(이적단체)의 적용을 받았다. 특히 1990년 이후 발생한 조직사건 가운데 자민통 사건(1990년), 사노맹 사건(1990년), 중부지역당(1992년), 1995년 위원회 사건(1992년), 구국전위 사건(1994년) 등 반국가단체로 의

231) 5공화국 시기에 노동운동 과정에서 조직사건이 다수 발생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현실적 위기가 결코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변혁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자각에 따라"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태일 분신 사건이후 노동자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점, 그 시기를 전후하여 '노학연대'를 표방한 대학생들이 노동현장 유입이 계속되어 노동자의 의식화 조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이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이뤄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263쪽 참조.

을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백여건이 넘는 이적단체가 발생하였다.

<표> 1990년 이후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 단체²³²⁾

연번	단체명	판결	비고
1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대판 90도 1333 90. 9.11	해외단체
2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대판 91도 2341 91.11.22	국내단체
3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대판 92도 256 92. 4.24	국내단체
4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대판 93도 2158 93. 7.26	국내단체
5	1995년 위원회 (후에 '애국동맹'으로 명칭변경)	대판 93도 2209 93.11. 9	국내단체
6	구국전위	대판 95도 1148 95. 7.25	국내단체

아래 <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과 관련하여 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이후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관련하여 입건된 인원은 2,001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3,706명이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이들은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53.9%를 차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2,717명의 56.3%에 이르는 1,531명이 이적단체 구성 가입혐의로 구속되었다. 통상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과 관련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현황²³³⁾

구속·불구속 현황				연도별 검거현황							
계	구속	불구속	이첩	'91	'92	'93	'94	'95	'96	'97	'98
2,001	1,531	405	65	92	137	44	185	183	344	612	404

<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및 처리내역²³⁴⁾

구분	계	'91	'92	'93	'94	'95	'96	'97	'98
검거인원	3,706	364	277	213	467	286	534	877	688
구속	2,717	254	193	113	338	243	459	663	454
불구속	989	110	84	100	129	43	75	214	234

232) 경찰청, 199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행정자치위원회)

233) 경찰청, 199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234) 경찰청, 1998년~2001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또한 아래 <표>는 1995년,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법조항별 분류표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1995년 경우 전체 구속자의 75.7%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며, 1996년에는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58.6%가 이들 조직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1990년 초·중반 보다 조직사건 연루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95년 국가보안법 법조항별 분류²³⁵⁾

구분	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계	285	206	71	8
구속	243	184(75.7%)	53(21.8%)	6
불구속	31	19	11	1
이첩	11	3	7	1

<표> 1996년(9.16까지) 국가보안법 법조항별 분류

구분	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계	360	209	145	6
구속	307	180(58.6%)	121(39.4%)	6
불구속	38	20	18	
이첩	15	9	6	

이처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항은 수많은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이적단체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일별해보면 아래와 같다²³⁶⁾.

1990년 노동계급,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마산 일꾼노동상담소, 인천 노동자대학,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이상 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 조국통일촉진그룹,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 등(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1년 청주대 자주대오,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안동대 반미애국학생회, 동국대 민주주의 학생연맹, 마창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 민주주의학생연맹, 민학투련, 상지대 민주주의학생연맹, 부산민주주의학생연맹,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이상 학생운

235) 경찰청, 1996년 국정감사(내무위) 제출자료

236) 이적단체 사건 가운데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한총련 사건, 각 자주대오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그외에도 수년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체포, 구속된 사건이 많았다. 여기서는 첫 사건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 조직사건),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성남노동자투쟁위,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민주주의노동투쟁동맹, 반제반파쇼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서울사회과학연구소(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

1992년 안양지역자주학생운동연합, 남한사회주의학생연맹, 청주대 민주학생투쟁연맹, 민족한남대활동가조직(학생운동 조직사건) 인천지역노동자그룹,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 안산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 노동자대학, 노동자문화일터, 노동자정치활동센터, 한국노동당,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일동그룹(이상 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3년 국제공산주의자당,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남한사회주의과학원(반국가단체 기소, 이적단체 판결),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광주지부

1994년 제주대 새오름,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청소년단체 샘, 평화실현학생연맹, 원광대 단기학생동맹(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노해투사,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성남지역노동자회, 한누리노동청년회, 일심단결회, 포항민주청년회, 우리청년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이상 노동·재야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5년 새오름, 8·28학생동맹, 반미불패,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부산대자주대오, 우석대 자주대오,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충남대 활동가조직, 빛나는 전망, 성균관대 민민학련, 민족사랑학생연합, 학생사회주의기간대오, (학생운동조직사건)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범민련(노동, 통일운동관련 조직사건)

1996년 애국청년선봉대, 천리마노래단, 경상대 활동가조직, 남총련 민족해방군, 남총련 자주대오, 부산외대 자주대오, 상지대 활동가조직, 제주대 활동가조직, 강원대 자주대오, 21세기진보학생연합, 노나매기,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청치연합(전학련),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전국민족민주학생연합(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한국노동청년연대, 해방노동자통일전선,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공산주의연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이상 노동·재야단체)

1997년 단국대(천안)자주대오, 동아대 자주대오, 연세(원주)대 자주대오, 인천교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북대 혁신대오, 외국어대(용인)주사연구회, 고려대 '청년', 전국농업계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 커문주의지하혁명활동가그룹, 부산지역 학생연대, 서울대 학생연대, 전국학생정치연합, 상지대 21세기프로메테우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노동정치연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북부노동자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국노동자운동단체협의회,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 연대, 한국노동청년연대(이상 노동·재야 운동 관련 조직사건)

4)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이적단체 양상 - 한총련, 공개단체

한편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에는 조직사건 발생건수가 지난 정권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전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수치의 감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시기 발생한 조직사건의 특징은 첫째, 19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구속자가 대다수를 이뤘다는 점이다.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이적단체 가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1997년 이후 2002년에 이르기까지는 이적단체 사건의 대부분을 한총련 대의원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적단체 적용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시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비율은 70%를 상회하여, 80% 수준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2~3년전 발생했던 조직사건 연루자를 뒤늦게 체포·구속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고, 셋째로는 주로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조직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이다.

<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조항별 적용현황(구속)²³⁷⁾

구분 연도	목적수행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 표현물	회합 통신등	잠입 탈출 등	편의 제공 등	기타	계
1998	4	335(72%)	91	21	11	2	1	465
1999 (1-9월)	5	215(84.3%)	16	7	10	2		255

1998년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상 청년·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 항공대 학생연대, 인제대 활동가 조직, 울산대 혁신대오, 단국대(천안) 신자주대오(이상학생운동)

1999년 서울진보청년회, 안양사랑청년회(청년운동 관련 조직사건) 원광대자주대오 사건, 과기대 자주대오, 동서대 자주대오, 반미구국한양, 광운대 자주대오(이상 학생운동관련 조직사건)

2000년 한신대 활동가조직 사건,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사건

2001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진보의련 사건

2002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범청학련(후원회) 사건

237) 법무부, 1999 국정감사 제출자료(법제사법위원회)

다. 최근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대표적 사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수사기관의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의 기소 법원의 확정판결 사건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수히 많으나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 발생했던 조직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98년 발생한 영남위원회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정부 출범이후 첫 반국가단체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부가 반국가단체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적단체로 판결한 사건이다. 또한 사건 연루자 15명 가운데 12명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적단체 가입죄 부분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재판과정에서 불법감청 등 증거수집 문제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다.

다음으로는 국제사회주의자들(International Socialists) 그룹 사건이다. 이 사건은 7차 개정 이전에는 이적단체로 처벌되지 않았으나, 1991년 7차 개정시 삽입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문구로 인해 새로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건이다. 1991년 발생하여 1992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2002년 현재까지 200여명의 구속자를 양산하였다.

셋째,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이다. 한총련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조직이었던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한총련으로 명칭 및 강령 등을 개정한 조직이다. 그런데 제5기 한총련(1997년)부터 이적단체로 기소가 된 이래 2002년 10기 한총련까지 연속 이적단체로 기소되었다. 검찰 등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1997년 이후 이적단체 사건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이 가장 높은 구속비율을 나타냈다.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은 탈퇴서 논란 등 양심의 자유 논쟁을 유발하였고,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주는 사건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주대오 사건을 살펴본다. 자주대오(또는 활동가조직) 사건은 1991년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사건을 필두로 하여 2002년 현재까지 총 27개 대학에서 287명이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자주대오 사건은 특히 강령규약 실재 여부, 정연한 조직 체계 여부,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 여부 등 ‘단체성’ 부분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조작 의혹 및 사건의 과대포장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1) ‘영남위원회’ 사건 개요

1998년 7월 22일 15명이 구속기소된 영남위원회 사건은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상급심이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항소심에서 15명 전원이 반국가단체 부분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부분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 등 3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가입 부분에서 유죄가 확정되

었으나, 나머지 12명은 무죄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어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이어진 파기 환송심에서 12명 전원이 이적단체 부분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최초 반국가단체 사건, 장기간 감청 등의 증거능력 여부와 조작의혹,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영남위원회> 사건은, 공안당국의 수사 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 제기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남기며 무죄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6명 국가보안법 위반 긴급체포

1998년 7월 22일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부산·울산지역 노동 시민단체 활동가 16명을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이 가운데 14명은 구속되었고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또한 7월 25일,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7월 24일, <한민전 산하 영남위원회 지하혁명지도부 위장명칭 '동창회' 사건 수사현황>을 발표하여 "92년 3월, 반제청년동맹(위장명:동창회)을 모태로, 북한의 대남 선동선전기구인 한민전을 최상부 지도기관으로 설정하는 영남위원회(위장명칭:동창회)로 재편, 97. 4. 경부터 현재까지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으로 모금활동을 하여 북한동포돕기 운동본부에 송금, 울산지역 젊은연대 12개 단체, 부산지역 7개 단체 등에 조직원을 침투, 외곽 지원단체로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② 검찰, "반국가단체(국가보안법 제3조) 영남위원회를 결성했다"고 기소

9월 8일,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천성관)는 경찰의 수사를 모두 인정,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씨와 김창현씨 등 15명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제3조)으로 구속기소²³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경순씨 등은 1989년경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라는 상위조직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1991년경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영남위원회 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1992년 3월 16일 '영남위원회' 결성식을 개최, 조직목표, 조직이념과 강령, 조직 전략, 전술, 조직 지휘통솔체계, 조직 운영방식 등을 확정하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을 전파할 목적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여러 사회단체, 노동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까지 진출하여 암약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의 '이적활동'으로 왜곡함으로써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로 첫째 박경순의 체포과정에서 압수하였다는 컴퓨터 디스켓, 그 디스켓의 출력물, 둘째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얻어 박경순

238) 검찰은 "경찰수사 과정에서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3년여 동안 감청영장을 받아 이들의 비밀모임을 녹화해 두었고, 사업보고서와 학습문건 등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 집에서 회합하는 것을 녹음하였다는 녹음테이프 및 녹취록, 셋째 사건 구속자 간의 전화녹음 테이프 및 녹취록, 넷째 구속자들이 박경순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녹화한 녹음 테이프 및 사진들, 넷째, 수사기관이 이들을 체포하기 전에 얻은 문건들로 협조원(97.3~98.7.경 사이에 입수) 또는 PC통신을 통하여 획득했던 자료들을 주요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③ 공소사실의 문제점²³⁹⁾

<조직의 명칭, 강령, 규약, 조직체계의 문제점>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은 반국가단체임을 입증할 강령, 규약, 조직체계 부분에서부터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먼저, 어떤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기소하려면 최소한 조직 강령과 규약이 존재해야 하는바 공소장에 따르면 영남위원회의 강령은 반제청년동맹의 강령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영남위원회사건대책위>는 “‘반제청년동맹’이 ‘영남위원회’ 전신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강령을 제시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체계와 지휘 통솔체계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따르면 지휘체계로는 조직 총책산하에 지역위 책임자와 각 부서별 부서장 등으로 체계를 확립하였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따른 피고인들의 활동내용이 위 조직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도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지하혁명조직의 조직원들이 거의 모두가 조직체계를 무시하고 조직 총책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회합을 하는 영성한 조직이 반국가단체 일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조직의 명칭에서도 수사기관은 혼란을 거듭했다. 경찰은 체포나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배포한 내용이나 피의자 신문내용에서 조직의 명칭에 대해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이라고 발표했다가, ‘한민전 영남위원회’라고 변경했으며, 그 이후에는 ‘동창회 영남위원회’라고 명명했다. 결국 기소단계에서 검찰은 이 조직의 명칭을 ‘영남위원회’로 하고 위장명칭을 ‘동창회’로 확정²⁴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명칭조차 수사과정에서 변경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의 문제점>

239)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 사건 변호사인 정재성, <변론요지서>, 1999.1. ; 정재성,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2000. 참조

240) 또한 검찰은 영남위원회 또는 동창회가 실존한다는 증거로 각종 총화보고서, 총화서 등의 문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영남위원회’라는 말은 어느 증거에도 나오지 않고, 단지 경찰에서 작성한 <동창회 영남위원회의 조직체계도>에서 “동창회 영남위원회 아래 영남위원회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인 동창회의 일부 조직이라면 모르되 영남위원회를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조직의 실체나 자금내역, 구체적 활동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요 증거라고 제출한 통신감청 및 학습자료, 문건 등에서 나타났다.

첫째, 수사기관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상당한 양의 문건들의 문제였다. 변호인단은 이 문건들에 대해 원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직접 입수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입수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은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협조자가 위 문건들을 입수한 경위 및 입수경로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 조직문건을 입수할 수 있는 지위의 협조자”가 조직명칭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요증거를 입수해 수사기관에 넘겨준 협조자의 실존여부에 의문을 던져주기도 했다.

둘째, 재판과정에서 박경순 씨의 집에 대한 녹음내용이 핵심쟁점이 되었는데 경찰은 1996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5월 9일 부터 8월 8일 까지 3개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아 전화 감청, 우편물 검열, PC통신 등에 감청한 이래 매 3개월마다 반복갱신하여 이 사건 체포시까지 감청해왔고, 같은 해 11월 6일 위 법원으로부터 전화감청을 추가하고 대화 감청까지 허가 받아 역시 이 사건 체포시까지 감청하여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찰이 어떠한 범죄혐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통신제한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이 법원을 기망하여 통신제한 허가조치를 받았거나 법원이 아무런 소명 없이 허가해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감청과 검열 등 통신제한 허가조치를 3년 가까이 계속되도록 연장을 해준 것 또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결국 통신제한 허가조치는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적법성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위법한 것으로 그 결과물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된다는게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

셋째, 변호인단은 공소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 녹취 감정결과인 녹취록에 대해서 수사기록상 녹취록이 있는데도 녹음테이프는 제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경찰에서 녹취록과 검사의 의뢰로 속기사가 녹취한 녹취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비해 법원의 감정에 따라 작성된 녹취록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부분이 다른 곳이 발견되기도 해 이는 녹취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녹음방법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과연 녹음과정에서 대화내용이 그대로 녹음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적어도 녹음기기과 방법을 밝히고 그것에 의한 녹음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1심 재판부, 반국가단체로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이들 모두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3조1항)를 적용하여 15년~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첫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판결난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 시비 논란을 빚은 장기간 통신감청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적법한 통신제한조치허가로 취득한 감청 결과는 증거로 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수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감청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바, 감청기간이 장기라는 이유만으로 통신제한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협조자’가 제공했다는 디스켓에 대해서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압수문건들이 조작 내지 임의로 추가, 변조되었다거나 압수 디스켓에서 출력되지 아니한 다른 문건들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⑤ 항소심 재판부, 반국가단체 구성가입부분에 무죄, 공소변경한 이적단체로 판결

먼저, 항소심에서는 경찰의 증거조작이 논란이 되었다.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것은 세가지였다. 전화 통화 녹음, CCTV 비디오 촬영, 컴퓨터 디스켓 자료가 그것인데 이 중 디스켓 증거에 대해 변조 의혹이 제기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재판부는 디스켓 감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증거로 채택된 디스켓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이후 날짜의 자동저장(asv 파일) 파일이 발견되어 조작 의혹을 불러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²⁴¹⁾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공소 내용을 예비적으로 일부 변경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국가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하고”(반국가단체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 영남위원회를 구성하고”(이적단체 구성·가입)로, 일부 회합통신을 찬양·고무·동조로, 나머지 회합·통신은 삭제하는 것으로 예비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영남위원회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²⁴²⁾ 15명 전원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인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에 대해서와 북한동포돕기 부분, 회합·통신 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찬양·고무·동조,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 결과 선고형량도 대폭 낮아졌고, 6명이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영남위원회를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로 보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영남위원회가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위 단체가 지향하는 합법당 건설,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 대중정치 선동의 지도노선에 따라 주체사상의 보급, 투쟁거점의 확보 등에 두고 있는바, 이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전파하여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고, ‘영남위원회’가 합법당 건설,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 대중정치 선동 등의 합법, 반합법적 온건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241) 부산지검(이은종 황인규), 98형 61318,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공소장>.

242)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손기식 부장판사), 99노 123등 판결.

다”며 반국가단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반국가단체로 기소된 사건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보기드문 판결이다.

또한 재판부는 전화 감청, 대화 녹음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디스켓²⁴³⁾, 압수수색을 발부받지 않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등²⁴⁴⁾은 증거로 인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⑥ 대법원, 12명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부분 무죄판결

이어서 진행된 9월 3일 상고심에서 대법원²⁴⁵⁾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일부 관련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해 위, 변조 논란을 빚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경순, 방석수, 김창현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적단체 구성죄 등만 적용해 징역 7년, 3년,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김이경 등 1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디스켓이 작성자나 진술자에 의해 증거성립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이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파기 환송심에서 검사측은 대법의 판결을 뒤집을 증거로 몇 장의 새로운 디스켓과 민혁당 사건의 김영환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 중 일부가 박경순 휘하의 울산지역위원회 또는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이라는 요지의 증언을 하게 했다. 하지만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능환)는 판결에서 증인 김영환의 증언이 모두 “하영옥에 의하면” 혹은 “하영옥에게 보고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 진술인인 하영옥이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추가로 제시된 디스켓들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243) 부산고법은 압수디스켓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면서 “압수된 디스켓의 위변조에 대한 의심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일들이 압수된 후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위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였다.

244) 경찰은 2년여에 걸쳐 박경순의 집 맞은 편 집을 빌려 박씨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대화감청 테이프와 함께 회합통신(예비적으로 고무찬양)죄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비디오를 촬영함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1심법원은 이 비디오 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형사부와 제2형사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제1형사부는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고, 제2형사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디오 촬영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그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방법 또한 반드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45) 대법원 제2부(이용훈 정귀호 김형선 조무제). 99도 2318 판결.

따라서 무죄취지의 대법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2명 피고인 모두에게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 개요 및 분석

가)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의 실태

이른바 자주대오 또는 활동가 조직 사건(이하 자주대오 사건이라 통칭)은 1991년 6월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5월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에 이르기까지, 10여년 동안 28개 대학에서 총 287명의 구속자를 낳은 사건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의 공통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이적단체를 결성하여 학내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조직원들을 한총련(전대협) 지도부나 총학생회 간부로 진출시켜 친북활동을 배후조종해왔다”는 것²⁴⁶⁾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제7조 3항)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 사건 구속자의 대다수는 수사기관이 강압수사를 통해 받아낸 허위자백을 기초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조직’ 자체를 시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비슷한 이들간의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모임(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한양대 반미구국한양 사건, 광운대 자주대오, 조선대 자주대오 등) 이었다거나, 학생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모임(한신대 자주대오 사건 등) 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적단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한편 자주대오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속자 대부분이 총학생회 간부라는 점 △그 간부들이 대체적으로 학생운동 내부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분류로 볼때 통상 민족해방(NL)계열이었다는 점 △대부분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는 자백이나 진술로써 그외 이적활동을 증명할 뚜렷한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적단체’로 기소되었지만 단체성과 이적성을 지닌 조직으로 보기에선 대단히 어설픈 경우가 대부분 사건에서 발견된다. 또한 이들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살펴볼 때, 단체의 이름 자체가 없고 조직의 형태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한데, 이는 결국 검찰이 이들 조직의 어떤 행위들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인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6) 본문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기소내용상 자주대오와 활동가조직이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 두 종류의 사건을 서로 혼용(混用)하였다.

나) 체포 및 수사과정의 문제점

① 과거 학생회 활동 등을 빌미로 대량체포, 구속

지난 10여년간 발생했던 자주대오 사건들을 살펴볼 때 특이한 점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평균 10여명 이상의 대량구속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대량 체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많았다²⁴⁷⁾. 특히 원광대와 단국대(천안)의 경우, 사건 첫 발생이후 수년이 지나 ‘재탕’하는 등 대량 인신구속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²⁴⁸⁾.

이는 수사기관이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2~3년전의 학생회 간부 등으로 활동한 전력을 문제삼아 마구잡이로 인신을 체포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자주대오 사건 관련하여 체포된 이들은 체포당시 직장인, 군복무 등으로 직업과 신분이 뚜렷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직장이나 군대에서 긴급체포 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인신체포의 남발은 결국 경찰 등 수사기관의 ‘견수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진술만으로 유죄의 물증을 삼을 수 없다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주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조직에 가입했다”, “조직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식의 ‘진술’이다. 조직체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두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수사기관들은 오직 ‘진술’에만 의존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 가운데 몇 사람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강압수사를 했고, 그렇게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구속자들에게 이를 인정하도록 강압적으로 심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²⁴⁹⁾. 수사기관의 이러한 수사방식이 되풀

247) 예컨대, 동서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체포된 14명 가운데 12명이 영장실심사 등에서 풀려났으며, 99년 발생한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은 10명이 체포되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풀려났고 나머지 5명도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반미구국한양 사건은 체포된 23명 가운데 3명 불구속 입건, 4명 영장기각 등으로 풀려났다.

248)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1995년 첫 사건이 발생하여 8명(군인 5명)이 구속되었고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런데 4년이 지난 99년 경찰은 갑자기 주부, 직장인 등 10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별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 가운데 5명을 불구속으로 풀어주었고, 다른 5명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단국대(천안)의 경우, 97년 자주대오 사건으로 11명이 구속되었는데,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런데 경찰은 1년이 지난 98년 이른바 신자주대오 사건으로 5명을 체포, 구속했다.

249) 2001년 발생한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구속된 모씨와 그 가족에게 “공소보류 시켜주겠다”며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8년 과거대 자주대오 사건에서는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공소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는 한 학생에게 ‘일체의 자백’을 받은 후, 훈방 처리해 풀어주기도 했다. 또한 1999년 발생한 광운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연행자 전원에게

이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 없이 일부의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하는 관행이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범죄 입증 책임을 검찰에 두지 않고 피고에게 미루고 있는 재판관행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자주대오 사건에서 재판부가 대부분 ‘진술’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유죄판결²⁵⁰⁾을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이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대 자주대오 사건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²⁵¹⁾은 “증거능력은 원진술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외에,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취득하는 것이고, 원진술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 즉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즉, 원진술자가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북대 혁신대오 1심 재판을 담당한 전주지법²⁵²⁾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의 자백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는 진술조서가 ‘범죄

‘너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풀어주겠다’, ‘반성문만 쓰면 풀어주겠다’는 식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진술서를 서로 대조하며 그대로 인정하라는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250) 예컨대, 1999년 발생한 한양대 ‘반미구국한양’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증거(진술) 진술에 의하면 ‘반미구국한양’은 교내에서 소위 ‘자주적 학생회 계열’의 전위 활동가 조직으로서, 학내 학생회를 장악하여 학생대중 등을 상대로 자신들의 운동론을 관철시키고자 결성....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적단체라고 유죄판결하고 말았다.

251) 대법원 3부(재판장 송진훈 주심 이돈희 이임수 윤재식), 사건 2000도661, 과기대 자주대오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2000.5.12.

252) 재판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인지보고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전북대 내에 ‘자주대오’라는 이적단체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하던중...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박모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인바, 그 진술내용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다를 뿐 아니라... 박모에 대한 진술조서도 믿기 어려운데 경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법원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의 자백 및 위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의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 결성의 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판결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은 전주지법이 선고를 하기 전, 이미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현역군인들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그 군사법원의 판결이 유죄를 증명하는 데서 믿기 어려운 진술을 증거로 했다고 비판하고,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용현, 차문호 조윤희),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한 판결문, 1998. 2. 26.

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자백 또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써 자백만을 의존해서 구속기소하고 유죄판결하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라 할 것이다.

③ 군 입대전 전력을 문제삼아 다수 군인들을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

자주대오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수사의 경향은 먼저 군입대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들을 체포, ‘일체의 자백’을 받은 후 민간인들에게 확대하는 경향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주대오 사건의 구속자 가운데는 항상 군에 입대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입대하기 전 학생회 관련 활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자주대오 사건이 빈발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기무사가 관할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군입대 이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자주대오 사건 관련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과거 전력’만을 이유로 너무도 쉽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과정에서는 군인으로부터 받은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군 수사기관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자백’을 유도하고 있는 점, 또한 법원이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 다른 경우에도 군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를 삼고 있는 재판 관행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좀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입대전 활동을 문제삼아 구속을 남용하는 군기무사의 수사관행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④ 한총련(전대협)의 배후조직으로 왜곡

자주대오 사건에서 나타나는 또하나의 특징은 수사기관이 이들 조직에 대해 “총학생회를 배후조종하거나, 또는 조직원을 한총련 등 지도부에 파견” 하였다고 기소함으로써 예외없이 한총련(93년 이전은 전대협)과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96년의 자주대오 사건들은, 한총련의 ‘8·15 범청학련 통일축전’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총련 와해” 방침을 밝히고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공식발족시켰던 8월을 전후해서 대규모로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사건 발생 대학의 총학생회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의장 또는 지역총련 의장 등 주요 간부²⁵³⁾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한총련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이미지 조작”의 용도로 자주대오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또한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이 한총련

253) 1996년 당시 자주대오 사건이 발생한 부산외대, 전남대, 강원대, 제주대는 총학생회장이 한총련 및 지역총련 의장을 맡고 있었다. 부산외대 총학생회장은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의장, 강원대 총학생회장은 강원총련 의장, 제주대 총학생회장은 제총협 의장이었다.

을 이적단체로 '낙인'찍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과 문제점

검찰은 이들 자주대오 사건을 국가보안법상 제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조직이 “북한공산집단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을 토대로 대학을 혁명의 전진기지로 삼아 남한변혁운동을 이끌어야 하고 총학생회를 장악함과 동시에 운동권 학생들에게 투쟁의 이론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전국 각 대학에 조직된 비공개, 비합법 조직체로서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적목적과 그 단체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적이고도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하여는 단체성과 이적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²⁵⁴⁾이므로 자주대오 사건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①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는 단체

한 집단이 이적단체로서 ‘이적목적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려면 최소한 조직의 성격과 방향을 규정하는 강령·규약 등의 내용, 지휘통솔체계, 조직으로서 정연한 체계와 질서, 지속적인 활동 여부²⁵⁵⁾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자주대오 사건의 공소장을 살펴볼 때 졸업 후 활동중단으로 계속성이 없고, 문제의 활동 또한 졸업직전 까지이며, 지휘통솔체계라는 점을 볼 때도 총학생회 등 학생회 간부활동을 한 이들로 나타나고 있고, 그 체계 또한 학생회 조직과 일치²⁵⁶⁾할 뿐이고,

254)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우의형), ‘천리마’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 1998.5.14.

255) 예컨대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의 공소장에 따르면, ‘활동가조직’ 결성의 점에 대해 “1992년경 10여명이 모여 조직을 결성”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범죄를 행한 명확한 일시와 장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결성당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또한 1992년에 결성된 조직이 200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2000년과 2001년에 3회에 걸친 애국자대회만 나열되고 있어 지속적인 활동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법검찰청(검사 임재동), 2001 형제 53208호 공소장, 2001.6.11.

256) 대부분의 자주대오 사건에서는 그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학생회 체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대오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전·현직 학생회 간부들인 점은 “자주대오 사건은 학생회 모임을 확대왜곡하여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건”이라는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가령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 공소장에서는 “2001.3. 서울대 사범대 호실미상 강의실에서 열린 단국대 활동가 애국자대회에서 2001년 조직체계를 인준하고, 이들이 차례로 등단하여 조직 보위를 위한 다짐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조직체계를 따져보면 결국 학생회 간부 체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대중주체로 지목된 이산라는 2001년 총학생

심지어는 당해 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자파 후보를 뽑고 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모임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결국 이적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령 ‘조선대 자주대오’ 사건 공소장(이 사건 관련자 윤민호에 대한 공소장²⁵⁷⁾)에 따르면 “1995년 10월경, 1995년도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단대회장 및 단대부회장, 여학생회장 및 부회장 후보 추대식을 진행함으로써 1996학년도 조선대학교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의 인준식을 겸한 조직대회”를 열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 모임이 이적단체 가입식이 아닌, 총학생회 선거를 대비한 모임이며 선거이후에는 자연스레 학생회 체계에 흡수되면서 사실상 그 모임은 해체되었다고 주장²⁵⁸⁾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활동가 조직사건은 대부분 학생회 내 모임을 이적단체로 확대, 왜곡하여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서 전주지법은 “총학생회를 장악하여 배후에서 조종하기 위한 비밀조직이라는 전북대 혁신대오의 간부가 총학생회 간부와 구성원 및 직책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적단체 간부 인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총학생회 간부 인선을 ‘전북대 혁신대오’ 조직의 간부 내정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적단체 구성·가입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② 이적성

자주대오 사건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들 조직이 결성된 이후 활동내역으로 적시된 사항은 주로 주체사상 관련 사상학습, 정치학교, 애국자대회(조직대회)²⁵⁹⁾ 등의 모임과 총학생

회장이고, 대중부주체라는 안은미는 부총학생회장, 사상교육주체로 적시된 박요섭은 2000년 총학생회장이다.

257) 광주지방법검찰청(검사 박형철), 공소장, 2002형제42030호, 2002.8.9.

258) 조선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들은 이른바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의 ‘인준식’은 1995년 11월 열릴 총학생회 후보 추대식이었으며, 실제 자주대오 조직 대표로 추대된 이는 1996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에, 부대표로 추대된 이는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추대되었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이 모임은 검찰이 주장한 이적단체의 가입식이 아닌, 총학생회 선거를 대비한 모임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기성정당의 경우에도 선거시기가 되면 선거에 자신의 정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 처럼, 이 모임 역시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모임이었으며,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레 학생회 체계로 흡수되면서 그 모임은 사실상 해체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59) 자주대오 사건에서 조직의 주요 활동내용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애국자대회(또는 조직대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의 주요한 내용은 총학생회 등 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모여 총학생회의 사업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자주대오 사건의 공소장에서는 이 조직의 주요한 활동내용으로 4차례에 걸친 ‘조직대회’를 문제삼았다. “1996년 1월 중순 일자불상경 사업계획 및 교육재정 확보투쟁을 주제로 자주대오 활동가 제1차 조직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총학생회 사무국장 등 총학생회 간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는 것이고 1996년 3월 초순, 교육재정 확보 투쟁을 주제로 개최된 자주대오 활동

회 등 학생회 선거 준비를 위한 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농활학교, 새내기 학교, 민족자주학교 등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행사도 포함되어 있다²⁶⁰⁾.

그러나 과연 이러한 자치행사가 '총학생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²⁶¹⁾.

한편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서 검찰이 직원들의 총회 또는 결성식이라고 지목, 이적활동의 주요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애국자대회'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총학생회 선거에 자파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보인다²⁶²⁾.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자주대오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파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임무, 강령이고 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이 곧 자주대오의 조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소장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사상학습'을 했다고 이를 조직활동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사상학습 교재의 내용은 주로 한총련이나 총학생회에서 발행한 정세 분석에 관한 문서(유인물), 또는 소위 <구국의 소리 방송> 문건 등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

가 제2차 조직대회를 열었고, 1996년 5월 말, 위와 같은 활동가 조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 재정 확보투쟁 총화, 북한 김형직 사범대과 자매결연식을 맺자' 등의 주제로 제3차 조직대회를 열었으며, 1996년 9월 초순 8.15범민족대회와 관련한 주제로 제4차 조직대회 참가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는 이 '이적단체'의 활동내용이라고는 조직대회 외에는 적시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이적활동을 하는 이적단체로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60) 예컨대 한양대 '반미구국한양' 사건을 보면, 공소장에서 이 조직의 활동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애국자대회'를 비롯한 '정치학교' '민족자주학교' '새내기학교' '농활학교' 등인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행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활학교'는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학점으로도 인정받는 농촌활동을 가기 전에 갖는 준비모임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서대 자주대오 사건에서도 이적단체로 규정된 '민족21'은 단체 명의로 학내의 각종 이슈에도 대자보를 내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61)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에서 검찰은 이 조직이 92년경 결성된 이후 사상학습, 신입조직원 영입을 위한 활동, 수회에 걸쳐 애국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적활동을 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3차례의 애국자대회에 관해 검찰은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위 모임의 내용을 살펴보다도 정세강연, 새 조직원 인사, 1학기 활동보고, 방중계획, 결의 발언, 노래 제창 순서로 나열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 이러한 행위가 어떻게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인지 의문이 든다. 서울지방검찰청(검사 임재동), 2001 형제 53208호 공소장, 2001.6.11.

262) 광운대 자주대오는 "1998.3. 중순 '98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후보추대식 및 광운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준) 예비대오 총회"를 개최"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검찰은 위 모임이 자주대오 결성식이라고 단정지었으며, 위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했다. 서울지검(검사 강찬우 등), 99형제132230호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장>, 1999.12.4.

또한 한양대 반미구국한양 사건에서도 여러차례 '애국자대회'가 적시되어 있는데 주로 "총학생회장 선거 및 각 단대 학생회장에 출마할 후보들을 인준" 하는 등의 행사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러나 이러한 문서들은 주로 추상적인 선전 구호 등으로 이를 소지하고 읽어보았다는 이유로 이적단체 조직활동의 근거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위 내용으로 사상학습을 하고 난 후 그것에 기반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거나, 또는 그 조직 명의로 공동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그 모임의 이적활동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적단체’ 문제에 대해 서울고법²⁶³⁾은 “어느 집단의 행위중에 일부 이적성을 띤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집단 전부를 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집단이 제작한 표현물 가운데 일부가 이적성을 띤다고 하여 그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이 될지언정 그 집단이 바로 이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렇듯 자주대오 사건들의 공소장에 나타나있는 이적단체로서의 주요근거로 제시된 활동들은 이렇듯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인지에 대한 증명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들 자주대오는 학생운동 내에서 통상적으로 ‘자주대오’라고 일컬어지는 정파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특정 조직으로 확대, 왜곡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주대오’는 일반적으로 민족해방계열(NL) 계통의 학생회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용어는 특정 조직 이름을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러한 방향에 따라 학생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이라는 취지의 보통명사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경향성에 따른 분류방법인 것이며 또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자파 후보를 뽑고 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모임의 내용을 ‘이적단체로서의 정연한 조직체계와 구체적인 활동’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이적성을 추정함으로써 수많은 이적단체를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구속자들의 대부분이 1심 재판의 결과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에서도 수사기관의 무작위적 구속기소 관행을 엿볼 수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 그 자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수사기관들의 자의적인 법 적용과 면밀한 검토 없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하는 법원의 관행이 무려 287명의 이적단체 구성원을 양산한 것이다.

263)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우의형), ‘천리마’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 1998.5.14.

<표>자주대오사건일람

사건명	구속일	체포인원	구속인원	조사기관	재판결과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91.6.2.	18명	18명 (군6명)	치안본부, 기무사	기소유예 1명
청주대 자주대오	91.6.11	17명 (군9명)	10명 (군5명)	충북도경대공 분실, 기무사	
한남대 민족한남 활동가조직사건	91.7.27	13명	11명 (군인 6명)	충남도경대공 분실, 기무사	
부산대 활동가조직	95.2.12/7.8/9. 11/96.4		20명		1심 집유 18명 2심 집유 3명 보석 1명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95.3.15/4.1	17명(1명 불구속)	16명 (군인 9명)		1심집유 14명 2심집유 1명 실형(10월) 1명
이리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95.5/96.3		8명 (군인 5명)		보석 2명 1심 집유 6명
전주우석대 자주대오	95.8.29/12.24		9명 (군인 4명)		전원 1심 집유
충남대 활동가조직	95.10.18/96.3 /98.1		15명 (군인 9명)		1심 집유 12명 2심 집유 1명 실형 2명
남충련 자주대오	96.6.30	15명(1명 불구속)	총 14명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1심 집유 12명 2심 집유 1명 보석 1명
상지대활동가조직	96.7.27/8. 31 /10.		총 10명 (군인 4명)	강원경찰청/ 기무부대	1심 집유 7명 2심 집유 3명 구속취소1명
부산외대 자주대오	96.9.2 /96.10		총 13명 (군인 2명)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	보석3명 1심집유 4명 2심집유 2명 실형3명
제주대활동가조직	96.9.20		총 4명 (군인 3명)	제주경찰청 / 기무부대	전원 1심 집행유예
강원대자주대오	96.11.29/9		총 9명 (군인 1명)	강원경찰청 / 기무부대	1심집유 6명 2심집유 2명 실형 1명

사건명	구속일	체포 인원	구속자수	구속처	재판결과
진주경상대 활동가조직	96.11.29 /97.7		총 7명 (군인 1명)	경남경찰청 / 기무부대	1심 징유 5명 실형 2명
전북대 자주혁신대오	97.6.27		19명(현역 군인 8명)	전북경찰청, 기무사	1심 국가보안법 무죄 (군인은 유죄판결)
부산동아대 자주대오	97.9.11/ 98.4		15명(현역 군인 2명)	부산경찰청, 안기부, 기무사	기소유예 2명 1심징유 8명 2심징유 5명
단국대 천안 자주대오사건	97.9.30		11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1심 징유 9명 2심 징유 2명
연세대 원주 자주대오	97.10.4		10명 (군인3명)	강원경찰청보안 수사대, 기무사	보석 6명 1심징유 3명 2심징유 1명
부산인제대 자주대오	98.5.29	14명	11명(현역 군인 5명)	경남경찰청 보안수사대 기무부대	1심 징유 9명 2심 징유 1명
울산대 혁신대오	98.7.25	5명	5명 (군인1명)	경남지방경찰청, 기무사	2심 징유 4명 실형 1명 *1인 대법에서 무죄
단국대(천안) 신자주대오 사건	98.12.	5명	5명		1심 징유 2명 실형 3명
과기대 자주대오 사건	99.3.16	7명	5명	충남경찰청 보안수사대	1심 징유 3명 2심 징유 2명
동서대자주대오 “민족21”사건	99.3.21	14명 (군1명)	2명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	1심 전원 집행유예
한양대 반미구국한양 사건	99.6.7.	23명 (군9명)	17명 (군8명)	서울경찰청 장안동분실 기무부대	1심징유 8명 2심징유 7명 군인 1명 실형 재판중 1명
원광대 자주사건	99.7.29	10명 (군5명)	군인 5명	전북경찰청 기무부대	5명 기소유예
광운대 자주대오 사건	99.11.4/ 00.2	8명 (군2명)	6명 (군2명)	경찰청 홍제동분실	기소유예 2명 1심징유 2명 보석 2명
한신대 활동가조직 사건	00.11.11	4명	4명(모두 군인)	기무사	기소유예 3명 실형 1명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	01.	9명	7명(군인 2명)	경찰청 홍제동 분실, 기무사	1심집행유예 7명 2심집행유예 2명
조선대 자주대오 사건	97. 2002		1명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2심집행유예

3)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개요 및 분석

가)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관련자 구속현황

국제사회주의자들(International Socialists · 이하 IS) 사건은 1992년 2월, 18명의 첫 구속자가 발생한 이후 2002년까지 약 10여년동안 총 163명이 구속²⁶⁴⁾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이 발생하면 그 조직의 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하여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는데 IS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10여 차례 넘게 구속자가 발생한 전례 없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IS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이며, IS가 발간한 각종 선전물들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기소했다.

IS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IS 사건에서는 줄곧 토론행위 자체가 주요 조직활동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주요하게는 IS에서 발간한 기관지나 유인물을 집회장에서 판매한 행위 또는 소지하고 있는 책자가 문제시 되었다. 즉, 기관지 판매 이외에 자신들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구체화 한다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점에 주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크게 △이적단체의 정의가, 사실상 북한을 지칭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단체에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까지 확대한 국가보안법 개정(1991년, 7차개정) 으로 인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으나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자의적인 적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유죄판결하였고 △98년 이후 검찰이 이적단체로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혐의를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구속기소하였으며 △구체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특정 사상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나)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내용과 문제점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주로 2가지로 나타난다. 국가보안법상 7조 3

264)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2년 30명 구속, 1993년 1명 구속, 1994년 47명 구속, 1995년 6명 구속, 1996년 3명 구속, 1997년 12명이 구속되었으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속자는 계속 발생해 1998년 26명 구속을 비롯, 1999년 9명 구속, 2000년 14명 구속, 2001년 11명, 2002년에도 4명이 구속되었다. 민가협 조사 통계

항 이적단체 가입혐의,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판매 혐의가 그것이다.

① 이적단체 기소의 문제점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은 1992년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는 판결²⁶⁵⁾을 받았다.

IS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19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한 것으로, 법 개정 이전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반면, 개정 이후에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까지로 이적단체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검찰은 법 개정 이전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구소련을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비판해온 ‘트로츠키주의’²⁶⁶⁾를 신봉해온 IS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이 조직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해온 단체’로 규정, 1992년 2월경 IS 조직원들을 대거 구속기소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IS에 가입한 이들은 법정형이 무거운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했으나, 단체 구성을 처음에 주도하거나 활동기간이 오래된 이들은 오히려 법정형이 낮은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IS 가입 시기가 쟁점이 되었다²⁶⁷⁾. 1992년 6월 23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1부(김연태 부장판사)는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²⁶⁸⁾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후자

265)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92노 3315 판결, 1992.11.17.

266) 트로츠키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한 유파에 속하지만, 구 사회주의 국가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구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하여 관료주의 기반해서 인민을 억압하는 체제인 스탈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트로츠키주의 사상의 핵심에 대해 정성진 교수(경상대)는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는,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와는 정반대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의 일종인 국가자본주의 체제라고 규정하는 국제사회주의 계열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체제는 미국,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보다 ‘더 진보적인’ 체제 혹은 ‘덜 나쁜’ 체제(the lesser evil)가 아니라 더 진보적이지도 덜 나쁘지도 않은, ‘똑같이 나쁜 체제’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성진, <책갈피출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서에 대한 의견>, 1999.10.25.

267) “보안법 구속자 첫 무죄석방”, 「한겨레신문」, 1992년6월24일 / “주동자는 무죄, 조직원은 유죄, 보안법 적용흔선”, 「동아일보」, 1992년6월27일

268) 재판부는 “지난해(1991년) 5월 31일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적단체 개념에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목적을 갖는 단체를 새로 포함시켰으며 이 신설조항에 따라 검찰은 조현정씨가 지난해 6월 8일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에 가입했다는 점을 들어 이적단체 혐의로 기소했으나 실제 조씨가 이 조직과 관례를 맺은 것은 법 개정전인 90년 12월 28일이므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를 91년 5월 개정법에 신설했다”고 전제하고 “검찰이 북한과는 노선이 다른 IS를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로 보는 이상, 조씨가 가입한 시점에서는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²⁶⁹⁾을 내린 이후 19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적단체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더구나 ‘국가변란’에 대한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형벌구성요건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들의 자의적 남용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연유로 IS 사건과 관련하여 1995년 부산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즉, ‘국가변란’이라는 개념의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국가변란을 선전’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²⁷⁰⁾는 것이다. 이처럼 IS는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라고 규정됨으로써 합리적인 법리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것이다.

<이적목적을 가진 단체로서의 계속성 문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적의 목적성과 계속적이면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결합체라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져야 한다²⁷¹⁾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IS에 대해 ‘계속적’이면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1992년 첫 구속당시 파악한 IS의 주장요지를 지금까지 그대로 원용할 뿐이다. 예컨대 1998년 검찰은 “IS 조직은 1991년 11월, 이미 결성된 ‘노동자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대개편하여 새로이 결성한 조직으로, 기관지로 <지지와 연대>, <청년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 <노동자연대>, <사회주의노동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조직원 편입 및 사회주의 확산에 주력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다수 참가하는 총파업 지회에 참가하여 기관지 <사회주의노동자>, <선진노동자> 등 정

269)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89헌가113 판결

270)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박태범), 1995.1.17.결정.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란’이라는 개념은 1948.12.1.제정된 국가보안법에서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용어이고,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이미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이 상당한 정도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위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0.4. 95헌가2(주심 재판관 이재화)

271)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우의형), ‘천리마’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2심 선고공판, 1998.5.14.

치신문을 판매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 건설을 추진²⁷²⁾”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의 위 기관지들은 이제 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위 기관지들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위 주장 어디에도 최근 IS 조직의 구성실태 등 현황이라든지, 이들이 정치신문 판매 이외에 자신들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과 혁명정당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그저 추상적으로 정치신문 판매 행위가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 선동하고 혁명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뿐이다.

이처럼 검찰은 1992년 초기의 IS 활동 내용을 지금까지 이적단체의 근거로 내세울 뿐, 이 조직이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공소사실>

한편 최근 2, 3년동안 검찰은 IS 관련 구속자들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제7조 5항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 조직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출판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IS에서 퍼낸 유인물을 집회장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공소장 첫머리에는 “일체불상의 시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 조직원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에 가입하고²⁷³⁾” 또는 “위 단체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자”라고 일괄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제7조 3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IS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²⁷⁴⁾에 반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이므로 공소제기는 무효”라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일체불상의 장소, 시간에 이적단체에 가입하다?>

이처럼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적단체가입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체포하기 때문이고 수사과정에서 본인의 자백조차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

272) 서울지방법검찰청(검사 이석수), 98노3015, 박효근 등 11명에 대한 항소이유서, 1998.12.19.

273) 서울지방법검찰청의정부지청(검사 이형철), <유병규에 대한 공소장>, 2000 형제 40576호, 2000.8.4.

274)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크게 ‘첨부·인용의 금지’와 ‘여사기재 금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사기재 금지’란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다. 이상희, <강철구 사건에 대한 변론요지서>, 2001.1.

인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7조 3항(이적단체 가입)이 적용된 박현정씨(2000.5.7.구속)의 경우, 공소장²⁷⁵⁾을 살펴보면 “1994.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S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동 단체의 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그 무렵 이를 수락한 후 동 단체의 사상학습 교재와 <노동자연대> 등과 같은 동 단체의 기관지 등을 주교재로 하여 조직원들과 함께 사상학습을 전개하는 등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박씨의 이적단체 가입 경위에 대해 ‘1994년 12월 경, 서울 이하 ‘모처’에서 IS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직원으로서의 가입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기재했으나 그 범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적시가 없을 뿐 아니라 ‘이적단체’에 가입시킨 ‘주범’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이적단체의 가입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재판부는 박씨를 1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했다.

② 이적표현물 기소에 대한 문제점

IS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표현물에 대한 혐의는 집회장소에서 IS 기관지인 <노동자 연대>를 판매한 것과 수사기관에 체포 당시 압수된 책들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소지하거나 판매한 책자, 유인물 등에서 일관되게 표현된 사상은 ‘트로츠키주의’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²⁷⁶⁾들은 이 사상의 매우 특이한 측면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에서는 음모적인 쿠데타나 무장봉기에 대해 반대하고 ‘대중의 자발성’과 ‘대중으로부터의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상이 최소한 무장봉기 등에 의해 국가권력을 전복하려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IS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폭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²⁷⁷⁾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도 주로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학습모임을 갖거나 또는 집회장에서 <노동자연대> 등 유인물을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해온 것이 “행위”의 전부이다.

또한 변호인들은 “기존의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현 북한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담은 표현물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들의 행위에는 상징적 위험성마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에 대해서도 1957년 미국 연방대법원

275) 서울지방법검찰청(검사 김정유), <박현정에 대한 공소장>, 2000 형제 29306호, 2000.4.6.

276) 조광희 등, 1998년 5월 7일 구속자들에 대한 <변론요지서>, 1998.10.19.

277) 이우봉의 1심 재판 최후진술문, 1999.1.

의 판결(Yates vs Us)²⁷⁸⁾에 비추어볼 때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란 “불법적인 행동으로 직결되거나 즉각적인 폭력행사를 주장하는 선전·선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들의 내용을 보면, 트로츠키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불법한 행동으로 직결되는 선전·선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단지 추상적인 원리의 선전·선동에 불과하고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2000년 이후 구속기소된 이들의 공소사실을 살펴볼 때, 이들은 대부분 각종 집회에서 IS의 기관지인 <노동자연대> 등을 판매하고 기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을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모두 2, 3년전의 일이었고 이후에는 판매사실 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2, 3년전 집회에서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세워 이들을 구속하였는데 이렇듯 사진 채증 등 행적을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뒤늦게 구속한 처사는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우려먹기식으로 인신구속을 남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진촬영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법원이 ‘긴급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점이다. 즉, 보안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사진촬영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²⁷⁹⁾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 촬영된 것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대공수사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278) 캘리포니아주 공산당 간부 Yates를 비롯한 15인은 1951년 스미스법(정식명칭은 파괴활동방지법. 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 위반으로 기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7년, “스미스법은 강제적인 국가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학습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행동이 없는 사상의 선동과 학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혁명의 이론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특정자의 ‘혁명적’ 내지 ‘폭력적’인 행동을 모호하게 언급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종류의 선동은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하에서 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장호순,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년.

279)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대휘)는 2001년 2월 8일,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한용진 씨가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이석기(수배중)씨와 회합한 혐의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사진2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장기간 내사 등이 불가피한 안보사범의 특성상 긴급한 증거보전 필요성에 따라 한씨와 민혁당원 이모씨의 회합현장을 영장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요건 완하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장없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 촬영된 것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하는 1996.8.30.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상 증거법칙 요건 완화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사진채증 증거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사진'의 증거능력여부가 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만큼,公安수사관들의 사진촬영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과 통제가 요구되며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때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IS에 가입하거나 또는 IS의 기관지등을 소지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 이외에도 IS가 표방하는 트로츠키주의의 이론 또는 주장이 담긴 책자를 출판한 출판인²⁸⁰⁾, 이러한 출판물의 일부를 요약하여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학생²⁸¹⁾, IS 기관지를 위탁판매한 서점주인²⁸²⁾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광범위한 구속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동안 163명의 구속자를 발생시킨 IS 사건은 '국가변란'이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남용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적단체로 판결난 이후 경찰의 무분별한 대량구속이 남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구속은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실태와 사법부의 판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이 IS 관련자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것은 1992년 당시 조직원의 주장, 그리고 <노동자 연대> 등 기관지와 체포된 사람들이 소지한 책들을 복사한 복사물과 집회에서 <노동자 연대>를 판매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이렇듯 IS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주요근거인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한다'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이적행위인지에 대해 검찰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검찰의 기소대로, 천편일률적인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구체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특정 사상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명백히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80) 책갈피 출판사 대표인 홍교선씨는 같은 책을 재차 출판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98년에 이어 1999년에 또다시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책갈피 출판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이던 홍씨는 1998년 11월 25일 제작·판매한 「마르크스 혁명적 사상」(알렉스 켈리니코스 저, 정성진 역) 등 11종의 서적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는데 1999년 6월 9일, 구속되었다 풀려난 1999년 2월경부터 다시 위의 책들을 판매했다고 구속된 것이다.

281) 하영준씨(당시 한양대 재학중)는 PC통신 하이텔 '인터내셔널' 동호회 게시판 및 자료실 등에 「Race and Class」(민족과 계급, 켈리니코스 저), 「광란의 자본주의」(크리스 하먼 저, 책갈피 출판사) 등 책의 내용 일부를 영문 또는 요약하여 게시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98년 4월 13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제7조 1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제7조 5항)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Race and Class」의 저자 켈리니코스(영국 요크대학 정치학)교수는 97년 3월 35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초청으로 고려대에서 강연을 한 바 있다.

282) 1997년 4월 15일 인문사회과학서점 대표인 유정희(「그날이 오면」), 은종복(「풀무질」), 김용운(「장백」) 등 3인은 '국제사회주의자' 및 '혁명적 사회주의 그룹' 기관지 등을 판매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죄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사상에 대한 처벌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다.

4)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 개요 및 분석

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김대중 정권 시기 동안 발생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1,058명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으로 이적단체 가입죄가 적용되어 구속기소된 이는 전체의 53.9%인 567명이다.

<표> 한총련 대의원 구속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총구속자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범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가운데 43.7%의 구속비율을 보이던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1999년 이후에는 50%를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급감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55.5%를, 2002년에는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한총련 대의원 구속 현황²⁸³⁾

구분 연도	1998 (2.25~12.31.)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총
한총련 대의원 구속인원(명)	170	157	71	72	90	7	567
보안법 위반 총 구속인원(명)	389	288	128	118	126	9	1,058
비율(%)	43.7%	54.5%	55.5%	61%	71.4%	77.8%	53.6%

한편 아래 <표> 한총련 관련 구속 및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기소된 시점인 1997년 이후부터 2001년 8월까지 한총련 관련 구속자는 모두 59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56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한총련 관련 검거 및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적단체로 기소된 1997년부터 1999년 8월까지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980명이고, 이 가운데 796명을 검거하여 448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3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선거에 당선하자마자 ‘사법처리 대상자’가 된 것이다.

283) 민가협 조사·통계.

<표> 한총련 관련 구속 및 기소현황²⁸⁴⁾

연도\구분	구속인원	기소	불기소	수사중
1997	191	191		
1998	127	121	6	
1999	162	149	13	
2000	101	95	6	
2001(1월~8월)	13	4		9
계	594	560	25	9

<표> 한총련 관련 검거 및 사법처리현황²⁸⁵⁾

구분 기준	사법처 리 대상자	검거자 처리현황(796)				사법처리현황(774)			미검자
		계	구 속	불구속	내사종결	계	구공판	기소유예	
97.1.~12.(제5기)	388	366	206	160		366	351	15	22
98.1.~12.(제6기)	301	269	145	118	6	263	252	11	32
99.1.~8.(제7기)	291	161	97	48	16	145	137	8	130
계	980	796	448	326	22	774	740	34	184

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과정

각 대학마다 전체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총련은 제5기를 구성하여 5월 30일부터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열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에 대해 원천봉쇄 방침을 세우고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 검문, 검색 등으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출범식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 이에 학생들은 출범식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경찰과 긴장관계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석 치사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6월 10일 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열어 “제5기 한총련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월말까지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하지 않은 대학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친북이적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검·경은 8월 1일부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대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하기 시작했다.

284) 법무부, 2001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법제사법위). 연도 기준일자는 ‘당해연도 사법처리 착수시점부터 다음해 사법처리 착수시점 전까지’이다.

285) 1999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이에 앞서 검찰²⁸⁶⁾은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의 ‘8·15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 직후인 1996년 8월, “한총련 와해” 방침을 밝히고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²⁸⁷⁾를 공식 발족시켜 가용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시켜 왔다. 당시 검찰은 “한총련 와해” 방침을 천명했으나 직접적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7년 5월 한총련이 제5기 출범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석 치사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빌미로 검찰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국가보안법상 제7조3항(이적단체)으로 기소한 것이다. 결국 당시 검찰은 ‘이석 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한총련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입어 ‘이적단체 프로젝트’를 강행한 것이다.

다) 검찰의 한총련 이적단체 기소의 문제점

검찰이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기소한 주요 근거는 한총련의 강령과 규약, 그리고 활동내용이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투쟁목표 및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한총련 노선에 동조하여 각 대학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선출됨으로써 이적단체 가입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으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적단체 가입죄로 기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먼저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학생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이적단체 가입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때부터 학생들은 수배자가 되고 곧이어 검찰이 설정한 시한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 등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모든 활동을 제약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한총련 대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내용은 대부분 총학생회장(또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당선된 사실(이적단체 가입)과 한총련 명의의 유인물 또는 자료집을 소지했다(이적표현물 소지 및 취득)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검찰의 처사는 어떠한 문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한총련 와해”에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공안 논리에 의한 처벌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은 한총련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을 이적단체의 주요한 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투쟁목표 및 노선을 취하’는 것이 어

286) 1996년 8월 17일 대검찰청 최병국公安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총련의 모든 산하 기구, 조직들을 이적단체로 보고, 핵심간부들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등으로 전원 사법처리함으로써 한총련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87) 96년 9월 2일 대검찰청은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등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총련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를 공식발족시켰다. 합수부는 “한총련의 친북이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인물 및 그 배후세력 척결에 가용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96년 내무위 국감자료). 5, 6공 당시 권력의 이완현상이 두드러지고 대항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즈음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권력내부의 이완현상을 통제하고 대항세력을 거세하려고 했던 이른바 ‘합수부’가 문민정부에서 부활한 것이다.

떻게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이적행위인지에 대해서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 천여 학생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만들고 수 백여 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한총련의 위 주장은 많은 시민단체나 또는 학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대검 공안부)은 이에 대해서도 “한총련이 주장해온 사안들 중 일부는 현재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주장은 모두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모태로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²⁸⁸⁾”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 스스로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중기준에 따라 편파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며, 헌법에도 보장된 법 앞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똑같은 주장에 대해 사람에 따라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면 이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어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과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행위에 따른 처벌을 하는 법이 아닌 정부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법원의 판결 경향

대법원이 제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후, 법원은 제10기 한총련까지 “제5기 한총련과 궤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있다.

제5기 한총련에 대해 대법원은 1998년 7월, 한총련 5기 의장이었던 강위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²⁸⁹⁾에서 한총련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기 위해 선전, 선동 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남적화통일 노선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제5기 한총련을 이전의 한총련과 달리 이적단체로 판결한 주요한 이유로 ‘간부진의 성향에 따라 노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기를 별도로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고 했다. 즉, “제1기 내지 제4기 한총련이 단 한번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판정 받은 일이 없고, 피고인 이전의 한총련 의장들에 대하여는 단 한번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적용된 바 없는데 반하여, 원심이 새삼스럽게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하더라도 제5기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원심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이라 할 수 없다”며, “기록에 의하면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 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288) “한총련 여전히 이적단체”, 연합뉴스, 2002.4.25.

289) 대법원 제1부(재판장 최종영 주심 이임수 이돈희 서성), 1998.7.28. 선고, 98도 1395 판결.

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적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본 점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는 역으로 ‘간부진의 성향에 따라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무시한 채 5기가 이적단체이고 이후 한총련은 그를 답습하고 있으므로 이적단체라고 판결하고 있다.

1998년 결성된 제6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제6기 한총련도 기본노선 및 골격에 있어서 제5기까지의 한총련과 궤를 같이 하면서 종전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투쟁목표 및 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 이적단체로 판결²⁹⁰⁾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10기 한총련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 과정에서 1999년 대전지법의 판결은 법리적 쟁점을 다룬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한상곤)는 1999년 제6기 한총련 대의원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3항)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상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정단체의 강령이나 활동 내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반국가 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6기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강령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 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하고 있어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6기 한총련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강령이나 내용이나 활동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점만으로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고, 검사가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무죄²⁹¹⁾라는 것이

290) 1998년 서울동부총련의장 안중언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제2부(김형선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 판결. 1999.5.28. 선고, 99도1222 판결.

291) 특히 대전지법은 당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는데, 대전지법은 “국내 법원이 김근태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처사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한상곤), 1999.4.1. 선고, 98고합532 판결; 1999.8.31. 선고, 99고합132 등 판결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1998년 10월 20일 박태훈 사건에 이어 1999년 2월, 김근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인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이사회는 김근태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한국정부가 김씨가 행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 생겼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며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국가보안법의 처

다. 그러나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뒤집어지고 말았다²⁹²⁾.

결국 대법원의 제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 이후, 법원은 검찰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엄격한 법리검토 없이, ‘간부진의 성향에 따라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무시한 채, 5기가 이적단체이고 이후 한총련은 그를 답습하고 있으므로 6기, 7기, 8기에 이어 9기, 10기 한총련까지, 한총련은 무조건 이적단체라는 등식을 전제로 하여 천편일률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총련 사건의 공소장에서부터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문구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인 ‘과소정권의 타도,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과소악법의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및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단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만들고 수백여명의 학생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여 처벌하는 것은 예단을 갖지 않고 증거중심의 재판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대원칙을 사법부 스스로 거스르는 처사에 불과²⁹³⁾할 뿐이다.

마) 한총련의 강령 변경과 이적단체 판결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총련은 이적단체 규정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어온 강령을 개정하고 활동방향을 대폭 변경하였다. 2001년도 제9기 한총련은 강령 가운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었던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부분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6.15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2년도의 제10기 한총련은 더 나아가 정부의 입장, 사회의 여론,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법화를 모색하며, 이적규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별조항을 세심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을 대법원에 충고했다.

292) 상급심인 대전고법은 종래의 판결대로 북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니까 이적단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6기 한총련은 종래 한총련의 조직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간부들을 선출했고, 출범식을 전후하여 회합하는 과정, 출범선언문, 강령 규약 등에 나타난 사상적 경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6기 한총련 역시 종래 제1기에서 5기까지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과 그 궤를 같이 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293) 이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첫 기소가 이뤄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들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기소한 서울지검 공안부로부터 특강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그 문제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6월 14일, 서울지법 회의실에서 서울지검 신건수 공안2부장은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총련 관련 특강을 한 일이 있었다. 교육을 받은 판사들은 한총련 학생들의 재판을 맡게될 판사들로, “판사는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 등 공안당국의 한총련 와해방침에 사법부마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었다.

기도 했다.

한총련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던 때와 다르게 강령과 규약을 변경하였고 과거의 한총련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총련 강령과 규약 및 활동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판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에 대한 검토도 없이 검·경은 제10기 한총련이 활동을 개시하자마자, 변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김형주 제10기 의장을 구속하고 10기 대의원들에 대해서도 잇달아 탈퇴요구를 하는 등 공안당국이 “한총련 와해”를 공언했던 지난 1996년 입장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검찰은 한총련의 변화에 대해서 “한총련이 강령을 바꿨지만, 대외적 위장일 뿐 본질적으로 연방제 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9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적단체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제10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원심²⁹⁴⁾을 확정하여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한총련=이적단체’라는 기존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²⁹⁵⁾은 2003년 5월 13일 열린 제10기 한총련의장 상고심에서 제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다. “2002년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주요 근거로 삼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재판부는 ‘절대다수의 판례’에 따라 정확한 법적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총련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294)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한총련의 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제10기 한총련이 그 강령규약을 온건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전술적 조치일 뿐”이라고 단언하였으며, “제10기 한총련은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국가보안법 7조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판결하였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2002고합 236, 선재성 판사, 2002.11.18). 또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제1형사부 2002노724, 박삼봉 판사, 2003.1.16) 역시 똑같은 논리와 이유로 제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295)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604 판결.

결국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사법처리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한총련 자체를 관행적으로 불온시 한다는 점에서 “법의 이름을 한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대검은 7월 25일 한총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즉,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지명수배중인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우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²⁹⁶⁾.

그러나 대검은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²⁹⁷⁾고 판단함으로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기소한 방침을 재고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검찰은 제11기 한총련 의장 등 간부 44명에 대해 한총련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과 관련하여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며, 이 가운데 지역총련 의장, 특별기구 위원장 등 중앙상임위원급 핵심 간부 11명에 대해서는 수배조치를 내렸다. 물론 이는 기존에 일괄적으로 한총련 대의원 전원에 대해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내린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으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점에서는 다를 바 없는 조치였다.

특히 법원은 2003년 11월, 제11기 한총련에 대해 여전히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은 11월 28일 검찰의 기소내용²⁹⁸⁾을 그대로 받아들여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또 “11기 한총련이 범청학련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로부터 사실상 지휘·조종을 받아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수용하고 있고, 빈번한 불법 대북 접촉 및 서신교환 등을 통해 하달된 북한의 투

296) 이는 그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 출범과 더불어 관행에 따라 무조건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일괄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가협 민변 등, <한총련 문제 관련 대검 방침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공동논평>, 2003.7.25.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이 논평을 통해 “또한 이번 방침은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97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탈퇴 강요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 학생 자치권에 대한 탄압이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만하다.”고 평가했으나, 제11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선별적인 수배해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97) 제11기 한총련에 대한 수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제11기 한총련의 강령·규약 및 총노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여전히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그 핵심주동자 및 과거 폭력행위 관여자에 대하여는 내사를 계속하여 혐의 확인시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대검, 2003.7.25.

298) 대구지검은 2003년 10월,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인 최성택(경북대 총학생회장), 최용석(계명대 총학생회장) 씨를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로 구속기소 하였다.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10기 한총련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라는 것이다. 대구지검(검사 김진원), 2003형 제97207호, <최용석에 대한 공소장>, 2003.10.27.

쟁지침에 따라 11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1기 한총련에 대한 첫 이적단체 판결은 엄격한 법리 검토없이 “한총련=친북적=이적단체”라는 예단에 따른 판결이고 법원의 전근대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다.

마) 한총련 탈퇴 강요와 양심의 자유

한편 공안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탈퇴를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무엇보다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공권력을 통해 한총련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한총련의 친북이적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대단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인간의 내심에 대하여 이분법적인 재단을 하여 처벌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으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이적단체에 가입한 것이므로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등식을 설정하여 강제로 내심의 의사를 밝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제8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구속·기소된 진환(2000년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씨는 한총련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 해왔으나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 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것은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이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상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에 한총련 탄압에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한총련은 학생들의 자치 단체이기에 한총련 대의원의 탈퇴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간섭할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씨의 경우도 예외 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사) 결론에 대신하여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공안논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북의 주장(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 이적단체의 주요기소, 판결의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지만²⁹⁹⁾, 제반 재판과정을 살펴볼 때 법원이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법원이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특히 변화된 남북관계와 그로인한 보안법 개폐논쟁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치기구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고루한 처사이다. 따라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간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9) 대법원 제1부(재판장 최종영 주심 이임수 이돈희 서성), 1998.7.28. 선고, 98도 1395 판결.

3.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가. 국가기밀 조항 입법 및 개정 연혁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1958년 12월 26일 제3차 개정(법률 제500호, 이른바 '2·4파동') 때 신설되었다.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가 1991년 7차 개정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3차 개정 당시 개정 국가보안법 제4조에서는 국가기밀에 대해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국가방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적에게 비밀로 보지 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화 기타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제4조 용어례)고 정의하였고, 제11조(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등)에서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거나 이를 방조(1항), 누설(2항)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3차 개정법 제12조(정보수집)에서는 국가기밀이 아닌 ‘정보’를 구별하여 이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즉,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항)”고 규정하였고, “관공서, 정당, 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2항)”고 규정하였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상에서 규정한 국가기밀은 창설될 시기부터 그 개념이 정치·군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의 영역까지 포괄한 내용으로 매우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국가기밀 처벌조항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래 군사상의 기밀탐지만을 의미하던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³⁰⁰⁾고 한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의 간첩(제98조 1항)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여 군사관련 이외의 일반적 기밀사항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따로 이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었다³⁰¹⁾.

또한 이러한 국가기밀이나 정보는 적에게 전달, 교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처벌의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막연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국가기밀 조항은 1960년 6월 10일 다시 한번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4차 개정, 법률 제

300) 문인구 편저, 「신국가보안법 개론」, 경찰도서출판협회, 1959, 3쪽, 69~70쪽참조; 박성호,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의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6/7월호. 재인용

301) 박성호, 위의 글. 당시 대법원의 형법 98조에 대한 판례는 군사기밀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대한 국가적 기밀을 확대하여 해석했다.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은 그 범위가 광범하여 전시의 군사상 기밀에 국한한 바 없고 … 현재와 같은 대공정세 하에 있어서는 군사상의 기밀과 국가일반 정책하의 기밀의 한계는 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다.” 대법원 1957.9.20. 선고, 4290 형상228 판결

549호). 제2조(군사목적수행)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의 간첩죄를 국가보안법상의 처벌조항으로 포함시켰으며, 그외의 일반적 기밀에 관한 탐지, 수집, 누설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3조(일반목적수행)를 두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4차 개정법에서는 제12조(정보수집)를 삭제함으로써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일반에게 공지된 정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13조(국가기밀, 정보의 교부, 전달, 중개)를 삭제하였다³⁰²⁾.

그후 국가보안법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한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 된다. 제2조의 군사 목적수행과 제3조의 일반 목적수행 조항이 한데 묶여 제4조(목적수행)로 변경되었고, 또한 그 대상을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형법 제98조의 간첩행위(전단)와 함께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행위(중단)를 각각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였다³⁰³⁾. 그러나 이 조항과 형법상의 간첩죄는 그 구성요건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고,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형법상 제98조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가기밀 조항은 1991.5.31. 제7차 개정시에 다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종전에 국가기밀로만 규정하였던 것을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로 나누고, 제4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302) 이 조항을 전문 개정된 취지는 1958년 국가보안법 제4조(용어해)는 국가기밀에 관한 범위를 대단히 넓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에 관한 모든 범위에 걸쳐서 이것을 국가기밀이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된 죄를 처벌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모든 범위를 포함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모든 공적 생활의 전 영역이 국보법의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도 처벌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동법 제12조(정보수집), 제13조(국가기밀, 정보의 교부, 전달, 중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역시 독소조항이라고 보아 삭제하였다. 국회의회의록 제35회-제22호 참조, 김병운 <국가보안법 제4조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2권), 박영사, 1999, 212쪽(각주 8)에서 재인용

303) 이 개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총력화된 현대전의 양상 아래 있어서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논할 때 군사적인 것과 비군사적인 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나 하등의 의의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법은 구법의 두 유형(제2조 군사목적수행과 제3조의 일반목적수행)을 한데 묶어 같은 범조안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수, 이외수, 「신국가보안법」, 박영사, 1987. 118~120쪽 참조

다음과 같은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중처벌 되는 것(제2호 가목)과 그렇지 아니한 것(제2호 나목)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³⁰⁴⁾<개정 1991. 5. 31>

2호.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³⁰⁵⁾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차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가목과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인 나목의 구분이다.

먼저 “가목”에서 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에 중대한 불이익’, ‘한정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몹시 모호하며, 구체적인 행위를 고지하는 기능을 지니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나목에 정의된 “가목 외의 국가기밀”은 가목에서 (그나마)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밀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국가기밀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막연하고 불확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적용 기관의 자의를 허용할 위험성이 높고, 국가기밀의 개념을 무한정으로 확대하고 해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밀 개념의 확대와 남용은 결국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제한해온 근원이 되었다.

이제까지 국가기밀에 관한 국가보안법의 입법 및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가기밀 조항은 이승만 정권이 장기집권을 획

304) 이 제4조 1항 1호는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할 때는 형법상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 별도의 조항으로는 무의미한 규정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305)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라고 한 반면 이 조항은 그와 같은 표현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벌의 흠결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이미 북한을 형법상 간첩죄에서 말하는 적국에 준하는 ‘준적국’이라고 보아왔다. 결론적으로 형법상 간첩죄 외에 따로 이 조항을 설치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3」, 74~75쪽 참조

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대농성을 하던 야당 국회의원을 폭력적으로 감금하고 자유당 의원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2.4과동 때 신설된 것으로, 신설 목적이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점 둘째, 당시 형법 제98조에서 간첩죄를 처벌하고 있었고, 특히 대법원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무제한으로 확장시켜 해석하고 있었기에 국가보안법에 따로 이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가 중복적인 것이었다는 점, 셋째, 형법상 간첩죄보다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 조항이 형량에 있어서도 더욱 가혹하였다는 점, 넷째, 개정 과정에서 정보수집죄 등이 폐지되기는 했으나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는 그 범위를 무한정 넓혀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국가기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 국가기밀 조항 적용경향

먼저 대법원에서 그동안 ‘국가기밀’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해왔는지를 살펴보자.

1958년 시행된 국가기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대법원 판결 1980.7.22. 80도 845)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군사상의 기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 사항이 포함³⁰⁶⁾되며,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공지의 사실³⁰⁷⁾³⁰⁸⁾, 대한민국에서는 당

306) 대법원 1978.12.26. 78도2652 판결 “국가보안법(1960.6.10.법률제549호) 제3조에서 말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군사상의 것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기밀을 말하고 비록 그 내용사실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국가단체를 위하여서는 유리한 것으로 그들에 대하여는 비밀로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니, 청와대의 동정 및 시설, 그 주위의 산세, 관망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기밀사항에 속한다.”

307)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도1846 판결 “피고인이 탐지·수집하였다는 사항들 가운데 신문광고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사항들이 모두 우리의 국방상 복괴집단에게 알려지 아니하거나 복괴집단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의 정치·사회분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 “일반 시중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자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책자를 수집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국내의 각종 운동권 동향이 수록된 『84 민중 언론 총목록』과 반정부적 입장에서 광주사태 발발과 사건일지를 수록한 『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 등 책자를 구입하여 피고인 양○○에게 제공한 소위를 국가보안법(1980년 국보법-필자 주)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첩방조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308) 대법원 1972.9.12. 선고 72도1514 판결 “국내에서는 신문, 라디오 등에 보도되어 공지의 사실

연하고 자명한 사실³⁰⁹⁾이라도 북한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보았다. 즉, 북한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우리에게는 불리)가 되는 그 모든 것이 국가기밀이라는 것이었다³¹⁰⁾.

한편 대법원은 “기밀” 뿐 아니라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다른 용어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조가 처벌하는 행위 중에는 반국가단체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³¹¹⁾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법원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너무나 넓게 해석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도록 운용하고 있다³¹²⁾.

특히 대법원은 1심, 2심 재판부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무죄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유죄로 판결하는 등 국가기밀에 대해 무제한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황석영 사건을 살펴보자.

① 1심, 2심에서 무죄판결난 국가기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황석영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북한을 방문한 후 미국에 머물다가 1993년 4월 27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소설가 황석영씨를 공항에서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황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이적단체 구성(범민련 해외본부 대변인), 이적표현물 제작(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금품수수, 국가기밀 누설 혐의였다. 특히 황

이라 하여도 북한을 위하여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고 해석한 것은 정당하다.”

309) 대법원 1967.8.29. 선고 67도918 판결 “피고인이 북한에 가서 『남한에서는 쌀값은 시시로 변하고 농촌에서도 돈만 있으며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라고 말한 것은 비록 그것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경제체제를 취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자명하고도 당연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할 지라도, 이것이 북괴를 위하여 유리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서 유리한 것이 되지 못할 때에는 역시 위와 같은 사실도 죄가 된다 할 것이다.”

310)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판결-문익환 목사 사건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기밀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나아가 그 내용사실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명하고도 당연하며 상식에 속하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국가단체에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우리에게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311) 1989년 7월 북한의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청년학생축전에 정부의 허락없이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임수경은 북한에 있는 동안 그곳의 사람들에게 ‘전대협은 19개 지구와 특별지구로 구성되며 19개 지구대표가 정책을 결정한다. 전대협의 동원능력은 3만명이다. 대학졸업후 취업이 어려우며 등록금 부담이 크다. 대학생들은 민중들과 연대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내용들이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고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1613판결)

312) 민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인권의 실상 -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역사비평사, 1992.

씨가 방북기간 중에 북쪽에 누설하였다는 국가기밀은 △재야운동가들의 신원 정보와 운동권 동향 △남한에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국가기밀 부분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내려 파기환송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993년 10월 25일, 황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부분 가운데 재야운동가들의 신원 정보와 운동권동향을 북한 당간부들에게 알려준 혐의에 대해 “국가기밀이란 기밀로서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정보의 전달행위를 국가기밀 누설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1천여개의 핵무기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94년 2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합의4부는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되어 있다”는 발언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황씨의 말은 외신과 국내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내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의 국가기밀 누설 무죄판결에 대하여 대법원³¹³⁾은 1994년 5월 24일 “국내 재야운동가들의 인적사항이나 핵관련 정보 등을 북한에 알린 것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기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라고 전제하고, “신문기사나 책자 등 국내간행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유리한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인정한 구시대적 판결이라 할 것이다.

② 결개그림 <민해운사> 평양축전에 보낸 화가 홍성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구속

1989년 ‘결개그림’ 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 구속된 화가 홍성담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안기부는 홍씨가 독일교회단체로부터 작가로서 작품전시회에 초청을 받아 독일을 방문하고 그 곳에서 유학생인 성낙영을 만나고 귀국한 다음, 연락을 주고받고 책자를 보내준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을 덧씌운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안기부가 홍씨 체포이후부터 수사과정 동안 변호인 접견차단, 구타 등 고문 수사를 통해³¹⁴⁾, 홍씨가 작가로서 전

313) 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930 판결.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신문 기사를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314) 안기부는 홍씨를 체포할 때부터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영장없이 불법체포하였고,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20여일 넘도록 가족은 물론이고 변호인 접견도 차단

사회 초청을 받아 1988년 4월 독일을 방문한 사실, 그곳에서 독일유학생인 성낙영씨를 만나고, 그에게 책자를 보내주었던 사실을 왜곡하여 간첩이라는 혐의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안기부의 고문 등의 수사를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점은 공안당국이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한 성낙영씨의 신분과 성씨에게 보내준 책자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다.

먼저 성낙영씨의 신분³¹⁵⁾에 대해 살펴보면, 안기부와 검찰은 성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주독대사관 3등 서기관 작성의 영사증명서와 서경원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 판결문이었다. 영사증명서³¹⁶⁾에는 성씨가 “북한공작원이고 재유럽민협외국총무부장”이라고 적시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증명은 사실여부에서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유럽민협 총무부장 어수갑씨는 재유럽민협에는 국제부장이라는 직위도 없고, 성낙영은 재유럽민협에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조차 거부하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한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은 서경원 전의원 사건의 1심 법원 판결문으로, 변호인단은 “한 재판부의 입장 내지는 견해에 불과”하고, “도대체 다른 사건의 판결문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기밀의 문제인데, 공소장에 의하면 홍씨는 성낙영씨의 지령을 받아 국내 서

한 채, 홍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구두발, 양주먹, 침대목 등으로 구타하는 등 심각한 고문을 통한 허위진술을 유도하였다. 또한 검찰은 홍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을 때에도 매일 출정시킴으로써 사실상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홍씨가 연행되어 기소될 때까지 52일동안 단 한번의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는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가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홍씨는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의 몽타쥬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315) 성낙영씨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하다가 1981년 11월 미국에 유학하여 신학공부를 하였고, 1984년 7월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기 위하여 서독으로 유학, 괴팅겐 대학 신학부에서 1989년 3월까지 신학을 공부하였다. 성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보낸 진술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 적도, 북한사람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안기부와 검찰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였다. 특히 성씨는 안기부와 검찰이 자신을 북한 공작원이라고 발표한 직후인 1989년 8월 28일 미국정부로부터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미국정부는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자신은 북한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낙영, <진술서>, 1989.12.10. ; 변호인단의 변론요지서 참조

316) 이 영사증명서는 누가,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문서인데, 대부분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해외교포나 유학생들을 북한공작원으로, 간첩으로 몰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영사증명서를 증거로 성낙영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점에서 「문화운동론 1, 2」(공동체),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지문사), 「탈춤의 역사와 원리」(기리원),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쟁점」(도서출판 세계), 「말 11월」, 「흐름 11월」, 「역사비평 가을호」, 「미술운동1」(공동체) 등의 책을 구입하여 성낙영씨에게 발송함으로써 국가기밀을 수집, 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1990년 1월 30일 열린 1심(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성낙영 목사의 지시에 따라 간첩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국가기밀누설·회합통신죄 등을 적용,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낙영에게 보낸 책자 9권 가운데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탈춤의 역사와 원리」는 학술서적에 불과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국가기밀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외 책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³¹⁷⁾하였다.

법원은 또한 “검사의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는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임의성에 의심이 가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홍씨가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인 88년 5월 성목사 집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이론」 책자를 전달받은 혐의 △88년 6월초 성목사 집에서 입북을 권유받은 혐의 △6월26일 서독에서 북한공작원 김평원을 만나 평양축전 참가 권유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³¹⁸⁾.

결국 1심 재판부는 성낙영씨가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국가기밀 부분에 대해서도 2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7권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³¹⁹⁾에서는 1990년 9월 25일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홍씨에게 적용된 간첩, 회합죄 등 7개의 죄목중 이적표현물 제작, 고무·찬양죄 등 2개의 죄목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죄목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중 북한지령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자로 알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성씨가 피고인의 앞에서 가끔 김일성 주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북한의 음악을 찬양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독에 있는 한국대사관 서기관이 작성한 영사증명서에 따르면 성씨가 북한의 해외전위조직인 유럽민협의 국제부장으로

317) 재판부는 「월간 말」, 「역사비평」 등 7권의 책자에 대해서는 “국내 매스컴이나 출판물을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국가기밀에 포함된다”는 냉전시대에 작성된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에서 출판된 잡지를 보낸 행위에 대해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했다.

318) 대법원도 안기부 조사 당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됐던 사실과 관련, “피고인이 접견이 금지된 안기부 조사 당시와 검찰 1차 피의자신문 때에는 성씨가 북한공작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가 그후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위법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319) 대법원 제2부(대법관 배석 이회창 김주한) 1990.9.25. 선고, 90도1586판결

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남공작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성씨와 접촉할 당시 유럽민협이 북한의 전위조직이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즉, 성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대남공작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홍씨가 성씨와 접촉할 당시에는 이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간첩죄는 무죄라는 것³²⁰⁾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회합통신죄,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홍씨가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결개그림의 슬라이드를 북한에 보내 평양 축전 미술전람회에 전시되도록 한 것과 민미연 건준위 기관지 <미술운동>을 만든 행위(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이 사건의 파기환송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1991년 1월 31일, 대법원의 판결대로 공소사실 중 간첩·회합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적표현물 제작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홍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족해방운동사> 결개그림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안기부가 화가 홍성담씨에게 고문수사, 변호인 접견권 차단 등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하였으나, 법원에서 간첩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안기부의 구태의연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으로 인한 알권리 침해, ‘간첩’임을 입증하는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 문제, 헌법에 보장된 예술창작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유형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다. 1997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과 이후 국가기밀 적용사례

이처럼 법원은 국가기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해석해 왔는데, 이러한 해석경향은 1997년 1월 16일 국가기밀 누설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³²¹⁾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그동안 국가기밀에 대한 해석에 대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일반 국민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용 당국의

32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홍성담씨에 적용된 회합, 잠입, 통신연락, 간첩, 금품수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성낙영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것과 홍씨가 그와 같은 지령을 받은 자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한다”고 전제하고, 홍씨가 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여전히 이 재판에서도 해외동포와 해외단체들에 부당하게 혐의 지워진 ‘간첩’, ‘북한공작원’이라는 낙인에 대한 본질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말았다.

321) 헌법재판소(주심 황도연 재판관) 1997.1.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결정 ; 또 헌법재판소 1997.1.16. 선고 89헌마240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1980년 국보법) 제4조 제1항 제2호 中段 소정의 국가기밀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자의적인 법해석·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법 제4조 제1항 나목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 법으로 누설을 금하는 비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호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은 기밀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어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요컨대 국가기밀은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비공지성) ②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 (요비닉성) ③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것 (실질비성)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헌법재판소가 국가기밀의 해석을 종래의 대법원 판결들과는 달리 엄격하게 해석한 이후, 법원은 강순정 사건(대법원전원합의체) 등에서 현재의 결정을 원용하여 국가기밀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 무죄판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기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 ‘이적성’ 여부를 잣대로 하여 유죄 판결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살펴보면서 이것의 문제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①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현직 시의회 의원 구속 - 이윤정 의원 사건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지부는 1994년 8월 22일 재야 출신 광주시의회 이윤정(전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회장)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 했다³²²⁾. 이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91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관계자들을 만나고, 92년 일본을 방문하여 한통련 관계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씨가 제일 한통련 광영문 부의장에게 누설하였다는 국가기밀은 △민중당 제작의 유인물 “민중당 총선 투쟁전략(A-4 복사용지 18매 분량)”, “민중당 총선 목표(A-4 복사용지 20매 가량)” 각 1부 △ “92년 정세전망과 민족민주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유인물(A-4 복사용지 4매 분량) 1부 △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를 비롯한 통일인사 석방 및 이인모 노인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지역 222인 성명”(A-4 복사용지 3매) 1부, △ 광주전남기자협회에서 만든 책자 “광주민중항쟁의 현주소” 1권 △ 피고인이 작성한 “광주시 도

322) 이씨의 일본 및 독일 출국사실과 활동내용을 이미 파악하였던 안기부가 2년이 지나서 새삼스레 현직 시의회 의원인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은 “주사파 논쟁과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사회분위기로 극도로 경직된 가운데 연행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미뤄 공안당국의 꿰어맞추기식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4년 8월 24일

로개설 사업개요 등 지역숙원 사업, 광주시 의회내의 5.18광주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및 그 활동현황”의 내용이 들어있는 “의정보고(광주직할시의회의원 이운정)” 책자 1권이 해당³²³⁾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라고 정의하고,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유죄판결³²⁴⁾하였다.

② 공지사실은 국가기밀 아니다 - 강순정 사건

강순정씨는 지난 92년 1월부터 94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범민련 캐나다본부 중앙위원 강병연(캐나다 거주)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정치상황, 재야운동 단체들의 활동,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인사들의 구속 및 재판과정을 등을 상세히 기재한 편지와 녹음테이프를 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지의 사실이거나 누설시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사실 또는 물건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³²⁵⁾는 1997년 7월 16일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강순정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법 제1조 2항의 규정을 되새기면서

323) 위 민중당의 총선전략, 전술 등의 내용과 민중당 총선 출마자의 예상분석 및 구체적인 총선투쟁 계획등이 실린 유인물의 내용은 “14대 총선 목표는 득표율이 총유권자의 2퍼센트 이상, 의석은 최소한 1석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격한 인상을 탈피하여 당의 이미지를 정책 정당으로 부각시키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위 222인 성명의 내용은 “아직도 대결과 분열의 시대로 역행하려는 이미 사라져야 할 반민족적인 법체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며 이땅에 장기수를 비롯한 통일인사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석방되는 그날을 앞당겨 오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광주민중항쟁의 현주소」라는 책자에는 “13대 국회에서의 광주문제 미해결과제, 5.18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현황과 광주시의 과제, 5.18에 대한 정부의 입장, 1980년도 이후의 신군부 핵심들의 행적이라는 제하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등 28명의 행적, 광주민중항쟁 사망자 명단”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324) 대법원 1995.9.26. 선고 95도1624 판결

325) 대법원 1997.7.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윤관, 주심 이돈희 대법관) 이 판결은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1항2호나목(국가기밀 수집·전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수용한 첫 대법원 판결로 의미가 있다.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공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현재가 추상적으로 ‘널리 일반에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지여부를 “△신문·방송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기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무엇보다 수사기관들이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간첩혐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악용해온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③ 순창농민회 활동내용을 국가기밀로 기소, 2심에서 무죄판결 - 이광철 사건

이른바 ‘구국전위’ 사건으로 수배중이던 이광철씨는 1996년 5월, 안기부에 자진출두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제3조), 국가기밀 누설(제4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애초 안기부는 이씨에 대해 ‘구국전위’ 전북지역 조직책으로 활동하며 공작금 1백만원을 건네 받아 농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뒤에는 조직가입과 순창농민회 현황³²⁶⁾을 알려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만 기소되었다. 이씨는 조직가입 및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류락진, 안재구 씨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 유죄로 판결하여 징역 3년6월

326) 이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누설 부분은, 이씨가 류낙진씨에게 순창농민회 활동상황과 그 전망에 관한 질문을 받고, △ 동 농민회는 현재 쌀개방 반대를 이슈로 투쟁중이고 향후에도 범국민적 집회를 통해 운동단체로서의 세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李明, 崔모 등이 농민회를 잘 지도해 나가고 있고 UR반대, 쌀수입개방 반대를 현안문제로 1993년 2월에도 서울에 올라가 쌀수입 반대시위를 한 바 있다, △ 앞으로는 각 대학 및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 순창농민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결력이 높고 군민수가 적으며 오지이지만 청년회원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 이모, 최모가 초창기부터 열심히 해 와서 다른 군단위 농민회보다 운영이 잘 되는 편이다, 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의 실행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1997년 2월 20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이씨에게 적용된 국가기밀 부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³²⁷⁾했다.

서울고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해 1997년 1월 헌법재판소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한 결정을 원용하면서(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26, 93헌바34, 35, 36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은 도저히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상고기각 확정)

④ 「월간조선」 「신동아」 「말」 「한겨레21」, 법원에서 국가기밀 무죄 판결

독일유학생 박종대씨는 1996년 10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 구속되었다. 독일에 유학하던 중 알게된 재독교포 김용무씨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꽃파는 처녀> 등 북한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적표현물 부분(대법원)과 국가기밀 누설 부분(1심과 2심)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월간조선」 1994년 2월호, 4월호, 「신동아」 1994년 3월, 4월호, 「월간 말」 1994년 3월호, 「한겨레21」 창간호에 실린 시사적인 기사내용을 탐지 수집하여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게 전달했다며 “국가기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1997년 4월 3일, 1심 재판부는 「월간조선」과 「신동아」에 실린 내용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월간조선 1994년 3월호, 1994년 4월호와 한겨레신문 등 주요일간지를 읽어 국내 정치동향을 탐지, 수집하고 월간조선 1994년 3월호에 게재된 <벌써부터 북한의 핵공갈이 남한사회에 먹혀들고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을 탐지, 수집하고, 김모 교수와 피고인의 친구, 대학선후배 등으로부터 국내경제, 학원, 운동권 동향 등을 탐지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 후 국내 정치, 경제, 학원동향, 인권상황, 문화 예술계 동향 등을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 후 김용무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나 정부시책에 대한 현실적 주장 또는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에

327) 서울고등법원 1997. 2. 20. 선고 96노2721 판결 ; 한편 1심 재판부(김인수 재판장)는 또 이씨의 반국가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낙진·안재구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꿔 이씨가 구국전위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안기부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무죄판결하였으며, 또한 회합죄에 대한 것도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류락진에 대하여 그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역시 무죄판결하였다.

지나지 아니하여 우선 그 내용이 외형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실체 또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거나 그러한 것이 외부로 노출된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국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³²⁸⁾”는 이유였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한겨레21」 창간호, 「월간 말」에 실린 내용³²⁹⁾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된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관적인 정세 및 동향분석에 관한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가기밀에 대해서도 ‘국가기밀이라는 내용들이 이미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 아니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에 실질적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³³⁰⁾하였다.

328)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96고합1238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월간 「말」과 「한겨레21」 창간호에 실린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부분은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다.

329) 월간 「말」 지 1994년 3월호 중 집중 분석 “제2의 한국전쟁 노리는 클린턴 시대 미 군산복합체” “이창복, 황인성, 최규엽의 전국연합 재기선언, 정책대안 개발, 정치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한겨레 21」 창간호 중 “북미 협상용인가, 한국 압박용인가”, “당신도 상도동인가”라는 제하의 기사

330) 서울고법 제3형사부 1997.7.31. 선고, 97노821 판결 ; “피고인이 월간조선, 신동아, 한겨레21, 월간 말 지 등 이미 발간되어 시판되고 있는 유수의 잡지 등을 통하여 수집하였다는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생운동 동향이나 피고인이 김모 교수나 피고인의 친구, 대학선후배들로부터 파악하였다는 국내 경제 및 학원동향이나 운동권 학생들의 동향 등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 이외에 단순한 주관적인 국내외의 정세 및 동향 분석에 지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단순한 주관적인 정세 및 동향분석에 관한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고(1심에서 무죄판결,편집자주),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즉 미국 군수산업체의 무기 판매를 위한 로비형태, 전국연합의 조직 및 정책, 미 국무부 관리의 국가보안법 철폐 희망 발언과 그 파장, 청와대 비서관들의 직위, 이름, 나이 출신지, 출신교, 경력 사항 등은 구체적 사실이나 지식에 해당하는 것들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것들도 이미 주요일간지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일반인들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니 공지의 사실 또는 지식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나 지식이라면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 수집이나 확인, 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가사 공지의 지식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나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국 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탐지, 수집, 전달하였다고 적시된 사실 또는 지식은 그 모두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⑤ 남한작가들의 신상, 비전향장기수 명단이 국가기밀 - '취중월북' 김하기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6년 8월 19일 만취한 상태에서 북한에 다녀온 혐의³³¹⁾로 소설가 김하기씨를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구속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7월 30일 중국 연길에서 북한 회령지역에 도착함으로써 탈출하여 7월 31일 회령초대소에서 지도원과 회합한 뒤 회령초대소에서 자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이 적용된 내용은 ① 남한작가의 동향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아는 작가인 정도상, 방현석, 박명호, 이규정 등의 이름과 작품을 이야기 하였고 ② 장기수들의 복역상황, 비전향장기수 및 좌익출소자 30여명의 명단을 적어주었으며 ③ 민족문학작가회의 창립연대와 역대 회장단 및 임원 명단 제출 ④ 자신의 기행문인 『마침내 철책 끝에 서다』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에서의 김하기씨 행위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북한 관계자들이 입북동기 및 경위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온 진술로써 이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다.

특히 위 내용들은 이미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작가들은 왕성한 작품활동을 통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이들과, 장기수의 실태는 유엔인권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등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여론화 되고 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식적인 문학가 단체로서 일반에게 알려져 있으며, 『마침내 철책 끝에 서다』 역시 이미 발표한 것으로서 공지의 것이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이를 국가기밀로 문제삼는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1997.9.9. 선고 97도1656 판결)은 “이 내용들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도 아니며, 그것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며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⑥ 한국통신 노조간부, 장기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국가기밀 판결 - 진관스님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6년 10월 2일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 등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3명의 북한송환을 추진하던 중 전화, 팩

331) 당시 언론에 따르면 김하기씨는 “중국여행 중 7월 30일 밤 10시경 중국에 있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에서 술집을 나간 뒤 실종되었다”고 보도되었다. 한편 북한은 8월 5일 <중앙통신>을 통해 “소설가 김하기씨를 국경침입죄로 체포해 당국에서 조사중”이라며 “해당기관에서 지금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8월 5일 오후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김씨가 술에 취해 실수로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적십자회가 조속한 송환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 8월 13일 북한이 <대남전화통지문>을 보내 “해당 경로를 통해 곧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씨는 8월 17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곧 안기부에 연행되어 8월 19일 구속되었다.

스, 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씨에게 국내 불교계,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하였다.

1997년 5월 20일 1심 재판부(서울지법 제23형사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 그 밖의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에 의한 자료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34개 항목에 대하여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불교인권 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국가기밀을 친북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하였다(서울지법 1997. 5. 20. 선고 96 고합 1246, 97고합149 병합판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판결(1997. 9. 11. 선고 97노1187)에서 제1심이 국가기밀이라고 한 14개 항목에 대해서도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나머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였다. 즉, 항소심 판결은 한국통신 노조간부 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내용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³³²⁾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특히 항소심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7개 항목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한국통신 노조간부 명단, ‘8·15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와 ‘범민련 제6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사이의 갈등 이유, 장기복역 양심수 명단, 현재 양심수 명단 등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아니하여서 일반인이 쉽게 수집하거나 지득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으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이와 같은 문건이나 사실이 가사 특정계층의 몇몇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추가의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을 거칠 필요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건이나 사실이 북한에 누설됨에 따라 그들이 이를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하거나 선전·선동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는 국가기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지사실의 여부와 실질가치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생각된다.

332)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도2470 판결

⑦ 전국연합 전문, 강령, 조직구성 및 연간사업계획서에 국가기밀 판결 - 윤종세 사건

국가안전기획부 대전지부는 1998년 10월 2일, “조총련 연계간첩 윤종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지교류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위반)로 민주주의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 전 대변인 윤종세씨를 구속해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윤씨가 지난 89년 말부터 조총련 소속 대남공작원 백아무개씨에게 전국연합 강령과 <전국연합 제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발췌한 일부의 내용 등을 우송한 것을 주요간첩활동 사항으로 제시했고, 검찰은 1996년 10월경에 96년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수첩에서 “전국연합 전문과 강령” 부분을 절취하여 서신보고하고, 95년 3월 <전국연합 제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서 전국연합의 조직구성, 예산, 정세분석 및 투쟁목표 등 전반적 연간 사업계획을 발송한 것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윤씨 가족들은 윤씨가 89년 「한겨레신문」에 독자 투고한 내용을 보고 채일동 포 백씨가 편지를 보내와 이후 국내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는 등 편팔을 하게 되었다며, 몇 번의 편지를 통해 간첩으로 포섭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민가협은 성명을 내어 “평소 비판적인 북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비판해온 윤씨가 백씨와 몇 번의 편지를 통해 간첩으로 포섭되었다고 규정한 것은 무리한 짜맞추기식 수사 결과”라며 “이른바 지령에 의한 공작활동이 편지를 보낸 사실 이외에는 없으며 일반적인 대전충남연합의 사무처장으로서의 활동을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간첩활동이 없다는 것을 안기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 판결하였다.

⑧ 신문에 실린 기사 등에 국가기밀 적용 - 김경환 사건

1999년 9월 4일 전 「월간 말」 정치팀장 김경환씨가 국가정보원에 연행되었다. 남파공작원 진운방(원진우)에게 하영옥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과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경환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경환씨가 91년 2월경 김영환씨와의 연락관계에 의해 진운방에게 건넨 문건 <주체기치 9호>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가기밀이라고 한 문제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주한 미군 주둔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실태 ② 1988년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계획 ③ 전두환 정권이 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650만불을 챙긴 점 ④ 걸프전쟁시 우리나라의 지원비 ⑤ 잉여유출의 연도별 변화추이에 관한 도표 등이 수록된 것으로, 소논문 형식의 글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경환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가기밀’이라 한 내용 가운데 ①~④는 신문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을 정리한 것³³³⁾이고, ⑤의 부분은 서울대 박사 논문을 인용한 것

333) 국가기밀로 기소된 내용 가운데 ① 주한미군주둔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실태의 내용은 198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내용이고 ② 1988년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계

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박사 논문을 썼던 한국외대 정일용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박사 논문의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더욱이 2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영환씨는 김경환씨가 91년도에 진운방에게 기관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 '당시 문제의 글은 박사논문과 신문 기사 등 모두 공개된 글을 참고로 작성된 것이며 김경환씨는 진운방에게 무슨 정보를 줄 목적으로 문서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경환씨가 한 행동이 국가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공지의 사실'은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같은 취지로 1997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 국가기밀이라고 판결한 구시대적인 관행에 따른 판결로 보인다.

⑨ 법원,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편의제공죄' 판결

민혁명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들 가운데 검찰이 간첩(하영옥) 또는 간첩방조죄(김경환 하영옥 심재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편의제공죄(제9조)를 인정하여 판결하기도 했다.

먼저 서울지법(형사23부 재판장 김대휘)은 간첩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편의제공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직파간첩이 국내에서 군경의 검문을 피해 간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용 가명으로 사용중인 실존인물 원진우의 실제 주소지를 행자부 주민조회전산망을 통해 입수함으로써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고 하영옥씨를 간첩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기밀이란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7.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고 전제하고, "하영옥이 입수한 원진우의 주소는 원진우 개인이 대한민국이나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특별한 가치를 지닌 인물이 아닌 평범한 개인에 불과하여 그 주소지가 누설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진우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밀을 탐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간첩이 국내에 은신하면서 검문검색에 걸릴 경우에 대비하여 원진우로 신원을 위장하면서 그의 주소지나 가족 관계를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간첩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김경환이 진운방에게 하영옥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만나게 해주었던 점, 하영옥이 진운방에게 원진우의 주민등본 및 초본 각 1통을 제공한 점, 심재춘이 검문검색에 대비하여 신분위장용으로 국내에 실존하는 인물인 원진우의 주민등록증, 주민초본과 호적등본을 구해주고 북한으로 복귀하려는 위 공작원이 북한 잠수정과 접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획은 1988년 5월 3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이고 ③ 전두환 정권이 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650만불을 쟁긴 점은 1988년 6월 11일 중앙일보 기사이고 ④ 걸프전쟁시 우리나라의 지원비의 내용도 1991년 3월 18일자 중앙일보의 기사에 실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문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점에 대해 검찰이 간첩방조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편의제공을 인정, 유죄 판결하였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22부, 재판장 최병덕)는 “간첩방조죄가 간첩의 실행행위 즉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그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임에 대해 편의제공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즉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그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를 말한다”며, 따라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1) 정범인 간첩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2) 행위자가 자신이 방조하려는 자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함과 동시에 바로 그와 같은 간첩행위를 돕는다는 방조의사를 가져야 하며, 3)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3. 선고 98도2578 판결)“고 밝혔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신분을 가장한 행위는 간첩행위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가 간첩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만 ‘편의제공’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4.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가. 잠입·탈출 조항 개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드나든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목적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처벌하기 위한 6조 1항(일반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6조 2항(특수 잠입·탈출)으로 나뉜다.

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잠입 탈출조항은 제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제3차 개정 국가보안법에서 (법률 제500호, 1958.12.24.) 제19조(왕래·잠입·은거·형의 가중)로 신설되었고, 그후 4차 개정(법률 제549호, 1960.6.10.)에서는 제6조(불법지역 왕래)로 개편되었다.

또한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로 제정된 반공법 제6조에 탈출·잠입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던 것이 1981년 6차 개정 국가보안법을 통해 구국가보안법과 반공법상에서 중복된 구성요건과 형량을 통합하여 제6조로 재정비하였다. 또한 7차 개정법에서는(1991.5.31.) 기존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탈출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목적요건을 삽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조항의 신설 취지는 “북한의 공작원(간첩)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이나 테러행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외형적인 활동이 아닌, 지하당의 구축이나 사회질서의 혼란 조성과 같은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³³⁴⁾ 취지”에서 신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

334) 정경식 이외수 공저, 「신국가보안법」, 박영사, 1987. 189쪽 참조

후반부터 잠입·탈출 조항은 주로 방북인사들의 처벌조항으로 작용하였다. 즉,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라는 등식 하에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하는 행위를 막거나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부 승인 하에 이루어진 방북이라도, ‘방북조건을 어기고 이적행위’를 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승인없이 “밀입북”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방북 자체행위를 “지령수수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 등식화 시켜 특수 잠입·탈출죄를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적행위(찬양고무 등)나 목적수행은 그 자체로 이미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 또는 제4조로 처벌할 조항을 갖고 있는데 별도의 잠입·탈출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조항은 “잠입”하거나 “탈출”을 직접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예컨대 정부승인 없는 방북행위를 계획하거나 교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수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과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엄단하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개념이 지극히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자의적이거나,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6.15선언 이후 교류의 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를 빚고 있는 국가보안법 6조가 과연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여기서는 1990년대 후반 ‘방북’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적용한 사건을 중심으로 어떠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나.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사건 실태

잠입탈출 조항은 주로 북한을 밀입북한 경우에 대해 적용되어왔다. 밀입북의 경위, 목적에 관련 없이 무조건 이 조항에 의한 적용을 받아온 것이다.

잠입탈출 사건을 내용으로 분류하면, 6조1항(일반 잠입탈출) 또는 6조4항(미수)의 적용을 받은 사례³³⁵⁾로 1998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로 방북했던 문규현 신부사건이 이에 해당하며, 우발적으로 “북으로 가자”라고 주장했거나, 금강산 관광 도중 월북을 기도했다가 구속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6조2항 특수 잠입·탈출이 적용된 경우는 주로 범민련, 한총련 등에 속한 인사들로 방북을 했거나 또는 이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방북관련으로 6조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건을 살펴보면, 방북이 ‘밀입북’식으로 이뤄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2000년 6.15선언 이후 정부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335) 이는 물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이 전제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추세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6.15선언이후에는 정부 승인하에 방북했으나, 방북시의 행적이 문제가 되어 귀국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³³⁶⁾.

① “남북교류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잠입탈출 무죄” 판결난 문규현 신부 사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신태영·주임검사 하인수)는 98년 8월 27일, 방북 중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 소속 문규현(전주 서학동성당)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신부는 통일부의 방북 승인조건(8.15통일축전 등 북측에서 개최하는 정치적 행사 참가금지, 정치적 사안의 논의 및 성명문 등 채택 금지, 정부방침에 어긋나는 대북지원 약속금지 등)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98년 8월 11일 평양에 도착한 후 도착성명을 통해 8·15 통일대축전을 찬양하고, 금수산 기념관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방명록에 칭송하는 글을 기재했으며, 통일대축전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여,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했다³³⁷⁾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³³⁸⁾은 2000년 5월 26일, 잠입탈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36) 예컨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제6조로 구속된 이들을 2000년 6.15선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15선언 이전 구속자 17명에 비해 이후 구속자는 9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6.15선언이 있었던 2000년에는 해마다 방북대표를 파견해온 한총련이 대표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이른바 ‘밀입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9명의 구속자를 구속사유가 되었던 사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명은 1998년 한총련 방북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된 것으로, 6.15선언 이후에는 실제 7명이 구속되었다. 그 가운데 1명은 미(美) 시민권자이고, 6명은 지난 8월 정부의 방북 승인을 얻어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구속된 범민련 인사들이다.

337) 이에대해 문규현 신부는 통일부로부터 방북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통일축전에 참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신부에 따르면 북경에 도착, 북한영사부에서 입북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사증발급이 지연되던 차에 북측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전권위임을 받고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지 않으면 방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한다. 이에 문신부는 사제단의 활동을 위한 입북허가를 받기 위해 “대축전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 전권위임에 의한 방북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 북의 요구대로 방북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북이 남북의 일치와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요지의 문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제단 신부 가운데 문 신부 등 2인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이는 “미사 집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입북의 주된 목적은 ‘평양 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 집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338) 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판사 최병덕, 이숙연, 기우중), 2000.5.6. 사건 98고합966. 재판부는 또한 문신부가 금수산 기념관 방명록에 기재한 문구로 인해 적용받은 ‘찬양고무’ 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문신부가 장충성당에서 “8·15 통일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8월 15일 판문각에서 열린 ‘8·15 통일대축전’에 참여하여 연설한 것에 대해 찬양·고무죄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³³⁹⁾ 및 제9조 1항³⁴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남북한의 왕래행위에 있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6조 1항의 잠입·탈출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당국의 적법한 방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북하였고, 입북행위의 주된 목적은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봉헌’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증진에 있었고, 피고인의 입북행위가 당초의 방북 목적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확정적으로 방북 승인조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방북 기간 중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통일대축전을 찬양, 고무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통일대축전에 참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입북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증명서나 승인을 받은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검찰이 문제삼은 행위들이 당초의 방북 목적을 크게 벗어났다거나 확정적으로 방북승인조건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선상 반란 선원, 탈출미수죄 적용 구속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선원 2명이 1999년 5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통발어선 제5신대진호 선원 이정훈, 한기호씨는 독도 근해에서 조업중 동료선원 4명이 잠들어 있는 침실문을 밖에서 잠근 뒤 흉기를 들고 조타실로 들어가 선장과 간판장을 위협, 끈으로 손을 묶고 “북으로 가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들이 평소 무리한 조업에 불만을 품고 선장을 혼내주려다가 입항할 경우 처벌이 두려워 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행, 감금 등 형법 외에 국가보안법상 탈출 미수(6조 4항)죄로도 기소되어 1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형을, 한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에 따르면 “북으로 가자”는 말은 이북이 아닌, 영해 상에서 북쪽을 가르키는 발언이었음에도 이를 왜곡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고하였다.

339)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40)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월북 의사 밝힌 금강산 관광객 탈출미수죄로 구속

국가정보원은 1999년 9월 15일 금강산 관광 도중 월북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 미수)로 박종태(목수)씨를 긴급체포,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9월 11일 풍악호 편으로 금강산 관광 길에 나서 다음날인 12일 만물상 관광 도중 북한측 환경감시원에게 월북의사를 표명했다가 거부당했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94년 사업에 실패하고 올 7월 이혼까지 당해 북한으로 도망치려 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상 탈출 미수(6조 4항)죄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④ 전국연합, 범민련 대표 방북 사건

1999년 8월 5일 북경에서 열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범민련 고문 나창순씨 등 5명이 토론회를 마친뒤 8월 7일 방북하여 ‘범민족 통일대축전’ 등 행사에 참가하고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 직후 국정원에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의 방북을 ‘밀입북’으로 규정하고, 방북 중 활동이 북한의 일방적인 지령을 받은 것이라 하여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두었다.

나씨등은 “방북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의 지령·수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 6조 2항(특수잠입·탈출)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서울지법 형사21부 재판장 김이수)은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령을 받고 탈출, 잠입”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대로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형구씨 등 2인에 대해 “출국 당시부터 방북할 목적이 없었던 점, 지령의 내용이 평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지령으로 인하여 신념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⑤ 한총련 대표 방북 및 방조 사건

한총련 대표,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로 입북하여 범청학련 행사 등에 참석한 이유로 구속된 이는 모두 3명이다. 또한 이들의 방북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혐의로 4명이 구속되었다³⁴¹⁾.

황 선(덕성여대)씨와 김대원(건국대)씨는 1998년 8월 7일, 범청학련 남측대표 및 한총련 대표로 <북녘문화유적답사 및 공동학술제> 개최와 <제8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 위 행사에 참석 후 황씨는 같은 해 11월 3일 판문점을 통해 내려와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연행후 구속되었고, 김씨는 2001년 8월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구속되었다.

341) 한편 김대원과 황선씨의 방북을 방조한 혐의(탈출 방조)로 범민련 사무처장 최진수씨,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씨와 조통실장 이상훈씨가, 황혜로씨를 한총련 대표로 방북시킨 혐의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국장 이창호씨가 각각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황해로(연세대)씨는 1999년 6월 1일, <6.10 남북해외 청년학생회담>과 <8.15 통일대축전·10차 범민족대회>등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및 한총련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방북하였다. 그 뒤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 국정원에 연행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소위 자주교류투쟁 및 연방제 통일실현 방안 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북한측 인물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동인들로부터 직접 또는 공동결의문, 합의문, 연설, 회의 등의 형식으로 연방제 통일 투쟁강화,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전개, 대한민국 내 소위 통일운동단체간의 연대 강화 등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제6조 2항 등을 적용,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방문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을 수는 있다하더라도, 6조2항(특수 잠입탈출) 혐의를 둔 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첫째, 국가보안법상의 6조2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령수수’라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하며 상호관계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령과 수수에 의해 움직이는 종속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방북은 범청학련 남, 북, 해외 본부의 각 사무국장 등 4명이 팩스, 통신, 전자메일을 통해 조직적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어 ‘북측의 지시’라고 볼만한 대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북한에서의 행적 또한 미리 합의한 사항대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지령’의 내용과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성명서 작성 등 행위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북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는 점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령을 한 자에 대해서 공소장에는 ‘북측인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또는 성명서 등 작성을 통해’ 라고 모호하게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지령 내용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으로 이들이 방북하기 전부터 이미 한총련에서 일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방북이전의 행위와 다른 새로운 활동, 즉 ‘지령에 의한 활동’을 할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는 이들을 6조 2항으로 구속·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³⁴²⁾은 황선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6조 2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한총련 및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와 대등한 지위로 상호 연락을 통해 입국했고, 북한에서 회의와 공동선언도 북측의 지시에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특수잠입·탈출죄가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북측본부가 반드시 우월, 종속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유죄판결³⁴³⁾을 내리고 말았다.

342)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23부(부장판사 김대휘), 1999.4.2. 98고합1369

343)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특수 잠입

⑥ 북에 가족 만나러 갔다가 잠입·탈출죄 적용받은 미(美) 시민권자 송학삼 사건

국정원은 2001년 2월 26일, 한국법정에 증인³⁴⁴⁾으로 입국한 미(美) 시민권자 송학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가 “김명철이 북한 대남공작원 지도부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 대남심리전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잘 알면서도 회합·통신(제8조)하고, 이적표현물 「김정일의 통일전략」을 발간하고(제7조5항), “김명철로부터 입북제의를 받고 입북하여 북한의 지시에 따라 송영현에게 경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잠입·탈출”(제6조)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당시 송씨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회합·통신죄를 제외³⁴⁵⁾하고 송씨의 방북 행위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잠입·탈출,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잠입·탈출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는 “김명철³⁴⁶⁾로부터 북한의

탈출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수 잠입·탈출죄의 요건인 ‘지령수수 목적’은 범청학련 북쪽 본부와 남쪽 본부가 반드시 우월·종속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함께 북한쪽이 주도하는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의 지시로 황씨 방북과 공동결의문 채택 등이 이뤄진 만큼 지령수수 목적이 특수 잠입·탈출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말았다.

344) 미국 뉴욕 소재 민족통일학교 교장인 송학삼씨는 출판사 대표인 송영현씨 사건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정증인으로 채택되어 2월 25일 입국하였다. 그는 일본어판 「김정일의 통일전략」(저자 김명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출판되도록 살림터 출판사에 출판의뢰를 했으며, 책의 출판과정을 도왔다. 그런데 출판사 대표는 이 책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송학삼씨는 송영현씨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 그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의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그러는 와중에 송영현씨는 1월 1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2월 26일, 송학삼씨가 귀국하여 법정에서 책자 출판배경 및 과정 등에 대해 직접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송씨는 저녁 7시 50분경 국정원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이 책 출판의 공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다.

345) 그런데 송학삼씨에게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잠입·탈출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구속당시 송씨에게 적용되었던 ‘회합·통신죄’의 전제는 “김명철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잘 알면서도 회합하거나 통신,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지령’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거나 통신하거나 해야 하는 것인데, 회합·통신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김명철과 송학삼의 관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그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회합·통신죄 적용을 제외했는지 알 수 없으나 김명철이 송학삼에게 ‘입북지령’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송씨가 방북했다는 이유로 적용한 ‘잠입·탈출죄’는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해 보인다.

346)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명철씨에 대해 공소장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대남심리전 공작원으로서 북한의 비공식대변인을 자처하는 재일 군사·외교 평론가”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씨는 미국내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관리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공화당계열, 보수주의자들과

입북지령을 전달”받고 방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에 불과하다. 송씨는 북에 살고있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김명철씨의 도움을 받아 방북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정원, 검찰은 송씨가 방북해서 북한 관리를 만난 것처럼 기재하고 있는데 먼저 구속영장에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단체인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고 있으며, 공소장에서는 “북한의 출판담당자 2명”을 만나서 지령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송씨에게 지령을 내린 이가 구속영장과 공소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적시가 없음으로, 이러한 공소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한편 송학삼씨가 방북하기 직전과 직후, 두차례에 걸쳐 서울서 송영현씨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에서는 방북직전에는 ‘입북을 위한 준비’였으며 방북 후에는 ‘경비내역서를 보내라는 북의 지령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 잠입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송씨는 자신이 송영현씨를 만난 이유는 “「김정일의 통일전략」의 인세를 받기 위함이었고, 둘째 책자 발행부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출판 이후 언론에서는 이 책자가 서점에서 여러달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송영현씨가 발행부수가 5천부 미만이라고 해서 이를 믿기 어려웠으므로³⁴⁷⁾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열악한 출판사 사정에 따른 금전문제로 송학삼씨와 송영현씨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일어난 ‘해프닝성 사건’을 국정원과 검찰이 북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학삼씨가 북에 동생을 만나러 방북했던 사실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왜곡하여 잠입·탈출죄를 적용한 것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미시민권자인 송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억지 적용하려다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재판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송씨에 대해 1심 재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에서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생을 만나러 방북했고 별다른 생각없이 이번 일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집행유

깊은 친교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씨는 2001년 들어서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일본의 미대사관에서 초청강의를 했고 미국 국방대학교 미태평양 사령부 주최 토론회에 공식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에 대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구속영장상의 혐의를 삭제했다. 이는 송영현씨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김승교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해 조총련 상임위원장 김일우가 “김씨는 조총련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66년 4월 기관지인 「조선신보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편집위원들과 의사충돌로 인해 85년 8월 25일 퇴직했다.”고 명확히 밝혔던 것처럼 김씨가 조총련과는 어떠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347) 송영현씨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정치·인문사회과학서적의 경우 2, 3천부만 되어도 베스트셀러라고 소개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문과학서적 출판계의 열악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송학삼씨는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알 리가 없었기에 ‘베스트셀러인데도 5천부 미만 팔렸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으며, 결국 그로인해 오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로 송씨를 석방했다.

⑦ ‘취중월북’으로 탈출죄 적용된 소설가 김하기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6년 8월 19일 만취한 상태에서 북한에 다녀온 혐의로 소설가 김하기씨를 국가보안법상 탈출 등을 적용하여 구속했다. 김씨는 효도관광차 아버지를 모시고 중국여행에 나섰다가 연길소재 북한에서 운영하는 금강원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두만강을 건너 월북하였고, 15일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기부와 검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탈출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김하기씨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장기수 관련 소설집 「완전한 만남」 등을 문제삼으며 월북행위에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에서의 행적에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함으로써 김씨의 월북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이며 곧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김하기씨의 월북은 명백히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이 분명한 사건임에도 법원은 검찰이 선고직전 공소취하를 한 금품수수 건을 제외한 탈출죄, 국가기밀 누설죄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⑧ 정부승인하에 방북했으나 ‘탈출’죄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간부 사건

2001년 8월 21일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과 관련하여 방북했던 김규철(범민련 부의장)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이 김포 도심공항터미널 입국심사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³⁴⁸⁾.

이 사건은 정부의 승인을 얻은 방북이었으며, 설령 방북조건을 어겼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죄를 적용한 것은 법률적용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들 범민련 간부들은 북에서 열린 8.15통일축전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북승인이 결정난 311명과 함께 방북하여 역시 정부가 승인한 ‘부문별·단체별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311명과 함께 입국하였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8월 16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련 3자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이 모임이 사실상 ‘범민족회의’라는 것이고, 이적성이 있는 이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정부의 방북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8.15 대축전을 빙자, 8.16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련 강령·규약 개정 등을 위한 범민족회의에 참석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탈출”하였고, 범민련 북측본부 간부 등

348) 검찰은 이들을 연행할 때부터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방북’을 했다고 운운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방북단 일부, 북 사전 지령 받아’(조선일보), ‘일부 인사 북 지령받고 방북’(대한매일)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기사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영장상 기록 어디에도 ‘북한의 지령’이라고 적시된 부분은 없으며, 사전교신 혐의도 찾아 볼 수 없다.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것으로 구속기소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8.16 모임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부의 승인하에 방북한 남측 대표단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승인한 ‘부문별·단체별 모임’의 일환으로 정부 승인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써 남측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북측 직총의 만남, 남북 여성대표들의 만남, 청년학생들 모임 등과 마찬가지로 범민련 인사들 역시 북측의 범민련 성원들과 간담회 형식의 부문별 모임을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 모임에 대해 검찰은 ‘목적수행을 협의했다’고 문제삼았으나, 실제 모임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범민련은 “강령 중 연방제 통일방안을 삭제하고 규약 중 범민족대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주장처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 범민련 이적규정의 핵심근거가 되었던 연방제 통일방안과 해마다 정부와 마찰을 거듭해온 범민족대회 관련 규약을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범민련 강령 개정문제는 6.15 선언이후부터 이미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논의를 위해(목적수행) 방북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23부 재판장 김용현 부장판사)는 2002년 2월 7일, 범민족회의에 참가해 범민련 강령, 규약을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방북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그러나 온건한 방향으로 강령 규약을 개정했고, 방북조건을 어기긴 했지만 통일부 승인을 얻고 방북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 잠입탈출 조항의 문제점

이미 지적하였듯이 국가보안법상 6조는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각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적용이 일고 있다.

먼저, 6조 1항의 일반 잠입탈출과 2항의 특수 잠입탈출을 적용하는데서 엄격한 구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2항의 경우, 지령이나 협의를 위한 잠입탈출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지령’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지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상하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사건에서는 상하적 지휘관계에 대한 엄밀한 검토 또는 증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에게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지, 지령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도 단지 북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통일축전에 참가한 자들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령수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령이라는 개념이 무제한적으로 확대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의 아래와 같은 판결은 잠입탈출 조항의 문제점을 봉합해주는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결이 하급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법원³⁴⁹⁾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탈출죄에 있어서의 지령을 받는다고 함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349)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285 판결,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도2158판결 참조

지령을 받는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나아가 부채질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잠입’의 문제이다. ‘잠입’은 대한민국에 돌아온 행위에 대해서조차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잠입’의 사전적 의미는 ‘몰래 숨어 들어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입’죄를 적용받은 이들은 모두 판문점 또는 공항을 통해 공개적으로 들어왔는데도 ‘잠입’죄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 잠입죄가 성립한다³⁵⁰⁾고 보고 있어 잠입죄를 무한정 확대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법정형량의 과도함을 지적할 수 있다. 6조 2항(특수 잠입탈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³⁵¹⁾. 그런데 문제는 그 지령이나 협의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목적성 자체만으로 처벌하겠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목적성’은 위에서 본 것 처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해서 제멋대로 해석해서 결국 남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지 북한에 다녀온 사실만으로도 “이적성”을 추정하여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반인도적인 조항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최근의 경향처럼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 방북한 인사들에 대해서 ‘방북 승인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북 사후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2001년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 인사들에 대한 적용이 그것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한 방북에서 “승인조건을 어겼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하여 처벌하면 될 일이지 굳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법조항의 애매모호함이 사건을 확대시키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남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남북 화해분위기에도 어긋나는 잠입탈출조항을 시급히 폐지하여 현실과 실정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350)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면 잠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탈출 당시 다시 들어올 목적이 있었는지, 은밀히 들어온 것인지 여부는 잠입·탈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판결,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1990.9.25. 선고 90도1613 판결,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도2158판결 참조

351)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한 조항은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등)에서 수괴의 임무에 종사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자, 제4조(목적수행)에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 제6조(잠입탈출)에서 2항 특수잠입탈출이 있다.

5.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과 인권침해

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 개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조항은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전혀 없었던 개념이었다. 이 조항의 원형은 반공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정 반공법 제5조에는 회합·통신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하거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후 반공법을 흡수 통합한 6차 개정 당시, 반공법상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안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였다.

‘이익이 된다’는 개념의 광범위성,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반국가단체의 이익=대한민국의 불이익’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조항은 1991.5.31. 7차 개정 당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이라는 주관주의적 요소를 삽입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³⁵²⁾.

현재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제8조)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이는 행위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회합, 연락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연락행위를 함으로써 곧 범죄는 완성되는 것이며, 그밖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³⁵³⁾이다.

행위의 대상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면, 단순한 회합·통신, 기타의 연락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연락(만남) 자체를 문제삼아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따라서 만일 회합·통신이 다른 죄의 의도가 있어 실제의 범죄에 달하였다면 예비, 음모, 공모 등으로써 그에 따른 법조항에 의율,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7차 법 개정 당시 주관주의적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나, 실제 어떠한 부분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인지 아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는

352) 국가보안법이 본 조를 규정한 취지에 대해 “이적의 정을 가지고 반국가단체나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 등과 회합하거나 통신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의 방법에 의한 이적 행위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이적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그들과 회합이나 통신연락을 하게되면 그 자체가 반국가단체에 커다란 이익이 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그들의 선동 선전에 말려들 위험성이 크다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경식 이외수 공저, 「신국가보안법」, 박영사, 1987

353) 정경식 이외수 공저, 앞의 책, 262~269쪽 참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결국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내 맡겨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1990년 중후반 이후 발생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사건을 살펴본 뒤, 적용상에서 나타난 이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사건 적용 실태

① 똑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기소 같은 혐의에 대해 경찰은 정부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검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0년 5월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군의 학살만행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 북, 해외 관련단체 실무회의에 참석했다가 15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덕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를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전민특위’ 대표인 리영일 등 북한 주민과 불법으로 회합’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8조(회합·통신), 7조(찬양·고무) 조항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북한사람을 접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접촉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즉, 검찰은 북한사람을 접촉한 것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과 북 해외가 대등한 위치로 실무회담을 개최한 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회합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납득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씨는 귀국하다가 곧바로 체포되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단지 실무회담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적성’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이씨의 국가보안법상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② 북한의 대학에 팩스 보낸 대학생,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부산수산대 전 총학생회장 주우열씨는 1995년 3월23일과 9월27일 두차례에 걸쳐 베를린의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을 거쳐 북한의 청진해양단과대 학생위원회 앞으로 “공동나무심기운동” 등을 제안하는 서신³⁵⁴⁾을 팩시밀리로 보내고, 답신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354) 서신의 내용은 “수산대 학우들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고, 통일운동을 상징할 것을 넣은 ‘통일항아리’를 파문기로 하였으며,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청진대학 학우들과 자주적 교류운동을 하려고 하며 그런 뜻에서 4월 5일에 소나무를 공동식수할 것을 청진대학 학우들에게 제안한다”는 등으로 된 서신(3.23. 1차 서신)과 “북한이 수해를 당하였다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주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오는 수산대 학생회는 서로간의 실질적인 만남을 위하여 투쟁하겠으며, 또 수산대 총학생회는

통신)로 1995년 11월2일 구속되었다.

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부산지법 형사1단독 정희상 판사)은 1996년 1월 12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 질서를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면 남북간의 민간 통신 교류행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의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등 연락행위의 경우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통신으로 접촉을 하였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제9조 3항(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국가보안법 8조1항보다 훨씬 낮다)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³⁵⁵⁾”고 밝혔다.

이 판결은 설령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해야 한다’는 19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로서 북한 대학생들과의 서신교류 등 단순 통신행위 등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온 경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판결³⁵⁶⁾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1996년 6월 8일, 1심 판결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 내용이나, 통신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하며, 피고인의 지식 정도와 각종 시위 등 활동 내용, 폭력이라는 수단이 동원돼 경찰관들이 다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 등의 전력을 문제삼아 북한과의 단순 편지교류에 ‘이적성’을 추단한 것이다.

5.18광주민중항쟁에 관한 투쟁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장차 있을 수산대 학술제에서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통한 민족대단결을 도모할 예정인데,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자”(2차서신 요지)는 내용으로 서신을 작성, 팩시밀리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3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표현물들과 (북한대학과 주고받은) 서신들의 각 내용중 일부의 표현이 현 정권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정권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8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확장해석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형사1단독 1996.1.11. 선고 95고단7295

356) 이와 유사한 판결로 광주지법이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를 이용해 통신 행위를 한 대학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는 1996년 1월 15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와 5차례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남대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 이모씨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로 편지를 교류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시위에 가담한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이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도 북한이 대학교와 서신왕래를 하거나, 공동행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가 적용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사건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부경대 학생 김보성, 조해주씨를 북한의 대학과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1999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함북 청진소재 제2사범대학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부경대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학생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북한 대학의 교과과정 및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을 질문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2년 1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년째 수배중이던 권윤영(경북대 90학번)씨를 체포, 구속했다. 권씨가 1996년 대경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대경총련에서 북한의 <함경남도 학생위원회>에게 “공동나무심기” 행사와 대경총련 출범식 때 축하전문을 보내달라는 요지의 문서를, 베를린 소재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팩시밀리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편지왕래는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³⁵⁷⁾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이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다.

③ 직접 회합통신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 했다면 범민족대회남측본부 간부들 구속

서울경찰청 옥인동 보안수사대는 1999년 8월 17일, <10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의 ‘민족대단결 통일선봉대’ 대장으로 활동한 진관 스님을, 2000년 2월 10일, 대변인으로 활동한 박해전(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씨를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9년 8월 15일 서울대에서 범민족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같은 시각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범민련 북측본부 주관의 범민족대회에서 북측본부 관계자들이 낭독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9범민족회의 공동결정서>,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문> 등을 “범민련 북측본부 관계자 등과 팩스등을 송, 수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범민련 북측준비위원장 안경호 등과 통신했다”며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이들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범민족대회장 신창균,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장 김양무씨 등 범민련의 주요간부들과 공모공동³⁵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공모 여부’에 대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들이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의 ‘대변인’ 또는 ‘통일선봉대 대장’의 직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357) 이와관련 대법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 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358) 검찰은 형법(제30조 공동정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을 적용하였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공모를 추정하여 기소³⁵⁹⁾한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이 ‘공모’했다고 단정하여 회합·통신 혐의를 둔 것이다.

또한 북한사람을 만나지 않은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게도 회합·통신 공모 혐의를 적용하였다. 경찰은 1999년 12월 19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한충목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했는데 한씨가 이성우 씨 등과 공모공동하여 민족대토론회를 추진, 베이징에서 위 토론회를 개최하여 북측 대표인 김령성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것이다. 한씨가 민족대토론회에 직접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모공동정범으로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한씨는 당시 전국연합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총괄지원하는 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토론회 역시 전국연합 주최행사였음으로 포괄적 지원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족토론회 진행과 관련 준비과정에 참여한 것은 토론회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내역 등이 합의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것으로는 공모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해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 유죄판결하였다.

④ “인터넷 간첩”으로 보도했다가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한 이창호 사건

제7기 한총련 조통위 정책실장인 이창호(동아대 졸)씨가 1999년 5월 21일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런데 장안동 분실은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간첩체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고, 주요일간지³⁶⁰⁾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보도했다. 경찰이 이씨의 ‘간첩’ 활동 혐의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이씨가 전자메일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일본에 있는 범청학련 해외본부 사무국장 조선오씨와 파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잠안재우기, 폭행등 가혹수사를 했지만 ‘간첩’ 혐의는 과장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이씨는 회합·통신(8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선오가 “재일조선인총연맹(조총련)의 중앙선전부부장 겸 재일조선청년동맹(약칭 조청)의 부위원장으로 재일 북한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99년 1월부터 5월까지 이씨 등 한총련 조통위 정책실원들이 63회에 걸쳐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통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장에 나타난 통신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통신한 내용은 통일축구대회, 농구대회, 북녘역사유적 공동답사 등 남북해외 학생들의 자주고류를 성사하자는 요지의 내용으로, 주로 남측본부에서 사업내용을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은 이 사건을 증거도 없이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첩사건’으로 발표하여 사건을 왜곡시키고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³⁶¹⁾한 것이다.

359) 공소장에도 “범민족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본부 관계자”와 팩스를 주고 받았다고만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공모했으며, 그 실행이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360) “E메일 이용 북접속 ‘인터넷 간첩’ 구속-범청학련 간부 군동향 등 보고”, 「동아일보」, 1999.5.28..

⑤ 한총련 대표로 방북한 학생에게 이인모 노인 등을 만났으며 회합·통신 혐의 적용

국정원은 1998년 11월 3일 황선(덕성여대)씨를, 1999년 9월 2일 황혜로(연세대생)씨와 전국 연합 이성우 씨 등 6명 등 방북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³⁶²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밀입북’한 것으로 규정,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6조2항)죄를 적용했다. 또한 방북기간동안 북한측 인사들과 회합했다며 8조1항을 적용했다.

황선씨는 평양도착 기자회견시 <조선중앙통신사> 등 북한신문, 방송기자 30여명에게 체북 계획을 설명했고, 평양시내에서 개최된 ‘통일시가대행진’에 참가, 평양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조국통일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것이다. 특히 8월25일 북송비전향장기수인 이인모씨 집을 방문한 것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황혜로씨 등은 방북 기간동안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민족화해협의회 의장 김영대, 민화협 부의장 김령성 등과 만나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에 대하여 논의하거나 범민족통일 대축전 등에 함께 참가하는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북한 이가 통상적으로 여는 기자회견이나 평양시민 환영대회 참석 등에 대해 회합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처사이다. 또한 최근 북을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김영남, 김령성, 김영대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유독 이들에 대해서만 회합죄를 적용한 것은 차별적 법 적용이라 할 것이다.

⑥ 범청학련 해외본부와 팩스, 이메일 통신연락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002년 3월 22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 구속된 김혜신(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씨에게는 2001년 20여차례에 걸쳐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범청학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보고 등 문건을 범청학련 해외본부로 발송하고, 위 해외본부는 이를 위 북측본부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위 북측본

361)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 사실확인과정 없는 허위 과장 보도도 인권침해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TV나 신문 등 파급력이 큰 언론 매체는 보도되는 순간 그 진위와 관계없이 기정사실화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수사의 초동단계에서 잘못된 언론보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명예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소위 “인터넷 간첩사건” 보도는 사실확인 없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재판을 하는 식의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362) 황선씨는 1998년 8월 7일 6기 한총련 대표로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가 같은 해 11월 3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으며, 황혜로씨는 1999년 6월 1일 한총련 대표로 북녘 역사유적 공동답사, 10차 범민족대회에 참석차 방북, 이성우씨 등은 1999년 8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10차 범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뒤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다.

부 의장 김인호와 통신·연락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공소장에 나타난 통신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이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만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 내용은 주로 남측본부에서 남북 해외 공동집회를 제안하거나 한총련, 서총련 출범식이나 경북대 총학생회 출범식에 축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거나, 건국대 대동제 등 각 대학 행사에 축전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김씨가 해외본부와 주고받은 내용은 주로 남측본부에서 사업내용을 제안한 것이어서 북측으로부터의 지령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³⁶³).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 2년형을 선고했다.

⑦ 원고청탁 위해 전화통화한 잡지사 기자,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

국정원은 2001년 10월23일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씨와 기자 2인을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1999년 8월 10일 「자주민보」를 설립한 이후, 해외 친북인사들의 글을 신기로 방침을 세우고 조총련 구성원인 김명철, 조총련 산하단체 ‘조청’의 기관지 <세세대> 편집인 김운순, 재일 한통련 의장 곽동의씨의 글을 게재하기 위해 이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전자메일을 교환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각 통신·연락했다”는 것이다³⁶⁴).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적용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첫째, 회합·통신혐의를 적용하려면, 위 통신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자주민보」 측에서 김명철, 김운순, 곽동의씨와 전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연락한 것은 글을 청탁하거나 원고를 송신하기 위한 것인 바, 잡지사가 원고청탁을 위해 필자와 통신한 것을 두고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월간 「자주민보」에 대해 창간호부터 모두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그 원고들을 송수신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대해서 회합통신 혐의를 따로 적용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검찰이 이들에게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위 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통화내용과는 관계없이 대상자가 단지 조총련, 한통련계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이들 단체가 독재정권 시절 반국가단체로 기소, 판결나긴 했지만 국민정부 출범이후 전향적 조치로

363) 특히 범청학련은 조직의 성격상 남, 북, 해외 3자가 연대한 조직으로, 누가 누구에게 지시나 조종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연락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64) 이들에게는 이외에도 2001년 5월 11일경 김명철에게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내장된 콤팩트 디스켓 1장을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제공 혐의를 두었다. 또한 단행본과 자주민보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소지혐의를 적용했다.

조총련계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점 등 변화된 정세를 감안한다면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여러 잡지들에서도 김명철, 곽동의씨와의 인터뷰 기사들을 싣기도 했는데 유독 「자주민보」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⑧ ‘간첩’혐의로 구속했으나 회합·통신죄로 기소한 한단석 교수 사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지방 국립대 철학과 명예교수 한아무개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언론에 발표된 현직 교수가 검찰 기소과정에서 간첩 혐의는 삭제되고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에 발표된 이는 전북대 한단석 교수(당 72세)로, 2000년 1월 25일 경찰청 홍제동 분실 수사관들에게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북한 대남공작지도원 최동옥을 만나 주체사상 등에 관한 책자를 전달 받는 등의 교류를 하다가(회합·통신) 그에게 포섭되어 한국내의 제반 정세를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잠입·탈출하고, 국내정세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위 최동옥에게 전달하고(국가기밀누설), 최동옥이 제공하는 공작금 일화 20만엔을 수수하는(금품수수) 등 재일 북한 대남공작지도부에서 하달된 공작 지령문건에 따라 암약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교수 체포 이전, 경찰이 간첩혐의로 다른 이(유진식)를 수사하다가 혐의가 확인되지 않자 한 교수를 체포하여 유진식, 최동옥 등의 관계를 추궁하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잠안재우기, 협박, 철야수사, 변호인 접견방해 등 가혹행위 및 불법수사했다가 실패하자 최동옥과의 일상적인 교제를 확대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최동옥이 조총련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93년 10월경부터 1997년 6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통신) 하고, 1993년 11월 하순과 1994년 11월 초순 및 1997년 8월 10일에 도일하여 최동옥을 직접 만났다(회합)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회합통신 사건의 전제가 되는 최동옥씨 신분이 불확실하다며 검찰이 최씨에 관하여 제시한 증거³⁶⁵⁾만으로는 최씨가 대남공작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³⁶⁶⁾.

365) 법원이 최씨의 신분에 대해 증거로 삼은 것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등본 가운데 ‘재일 북한대남공작지도원 최동옥 신원확인’, ‘재일 최동옥이 대남 공작지도원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등이다. 그런데 위 내용은, 97년 7월 15일 경찰청에서 검거한 자수간첩 김정환(김씨는 처벌받은 흔적이 전혀없다)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변호인단은 최씨에 대해 유일하게 증언한 김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366) 한교수는 군산중학교 시절 음악교사였던 최씨를 71년 일본 동경대 유학시절 만나게 되었고, 최씨로부터 받은 도움을 도의적으로 잊을 수 없어 귀국한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냈던 사제지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설령 검찰의 주장처럼 최씨가 대남공작원이라 할지라도 최씨의 의도와 한교수의 의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합 통신한 내용을 미뤄보더라도 과연 보안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두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은 “11월 초 일본에서 보자”, “11월 하순 경에 칸트학회 세미나가 있어 그때 가겠다”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직접 만났을 때도 최씨가 “북조선이 남조선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거나, 북에서 발행한 책이나 자료를 한교수에게 건넨 것이 전부이며 검사도 이런 사실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³⁶⁷⁾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합·통신죄에 대해 유죄판결하였다.

⑨ 무장간첩 진술로 회합·통신 구속, 검찰 7조 기소, 끝내 무죄판결난 박충렬 사건

1995년 11월 15일, 안기부는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처장), 김태년(성남미래 회장)씨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제8조)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의 요지는 “90년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남파공작원에게 포섭되어 내용불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여 왔으며 이 후 활동내용을 기 약속된 통신조직을 이용하여 대북보고 하여 왔다”는 것이었다. 이들을 포섭했다는 공작원의 신원이나, 불상인 지령 내용, 대북보고의 일시조차 밝히지 않은, 사건성립의 기본적 요건도 지니지 못한 내용으로 구속수사한 것이다.

이는 당시 부여에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이 “박충렬 등에게 북에서 가져온 무전기 4대를 전달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은 안기부가 무장간첩의 진술만 믿고, 박충렬 씨 등을 체포한 것인데, 안기부는 지령의 내용마저 불상인 혐의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22일동안 박씨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한 무리한 수사³⁶⁸⁾로 자백을 강요했다.

또한 검찰은 12월 6일 송치된 후 30일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까지 조사를 하였다. 이와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간첩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회합·통신 혐의는 기소과정에서 제외하였고, 전국연합과 범민련 관련자료를 소지하고 재야활동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7조1항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소지 등) 위반죄로 기소³⁶⁹⁾하였다.

367) 한교수는 1978년 최동옥씨와 관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되어 13일동안 조사를 받고 그냥 석방된 사실이 있었고, 경찰은 1997년 6월 18일부터 구속하기 전까지 2년6개월 동안 한교수의 전화, 통신 및 우편물을 감청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한교수의 간첩혐의에 대해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특히 한 교수가 보안사의 감시를 받을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도 최씨를 계속 만난 것은 그만큼 떳떳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368) 안기부는 22일동안 박충렬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잠안재우기(하루 1시간정도 수면), 세워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가하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 사실 및 공작금 4천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라며 강제로 진술을 요구했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라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명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긴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안기부는 검찰 송치전 4일동안 변호인 접견마저 불허한 채 이같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996년 7월 12일 박충렬씨에 대한 1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³⁷⁰⁾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증거도 없이 인신을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다른 사건 가령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연관시켜 기소한 전형적인 별건 구속 사례라 할 것이다.

⑩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아 회합·통신죄 무죄판결

민혁명 사건(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들 가운데 하영옥·김경환·심재춘씨에 대해서는 대남공작원 진운방(사망)을 만났다는 이유로, 최진수·한용진·임태열씨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라 규정된 민혁명 조직원을 만났다는 이유로 각각 회합·통신 조항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제23형사부, 부장판사 김대휘)은 2001년 2월 8일, 최진수씨의 혐의사실 가운데 김경환씨와의 회합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경환이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구성원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김경환이 1991년경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최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용진씨가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이석기(수배중)씨와 회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사진2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³⁷¹⁾했다.

369)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박충렬, 김태년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씨는 지난 91년 소모임에서 <김일성 신년사>를 학습하고 94년 전국연합 제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제작·배포했으며, 김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민족과 철학」 등 이적 도서를 갖고 있다 소각했다”며 회합통신 혐의를 제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한 것이다. 또한 김태년씨의 경우, 지난 94년 3월 UR 반대집회를 신고된 마감 시간 보다 3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안기부의 ‘간첩 조작’ 수사가 실패한 셈이다.

한편 1993년 12월 개정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제3항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7조, 10조(불고지)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박씨 등이 기소된 조항은 안기부의 수사권한이 없는 영역이었다. 이로인해 안기부가 박씨를 수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회합·통신 혐의를 둔, 수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370) 유원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주체사상을 학습했다’고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고, 피고인과 함께 학습했다는 참고인 장아무개도 이 법정에서 노동운동등을 주제로 학습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만들었다는 전국연합의 94년 자료집은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1996.7.12. 선고96고단36판결

371)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장없이 촬영한 사진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해 촬영된 것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을

또한 한씨가 이씨를 만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2001년 3월 6일 체포, 구속된 임태열씨는 "1992년 민혁당 '학생운동사업부'의 책임자로 지도적 임무에 종사(3조1항2호)해왔으며, 하영옥 심재춘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8조1항)"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임씨에게 적용된 회합·통신죄도 적용상 문제가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가 하씨의 지시를 받아 심재춘씨를 하씨에게 소개한 것을 문제삼아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통신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법원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상호간의 회합통신 등의 행위라 할 지라도 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죄에 포괄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반국가단체의 구체적 활동 등도 이를 규제하여야 하므로 상호간의 회합은 따로 8조1항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시³⁷²⁾하고 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의 구체적 활동'은 그 회합 자체가 어떠한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므로 임씨의 경우처럼 공소장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어떠한 임무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 임씨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주선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 회합·통신 조항의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1997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축소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³⁷³⁾한 바 있다. 물론 이 결정은 1991년 5월 31일 7차 개정 이전의 구법에 대한 결정이지만, 신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 결정에서 "이 조항을 문리대로 해석 적용한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결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만나고 통신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정할 수 있다"며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하는 1996.8.30.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72) 대법원 판결 1982.7.13. 82도 1219.

3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1.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5.35.36.(병합)

그러나 위 적용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법집행에서는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나, 만남 자체가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법집행기관이 단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처벌하는 자의적 법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라는 주관적 목적요건이 전제되어 있지만 어떠한 경우가 과연 위의 목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같은 북한인사를 만났더라도 누구에는 ‘이적성’ 여부를 추정해 보안법을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아니한 차별적 법적용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회합·통신죄가 성립하려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명확한 증거와 아울러 행위의 대상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 실제 그 사람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만남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지만(위 최진수 사례), 대부분의 경우 단지 수사기관이 제시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확인서’, ‘영사증명서’³⁷⁴⁾ 한 장으로 기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회합통신죄는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을 빚고 있는 바, 위 사례의 대부분은 연락(만남)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경우이므로, 굳이 이를 처벌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들과 접촉했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도 될 터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마저 포괄적으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적용함으로써 법충돌이 일어나는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의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사람과의 만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합통신 조항은 현실과 괴리를 빚을 수밖에 없으며, 과연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374)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검찰은 회합통신의 대상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재일 북한공작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명은 이른바 영사증명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대개 해외공관 국정원(안기부) 직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들어, 송학삼 사건에서도 검찰은 송학삼씨에 대한 인물 평가, 뉴욕민족학교에 대한 평가 등을 담은 영사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작성자인 주뉴욕 총영사관 영사인 김아무개씨는 “송씨가 친북인사이며 친북활동을 했다”고 확인했다.

6.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가. 편의제공 조항 개관

편의제공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에는 없던 개념이었는데, 국가보안법 제2차 개정법(1950.4.21 법률 128호)에 의해 그 내용이 신설되었다.

현재의 ‘편의제공’ 개념이 도입된 때는 3차 개정(1958.12.26 법률 제500호) 제21조에 편의제공죄가 신설되면서 부터이다. 당시에는 편의제공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끔 되어 있었다. 이 조항은 반공법 제7조에 남았다가 1981년 6차 개정당시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통합 되었다.

6차 개정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 제3318호)에서는 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반공법상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처벌한다는 요건에서,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로 확대하여 개정(제9조) 하였다. 그 이후, 1991년 7차 법개정 때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 대해 편의제공한 혐의를 처벌하던 조항을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8조”로 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취할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편의제공죄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편의제공 대상자인 본범의 구성요건 자체가 매우 다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편의제공죄에서는 본범을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³⁷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죄를 범하려는 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죄를 범하려는 자’는 범죄의 예비, 음모 행위에도 이르지 않는 행위를 한 자, 즉 단순히 범죄실행의 의사만 지녔을 뿐, 그 의사가 외부에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다분히 자의적 판단

375) 과거 반공법에서 이 조항은 “이 죄를 범한 자”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1980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범하려는 자”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개악되었다. 또한 과거 반공법에서는 미수범과 예비, 음모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국가보안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사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유추하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누구든지 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대형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심정형법(心情刑法)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³⁷⁶⁾이다.

다음으로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편의제공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어떠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아 무제한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의제공죄는 대부분 제9조2항이 적용되고 있는데, 2항에서는 편의제공 행위의 유형을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행위’,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행위를 개념짓고 있는데, 특히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는 규정의 문제이다.

이는 편의제공의 방법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 행위의 태양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행위의 동기 목적 등을 고려 외에 두는 것이며 더 나아가 편의제공 일체를 뜻하는 광범한 개념이다³⁷⁷⁾.

따라서 편의제공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단순한 인도주의적 발로에 따른 도움마저도 국가보안법의 범망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인류에도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법률인 것이다. 한편 편의제공죄는 국가보안법상 위 소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 즉 본범(형법상 정범)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써 일종의 중범죄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위 조항은 행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이 아주 경미한, 예컨대 7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중범에 해당하는 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범에 비해 높은 형량이 매겨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형법상 ‘종범(從犯)’은 정범(正犯)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가 있고 또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에 반해, 편의제공죄는 정범의 실행행위 그 자체와는 관련없이 다만 편의제공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376) 이러한 편의제공 조항은 스스로를 검열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할 때, 그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상 제3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려는 자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의심하여 검열을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도움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은 구성원이 서로 편의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이러한 기제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의심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3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2.4.14. 90헌바23. 한편 대법원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편의제공”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에 대하여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 잠복, 회합 연락을 위한 장소제공 행위를 제외한 모든 방법으로 하는 일체의 편의제공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대법원 판결 1975.7.22. 74도2675)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립되는 것³⁷⁸⁾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법 조항 자체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7차 개정 이후 편의제공 적용사건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나. 편의제공 사건 실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가 적용된 사건 가운데는 주로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 주거 또는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

1996년 8.15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연세대’ 사건) 직후인 8월 27일, 대검찰청公安부는 한총련 사태와 관련한 7개公安 유관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연세대 시위를 주도해 지명 수배된 한총련 핵심간부들과 주동자들에게 도피자금을 지원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은 한총련 배후세력으로 간주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이적단체 구성가입죄가 적용될 한총련 핵심 간부를 숨겨주거나 자금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³⁷⁹⁾.

이러한 검찰의 발표후 실제로 학교후배들을 하루밤 재워주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을 수배된 학생에게 빌려준 시민과 학생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적용은 “인륜을 무시한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① 후배들을 하룻밤 재워준 일로 편의제공 적용 구속

광주지검은 1996년 11월 12일 조선대 졸업생인 양영면(조선대 85학번, 실내장식업)씨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9조 2항)혐의로 구속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1996. 8. 31. 자신의 집을 찾아온 학교후배인 고재일(96. 9. 22.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94년 조선대 총학생회 부회장)로부터 ‘학교 사정이 어려우니 후배들과 몇일간만 머무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재일, 우승희, 이재봉을 8월 31일부터 3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은신시켜 줌으로써 잠복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³⁸⁰⁾. 양씨는 12월 24일 보석으로 풀려나 97년 1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② 한총련 간부에게 통장을 빌려준 학생에게 편의제공죄 적용

1996년 11월 7일 서울지검公安2부(손영기 검사)는 한총련사태와 관련, 수배를 받아온 한

378) 정경식·이외수 공저, 앞의 책, 271쪽 참조

379) 「중앙일보」, 1996.8.28.기사

380)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양씨는 11월 20일경 검사가 “집을 뒤져봐야겠다”고 해 열쇠를 주었는데 검찰은 양씨의 집에서 91년 서점에서 구입한 『한국사회 성격논쟁』 등 책자와 문건을 가지고 와서 양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공소장 12쪽 가운데 편의제공 혐의는 1쪽도 안되는 데 반해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이 11쪽을 차지하고 있다) 12월 29일 결혼예정일을 목전에 두고 구속된 양씨는 이 일로 인해 결혼식마저 치루지 못했다.

총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유병문(동국대 총학생회장)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숙희(덕성여대 총학생회 투쟁국장)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1997년 청주대생 안난숙 씨는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씨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준 일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가 되어 구속되었다.

③ 한총련 수배자 숨겨준 일로 편의제공죄 적용 구속

1997년 7월 23일 인천지방경찰서는 모 신문 기자 최종복(충남대졸)씨를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가 대학선배로부터 “운동권 간부인데 기거할 곳을 마련해줄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96년 한총련 의장 정명기씨를 97년 4월 초순경부터 6월까지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씨와 같은 집에 살았던 황모씨는 “정씨가 처음 집에 올 때는 이종명이라는 가명을 써서 전 한총련 의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도,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최씨와 나를 죄인 다루듯 했다”고 말했다. 황씨에 따르면 7월 22일, 오전 7시경 최씨가 출근하려던 중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수사관 6~7명이 정명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들이닥쳐 최씨와 황씨를 저녁 6시까지 감금한 채 진술서를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황씨는 수사관들로부터 협박과 위협 등을 받아야 했고 6시경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와서 두사람을 경찰청으로 이송해 갔다. 황씨는 22일 8시경에 풀려났으며 최씨는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④ 한총련 납품업자 편의제공 적용하여 구속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1997년 7월 4일 한총련에 연간 15억원대의 각종 이적성 인쇄물과 시위관련 용품 등을 납품하면서 수익금의 일부 등을 한총련에 지원해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로 이벤트업체인 <하나와 두리> 대표 이상진(한총련 지원사업단장)씨와 인쇄편집부장 서명아(부단장)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나와 두리>는 지난해까지 현수막·깃발 등 시위용품 28종 90점, 자료집 등 유인물 64종 1만6천5백점, 등 모두 7백종에 70여만점(15억대)을 한총련에 납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³⁸¹⁾.

⑤ 농성중인 한총련 수배자들의 활동을 대행해주었다고 편의제공죄로 구속기소

경찰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총련 수배자로 오인, 체포³⁸²⁾한 학생을 수사과정에서 그

381) 「한겨레신문」 1997.7.5. 기사

382) 황씨에 따르면 체포당시 PC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두 남자가 황씨를 붙잡고 “너 수배자이지?”라며 체포했다는 것이다. 황씨는 수배당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당시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수배자들 처럼 삭발을 하고 있어서 경찰이 수배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황씨를 무리하게 구속하고 말았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진재영 등 한총련 관련 수배자 4인이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중이었다.

사실이 밝혀졌으나,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2항) 및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제7조5항) 혐의를 적용,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은 2000년 6월 5일 황선동(서일대학교 건축학과 99학번) 씨를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체포당시 황씨는 농성단에 컴퓨터가 없자 명동성당 근처 PC방에서 '명동성당 농성단' 명의의 글을 전송하고 PC방을 나오던 길이었다.

황씨의 구속영장 따르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한총련 성명>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했으며 "농성 소식 등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등 수배자 농성자들에 대한 활동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문제삼은 '이적표현물'은 황씨가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디스켓 안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황씨 소유가 아니었으며, 내용 또한 단순한 농성일지여서 '이적표현물' 혐의를 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구속당시 황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혐의를 제외하고 수배자 농성자들의 활동을 대행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편의제공죄 만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편의제공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들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상의 동호회인 '찬우물'과 '민운사' 속보란에 게시한 문서의 내용은 "명동성당 측이 농성자들의 천막을 강제철거 하였다"는 것과 "전국연합 등에서 지지방문을 하였다"는 등 농성단의 하루를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이렇듯 단순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배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과 기소를 한다면, 농성단을 지지방문하고 성금을 내는 행위 등 도움을 준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포괄적으로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륜마저 무시하는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 잇달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⑥ 범청학련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대학원생, 편의제공 혐의 구속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12.부터 매월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은행통장 계좌이체 등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김혜신(범청학련 사무국장, 구속)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의자 소유 컴퓨터 및 전화를 범청학련 활동관련 문건 수·발신 등 조직활동에 사용토록 제공하고, 2002.2.9. 구정을 맞이하여 위 김혜신 등에게 용돈조로 각 3만원씩을 제공했다.³⁸³⁾"

이는 2002년 3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국정원에 체포된 임인섭(성균관대 대학원 재학중)씨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구속사유 가운데 일부이다. 위 김혜신 등이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상

383) 임씨에게는 이외에도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혐의와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임씨는 후원회 회원이었을 뿐,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제외하였다.

편의제공(제9조2항)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문제삼은 임씨의 ‘편의제공’ 행위가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임씨는 범청학련 후원회원으로 일정의 후원금을 은행계좌를 이용해 전달하였고, 설날에는 김씨에게 용돈 3만원을 줬는데, 이에 대해 편의제공 혐의를 둔 것은 인륜을 무시한 과도한 법적용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검찰은 기소과정에서 위에 적시된 혐의 가운데 후원금과 용돈 부분을 편의제공 혐의에서 제외하고, 김씨를 자신의 거주지에 입주케 하여 컴퓨터 및 전화를 사용하게 한 점을 들어 편의제공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김씨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김씨가 임씨의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하여 범청학련 활동관련 문건을 수·발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편의제공 조항을 과도하게 남용한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⑦ 수배중이던 동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편의제공죄 적용

안기부는 1997년 7월 10일,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사유는 김씨가 ① 93년 한국외국어대 용인교정 재학시절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주체사상연구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② 졸업후에는 위 주체사상연구회의 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지역사회운동을 위장한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③도피중인 한총련 연사위원장 박모에게 호출기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기부는 증거도 없이 이적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것으로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³⁸⁴⁾. 따라서 검찰은 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도피중이던 동료에게 동생(김진웅)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어 편의제공(국보법 9조 2항)하고 ② 「대중운동세미나」, 「근대 조선역사」, 「민족해방운동의 사상과 이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7조 5항, 1항)한 것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96년말 안기부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신한국당의 행위가 야당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재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가 날치기 통과로 부활된 수사권(국가보안법 7조, 10조)을 행사한 첫번째 사례³⁸⁵⁾였다.

⑧ 제일교포에게 ‘한글’ 내장된 콤팩트 디스켓 보낸 잡지사 기자 편의제공죄 적용

국정원은 2001년 10월23일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씨와 기자 2인을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총련 구성원인 김명철에게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이 내장

384) 안기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김씨를 연행하여 3일동안 전혀 잠을 재우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을 구속시키겠다’는 등 협박과 구타와 욕설 등 고문을 자행하면서 김씨와 무관한 일들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385) 김진성씨의 사건은 안기부가 7조, 10조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무고한 사람도 안기부에 잡혀가면 고문 등을 통해 어떤 혐의든 뒤집어 쓰게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된 디스켓 1장을 송부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제9조 2항)” 하였다는 혐의를 두었다.

그러나 검찰이 편의제공죄를 적용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로 보인다. 검찰은 자주민보측이 김명철로부터 원고를 기고받는 과정에서, 위 김명철이 원고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의도로 ‘훈글’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팩 디스켓 1장을 국제우편으로 김씨에게 송부한 것을 문제 삼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편의제공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자주민보측이 김씨에게 한글 프로그램을 보낸 것은 한국어로 출판되는 잡지의 특성상 한글로 된 원고를 받아보는 것이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한 방식이었을 것이므로, 오히려 ‘편의제공’을 받은 대상자는 자주민보 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판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 판결하고 말았다.

⑨ 검찰 ‘대남공작원’에게 선물한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 법원은 무죄판결

민혁명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김경환씨는 “1998년 근무중이던 「말」 지 사무실로 찾아온 대남공작원 진운방(사망)을 만나 진운방에게 김영환, 조유식의 연락처를 기재한 연락처와 진운방 가족에게 선물하기 위해 성인용 남녀 가죽장갑 각 1개씩과 자녀들에 줄 선물로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어린이용 털모자, 털목도리 각 1개씩을 구입, 진운방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편의제공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김씨는 진운방과 이미 친분관계가 있었고 진운방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그와 그 가족에게 선물한 것으로, 자연스런 인정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서울지법 형사제23부 부장판사 김대휘) 김씨의 편의제공죄 가운데 진운방에게 건네준 선물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 진운방과 헤어지는 마당에 과거 친하게 지냈던 위 진운방과 그 가족에게 선물로 위와 같은 물품을 건네 준 것으로서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제공한 내용과 관련없이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편의제공죄를 적용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 할 것이다.

⑩ 재일교포에게 국내 통일잡지 구독하게 해 준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

안기부(대전지부)는 1998년 10월 2일, 전 대전연합 간부 윤종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죄(국가보안법상 간첩,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안기부는 윤씨가 1995. 5.경 민족회의 기관지 <통일샘>(95.5월호)을 우편으로 백용덕³⁸⁶⁾에게 발송하고, 같은해 5. 중순 서울 소재 ‘민족회의’ 사무실을 방문, 기관지 <통일샘> 1년간 정기구독료 25,200원을 지불하고 수신인을 백씨로 지정, 우송토록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통일샘>은 ‘민족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잡지로서, 누구나 구독료만 지불

386) 검찰은 백용덕씨를 ‘재일 북한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윤씨가 북한공작원 백씨에게 잡지를 보낸 것은 편의제공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면 볼 수 있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대한 어떠한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없는 대중적 잡지이다. 이 잡지를 단지 구독료를 지불하여 백씨가 받아볼 수 있도록 정기구독 신청을 해주었다는 사실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 의문이다. 이는 편의제공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행위의 목적, 내용, 경중에 관련없이 무조건적으로 편의제공죄를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할 것이다.

⑪ ‘북한동포돕기’ 성금 편의제공죄 기소, 법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로 판결

1997년 큰물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을 당시, 북한에 성금을 전달하려고 한 범민련 간부들이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안기부는 1997년 4월부터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북한 동포돕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1만5천 달러(1천3백만여원)를 국내은행 계좌를 통해 5월과 6월 각각 5천달러씩 3차례에 걸쳐 범민련 공동사무국(일본소재)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회합통신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대행 이종린(74세)씨와 이천재(66세)씨, 사무처장 민경우씨 등 범민련 간부 7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성금 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적법한 승인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하더라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공동사무국을 통해 외화를 송금하였다 하여 그 사실을 들어 곧바로 북한이나 조총련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 편의제공 조항의 문제점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편의제공’ 행위는 그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여, 법 운용당국의 편의적,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편의제공이라 하여도, 편의제공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편의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편의제공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³⁸⁷⁾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편의

3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2.4.14. 90헌바23. 이는 1991.5.31. 7차 개정 전 국가보안법 제9조 2항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 행동자유권은 물론,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수

제공을 받는 본범의 범죄가 제3조 내지 제8조 소정의 범죄만 가리킨다 하여도 본범의 구성요건 자체도 매우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전제하며 “본범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³⁸⁸⁾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본범에게 편의를 제공한 자라면 제9조의 편의제공죄가 성립될 수 있게 하였다”고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위 법률조항을 문리 그대로 해석적용하면 광범위성과 불명확성 때문에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편의제공을 넘어서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만일 그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합헌적인 편의제공마저 처벌하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결과에 이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소정의 편의제공 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즉,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로써 법운영당국의 자의적이고 제도외적 오용 내지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법 집행에서는 여전히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오, 남용하는 사태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냐, 아니냐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행위냐, 아니냐 역시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 내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이어서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성요건”³⁸⁹⁾이기 때문이다.

있고, 법운영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는 무관한 남북간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영역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어 헌법 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정책의 추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편의제공 행위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 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388)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조총련계 재일동포로부터 고국의 부모가 생계비를 수수받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관광입북이나 부모형제 방문차 입북하는 자에게 편의제공, 나아가 북한의 운동실력을 높이 칭송하는 자에게 관련자료의 제공행위 까지도 이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89)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의견. 이외에도 변 재판관은 한정합헌을 결

이러한 문제는 국가보안법 자체의 본질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조항은 국가보안법의 여타 조항과 같이 포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자의적인 법집행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급히 편의제공 조항을 폐지해야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을 내린 다수의견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한정합헌 결정이 남용되기 쉬운 형벌법규의 운용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위헌무효인 형벌법규에 오히려 면죄부를 쥐어주는 역할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다수의견에서 제시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냐, 아니냐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행위냐, 아니냐 역시 객관적으로 뚜렷한 기준 내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이어서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성요건이므로, 그러한 적용기준이야말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하였다.

7.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

가. 개관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1960.6.10. 제4차 개정(법률 제549호)때 신설(제9조 불고지) 되었던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61년 반공법 제정당시 반공법 제8조로 유지되었다가 1980년 12월 31일 6차 개정시에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어 제10조를 이루게 된다.

이때까지의 불고지죄는 본범의 범위에 대해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 단서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7차 개정시에 “제3조(반국가단체),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1항·3항·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라고 개정함으로써 개정전 처벌의 범위로 삼았던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동조, 회합·통신, 편의제공에 대한 불고지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³⁹⁰⁾.

또한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불고지죄를 범한 경우 개정전에는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7차 개정이후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러나 이처럼 처벌의 범위를 ‘완화’된 수준으로 개정했다고 하지만, 첫째 본죄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여전하며, 둘째 ‘본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어느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고지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셋째 ‘불고지죄’ 조항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내도록 강제하고 처벌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높다. 또한 이는 국가형사기관의 책무를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³⁹¹⁾으로 사리에도 맞지않는 반인륜적인 조항인 것

390) 그러나 개정법 부칙(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1991년 5월 30일 이전의 행위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불고지가 성립한다.

391) 불고지죄는 국가형사기관의 책무를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만약 중요한 범죄가 벌어지는 데에도 국민들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그 법질서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 사회가 건강하고, 법질서가 존중받을 만한 것이라면, 불고지죄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일반적인 고발의 법리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태욱, 「불고지죄에 대하여」, 『민주법학』 통권 제3호, 1989.9.

이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개폐여론이 일 때마다 7조와 아울러 가장 문제시 되었던 조항이 바로 10조 (불고지) 조항이었던 것이다.

나. 불고지 조항 적용실태 및 인권침해 유형

1) 불고지죄 신설시기부터 반공법 적용시기

불고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건은 한옥신 부장검사, 영문학자 오화섭 교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남파된 간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종사촌, 처남 등 혈육관계에 있는 이들이었다. 특히 오화섭 교수 사건은 그후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 고등법원에서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숨박꼭질을 통하여 '불고지죄와 혈육의 정'이라는 모순과 불고지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①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불고지죄가 신설된 해인 1960년 9월 28일 부산지검 정보부(현재의公安부) 한옥신 부장검사가 “8월 18일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포섭대상으로 만났다”는 혐의로 대검 정보담당 검사에게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이종사촌간인 김종섭은 한옥신 부장검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음에도 한옥신 부장검사는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³⁹²).

② 영문학자 오화섭 교수 사건

영문학자 오화섭 교수는 간첩으로 남파된 처남을 집밖으로 쫓아보냈을 뿐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다. 사건의 요지는 1960년 10월 14일 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처남이 오교수를 찾아와 자신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남파된 간첩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학교수이며 영문학자인 매형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오교수는 “독재자 밑에서는 살아도 공산당 밑에서는 살 수 없다”면서 “내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쫓아내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교수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불고지죄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고, 간첩인 처남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장준택 부장판사)는 비록 정상은 참작하지만 유죄가 인정되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후 고등법원(형사3부, 재판장 조덕환 부장판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사회의 통념이나 풍속 상 친척에까지 불고지죄가 적용

392) 「동아일보」 1960년 9월 29일자 3면 기사. 한옥신 검사는公安검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개설(1970)』 『사상법의 실증적 연구(1974)』 등의 해석서를 내놓기도 했다.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해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사광욱 대법원 판사)은 정상은 참작하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³⁹³⁾.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 가운데 불고지죄 사건은 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용의 일단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고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고지의무를 법적으로 규제하였던 때에는 그 적용범위나 처벌의 대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했음을 아래의 판례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 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되는 불온 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복귀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³⁹⁴⁾”

위의 판례에서 보면, 불고지죄는 그 처벌대상이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누구라도 그 처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예컨대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은 물론이고 구입하는 사람 모두가 서로 불고지죄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³⁹⁵⁾.

또한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처를 기소한 사건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³⁹⁶⁾을 받기도 했다.

393) 이종전, “취재비화-법과 인륜의 갈림길”, 「관훈저널」 통권25호, 1977년 가을호. 이 사건 발생 당시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였던 이종전은 이 글에서 불고지와 관련한 2가지 사건을 통해 법과 인륜의 갈림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화섭 교수 사건과 대조를 이뤘던 사건은 바로 당시 법무차관 김영천 사건이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영천 차관은 출근준비를 하던 1960년 10월 2일 아침 8시경 후암동 집으로 찾아온 친동생 김동수를 만났다. 6.25전쟁 후 행방불명된 동생은 바로 이북에서 온 것이었는데, 김차관은 자수하라고 강권했다. 동생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김차관은 즉시 경찰에 신고, 구속한 것이다. 불과 10분 남짓 사이의 일이었다.” 당시 김차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실을 밝혔다. 여론은 ‘공사구분이 분명한 법률가’라고 그를 평가했다고 한다.

394) 대법원 판결 1970.5.12. 69도 80.

395)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 있는 수만, 수십만 부의 이적표현물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수만, 수십만 건의 불고지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전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것인가」, 『신동아』 1989년 8월호, 288쪽

한편 아래의 판례는 기존의 반공법상 불고지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지만, 이 판례를 통해 불고지 조항이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공법 제8조에 규정한 불고지죄의 성립에 있어 비록 범법자가 불법지역으로 탈출한 후 이를 인지한 것이라 하여도 범법자의 탈출 전의 공작 등 범행에 대한 수사와 그 범법자의 재잡입 등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의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³⁹⁷⁾”

즉, 이 판례는 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탈출한 후에 이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탈출전의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잡입 등에 대한 감시의 필요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한 경우이다. 또한 불고지죄의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불고지죄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피고인은 다만 범인을 집에 재우면 범인은닉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갑에 대하여 밤중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내어보냈으니 이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뜻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결국 피고인은 법 제9조의 불고지죄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고지하지 아니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³⁹⁸⁾”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불고지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16조³⁹⁹⁾에 근거해 무죄로 판단하였던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시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즉, 불고지죄의 부지(不知)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가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신이 고지의무를 지고 있음을 모른채 불고지죄 위반이라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존을 도모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정보기관화하여 불안, 초조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있음을 말한다.

2) 최근의 대표적 사건

396) 대법원 판결 1968.9.6. 선고, 68도 제856호 “처가 남편을 수사기관에 간첩이라고 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397) 대법원 판결 1969.4.29. 68도1780

398) 대법원 판결 1961.10.5. 4294형상(刑上)208

399) 즉,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같이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인데, 위 사건은 불고지죄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법 16조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한편 불고지죄 조항 신설이후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사건으로는 서경원 전 의원 방북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 관련하여 김수환 추기경 등 카톨릭 성직자,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등이 불고지죄로 입건되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서의원의 방북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사 기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신부에 대한 고해성사, 기자의 취재원 보호 등 직업윤리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불고지죄를 적용함으로써 이 조항이 직업윤리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높았다.

또한 1992년 발생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서는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황인오씨의 부인, 어머니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가 적용되어 구속되었으며,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 불고지죄의 적용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1995년 발생한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불고지 사건”은 세간에 불고지 논란을 다시 한번 촉발시켰는데,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함으로써 불고지죄의 존속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①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연이은 불고지 논란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건은 1989년 6월 25일 서의원이 안기부에 자수함으로써 밝혀졌다. 1988년 8월 19일부터 2박3일동안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 등과 회합하였다는 것이었다. 단순 밀입북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은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간첩혐의가 덧붙여지고, 북한공작금 1만달러를 당시 평민당 총재인 김대중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으로 비화되었다. 5공청산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시달리고 있던 6공화국 정권은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을 계기로 제1야당인 평민당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폈다. 안기부를 통하여 ‘공작금 수수설’을 퍼뜨리는가 하면, 불고지죄를 동원하여 서의원의 비서 등 측근은 말할 것도 없고 평민당의 고위당직자들을 모두 입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불고지 혐의를 받은 이는 다음과 같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 이길재 대외협력위원장, 김원기 의원, 이철용 의원(이상 불구속입건) 뿐 아니라 윤재걸 한겨레신문 기자, 정성현 가톨릭 농민회 사무국장(구속기소), 가톨릭농민회 김상덕 회장(불구속기소), 이진우 전경기 지부장(구속기소)과 김용래 보좌관, 방형식 비서(구속), 오동철 기사(구속기소), 방제명 원일레벨회장(불구속기소) 등이 입건되었고, 사전에 고지받은 김수환 추기경까지 입건여부가 검토됨으로써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가 논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② 카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

카톨릭 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은 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서의원이 귀국 후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방북사실을 털어놓음으로서 김추기경과 당시 참석하였던 함세웅 신부 등에 대한 불고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특히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추진과 관련, 북한쪽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신부의 주변조사를 벌였”⁴⁰⁰⁾으나 고해성사가 가깝다는 이유로 추기경과 함신부는 입건 하지 않았다.

③ 윤재결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

1989년 7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는 「한겨레신문」의 윤재결 기자가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1989년 4월에 서의원과 인터뷰 과정에서 알았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원중이던 윤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⁴⁰¹⁾받았다. 구속영장은 실제 집행되지 않은채 1989년 12월 1일 제6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사건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의 문제, 불고지죄의 위헌성 등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기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취재원에게서 얻은 정보를 갖고 그 취재원을 고지하거나 고발하게 된다면 취재원과의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취재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취재, 보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되고 자기억제를 강요하는 위축효과까지 파생하게 되므로 취재원의 보호는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⁴⁰²⁾.

④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황인오씨 부인과 어머니 등 6명 불고지죄 구속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의해 ‘총책’으로 발표된 황인오씨의 어머니 전재순씨와 처 송혜숙씨, 장기표(민사협 회장)씨와 그의 처 조무하씨, 김선태(출판사 직원)씨 등 6명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로 구속⁴⁰³⁾되었다.

400) 「한겨레신문」 1989년 7월1일자

401) 한편 국가안전기획부는 1989년 7월 12일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관련하여 사전에 서의원과 방북 사실에 관한 인터뷰를 한 한겨레신문 윤재결 기자의 취재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10개 중대 1,500여명의 전경을 동원하여 한겨레신문사 편집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윤기자의 사물함에서 취재수첩 및 사진 21장 등을 압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겨레신문사가 안기부가 발부받은 영장취소를 위한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결정이 있기 전에 압수수색을 감행함으로써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언론 출판의 자유>, 「1989년 인권보고서」, 67쪽

402) 팽원순, “취재원보도와 보도의 자유”, <신문과 방송> 제225호, 1989년 9월, 30~37쪽, 인권보고서 재인용

403) 한편 장기표, 조무하씨 부부는 간첩 리선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고지죄가 적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간첩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을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 만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불고지죄의 무리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불고지죄로 구속된 김옥기씨는 공작원 리씨와 동거하면서 리씨가 북한공작원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김선태씨는 황씨를 통해 북한공작원 권중현씨와 두차례 만나 권씨로부터 북한노동당 가입권을 받고 입당을 거부했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전씨와 송씨의 경우 아들 또는 남편의 일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고지죄가 적용된 것이어서 이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이라는 비난마저 일었다.

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재순씨는 △민중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알게된 리선 실씨를 아들 황씨에게 소개한 뒤 아들로부터 “리씨가 북한에서 온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뒤 리씨·황씨 부부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같이 한 사실 △며느리 송씨로부터 아들이 북한에 갔다는 사실을 듣고 비밀로 하도록 당부함으로써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부인 송씨는 △남편 황씨로부터 “리씨 등이 북에서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뒤 두차례 식사를 같이 했으며 △황씨가 90년 10월 공작장비를 가지고 귀가한 뒤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들·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고지죄를 적용하는 것은 가족을 수사기관에 고자질하도록 강요하는 반인륜적 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⁴⁰⁴⁾.

한편 전재순씨는 “구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규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고지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8년 7월 17일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되는 다른 사람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 세계관이나 신조 등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⁴⁰⁵⁾했다.

⑤ 부여간첩 김동식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인희씨 등 불고지죄 적용 사건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던 1995년 10월 24일 충남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총격전 끝에 생포되었다”는 간첩 김동식 사건은 1995년 후반기에 공안정국을 불러왔고 불고지 논쟁을 유발하였다.

404) 「한겨레신문」, 1992년 10월 8일 기사. 일반형법에서 살인죄의 경우 불고지는 물론, 친족에게는 범인은닉죄도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만 불고지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반인륜이며 양심의 자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유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05) 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바35 구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불고지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면서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11월 6일 우상호(전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인영(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함운경(전 서울대 삼민투위원장)씨가, 11월 7일 허인회(당시 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유일한 증거는 간첩 김동식의 진술이었다. 우상호, 이인영씨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허인회, 함운경씨는 구속기소되었다. (이후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

이후 전개된 재판에서 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법원에 따라 유죄, 무죄 등 상이한 판결을 내리며 논쟁이 가속화 되었다.

함운경씨 사건에서는 함씨가 ‘김동식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함씨는 김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그를 수사기관의 프락치로 수상하게 여겼으며, 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1997년 9월 25일, “피고인은 김동식이 자신을 남파간첩이라고 밝혔는데도 단순히 수사기관의 프락치로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신고’여부를 유죄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1998년 6월 12일 열린 항소심(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에서는 “함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신분 공개 등에 대한 김동식의 진술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의 진정성을 문제삼아 함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11월 4일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대법원 제2부, 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김씨의 법정진술이 체포된지 1~3년이 지난 뒤에 이뤄진 만큼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인 신빙성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정황으로 볼 때 함씨는 김씨가 남파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허인회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서울지법 유원석 판사)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항소7부, 재판장 정덕홍)는 유죄로 판결하는 등 법원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김씨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허씨와 수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증언한 간첩 김동식의 주장에 대한 공방이 주요쟁점이 되었다.

1996년 11월 열린 1심선고에서 유 판사는 “남파간첩 김동식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허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지법 항소7부, 재판장 정덕홍 부장판사)는 1997년 5월 2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5년 9월 남파간첩 김동식을 만나지 않았다고 제시한 알리바이를 인정하기 힘들고 金과 함께 남파된 간첩 박광남의 수첩에 적힌 접촉인사들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도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많다”고 밝혔다.

3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연구 목적 및 방향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현황과 그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구성요건이나 개념의 추상성 등으로 법적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적용과정을 통해 55년동안 사회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고착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다.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구의 정비와 혁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법 제정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체계를 벗어난 특수 수사기관에서 다뤄져 왔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구들의 연행 체포단계,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전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형사 사건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지니는 문제에서 비롯하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자기 증식과정과 결합하면서 문제점이 더욱 증폭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이 확대 팽창하면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경찰조직은 주로 정보-대공-보안 라인으로 이어져온 체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으며, 특히 이와는 다르게 ‘분실’ 형태로 독립된 특별수사기구가 사건을 전담해왔다. 경찰 이외에도 국정원(안기부), 국군기무사(보안사) 등 비밀정보기구들이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검찰은公安부를 따로 두고公安 및 公安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원은 수사기관 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만 따로 담당하는 부서와 전담판사를 두고 있는 않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그 독립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으로서 公安관련 연구소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러한 연구소의 목적과 실무내용이 인권의 원칙에 떨어져 있음에도,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서 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 검찰, 사법부의 연혁을 살펴보면서 각 기관들의 국가보안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이 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의 온존, 강화와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한 정비 및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경 찰

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연혁

1)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 “정보과”의 확대과정

경찰조직 내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곳은 보안과이다. 보안과의 연혁을 살펴보면 해방이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정청은 경찰조직으로 경무국(The Police Bureau, 각 도에는 경찰부)을 신설(1945.10.21.)하였는데 이 경무국은 1948년 1월 경무부로 승격되면서 총무, 공안, 수사, 통신, 교육 등 5국으로 편성되었다.

곧이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경찰조직은 내무부 장관 산하의 치안국으로 편제(1948년 11월 4일)되었고, 당시 대공관련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에서 분장¹⁾하였다. 이 사찰과는 정보수사과²⁾로, 그 다음에는 특수정보과로 개칭³⁾되면서 운용되었다.

한편 1974년 12월 24일 정부조직법 개정⁴⁾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다. 치안본부에는 제1부, 2부, 3부가 설치된다. 이 시기 대공관련 업무를 분장하던 정보과는 제3부장 산하에 소속되었고, 1976년 4월 15일 내무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8078호)에 따라 정보1과와 정보2과로 분리된다. 주로 정보2과에서 대공관련 업무(대공에 관한 첩보수집 및 분석, 간첩 및 사회안전사범의 수사 및 수사지도=정보2과의 업무)를 맡았다.

이처럼 경찰조직 내에서 대공관련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가 초기에는 다른 업무와 함께 취급되다가 1974년 치안본부로의 개편과 함께 대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새롭게 신설,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대공관련 업무분장 부서가 점차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공과”의 등장과 대공업무의 확대일로(1981~)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경찰조직 내의 대공업무 분장 부서는 더욱 더 확대되기에 이른다.

아래 <그림> 경찰조직 내에서 대공(보안) 업무 분장에 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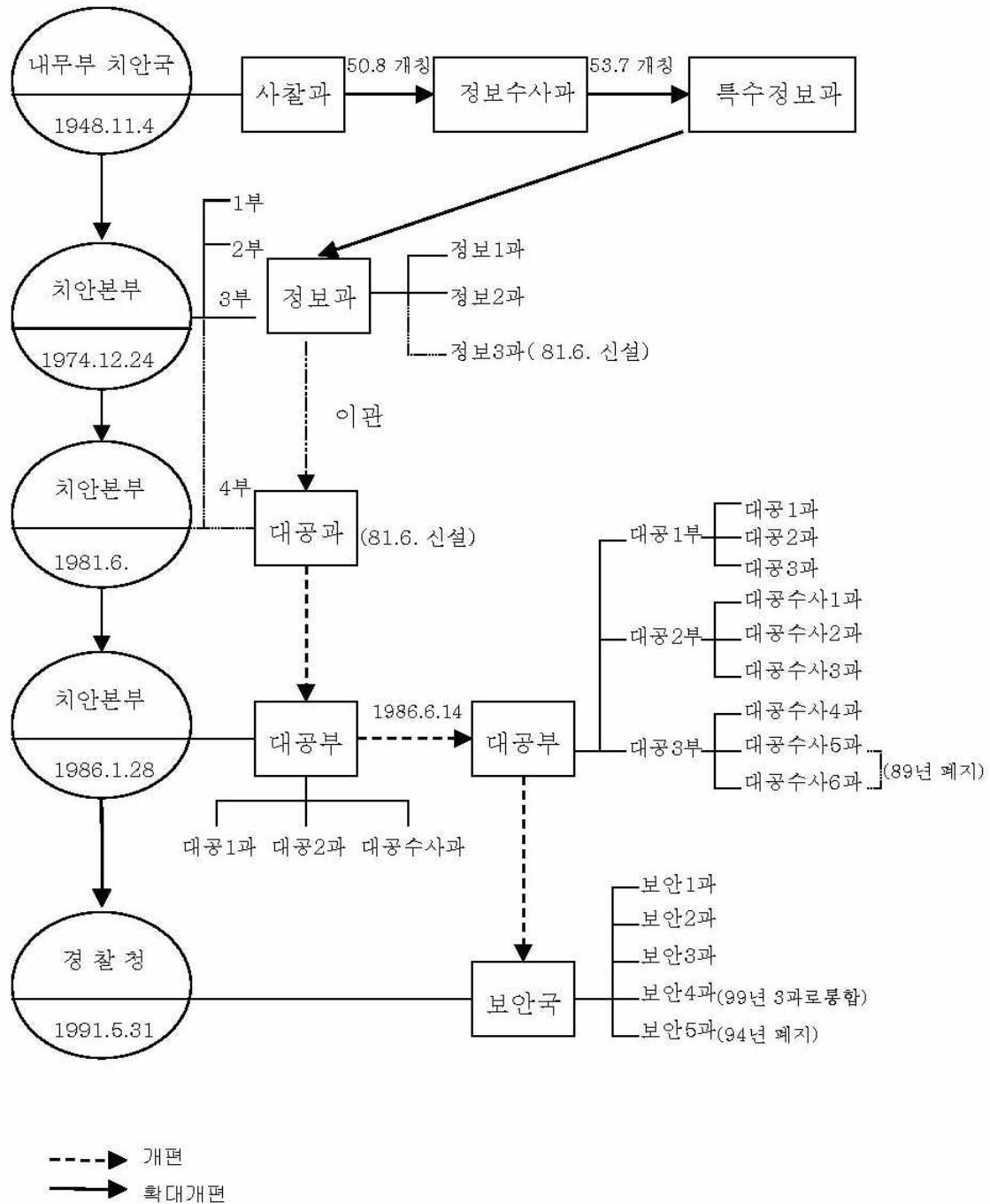
1) 1948. 11. 4. 대통령령 제18호로 공포된 <내무부직제>에는 치안국의 조직부서와 그 중에서 대공 관련 업무를 맡은 사찰과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치안국에 경무과, 보안과, 경제과, 사찰과, 수사지도과, 감식과, 통신과, 여자경찰과 및 소방과를 둔다.... 보안과는 풍속경찰, 총포화약류, 교통경찰, 위생경찰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사찰과는 민정사찰 및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1950. 8. 10. 정보수사과는 민정, 사찰, 외사경찰, 범죄, 수사의 지도 및 내무부장관의 특명에 의한 사찰과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3) 1953. 7. 6. <내무부직제> 개정, “특수정보과는 정치, 문화 및 민정의 사찰, 외사경찰 및 특수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대 이후 대공관련 부서가 얼마만큼 급격히 확대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시기 접어들면서 대공업무는 '대공과'의 신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직이 확대되었는데,
 그 첫 출발이 바로 1981년 6월 치안본부 제4부의 신설이다.

경찰 보안(대공) 업무분장 변화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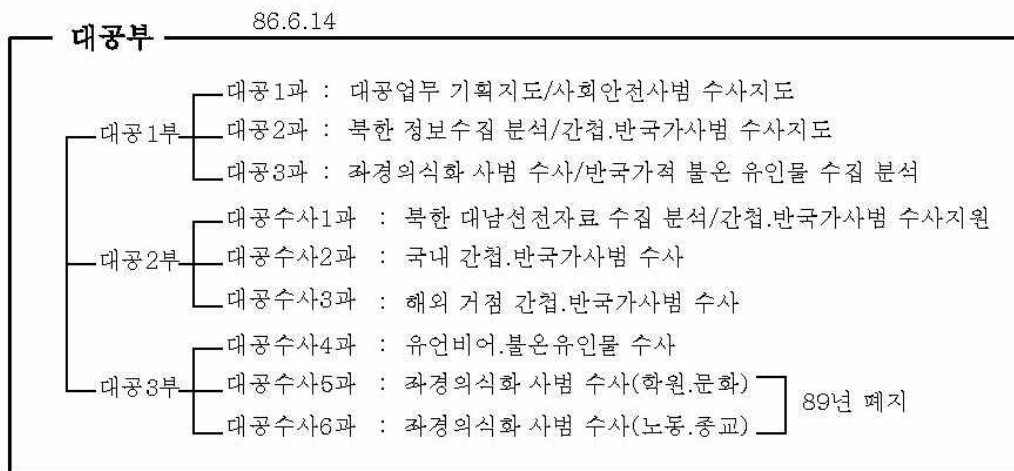
1981년 6월 18일 내무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0355호) 이전에는 치안본부 제3부 산하에 정보과를 두어서 “대공정보의 수집, 분석과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수사지도”를 담당케 하였다. 그러나 1981년 개정을 통해 치안본부에 제4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제4부 산하에 ‘대공과’를 따로 설치하였고, 그동안 정보과에서 분장해오던 대공업무를 ‘대공과’로 이관한 것이다.

‘정보과’가 주로 첩보수집 및 분석의 역할에 치중⁴⁾하였다면 ‘대공과’는 1. 대공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 대공에 관한 첩보수집 및 분석 3. 간첩 및 사회안전사범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도 등 본격적인 대공업무에 대한 기획 및 첩보수집,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80년 5공화국 출범과 함께 확대되기 시작한 대공부서는 1986년 접어들면서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확장의 극점을 이루게 된다.

첫번째는 1986년 1월 28일 내무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1851호)을 통해 그동안 치안본부 1부, 2부, 3부, 4부내에서 ‘과(科)’ 체계로 경찰업무를 분장해오던 것을 경무부, 인사교육부, 경비부, 보안부, 수사부, 정보1부, 정보2부 등의 ‘부(部)’ 체계로 상향 조정 하였다. 또한 이때 ‘대공부’를 새롭게 신설하였고, 그 대공부 산하에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과를 두었다.

두번째 개편은 같은해 6월 14일(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1922호) 시행되었는데, 첫 번째 개정을 통해 확대된 대공부는 대공1부, 2부, 3부로 더욱 더 확장되었으며 특히 대공수사과는 대공수사 1과에서 6과까지 세분화되어 설치되기에 이른다. 당시 각 부 및 과별 업무분장은 아래 내무부 직제와 같다⁵⁾.



4) 당시 직제개정에서는 ‘정보과’ 역시 더욱 강화된 체계로 정비한다. 즉 그동안 1과와 2과로 나뉘어져 있던 정보과에 “학문 문화분야의 첩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분장하는 정보3과를 신설한 것이다.

5) 내무부직제(일부개정 1986.6.14 대통령령 제119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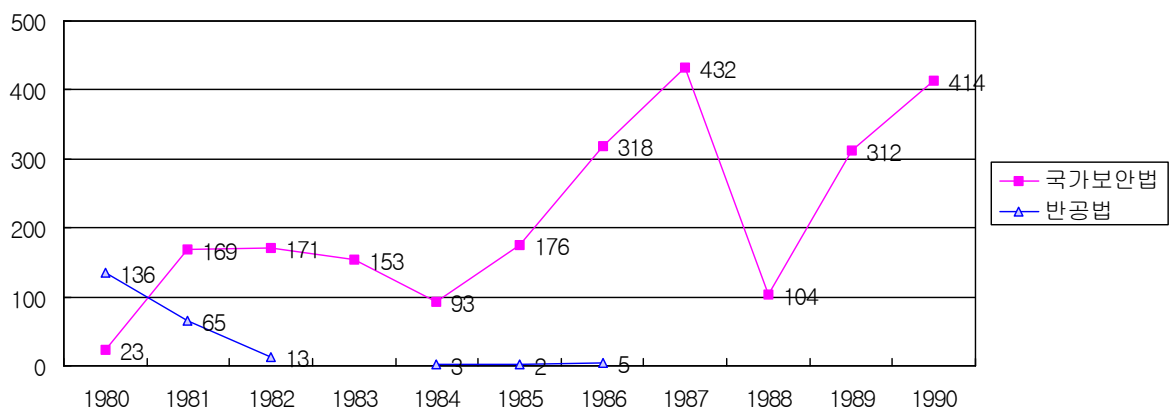
위 직제를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 대공부서는 국내외의 간첩 및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학원 및 문화분야, 그리고 노동 및 종교분야의 좌경의식화 사범에 대한 수사를 포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가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던 터에 경찰조직의 대부분 인력이 대공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경찰력의 과도한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각 과별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국내, 해외) 간첩’, ‘(국내, 해외) 반국가사범’, ‘(학원, 문화, 종교, 노동분야의) 좌경의식화 사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에 따라 조직체계 역시 과다하게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대공관련 부서의 무한정한 확대는 1980년 하반기 접어들면서 시국사건에 대한 용공조작 시비, 대량구속사태를 빚어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으로 기소된 인원이 1985년 176명인데 반해 1986년 기소인원 318명, 1987년 432명으로 나타났다. 1985년에 비해 약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급증은 공안수사기구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사기구의 난립은 경쟁적, 실적올리기식 마구잡이 체포 구속사태를 빚은 것이다. 심지어 박종철 고문 살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 술한 고문 시비를 불러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 - 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



이에 따라 치안본부는 1989년 8월 7일 대공 수사5과 및 6과를 폐지⁸⁾하기도 했다. 이는 그

6) 특히 새로 신설된 조항들에서는 “좌경의식화사범”이라는 다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등장시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983~4년 유화적인 정세속에서 성장을 거듭한 민주화운동 세력이 1985년 2.12. 총선때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며 본격적인 군부독재 반대운동에 나선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즉,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좌경”또는 “용공세력”으로 몰아부쳐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침으로써 탄압하고, 민주화운동세력과 반공의식이 뿌리깊이 남아있었던 국민들과의 이반을 꾀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7) “제1심 형사공판사건-국가보안법 반공법 기소인원”, 법원행정처, 「사범연감」, 1981~1991년

8) 1989.8.7. 개정된 <내무부 직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던 대공수사2과(국내의 간첩 및 반국가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와 대공수사 3과의 업무(해외에 거점을 둔 간첩 및 반

동안의 대공관련 업무와 체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 중복되어 있고, 과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3) 경찰청으로 개편 - 보안국 신설 및 현황

경찰조직은 1991년 5월 31일 경찰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인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장관 소속하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⁹⁾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각 체계 역시 변화를 맞게 되는데, 치안본부의 대공부는 경찰청의 ‘보안국’으로 개편되었고, 보안국 산하에 보안1과 부터 보안5과 까지 두었다. 이는 기존 치안본부에서의 대공과의 조직보다는 축소된 것이었다.

또한 그 이후 2차례에 걸친 직제개정을 통해 보안국은 더욱 축소되었다. 즉, 1994년 직제개정(1994.5.4. 대통령령 제14250호)으로 보안5과가 폐지되었고, 1999년 5월 24일, “좌익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해왔던 보안4과가 폐지된 것이다(행정자치부령 제00052호). 당시의 보안4과 업무는 보안3과가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이같이 보안국은 1990년 후반들어 체계상으로 볼 때는 점차 축소되어온 흐름을 보여왔으며 현재는 보안1과, 2과, 3과의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다수 체포,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보안과, 각 경찰서 보안과(또는 정보보안과)에서 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경찰청 보안국¹⁰⁾은 보안2과에서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업

국가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가 대공수사 2과(국내외에 거점을 둔... 으로 개정)에서 단일하게 처리하도록 개편되었고, 학원 및 문화분야의 좌경의식화사범에 대한 수사를 분장하던 대공수사5과와 노동 및 종교분야의 좌경의식화사범에 대한 수사를 분장하던 대공수사6과를 폐지하고, 대신 대공수사4과에서 이 모두를 아울러 좌경의식화사범에 대한 수사를 분장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 내무부직제(대통령령 제12768호)

9)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기존의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인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하고, 지방은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인 시·도 경찰국을 시·도지사의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법제처, <법제 50년사>

1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2조 (보안국에 두는 과)

①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개정 1999.5.24>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무를 맡고, 보안3과에서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와 중요 좌익사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¹¹⁾는 주로 보안2과에서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지방경찰청은 보안과(동법 제46조)에서 “보안사범의 수사 및 지도,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에도 (정보)보안과를 두고 있다.

나. ‘대공분실’과 보안수사대

1) 인권유린의 온상 ‘대공분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1년부터 1987년 즉 제5공화국 시기는 경찰기능 가운데 대공 관련 기구(업무)가 가장 강력한 기능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대공조직이 확대일로를 걷게 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때만 해도 대공관련 수사기구 특히 “대공분실”은 설립의 법적근거나 공식명칭은 물론이고, 소재지, 소속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기관들의 이러한 ‘익명성’은 일반국민들에게는 더욱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법률적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자 고문 등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게 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이는 근대행정법의 기본원리인 행정조직의 법정주의, 또는 행정기관 공개주의를 정면으로 유린¹²⁾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조직사건은 대부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밀실수사¹³⁾가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1987년 박종철 고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국가보안법 위반(민추위 사건) 혐의로 수배중인 박종운 씨를 붙잡기 위해 후배 박종철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체포하여 물고문 등의 고문을 자행,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

⑤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⑥삭제<1999.5.24>(삭제전 -> 보안4과 : 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

1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 제32조 (보안부에 두는 과)

①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외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간첩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2)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비사, 1992년, 513쪽

13) 1981년 민노련, 민학련 사건을 필두로 하여 1985년 민청련 사건, 1985년 민추위(깃발) 사건, 1987년 남부노동자연맹(남노련) 사건 등 조직사건들의 수사를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다.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이곳에 영장도 없이 끌려가 4,50일동안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온갖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연구소, 「80년대 민족민주운동 - 10대조직사건」, 아침, 1989 참조

이다. 또한 민청련 의장 김근태 고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비밀리에 온존하던 ‘대공분실’의 실체가 제한적으로나마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공분실’은 국민 여론의 비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

그러나 대공분실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본 치안본부 직제상 대공2부 및 대공3부의 별칭일 뿐이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남영동’ 또는 ‘치안본부 대공분실’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잘 알려져 있다. 1948년 10월 21일 설치¹⁴⁾되었다고는 하나, 유신시대 이전까지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밝혀진 바 없다.

이렇게 익명적으로 존재해온 대공분실¹⁵⁾은 1987년 고문살인 사건이 난 이후에서야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치안본부는 “대공수사 부서는 시국사건 수사에서 일체 손을 떼기로”¹⁶⁾ 하는 등의 유화적인 조치를 발표¹⁷⁾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남영동 분실을 폐쇄하고 홍제동으로 신축이전¹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현재 남영동, 홍제동 분실 두 곳이 다 운영되고 있다.

2) 보안수사대로 개편

이들 대공분실은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될 때 대공과가 보안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보안수사대’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보안수사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안과장과 직급이 동일한 총경급의 보안수사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¹⁹⁾ 한다.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보안수사대는 1996년 12월 안기부법

14)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검거간첩의 신문 및 간첩 통신·분석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목적으로 1948년 10월 21일 설치”되었다(1988년 10월 내무부 국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 436쪽, 박원순 앞의책, 517쪽 각주 18번 재인용)고 한다.

15) 남영동 대공분실 이외에도 인권유린의 산실이라 불린 치안본부 소속 대공분실로는 ‘신길산업’이라 불렸던 신길동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신한무역공사’라 불렸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소재 대공분실(학원·종교담당), ‘경동산업’이라 불렸던 장안동 소재 서울시경 대공분실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식명칭, 소속 등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분실의 간판 역시 위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현재도 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인 남영동, 홍제동 소재 분실이 있고, 서울경찰청 산하의 옥인동, 장안동, 구로동 등의 보안수사대 분실이 존재하며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16) 조선일보, 1988년 12월 31일자

17) 치안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당시 순수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대공수사 3과를 폐지, 대공 2부 전체인원 129명 중 45.7%인 59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시국·공안 사건 수사를 해온 홍제동 대공분실 대공수사6과도 폐지해 대공 3부 인원 100명 중 38명을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1989년 1월 17일 기사 : 박원순, 앞의책, 517쪽, 각주 16 재인용

18) 1988년 10월 13일 학원·시국사건을 전담하는 대공수사단 대공3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8 소재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다. 김선수, “신체의 자유”, 「1987, 88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1989, 역사비평사

19) 경찰 제출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1998

개정과동 당시 내무부에 의해, 기존의 30개에 이르던 지역별 보안수사대를 39개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보안역량 강화계획>²⁰⁾이 발표된 이후 서울경찰청 산하에 구로수사대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들 보안수사대는 2002년 현재 44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98년 국감자료(행정자치위)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원감축 문제가 논란이 되던 98년 한해동안 오히려 5곳(강원동해, 충남서산, 전북정읍, 전남광양, 경남통영)에 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새로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안수사대 현황

현재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의 보안과의 별칭인데, 분실형태로 독립되어 남영동(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과 홍제동(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분실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옥인동(1대), 장안동(2대), 구로동(3대)의 분실이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별 보안과별로 보안수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경찰청 본청이 6곳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전남과 충남지역이 4곳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전국보안수사대 현황²¹⁾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6	3	3	3	3	1	3	3	1	4	3	4	3	3	1

또한 아래 표 <보안수사대가 구속수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비율은 전체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80~90%를 웃돌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이곳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7년 이후 보안수사대 구속수사 비율이 비교적 낮아진 것은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를 대부분 경찰서에서 수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보안수사대가 구속 수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²²⁾

20)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던 1996년 12월 내무부(장관 김우석)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의 보수화에 편승하여 <보안역량 강화계획>을 추진하였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안에 보안수사단을 설치해 전국 39개 보안수사대와 경찰서 보안과의 대공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하고, 해마다 공안사범 검거 실적이 우수한 공안요원 5명씩을 경위로 승진시키는 등 공안요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시험없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공안사범 검거자에게는 따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공안요원에게 다달이 30만원씩의 보안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한겨레신문」 1996년12월19일치 기사. 이는 사실상 경찰의 대공수사기능을 지난 87년 박종철씨 고문살인 사건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1) 경찰청 제출 자료, 행자위 국정감사, 2002년 8월 31일 현재 현황

22) 경찰청 제출 자료, 행자위 국정감사, 2002년 8월 31일 현재 현황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2.8.31	계
국가보안법위반 전체 구속인원	113	338	243	459	663	454	302	123	116	80	2,891명
보안수사대 구속인원	92	305	218	411	525	350	237	90	83	44	2,355명
비율	81.4%	90.2%	89.7%	89.5%	79.2%	77.1%	78.5%	73.2%	71.6%	55%	81.5%

한편 아래 <표>는 보안수사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소재의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인원과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현황을 보여준다. 이 통계에 의하면 1998년에는 검거인원 170명 가운데 64.1%인 109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999년에는 총검거자 130명 가운데 53%인 69명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57.4%인 75명, 2001년도에는 51.8%인 69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한 인원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이가 50~60%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탈퇴서를 작성하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처리가 된 사건을 감안한다고 해도, 무리하고 과도한 체포 관행의 일단(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서울소재 보안수사대는 인신체포를 남발하였던 것이다.

**<표> 서울소재 보안수사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체포인원
및 구속영장 발부·기각현황²³⁾**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8.31		
	검거 인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검거 인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검거 인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검거 인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검거 인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검거 인원	영장 발부	영장 기각
계	419	244	21	170	109	9	130	69	3	47	27		56	29	9	16	10	
본청3과	61	39	3	40	24	3	10	7		6	3		5	5				
본청4과	110	81	14	47	37	6	26	19		7	7		25	15	8	5	3	
서	소계	248	124	4	83	48		94	43	3	34	17		26	9	1	11	7
울	1대	65	31		21	12		25	8		7	3		7	4		5	4
	2대	135	70	1	51	27		48	25		21	12		10	3	1	5	3
	3대	48	23	3	11	9		21	10	3	6	2		9	2		1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보안수사대가 44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일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에 대

23) 2002년 경찰청 제출자료, 여기에서 본청3과는 일명 경찰청 남영동 분실, 본청4과는 홍제동 분실, 서울 1대는 서울경찰청 옥인동 분실, 2대는 장안동 분실, 3대는 구로동 분실을 말한다.

한 전면적인 개편 내지 축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신체포의 남발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감소, 구속수사율 저하 등 시대적 변화추세를 감안한다면 “간첩 등 보안사범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수사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내지 축소가 요구된다.

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 과도한 보안분야 경찰 인력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해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²⁴⁾이다. 특히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999년 구속자 302명에 비해 무려 179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 2002년에도 1백여명을 약간 넘어서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표> 전국 경찰공무원 중 보안분야 인력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이래 보안분야 경찰인력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4년도에는 1993년에 비해 무려 670명이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2년까지 이어졌다. 또한 2002년 8월 현재 경찰공무원 중 보안분야 업무 종사 인력은 3,101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당시 보안인력 4,188명과 비교해볼 때, 1천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표> 전국 경찰공무원 중 보안분야 인력변동 현황²⁵⁾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정원)	5,268	4,598	4,485	4,278	4,417	4,188	3,853	3,346	3,118	3,101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1994년 이후 점차 감소하던 보안분야 경찰인력이 1997년 들어 증가²⁶⁾한 점이다. 이는 1996년말 추진되었던 <보안역량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른 ‘공안요원들에 대한 인사 및 보수상의 특혜’는 결국 1997년 한해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경찰 통계상 663명을 기록함으로써, 1990년대 가장

24)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운동 방식의 변화, 즉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최근 발생한 이적단체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례가 여전히 많고, 무리한 법적용도 여전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5) 2002년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이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2002년은 8월 31일 현재. 위 인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26)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1997년 8월 8일 경찰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9개 지방경찰청에 보안수사대를 증설하고, 각 지방경찰청 별로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보안수사대는 1개 수사대당 30명으로 편성되며 수사요원은 발대식과 동시에 1주일간의 보안수사 교육을 받은 뒤 임무수행을 하게된다”고 알리고 있다. 「조선일보」 1997년 8월 9일치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를 양산하게 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公安수사기관의 난립과 수사관들에 대한 특혜가公安사범을 양산한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조직 내에서 대공부서가 급증하였던 1986년 접어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그 전의 시기와 비할 바 없이 급증한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점은公安수사기관과 국가보안법 구속수치가 일정정도 비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1999년 이후 보안분야 인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公安수사기구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은 단 한차례도 이뤄진 바 없다. 따라서公安수사기관에 대한 제도적인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언제든 지 다시 급증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로 적용기관의 자의적 남용을 가능케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이 있고, 특히 대부분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경찰본청, 지방경찰청의 보안국(부)과 각 경찰서의 보안과 등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안2과, 3과가 보안사범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중복일 뿐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상 상금(제21조) 조항 및 특진제로 인한 문제점

가) '상금'조항에 근거한 국가보안유공자 수당

국가보안법은 제21조에 상금 조항을 두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24조에서는 위 보상대상자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²⁷⁾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신문 보도²⁸⁾에 따르면 보안분야 경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때마다 법무부로부터 1명당 20~40만원의 「국가보안유공자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21조(상금)등의 규정에 근거해 1981년부터 수당을 지급해 왔으며

27) 현재 이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법무부(국가보안법 제24조)는 업무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2002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심사위원회가 2000년도, 2001년도 각 4회 개최, 2002년도 4월, 6월 개최 되었다고 밝히면서도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경우, 검찰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거나,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칙에 따르면(제6조 ⑤항) 검찰 제3과장이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8) <한겨레신문> 99.4.13. “마구잡이 보안법 수사...특진-포상제가 부채질”

1998년과 1999년 각 1억3,339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 수사관들에 대한 이러한 특혜가 무리한 인신체포를 부추기고 이른바 ‘실적올리기’식 수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유공자 수당’ 지급은 보안수사요원에게 2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중요범인 검거 등 유공자에 대해 수시로 심사 임용함으로써 특진의 영예성 제고와 유공자의 사기진작 고양”을 위해 특진제도를 운용²⁹⁾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시에는 국가보안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보안수사요원 역시 일반 경찰공무원과 같이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진대, 상금(유공자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인해 보안수사요원들의 무리한 체포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는 보안관련 종사 수사관들의 마구잡이 수사, 실적올리기식 수사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상금조항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나) 보안수사요원에 편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특진제

국정감사에 따르면 특진제도가 보안수사요원에 편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가운데 한총련 수배자 검거 등 보안사범 검거로 특진한 보안분야 인력이 전체 특진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1997년 한해동안 전체 특별진급자 823명의 32.7%를 차지하는 269명이 보안사범 검거(한총련 수배자 검거 238명, 보안사범 29명, 간첩검거 2명)로 특진했다. 또한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9월 3일까지 특진한 수사관 204명 가운데 한총련 수배자, 보안사범 검거(보안사범 12명, 한총련수배자 51명, 간첩검거 1명) 등으로 특진한 수사관은 전체 특진자의 31.4%인 64명이었다. 특히 한총련 수배자 검거로 특진한 경찰은 1997년 한해동안 238명으로 전체 특진자의 28.9%를 차지했으며, 1998년(9월 3일까지)에는 51명으로 전체 특진자의 25%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경찰의 공적별 특진내역³⁰⁾

연도 내역	계	범인 검거	직무 탁월	청용 봉사상	보안사범 검거	경호 경비	한총련 수배자 검거	간첩 검거	정보활동 유공	노동법 반대 수배자 검거	기소 중지자 검거	기타
1997년	823	408	57	4	29	7	238	2	21	2	5	50
1998년 9.3. 현재	204	77	10	5	12	19	51	1	1			28

그런데 이러한 특진율은 전체 경찰인력 중 보안분야 근무인원이 4.6%에 불과한 것에 비추

29) 경찰청 홈페이지 www.npa.go.kr

30) 경찰청, <1997년, 1998년 경찰 특진내역>, 1998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어 볼 때 심각한 편중현상이라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1998년 현재, 전체 경찰인력은 90,555명이다. 이 가운데 보안분야 근무인원은 4,200명으로 전체 경찰인력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경찰인력현황(분야별)³¹⁾

구분	계	경무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통신	파출소
인원 (명)	90,555	4,409	4,786	14,795	6,951	7,545	3,992	4,200	896	1,278	41,222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검거로 특진을 했던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특진제가 사실상 경찰의 마구잡이 인신체포, 심지어는 프락치 공작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를 받던 중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뒤 경찰폭행으로 숨진 김준배씨의 죽음이 경찰의 특진진급제 남용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식 발표³²⁾하기도 했다. 또한 이 발표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특진제가 빈번한 ‘프락치 공작’을 계획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31) 경찰청, 1998년 행자위 국정감사 제출자료

32) 지난 1997년 경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나다 아파트에서 떨어진 뒤 경찰 폭행으로 숨진 김준배(당시27세, 한총련 투쟁국장)씨의 죽음의 원인에는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경찰의 특별진급제 남용이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002년 5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97년 한총련 출범 직후 작성된 <제5기 한총련 출범관련 이적·폭력행위자 검거대상 조정계획>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자 140명과 형사사범 169명 등 모두 309명의 수배자 검거에 ‘특진’을 내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총련 출범식 이전 계획됐던 특진대상 수배자 227명보다 82명이나 늘어난 것이며 이 문건에는 대상자 검거시 ‘검거 수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진상규명위는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97년 한해 경찰특진자 823명 중 한총련 수배자 검거로 특진한 경찰수가 238명으로 전체의 28.9%”라며 “당시 경찰들 사이에서는 대공·보안수사 관련 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 중 비보안 요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검거한 사례도 전체의 23.4%”라고 밝혔다. 실제로 97년 당시 김준배씨 검거에 나선 이모씨와 도모씨 모두 보안과 소속이 아닌 일반 형사과 소속 경찰이었다.

한편 특진제 남용은 일선 경찰들로 하여금 빈번한 ‘프락치 공작’을 계획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97년 당시 보안수사대원이었던 강모씨는 “학생들의 경우 협조자의 제보가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협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보안수사대원들은 “공식적으로 공작원비가 책정돼 있으며 정보원의 경우 A, B, C급으로 나뉘어 관리되며 지급되는 액수도 다르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오는 18일 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김준배 사건의 의문사 인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특진제, 김준배 의문사 한 원인**” <연합뉴스>, 2002년 5월 14일

했다. 따라서 보안수사요원을 특별히 우대³³⁾하고 있는 특진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다) 보안지도관 문제

한편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보안경찰은 퇴직 이후에도 보안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³⁴⁾으로 마련되어 있는 바, “퇴직 보안경찰 가운데 5년 이상 보안수사·공작·신문·분석업무 및 보안분야 교관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최종 보안부서 근무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보안지도관”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안지도관에게는 1. 보안수사공작, 신문, 상황분석, 첩보수집에 관한 지도와 협조, 2. 주민이념계도 및 홍보활동 또는 보안실무교육 출강, 3. 간첩 및 보안사범(정보사범 등) 색출을 위한 내사활동 보조, 4. 보안실무 교안 또는 보안실무 연구 논문작성, 5. 좌익이론 연구 및 불온유인물 분석, 6. 신문기술 및 사법서류 작성지도, 7. 기타 수명사항 처리 등의 임무(규칙 6조)가 주어진다. 보안지도관의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우수자의 경우 1회(1년)에 걸쳐 재임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보안지도관에게는 일정 액수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요원들을 재임용하여 현직경찰에 준하는 내사활동을 보조 하도록 한다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즉,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른 ‘내사(제29조 범죄의 내사)’는 그 범위나 기간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기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임에도, 현직 경찰이 아닌 자에게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부여이며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3) 1996년 안기부법 개정 파동 당시 내무부에 의해 기존의 30개인 지역별 보안수사대를 39개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보안역량강화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해마다 공안사범 검거 실적이 우수한 공안요원 5명씩을 경위로 승진시키는 등 공안요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시험없이 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공안사범 검거자에게는 따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들 공안요원에게 다달이 30만원씩의 보안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당시 보안과가 설치된 1백30개 경찰서 외에 31개 공안 취약지역 경찰서에 보안과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다. “대공수사력 강화- 내년 540억 투입 인력증원”, <한겨레신문> 1996년 12월 18일치.

34) 보안지도관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퇴직한 보안경과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우수요원을 선임하여 재직중 경험지식과 사례 등을 보안업무에 협조지원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 보안지도관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24호) 제1조

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가. 국군기무사의 변천과정(연혁)

국군기무사령부의 뿌리는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경찰과 '육군 및 해군 부서들로 구성된 군사국'을 총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국방사령부의 '정보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뒤 1946년 1월 남조선국방경비대³⁵⁾가 창설되면서 그 안에 정보과가 만들어졌고, 1946년 6월 조선경비대로 변경되면서 '정보처'로 확대개편 되었다. 이 당시 정보처는 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 군내 방첩활동, 국내주재 해외 무관과의 연락업무 등 주로 정보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1948년 여순사건 등 '좌우세력이 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나아가면서 그 기능이 '대공업무 전담기구'로서 대폭 확대되었다. 즉, 1948년 5월 정보수집을 주 임무로 하던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에 '특수조사과'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또한 그해 11월에는 특별조사대(SIS)로 개칭되어 운용되었다. 이는 정부의 "대공업무 전담기구 창설 필요성 대두"³⁶⁾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1948년 7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1월 30일에 국군조직법이 국회에서 인준되어 국방부 내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가 설치되었다. 육군총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다시 육군본부로 재편되는데, 1949년 10월 그와 함께 육군본부 정보국은 그 직속부대로 예하 '방첩대'(CIC)를 설치하였다. '방첩대'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군내의 좌익세력을 소탕하는 숙군작업의 선봉에 섰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방첩대는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정보수사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한편 6.25 전쟁은 정보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는데, 1950년 10월 21일, 육본 직속부대로 편제되어 있던 '방첩대'는 육본 직할부대로 독립된 '특무부대'로 변경된다³⁷⁾. 이 '특무부대'는 1960년 민주당 정권 등장 시기 전까지 '특무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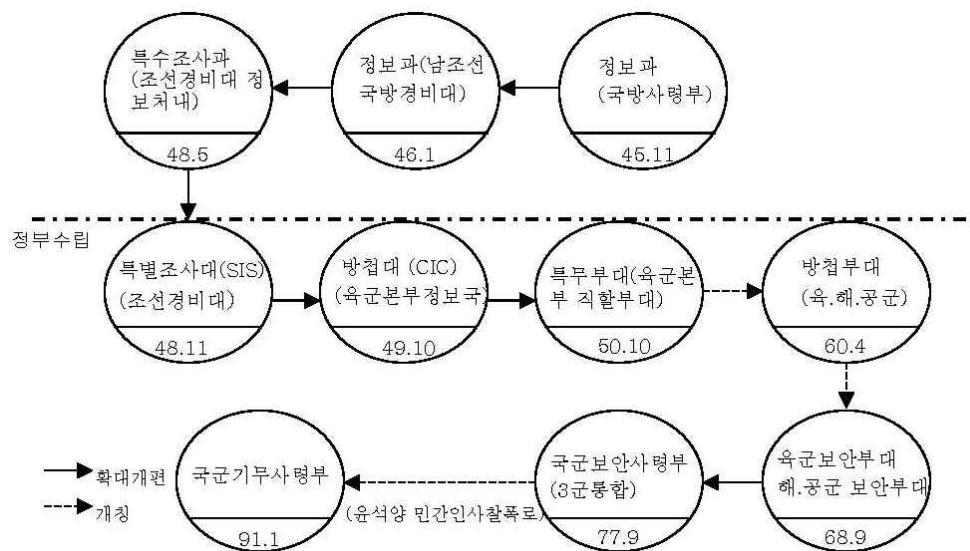
35) 1946년 1월 14일부터 1948년 9월 5일까지 미군정하에서 주로 국내 치안을 담당했던 육군의 전신이다. 한편 1945년 11월 3일 창설한 '국방사령부'는 1946년 6월 14일 '통위부(국내경비부)'로 개칭되는데, 그때 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개칭되었다. 그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초대 국방부장관 : 이범석) 훈령 제1조에 의해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호칭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8월 24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잠정적 군사안전에 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조선경비대에 대한 통수권의 이양과 더불어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국군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되었고, 1948년 11월 30일에 국군조직법이 국회에서 인준되어 국방부 내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가 설치되었다. 육군총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다시 육군본부로 재편되어 오늘날과 같은 체제를 갖추었다.

36) 기무사 역사, 기무사홈페이지, http://www.dsc.mil.kr/intro/intro03_1.html

37) 한편 법제상으로 '육군특무부대령'은 1957년 11월 21일 제정되었다(대통령령 제1316호). 이령의

명칭으로 불리면서 세간에 악명³⁸⁾을 떨쳤다. 또한 1953년 해군 방첩대, 1854년 공군 특별 수사대의 창설로 3군 모두 군사정보기관이 들어섬으로써 강력한 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표> 기무사 변천 연혁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무대는 악명을 떨쳤던 과거 이미지 개선을 내세워 ‘방첩부대’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다시 그 역할이 확대되었고 방첩부대는 “민주당 반혁명 사건과 군내 부정축재자 처리, 기갑장교 반혁명 사건을 적발”하면서 정권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뒤 1968년 9월 육군 방첩부대가 ‘육군 보안부대’로, 해·공군 방첩부대가 ‘해·공군 보안부대’로 개칭³⁹⁾되었고, 이들은 보안지원 업무와 대공활동을 강화하고 울진, 삼척 사태

부칙에 따르면 “본영 시행당시의 육군특무부대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8) 특무부대가 세간에 악명을 떨치게 되기까지는 특무부대장 김창룡의 역할도 한몫을 하였다. 일본 관동군 헌병출신 김창룡은 ‘타공전선(打共戰線)의 제1인자’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좌익분자 색출’을 도맡으며 이승만의 총애를 받았다. 1956년 암살당할 때까지 초법적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가 피살된 뒤 당국에서 든 그의 업적만도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金昌龍의 最後」 {解放20年史(記錄篇)}(文學社), 1967 참조

39) **육군보안부대령**(제정 1968.9.23 대통령령 제3593호) 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에 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 한다)를 둔다.

한편 방첩부대가 육군보안사령부로 개칭된 것은 북한 124군 부대의 청와대 습격 기도 사건 직후인 1968년 9월인데, 이는 당시 무장공비들이 방첩부대원을 사칭하여 서울까지 침투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한다.

진압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렇듯 육, 해, 공군 3군 체제로 분리 독립되어 있던 보안부대는 1977년 9월 26일 발효된 국군보안부대령⁴⁰⁾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라는 이름으로 단위 사령부를 형성하였다. 1980년 신군부세력 등장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보안사는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조직이 존폐의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고치면서 업무체계를 재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무사는 초기에는 국군조직의 통제를 받는 하나의 과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독립적인 부대로 그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하나의 독립된 단위 사령부로 구성되면서 점차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마침내는 최고 권력자와 직결되어 정권유지의 핵심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⁴¹⁾.

나.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 보안사

기무사가 ‘초법적 기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시기는 바로 ‘보안사’ 시절이다. 그동안 3군체제로 운영되어온 3군 보안부대는 1977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8704호에 의거 하나의 단위사령부를 형성, 발족한 보안사는 1979년 10.26 사태, 12.12. 신군부 쿠데타, 5.18광주민중항쟁 등을 거치면서 5공화국 ‘정권창출의 주역’으로서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등을 지휘하는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5공 당시 보안사는 법령상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체계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일반적인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⁴²⁾.

5공 당시 초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설치, 악명높은 언론통폐합 및 그에 따른 언론인 대량해직을 비롯하여 8천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공직에서 추방한 이른바 공무원 숙정작업, 54명의 죽음을 가져온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한 학생들을 숨지게 하거나 공작원(프락치)으로 이용하려 한 ‘녹화사업’⁴³⁾ 등의 배후에는 모두 보안사가 있었다.

40) 국군보안부대령(제정 1977.9.26 대통령령 제8704호). 제1조(설치와 임무)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과 군법회의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이하 "보안부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각군본부 보안부대·부대지원 보안부대·군수산업 보안부대·통신보안부대 및 보안교육대로 구성한다.

41)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비사, 523~524쪽 참조.

42)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해임된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은 퇴임하면서 “보안사를 국방부 장관이 장악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보안사가 국방부장관의 실제적 관할 밖에 존재해 왔음을 실토했다. 5공정권 창출에 깊이 간여한 보안사는 군부장악의 신경조직으로서 통치권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 사령관은 대부분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주1회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명공작’ 등 중대한 사안은 대통령이 수시로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11일치 사설

특히 보안사는 군 수사기구이면서도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일삼고 수사권을 행사하며 고문, 사건 조작 등 숱한 인권유린의 산실이였다.

서울노동운동연합사건(1986년)⁴⁴⁾ 충북민주화운동협의회 회원 폭행사건(1987년)⁴⁵⁾, 해고노동자 미행사건(1987년)⁴⁶⁾, 국민대생 김정환 생매장 사건(1989년)⁴⁷⁾, 재일교포 김병진씨 사

43) “좌경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들의 생각을 푸르게 순화시킨다”는 목적으로 5공 초기인 1982년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 의해 입안된 ‘녹화사업’은 학생운동 출신 대학생들을 ‘특별정훈교육’을 통해 순화한다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권 학생들을 예비검속하고 시위 참가 때 연행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입영시켰다. 보안사령부는 녹화사업을 위해 심사장교를 선발했고, 전담부서(○처○과)를 설치하였으며, 진양분실과 과천분실을 운영했다. 녹화사업은 1984년 11월 전담부서가 없어지며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으나, 보안사 차원의 프락치 공작은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됐다. 이 과정은 보안사령부·치안본부·국가안전기획부·문교부·검찰·대학이 총동원된 가운데 이뤄진 권력기관의 합작품이었다. 녹화사업 대상자였던 사병들은 ‘강제 징집’된 후 고도의 심리적 압박과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동반한 ‘특별정훈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이는 곧 보안사의 학원동향 파악을 위한 프락치 강요로 이어졌다. 그동안 녹화사업으로 인하여 이윤성, 정성희 씨 등 8명이 군복무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고 주장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이들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의 녹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녹화사업 관련 의문사 사건 조사결과 발표> 참조, 2002. 10. 11./녹화사업 관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자료 참조

44) 1986년 5월 6일 서울노동운동연합 소속 김문수, 노정래, 손세환, 최한배, 유시주 등 6명이 보안사 요원들에게 영장없이 강제연행되었다. 이들은 곧바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보안사 분실(일명 ‘송파 보안대’)로 끌려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온갖 가혹행위와 구타 등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뒤 7일이 지난 13일 새벽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경 대공분실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기에서 새로이 연행된 것 처럼 조사를 받았지만 내용은 보안사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옮겨 쓴 것에 불과했다. 이들은 연행 10제인 5월 15일에야 비로소 정식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군수사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연행해 구속영장없이 10일동안이나 불법구금한데다 전기고문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또한 보안사가 실제 수사를 진행한 뒤, 마무리 단계에서 경찰을 앞세운 탈법, 불법행위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14일, “민간인 불법연행, 가혹행위(보안사 실상:4)”

45) 1987년 8월18일 새벽 5시 30분경 충북 민주화운동협의회 회원 장현동씨는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괴청년 6명에게 눈을 가린채 공군 제3579부대(보안대 또는 헌병대)로 끌려가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집단구타를 당했다.

46) 국군 제100보안부대 소속 김윤수 중사 등 7명은 성남지역 해고 노동자 2명을 미행, 감시하다가 1987년 7월 8일 자신들의 미행이 탄로나자 집단으로 달려들어 각목으로 머리를 찍고, 벽돌로 온몸을 찍어 각각 전치 11일과 14일의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47) 1989년 8월 9일 국민대생 김정환은 신원을 알 수 없는 20~30대 남자 6명에 의해 차량으로 납치되었다. 이 과정에서 괴한들은 김씨의 눈을 가리고, 손에 수갑을 채운채 알 수 없는 산으로 끌고가 소나무에 묶은 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국민대 교지 전 편집장, 편집위원의 거처를 밝힐 것을 강요했다. 김씨가 그들의 거처를 모른다고 하자, 괴한들은 1미터 깊이의 구덩이에 김씨를 집어넣고 삽으로 흙을 떠 부으며 생매장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 김정

건48) 등을 통해 보안사의 불법, 월권행위들이 일부분이나마 알려지기도 하였다.

다. 국군기무사령부로의 개칭

6공화국 출범 이후 보안사의 과거 인권유린 행위들에 대한 질타와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이는 곧 보안사 기구와 업무에 대한 축소,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나타났다. 특히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면서 조직의 존폐위기에까지 몰렸다. 이에 따라 1988년, 보안사는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의 하나로 보안사의 업무를 재정립, 민 또는 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지양하고 군 내부의 대 간첩 및 정부전복 정보수집 활동으로 그 임무를 조정키로”하였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는 “보안사의 임무, 기능, 조직을 재정비, 사령부 기구를 축소하고 116개의 소를 철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현 보안사의 병력을 14%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9).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모두 허구임을 증명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1990년 10월 4일, 육군 제3사단에서 군복무중 보안사에 연행돼 이른바 ‘수사협조’를 해오다 탈영한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 민간인 사찰실태를 폭로한 사건이었다. 이에 따르면 보안사가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한 여야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수환 추기경, 김관석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 학계·언론계·법조계·문화예술계·노동운동가·농민운동가·학원가 등 사회전반에 걸쳐 1,303명을 정례적으로 사찰해 왔다고 폭로했다. 윤석양씨는 그 증거로 동향파악대상자 색인표 1,303장, 개인신상자료철 4장, 개인별 동향 파악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 플로피 디스켓30장, 서울대학교 운동권 학생에 대한 동향파악 카드 387장을 공개50)했다. 또한 보안사는 정치사찰 뿐 아니라

환씨는 8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48) 재일교포 김병진씨는 1980년 한국으로 건너와 연세대학교에 편입하여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3년 삼성중합연수원 일본어 강사로 일하던 중 보안사에 강제연행되었다. 그는 보안사에서 3개월간 잠 안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각목구타 등 술한 고문을 당하면서 간첩활동 자백을 강요당했다. 보안사는 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혐의를 걸었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자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보류 처분을 한 채, 보안사 첩보분석 작업을 맡겼다. 보안사의 협박에 의해 그는 1984년 1월부터 1986년 1월까지 강제로 보안사 군무원으로 일해야 했다. 김씨는 1986.2. 일본으로 건너간 뒤, 2년동안 보안사에서 겪은 일을 <보안사>라는 책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보안사에 연행된 재일교포 한국유학생들이 간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등 술한 인권침해 실태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49) 앞 부분 기사, 동아일보 1988년 10월 5일자 : 뒷부분 기사, 조선일보 1989년 5월 17일자

50) 위 자료들을 보면 보안사는 동향파악대상자마다 담당수사관을 전담시켜 매일 또는 수시로 감시 대상자의 발언내용과 접촉인물 등 주요활동내용을 파악, ‘문제인물동향관찰보고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컴퓨터에 입력, 전산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의 범위와 사찰내용, 사찰의 방법, 법적 평가 등 구체적인 분석은 안상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1990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1991. 참조하기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민간인들인 박대호 씨 등 혁노맹 사건 관련자들을 체포, 수사하는 등 각종 대민수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군 부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반인들을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고, 정치 사찰을 치밀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⁵¹⁾한 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국방부장관과 국군보안사령관을 교체⁵²⁾하고, 1991년 1월 명칭을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로 개칭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민(對民)관련 축소, 유사기능 통폐합 및 인원감축 등 주변적 방안만 밝혀 근본적인 개혁은 회피하고 말았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권은 민간인 사찰로 물의를 빚은 ‘정보처’를 폐지하고 기무사 요원의 민간단체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접보고 제도를 없애고, 사령부 인원을 감축하게 하였으며, 기무부대를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둠으로써 순수 군 정보기관으로서 본래의 임무로 돌아가게 하였다⁵³⁾.

51) 이와 관련하여 보안사로부터 사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손해소송에서 대법원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1998년 7월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보안사(현 기무사) 사찰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사건번호 98다42789)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10조와 17조는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52) 사건발생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윤 이병이 공개한 문건은 보안사에서 전시나 비상시에 대비하여 적 또는 불순세력으로부터 요인들을 보호·차단하기 위해 작성한 신상자료로서 정치적 목적의 대민사찰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한겨레신문 1990년 10월 23일치) 그러나 이는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하였고, 정부는 뒤늦게서야 당시 이종구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경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53) 국방부는 3.29. 기무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대통령령에 명문화하고 약 1천여명의 기무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기무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13239호의 제1조에서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기무부대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의 지휘계통에 엄격히 예속되게 하였고, 기무사요원의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출입금지, 시도단위 지구부대의 군영내 이전, 기무부대를 사단급까지 감편운영, 정보처 폐지 및 대민정보 업무 폐지를 확정하였다. 「동아일보」 1993.3.30.

라. 국가보안법 수사권과 최근의 수사 경향

군기무사는 군사보안지원, 방첩, 군관련 첩보, 특정범죄 수사를 주 임무⁵⁴⁾로 한다.

이 가운데서 문제로 지적할 점은 바로 수사권 문제이다. 보안사가 기무사로 변경되는 등 1990년 초, 중반 이후 많은 변화가 이뤄지긴 했으나 여전히 수사권 제한 등 과도한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사법원법 제43조⁵⁵⁾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헌병과 안기부 직원 외에 “법령에 의한 보안 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제2편 제1장), 외환의 죄(제2장), 반란의 죄(군형법 제2편 제1장), 이적의 죄(제2장), 군사기밀누설죄(군형법 제80조), 암호부정사용(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수사를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 이후 군기무사가 구속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수사대상 군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군복무 과정에서의 행적이 아닌, 입대 전 활동(학생운동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기무사가 ‘노출’ 위험성이 큰 민간인 사찰활동을 줄이는 대신, 수사기능에서 운동권 출신 군입대자의 행적에 맞춰온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군대’라는 상대적으로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은밀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군수사기관이 쉽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간인과 군인이 함께 구속기소된 조직사건의 경우, 군인으로부터 받은 자백이 유죄판

54) 국군기무사는 1. 군사보안 및 군방첩에 관한 사항, 2.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3.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대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동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술적 지원 가운데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국군기무사부령(일부개정 2002.10.23 대통령령 제17762호) 제1조(설치와 임무)

55) 제43조 (군사법경찰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2000.12.26> 1. 헌병과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하는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법령에 의한 기무부대에 소속하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자 3. 국가정보원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4. 검찰수사관

결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군 기무사의 군 입대전 행위 수사와 관련해서는 관할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수사대상의 위법 행위의 '시점'보다도 피의자의 '신분'에 따르고 있어서, 이로인해 기무사는 입대전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언제라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식 구속수사, 마구잡이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1991년 발생한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에서 기무사는 군 관련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구속하였다. 기무사는 당시 이 사건이 모두 “폭력혁명 이론이 담긴 불온책자 및 유인물이 병영 일부에서 반입·유포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⁵⁶⁾ 하였으나 실제 피의사실 가운데 이들이 입대 뒤에 범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매우 빈약하였다. 피의사실은 오히려 이들이 입대전 쓴 논문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또한 같은 해 발생했던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군 관련자 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후,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대학가 '자주대오(활동가조직)' 사건에서는 빠짐없이 '군인'들이 포함되어 조직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자주대오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먼저 군입대하여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들을 체포, '일체의 자백'을 받은 후 민간인들에게 확대하는 경향성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자주대오 사건의 구속자 가운데는 군에 입대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군입대 전의 학생운동 전력이 문제가 되어 구속이 되었는데도, 기무사는 군대 내에서 좌경활동을 해온 것처럼 발표했다. 예컨대 1991년 6월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의 경우, 기무사와 경찰은 이 조직이 “학-군연계 지하 이적조직”⁵⁷⁾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기소내용에는 구속된 군인들이 학생운동과 어떻게 연계를 갖고 어떠한 '군사투쟁'을 했는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기무사는 학생운동 전력을 가진 이들이 입대할 즈음 통상적으로 경찰로부터 이들의 입대전 활동을 통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2001년의 단국대 활동가조직 사건에서는 2명의 현역군인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되었는데, 보도에 따르면⁵⁸⁾ “기무사는 이들이 입대할 당시 경찰로부터 입대전 이적활동 사실을 통보받고 내사중 이었다”고 한다.

입대 전의 '이적활동'을 빌미로 입대 이후 행적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군 입대후 행적에서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기무사는 입대전 활동을 문제삼아 현역군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손쉽게 구속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무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6) “기무사, 서사연 4명 송치 문제점”, 「한겨레신문」 1991년 7월 16일치 기사

57) 「군투(軍鬪)조직 자주대오」, 한국일보 1992.6.28일자. 이 기사는 “국군기무사는 27일, 대학과 군을 연계, 군사투쟁을 해온 청주대 동문중심의 지하이적조직 자주대오를 적발,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보도했다.

58) 동아닷컴, 2001.05.26, 이철희기자 「군, 이적성 이메일 교환혐의 ㄷ대 출신 사병 구속」

<표> 자주대오 사건 관련 군인 구속인원

사건명	발생일	구속인원	사건명	발생일	구속인원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91.6.2.	18명(군인6명)	전북대 자주혁신대오	97.6.27	19명(군인 8명)
청주대 자주대오	91.6.11	10명(군인5명)	동아대 자주대오	97.9./98.4	15명(군인 2명)
한남대 활동가조직	91.7.27	11명(군인6명)	연세대원주자주대오	97.10.4	10명(군인 3명)
경기대 활동가조직	95.3.15/4.1	16명(군인9명)	인제대 자주대오	98.5.29	11명(군인5 명)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95.5/96.3	8명(군인 5명)	울산대 혁신대오	98.7.25	5명(군인1 명)
우석대 자주대오	95.8/95.12.	9명(군인 4명)	한양대반미구국한양	99.6.7.	17명(군인8 명)
충남대 활동가조직	95.10./96.3	15명(군인9명)	광운대 자주대오	99.11/00. 2	6명(군인2 명)
상지대 활동가조직	96.7/96.8.	10명(군인4명)	원광대 자주사건	99.7.29	군인 5명
부산외대 자주대오	96.9./96.10	13명(군인2명)	한신대 활동가조직	00.11.11	4명 (모 두 군인)
제주대 활동가조직	96.9.20	4명(군인 3명)	단국대 활동가조직	01.	7명(군인2 명)
강원대 자주대오	96.11.29/9	9명(군인 1명)	경상대 활동가조직	96.11/97. 7	7명(군인1 명)

3.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가. 국가정보원의 연혁 및 역할

<표> 국가정보원 변천과정

분류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
구성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보위입법위원회(5.17군사쿠데타 직후)	국민의정부 출범이후(99.1.22.)
근거법령	중앙정보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비고	1962년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	*1993년 12월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폐지 *1996년 12월 수사권 부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주관	

1) 5.16쿠데타 정권의 중앙정보부 설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부는 입법·사법·행정 3권을 통합하여 행사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였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던 최고회의는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는 바, 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로 중앙정보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법 제1조) 하기 위하여 최고회의 직속으로 설치되었고, 정보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수사에 관하여 국가의 타기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제3조2항, 제4조1항) 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정보부 안에 ‘정보위원회’를 비롯한 협의기관을 설치(제5조) 하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정보부의 산하에 두게 하였고,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제7조) 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함(제6조) 으로서 정보부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오로지 최고회의에 대해서만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조직되었다.

당시 군부가 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비상조치법’을 제정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보부법부터 제정한 것은, 쿠데타 세력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고 군과 민간에 걸친 전국적인 정보망을 갖춘 정보수사기관이 필요⁵⁹⁾하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중앙정보부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5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반민주악법개폐에 관한 의견서」, 역비사, 1989, 49쪽

명분으로 삼고자 하였다⁶⁰⁾.

이후 박정희 정권 기간동안 중앙정보부법은 세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더욱 강화하게 된다. 1962년 4월 16일, 중앙정보부장 이외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최고회의 의장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중앙정보부법이 개정되면서 정보부는 “박정희의 사(私)조직화”⁶¹⁾ 하였고, 다시 민정이양과 함께 1962년 12월 14일 정부조직법과 중앙정보부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보부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함으로써 국회 통제를 벗어나는 방대한 권력기구로 만들었다.

이로써 중앙정보부는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면서 대통령 1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내내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정보공작정치’의 본거지, ‘국가위의 국가’⁶²⁾, 인권유린의 산실이 되었다.

2) 1980년 내란 정권에 의해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후 12.12와 5.17쿠데타를 통하여 등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1980년 5월 31일)하여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치군부는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단체를 조직,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3호로 중앙정보부법을 개정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는 중앙정보부가 가지고 있던 광범위한 권한과 기능을 고스란히 물려 받았으며⁶³⁾ 이 과정에서 기능 축소와 권력남용 견제를 위한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기부는 제5공화국 권력을 창출한 보안사에 밀려 제5공화국 초기에는 일시 위축되었으나 곧바로 독재권력의 속성과 안기부의 유용성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갔다⁶⁴⁾. 이러한 배경으로 안기부는 5, 6공 내내 검찰,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했으며, 특히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이 안기부의 담당자와 함께 회합을 갖고 그 문제의 성격과 정부당국의 대처방안을 논의해온 것을 말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등을 통해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6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의 책, 50쪽

61) 박원순,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분석>, 「국가보안법연구2」, 1991, 529쪽

62) 조국, <한국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사상의 자유」, 살림터, 1992, 91쪽

6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53~85쪽 참조

64) 전두환 정권 초기에는 보안사령부와의 역학관계상 안기부는 보안사의 감독을 받으며 보안사의 정치공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일단 민간정부인 것과 같은 가식적 외형을 갖춘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여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반대세력을 회유, 탄압, 분열시키는 정치공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기부의 효용성은 군대조직으로서의 경직성을 가진 보안사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1985년 2월 12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당의 출현, 그 이후의 5.17 군사정권과 민주세력간의 본격적인 대치상태를 거치면서 안기부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어 권력의 핵심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앞의 책, 55~56쪽

대해 감시와 통제를 무제한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러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실상 관례적으로 존재⁶⁵⁾왔으며 이는 안기부의 의견을 관철하는 구조에 불과했다.

한편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기부의 권한에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가시적인 조치로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국가보안법 상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안기부의 예산과 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말기인 1997년 신한국당의 날치기 입법을 통해 불과 3년만에, 제한된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 안기부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국정원 홈페이지)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내국동에 청사를 신축하였다. 그러나 명칭을 바꾼 것 외에는 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처음부터 국가의 대외적 안전이 아닌, 반민주적인 정권의 유지 및 안정보장을 준립근거로 삼았다. 또한 이 조직의 확대과정을 살펴보면 설립 및 개정시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독재정권이, 정상적인 국회기관이 아닌 쿠데타 기관에서 설립, 개정해 온 점은 이 조직의 근본적인 태생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문제

1)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권 문제

국정원법 제3조(직무)⁶⁶⁾ 제1항 3호에서는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65) 주로 안기부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이용되어온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국가안전기획부법상 인정되는 안기부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정보조정협의회 규정’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상 안기부의 광범위한 권한과 사실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재정권의 속성상 집권자애의 정보통로를 독점하고 있는 안기부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이들이 ‘음지에서’ 정부의 정책을 조종하는데 관계기관대책회의와 같은 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조용환, <1987~1988년 인권상황개관>, 「1987~88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역비사, 1989, 50쪽 각주 79 재인용.

66) 제3조 (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6.12.31, 19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사법경찰관)에서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3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수사권으로 말미암아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에서의 술한 사건조작, 불법체포 및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다.

이 사실은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중정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⁶⁷⁾을 밝혀냈고, 19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고문 등으로 조작한 사건⁶⁸⁾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안기부가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범인이 범행을 자백한 진술서까지 받아놓은 단순 살인사건을 “여간첩 수지김 사건”이라는 공안사건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중앙정보부, 안기부는 곧 고문, 용공조작, 프락치공작⁶⁹⁾, 불법사찰 등과 등치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002년 5월 27일,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불법수사에도 불구하고 최 교수는 사망때까지 강요된 간첩자백을 하지 않았다”며 “의식적·적극적 항거 외에도 권위주의적 공권력 행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 교수 죽음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교수의 죽음과 관련해 진상규명위는 “최 교수는 고문으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수사관들에 의해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사망했거나 고문으로 사망한 뒤 수사관들에 의해 자살로 위장되는 등의 수법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직접 타살’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관들의 고문 및 협박이 최 교수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졌음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제7호 최종길 사건 보도자료, 2002. 5. 27.

68) 2002.9.16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장석구 사건(1974년 6월 14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중정에 연행되어 긴조 4호 위반으로 기소, 징역 5년형 선고받았고 1975년 7월 22일 대법원 상고 기각, 수감중인 1975년 10월 15일 옥사)에 대해 “의문사한 자 장석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정했다(직권 84호 장석구 사건 결정문)

또한 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정은 당시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 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관하여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개념이었을 만큼,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불법체포, 고문, 용공조작 등 인권유린과 조작 사건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안기부에 아무도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힘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조직, 구성, 활동내용 등이 일체 비밀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어떤 기관도 접근, 통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특히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수사권이 남용되어 인권을 유린하여도 그 기관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⁷⁰⁾ 하므로 안기부에 의하여 수많은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2)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폐지와 ‘날치기’를 통한 회복

김영삼 정권은 1993년 12월 안기부법 및 국회법 개정을 통해 안기부의 권한을 처음으로 축소하는데 성공⁷¹⁾한다. 안기부법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였으며, 안기부가 행정 각 부의 업무에 개입하는 통로로 비판받은 정보조정협의회를 폐지하였으며,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4명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따돌린 채 국회본회의장에 모여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등 11개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당시 날치기한 안기부법은 1993년 박탈한 제7조, 제10조 수사권을 회복⁷²⁾시켜준 내용이다. 이로써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기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0조 수사권을 회복한 것은 ‘인권유린과 정치공작’ 그리고 ‘국

69) 안기부의 프락치 의혹사건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으나 안기부가 스스로 인정한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백홍용 사건을 들 수 있다. “프락치를 이용한 함정수사” 안기부가 백씨를 이용하여 1993년 9월 8일 김삼석, 김은주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하여 체포한 사건이다. 이후 백씨는 독일로 건너간 뒤 자신이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70) 19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준수, 이를 어겼을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고문 등의 안기부의 인권침해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여도, 비밀기관의 속성상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이유로 처벌받은 국정원(안기부) 직원이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고문 등 불법수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71) “이러한 개정은 첫째, 역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 둘째, 국회가 안기부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셋째,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7조와 제10조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배제함으로써 안기부에 의한 감시와 탄압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어느정도 풀려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뜻이 있었다.” 조용환, <민주주의와 정보수사기관의 통제 : 안기부법 날치기통과의 배경과 의미>, 「동향과 전망」 33호, 1997 봄

72)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직무) 1항 3호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를 제외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된 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로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가감시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0조는 양심 및 사상, 표현 자유 등 인간의 정신적인 기본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 안기부는 7조 위반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전국민의 말과 생각과 집회 및 결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가게 되었다⁷³⁾.

최근 들어서도 국정원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⁷⁴⁾, 광범위한 사찰⁷⁵⁾을 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수사권을 폐지하지

73) 국가보안법 제7, 제10조 수사권을 회복한 안기부의 국민감시와 통제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통신의 비밀에 관한 허술한 법체계를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조용환, 앞의 글, 참조.

74)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거부 등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혁명 사건, 지태환씨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2000년 5월 20일, 인터넷상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태환씨를 체포구속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씨가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등 고문을 가했으며, 의사의 검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의사의 검진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장경욱 변호사)은 "국정원측의 수진거부 처분은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침해이며, 국정원의 수진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지법(판사 김인옥)은 변호인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수진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국정원은 2000년 8월, 민혁명 사건으로 최진수 씨 등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을 접견하려는 변호인(이상희 변호사)에게 변호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주심 윤재식 대법관)은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정원측은 원고 변호사들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반드시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하면 된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접견을 거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75) 가령, 2001년 발생한 국정원의 민간예술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사찰'사건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를 포착, '내사'를 하던 국정원 직원이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밝혀졌다. 2001년 8월 27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마포 서교동에 있는 <우리나라> 사무실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던 한 남자가, 사진 플래쉬 터지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우리나라> 단원에 의해 붙잡혔다. 파출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는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소속 단원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법에 형사고소했다. 국정원은 서울지법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이○○등 국정원 수사관의 사진촬영행위는 사법경찰관의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합한 내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없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우리나라> 사무실을 무단촬영한 것을 어떻게 긴급성과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보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않고서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빚어지는 고문수사, 사건조작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행사하고 있는데서 발생했다는 점인데, 국정원은 <우리나라>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 위반혐의에 대하여 “범죄의 해당여부, 범증확보 등 차원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정원이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내사’를 명목으로 한 사찰활동은 언제든지 혹은 은밀하게 수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4. 검찰

가. 검찰의 위상변화 과정

1) 검찰의 공안기능 확대과정

검찰청법은 미군정 말기에 기본 체제가 확립되어 1948년 8월 2월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정부수립후인 1949년 12월 20일(법률81호) 상당한 수정을 거쳐 새로이 제정되었다.

당시 검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권” 및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가질 뿐 아니라(검찰청법 제5조),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내에 정보업무를 관장하는 사찰과, 특무과를 둬으로써 정보권까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다(검찰청법 제29조).

또한 법무부 검찰국에 정보과를 두어 “범죄 정보, 소관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연락 및 특수단체와 개인의 사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법무부직제 1948.11.4. 제정, 대통령령 제21호)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검찰의 권한은 군정보·수사기관, 경찰, 중앙정보부로부터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여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⁷⁶⁾.

특히 5.16이후 중앙정보부 창설 뒤 1962년 5월 법무부직제 개정(각령 제770호)에 의하여 검찰국 정보과가 폐지되면서 소속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폐지되었다.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관련 정보와 수사에 관한 한 검찰은 오히려 중앙정보부의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게 된 것이다⁷⁷⁾.

유신 이후 독재권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공안수요는 현격하게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의 공안기능도 함께 강화되어갔다.

검찰청 사무기구 개편 가운데 공안기능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⁸⁾.

아래 <표>를 보면, 대검찰청에 ‘공안부’가 신설된 1973년 이후 검찰의 공안기능은 특히 5

76)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앞의 책 536~539쪽 참조. 해방이후에는 군정보·수사기관이 수사기관의 핵심을 이뤘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헌병 및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관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정도로 군의 정보 수사기구들이 민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려 들었다. 특히 전쟁시기인 1950년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설치로 사실상 군수사기관의 지휘하에 경찰, 검찰이 들어가 있었다. 이외에도 권력의 변천기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 논의가 일어나 검찰의 수사권을 위협하였으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사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중정의 창설로 검찰은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77) 박원순, 앞의 책, 538쪽.

7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연혁법령)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박원순, 앞의 책, 539쪽 참조 재구성

공 시절 극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4년 공안 제1과 및 2과가 신설되었고, 1986년 10월 접어들면서 공안 제3과와 4과가 신설된 것이다.

이때 공안부는 그 동안 공안·선거 및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지니는데서 더 나아가 학원관련 사건(공안3과)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추게 되었다.

<표> 검찰청 사무기구 개편내용

개편일시	개편근거	개편내용
1973.1.25	대통령령 제6472호	◦ 대검찰청 공안부 신설- 공안·강력 및 선거 사건 지휘감독
1975.7.16.	대통령령 제7698호	◦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1980.5.31	대통령령 제9895호	◦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노동사건 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1981.4.24.	대통령령 제10296호	◦ 대검공안부에 공안자료과를 신설 ◦ 부산지검 특별수사 제1부를 공안부로 개편, 그 밑에 공안사무과를 신설
1984.6.30.	대통령령 제11457호	◦ 대검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공안자료과를 공안제2과로 개편
1986.4.30.	대통령령 제11880호	◦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 제1, 2부로 하고 공안제1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1986.10.11.	대통령령 제1190호	◦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3, 4과 및 공안기획담당관 신설 ◦ 대검공안부(공안제3과) 분장사무로 학원관련 사건 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사항 추가 ◦ 서울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하고 공안제2부에 공안제2과를 신설 ◦ 부산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과로 하고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검 및 서울지검 동부, 남부, 북부지청 특별수사부에 공안부를 각각 신설
1998.2.28	대통령령 제15712호	◦ 대검 공안부의 공안4과 삭제

하지만 이 시기는 검찰의 공안적 기능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경찰(치안본부 등), 안기부 등의 공안기능까지 모두 강화된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신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5공 초기에는 보안사가, 그리고 5, 6공시절에는 안기부가 핵심적인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5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였고,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주도권 역시 안기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독재정권을 떠받치는 중요한 한 축이었던 검찰의 공안기능은 이처럼 정권의 성격에 따라

공안기능의 중점도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등 특별 정보수사기구들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공안기능의 중점은 검찰보다는 경찰, 경찰보다는 특수공안기관인 정보경찰로 집중되었고 검찰은 그러한 권력 핵심기구들의 '시녀'로 전락하기도 했다.

2) 공안기능에서의 검찰의 주도권 확보

공안적 기능에서 검찰의 주도권이 확보된 시기는 문민정부 출범이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5공, 6공 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사실상 형해화 되고,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가 주도했던 '공안'부분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맡게된 것이다. 1996년 9월 발족한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 1997년 5월 이를 더욱 확대시킨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의 개편 과정에서 그 시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여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를 보이게 된다.

3) 김대중 정부의 '신공안'

한편 김대중 정부는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춘 '신(新)공안' 개념을 제시했다. 즉, 기존의 '공안' 개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인권보장의 조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신공안의 핵심개념으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씨는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2월 28일, 공안 4과를 폐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신공안'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으며 검찰의 공안적 기능은 지금까지 커다란 변화없이 존속되고 있다⁷⁹⁾.

79)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2.24 대통령령 제17917호] **제8조 (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공안제2과 및 공안제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1. 대공사건, 남북교류관련 사건, 사회단체·종교단체 및 정치단체관련 공안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1. 선거사건, 학원·교육단체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공안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김대중 정권에서의 검찰은 기존의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를, 1998년 들어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변경하여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검거작전을 주도해 나갔으며, 1999년 들어서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제77호)으로 법제화한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시켰다.

결국 수사권 뿐 아니라 독점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은 정책조정 기능까지 갖게 되었고, 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안'의 잣대에 의한 강경한 대처를 초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수사 및 지휘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모든 범죄에 대해 독자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은 항상 문제시 되어 왔는데, 그것은 유일한 범죄 수사·소추기관이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의도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행사하게 될 경우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검찰,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을 비롯한 공안, 학원, 노동 등 관련사건을 담당하는 공안검찰은 '정치검찰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당시 "공안검사직은 가장 각광받던 자리였으며, 검찰내의 고위간부로 승진하는 지름길"⁸⁰⁾로 여겨졌다. 공안검사들은 수시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정권유지에 앞장서 왔던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공안검찰은 경찰,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들이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 <의견서>를 그대로 공소사실로 수용하는 예가 다반사였다. 또한 수사기관 등에서 당한 고문, 불법조사 행위들을 호소하더라도 검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예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사실은,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에 대해서 검찰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무리한 수사를 막고 신중한 수사를 유도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형사사건 수사를 총 지휘·감독하는 검찰의 기능을 두고 볼 때, 국가보안법 사건에

1. 노동·외사 관련 사건 그 밖에 집단민원 등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삭제 <1998.2.28>

⑥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公安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8.31, 1996.3.11, 1998.2.28>

1.公安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公安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公安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公安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2.2.4> 6. 삭제 <2002.2.4> 7.公安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80) 한인섭,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0, 77~83쪽 참조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대검 산하에 담당부서인公安부를 따로 두고 있는 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과도한 적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신공안'을 주창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가보안법 신중적용, 인권존중 등은 그저 또 하나의 '선언'에 머물고 만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었다.

따라서 검찰을 개혁하려면 조직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공안' 기능을 형사부로 이관시키고公安부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

다.公安대책협의회

1)公安합동수사본부 구성과 문제점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을 언급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정부부처 담당자간의 관례적인 회합, 즉 관계기관대책회의,公安합동수사본부 등으로 일컬어지는 기구들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1999년 '公安대책협의회'로 법제화되기 전까지, 정부 조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실상 관례적으로 존재해왔으나,公安 부분에 있어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정권내부의 핵심적 권력기관으로 활약해 왔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 기구는 시기에 따라 그 주도권이 보안사에서 안기부, 그리고 검찰로 옮겨가는 차이점이 있었다.

'합동수사본부'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때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⁸¹⁾, 실제 권력 실세로 모습을 드러냈던 때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일 것이다. 박정희 정권을 지탱해온 중앙정보부의 부장 김재규가 10.26 사건을 일으키자 전두환은 즉각 보안사를 중심으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중앙정보부의 모든 기능을 흡수하여 자신이 그 본부장이 되었다⁸²⁾. 합수부는 5공 군사독재권력의 산실이 되었다. 그리고 5공

81) '합동수사본부'의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50년 5월 12일 서울지검에 구성된 검, 군, 경 합동수사본부이라고 한다. 서울지검 정보부 오제도 부장검사와 정희택, 선우종원, 이주영 검사들이 지휘하여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 사건 등을 수사했다고 하며, 이보다 더 앞선 것은 1949년 3월 중순경, 합동수사본부의 성격을 가진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서울지검 정보부의 장재갑, 오제도 검사등이 지휘, <국회프락치 사건>을 수사했다 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설치, 운영되었다. 법무부, 1989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자료.

82) 당시 전두환은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정보부의 "월권적 업무수행과 근무자세"를 시정하고 "국가안위의 고유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조직체로서 회귀"하겠다면서 정보부의 기구와 인원을 대폭 개편하였다. 이는 국군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성공시키킨 전두환이 한편으로는 보안사에 모든 정보수사 기능을 집중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던 중앙정보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 장악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효율화시키는데 정보부를 이용하고자 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작과 고문 등 인권유린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던 정보부를 마치 민주화하는 듯이 가장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한 것이다. : 민변, 위책,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53~54쪽

초기 보안사가 주축이 돼 공안세력을 주도하면서 안기부, 검찰, 치안본부 등 정보수사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정권초기 보안사 중심의 편제는 1985년 2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당의 출현, 그후 민주세력간의 본격적인 대치상태를 거치면서, 군 기관인 보안사가 민간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안기부로 권한이 점차 옮겨졌으며, 안기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권력의 핵심적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5공정권을 유지시키는 핵심적 권력기관으로 그 역할을 해왔는데, 부천서 성고문사건 처리과정,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처리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⁸³⁾. 이후 노태우 정권은 1989년 4월 3일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을 구성기관으로 하는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발족⁸⁴⁾시킨다. 공안합동수사본부는 형식적으로는 검찰기구를 중심으로 편제되었는데, 대검 공안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에 공안담당부장검사를 부장으로 하는 '지역공안합동수사부'를 설치했다. 또한 관련기관들의 정책협의를 위하여 '공안합동정책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대검 공안부장이 지휘하는 형식을 빌렸으나,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주도권은 실제적으로 안기부에게 쥐어져 있었으며 모든 사안을 안기부가 주도해 나갔다⁸⁵⁾. 또한 합수부는 5공시절의 '관계기관대책회의'와는 다르게 수사권을 행사⁸⁶⁾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당시 '공안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구가 탈법, 초법적 기구라는 지적이 높았다⁸⁷⁾. 합수부는 합수부의 설치근거⁸⁸⁾를 검찰청법에서, 그리고 정책협의회는 '기관간

83) 조영래,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체를 밝혀라”, 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모임,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창작과비평사, 1991

84) 이는 1989년 3월 노태우 정권이 '중간평가 무기 연가'를 발표한 직후, 대통령이 직접 긴급공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위해 상설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한 것과 3월 26일 전격적으로 알려진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4월 3일 전민련 등 민주단체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선언하면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85) 손중양, '공안합동수사본부의 실체', 월간 「말」 1989년 6월호. “검찰은 합수부장을 검찰이 맡고 있고 실제 수사도 검찰이 지휘 통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기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처리 방침이 결정된다.... 공안합수부는 안기부가 주도하던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내부기관을 공식화시킨 것이고, 법적근거도 없어 검찰기구체계에 무리하게 짜맞추려다 보니 형식적인 지휘체계와 실세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86) 공안합동수사본부는 1반~4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반 - 문목사 방북 환영대회 및 남북교류제의 관련 18개 단체수사(검찰, 경찰, 안기부), 2반 - 좌경이념출판물 일제단속(검찰, 경찰), 3반 - 북한동조 재야 핵심단체 이념분석(검찰, 경찰), 4반 - 재야교사단체 및 교육단체수사(검찰, 경찰, 노동부, 문교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2호, 1989.5.28.

8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제2호, 1989.5.28. 4~6쪽 참조

88) 합수부의 설치의 법적근거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와 검찰청법 제4조

업무협조 규정'(1984.3.16. 대통령령 제11385)의 제5조(업무협조의 방법) 3호 “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업무협조”에서 구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근본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즉, 행정기관의 구성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구성 이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합수부는 그에 합치하지 아니한 탈법, 초법적 기구라는 것이었다. 합수부는 발족이후 총 433명을 사법처리하는 등公安정국 조성을 통한 정권유지에 중심 역할을 했다.

<표> 합동수사본부 변천과정(비고안의 자료는 1997법사위자료)

분류	설립 시기	주도 세력	본부장	구성기관	부설기구	비 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10.26 직후	보안사	보안사령관	보안사 중앙정보부 검찰 치안본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5공시절	안기부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		
공안 합동수사본부	1989년 3월20일	안기부	대검 공안부장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문교부 노동부	공안합동정책 협의회	
한총련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1996년 9월2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각지검에 지역합수부 설치, 실무협의회	97년4월까지 총12회 개최,한총련 370명 구속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1997년 5월7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97년8월31일 까지 한총련 관련 795명 구속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1998년 3월18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공안대책협의회	1999년 3월12일 ~현재	검찰	대검 공안부장		중앙기구,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	법제화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진 검사의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근거하고 있음. 특히 공안합동수사본부 내에 설치된 정책협의회는 ‘기관간 업무협조 규정(대통령령 제11385호) 제2조 동제5조에 근거하고 있음.’ 법무부, 1989년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자료.

2) 문민정부의 ‘한총련 합동수사본부’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한총련 합수부’ 구성과 함께 그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한총련 합수부의 자기확대과정을 통해 검찰은 공안 문제에 관한 한 주도적인 위치가 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6년 9월 2일,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대검공안부(진형구 공안부장)는 “한총련의 친북 이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인물 및 그 배후세력 척결에 가용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을 내세우며 검찰, 안기부, 교육부, 기무사 등 관계기관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한총련 좌익합수부’를 발족시켰다⁸⁹⁾. 이는 명백히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합수부가 구성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한총련 합수부는 “황장엽 망명사건을 계기로 고정간첩을 포함, 각계에 침투한 좌익세력 전반에 대해 수사”할 목적으로 1997년 5월 7일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확대개편⁹⁰⁾ 되었다. 여기에는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관계자들도 참여시켰다. 특히 합수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대대적인 검거작전⁹¹⁾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6년, 199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89) 1996년 9월 2일 대검찰청은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등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공식발족시켰다.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에 ‘지역합동수사본부’를, 40개 지청에는 ‘합동수사반’을 두어 운영하게되는 합동수사본부는 주요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결정 및 정보교환업무 협조 등을 위하여 안기부, 경찰, 기무사, 교육부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합동수사부에는 실무대책협의회를 두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한총련의 친북이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인물 및 그 배후세력 척결에 가용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 1996년 국감자료, 내무위

90) 1997년 4월 24일,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황장엽씨 망명을 계기로 고정간첩을 포함, 각계에 침투한 좌익세력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기존의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황씨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 내 좌익세력의 신원이 밝혀질 경우 즉각 수사에 나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관계자들도 참여시켜 북한 침투공작 연계 혐의자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고정간첩을 색출하고 재야, 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한 좌익조직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91) 한편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6월 10일 안기부, 경찰, 교육부 등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출범한 제5기 한총련 산하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중앙조직 전체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규정해 관련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관계자는 “한총련 소속 총학생회별로 오는 7월말까지 자진탈퇴를 종용하고 계속 남고자 하는 대학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한총련의 친북이적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 지도부 구성원들을 전원 이적단체 가입·구성 등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김대중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법제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1998년 좌익합수부는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로 확대 변경되어 한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검거활동을 펼쳤으며 한총련출범식, 대의원대회 등 한총련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 자체에 원천봉쇄 방침을 내렸다.

공안합수부는 1999년 3월 2일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되는데,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77호)으로 법제화⁹²⁾한다. 법제화 한 이면에는 국가정보원, 경찰 등 공안기관과 노동부 등 정부 유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로 탈바꿈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탈법, 초법적 기구라는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이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주로 '민주노총의 파업에 엄중대처', '한총련의 조직재건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공안정책을 주도했다. 공안대책협의를 거친 노동정책은 강공 일변도로 치닫게 되었으며 노동계의 저항을 불러왔다. 그런 과정에서 1999년 6월 8일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⁹³⁾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간 검찰이 '노사문제'까지 '공안'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노사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대검 공안부는 '불법, 폭력시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진형구 사건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공안대책협의를 재활성화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현재 공안대책협의회는 법률적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1996년 이른바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한총련 합수부'가 설치된 이래 합수부는 점차 그 조직이 확장되어 가면서 결국 '법제화'에 이르게 된다. 특히 노동,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학원 등이 공안합수부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자율적인 노사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안적'으로 다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한총련을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 수백명의 학생을 사법처리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특히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정책조정 기능까지 갖는다는 것은 모든 시국문제에 대해 '공안'의 잣대에 의한 경직되고 강경한 대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현재 법제화 되어 있는 공안대책협의회는 이런 의미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공안'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의 내용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공안정책역시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92) 대검공안부는 대통령 훈령 77호에 근거한 「공안대책협의회」는 “주요 공안정책에 대해 유관기관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공안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안대책협의회는 의장인 대검 공안부장이 매달 1회씩 소집하고 있으며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노동부 등 13개 정부부처와 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다. 1999년 국감자료 <법제사법위>

93) <한겨레신문>, 1999.6.8. “지난해 한국조폐공사 파업은 검찰이 유도한 것”

5. 공안관련 연구소

가.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사건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근거(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이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 검찰, 국정원, 군기무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문건 감정 및 분석 의뢰를 받은 표현물에 대해 좌익성, 친북용공성향, 용공성, 반정부적 성향, 문제없음 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린다⁹⁴⁾.

즉, 사회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한다고 보면서 ‘좌익성’을 지닌 표현물이 라는 감정을 내린다.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수용, 용인,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용 주장과 같은 맥락”이어서 “친북, 용공성향”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내리고 있다. “용공성향의 문건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증거제시가 미흡할 때는 ‘반정부적 성향’의 문건”으로 감정을 내리기도 한다. 더러 문제없음 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용공성, 좌익성, 친북 용공성향, 반정부적 성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감정이 어떠한 근거나 기준⁹⁵⁾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경·검찰은 이적표현물임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써 이 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제

94)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 2조 : **공안문제**라 함은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의 저해와 관련된 사상, 조직, 이론 및 그 대책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2. **‘감정’**이라 함은 연구관 및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응용, 분석, 판단한 소견을 말한다. 3. **‘감정문건’**이라 함은 공산주의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의뢰된 문서, 출판물 및 증거물을 말한다.

95) 경찰승시대비 수험도서인 「보안·외사 기본해설서」(2003)는 감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좌익 :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등에 공산주의 사상, 이념, 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며 현 체제(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투쟁(계급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범주의 문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② 용공 : 북한노선 또는 공산주의 사상, 이념, 이론 및 전략, 전술상의 주장들을 수용 또는 용인하는 그것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실천적 투쟁방법 및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내용의 범주에 속하는 문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③ 반정부 : 북한 노선 또는 공산주의 사상, 이념, 이론 등과 맥락을 같이 하지는 않으나, 현정권에 대한 단순타도, 퇴진주장 및 정책에 대한 왜곡, 비방을 하고있는 범주의 문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④ 문제없음 : 상기의 개념범주에 속하지 않는 내용의 문건으로서 NL 주사, PDR, NDR의 문건이나 단순행사 일정을 표시하는 문건, 단순 학술관련의 북한원전, 공산주의 사상을 객관적으로 비교 접근한 내용의 문건들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표현물”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가치, 입장에 다르게 이해, 판단할 수 있는 점, 또한 표현물은 한 단락의 문장으로서가 아닌, 전체 맥락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위의 감정기준이 어떠한 실효성과 공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출한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공안문제연구소 연혁

공안문제연구소는 1988년 10월 20일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치안본부 시절에는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내외정책연구소⁹⁶⁾를 두었다. 이 연구소는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된 이후 서울경찰청 산하에는 보안문제연구소⁹⁶⁾가 신설되었다. 보안문제연구소는 1995.12.7.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으로 공안문제연구소에 통합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2)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 및 체계

공안문제연구소는 △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논리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의 제시, △ 국내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공안관련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개발 및 자문 △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운영규칙 제3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된 기능은 바로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이다.

<표>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⁹⁷⁾

주요기능	구분
▶ 좌익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 개발	10%
▶ 국내외 좌익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10%
▶ 좌익관련 대안개발,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10%
▶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60%
▶ 기타 유관 안보기관 이념계도 지원(강의)	10%

연구소는 위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및 연구분석과⁹⁸⁾를 두고 있다. 또한 소장(별정 2급)을 비롯한 연구부 소속 연구원 16명, 행정직을 전담하는 경찰직원

96) 보안문제연구소의 지시감독과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보안부의 보안1과가 ‘보안문제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직원들의 소속은 서울시 전문직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서울시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안문제연구소 집중공략-내무위국감”, 「한겨레신문」, 1994년 10월 4일치 기사

97) 대우경제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공동, 「중앙행정기관경영진단」, 1999.

<http://university.seoul.go.kr/down/T021/End.hwp>

98) 연구1부는 1. 북한대남전략전술 분석 및 대공이론의 개발 2. 민중민주주의 혁명전술의 변화분석 및 대책연구 3. 공안관련 문서 및 출판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2부는 1. 공산주의 사상이론 분석 및 대응이론의 개발 2. 국제 공산주의 관련문제 연구 및 해외 반국가단체 연구 3. 공안관련 문서 및 출판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분석과는 1. 경찰관 및 대국민 안보교육 2. 유인물 및 도서 이적성 분석 3. 공안관련 문서 및 출판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경찰대학사무분장규칙 제3장 제15조 공안문제연구소)

4명, 기능직 5명 등 모두 25명의 직원으로 구성⁹⁹⁾되어 있다.

<표> 공안문제연구소 정·현원 현황

구분	계	별정직						경찰직					기능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25	16	1	2	8	3	2	4	1	1	1	1	5
현원	22	14	1	1	8	2	2	4	1	1	1	1	4
대비	-3	-2		-1		-1							-1

그런데 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감정실적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감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아래의 <표>¹⁰⁰⁾ 감정실적을 보면 가령 1998년 한해동안 공안문제 연구소의 감정실적은 6,540건에 이른다. 14명의 연구원이 한해동안(365일) 평균 467건여의 감정을 한 것이고, 결국 연구원 한사람이 평균 2일에 3건 정도의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8개월 동안만 해도 7,557건의 감정을 했는데, 이는 연구원 1인당 539.8건을 감정한 것이고, 1일 평균 2.2건 이상의 감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듯 감정건수의 폭주는 감정의 전문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실적

구 분	계	도 서	간행물	유인물	기 타
계	14,097	752	3,524	9,780	41
'98	6,540	568	1,012	4,934	26
'99.8.31 현재	7,557	184	2,512	4,846	15

3) 공안문제연구소의 주요 감정 사례분석

가) <이적표현물> 감정 사례

① “좌익성”의 유인물

‘좌익성’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감정결과서>를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 반자본, 반독점 투쟁 등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경우, 공안문제연구소는 이에 대해 일

99) 1999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자료

100) 1999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참조, 이에 대한 감정결과 1998. 1 ~1999. 8.31까지 14,097건을 감정, 그 중 9,723건을 수사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괄적으로 “좌익성향”이 있는 표현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예는 지난 2002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유인물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지윤(성공회대)씨가 작성했던 최후진술문에 대한 연구소의 감정결과이다.

예시 1 : 좌익성의 유인물

표현물	감정결과
“저는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봉건제가 그랬듯이 자본주의도 영원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추장스럽고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더 발전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전지윤씨 최후진술문>	“현 자본주의 체제를 전쟁과 불평등 및 대량실업을 낳는 체제라 비방하며 자본주의 타파와 더욱 발전된 체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고무선전하는 것.... 좌익성 이 있다”(2002.4.3.공안문제연구소)

또한 함철호씨는 대경연합 강령과 대구경북 민중연대 수련회 자료집이 문제가 되었는데, 공안문제연구소는 <2001 상반기 대구경북민중연대 수련회> 자료집에 대해 ‘좌익성’ 범주로 분류한 감정결과(2002 2. 28.)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이 자료집은 2001년 9월 열린 대구경북 민중연대 수련회에 배포된 자료집으로 수련회 일정표,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정세전망 및 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 등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주의 쟁취 투쟁, 부시 방한 반대, MD반대 투쟁등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등의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료집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계급투쟁론과 노동계급의 경제, 정치투쟁론, 그리고 북한의 민족대단결론과 대남 통일투쟁노선을 선전선동하고, 결국 한국의 체제와 정부 및 정권을 부정하는 총체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바, ‘좌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에 따라 경, 검찰은 위 자료집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 구속기소하였다.

② “용공성”의 유인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 용공성이 있다고 감정한 표현물을 살펴보면,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적 계급투쟁을 수용, 동조”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포괄적으로 “용공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학내에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재하기 위해 만든 문안인데, 연구소는 이에 대해서 “용공성”의 문건으로 판단했다.

예시 : 용공성향의 문건 1 - 대자보 문안

표현물	감정결과
“노동자 민중은 ‘고통분담’도,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무능한 선장(김대중)은 선원(노동자민중)의 30%를 바다에 빠뜨려야 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가 파산하게 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재벌, 관료)들 때문이다”, “이 배의 통제권을 빼앗아 이 배를 선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이 배는 파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문안, 전지윤씨 사건 유인물>	“현정부의 경제정책, 구체적으로는 고통분담 논의와 구조조정 정책을 부정하는 한편,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현 체제의 통제권을 빼앗고 노동자 민중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을 비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용공성 문건으로 판단됨”(2002.2.4. 공안문제연구소)

아래는 2002년 이적단체로 기소된 한청사건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의 증거로 제출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 가운데 일부이다.

예시 : 용공성향의 문건 2 - 한청 사업방향

표현물	감정결과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획기적인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힘있게 조직한다(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한청 1기 사업방향 수정(안), 한청(준) 창립준비 소위, 한청 PC통신 게시판(2001.2.8.)>	“김정일의 답방 환영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u>용공성향</u> 으로 판단됨” 2002.2.26. 공안문제연구소

이러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용공성”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경, 검은 위 표현물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이적표현물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③ 친북용공 성향의 유인물

대체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이 담겨 있는 표현물이 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예컨대 한청 회의록 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선동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친북 용공성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의 중심구호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설정하고 이를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 주장과 일치한다¹⁰¹⁾”고

101) 앞문서는 한청 제2기2차 중앙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감정서, 공안문제연구소, 2002.9.9. 뒤

적시했다.

아래의 예는 이적표현물로 기소된 대경연합의 강령규약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 감정결과인데, “우리나라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식 민중사관’이라는 규정도 애매하지만, 역사분석방법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극히 공안적 잣대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성을 부여하기 어렵다¹⁰²⁾.

예시 : 친북용공 유인물- 대구경북연합 강령 전문

표현물	감정결과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백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을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조국해방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강인하게 분출되었고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행렬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월 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의 피약별 아래 약동했던 전국적 민주화대투쟁으로 우리 역사는 대중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왔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민중의 영웅적 신화는 재현되었다.”<대구경북연합 강령 전문>	“주사파 주동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대구경북지역조직의 강령규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전통 계승운운하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반체제 연북 통일 투쟁을 결의 선동하는 친북용공 유인물 (2000. 1 .13 공안문제연구소)”

④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

공안문제연구소는 유인물에 “공산주의 사상, 이론 등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 등 이념적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으나 정부시책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유인물에 대해서는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이라고 분석하였다.

예시 :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 -<다함께> 반전 특별호

문서는 한청 제2기5차 중앙상임위원회회의록에 대한 감정서, 2002.9.9. 이러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6.15 공동선언 이후 김정일 담방을 요구했던 정부당국의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며,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입장 역시 ‘용공성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의 요구마저 북한의 대남선동 주장으로 매도한 점은 공안문제연구소의 자의적 감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102) 위 강령의 전문에서는 우리 역사의 전통성을 3.1운동, 4월혁명, 광주항쟁, 6월민주화 대항쟁에서 찾고 있는 바, 이러한 분석을 어떠한 근거로 “북한식” 사관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표현물	감정결과
“미국은 이번 탄저병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의 최대 위협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워싱턴 타임지에 기고된 한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만이 무기 생산용 분말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다함께> 반전 특별2호 “부시는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	“미국내 탄저병 발생을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 ; 이 유인물은 “이념적 측면에서 주장은 없으나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 로 판단됨”<2001.10.26. 공안문제연구소)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용공성, 좌익성, 친북 용공성향, 반정부적 성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할 뿐 더러, ‘감정’의 기준이 공안적인 냉전논리에 근거하고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표현물 전체의 맥락보다는 몇몇 문장을 문제 삼아 감정의 결과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감정결과에 따라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나) 이적단체 감정 사례 - 한청, 진보의련 사건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주로 이적표현물 사건에 적용되어 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02년 9월 발생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사건에서 공안문제연구소는 이 단체가 “북한의 노선을 고무 찬양 동조 선전하는 이적성을 표출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국가보안법상 제7조 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즉, 한청이 자주, 민주, 통일이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자고 주장한 것은 결국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것이고, 이는 민족해방계열 친북 좌익 청년운동단체라고 판단¹⁰³⁾한 것이다.

이 감정에 따르면,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된 사회’를 ‘북한사회주의 건설’과 동일시 하기도 하였고,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펴는 것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감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인데, 이 “판단”에 따라 한청은 검찰에 의해 이적단체로 기소된 것이다.

103) 공안문제연구소는 한청의 강령, 규약 등 문건을 분석하여 “한청은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를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로, 현정권을 반민중 사대매국정권 등으로 매도하고, 둘째 한국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동 조직의 정치노선으로 북한의 대남 투쟁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채택하고,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파쇼민주화 투쟁, 연방제 통일 등 조국통일투쟁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하며, 셋째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된 사회(즉 북한사회주의 건설)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로서 “이러한 주장은 한청이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행하는 단체라는 것을 자임하는 것인바, 민족해방계열 친북좌익 청년운동단체”라고 판단하였다. : <한청 이적성 검토의견>, 공안문제연구소, 2002.3.

또한 2003년 항소심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난 '진보와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 사건의 경우에도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1항, 3항(이적단체),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적단체라는 감정을 내렸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진보의련의 회칙 전문과 제2조¹⁰⁴⁾를 ‘감정한 결과’, “좌파 보건의료 운동을 대표하는 진보의련은 국가 사회안 전망 중 주요기능인 보건의료부분의 좌파조직인바, 진보의련을 사법처리해야만이 보건의료부분의 좌경 오염화와 의료운동 부분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세한 의견과 함께 이 단체가 “체제부정성 및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는 맑스레닌계열(PDR파)의 좌익의료운동 단체”로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라고 감정¹⁰⁵⁾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검찰이 이 단체를 이적단체로 기소하는데 주요 증거가 되었고, 또한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하는데 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¹⁰⁶⁾되었다.

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문제점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안문제연구소는 어떠한 주장이든지 공안의 잣대로 논리 비약시키며, 단순 도식화 하여 감정을 내리고 있다¹⁰⁷⁾.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어떠한 비판

104) 진보의련 회칙 전문 : 진보의련의 근본적 임무는 보건의료부문에서의 상품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장애를 제거하여 보건의료를 사회화하는데 있다...진보의련은 노동자 민중이 필요한 만큼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이다... 진보의련 회칙 2조(목적) 1.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한 보건의료대중운동을 전개한다. 2.한국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지향한다. <참여와 자치의 2001년 진보의련 정기총회 자료집>

105) 공안문제연구소는 이 단체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1. 진보의련의 회칙, 2001년 사업기조, 조직노선 및 각종 진보의련의 발행문건의 주장과 활동행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현 자본주의체제와 현정권을 부정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체제부정성 표방) 둘째, 현 한국 사회구조의 해결대안으로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있으며(계급폭력성) 셋째, 동단체의 지향목표로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이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음. (사회주의 건설 표방) 2. 결국 진보의련은 이른바 ‘보건의료운동’을 전개한다는 미명하에 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 고무하는 맑스레닌계열(PDR파)의 좌익 의료운동단체라고 판단됨. 3. 따라서 진보의련은 동 단체의 회칙, 사업기조, 조직노선 및 기타 발간물과 활동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 국가변란의 이적성을 밝히고 있는바 국가보안법 제7조1항, 3항, 5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2001.9.25. 공안문제연구소”

106) 서울지법형사21부 재판장 황찬현 판사, 2002고합94, 2003.6.4.선고

107)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살펴볼 때 유의할 점은 그 시각 자체가 논리비약, 단순도식화의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여 자의적인 감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열린주장과 대안>(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2000년 5월)에 대해서 “(이 문건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사회를 계급모순의 차원에서 지배자 중심의 정치체제로 규정하면서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의 투쟁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승우씨 사건, 공안문제연구소, 2000.5.31.)는 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계투 변혁투쟁에 의한 타도”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투쟁의 이념’, ‘변혁투쟁에 의한

도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을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체제변혁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용공으로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감정을 시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권위 등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공안문제연구소 운영규칙(제16조)¹⁰⁸⁾에도 “감정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과정이 필요할진대,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오히려 연구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감정의 주요 잣대가 되어야 할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공안’이라는 전문성만 보일 따름이다. 이렇듯 공안문제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 자의적 적용에 일조해 왔다. 또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는 검찰이 그 사건을 이적표현물로 기소하는데 큰 증거가 되었고, 법원에 의해 주요증거로 채택되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한 전문적인 법학자, 교수들의 증언(감정)을 모두 배척¹⁰⁹⁾하고,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만을 주요한 증거로 채택¹¹⁰⁾, 이적표현물로 유죄판결하고 있다. 이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서가 지닌 불공정성, 주관성 등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는 꼴이며, 연구소의 존립근거를 강화시켜 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을 개발”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주임무는 ‘공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른 상대적 가변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 공개적인 검증 및 토론

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무슨 근거로 그러한 감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며, 이는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활동마저 왜곡하여 ‘용공시’ 한 것으로 ‘공안적 논리’에 의한 자의적 감정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108) “감정은 연구관 및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109)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1991년) 재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장 김영학, 전 내외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홍지영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 이 사건 관련 논문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변호인측 신청의 증인 즉, 안병직, 김수행, 최명, 김세균, 이인호 서울대 교수들은 감정서나 증언으로 위 글들이 모두 학문적 성과이며 북한의 주장과 다름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학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위 관변증인들의 증언을 채택,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적목적성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성립되고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면 이적성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110)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된 감정서를 유죄 또는 무죄의 심증형성에 어느정도 작용하는가는 전적으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상황 또한 기존의 냉전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公安문제연구소가 기존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 ‘公安’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公安관련 연구소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나.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 연구소

민주이념연구소는 “북한의 대남도발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적표현물 분석업무를 체계화, 전문화함으로써 국내좌익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는 등 검찰의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건전한 우익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대검찰청 산하에 1997년 1월 10일, 설치¹¹¹⁾되었다. (대검 훈령 97. 1. 10. 제75호) 민주이념연구소는 대검찰청 公安부장이 소장을 맡고, 대검찰청 公安기획관이 부소장을 겸임하게 된다. 또한 자문 및 연구를 담당할 기구로 자문위원과 상임 및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구성¹¹²⁾한다. 민주이념연구소는 소관사무로 1.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체계적 연구, 2. 대공사범의 동향 및 대처방안 연구, 3. 통일정국에 대비한 公安정국 대비태세 연구, 4. 公安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5. 대국민홍보, 안보의식 고양, 6. 公安수사요원 교육, 7.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이념연구소는 설치된 이래 문건, 도서, 신문광고, 비디오테이프, 노래가사 등을 분석해 이적성이 인정¹¹³⁾된 건에 대해서는 산하 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하게 하거나 안기부 등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111) 이 연구소가 설치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1996.8. 연세대에서 개최된 한총련의 8.15민족대축전 사건, 강릉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 대검찰청은 “8.15친북난동사태 당시 부각된 좌익세력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강릉 무장간첩 침투 사건 등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도발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公安관련 수사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公安관련 사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통일에 대비한 公安기관의 대비태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에서 민주이념 연구소를 설치한다고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112) 자문위원은 연구소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국가안보, 통일문제, 이념문제 등에 조예가 깊은 각계의 전문가 20명 정도를 검찰총장이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위원은 이적표현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대검찰청 公安담당 검찰연구관은 상임연구위원이 되고 현직 법조인과 변호사 중에서 20명 정도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민주이념연구소 운영규칙 대검훈령 제75호, 1997.1.10.

113) 민주이념연구소 설치이래 “이적표현물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64건 분석(이적성 인정:79건, 이적성 부정:64건, 분석불요등:21건), 1998년: 318건(인정:26건, 부정:8건, 불요등:284건), 1999년: 436건(인정:36건, 부정:15건, 불요등:385건), 2000년: 2건 (인정:2건), 2001년: 108건(인정:2건, 부정:9건, 분석불요등:97건), 2002년:17건(인정:7건, 부정:10건)으로 나타났다. 2002년 국감 법제사법위 제출자료

6. 사법부(법원)

가. 국가보안법과 사법부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불린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하여 사법부는 인권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발생한 인권유린 사건은 안기부를 위시한 특수수사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자행된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법률의 해석, 적용을 담당하는 법원의 법해석에 의하여 철저히 뒷받침 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조항의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성격에서 출발하였을 터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는 곧 바로 정치권력에 대한 법관의 사법관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온 군사독재정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위협¹¹⁴⁾해 왔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 반공법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지방으로 전출하는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¹¹⁵⁾, 제재를 주기도 하였다¹¹⁶⁾.

114) 제5공화국에서는 “아예 기관원들이 법원에 상주하면서 시국사범에 대한 유죄선고와 형량을 강요하는 상황”(동아일보 1988.6.20. 기사) 이었다고 하며, 이와 유사한 지적으로 “독재세력의 핵심적 권력유지기구인 국가안전기획부나 국군보안사령부의 요원들은 법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법관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민변·기독교인권위, 「한국인권의실상-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역비사, 1992, 46쪽 참조

115) 그 예로 1985년 8월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 공안사건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명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장흥지원장으로 강등발령되어 1주일만에 사표를 냈으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 11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인천지법의 박시환 부장판사가 부임 3개월여 만에 강원도 영월지원으로 좌천되었으며, 집회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돌린 전국기독교농민총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즉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법의 조수현 판사도 충남 강경지원으로 발령이 났다. 또한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서태영 판사가 이같은 변칙인사의 부당성을 법률신문에 기고했다가 부임 하루만에 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되어 ‘인사파동’을 빚어낸 사건을 들 수 있다. 「동아일보」, 1986.9.3.자 ; 이병량,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6.2. 223~224쪽

116) 1971년 발생한 사법파동은 바로 사법부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영장기각에 따른 보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사건은 1971년 7월 28일, 서울지검이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항소3부는 1971년 1월부터 7월까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9건의 재판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반공법 위반사건 5건에 대해서도 무죄 또는 일부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범렬 부장판사,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관 등 3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반공법 위반 항소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담당 변호사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탄압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영장이 다시 신청된 7월 29일, 서울형사지법 판사 39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의 판사들은 7월 30일, 검찰의 사법권 침해사태 7개항을 성명으로 공포하였다. 그 내용 가운데 첫째 항목이 바로 “반공법·국가보안법 위

따라서 삼권분립을 통한 사법부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시절에 국가보안법 관련 법원의 판결문은 공소사실의 특정여부조차 의문시되는 공소장과 오자 하나 틀리지 않게,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국가보안법 판결은 ‘자판기 판결’, ‘앵무새 판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 위법 수집한 증거 배제 원칙,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배제 원칙 등 사법원칙들을 견지하지 못했으며 과거 안기부, 보안사 등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비밀수사기구들의 불법적인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피의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혐의사실을 그대로 판결로 수용했다. 특히 유죄를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자행된 불법 구금, 고문 등으로 이뤄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인정¹¹⁷⁾하여 유죄판결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문사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¹¹⁸⁾.

반사건의 영장발부에서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과 견해를 달리한 법관을 용공분자로 단정,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을 들었다. 법관구속영장과동 사건으로 불리는 71년 사법과동은 1개월 만에 마무리 되기는 했으나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건이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던 시대를 역설해준다 할 것이다. 이병량, 위 논문, 1996.

117) 이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가안전기획부 폐지에 관한 의견서>, 61~62쪽 참조. “법원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고문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 고문, 폭행, 협박, 장기의 구속 등의 사정이 있었으면 일단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유죄의 증거로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은 헌법이나(형사소송) 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이례에 속하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대법원 1983년 3월 8일 선고, 82도3248판결)고 하여 임의성이 없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며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3년 6월 14일 선고, 83도647판결)”고 한다. 나아가서는 사법경찰관 즉 경찰이나 안기부에서의 수사과정에 고문 또는 구속의 장기화 등의 사정 때문에 임의성 없이 자백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자백을 검사 앞에서 한번 더 되풀이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함으로써(대법원 1983년 11월 8일, 선고, 83도2436판결) 결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불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들은 사문화되어 버리고 안기부 따위의 수사기관은 어떤 폭행과 고문을 해서라도 일단 허위자백을 받아놓으면 그 자백에 의해 자동적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118) 대표적인 예로 1985년 9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 이근안으로부터 물고문 등을 받았던 김근태(민청련 초대의장)씨가 밭과 밭뒤꿈치에 남은 고문 상처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사건의 조작을 제대로 밝히고, 인권유린에 제동을 가하는 기능보다는 정치권력과 수사기관의 주문에 따라 판결을 해온 권력순응적 기능을 가져왔다¹¹⁹⁾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렇듯 악법에 대한 순응적인 태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시국사건 재판에서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을 잃고 있었던 점은 곧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주원인이 되기도 했다¹²⁰⁾.

1990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사법부 역시 과거처럼 “어쩔 수 없이 강압에 못 이겨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는 상황에서 변화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세워진 헌법재판소는 1990년 들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다. 국가보안법 제7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며 실제로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하여 악용되어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헌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한정합헌’ 즉 “위헌이지만 합헌이다”¹²¹⁾라는 형용모순의 결정이기는 했으나 1948년 제정된 이래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법운용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의 소지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각급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국가보안법 해석은 관성적으로 되풀이되었고,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사법부의 현실은 독립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사법부가 아직 인권보호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나. 판결경향 : 높아지는 집행유예율 · 보석율, 낮아지는 실형율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 오·남용은 국가보안법 판결에서 실형율이 점차 낮아지고 집행유예율이 높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래 <표> 90년 이후 1심 실형율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3년 까지의 실형율은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20% 이하로 낮아졌다. 특히 1998년 국가보안법 1심 실형율 9%에 이어 1999년에는 3.5%라는 매우 낮은 실형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다른 형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보였던 국가보안법 실형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한 아래 <표> 집행유예율을 살펴보면, 50% 수준이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1994년, 95년에 68%를 웃돌다가 1998년 이후로는 70% 이상의 높은 집행유예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119)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540~541쪽

120)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국사범의 재판거부와 재판기피, 그리고 재판정에서의 당당한 소신발언, 구호 외치기, 노래부르기 등 ‘법정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에는 최후진술문과 항소이유서가 세인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21)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을 통해서 본 90년의 인권>, 「1990년 인권보고서」, 1991, 379~383쪽

다. 국가보안법 개폐의견에 따른 시대 추세의 변화를 감안한 전향적인 조치라 할만하다.

<표> 90년 이후 공안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율, 1심 실행율¹²²⁾

연도 구분	구속영장 신청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구속영장 기각율(%)	기소인원	실행인원	실행율(%)
1990	600	23	3.8	860	269	31.3
1991	637	18	2.8	902	356	39.5
1992	244	2	0.8	565	174	30.8
1993	247	3	1.21	243	97	39.9
1994	516	7	1.3	533	99	18.7
1995	381	24	6.2	361	76	21.0

<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실행율 등 현황¹²³⁾

구분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1~6)
구속인원		465	641	465	312	61
기소유예(비율)		18(3.9%)	25(3.9%)	17(3.7%)	23(7.4%)	
기소인원(비율)		438(94.2%)	616(96.1%)	446(95.9%)	287(92%)	56(91.8%)
재 판	실행(비율)	95(21.7%)	88(14.3%)	40(9%)	10(3.5%)	
	집행유예(비율)	325(74.2%)	494(80.2%)	356(79.8%)	231(80.5%)	30(53.6%)
	선고유예(비율)	14(3.2%)	16(2.6%)	6(1.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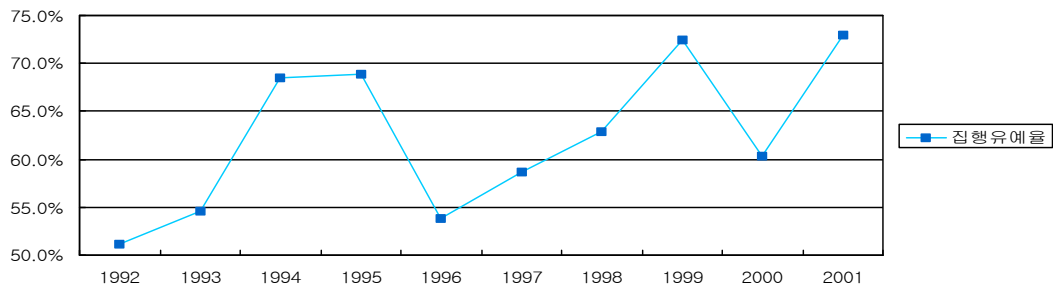
<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¹²⁴⁾

구분 연도별	자유형	집행유예	기타	계	집행유예율
1992	138	162	17	317	51.1%
1993	92	120	8	220	54.5%
1994	93	217	7	317	68.5%
1995	59	146	7	212	68.9%
1996	98	176	53	327	53.8%
1997	179	324	49	552	58.7%
1998	80	239	61	380	72.5%
1999	43	224	42	309	72.5%
2000	31	114	44	189	60.3%
2001	25	92	9	126	73%

122) 1996년도 대법원 국감자료

123) 법원 자료, 2000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

124) 법원 자료, 2001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



또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기소자 보석율도 199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던 2000년도의 보석율은 1999년의 11.9%보다 3%이상 증가했으며 2001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보석조치를 좀체로 볼 수 없었던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기소자 보석현황¹²⁵⁾

연도 \ 구분	구속 기소(명)	보 석(명)	보석율(%)
1997	611	53	8.7
1998	441	45	10.2
1999	286	34	11.9
2000	118	18	15.3
2001(~8말)	74	12	16.2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죄선고¹²⁶⁾를 내림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보다도 여전히 정치적 논리, 예단에 근거한 재판¹²⁷⁾이 앞섰고, 남북 관계의 급변, 냉전적 질서의

125) 2001년 국정감사 법사위 자료

126)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서는 1980년 이후 1996년 까지의 기간중 1982년에 2명, 1985년에 6명, 1990년과 1991년에 각 1명, 1993년과 1995년에 각 2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있었을 뿐이다. 위 기간중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사건 총 인원수 4,466명인 것을 고려하면 무죄 인원수 14건은 0.31%에 지나지 않는다. 최병모, “과거 10년간 인권상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민변, 1998.5.29

127)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이적단체 기소가 시작된 1997년.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할 판사들이 공안검사로부터 “한총련” 특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4일 서울지법 형사부 판사 20여명이 서울지법 회의실에서 서울지검 신건수 공안2부장을 초청, 한총련 관련 특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빚었다. 법원측의 요청에 따른 이 특강은 “학생운동의 변질과 실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강의 내용은 “한총련은 전문 좌익운동권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친북단체”라는 것이었다. 교육을 받은 판사들은 한총련 학생들의 재판을 맡게 될 사람들로 “판사는 사건에 대한

해체라는 세계적 흐름의 변화속에서도 여전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¹²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채 보수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특히 하급심 판결의 잣대가 되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사회갈등의 해결방안이 나오고 새로운 사회적 흐름도 만들 수 있다¹²⁹⁾.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해 왔다. 가령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¹³⁰⁾가 제시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이적성을 인정한다는 기준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경향과 관련해서 문제시된 판결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가보안법 반대 현수막¹³¹⁾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현재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예단을 갖지 않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되었으며, 사법부마저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한겨레신문」 1997년 6월 16일

128) 예컨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등식에 대해서도 전혀 변화된 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6.15이후에도 대법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성격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도2536 판결, 2002.2.8. 선고 2001도4836 판결, 2002.5.31. 선고 2002도1006 판결 등 참조)는 것이다.

129) “대법원이 창피하다”, <한겨레21> 467호, 2003.7.10.

130)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89헌가113 판결. 현재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대하여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 제한 해석을 하는 것이 헌법전문, 제4조, 제8조 4항, 제37조 2항에 합치된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정도가 못된다거나 해악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131)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001년 2월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미군부대인 춘천시 캠프페이지 앞 등 두 곳에 내걸기 위해 옥외광고물등표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03년 5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이 법이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2002년 서울고등법원(특별4부 재판장 이흥훈 부장판사)이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춘천시가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현실적으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 철폐 주장 자체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¹³²⁾”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98년 신학철의 모내기 그림 사건¹³³⁾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그림이 “적극적,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판결, 무죄선고를 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1998년 3월 13일 대법원¹³⁴⁾은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문제의 그림은 북한의 모습을 통일 저해 요소가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남한을 미·일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관자본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전 1심, 2심에서는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1992년 11월 12일, 1심 무죄판결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 판사는 92년 11월 12일 “헌법에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예술작품에 대한 실정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히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자주와 평화통일의 이상향을 그린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그림 <모내기>에 무죄를 선고했으며(89고단7174), 2심 재판부(재판장 김영기 판사, 선고 93노7620 판결) 역시 1994년 11월 16일, 무죄판결을 내렸

132)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허가·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6.10.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을 인용했다.

133) 1989년 8월 17일, 화가 신학철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87년 8월 제작하여 그해 8월 중순경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하여, 전시, 1988년 10월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한 바 있는 그림 <모내기>가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매관세력들을 썰레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삼으로 건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려서 북한을 찬양하고 폭력혁명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구국가보안법상 7조5항(이적표현물).

134) 대법원 형사3부(대법원 1998.3.13. 주심 지창권 대법관, 95도117판결)

던 것이다.

대법원은 <전국연합제3기정기대의원대회> 및 <제5차범민족대회>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씨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가능한 위험성'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국가보안법부분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¹³⁵⁾.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북한의 대남선전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정권에 이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 활동을 하는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¹³⁶⁾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1995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아비드후세인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인정한 귀중한 판결"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대법원은 2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표현물 내용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표현물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족하다"고 판결한 것이다¹³⁷⁾.

이외에도 대법원은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¹³⁸⁾ 및 이적단체로 판결되었던 가장 큰 근거가 되었던 "연방제 통일방안"을 강령에서 삭제한 제9기 및 제10기 한총련¹³⁹⁾에 대해서

135) 대법원, 1996.12.23. 95도1035 판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북한의 대남적화선전활동에 따른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평화협정의 체결, 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 폐지, 재벌해체, 주한미군 철수, 군비축소, 한미행정협정과 한미방위조약 등의 파기 등을 주장하고 ... 더 나아가 피고인 등이 추진하였던 '범민족대회'는 ... 북한공산집단에 의해 우리의 국론분열 및 내부교란책 또는 통일전선전술 등의 적화통일전략에 악용되어 왔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 판시와 같은 자료집을 제작, 반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자료집을 제작, 반포하게 된 동기 및 목적과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물의 내용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136) 또한 항소심 법원은 "표현물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 묵시적으로 나타나야 그 표현물의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있다며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펴는 것만으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이적목적에 대해서도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다는 인식 이외에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인식 내지 의욕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이창복씨에 대해서 이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1995.4.6. 선고 95노8판결

137)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 및 문제제기는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참조

138)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판결

도 여전히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또한 창작과 비평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방문기도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이적목적을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¹⁴⁰⁾.

특히 대법원은 여전히,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며 ‘미필적 인식’조차도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인식은 추정된다¹⁴¹⁾는 “이적성 추정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적목적의 입증책임이 국가(검찰)에 있음에도, 그러한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어떻게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개연성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유죄판결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1999년 국제인권규약(제19조) 위반결정¹⁴²⁾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판결태도에서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문

139)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제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제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다. “2002년의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종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제10기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14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599판결

141) 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도1624 판결;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도1035 판결.

142) 1998년 10월 20일 박태훈 사건, 1999년 2월 김근태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이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7조 판결이 국제인권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 이사회는 “박태훈씨에 대한 유죄선고가 인권규약 19조의 위반”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한국정부가 나라의 일반적인 상황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국가안보문제를 제기한 점을 주목”했으나 “박태훈에 의한 표현의 자유 행사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한국정부가 내세운 어떠한 주장도 박태훈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는 “박태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들을 세밀히 검토하였으나, 이들 판결문 및 한국정부의 주장 어느 것도 박태훈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9조 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함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박태훈에 대한 유죄판결은 규약 제19조에 따라 박태훈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표현인지 명확히 지적하고, 해당 표현을 허

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1999년 대전지법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위 견해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한상곤)¹⁴³⁾는 1999년 4월 1일, “한총련이 단지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로 보기에 어려우며, 국제법 존중의 입장에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제6기 한총련에 대한 검찰의 이적단체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국내 법원이 김근태씨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처사라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을 수용한 이 최초의 판결은 상급심¹⁴⁴⁾에서 유죄로 판결나고 말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진보적인 하급심 판결들을 뒤엎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한 적절한 제동을 하지 못한채 대부분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판결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점은 수사기관의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자의적 적용을 제어하지도, 검찰에게 입증의 책임을 강제하지도 않은채 국가보안법 사건은 국정원등 수사기관의 의견서=검찰 공소장=법원 판결문이 모두 똑같은 봉어빵 재판이며, 사실상 법관의 예단과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상재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과정이었다고 할 것이다.

용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정부가 입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43) 대전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한상곤), 1999.4.1.선고, 98고합532 판결;1999.8.31.선고, 99고합132 등 판결.

144)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2000.1.14. 선고, 98노548 판결)는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제19조 3항 b호)에 의하더라도 국제인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뒤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의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를 국제인권규약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박태훈, 김근태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1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고 이를 통보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결을 인정했다.

7. 소결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적용기관의 문제점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온존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에서 보안수사대, 일선경찰서 등 보안 분야 업무가 중복되고, 수사력이 집중 배치, 운용되면서 경쟁적 실적올리기 체포 구속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경찰 내 보안 분야 축소와 인력조정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보안법상 상금제도, 경찰 내에서의 특진, 포상금 제도는 국가보안법의 남용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상의 상금제도는 시급히 폐지가 요청된다.

공안문제연구소를 비롯한 공안관련 부설기관들에 대한 설립목적과 의의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이나 학문적 논의를 외면한 채 “국가보안법을 위한 특정논리, 특정시각” 생산에만 몰두하면서 표현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 ‘공안’ 시각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공안관련 연구소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밀정보기구인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구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기구의 정원, 예산, 업무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으로 인해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 기구가 과거 저질렀던 인권유린을 언제든 다시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각 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점검, 국가보안법 수사권에 대한 법 논리적 타당성과 행정조직 내의 균형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수사권은 그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실에 입각해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군기무사 역시 군 수사기구라는 정체성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 수사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동시에 부여된 만큼 경찰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의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율을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검찰의 시각이 그동안 정치적인 판단에 좌우되어 공안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고, 공안업무를 일반형사부로 이관시키는 공안기능 축소작업과 정부부처간 정책조정기능에 대해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막고 엄격한 법리해석을 견지해야 법원은 판결내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빚어진 온갖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점을 직시하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역할에 걸맞게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규약을 우

선행 엄격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법부의 의식개혁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적용기관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온존 강화시키고 있는 기제들로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적용기관들이 과거 우리사회 절차적 민주주의 진행과정에서 정치권력의 판단에 따라 확대되고 보강되어온 점에 주목하고 관련 기구들과 수사인력이 현재까지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여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가보안법 적용기관들의 정비와 혁신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며, 각자 고유의 역할에 맞는 기관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4장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연구목적 및 방향

인권의 역사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 보호하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국제, 국내 인권기준의 주요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체포, 수사, 재판, 구금 등 제반 형사절차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과 자율의 자유 및 생명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고, 다른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의 법적 및 사실상의 보장상황은 그 사회의文明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다.¹⁾

이에 따라 헌법은 다른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기에 앞서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헌법은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제12조 2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6항),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 7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1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3항),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등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이념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와 제도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현행 형법은 형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체포, 감금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B규약), 고문방지협약, 보호원칙, 피구금자처우를위한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인권법²⁾으로 이러한 기본권을 명문화하여 각국이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전체 30개 조문 중 신체의 자유 혹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10개 조문이다. 자유·신체의 안전(제3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제5조), 자의적 체포 금지(제9조),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10조), 무죄추정(제11조) 등이 이에

1) 김선수, <신체의 자유>, 「1987, 1988 인권보고서」, 대한변협, 역비사, 1989, 69~70쪽

2) 현대사회의 운용원리는 더 이상 한 국가 체제 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부분이며 국제인권법은 이를 명문화하여 각국이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6년에 유엔에서 채택, 1976년부터 발효되어 인신 구속의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1년에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국내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다. 또한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이러한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속한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7조 내지 10조, 14조에서 인신구속과 관련된 보장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9조는 체포·구금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보장, 체포시의 절차³⁾, 석방 절차⁴⁾, 인신보호 절차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자유가 박탈된 자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제14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의 원칙,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⁶⁾ 및 이중처벌 금지, 신속한 재판과 충분한 심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은 국가권력의 강제적 작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인 만큼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정한 원칙과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의 엄격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 적용과정에서 영장 없는 불법체포, 고문수사, 불공정한 재판, 장기구금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상의 형사소송 특별규정은,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1949년 12월 19일)의 단심제(제11조), 보도구금제(제12조~제18조), 그리고 3차 개정법률(1958년 12월 26일)의 특별형사소송규정(제3장) 중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제33조), 구속적부심사 즉시항고(제35조)와 구속기간의 연장(제36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예외(제37조), 구속기간의 갱신(제38조), 공소보류제도(제39조),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제도(제40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별형사소송규정들은 현행 국가보안법(1991년 7차개정)에

3) B규약 제9조 2항은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보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체포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3항은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B규약 제9조 4항은 “체포나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5) B규약 제9조 5항은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6) B규약 제14조 3항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g)항목에 두고 있다.

도 대체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데 참고인의 구인·유치제도(제18조), 구속기간의 연장(제19조), 공소보류(제20조) 등이다.

위와 같은 특칙 규정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헌법상 보장하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상에 있어서도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 등으로 대표되는 수사절차상에 있어서의 위법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는 수사기관들의 위법적인 행위들을 파헤쳐 실제적 진실에 다가서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순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보안법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법으로 지목되게 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 즉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형사소송과정 그리고 구금과 석방 이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형사소송절차상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은 인권적 시각에서 국가보안법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게 될 것이다. 첫째, 국가보안법 상 특별형사소송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둘째, 체포·구금·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제반 형사절차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

1.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과 인권

가. 국가보안법 개정에서 따른 특별형사소송규정의 변천과정

국가보안법상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규정은 법 제정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1949년 1차 개정시 제2장 형사절차 규정을 두면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특칙 규정은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면서 변화되었고,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국가보안법 6차 개정에서 규정된 특별형사소송규정의 내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은 2차 개정시 ‘단심제’를 폐지하고 ‘구류갱신 제한’ 규정을 두어 인권보호의 측면을 보완하려 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개의 경우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법 조항을 대폭 늘림으로써 사실상 신법 제정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던 3차 개정 때는 제3장에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별도로 두어 제32조에서 제40조에 이르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조항이 피의자의 권리보다는 수사상 편의를 우선에 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의 적법성 상실로 인해 기본권 제한 법률로서의 적정성을 결여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958년 3차 개정은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야당의원들을 배제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되었고, 1980년 제5공화국 당시 개정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헌법상 입법주체에 의한 개정이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상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의 변천과정 및 그 문제점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만이 유일하게 법 자체 내에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게된 배경과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1) 1차 개정

1948년 12월1일 제정· 공포된 국가보안법은 그 시행과 동시에 수많은 이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와 재판의 폭주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시도하는데, 이로 인해 법 제정 당시에는 없던 형사 소송 특칙규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1949년 1차 개정시 도입된 단심제, 보도소설치 등이다.

가) 단심제

원래 제정 국가보안법상에는 별도의 심급 규정이 없었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심급제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 개정법률

은 제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는 규정을 두어 단심제를 도입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단심제의 필요성으로 '사건의 폭주와 처리의 지연, 조속한 처형의 필요성'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단심제'의 도입은 '반대세력을 조속히 축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나)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

1차 개정안은 단심제와 함께 보도구금제와 보도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⁷⁾ 그 내용은 '사안이 경미하고 전향 가능성이 존재하면 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보도구금소에 보내 교화를 하고, 전향하여 석방이 되어 나오면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일정한 관찰에 붙인다'는 것이다. 보도구금제도는 일제하의 전향제도⁸⁾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이 제도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지 못하여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2) 2차 개정

1차 개정법률이 1949년 12월19일 법률 제85호로 공포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정부는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⁹⁾ 정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서 단심제를 적용하지 않고 상고의 기회를 주자'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국회 역시 1차 개정법률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심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국회 법사위 안은 '단심제를 폐지하여 원래의 심급제로 환원'하는 것과 '재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구류갱신을 각 심급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50년 2월15일 국회 본회의 제31차 회의는 정부안과 국회 법사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

7) 당시 권승렬 법무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사상에 대한 범죄수가 지극히 많습니다... 교화를 해서 다시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산도배는...여러 가지로 속여 가지고 다시 당에 넣는 방법이 있는 듯하고 또...여러 가지 애정이라든지 친구 의리라든지 할 수 없이 본의는 아니지만 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능히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교화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선고유예를 해서...일정한 기간까지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내보낸다..."(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83쪽, 권승렬 법무부장관 발언)

8) 이러한 보도구금제와 국민보도연맹의 실질적 구상자였던 오제도씨는 이들 제도의 취지를 "사상의 전향"에 두고 있다. "사상범은 일벌백계의 엄벌주의로서 임하는 동시에 그 사상의 시정교화 즉 전향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선량한 국민으로 잘 보호·선도·교화하여 내심으로 완전 전향함과 동시에 우리 민국을 절대 지지·육성할 수 있게..."(오제도, 「국가보안법 실무제요」, 1949, 39~40쪽 참조)

9) 1차 개정 법률은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실제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국 1차 개정법률은 시행되지도 못한 채 2차 개정법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1차 개정법률은 부칙에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두었다)

으며¹⁰⁾, 그 과정에서 법사위 수정안의 ‘단심제 철폐’와 ‘구류갱신의 제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으나, 결국 법사위 수정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¹¹⁾

3) 3차 개정

3차 개정은 전문 3장 40조, 부칙 1조로 이전 법에 비해 훨씬 많은 조항을 덧붙으로써 사실상 신법제정의 수준이었는데 특히 제3장에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보석허가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적부심사와 즉시항고,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인정, 구속기간의 연장과 갱신규정 등이다. 전체적인 내용이 인권의 보장에 대한 고려보다는 수사기관의 편의와 권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3장은 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와 권한의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 보석허가결정에대한 즉시항고(제33조)¹²⁾와 구속적부심사와 즉시항고(제35조)¹³⁾

이 조항들은 판사의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 결정을 검사가 불복하여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는 ‘판사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¹⁴⁾’고, ‘판사가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석방을 명하였을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¹⁵⁾’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 석방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피의자는 석방되지 못한 채 구속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권리를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10)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면서까지 법사위 안에 반대한 이유는 당시의 법원·검찰의 인원에 비추어 도저히 그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들을 대거 석방해야 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11) 이와 같이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2차 개정법률안은 1950년 2월25일자로 정부에 이송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해 3월11일자로 국회에 재의요청을 해오게 된다. 국회는 같은해 4월8일 제71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2차 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논쟁이 오고간 끝에 재석 148인 가운데 가106, 부3의 압도적인 표차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12) 제33조(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즉시항고할 수 있다.

13) 제35조(구속적부심사와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에 의한 석방을 명하는 결정이 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것일 때에는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항고할 수 있다.

14)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15)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⑤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받은 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

나) 증거능력(제37조)¹⁶⁾의 문제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의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에 치중하게 되며,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은 결국 강압수사로 이어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 기타

제34조 증인의 구인, 유치¹⁷⁾ 조항은 단순히 참고인에 불과한 증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6조의 구속기간의 연장¹⁸⁾, 제38조의 구속기간과 갇신¹⁹⁾ 등에서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일반 범죄와 달리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구속기간의 연장은 수사기관의 수중에 피의자를 오래 뒀으로써 고문과 장기구금의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제39조 공소보류²⁰⁾는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상전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제34조 증인의 구인·유치, 제36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39조 공소보류 조항은 약간씩 변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제40조 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²¹⁾ 조항을 뒀으로써 군정보기관의 일반인 수사를 법적

16) 제37조(증거능력) 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7) 제34조(증인의 구인, 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본법에 규정된 죄의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차 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증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에는 가장 근접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18) 제36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1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일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9) 제38조(구속기간과 갇신) 제1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한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급마다 일차에 한하여 갇신할 수 있다.

20) 제39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본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2년간 공소됨이 없이 경과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한다.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④ 전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 ⑤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4) 4차 개정

제2공화국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이 축소 개정(1960.6.10. 법률 제549호)되면서 특별형사소송 규정 또한 축소되어 현행규정과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기에 이른다. 4차 개정에 따른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제14조 증인의 구인·유치, 제15조 구속기간, 제16조 공소보류 등이다. 하지만 제15조(구속기간)²²⁾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은 기존의 제19조에 한해 가능하던 것을 '제1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확대하여 개정하게 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신청 권한을 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한을 두었다.

5) 6차 개정

제5공화국에 이르러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1980.12.31. 법률 제3318호)되면서 특별형사소송규정은 현행 규정의 형태로 개정되기에 이른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20조 공소보류 등이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상 특별형사소송규정은 바로 이 제6차 개정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나.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국가보안법은 제3장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둬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에서와는 다른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하여서만 기본권제한의 특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9조(구속기간연장), 제20조(공소보류)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각 조항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특별형사소송규정이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제18조 : 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21) 제40조(국군정보기관의 수사권) ①국군정보기관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제10조, 제11조와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일반인을 본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2) 제15조(구속기간) ①지방법원판사는 제1조 내지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검사의 승인을 얻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의 연장은 10일내로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고인은 피의자 아닌 제3자로서 소송당사자가 아니다. 즉 수사의 협조자로, 강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증인과 달리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²³⁾

그러나 형사소송법과 달리 국가보안법은 “그 위반 범죄의 위험성이 극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을 적시에 하지 못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나아가 본범과 일정한 범행관계가 있는 경우도 많”²⁴⁾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참고인의 구인과 유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첫째, 국가보안법보다 더 큰 범익을 지니고 있는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위험성이 중대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 셋째, “본범과 일정한 범행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참고인이 아니라 ‘공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의미는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만 존치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²⁵⁾이 높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²⁶⁾하고 있어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참고인의 구인·유치’ 조항을 두어 강제처분을 가능하도록 한 국가보안법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은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이나 강제적인 진술확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사편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 가운데 참고인 임의동행 형식으로 구인 되었다가 구속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이 수사기관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어 왔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속납용의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신구속의 엄격한 제한을 요하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국가보안법 상 ‘참고인 구인·유치’ 조항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24) 정경식·이외수 공저, 「신국가보안법」, 박영사, 1987. 316~317쪽 참조

25)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3」, 역비사, 1992. 96~97쪽 참조

26)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제19조 : 구속기간의 연장²⁷⁾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로 제한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다만, 검사에 대해서는 판사의 허가에 의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제203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구속기간 연장규정에 대한 예외적 특례로서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은 1차에 한하여, 검사는 2차에 한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2년 제19조 중 제7조, 제10조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연장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²⁸⁾ 이 결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의 죄는 굳이 수사기관에서 일반형사사건의 최장구속기간보다 더 오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

27) 이 조항은 1980년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종전규정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58년 3차 개정당시 특별형사소송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구속기간 연장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36조로 신설되는데, 법 제19조(왕래, 잠입, 은거)의 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1969년 개정과정에서 그 적용범위가 제1조 내지 제6조로 확대되었으며, 종전의 사법경찰관의 신청 권한을 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한을 두게 된다. 그러다가 1980년 개정시 현행과 같은 제19조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제5공화국에서 개정된 현행 조항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법률에서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1980년 개정시에 검사에게도 2차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28) 헌법재판소 1992.4.14. 90헌마82결정. 이 현재의 결정은 1990년 5월 3일 최○석 외 10인의 변호인인 강명준 외 변호사 5인이 “국가보안법 제19조가 형사소송법상의 예외를 설정하여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과 검사에 대하여 각 10일씩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일반 형사피의자와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과도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2조 1항의 신체의 자유 및 제27조 4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위헌법률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부당하게 장기구속을 당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한 결정이었다.

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²⁹⁾함으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구속기간연장규정의 위헌심판제청³⁰⁾에 대해 합헌결정³¹⁾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일반형사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많’은 데다가 ‘범죄의 성격상 불구속수사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구속기간의 연장시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에, 따라서 구속기간의 연장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²⁾.

29)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리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30) 서울지방법원(박시환 판사), 1996.3.5.

31) 헌법재판소1997.6.26. 96헌가 8·9·10 결정

3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은 강금실,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1999년 6월 7일 참조. 이 논문은 구속기간연장규정의 연혁과 문제점을 살피고 있는데, 기본권제한의 범형식과 구속기간연장 규정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평등권 이념과 이 규정의 헌법적합성 여부, 적법절차 원리와 실제적 진실발견원칙의 비교우위 문제, 일반적 구속요건과 수사상 필요성의 헌법적합적 해석여부, 국제인권법상 위법평가의 고려 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보안법상의 구속기간연장규정이 기본권 제한 법률로서 헌법 적합성을 갖추었는가라는 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해서는 제정과정과 형식면에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서 구속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과 모든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률에 해당하되, 국가보안법의 구속기간연장규정은 국가보안법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규정함으로써 특별하고 범위 축소적인 기본권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규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은 개별적 법률로서 일반적 형사사건과 일반국민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일정범위의 사건과 인적대상에 대한 특례적 기본권제한 규정으로서 차별입법의 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이 신설된 1958년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는 형식은 갖추었으나 야당의원들을 배제한 가운데 날치기 통과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시원적으로’ 기본권 제한법률로서의 적정성을 결여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1980년 전면 개편과정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것이므로, 과연 적법한 헌법상의 입법주체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위 합헌결정의 근거는 ① 국가보안법 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②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③ 범죄 성격상 불구속수사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³³⁾.

그런데 ‘수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증거를 수집해왔던 관행을 감안한다면 이 규정은 얼마든지 남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 ‘주거가 일정치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련자에 대한 예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는 ‘부적절한 경우’ 등은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³⁴⁾

따라서 이 규정은 수사상의 이유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여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에게 보장된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현재 이 구속기간 연장 규정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 가운데 제7조,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총 50일간 구속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³⁵⁾를 제한할 뿐아니라 피의자를 장기간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둬으로써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며, 외부교통권을 제약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특히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가 있어왔고, 지금도 이러한 인권침해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규정자체에 위헌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연장 규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3)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0조에 대한 구속기간연장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라 하여 모두가 반드시 다른 범죄보다 지능적이거나 조직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공소제기가 어려울 만큼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죄라고는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34)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규정 자체가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며, 이를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허가절차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35) 헌법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제20조 : 공소보류

제20조(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는 “검사가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³⁶⁾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고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소보류제도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형사정책적 배려를 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국가안보에 능동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³⁷⁾는 것이다.

또한 실무상에 있어서 공소보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범인의 성향, 전향의 완전성 여부, 공범자 등 관련범 검거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³⁸⁾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전향 여부를 증명하고 반성을 해야하며 동료를 밀고하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해야만 공소보류가 가능해진다. 이는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보류자가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약서³⁹⁾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소보류의 결정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범인이 자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외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나 기타 외교관이 불처벌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것이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⁴⁰⁾

36)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37) 정경식·이외수 공저, 앞의책, 319쪽 참조

38) 정경식·이외수 공저, 앞의책, 323쪽

39)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제2조(훈계) ②전향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이번 본인이 공소보류의 은전을 받음에 있어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대오각성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규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모든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굳게 맹세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나이다.”

40) 대법원 판결 1969.3.31. 69도224. 구 국가보안법 제16조, 반공법 제16조(폐)가 규정하는 바에 의

결국 공소보류는 행위 또는 정상참작의 내용과 관계없이 ‘전향을 했는가’, ‘수사기관에 협조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공소보류는 취소될 수도 있는데, ‘공소보류자관찰규칙’⁴¹⁾을 위반한 경우 검사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칙에 열거된 공소보류취소 사유⁴²⁾는 “죄를 범할 우려”(규칙 제12조 1호), “제6조⁴³⁾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규칙 제12조 5호), “보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규칙 제12조 6호) 등 6가지이다.

대단히 모호하고 비합리적이며 자의적인 근거로 공소보류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제20조 제4항은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도 재구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재구속을 금지’⁴⁴⁾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공소보류 취소는 재구속을 의미하므로 공소보류 취소 사유는 구속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이를 법무부장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면 공소제기의 보류는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를 논란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결 1983.7.26. 83도1372. 피고인이 망명절차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주재 한국대사와 영사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가지고 공소보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41) 공소보류자 관찰 규칙은 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1969.8.23. 법무부령 제163호로 제정되었다.

42) 공소보류자 관찰 규칙 제12조(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 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내란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2.보류결정 전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보류결정을 한 범행의 수사에 있어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발견될 때 3.반국가적 집단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써 그 집단을 이롭게 하는 언동을 한 때 4.반국가행위자의 과거 반국가적 노선에서 동조하던 자를 은폐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한 때 5.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때 6.보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한 지시·요구 기타의 명령에 불응한 때

43) 공소보류자 관찰규칙 제6조(신고) ① 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앞으로의 생업·가족관계·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 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44)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소보류자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며 불안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공소보류제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배려'라기보다는 수사권 및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공소보류'라는 불처벌을 조건으로 '사상전향'과 '충성맹세'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9조45)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이 공소보류를 의견에 불이하고자 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이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조정을 받아야' 하고, '검사가 공소보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처분할 때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두는 수사체계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정보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위험이 크다 하겠다. 실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안기부)의 의도가 검찰과 법원에 그대로 수용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국정원(안기부) 등 정보수사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 조항은 수사기관이 불처벌을 조건으로 '전향'을 강제할 수 있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정보수사기관의 권력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보류제도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제도나 준법서약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45)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이 규정은 애초 '정보및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이었는데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법이 개정되어 안기부의 기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 기능에서 기획·조정 기능으로 됨에 따라 개칭된 것이다.) 제9조 (공소보류등) ①정보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공소보류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3·31] ②검사는 주요 정보사범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추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처분할 때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 국가보안법 적용절차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이처럼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문제는 법 자체 규정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적용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단계인 체포에서부터 수사, 재판, 이후 복역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7,80년대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공통적으로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 비공개 재판,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높은 형량 등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불법 및 인권침해가 행해졌다. 또한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확대, 왜곡, 조작된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양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런 인권침해 관행은 단지 사법경찰, 안기부, 기무사 뿐 아니라 인권 수호 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 및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까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1993년 4월30일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김성만, 장의균, 황대권 사건에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⁴⁶⁾하였다.⁴⁷⁾ 위 실무위원회는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씨에 대한 자의적 구금 결정이유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제5조(고문 등 비인도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제19조(표현 사상의 자유), 제20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고문의 금지), 제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1조(집회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4년 8월에도 위 실무위원회는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 등 3명의 구금에 대해서도 자의적 구금 결정을 하였다.⁴⁸⁾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후 복역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전향공작과 처우 상 차별, 장기구금, 그리고 감옥 밖에서마저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고통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연좌제와 사회적 차별, 냉대라는 세대에 걸친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 있어서 이렇듯 심각한 인권침해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면서 조금씩 개선되기도 했다. 하지만公安수사기관의 재정비와 법

46) 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47)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자의적 구금 결정’을 내린 근거가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1990년 가입함으로써 국제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8) 결정번호 29 30/1994 Republic of Korea

원의 국가보안법 관련자에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를 수사절차와 재판, 구금과정 및 석방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⁴⁹⁾

2-1. 수사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가. 체포·구속

헌법은 영장주의⁵⁰⁾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3항)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에게 그 이유와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4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을 가진다’(5항)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방어권을 행사를 용이하게 하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는 법으로 규정된 절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가족 등에게 체포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체포과정에서 협박, 폭행 등 불법이 행해지기도 했다.

특히 7,80년대 이른바 ‘조작간첩’사건의 경우는 거의가 영장 없이 불법연행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체포 사유를 들었다거나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연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연행된 후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일 동안 불법감금 된 채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변호인 등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법체포, 감금은 90년대 이후 점차 개선되기도 했지만 체포,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조작간첩’ 사건 사례를 통해 불법체포, 장기간 불법 감금의 문제 등 국가보안법사건의 형사절차상에서 나타

49) 여기서 인용한 사례는 국가보안법 피해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기타 자료를 인용한 경우는 각주를 달아 그 출처를 명기하였다.

50)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90년대 이후 체포, 구속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작간첩' 사건과 불법 체포·감금

가) '조작간첩' 사건 개요

6.25 전쟁당시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이들이 별안간 '간첩단' 조직이 되어 수십명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여 간첩이 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70·80년대에는 의혹투성이의 '간첩사건'이 줄을 이었다.

70년대 초는 국제적으로 오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데탕트시대가 막이 오른 시기였다. 또한 북한도 노동당 제5차 대회를 거치면서 대남 공작을 전면 수정하여 더 이상 공작원을 내려보내지 않게 된다. 이는 공안기관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상식화되어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후반기와 전두환 정권 시절을 거슬러보면 간첩으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급증했다. 한쪽은 보내지 않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왔다는 두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아래 <표>를 살펴보면 두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975년 이후 남파공작원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1951~1987년 사이 발표된 남파 관련 사건 61건 가운데 75년 이후 발생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적 시기마다 '간첩이 엄청나게 출현한다'는 것이다. 가령 1971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살펴보면 남파사건이 2건인데 반해 그외 간첩사건은 9건으로 기록되었다. 1971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했으며(10월 15일), '학원질서 확립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을 공포(10월 9일) 했다. 뒤이어 1971년 12월 6일 비상사태 선포,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던 공포의 정치 시기였던 것이다. 또한 5공 전두환 정권시기를 살펴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오히려 '간첩사건'이 매우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82년 13건, 1983년 15건, 1984년 14건, 1985년 26건, 1986년 11건 등이 발생했는데, 특히 1983년 이후에는 남파공작원 사건보다 일본 관련, 재일동포 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간첩사건을 발생시켰던 1985년은 김대중의 미국에서의 귀국, 12대 국회의원 총선거, 신민당 중심의 야당 통합 합의 등 정치적으로 매우 주요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였다.

<표> 사건 · 연도별로 본 장기수 유형⁵¹⁾

유형 연도	월북자 가족 사건	월남자 가족 사건	납북어 부사건	재일 동포 사건	일본 관련 사건	민주화 운동 유학생	월북 기도 사건	조직 사건	남파공 작원	개별 국보 미확인	계
계	14	2	16	17	39	8	8	15	61	36	216
51									3		3
52									1		1
53									1		1
54											
55									3		3
56									1		1
57									3		3
58									3		3
59									5		5
60									1		1
61									5		5
62									3		3
63									2		2
64									1		1
65									1		1
66	1								3		4
67									1		1
68									2		2
69								1	11	3	15
70	1			1					1		3
71	1		1		1		1	1	2	4	11
72					1			3	1		5
73				1							1
74				2	1			6	1		10
75				1	1		1		1		4
76			1								1
77	1		2		1						4
78								4		2	6
79					1					3	4
80	2				1				1		4
81	1		1	3	1		1				7
82	2		2	1	6				2		13
83		1	1	2	7					4	15
84			4	2	3		1			2	14
85	2	1	2	2	7	6	1			5	26
86				2	5	1	1			2	11
87					1	1				1	3
미확인	1		2		2		2		2	10	19

51)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작성, 1989.

이들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들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자신을 연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이유로 옥설과 구타를 당하며 끌려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연행되었으며, 모두 영장없이 불법체포, 구금되었다. 둘째, 구속영장도 없이 60~180일을 불법구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간 동안 가족, 변호인과의 접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으로 이어지는 고문수사를 받았다. 넷째,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물은 스웨터, 여권(강희철씨), 낡은 개인수첩 2권(석달윤씨), 망치1개(박동운-무전기를 부순 도구라는 것임), 100원짜리 지폐한장(정영씨-공작금이라고 발표), 선원수첩 2권(최해보, 유종안씨), 여행안내도(신귀영씨) 등으로 직접적인 간첩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런 증거물조차 없는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작성된 본인의 자술서가 유일한 증거였다. 다섯째, 이들이 수집·탐지·누설했다는 국가기밀의 내용은, 관광여행 중 여행안내원으로부터 들은 ‘경부고속도로는 전쟁시 군용도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성우씨), 친구 아들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육군행정학교 출입절차(김윤수씨), 종로서적과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합법출판물(황대권씨),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된 학생시위광경(김성만씨)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알 수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것이다.

또한 이들 사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북 및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일본관련 사건, 재일동포 사건, 월남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등이 있다.⁵²⁾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70·80년대 발생한 ‘간첩’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발생했다는 시점의 문제와 더불어, 체포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위법과 인권 침해로 점철되어 있으며, 혐의사실 자체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칭하여 “조작간첩 사건”이라 부른다. 이러한 조작간첩 사건은 체포에서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 ‘조작간첩’ 사건과 영장없는 불법체포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들이대는 권총의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끌려간 조상록 씨(재일유학생 간첩사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행방불명된 나종인 씨(월북자가족 간첩사건), 먼저 연행한 부인을 미끼로 끌려갔던 이현치 씨(재일교포 간첩사건), 집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물매를 맞으며 연행된 강용주 씨(구미유학생 간첩사건), 출산예정인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납치된 김장호 씨(재일교포 간첩사건), 이들은 한결같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연행 되었다.

7,8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조작간첩사건’ 관련자들은 영장은커녕 무슨 이유로 어디로 끌려가는 지도 모른 채 ‘납치’ 되듯이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수사기관으로 끌려갔다. 무슨 영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폭력과 협박, 그리고 두 눈이 가리워진 채 차에 처박혀 끌려가는 동안 공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5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간첩도 만들어집니다>, 「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2 참조

거기에 더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그 누구도 자신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불안상태는 극도에 다다르게 된다.

인신체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불법체포 관행은 ‘조작간첩’ 사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였다. 아래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불법체포사례>

<사례 ①> 1985.6.4. 새벽 5시, 웬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리기에 잠에서 깨어났다. 옆에는 전날 미국에서 같이 귀국한 아내와 생후 1개월짜리 아들이 자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한 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을 따주자 그들은 다짜고짜 나를 붙잡아 그들이 타고 온 검은색 승용차에 처넣었다. 식구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이 나는 잠옷차림으로 손을 뒤로하여 수갑에 묶인 채, 머리를 차 바닥에 쑤셔 박혀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며, 나를 왜 잡아가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⁵³⁾

<사례 ②> 1979.6.15. 당시 직장인 미룡건설 대구현장 사무실에 근무 중 회사직원이 ‘형사 45명이 찾는다’고 하여 나갔다. 형사들이 와서 ‘살인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갑자기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죄도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느냐’며 반항했다. 그러자 권총을 들이대면서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당시 김씨의 가족과 외사촌의 가족 30명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었다.⁵⁴⁾

<사례 ③> 연행당시 수사관들은 다방에 앉아있던 내 팔을 갑자기 나꿔채며 “너 왜 수갑을 차야 하는지 알겠지”라고 말하며 동시에 10여명의 수사관들이 에워싸고 손에 수갑을 채웠다. 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잠시 멍해 있을 때, 안기부 수사관 45명이 달려들어 나의 신발끈과 혁대를 풀어헤치고는 다방 밖으로 끌고 나가 대기중인 승용차에 처넣었다...강제연행 된 후 3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경 이들 10명은 나를 작은 버스에 태워 광주고속터미널로 갔다.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승용차에 태웠다. 수사관들은 차안에서 내 머리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해 행선지를 알 수 없게 한 후 안기부 남산분실로 납치했다.⁵⁵⁾

<사례 ④> 1982.7.7. 온 식구가 직장과 학교로 가고 저는 야근을 하고 아침에 피곤해서 수면을 취하던 중 오전 10시경 40대쯤 되어 보이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김정묵씨냐”고 묻

53) 황대권씨(1985년 이른바 ‘구미유학생사건’으로 안기부에 불법 연행, 60일간 불법 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54) 김태룡씨(1979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55) 양동화씨(1985년 안기부로 불법 연행, 60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기에 그렇다고 하니까 서에서 왔는데 잠깐 물어볼게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나오라고 하더니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자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응암동에 있는 서부 경찰서로 가서 3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이새끼가 김정묵이야”하면서 “여기는 너 같은 놈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곳이야”라는 겁니다.⁵⁶⁾

<사례 ⑤> 1981.3.9. 새벽에 낮모르는 잠바차림의 청년 2명이 찾아와 안기부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박영준(본인의 형)’에 대하여 알아볼 일이 있으니 진도경찰서까지 가자고 하면서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는 본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싣고 진도읍에 도착하여서는 경찰서로 가지 않고 광주고속터미널로 직행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차안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2,3명 나타나더니 바로 광주고속버스에 태우고 광주도경까지 가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였습니다. 광주로 가는 도중 간장염 통증으로 몸부림을 쳤으며 광주에 도착하니 웬일입니까? 광주도경이 아니라 광주고속터미널로 해서 서울행 광주고속을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얼마 후에 내리라고 하기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내리니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으며 지하실로 끌고 가더니 어떤 방에다 들쳐놓았습니다.⁵⁷⁾

<사례 ⑥> 1983.2.18. 납품관계로 기독교방송국을 간 동생이 열흘이 되어도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동생은 한번도 외박한 적 없었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소식이 없으니 가족들은 몹시 걱정되었습니다. 처음 몇일은 혹시나 해서 경찰서마다 찾아다니며 동생을 찾았지만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걱정과 한숨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 형사 3-4명이 집에 찾아 왔습니다. 형사들은 아무 말도 없이 구둣발로 방안까지 들이닥쳐 집안 곳곳을 들쭉서 놓았습니다. 놀란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며칠 있으면 집에 보내주겠으니 동네 사람들에게는 시골 갔다고 해라’고 당부했습니다. 형사 말을 듣고 걱정은 됐지만 또 그렇게 믿고만 있었습니다. 한달이 조금 지나 동생이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⁵⁸⁾

<가족들을 불법 체포한 사례>

수사기관은 연행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아 피의자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상태로 홀로 수사기관에 놓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법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불법체포·구금 하기도 했으며, 이런 방법을 피의자 협박의 미끼로 이용하기도 했다.

56) 김정묵씨(1982년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57) 박경준씨(1981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58) 함주명씨(1983년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로 연행, 63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함주명씨의 누이 함주옥 씨의 증언

<사례 ⑦> 남편은 1980.2.25. 민방위 훈련문제로 알아볼 것이 있으니 동사무소로 와달라는 동직원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지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그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친척들만 줄줄이 부산시경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노인부터 3살짜리 어린애까지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모두 경찰서에 영장도 없이 끌려가 20일씩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⁵⁹⁾

<사례 ⑧> 어머니도 10일동안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셨고 조작을 강요당했으나 아버지께서 혼자 한 일이라고 해서 풀려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⁶⁰⁾

<사례 ⑨> 친구나 가족들을 영장도 없이 치안본부로 데려다가 가둬놓고 잠도 안 채우고 동생이 간첩 했다고 거짓진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형사들 맘대로 쓴 자술서에 무인을 찍어 동생을 간첩으로 조작했습니다.⁶¹⁾

<사례 ⑩> 나종인씨의 부인 김유자씨는 ‘남편을 보여 주겠다’라는 보안사 수사관의 말을 믿고 따라나섰다가 3일 동안 보안사에 불법감금 된 채 수사 받았으며, 손유형씨의 부인 부신화씨는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호텔에 2일 동안 불법감금 당해야 했다.

이렇듯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체포과정에서 영장제시는 물론 혐의사실, 체포기관, 연행장소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이후 이어지는 영장없는 수십일간의 불법구금과 무관하지 않다.

다) ‘조작간첩’ 사건과 불법구금

위와 같은 불법체포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60일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조사과정으로 이어졌다.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구금은 사실상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법구금으로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불법구금의 목적은 자백을 얻어내는 데 있다.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자백이 유죄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진술 이외의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자백을 획득하기 위해 고문 등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밀실에서의 장기간 억류’가 전제될 수밖에

59) 신귀영씨(1980년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연행, 90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 신귀영씨 부인의 증언

60) 정영씨(1983년 안기부로 불법연행, 40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 정영씨 딸 정상숙씨의 증언

61) 앞의 함주명 사례 - 함주명씨 누이 함주옥씨의 증언

에 없었던 것이다.

불법구금에 당사자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따르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구금 기간은 보호기간이라는 미명아래 구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이 기간동안 작성된 조서는 수사기록에도 남겨지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진술을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식적인 조서 작성이 시작된다.

인신구속을 통제하기 위한 영장주의는 이른바 ‘간첩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었던 것이다. 불법적인 장기구금은 영장없는 불법체포·연행에서 비롯되어 고문과 조작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어 왔다.

불법구금의 기간에는 한정이 없다. 44일간 보안사에 불법감금 된 김양기씨, 68일간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억류되었던 신귀영씨, 안기부에서 무려 117일간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던 송기복씨 등 조작간첩사건 관련자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40일에서 100여일을 불법구금 되어 있었다.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길게는 몇 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법의 보호로부터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래 표는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대표적인 불법구금 사례이다.

<표> 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불법구금 사례⁶²⁾

이름	연행일자	구속영장발부일자	불법구금기간	구금장소
신귀영	1980. 2. 25.	1980. 5. 3.	68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석달윤	1980. 8. 21.	1980. 10. 6.	47일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박동운	1981. 3. 7.	1981. 5. 8.	63일	국가안전기획부
나진	1981. 3. 26.	1981. 6.22.	89일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송기복	1982. 3. 2.	1982. 6.26.	117일	국가안전기획부
함주명	1983. 2. 18.	1983. 4. 4.	46일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양동화	1985. 6. 2.	1985. 8. 5.	65일	국가안전기획부
황대권	1985. 6. 4.	1985. 8. 5.	63일	국가안전기획부
김성만	1985. 6. 6.	1985. 8. 5.	61일	국가안전기획부
김양기	1986. 2. 21.	1986. 4. 5.	44일	보안사 광주분실

2) 1990년대 이후 체포·구속 과정에서의 문제

위와 같은 체포·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임의동행’ 또는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6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사·통계

구인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해왔었다. 이러한 임의동행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임의동행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수차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³⁾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관행을 지속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동행은 사실상 영장없는 불법강제연행에 다름이 아니었다. 사유를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신분이나 연행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며 ‘납치’하듯 체포하여 연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는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가족을 영장없이 불법적으로 구금한 경우도 있었다.

가) 영장없는 불법체포 - 임의동행 형식의 강제연행

①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연행 - 손병선씨 사례

1992.9.26. 새벽, 직접 경영하던 농장에 6명의 남자가 찾아와 ‘잠깐 저기 다방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하여 따라나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평소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따라나섰습니다. 농장 밖으로 20여미터쯤 나갔을 때 도로에 대기중이던 2대의 승용차에서 뛰어나온 2명까지 합세하여 총 8명이 양팔을 뒤로 껴고 주먹과 발로 때리며 짙색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안기부 남산분실로 연행했습니다.⁶⁴⁾

② 벨 소리에 현관문 열자 낫선 남자들 들이닥쳐 폭행하며 연행 - 송갑석씨 사례

1990.10.25. 아파트 벨 소리가 울려 인터폰을 들자 여자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러 왔습니다’고 하여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몽둥이와 각목으로 무장한 낫선 남자 6~7명이 가스총을 보이며 집안으로 들이닥쳐 각목과 몽둥이로 양 눈썹 사이를 때려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항도 해 보았으나 가스냄새와 6~7명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당시 안기부 지하 취조실로 연행되었습니다. 연행 직후 1~2시간 동안, 연행과정에서 흥기로 맞아 생긴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⁶⁵⁾

③ 거리에서 30여명에게 강제연행 - 장민성씨 사례

1990.11.8. 제 아들 민성이는 연세대 앞에서 남자들 30여명에게 불법,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차에 신고 가면서 한마디도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너 사노맹에서 중요한 일을 했지?’ 하면서 계속해서 발로 차고 때렸다고 합니다... 민성이가 안기부에 잡혀간 것을 안 것은 11월 9일입니다. 다음날 안기부 수사관들은 술을 먹고 찾아와서 어디에 있는지 물어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협박만 했습니다. 사망으로 떠다가 남산 안기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10일이 지나서야 겨우 민성이를 보여주는데 얼굴은 풍선같이 불어 있고 눈이 보이지 않으며 오른쪽 볼은 터진 표가 나더군요.⁶⁶⁾

63)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신체의 자유>, 「1992년도 인권보고서」, 1993, 52쪽

64) 손병선씨(1992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65) 송갑석씨(1990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④ 자취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이십여명에 의해 끌려감 - 손성표씨 사례

1991.7.8. 새벽 5시경 동생 성표는 자취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이십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이유를 물을 틈도 없이 몽둥이와 주먹, 발길질에 채여 잠옷바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느닷없이 동생의 얼굴이 나오고 그 제서야 동생이 안기부로 연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⁶⁷⁾

⑤ 아들면회시켜 준다면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뒤 승용차에 태워 연행 - 전재순씨 사례

14대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둔 1992.9.9. 둘째아들 인오가 행방불명 되었고, 같은날 아들 인오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며느리와 손자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막내 인욱이가 조카들이 보는 앞에서 개처럼 끌려 낚선 승용차에 실려갔습니다. 9월11일 추석날 아침 저는 아들, 며느리와 만 3살짜리 손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다가 남산 안기부 앞에 있는 주자과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혹여 다들 안기부에 붙들려 가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에 둘러보았습니다. 안기부 수사관 황모라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아들과 며느리를 면회시켜 줄테니 따라 오라’ 하기에 아무 의심도 없이 따라나섰습니다. 근처 호텔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더니 우유 한잔 사 먹이고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그길로 승용차에 태워져 주자과출소를 뒤로하고 구비구비 간 곳이 남산 안기부 조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여섯명의 안기부 지하 조사실에서의 처절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한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부인과 에미는 물론 3살박이 자식까지도 이용되었던 것입니다.⁶⁸⁾

⑥ 변호사 사무실서 대담중이던 인권단체 활동가를 강제연행 - 노태훈씨 사례

1993.7.15. 경찰청 대공분실소속 경찰관 6~7명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대담중이던 노태훈씨를 구속영장을 제시함이 없이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조용환 변호사와 노태훈씨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혐의사실을 고지한 후 연행하라고 하며 변호사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노태훈씨를 강제로 연행하여 하였다. 변호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강제연행을 만류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은 변호사들을 구석에 몰아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노태훈씨를 강제로 끌어내 수갑을 채워 불법 체포하였다.⁶⁹⁾

66) 장민성씨(1990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 장민성씨어머니 이숙이씨의 증언

67) 손성표씨(1991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례 - 손성표씨 누이 손혜원씨의 증언

68) 전재순씨(1992년 안기부로 연행된 아들 황인오씨를 면회하러 갔다가 구속된 며느리 송혜숙씨와 손주를 찾기 위해 안기부로 갔다가 불법감금)의 사례

69) 이 사건 관련 조용환, 백승현 변호사는 7.16.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21단독(김종백 판사)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고지 및 구속영

⑦ 길거리에서 납치하듯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 노래극단 <희망새> 사례

1994.3.24.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민가협 주최)에 출연했던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들이 집회가 끝난 직후 종로2가 파출소 앞 거리에서 강제연행 되었다. 파출소 앞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남자 15명이 뛰어나와 희망새 단원들을 포위했다. 이 중 한 남자가 <희망새> 단원들을 가르키며 “저놈! 저놈! 저놈!”하며 강제연행을 지시하였다. <희망새> 단원인 황성현씨는 강제연행을 거부하며 몸부림쳤으나 4~5명의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황씨의 팔을 뒤로 꺾고 허리를 비틀어 승합차에 처넣었다. 이어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이상엽씨 등 희망새 여자단원 2인과 김미경(한음 출판사 직원)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강제로 승합차에 집어 넣으려하자 이씨 등은 “영장을 제시하라. 왜 죄없는 사람한테 이러느냐”며 강제연행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남자 10여명은 영장제시는커녕 이들의 사지를 번쩍 들어 승합차 안으로 처넣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며 승합차 앞을 막고 항의하자 덩치 큰 남자들이 나타나 “비켜라, 죽여버리겠다”며 폭언을 하며 시민들을 밀쳐냈다. 희망새 단원들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봉고차 유리창으로 머리를 내밀며 강제연행에 항의했지만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차안으로 머리채를 쑤셔박고는 급히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 이후 그 승합차는 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연행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나)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긴급구속 남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임의동행 형식의 강제연행 관행은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듯 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김종식씨의 변호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안기부가 영장없이 연행한 것은 긴급구속에 해당하는데도 사후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반 영장을 발부 받아 이틀간 영장없이 구속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⁷⁰⁾을 내렸다. 이는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를 강제연행 한 즉시(48시

장 정본의 제시없이 피의자를 강제연행 하려 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무단 침입한 점 등과 고통을 가한 것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995.12.12. 서울지법 민사 제29단독(여상원 판사)은 노태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이 노씨를 연행하면서 피의사실과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았고, 이틀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씨를 다시 잡아가는 과정에서 영장 정본 없이 사본만을 제시한 것은 불법연행”이라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겨레신문」, 1995.12.13.)

70) 1992.10.15. 92가단58883, 김종식(전대협 5기 의장)씨는 1991.7.8. 새벽 안기부에 연행돼 45시간만인 10일 새벽 1시경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 영장이 일반영장이므로 결국 45시간동안 불법구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3.11.24. 대법원은 ‘안기부가 김씨를 연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통상적인 영장

간 이내) 긴급구속영장(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일반영장을 받는 것은 불법⁷¹⁾임을 확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일단 강제연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사상의 이유라는 명분아래 영장없는 강제연행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긴급구속장 남발로 인한 무분별한 인신구속이 양산되기도 하였다.

① 범민족 대회 추진을 이유로 전국연합 상임의장 긴급구속 - 이창복씨 사례

1994.8.9. 경찰은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하였다. 이에 이씨 등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이유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긴급구속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설사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인 8.11. 19:20경까지 사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23:00경에 발부되었다”며 “긴급구속이 적법성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⁷²⁾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범추본)>은 성명을 통해 “범민족대회 추진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긴급구속하고 수배한 이 사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부당한 처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② 영장없이 긴급구속 후, 조사결과 혐의 없어 이틀만에 귀가조치 - 정현백 교수 사례

1994.10.5. 안기부는 영장없이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 등 3명을 연행하여 다음날 긴급구속 하였다. 정교수는 밤 11시경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기부 수사관에게 30분간 가택수색을 당하였다. 또한 정교수와 함께 연행되었던 이태훈(자유베를린대학 석사과정)씨는 밤 10시경 자택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첩, 여권, 환전영수증, 비행기표, 메모지 등을 압수 당한 채 연행되었으며, 송실대 김홍진 교수는 12시경 자택에서 연행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박홍 총장의 이른바 ‘주사파 발언’ 정국 당시 “국내 교수들 중 일부가 외국유학 시절 북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부를 해왔다”고 발언한 이후, 안기부가 이들 ‘독일

을 받아 원고 김씨가 2일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당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구속당시 수사기관이 김씨에게 구속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또한 명백히 위법’이라고 밝히며, 김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71) 긴급구속장 발부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형사소송법 제206조 1항)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72) 1994.8.16. 서울형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흥훈)는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씨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1995.4.6.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신섭)는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학과 교수'들을 연행한 것이었다. 정현백 교수는 연행될 당시 긴급구속장을 가지고 왔다는 안기부 수사관에게 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만 보여주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다음날 중부경찰서에 인치되어 3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10.7. 오전 귀가하였다. 이 사건은 조사결과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긴급'을 요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안기부가 긴급구속을 남발하여 무리하게 체포하였으며 심지어 언론에 '북한 장학금 교수 연행'이라는 왜곡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던 것이다.

③ 13명 긴급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5명 영장기각 - '사노맹호남위원회' 사례
1994.2.16. 오전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회원 13명을 '사노맹호남위원회'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거주지 및 직장에서 각 연행하였다. 전남경찰청은 연행 당시 긴급구속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목격자에 의하면 영장 제시는커녕, 소재지와 혐의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같은날 이들 중 1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그중 5명은 광주고등법원(판사 김병하)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었다.

다) 체포영장제도 도입 이후 긴급체포 남용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전까지 관례적으로 행해졌던 '임의동행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 수사절차를 확보'한다는 취지 하에 헌법에 규정된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긴급구속제도를 폐지'하고 '체포영장의 예외적 규정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체포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는 긴급체포가 남발되어 법개정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공안수사기관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무리한 인신체포 그리고 '체포하여 수사한 뒤 자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연행, 연행과정에서의 폭행 등 인권침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으로 인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불법체포·구금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① 체포·연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㉔ 영장 제시 않고 강제연행 - <홍>기획 사례

1999.4.13.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소속 수사관 30여명은 <홍>기획에 들이닥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회사 직원 9명과 같은 건물에 있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명을 장안동 분실로 연행했다. 수사관들은 이들을 연행하면서 체포영장 등 어떠한 체포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2명은 기획사 직원이 아니라며 항의했으나 체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이

자식들 밤새워 조사해 검찰에 넘기라”며 협박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㉔ 체포, 연행 과정에서 총기발포 - 전재형씨 등 충남대생 사례

1997.7.21. 수송차량 2대와 승용차 10여대를 동원한 대전 북부경찰서 소속 전경 및 경찰 1백여명이 대전 충남대학교에 들어가 학생회관에서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며 농성중이던 학생 30명을 연행했다. 충남대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경찰이 2층 총학생회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놀라 잠을 깬 학생들에게 권총 2발을 발사했으며,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3발, 2층 복도에서 3발 등 총 8발을 쏘다”고 밝혔다. 또 “총기 발포에 놀란 학생들 가운데 다섯 명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쳤다”고 했다. “경찰 가운데 2~3명이 은회색의 손바닥 크기 정도의 총기를 들고 있었으며, 총성에 놀란 학생들은 자리에 주저앉거나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연행 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일보 송광석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탄흔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측으로부터 ‘가스총을 발사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⁷³⁾

㉔ 시내버스를 통제로 연행한 - 김기호씨 등 광운대생 사례

1999.11.4. 김기호 등 광운대생 8명은 명동성당 근처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48번 시내버스를 탔다. 그런데 장위동 부근에서 버스가 갑자기 노선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승객과 학생들이 운전기사에게 항의했지만 버스는 노선을 벗어나 정거장 정차도 없이 달렸다. 3명의 남자가 운전석을 둘러싸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운전기사에게 계속 무엇인가 지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겼을 때는 이미 버스가 노원 경찰서 앞에까지 왔을 때였다. 경찰서로 진입하기 위해 버스가 잠시 정차한 틈에 학생들 가운데 7명이 버스 문을 억지로 열고 도망갔고 김기호는 경찰에게 붙잡혔다. 밤늦은 시간이라 버스 안에는 학생들과 경찰을 제외한 승객이 4~5명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었다.

㉔ 의사만류에도 불구하고 척추디스크 수술 환자를 강제연행 - 김한수씨 사례

2002.2.6.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중인 김한수씨를 입원중인 병원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배중이던 지난해,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수배를 피해 학교 안에서 생활해왔다. 열악한 조건에서 후유증이 심해진 김씨는 지난 2월 1일, 다시 조선대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 치료 중이었다. 그런데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수사관 7명이 김씨가 입원중인 병실을 급습하여, “안정이 필요하다”며 만류하는 의사의 제지도 뿌리치고 김씨가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밀고 병실을 빠져나간 뒤 미리 대기시켜두었던 봉고차에 싣고 연행해 갔다.⁷⁴⁾

73) 이날 경찰은 연행한 30명 가운데 전재형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명을 훈방조치 했다.

㉔ 경찰의 무리한 수배자 체포과정에서 사망 - 김준배씨 사례

1997.9.16. 오전 0시 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수배중이던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가 경찰의 기습검거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밖에 설치된 케이블 텔레비전선을 타고 내려가려다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김씨는 이날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최종국 경위 등 경찰관 24명이 들이닥치자 동료 2명이 이들을 막는 사이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다 6층 부근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전남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간 파열과 출혈과다로 숨졌다. 당시 경찰은 13층 고층 아파트로 검거작전을 펴면서도 아파트 주변에 매트리스 등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⁷⁵⁾

② 불법체포·구금

㉕ 면회 간 부인을 불법구금 - 최명선씨 사례

1997.7.5. 오후 4시경 최명선씨는 경찰청 홍제동 보안분실에 구속되어 있는 남편(정현곤,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 회원)을 면회하기 위해 7개월 된 딸, 어머니와 아버지, 시누이와 함께 보안분실 면회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수사책임자라는 남자가 최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잠깐 다른 방으로 가자”고 해서 아이를 시누이에게 맡기고 따라갔다. 오후 5시경 정씨와 그 가족과 면회가 끝나고 정씨의 가족들이 “왜 며느리를 돌려보내지 않느냐”고 하자 수사관은 “애기도 있고 해서 봐줄려고 했는데 정현곤이가 비협조적이어서 부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⁷⁶⁾

㉖ 수배자 체포위해 애인을 불법 억류한 사례 - 이승은씨 사례

1997.8.14. 학원강사 이승은씨는 오전 7시경, 집 앞에서 자신을 수사관이라고만 밝히는 중년남자 두명에게 강제연행 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 소속, 성명, 동행목적과 이유, 동행장소도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동행을 거부했지만 근처 파출소까지 끌려갔다. 이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남자친구(이상훈,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국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74) 경찰은 “도주의 우려”로 긴급체포 했다고 했으나, 디스크 후유증으로 인해 꼼짝 못한채 누워있는 김씨가 어디로 도주를 할 것이며, 이미 “한총련 불탈퇴”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김씨를 수배했으므로 김씨에게는 증거인멸 우려마저 없다. 김씨는 체포 6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경 풀려났다.

75) 의문사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을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씨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뽑혀 학내외 시위를 주도하다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사특진, 300만원의 포상금으로 경찰의 집중적인 추적을 받아왔다.

76) 이에 가족들과 인권단체들이 항의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최씨는 5시간 동안 불법감금 당했다가 오후 9시경 풀려났다.

채, 이 씨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으며, 민중가요 책 등을 압수한 수사관들은 이씨를 곧바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그곳에서 약 4시동안 취조를 받았다. 수사관들은 이씨에게 “노래책 한권으로도 너를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애인이 있는 곳을 자백하라”고 으박질렀다. 이씨가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인사동 찻집으로 끌고 가 “남자친구 호출기에 녹음해서 지금 만나자고 약속해라. 너 모르게 잠복해 있겠다”고 했다.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제서야(오후 2시경) 풀려났다.

㉔ 수배자로 오인하여 시민을 불법연행 - 홍춘호씨 사례

2000.8.7. 귀가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홍춘호(인천대 휴학중)씨는 뒤에서 쫓아오는 신원불명의 건장한 남자 20여명에게 둘러 쌓였다. 그들은 “연행해” 하면서 다짜고짜 홍씨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그들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그들은 홍씨 일행중 이준용(인하대생)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구둣발로 마구 찼다. 그리고 홍씨를 꼼짝 못하게 옥죄며 지나가던 택시에 강제로 태웠다. 차안에서 홍씨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연행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연행사유 등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으며, 그들이 무전기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한총련 불탈퇴 수배자인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민기훈씨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홍씨는 자신은 ‘홍춘호’라며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만수동(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으로 끌고가 건물 2층 복도 끝방에 감금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연행사유를 알려주거나 연행자 신분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그 장소에서 홍씨가 예전 학생운동시절 알고있던 보안수사대 소속 한 경찰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경찰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인 인하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착각해 연행한 점을 시인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며 홍씨를 풀어주었다. 풀려난 홍씨와 이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한 달 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홍씨와 이씨는 8월 9일, 해당 경찰들을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사건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까닭은, 국가보안법 전담 수사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인신을 구속하고 짜맞추기 수사 등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구태의연한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관행은 특진제도에 따른 실적올리기식 수사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상금(제21조)⁷⁷⁾ 및 보로금(제22조)⁷⁸⁾ 등은 이러한 관행을 부채질하는 조항이다.

77) 제21조(상금)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78) 제22조(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1990년 후반 들어 국가보안법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대부분 다루고 있는 보안분야 경찰 인원의 감량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듯 과도한 수사인력의 문제는 ‘자기자리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마구잡이 인신체포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영장기재장소와 다른 곳에 피의자 유치

1990년대 중반까지 피의자를 조사하는 기관과 그를 유치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가령 안기부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이나 구속통지서에는 구속장소를 안기부 근처의 중부경찰서⁷⁹⁾로 기재해 놓았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잠시 중부경찰서에 들를 뿐 수사의 시작부터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안기부 지하밀실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20일까지 피의자를 자신들의 관할하에 둔 채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밤샘수사 등 그 기관 조사실에서 신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장기재 장소와 다른 곳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수사관행은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또 이의 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1995.12.15. 서울지법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씨가 낸 준항고 심리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씨는 11.29. 안기부에 연행, 구속되었으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서초경찰서가 아닌 안기부 밀실에서 계속 수사를 받아오다가 ‘영장기재 유치장소의 변경은 불법’이라며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판결은 그동안 안기부등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와는 달리 안기부 조사실에 감금한채 수사해온 밀실수사의 불법적인 관행에 제동을 거는 첫 결정이었다.

나. 고문

헌법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제11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자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인권적인 범죄이다. 고문은 개인의 의지를 억누르고, 수사기관의 강요에 순응하도록 만들며,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신을 파괴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고문은 당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문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수사관행처럼 행해졌다. 특히 70, 80년대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들은 60일~18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십 수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79) 1995년 9월 안기부가 남산에서 내곡동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서초경찰서’로 기재되었다.

고문은 그 방법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⁸⁰⁾했다. 잠안재우기, 구타, 비녀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직접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서부터 가족이나 주변사람을 미끼로 정신적인 협박을 가하는 고문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철저히 무력화 시킨다.

1) ‘조작간첩’ 사건과 고문

7, 80년대 대거 발생했던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으며, 이런 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 사건기록을 살펴보면 물적 증거가 아닌 자백에 의해 작성된 피의자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밀실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갖가지 형태의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체포·연행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도착하자마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군복으로 갈아 입혀지고 곧바로 구타를 당하면서 고문이 시작되었다. 수십일 동안 밀실에 감금된 채 고문→허위자백→번복→고문을 거듭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자술서를 쓰고 외우고 그러다 틀리면 바로 이어지는 고문,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한 뒤,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끔찍한 상황은 끝이 났다.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 없는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간첩행위로 둔갑

80) 1981년 ‘진도가족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형을 선고받고 1988년 출소한 박경준씨는 60여일간의 불법구금 기간 동안 그의 가족들이 받았던 고문의 종류 및 형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물고문 : 돼지처럼 팔과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달아매어 얼굴에 물수건을 덮어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숨통이 막혀 여러 차례 기절함. ▪ 목욕탕고문 : 팔을 뒤로 묶어 놓고 마치털 벗긴 돼지를 물속에 넣듯이 목욕탕에 집어넣어 질식하여 정신을 잃음. ▪ 수돗물샤워 : 팔을 뒤로 제껴 묶어 놓고 센 샤워로 얼굴전체에도 쏘아 댄. ▪ 손바닥 발바닥 치기 : 몸을 묶어 놓고 손바닥과 발바닥을 몽둥이로 난타, 가족이 완전히 벗겨짐. ▪ 다리문지르기 : 몸을 의자에 묶어 뼈를 방망이로 문질러서 가족이 벗겨지고 피멍이 듦. ▪ 잠 안 재우기 : 의자를 들게 하거나 쟁반 또는 컵을 머리에 이게 하거나, 양팔을 벌리고 벽에 붙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음. ▪ 굶기기 : 밥을 주어 먹으려고 하면 빼앗아가면서 몇 날을 굶김. ▪ 남자성기고문 : 남자성기에 종이꼬깔을 씌워 불을 붙여 음모와 살갓을 태움. 철사로 요도를 후빔. ▪ 심야에 소총 위협 : 심야에 어디론가 끌고가 소총을 겨누면서 검사와 판사 앞에서 안기부조서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안기부로 데려와 쏘아 죽이고 탈수로 인한 포사로 처리한다고 위협. ▪ 몸뚱이가 통나무처럼 : 구타 등으로 몸뚱이가 통나무처럼 부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으며 이동시에는 굼벵이처럼 몸을 굴려서 옮겨 다님. ▪ 동네북처럼 : 수사관들이 조사방에 들르면 그저 지나치지 않고 동네북처럼 한 가지 이상 구타. ▪ 사지를 책상다리에 묶다 : 양팔과 다리를 쇠고랑을 채워 책상다리에 묶어놓고 고문. ▪ 쇠고기 치료 : 심한 고문으로 몸이 부으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솜뭉치처럼 부은 발에 쇠고기를 얹게 썰어서 붙이고 봉대로 감아놓고 나니 부은살이 가라앉기도 함.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분단의 철장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92)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문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문→허위자백→반복→고문’이 반복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착각이 들 정도’가 된다고 증언하였다.

고문은 과학적인 수사에 근거한 물적증거가 아닌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피의자들의 자백(상호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기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조작간첩’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고문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조작되었고, 급기야 “간첩으로 만들어” 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작간첩’ 사건 고문사례

<사례 ①> 고문당한 것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벽에 붙은 세면기에 성기를 올려놓게 하고 신발짝으로 세 차례 내려쳤습니다. 그때마다 까무라치면 찬물을 끼얹어 깨웠습니다. 그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당한 성기구타 고문으로 지금도 하체에 통증을 느끼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발가벗긴 채 철창에 손목을 묶고 라이타 불로 온몸을 지저 고통을 주었고 체모를 태워 수치심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발목에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무릎에 경찰콘봉을 올려놓고 발로 짓밟아, 하루에도 서너 차례 기절했습니다. 그때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짓밟힌 상처가 지금도 왼쪽무릎에 남아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야전침대 몽둥이로 엄청나게 구타당해 손을 움직일 수도 걸을 수도 없었고 머리와 온몸을 야전침대 몽둥이로 마구 때려 수사기간 중 입고 있었던 군복이 피로 물들었는데 수사관들은 온몸의 멍 자국을 없애기 위해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기 일주일전 쯤 매일 안티푸라민 맛사지와 온수 목욕을 시켰습니다.⁸¹⁾

<사례 ②> 함께 연행된 집안식구들은 20일에서 70일 동안 부산시경에 구속영장 없이 불법감금 되어 물고문, 전기고문, 고추가루고문, 통닭구이, 비너꽃기, 구타, 뺨치로 발톱뽑기, 잠안채우기 등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함께 연행된 사람들 중 선원으로 일본을 드나들었던 저와 오촌아저씨 되는 신춘석씨, 사촌매제 서성철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간첩임을 허위자백하고 말았습니다.⁸²⁾

<사례 ③> 인천 안기부에 도착하자마자 수사관들은 내 옷을 모두 벗기고 콘봉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면서 본격적인 고문수사를 시작하였다. 수사관들이 집중적으로 고문한 내용은 내가 북한에 피납되었을 때 ‘정진구와 만난 사실과 북한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만난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재당숙을 북한에서 만났다는 안기부의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하니 앉아 있었더니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서 말을 안한다’고 하면서 손과 발을 잡고 야전침대 받침대로 엉덩이, 허벅다리 등을 무차별 폭행하여 견디다 못

81) 박동운씨(1981년 안기부로 연행, 60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82) 앞의 신귀영씨 사례

해 실신하기도 했다.⁸³⁾

<사례 ④> 나의 얼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 그들은 처음 3일 동안 거의 잠을 재우지 않았다. 또 물도 주지 않았다. 한 나약한 개인으로서 ‘국가 위의 국가’라는 거대한 기관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는 위축감, ‘날으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기관의 무소불능함이 더욱 나를 절망하게 했다... 하루는 수사계장이 자기 동료 수사관이 퇴근하고 난 뒤 따로 나를 지하 2층의 목욕탕으로 데려갔다. 가는 동안 나는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었으며 그의 손에 이끌리어 더듬더듬 2층 지하로 내려갔다. 컴컴한 목욕탕에 들어가자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두손이 뒤로 묶인 채 욕조에 눕혀졌다. 그는 나의 얼굴을 붙들고 그 위에 물 적신 수건을 덮은 뒤 사정없이 샤워를 틀어댔다. 물 묻은 수건은 곧 나의 입과 콧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나는 질식 직전의 상태에서 심하게 발버둥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발버둥치자 같이 따라온 수사관은 구둣발로 나의 등을 사정없이 찍어차면서 “너같은 놈은 이러다 죽어도 별볼 일 없어. 심문투쟁하다 죽어버렸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야!”하며 협박을 하였다.⁸⁴⁾

<사례 ⑤> 남산 안기부 지하 1층 137호로 끌려갔는데, 취조실로 들어가자마자 군복으로 갈아 입힌 뒤 곧바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몰래 혼자 잡혀 왔으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죽여서 버려도 아무 문제없다. 많은 놈들이 여기서 죽어나갔어도 아무일 없었다. 자! 봐라. 이 벽에 배인 핏자국이 여기 온 놈들이 고문받고 남긴 자국이다. 순순히 붙어”라며 거침없이 협박했습니다. 주위에 수십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이 둘러서서 중구난방으로 협박해대어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리둥절하여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잠시후 다른 안기부 수사관 3명이 들어와 그중 2명이 몽둥이로 온 몸을 무차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머리, 가슴, 등, 팔다리 등 온몸을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2시간의 집단구타를 당한 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입고 있던 군복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구타의 감각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모른채 잡혀 왔다는 극심한 공포와 계속된 폭행, 기함, 협박으로 인해 ‘이들이 나를 능히 죽이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나는 연행되기 3달 전에 위십이지궤양 수술을 받은 뒤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방위병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후에는 집에서 누워지낼 정도로 병약하였습니다.⁸⁵⁾

<사례 ⑥> 몽둥이로 계속 쉴 새 없이 맞아야 하고 주먹으로 폭행, 책상다리걸기, 신발을 벗겨놓고 발바닥을 몽둥이로 계속 맞았다.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뜨거운 목욕탕에 집어넣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혈압을 올려서 죽여 버린다는 고문을

83) 앞의 정영씨 사례

84) 앞의 황대권씨 사례

85) 앞의 양동화씨 사례

하는 것이다. 구두발로 면상을 차서 코를 맞았다. 그 후유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 코를 많이 맞아서 뼈가 콧구멍으로 나와서 지금도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있다. 당시 4촌 여동생이 같이 안기부에서 취조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이 옷을 벗으라기에 옷을 벗으니 ‘여동생 앞에 데려다 놓고서 취조를 할 것이다’하면서 통닭구이와 물 먹이기를 하였다. 그래도 부인을 한다면 성기를 잘라 버리겠다고 면도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주면서 구두발로 요도부분을 차서 피가 나오니까 임질매독이구나 하면서 동생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수사관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 여동생 앞에서 알몸으로 취조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옷을 입혀주십시오.” 애원을 했습니다.⁸⁶⁾

<사례 ⑦> 옷을 군복으로 갈아 입힌 후 ‘암수표’를 내놓으라면서 각목으로 사정없이 온 전신을 패기 시작하니 각목이 부러져 나가고 정신 잃기를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또 옷을 벗기고 각목을 양쪽무릎 안쪽으로 끼우게 하고 꿰어얹게 한 후 발로 각목 위에 올라서서 내리 밟으니 양쪽 다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렇게 계속 되니 양다리가 통통 붓고, 부어오른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니 걸음도 못 걷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의사의 치료를 매일 받아가면서도 계속 고문을 가했습니다. 옷을 항상 벗기고 땅바닥에 무릎을 꿰어 얹혀 놓고 한사람은 양 무릎 위에 구두발로 올라서고 한 사람은 등과 허리를 마구 치고 걷어차며 밟으니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정신을 잃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일일이 소소한 것은 생략하더라도 아주 흉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음담패설, 심지어는 너의 마누라도 잡아다가 옷을 홀랑 벗기고 너와 같이 고문하겠다는 등 갖은 욕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⁸⁷⁾

나)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고문과 사건 조작

① 죽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 수사관들 요구대로 진술서 작성 - 정영 사례
수사관들은 나를 간첩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 무전교육은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접선은 후레쉬로 깜박인다고 가르쳐 주었고, 밤낮 구별 없이 매타작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보니 결국 간첩이 되어 버렸다.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죽어 버리려고 화장실 가는 틈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떨어져 죽으려고 했는데 그만 수사관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나를 붙잡은 수사관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양손에 수갑을 채운 채 온몸을 구타했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고문 끝에 수사관들이 불러 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나중에 그 진술서 그대로 공소장이 만들어졌고 법정에서 나는 고문에 의해 조작된 공소장이라고 결백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⁸⁸⁾

86) 김동주씨(1983년 연행되어 49일 동안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87) 김성규씨(1983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② 허위자백 한 것을 작성케 하여 세뇌...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들어 -양동화 사례

6월 15일경 갑자기 국군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합동수사를 한다며 함께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안사 수사관들이 합동조사에 참여하고부터 나와 관련된 피의사실이 더욱 과장되어 졌다. 고등학교 후배와의 만남은 학생운동을 사주하기 위한 것으로, 후배와 농담으로 오고 간 모든 얘기들이 시위 예비음모로 조작되어 버렸다. 구타와 협박, 기함으로 피폐해진 심신은 저항을 할 기력조차 상실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한 것을 수백장의 자술서로 작성케 하여 세뇌시켰다. 설새없이 자술서 작성을 강요하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쓰지 않으면 다시 구타가 시작되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자 그들이 강요했던 허위사실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⁸⁹⁾

③ 안기부에서 2달은 간첩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기위한 사투의 시간-황대권 사례

수사관들에 못이겨 내 스스로 꾸며낸 이북방문 이야기가 너무 상식적이고 추상적이었는지 수사관은 “아직 맛을 덜 보았다”며 옆에 세워 둔 각목을 들어 머리통을 두어번 후려갈기고 나서는 나의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약 제대로 이야기 안 하면 각목으로 그대로 내려친다고 위협하였다. 내가 극도의 공포로 머뭇거리자 그는 실제로 각목을 크게 휘두르더니 터지지 않을 정도로 내려쳤다. 그는 다시 “이번에는 진짜야”하며 또 각목을 치켜들었다.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자 나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고문도 받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로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문, 허위자백, 번복, 고문, 허위자백, 번복, 고문.... 이러기를 몇차례. 한마디로 안기부에서의 두달은 끝없는 반복 서술과 고문을 통하여 자신이 간첩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기 위한 사투의 기간이었다.⁹⁰⁾

④ 고문으로 시인, 질문, 대답 못하면 고문, 답 가르쳐주고 또 묻고, 고문 -함주명사례

이근안이 몸을 뽁뽁 묶어서 칠성판 위에 눕히고 새끼발가락에 전선을 이어서 전기고문을 했습니다. 다른 형사들은 전기가 잘 통하게 발가락에 물을 뿌리고 이근안은 죽지 않게 눈도 뒤집어 보고 전기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전기고문을 하면서 ‘지령을 받고 간첩이 되었다고 시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해 시키는 대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떻게 말해야 간첩한 것이 되는지 몰라 망설이니까 “생년월일이 몇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생일을 말해주니까 생일을 따서 당증번호로 만들고 다시 간첩 했으면 어디로 보고했을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아무말도 못하니까 칠성판 위에 온몸을 묶고 수건을 입에다 얹고 샤워기를 틀어 놓았습니다. 물이 들어와 숨은 쉴 수도 없고 새끼발가락

88) 위 정영씨 사례

89) 위 양동화씨 사례

90) 위 황대권씨 사례

에는 전기고문까지 겹쳐서 죽을 것 같아서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근안이 뽕뽕 묶인 가슴 위에 올라앉아 꼼짝 못하게 하니까 물을 그대로 들이마셔 기절해 버렸습니다. 형사들은 내가 기절하자 눈을 뒤집어 보고 전기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찾으니까 서울지도를 보여주면서 “아는 산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인왕산을 손으로 가리키자 그곳을 무인포스트로 지정하고 북한에 간첩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조작했습니다...이렇게 물고문, 전기고문이나 10일간 잠을 전혀 안재우고 백열등을 쳐다보게 해서 즐기만 하면 빨래방망이로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또 친구나 가족들을 영장도 없이 치안본부로 데려다가 가둬놓고 잠도 안재우고 간첩했다고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⁹¹⁾

⑤ 고문은 수사관들에게 고분고분 응하도록 만드는 수단 -박경준 사례

고문은 끌려온 제물이 수사관들의 요구대로 고분고분 응해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는 수단과 방법이겠지요. 60여일 간 매일 같이 고문으로 날이 새고 지고 하는 동안 아무 혐의 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수사관들이 어떤 책자(조서)를 놓고 참고하면서 조서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임의대로 작성한 조서를 읽어 주면서 받아쓰게 한 것이 소위 ‘피의자 진술조서’입니다. 모두가 날조된 거짓이어서 차마 쓸 수가 없어 한숨만 몰아쉬면서 우두커니 벽만 바라보고 있으니 순간 불벼락 같은 고문이 휘몰아칩니다.⁹²⁾

⑥ 수사관이 말해준 것을 물어보고 모르면 고문하고 가르쳐 주고 -김양기 사례

물고문과 전기고문은 서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철제 의자에 앉혀 온 몸을 의자에 묶은 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다음 10리터 짜리 흰 주전자로 물을 부어대고, 고춧가루를 콧 구멍에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온몸이 타들어 가는 것 같고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절해 버리면 다시 깨워서 온 몸이 흥건하게 젖은 것을 이용하여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에 전원을 연결하여 전기고문을 하였다. 북한에 갔다 왔다는 것을 받아내려고 이 점을 중점으로 고문, 고문에 못 이겨 입북했다고 하면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기와집하고 논하고 들판을 보았다고 대답하자 “담배는 뭘 피웠느냐”고 물어보아 “모른다”고 대답하자 다시 고문을 하고 정신을 잃게 한 후 다시 깨어나니 다른 한 명의 취조관이 나타나 “북한에는 금강산이나 영광이라는 담배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면 그 중의 하나를 피웠다고 하는 식으로 대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보고 모르면 고문하고 가르쳐 주고 하는 식으로...⁹³⁾

⑦ 군사정보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보고씨라 시키고 한글자 틀리면 구타 -차풍길 사례

가족과는 5개월 후 법정에서 처음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판사 앞에 담대히 서서 “진상

91) 위 함주명씨 사례

92) 위 박경준씨 사례

93) 김양기씨(1986년 보안사 광주분실로 연행, 44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을 밝혀 달라,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66일간 햇빛도 못보고 지하실에 생활했고, 6일간 한잠도 안 재운 채 몽롱한 상태에서 고문을 받았고, “죽인다”거나 “식구를 다 죽인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안기부 수사관들이 일방적인 조작으로 꾸민 ‘양복점 위장경영, 한미 팀스피리트 작전내용, 군사기밀 사건, YH 사건, 학생사건, 근로자 보수문제’ 등은 모두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며 안기부에서 누렇게 퇴색된 신문을 오려다 주며 3일간 외우라고 했고, 흰 메모지에 군사정보 내용을 내놓으면서 외우라고 했는데, 외우질 못하자 “보고 쓰라”며 시키고, 쓰는 것을 지켜보다가 한 글자 잘못 쓰니까 또 때리면서 “한자도 빠지 말고 써라. 이것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면서 “상부에 보고가 되어서 할 수 없으니 우리 6~7명 시달서 좀 쓰지 않게 해 달라. 너 혼자 3년만 살아주면 된다”며 나중에는 “우리들 좀 살려 주라”고 사정까지 하더군요.⁹⁴⁾

⑧ 수사관들이 작성한 조서에 무인을 찍으라며 갇은 고문 -박상은 사례

나는 보안대로 넘겨졌으며 15사단 보안대에서 3일간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으며 춘천보안사에 이첩되어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별별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그들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했다. 낙서(군대에서 자살을 기도하면서 쓴 낙서로 “아버님 불효를 용서하시오, 나는 어디론가 멀리 가버리고 싶군요.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를 한 것을 보니 ‘월북하여 죽지 않고 산다면 무력 도발하는 김일성이 환갑을 청와대에서 하는데 그 때 내려와서 아버님께 효도한다는 뜻’이라며 근 한 달이 넘도록 지하실에 넣어놓고 고문을 했다. 그리고 “고향에서 사라호 태풍 때 납북되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나”는 것이다. 나는 아무 말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들은 말도 없었고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조서를 꾸미고 나는 하지도 않은 또한 모르는 일들을 자기들이 비행기장이며 미사일 있는 데를 가리켜 주며 이런 것들을 “김일성에게 정보제공 하려고 했지”하며 시인하라며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작성한 조서에 무인을 찍으라며 갇은 고문을 하는 것이었다.⁹⁵⁾

⑨ 고문이 계속됐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통신지령을 도저히 만들 수 없어 수사관에게 마음대로 작성하라고 -김영일 사례

수사관은 접선관계가 끝나니 통신지령을 내놓으라고 채촉을 했습니다. 통신지령 역시 들어 본 적이 전혀 없으며 그 말 자체 역시 모르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하면 수사관의 원대로 통신지령을 만들어 주고 그들의 야만적인 혹독한 고문을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수 차례 걸쳐 통신지령에 대한 재료를 만들어 주었으나 수사관의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은 “모든 것이 거짓이다”며 노골적으로 “패 죽이겠다”

94) 차풍길씨(1982년 8월8일 안기부 불법 체포, 66일간 불법구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95) 박상은씨(1968년 군 복무중 본인을 괴롭히던 인사계 상사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군 부대를 이탈 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죽음을 포기하고 부대 복귀, 이후 보안대로 끌려가 월북을 기도 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선고)의 사례 - 박상은씨가 조카에게 보낸 편지

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몸을 나체로 벗기고 주먹과 구두발과 몽둥이가 쉴 새 없이 춤을 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기고문을 연 삼일 간 했습니다. 이렇게 몇날 몇일을 계속 심문과 고문을 하였으나 배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통신지령이 맞게 될 수가 없어서 본인은 수사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자기네들 마음대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수사관은 어쩔 수가 없어서 ㄱ, ㄷ, 이런 것에 1, 2, 3, 이러한 숫자풀이도 있지 않느냐고 하길래 ...이렇게 하여 수사관이 만들어 준대로 통신지령이 조작되었습니다.⁹⁶⁾

다) ‘조작간첩’ 사건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사례 ①> 내가 그런 사실이 죽어도 없다고 부인하자 “모든 것을 김근희와 김태희가 전부 네가 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서부경찰서에서 옥인동 대공분실로 옮겨놓고 본격적인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몽둥이와 주먹, 구두발로 구타는 한달 동안 당한 일이고 소위 ‘칠성판’이란 것에 묶어 놓고 고개를 젓히고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 겨자를 물에 타서 코에 붓는 겨자 물고문, 양손에 수갑을 짝 채우고 수갑사이에 줄을 묶고 누운 상태에서 끌면서 흔들면 온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비비틀리는 고문, 잠안재우는 고문... 그 무더운 복중에 물 한모금 밥한술 주지 않아 3일동안 굶기니 입안의 혀는 돌맹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고 입술은 붙어서 억지로 잡아떼니 피가 낭자하게 흘러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고문을 받을 그 당시에는 만사가 귀찮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과 마주앉아 조서를 작성하며 책상모서리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사람소리에 주위를 돌아보니 차안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피투성이였고, 병원에서 머리를 치료하고 다시 조사실에 돌아오니 수사관들은 ‘김일성이가 잡히면 자결하라고 했지’ ‘여기서는 네맘대로 죽을 수도 없다’면서 협박했습니다. 40여일간 고문을 받으면서 내 정신과 몸을 수사관에게 맡기고 하루빨리 죽는 것만이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살할 기회만 엿보았고, 수사관들이 쓰라는 대로 쓰고 지장도 강제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58년 남북시 노동당에 가입하고 귀환하여 24년동안 간첩을 한 사람’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⁹⁷⁾

<사례 ②> 구두발, 몽둥이, 주먹으로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10일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주지 않으면서 무릎을 꿇린 채 양 무릎사이에 야전침대 받침대를 끼우게 하고 허벅지를 구두발로 밟거나 몽둥이로 때리고 벽 모서리에 세워놓고 황소만한 수사관들 너댓명이 몰매를 때렸습니다. 몇번이나 까무러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마다 의사가 와서 눈을 뒤집어 보고 ‘더이상 수사를 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고문을 중단한 것만 해도 몇번이나 되었습니다...수사관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몇일이고 세워놓고 얼굴, 가슴, 배, 다리를 무차별로 때리는 고문을

96) 김영일씨(1971년 5월 보안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97) 위 김정묵씨 사례

계속했습니다. ‘그저 죽어야지만 이 악몽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기에 머리를 처박고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법은 수사관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한다는 그 한가지밖에 없어 시키는 대로, 부르는 대로 자술서를 쓰고 말았습니다.⁹⁸⁾

<사례 ③>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런 고문만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발가벗겨 공중에 매달고 구타하면서 “만약 네가 시인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와 아내를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옷을 벗겨 매달아 놓겠다. 그래도 시인하지 않으면 뺨굴에 처넣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아내에게 수사관들이 엄청난 고문을 할까’ 두려워 허위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하루는 진술서를 쓰는 도중 “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안기부 수사관들은 “너 같은 놈 하나쯤 죽어도 염려될 것 없다.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잔소리 말고 불러주는 대로 유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아내 앞으로 보내는 유서를 강제로 쓰게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어느날은 눈을 형검으로 가린 채 권총으로 위협하며 안기부 밖으로 끌고 나가 저를 표적 삼아 사격연습을 하는 등 극심한 공포감을 주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⁹⁹⁾

<사례 ④> 3일 동안 엄청난 졸음과 갈증 속에서 기초조사가 끝난 뒤 그들은 내게 불펜과 종이를 주더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성장과정을 쓰라는 것이었다. 이미 망각에 묻혀버린 10여년의 세월을 그렇게 자세히 적는 것은 여간 고통이 아니었다. 이 ‘필기작업’은 그들의 마음에 드는 서술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올 때까지 계속 언어맞으면서 끝없이 계속되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몇월 몇일 오랫동안 동창 친구를 만나 종로 어느 술집에서 술 한잔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하면 영락없는 구타감이었다. 특히 내가 영장없이 불법 감금 되었던 2달 동안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구타당한 방법은 무릎을 꿇여 앉힌 뒤 발바닥을 각목으로 후려치는 것인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금까지도 오른쪽 발바닥 안쪽의 신경발작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차례 구타당하고 나면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고쳐 써야 했다. ‘몇월 몇일 나는 간첩으로서 친구 아무개를 포섭하기 위해 만나자고 약속한 뒤 서울 종로 거리의 정세를 파악할 겸 종로 주점에서 친구를 만나 그로부터 학생들의 동태를 전해 듣고 나는 그에게 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해주었다. 내 모든 일상은 이렇게 간첩행위로 만들어져 갔다.¹⁰⁰⁾

2) 국가보안법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은 남민전(79년),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 음모(80년), 전노련(81

98) 위 유정식씨 사례

99) 위 박동운씨 사례

100) 위 황대권씨 사례

년), 반제동맹(86년), 제헌의회(86년), 서노련(86년) 사건 등 80년대 중반까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을 혹독하게 고문했다. 고문 피해자들은 그때의 모진 고초 때문에 아직까지 악몽을 떨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① 함주명 씨 사례

이근안은 저를 칠성판에 묶어두고서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코에 물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슴에 올라서서 머리를 붙잡고 물을 들이대는 물고문을 하였다. 이근안은 몽둥이로 손을 피멍이 들도록 때리고 뒤로 수족을 채워 피해자의 머리를 물속에 처 박어 놓고 물고문을 하였다. 또한 발바닥에 전깃줄을 감아 강한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전기고문을 하였다. 그 외에도 잠을 계속 안 재우고, 가지가지의 끔찍한 고문은 무조건 “나는 간첩입니다”하는 피맺힌 신음소리가 쏟아져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¹⁰¹⁾

② 김근태씨 사례

두 차례의 물고문을 받고도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궁하고 승인하지 않자 전기고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남영동에서 전기고문을 하는 사람은 단 한명이다. 이 사람은 남민전 사건부터 전노련사건, 그리고 민청련사건에 이르기까지 전기고문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원됐었다. 이자의 이름은 지금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하는 이근안이다. 전기고문을 할 때 팬티를 벗긴다. 팬티를 벗기는 이유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기고문을 잘못하면 사타구니가 파열되어 피가 흐르게 된다고 한다. 전기고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온 몸에 물을 쏟아 붓고 물고문을 한다. 물고문을 하는 이유는 고문의 효과, 물고문과 불고문을 상승적으로 효과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다.¹⁰²⁾

③ 김성학씨 사례

박달나무 방망이로 어깨며 무릎이며 손바닥, 발바닥을 마구 두들겨 뺐다. 밥 한 끼 먹이지 않고 잠 한 숨 재우지 않은 채 계속 매질로 시간을 보냈다...다른 방으로 끌려간 나는 침대 같은 곳에 곧바로 눕혀졌다. 안전벨트 같은 두꺼운 끈으로 내 몸을 일곱 군데로 묶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조인 후 양말을 벗겼고 양쪽 발가락에 볼펜보다 조금 길고 굵

101) 위 함주명씨 사례

102) 전 민청련 의장인 김근태씨는 1989.9.26. 검찰청사에서 부인 인재근씨를 만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5시간씩 10번 당했다. 4일, 8일, 13일 각 2번씩, 5일, 6일, 10일, 20일 각 1번씩 당했다”고 소곤거리며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진물이 나고 피가 엉켜 딱지가 앉아 있는 발뒤꿈치를 보여주며 “온몸을 담요로 둘러싸고 뽕뽕 묶인 채 고문을 받았으나 고통에 몸부림치다 난 상처”라고 말했다. 김씨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 15명을 특가법상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93년 8월3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김수현 경감 등 4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6월의 실형선고를 하고 법정구속 하였다. 또한 이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4천5백만원 지급판결을 받았다.

은 쇠봉을 끼우더니 발을 붕대로 칭칭 감았다. 그들은 그 위에 물을 부었다. 겁에 질린 나는 계속 애원하며 모른다고 절규했다. 그러나 전류가 몸에 흐르고 내 입에서는 고통의 비명소리가 흘러 나왔다. 그 고통을 뭐라고 표현할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 전류가 흐르자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더니 온몸의 피부가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비명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들은 입에다가 수건을 쥘서 넣었다. 입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약 5시간 동안 전기고문을 당한 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 수사관들의 팔짱에 끼여 질질 끌려나갔다.¹⁰³⁾

④ 이장형 씨 사례

나를 고문했던 이근안이라는 사람은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이하의 악마라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명심에 혈안이 되어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목적을 달성하였던 흡혈귀였다. 나는 법에 무지하여 어떻게든지 고문 사선(死線)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으나 능숙한 고문기술자가 준비한 칠성판위에 던져진 나의 나신(裸身)은 안전벨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8등신으로 묶여 제멋대로 요리되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내 처와 자식들을 나신화하여 똑같은 고문으로 요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처와 자식들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이근안이 시키는대로 했다. 송치되는 날 이근안은 나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오후에 검사가 부를 것이다. 헛소리하면 죽을 줄 알라”¹⁰⁴⁾

수많은 고문을 자행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근안은 1988년 한 언론에 의해 ‘김근태씨를 고문한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가 이근안’임이 밝혀지면서¹⁰⁵⁾ 잠적하였고, 그로부터 10년10개월 동안 도피생활¹⁰⁶⁾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하였다. 하지만 김근태, 박충렬 씨 등이 제기한 고소사건¹⁰⁷⁾을 비롯한 대부분의 고문사건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했고 다만 재정신청 과정을 거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103) <간첩에서 무죄로 풀려난 김성학씨의 고발, 간첩으로 조작된 72일간의 고문>, 「신동아」, 1988년10월호

104) 이장형씨(1984년 6월15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67일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105) 「한겨레신문」, 1988.12.

106) 민가협은 1989년 현상금 100만원을 걸고 이근안을 공개수배한다. 이때 여러차례 제보가 들어 오기도 했지만 이근안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근안이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107) 1986.10. 이른바 ‘반제동맹당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박충렬씨 등 11명은 석방 직후인 1989.1. 경기도경 대공분실소속 경찰관 12명을 상대로 고소했으나 1993년 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것조차 기각하였다.

김성학씨의 고문피해¹⁰⁸⁾에 대해서만 처벌¹⁰⁹⁾이 이루어졌다.

3)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고문

1987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참고인 조사차 끌려갔던 박종철 군이 수사기관의 무참한 고문에 의해 살해되는 일이 발생했다.¹¹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고문의 잔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이 사건은 제5공화국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고문은 ‘우발적인 실수’나 ‘재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에게 가해져온, 이 나라의 공안수사기관의 체질화되고 제도화된 관행이었기에 이후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된 이들에게 자행되었던 고문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1987년 발생한 고문사례¹¹¹⁾

- 검찰이 1987.2.3. 발표한 소위 ‘제헌의회그룹사건’ 관련 구속자(김성식, 윤성구, 김찬, 최민, 이선희씨 등) 전원은 안기부 남산분실에 불법연행되어 50 내지 20일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무차별 구타, 통닭구이, 코에 물붓기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 소위 ‘노동해방사상연구회’ 관련 구속자 김영진씨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

108) 「한겨레신문」, 1999.10.22. “...1985년 12월 납북됐던 어부 김성학씨는 이근안 전 경감과 경찰관들에게 간첩혐의로 불법 체포된 뒤 72일 동안 감금된 채 모두 6차례에 걸쳐 전기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됐고 김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고문기술자들은 지난 87년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검찰은 ‘물증이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지 11년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받아들여졌다.”

109) 2000.9.27.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이근안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10) 1987.1.13.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조한경,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강진 등은 서울대 민주위사건 관련자인 박종철군(사회복지학과 4년 제적)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와 교우관계에 있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을 신림동 소재 하숙집 근처에서 연행하였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5층 제9호실로 끌고 가 1월 14일 01:10경부터 11:20경까지 집단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박군이 사망하자 위 경찰관들은 직속상관인 박처원, 치안본부장 강민창에게 보고하였고, 이들은 고문살해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1월 15일 23:30경 치안본부에 있는 치안본부장 소집무실에서 부검을 실시한 의사 황적준에 대하여 박군의 사인이 충격사이며, 고문의 흔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박군의 아버지 박정기씨에게 금 9,5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강제적으로 교부하고, 가족을 격리시킨 채 1월 16일 10:00경 박군의 시신을 화장하여 버렸다.(대한변호사협회, <신체의 자유>, 「1987년도 인권보고서」, 1988)

111) 대한변호사협회, 「1987년도 인권보고서」, 1988

연행 된 지 23일이 지난 1987.2.2.에야 비로소 가족과 면회가 되었는데 면회당시 두 다리와 팔 등에 중상을 입고 기브스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고문에 의한 상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치안본부가 1987.5.1. 발표한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연맹’ 사건 관련 구속자인 유용화, 이재권씨 등 13명은 영장제시도 없이 불법연행되어 보안사 송파분실, 남영동 치본 대공분실 등지에서 감금된 채 자백을 강요당하며 심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잔혹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 북한여행기인 『분단을 뛰어넘어』라는 책자 원고를 인쇄소에 인쇄의뢰 하였던 정병국씨는 1987.6.24. 안기부 요원에 의하여 영장제시도 없이 남산분실로 연행되어 6.30.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7일간 불법감금되어 있으면서 잠 안재우기, 몽둥이로 전신 무차별 구타 등 고문을 당하였다고 한다.

- 1987.11.1. 안기부 요원들에 의하여 불법연행 된 최혁배씨는 불법감금상태에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양쪽 발이 짓이겨지고 머리를 구타당하는 등 고문을 받으면서 “평양에 다녀왔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공동혐의로 같이 기소된 전종덕씨도 안기부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② 안기부에서 발가벗긴채 구타당해 - 유원호씨 사례

안기부에 있는 동안 7개 팀의 수사관들이 교대로 수사를 벌이면서 10여일간 잠을 못 자게 하고, 몇 차례나 온몸을 발가벗긴 채 구타를 가하였으며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였고, 자신들이 만든 사실을 끊임없이 외우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자술서 형식으로 쓰게 하는 등 끈질긴 수사관들 앞에서 체념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¹¹²⁾

③ 북한방문 자백 강요하며 고문 - 홍성담씨 사례

안기부 수사관들은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하면서 옷을 모두 벗기고 무릎을 꿇어앉게 한 후 구둣발로 무릎 및 정강이를 수 십 회 차고, 양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무수히 때렸으며, 그로인해 오른쪽 슬관절 전외측 및 오른쪽 하퇴 전면에 표피박탈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북한공작원을 만났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하면서 양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양쪽 귀를 비틀고 잡아당겼으며, 그로인해 왼쪽 귀 이주에 가까운 대륜에 열창의 상해를 입었다.¹¹³⁾

112) 「1989년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유원호씨(1989.3. 문익환 목사를 수행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및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는 1989.8.28.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있었던 5차 공판에서 자신이 당한 고문사실을 폭로하면서 “죽어도 안기부에는 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겠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받은 고문의 잔혹함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113) 홍성담씨(1989.7.31. 안기부 수사관 5명에 의하여 연행되어 1989.8.22.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음)는 ‘안기에서 조사를 받는동안 구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소했다.(1989.11.7.)

④ 권총위협 고문 - 방양균씨 사례

내가 서경원 의원에게 간첩으로 포섭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자 안기부 수사관들은 “부인하는 것이 고정간첩의 상투적인 수법이다”라며 다른 수사관들에게 “목을 밧줄로 걸어버려라”라는 협박과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수십차례 때려 이마 왼쪽 부분이 터지고 왼쪽 귀 고막이 터졌습니다. 또 야전 침대 각목으로 무참히 때리며 “여기가 어딘줄 알아 이곳에서는 너 같은 놈 죽어도 월북하려다 아군에 피살되었다고 신문에 보도하면 끝이다”고 하면서 권총 총구를 입에 물게 하고 “방아쇠를 당겨 죽여 버린다” 협박 구타했습니다. 또 안기부 수사관들은 수사 당시 ‘너의 처도 너를 버리고 떠났다.’ ‘너는 간첩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네 처를 소환했으니 비명소리를 들어 보라’고 여자의 비명소리를 녹음시킨 테이프를 들어 주어 수일간 협박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먼저 안기부 지하밀실에 도착하자 벽과 책상에 자해하지 못하도록 고무로 씌우고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 입힌 후 야전 침대 각목으로 어깨 좌우측 신경부 부터 다리 대퇴부 손등 등 2인조로 교대 1시간 정도 구타했습니다. 내가 혼절하자 찬물로 끼얹어 다시 깨웠고 일어나 보니 찬물로 끼얹고 의자에 항거불능 포박상태에 각목으로 다시 구타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온 전신이 피투성이였고 의사가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심한 어지러움에 눈앞이 깜깜했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후 13일 동안 잠안재우기, 철야조사 등을 받았고 원인 모를 약물을 강제 복용케 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¹¹⁴⁾

⑤ 코피 흘러 옷이 젖으니 팬티만 입혀놓고 구타 - 장민성씨 사례

처음엔 군복으로 갈아 입히고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다 코피가 터져 옷이 다 젖으니 까 발가벗겨서 팬티만 입혀놓고 또다시 10여명이 번갈아 가며 때렸습니다. 사노맹 조직원도 아닌데 사노맹의 조직원이라고 실토하라는 등의 거짓 앞에 처음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엔 너무 심한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했습니다. 그 안기부 요원들은 스스로 각본을 다 짰 후 이름만 싸인 하라고 해서 너무나 억울했지만 너무나 심한 고문에 결국 싸인을 하고 말았습니다.¹¹⁵⁾

⑥ 거의 잠 안재우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물구나무 서기 반복고문 -송갑석씨 사례

조사를 시작하였다는데 연행 직후부터 10월27일부터 검찰 송치일인 11월18일까지 하루평균 3~4시간 밖에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원산폭격(1회 2시간), 기마자세(1회 2시간), 물구나무서기 자세에서 발바닥을 야전침대 받침대로 무수히 구타했습니다. 졸음과 구타로 인해 온몸은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정신이 혼미해진데다가 한가지 질문도 50여 차례씩 반복해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판단 할 수조차 없어 사실과 다르거나 있지도 않은

114) 방양균씨(1989년 안기부에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115) 위 장민성씨 사례

사실을 자백할 것을 강요하는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왜, 내가 수사관들이 묻는 내용을 모를까? 안다면 이 지옥같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텐데’ 하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¹¹⁶⁾

⑦ 연행자 모두 가혹행위 - 사노맹 사건 사례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이성수씨는 90.11.5. 안기부에 연행된 뒤 2~3일 동안 수사관들로부터 주먹과 구둣발 등으로 온몸을 구타당해 심한 탈수현상에 시달린다고 담당변호사(박연철 변호사)에게 호소했다. 이씨와 함께 구속된 현정덕씨도 안기부에 연행된 뒤 3일 동안 전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2~3차례 옷을 모두 벗기고 몽둥이로 온몸을 혹독하게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남진현씨는 쿵푸 전문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도록 교묘한 수법으로 가슴 등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해 후유증으로 며칠동안 심하게 구토했으며 양치질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오영, 전인현, 김옥현, 정미화, 한두석씨 등이 고문과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담당변호인들에게 호소했다.¹¹⁷⁾

⑧ 하루종일 원산폭격에 졸도, 물고문 협박까지 - 손성표씨 사례

안기부 수사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 ‘네 애인을 잡아왔는데 내가 불면 풀어주겠다’, ‘네 가족들을 다 불러다 조사하겠다’,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 동의서를 쓰라, 동의서가 있으니까 죽어도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공갈 협박했습니다. 또 머리를 땅에 대고 두 손을 허리에 올리는 원산폭격을 하루종일시켜 견디지 못하고 졸도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면회한 날 제게 고문당하지 않았냐며 옷을 들춰보았는데, 안기부 수사들은 그것을 두고 누나와 성경험을 갖지 않았느냐고 2시간씩이나 추궁하였답니다. 또 발가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머리, 얼굴, 배, 가슴 등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일동안 잠을 한숨도 재우지 않고 의자에 앉혀 놓은 채 구두짝으로 뺨을 때리고 수갑을 뒤로 채우고 벽을 보고 다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서있게 하였습니다. 벽을 정면으로 한 채 기합을 받고 있는 뒷머리와 목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격하였습니다. 검찰 송치를 3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욕조에 물소리가 크게 나도록 물을 틀어 넘치게 해놓고 ‘불지 않으면 물에 처넣어 버리겠다’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새라도 욕조에 처넣을 듯이 물고문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고문들이 안기부에 간혀있었던 22일동안 아침부터 잘 때까지 쉬 않고 반복되었지만 허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로 송치되던 날 ‘너는 특별히 따로 떼어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는 날 검사실에는 안기부 수사관이 버티고 앉아 무언의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송치후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혹시 잠을 자면 최면 당하지 않을까’ 발소리만 나도 안기부 직원들이 고문하러 온다는 착각이 들어 불안과 공포감에 떨어야 했습니다.¹¹⁸⁾

116) 송갑석씨(1990년 안기부에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117) 「1990년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1991

118) 위 손성표씨 사례

⑨ 의사까지 불러 상태 확인하며 고문 -손병선씨 사례

안기부 수사조장이 “손은 뒤로하고 머리를 땅에 처박고 벽에 기대서 거꾸로 서!”하여 제대로 해내지 못하자 주위에 서있던 3, 4명이 달려들어 가슴과 어깨,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어깨와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차고 허리춤과 다리를 들어 땅에 머리를 박으며 물구나무를 서게 하였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다시 거꾸로 세웠습니다. 계속 그렇게 3~4시간 동안 계속 폭행을 당한 뒤 저는 기절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권유로 입원할 병실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이새끼, 꺾병이다”며 정신이 혼미 상태에서 더 심하게 때려 아주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절하면서 배설물을 그대로 쏟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물을 끼얹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지고, 눈을 반쯤 뜨고 보니 취조실의 일인용 간이침대에 눕혀져 있었고 옷은 온통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갈아입을 옷조차 주지 않아 송치될 때까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의사가 와서 혈압을 재보더니 “160이니 많이 내렸군, 어제밤에 185였는데 어제 밤에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었으니 이제 차차 좋아질 겁니다”면서 형식적으로 상태를 묻고 약을 주었습니다.¹¹⁹⁾

⑩ 세 살박이 손주까지 감금한채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 전재순씨 사례

늙은 내게도 마구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했던 이들은 아들에게는 물론 며느리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단 1초도 엄마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휘어잡힌 채 구타와 욕설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구치소로 송치될 때까지 얼굴이 통통 부었으며 턱주위로 멍이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3살박이 손주는 엄마가 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열흘간 꼬박 안기부 지하 밀실에 갇혀 있다가 엄마가 구치소로 송치되는 날 할아버지에게로 보내졌습니다...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동안 밖에서 손자가 노는 소리가 들려 수사관에게 통사정을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손주를 보게 해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보안상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자수사관의 손에 이끌려 화장실에 가면서 뒤쪽에서 나는 애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먼발치에 손주가 여자수사관에게 안겨서 노는 걸보고도 괜시리 아는 척을 했다가 어린것에게 행여 무슨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말 한마디 건내지 못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음침한 방안에 환하게 켜진 불빛 아래 밖에서는 아들 인오의 비명소리, 아이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절규하는 소리 “지금 당신 아들에게 뱀고문을 하고 있다”고 음흉한 웃음을 짓던 수사관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떠오릅니다.¹²⁰⁾

119) 손병선씨(1992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120) 1992년 민애전 사건 관련하여, 아들 황인오, 황인욱, 며느리, 손주는 물론 본인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안기부에 연행되어 온 가족이 고문을 당했던 전재순씨 사례

⑪ 성고문 등 고문 폭로하기 위해 자해시도 - 김삼석씨 사례

1993.9.8.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삼석씨는 안기부에서 수사를 받으며 잠 안재우기와 구타를 당하는 등 고문을 당했다. 김씨는 9.20. 변호인 접견 도중 변호사에게 “허위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을 한 뒤 갑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혀 자해를 했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대략 15명의 수사관들은 그를 위협적인 태도로 다시 수사를 하였으며, 9.20. 부인이 면회를 갔을 때는 목에 깁스를 하고 얼굴과 머리는 온통 부어올라 멍들어 있었고, 또한 엉덩이 부상으로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김씨는 9.15.부터 22.까지 안기부 수사실과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안기부 수사총책임자와 부 책임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수사관은 또한 김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희롱을 하였으며, 김씨는 이런 성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 한다. 안기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강압적으로 무인을 찍으려 하여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무인을 찍히고 말았다고 한다.¹²¹⁾

⑫ 현장검증 한다면 끌고 다니며 웃옷 벗겨 집단구타 - 박충렬씨 사례

1994.11.5. 국가보안법 상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되었던 박충렬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21일 동안 구타와 잠안재우기 고문, 심한 욕설을 당했다. 특히 안기부는 현장검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경기도 등지로 박씨를 끌고 다니며 웃옷을 벗긴 채 집단 구타하였다. 이 기간 중 박씨에 대한 변호인과 가족 접견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박씨에 의하면 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안기부가 요구하는 대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다는 내용의 거짓자술서를 써 주었다고 한다.¹²²⁾

4) 1995년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

한국정부는 1995년 1월9일 유엔 고문방지협약¹²³⁾에 가입하였고 이 협약은 같은 해 2월8일

121) 민가협성명, <김삼석씨에대한 성고문등 인권유린 자행하는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1993.10.7. 참조

122) 1995.12.5. 검찰송치 당시 박씨에게 씌워진 혐의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였다. 안기부가 애초 구속영장 상에 기재된 간첩죄나 안기부 수사 당시 박씨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백한 조선노동당 입당사실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1996.7.12.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3) 고문방지협약의 주요내용은 △가입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의해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고 △고문에 관련된 범죄는 가입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도록 하며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행위가 있는 가입국에 대해 조사협조와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운데 가장 핵심이니 국가간 문제제기권(제21조)과 개인청원권(제22조)을 유보하였다. 이 두 조항은 고문의 종식을 위하여 고문행위를 감시하

정식발효 되었다. 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한 것은 '인권존중에 대한 의지를 국가시책으로 구현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겠다' 취지인 것이다. 이로인해 수사기관 등에 의한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문방지협약 가입 이후로도 고문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었다. 다만 이전의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위협적인 고문 방식은 줄어들고 잠안재우기, 구타, 각종 기합, 약물투여 등 고통을 최대화하면서도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능적인 고문으로 변화되었다.

① 연로한 교수 책으로 머리 치고 젓꼭지 비틀어 - 박창희 교수 사례

1995년 10월 아버지는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공갈,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기부 직원들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형들도 잡아올 수 있다', '딸도 구속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국민학교 이름고치는 모임 등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해오시던 많은 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도 잡아온다, 이 사람도 잡아온다' 등 협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진술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웠고 안기부 직원들은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많은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허위자백 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큰걸 하나 내놓아라, 더 큰걸 하나 내놓아라, 그러면 고쳐준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술을 먹이고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하고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젓꼭지를 비트는 등 연로한 노교수를 마치 동네 불량배 다루듯 협박하고, 모욕하고, 고문하고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답을 잘못하셨다고 책망하는 저에게, '너도 여기에 들어와 보면 안다'고 말씀 하셨겠습니까.¹²⁴⁾

② 물고문 등으로 호흡 일으키며 쓰러져 - 나창순씨 사례

1997.10.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공동의장은 모두 진술 과정에서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나창순 씨에 따르면 안기부에 연행된 7월 3일부터 수사관 7, 8명에 의해 하루 12시간 이상씩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긴 채 얼굴을 중심으로 모든 부위를 구타했고 무릎을 꿇게 하고 두손을 번쩍 들게 한 상태에서 허벅지를 밟았으며 옆구리를 구두발로 찼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지어 얼굴에 가래침을 뱉기까지 했다고 한다. 물고문은 연행된 지 16일째 되던 7월 18일, 수사관들이 피의자 조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벌어

고 고문가해자에게는 처벌을, 고문피해자에게는 배상을 하기 위한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조항으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개인청원권 유보조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이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성명 - 고문방지협약의 핵심인 개인청원권 유보를 즉각 철회하라>, 1995.1.6.

124) 박창희씨(1995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 박창희 교수의 아들 박재혁 씨의 증언

졌다고 한다. 나씨가 허위자백을 끝내 거부하자 수사관들이 지하밀실로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기력이 없고 호흡곤란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다 강제로 피의자 조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고 한다. 그 뒤 나씨는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의자에서 쓰러졌고 19일 새벽 2, 3시경 앰블런스에 실려 가까운 병원에 가서 머리부분에 대한 단층촬영을 했다고 한다.¹²⁵⁾

③ 하루종일 기합받고 구둣발로 짓밟혀 - 민혁당 사건 사례

1999.8.18.과 8.19. 국정원은 일명 민혁당 사건으로 김영환 조유식 하영옥씨를 체포하여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뺨과 머리 등을 구타했고, 하루 종일 기합(다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엎드려 뺨쳐하기, 엎드려뺨쳐 한 상태에서 한 발 들고 서 있기, 벽에 손을 얹고 비스듬히 서 있기, 피티 체조, 팔굽혀펴기, 원산폭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기합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구둣발로 짓밟는 등 구타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변호인 접견시 김영환씨 등이 호소하여 알려졌다. 또한 구타로 인해 양다리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가 생긴 사실을 정태상, 백승헌 변호사들이 접견 도중 확인했다. 또한 8월 29일 국정원은 진료 차 방문한 의사 정일용의 수진신청을 거부했으며 백승헌 변호사의 접견 도중 변호사 접견을 중단시키며 김영환씨를 데리고 나가는 등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했다. 또한 국정원은 둘둘 만 종이막대로 머리를 구타하였는데, 처음에는 고통이 크지 않았지만 횟수가 1천대에 이르자 그 고통이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다.

④ 성기고문 하고, 의사의 수진신청 거부 - 지태환씨 사례

2000.5.20. 인터넷에 북한 관련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 구속된 지태환씨가 국정원에서 수사관들에게 자백을 강요받으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지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5월 22일 저녁, 변호사 접견 직후 국정원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하며 자신의 무릎을 새워 급소인 성기(낭심)를 때리고 주먹으로 멍치, 가슴, 배, 옆구리 등을 구타하였다. 또한 다음날인 5월 23일 오전 수사관이 “일어서서 벽을 보고 서 있어라”고 명령하였는데 지씨가 이에 대해 ‘가혹행위’라며 거부하자, 머리채와 떡살을 잡고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구타했다. 지씨는 장 변호사에게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정원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진술 및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5월 24일 오후 5시경 의사 김종구의 지태환에 대한 수진신청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지씨를 접견한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지씨가 22일 구타로 인해 귀두에 멍이 생겼다고 하고 수사관이 발등을 밟아 멍이 들었다며 의사의 진료를 호소했다 한다. 이와 관련 5월 30일 서울지법 합의3부(김인욱 판사)는 지씨가 제출한 증거보전청구를 받아들여 지씨에 대한 신체검사 및 검증을 실시했다. 신체검증 결과 지씨의 성기에서는 멍과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감정인으로 참석한 중앙병원 의사는 “지씨의 상처가 외부의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일 수 있으며, 자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125) 나창순씨(1997년 안기부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29일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지씨는 다음날인 30일 입소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X-RAY 촬영 결과 갈비뼈 9, 10번이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5) 국가보안법 사건과 고문피해 후유증 및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례

국가보안법 수사과정에서 자행되는 고문은 고문 받을 당시의 고통과 절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나날을 보내야 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또한 고문 받은 당사자 뿐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문을 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은) 고문을 받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해 실제 고문과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사망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최종길 교수(중앙정보부) 사망사건 또한 고문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졌다.

① 고문 후유증으로 재판도중 기절하고 혀가 굳어 말을 못한 유정식씨 사례

재판정에 나온 정식이의 얼굴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권투선수들처럼 맞아서 얼굴이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는 수사관들이 정식이 팔짱을 끼고 앉아 감시하고 있었고 재판도중에 정식이는 여러번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식이가 말을 하질 못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면회를 가서 정식이에게 물었더니 ‘고문을 많이 받아도 대체 혀가 굳었는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정식이를 데리고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증거가 없었는지 판사는 ‘간첩미수죄’라는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도 다 끝나고 면회를 갔더니 정식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수사관들로 보이는지 누나인 저에게도 비명을 지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만 병긋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 너무 속상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고문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너무 많이 맞아서 이빨이 거의 다 부러져 젊은 사람이 틀니까지 했습니다. 또 구타를 당한 후로 중이염을 앓아 귀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환청에 시달렸지요. 가슴을 너무 맞아 협심증에 걸려 한번 증세가 나타나면 가슴과 등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고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후 교도소에서 협심증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요.¹²⁶⁾

② 고문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동씨 사례

1990.8.7. 최동씨의 자살사건은 고문에 의해 한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최씨는 83년 5월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돼 10개월을 복역했으며, 89년 4월에는 ‘인천·부천노동자회’사건에 연루돼 서울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최씨는 홍제동에서 조사받

126) 위 유정식씨 사례 - 유정식씨의 누이 유임순씨의 증언

던 중 극심한 육체적 고문과 정신적 압박으로 2회에 걸쳐 자해를 기도했으며, 출소 후에도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8월 7일 오전 9시쯤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에서 시너를 온몸에 뿌리고 성냥불로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¹²⁷⁾

③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난 문국진씨 사례

1993.10.15. 문국진씨 부인이 9월 국가를 상대로 남편의 고문후유증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씨는 1979. 연대 철학과에 입학 1980. 봄에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표현물’이란 이유로 반공법위반으로 서대문서로 연행,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 뒤 1986.3. 「다산·보임조직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되면서 같은 해 10.12. 청량리경찰서에 자수하였다. 이때 다시 모진 고문을 받았는데 당시의 모진 고문과 공포분위기로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 매년 발작이 심해지자 1993.6.26. 고대부속병원 구로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때의 의사소견을 보면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주요증상으로 “안기부요원에 미행당하고 있으며 집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어 자신을 감시한다는 피해망상증, 고문에 못 이겨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초조함과 불안에 따른 과민성” 등이었다.¹²⁸⁾

④ 의문사위, ‘중앙정보부가 강도높은 고문으로 사망케 했다’ 발표- 최종길 교수 사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최종길 교수에게서 소기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잠 안재우기, 모욕 등의 언어폭력,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 찜질 등 심한 구타, 각목을 무릎에 끼워 발로 밟기 등 상당한 정도의 고문을 가하였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수사관행상 통닭구이, 전기고문, 물고문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고문의 형태에 대해서는 중정 직원, 경비원, 의사 등을 통해 진술을 받았으나 고문 피해자가 최종길 교수라는 목격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진술로 확보한 고문의 행위로 보아 상당한 고문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법의학 감정을 한 일본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카미야마 박사는 전기고문으로 추정되는 손상(경뇌막하 출혈)의 견해를 제시한 바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길 교수는 중정 수사관 차철권과 김상원, 변영철, 양명률 등의 연이은 고문으로 인해 가사상태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중정 남산분실 7층 비상계단에서 내던져져 죽음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¹²⁹⁾

127) 「1993년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최동씨 사건은 그 후 고문이 한 인간뿐만 아니라 한 가정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괴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최동씨의 아버지는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었던 최동씨를 고문으로 먼저 보낸 뒤 사십구재를 지내고 몇새만에 화병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입원한지 16일 만에 유언 한마디 없이 숨졌다.

128) 1994.5.4. 서울지법 민사13부는 문국진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약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2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2003.5.27. 의문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한 지 1년이 채 못 되어 1973년 중반 박형규 등의 내란 음모기도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서울대 문리대의 반유신 시위를 필두로 한 전국 대

6)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 헌법이 고문을 금지하고 있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일제경찰의 고문수사는 해방이후 공산주의자의 색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좌익세력척결'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고문은 수사 기법의 하나인양 관행처럼 이어져왔는데, 이렇듯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고문이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됨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재판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은 고문수사 관행을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외부와의 교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바로 1차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조작간첩' 사건의 경우, 수 십일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검찰에서의 반복을 우려하여 송치 전에 피의자를 협박하거나 때로는 검찰 조사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태로 진행되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왔으며,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공범자들이 모두 자백한 경우에 그중 1인의 자백이 타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다른 증거가 없어도 공범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왔다.

결국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수사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등에게는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반공이라는 가치가 훨씬 우위에 있다. 이들 수사관들에게는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냐' '간첩은 고문해도 된다'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다.¹³⁰⁾ 이로 인해 고문관행은 쉽게 사

학가의 반유신 시위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정희 정권이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학원사찰의 강도를 높이던 시기에 최종길 교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이 위기를 탈출할 목적으로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강도 높은 고문으로 최종길 교수를 사망케 한 다음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최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130) 가령 다음과 같은 일화는 '사상'문제에 관한 의식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인 '김삼석 남매사건'의 고문 의혹과 관련하여 1993년 내무부장관에 임명된 최형우씨와의 인터뷰>, 「월간 말」, 1993년 12월호. 기자)민주주의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최형우)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기자)예를 들어 안기부에서 잠 안

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구속기간은 일반형사사건에 비해 20일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고문의 여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고문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넷째, 고문 수사관의 처벌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고문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겠다. 우선 고문의 증거를 확보하고 고문수사관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 그동안 안기부 등 수사기관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가족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조차 불허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로 인해 고문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고문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길을 차단 당할 수밖에 없고 알린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보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고문수사관의 신원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가 없다. 우리 법체계는 ‘고문 등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법에 반해 고문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소송을 제기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묵살 당하고 말았다.¹³¹⁾ 고문수사관이근안의 경우에도 재정신청 과정을 거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김성학씨의 고문사건이 있어 처벌이 가능했던 것이지,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을 비롯한 여타 고문피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섯째, 고문이 행해지는 또다른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제22조(보로금)와 특진 제도로 인한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 그리고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돼 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범죄자를 체포한 수사관에게 상금을 주고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수사관들에게는 별도의 특진 기회가 주어진다.¹³²⁾ 이러한 법제도는 ‘실적올리기식’ 수사관행을 불러왔으며, 이는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와 고문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¹³³⁾했다. 끊임없이 사건을 만들어내

재우는 고문... 최형우)아, 그런 거 다 고쳤다니까요. 기자)아니, 여전히 가능합니다. 최형우)누가 잡혀갔나, 누가 잡혀갔어요? 이야기 해봐요. 기자)안기부에 김삼석 남매가 잡혀갔지요. 최형우)그거는 무슨 사상문제겠지. 기자)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채워도 됩니까? 최형우)물론이지.

131) 1994.7.7.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양심수 66명(이 중 48명은 수감 중)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한 수사관들을 집단적으로 고소·고발하였다. 이 가운데 함주명씨 등 11명의 사건에 대해 1994.7.말경에서 8.초경 정기용 검사 등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씨 등 11명은 9.경 항고를 제기했고, 10.경 기각처분이 내려져, 11.18.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함씨 등 6명은 검찰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기소처분’한데 불복하여, 1995.1.9.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함씨 등은 청구서에서 “고문을 금지하는 헌법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는 우리나라가 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7조에서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 보고서>, 1995.4.)

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구속한 뒤 ‘자백’을 통해 진술 또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자백을 얻어내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 바로 고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공안기관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고문범죄 처벌 수준을 감안할 때, ‘건수’를 올리기 위해 고문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 피의사실 공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¹³⁴⁾는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비해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수사당국이 일방적인 사실과 추정에 기초하여 피의사실을 공표 할 경우, 피의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로 취급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장치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

132) 「한겨레신문」 99.4.13. ‘마구잡이보안법 수사.. 특진...포상제가 부채질’ 12일 법무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 특진자 204명 가운데 31.3%인 64명이 한총련 수배자를 포함해 각종 시국사범을 붙잡은 ‘공로’로 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범죄 범인 검거에 따른 형사 분야 특진자(37.5%)와 맞먹는 수치다. 97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등 각종 시국사범 검거에 따른 특진자가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형사.수사 분야 직원들이 한총련 수배자를 붙잡아 특진하는 사례도 있으나, 시국사범 검거에 따른 특진의 90%는 대공 및 시국사건을 맡은 보안 분야 경찰관들이 차지한다. 그러나 보안 경찰관은 경찰총원 9만여명 가운데 4.6%인 4200명에 불과하다. 또 보안 분야 경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때마다 법무부로부터 1명당 20만~40만원의 ‘국가보안유공자 수당’을 받는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21조등의 규정에 근거해 81년부터 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지난해와 올해 1억3339만원씩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133) 간첩검거 후 지급되는 포상등과 관련하여 1984년부터 2년동안 보안사에서 강제로 군무원을 해야했던 김병진씨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기도 했다. “보안과 심사과에서는 간첩검거에 따르는 포상분배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사과만이 아니라 간첩검거와는 무관한 부서의 직원들에게까지 포상은 확대되었다. 내근 사무실을 방문한 김상린 5계장에게 오세인 내근계장이 “김소령, 이원협 하사가 심사과에서 그만큼 수고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사령관 표창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원협 하사에게 주면 어떨까요?”라며 부탁했다... 간첩검거의 포상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미국과 일본을 1주일쯤 시찰하고 돌아왔다... 수사과는 인사동에서 망년회를 가졌다. 각 외근이 빠짐없이 모여 ‘성과’를 올린 일과 오히려 과장의 대령진급이 내정된 일을 축하하는 축제같은 소동이였다. “위하여”가 연발되였다. 군용면세 위스키 베리나인 골드가 수십 병이나 뚜껑이 따졌다. 세 명의 밴드가 연주하는 유행가 선율이 술을 따르는 여자들의 애교에 어우러져 흥이 깊어갔다.(김병진, 『보안사』, 1988. 263~266쪽)

134)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사법의 원칙이 무시된 채, 공판 청구 전 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사실이 공표 됨으로써 피의자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간첩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

피의사실 공표는 때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이나 민주화운동이 활발한 시기, 정권의 정당성이 위협을 받는 시기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간첩사건’ 등 중요한 국가보안법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1985년 6월을 전후해서 연행되어 8월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구미유학생사건’에 대한 발표는 각 대학의 2학기 개학직후인 9월9일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의 경우 1심, 2심, 3심 재판결과가 모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고심은 1986년 9월20일경 쯤 끝났음에도 아시안 게임이 끝나 다시 정부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11월에 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¹³⁵⁾ 또한 이병설 교수 사건의 경우 구속 당시 86년 교육민주화운동이 막 태동하려고 하였던 시기였는데 이병설 씨와 민교협 활동을 하였던 그의 제자와의 사제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중운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악용하기도 하였다. 장의균씨 사건은 1987년 9월초에 대대적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1987년 6월 항쟁 바로 직후에 발표된 것이다. 그밖에 나종인씨의 경우도 1984년 10월5일에 보안사 송파분실로 연행되어 1985년 4월27일에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11월1일에야 방송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때 보안사의 발표문은 “...북괴는 고향방문단 교류 등 남북대화에 응하면서도 대공경각심을 해이시키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어,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을 엿볼 수 있다.¹³⁶⁾

1992년 10월6일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안전기획부는 ‘남로당 이후 최대의 지하간첩조직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했다. 또한 1997년 대선 바로 직전인 11월20일 안기부는 <북한직과 부부 간첩 및 연계고첩망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가 무려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 왔다고 발

135) 이 사건관련자 양동화씨는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강요당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고문과 불법구금에 의한 허위자백 외에는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물증도 없었기 때문에 안기부는 송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종용하여 약 5분 정도의 기자회견용 조작사건 개요를 적어주며 몇번이고 반복케 하여 2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실로 데리고 갔다. 그 회견이 끝나자 수사관을 향해 한 기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후에 같은 수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두번 더 기자회견을 하였다”

136) 민가협장기수가족협의회, 「장기복역양심수실태자료집-분단의 철창을 열고 이제는 하나가되어야 합니다」, 1992

표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간첩사건’은 발생시기의 문제¹³⁷⁾와 아울러 사건 발표 시점이 정치적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이러한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는 정권의 안정에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반대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권력유지나 정권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였 것이다. 대문짝만 하게 보도되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은 반공지상주의가 되어 버린 나라에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 할 수 있다.

① 97년 대선전 ‘고정간첩 사건’으로 발표, 재판결과 간첩혐의 무죄 -고영복 교수 사례
1997.11.20. 안기부는 <북한직과 부부 간첩 및 연계고첩망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영복 서울대 명예교수가 무려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 왔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안기부의 발표를 TV와 모든 일간지가 1면에 보도했을 뿐 아니라 발표요지문, 발표 뒷 얘기, 각계 반응, 서울대 입장, 그는 누구인가 등 ‘간첩’ 고영복 교수와 관련된 기사로 지면을 뒤덮었다.¹³⁸⁾ 안기부는 뒤이어 국민회의 의원 7명이 ‘고영복 리스트’에 들어있다고 내사를 착수했고, 고 교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대통령선거 이틀 전인 12.17.까지 계속되었다.¹³⁹⁾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교수는 1심에서 국가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방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1998.11.13. 대법원은 국가기밀누설 및 간첩방조 혐의에 대해 원심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회합·통신죄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② 총선 논의 본격화 시점에 총선 출마자 국가보안법 구속 발표 - 허인회씨 사례
1995.11.8.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회 씨를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긴급구속 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15대 총선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할

137) 앞의 가) ‘조작간첩’사건의 개요 참조

138) 1997.11.21.자 조선일보 - 1면 「서울대 고영복 교수 36년간 간첩활동-안기부 발표」, 3면 「부부·고정간첩 사건, 북의 노림수」, 3면 「사회학계, 원로, 관변단체서 활동한 인물-고영복교수 누구인가」, 4면 「부부·고정간첩 사건 발표하기까지」, 6면 「부부·고정간첩 사건, 침투 새 경향」, 7면 「부부·고정간첩 사건, 정계 반응」, 15면 「부부·고정간첩 사건-안기부 발표요지」, 30면 「고 교수 수사받다 자살기도-뒷얘기」, 31면 「서울대, 보수성향 교수가... 충격」 / 1997.11.20.자 문화일보 - 1면 「고영복 교수 36년간 간첩 활동-안기부 발표」, 2면 「서울대서만 30년간 재직」, 3면 「부부간첩단, 고영복 교수 수사결과 요약」, 29면 「포섭대상 재야인사 신고로 잡혀-뒷얘기」, 29면 「보수학계원로교수가 어떻게.. 깜짝 놀랐다-시민반응」, 31면 「우익학자가 간첩이라니-서울대 ‘고 교수 사건’ 충격」

139) 이로 인해 고영복 교수 사건은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대통령선거 이후 1998. 3. 이른바 ‘북풍조작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즈음으로 허씨는 ‘국민회의가 영입한 30대 인사’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허씨는 꼬박 3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는 등 경찰의 강압수사를 당하면서도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불고지죄로 기소되고 말았다. 안기부는 이 과정에서 ‘생포된 간첩’ 김동식의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례적으로 방송3사에 ‘생중계’를 허락했다. 김동식은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13일 동안 단식을 하며 대질신문을 요구하던 허씨의 요청을 묵살한 채, 회견을 통해 ‘허인회를 두 번 만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안기부는 박충렬, 허인회, 함운경씨 등이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혐의’를 기정사실인 양 발표한 것이다.¹⁴⁰⁾

③ 아시안게임 후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 구미유학생 사건 사례

신문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간첩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3심까지 결과가 다 보도되는 사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의 사건 같은 경우 1심, 2심, 3심 재판 결과 전부 보도가 됐어요. 특히 3심 재판은, 저희 3심이 9월 20일쯤 끝났거든요. 거기서 형이 확정됐는데 신문보도를 안 했어요. 왜 안했냐면 그때가 아시안게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안 하다가 아시안 게임이 끝나니까 또 이제 술렁술렁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에 가서 구미유학생 사건의 3심 확정보도를 했던 거예요.¹⁴¹⁾

④ 무려 7개월이 지난 후에 대대적으로 발표 - 나종인씨 사례

1984.10.5. 연행, 7개월간 수사 끝에 다음해 1985.4.27. 기소된 나종인 씨의 사건의 경우, 11월1일 텔레비전 공개방송과 각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로 ‘고정간첩 나종인 체포’라고 쓰고 서로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5~6명 나열하여 간첩 일망타진했다고 기사화 하여 세상에 발표했다.¹⁴²⁾

⑤ 92년 대선 전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기부가 6일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일반인은 물론 재야운동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야운동권은 ‘남로당 이후 최대의 지하간첩조직사건’이라는 안기부의 발표내용이 국민들에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재야의 입지가 적지 않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를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안기부가 주도하는 ‘신공안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표시하고 있다. 재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안기부의 발표내

140) 1996.11.8.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남파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1995.11.8. 구속기소 되었던 허인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남파 간첩 김동식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허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141) 채영미씨(1985년 구미유학생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진술

142)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보안사의 발표문은 “...북괴는 고향방문단 교류 등 남북대화에 응하면서도 대공경각심을 해이시키려 하고 있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용과 발표시기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안기부가 이 사건의 파장을 연말 대선 시기까지 지속시켜 공안선거를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³⁾

2)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재판

국가보안법 사건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발표나 보도자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원의 판결은 커녕 기소도 되기 전에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발표되고 언론은 이를 기정된 사실로 여기고 게재한다. 이후 발표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되거나 중요한 범죄사실이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기소된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삭제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발표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기관인 수사기관의 의견을 공공언론이 게재한 것이므로,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 내용에 신뢰를 갖게 되고 진실인양 여기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은 사건을 발표함에 있어 ‘해방이후 최대 간첩사건’ 등 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조직표를 그려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갑이 채워진 피의자가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사건관련자들의 신상을 담은 ‘사건 자료집’을 제작해 동사무소 등 다중이 드나드는 공공기관에 배포하기도 하고 ‘간첩장비 순회 전시’라는 이름으로 피의자의 사진 등 관련자료를 주요 역사 등지에서 전시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공세를 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간첩단사건’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혐의사실과 함께 ‘이들에게서 난수표, 무전기, 권총 등 각종 장비들을 압수했다’고 거짓발표를 하기도 했다. 예를들면, 1985년 11월 1일 발표된 <학원 산업계 등 침투 간첩단 5개망 검거사건>의 경우 당시 보안사는 난수표, 무전기, 단파라디오, 대북 보고문건 등 다수의 공작금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들 간첩단 5개망의 주범으로 발표 한 김윤수, 나종인, 정삼금씨 등의 판결문에 명시된 압수물품 중 보안사가 발표 당시 제시했던 공작금품은 전혀 없다. 또한 1980년 <진도거점 간첩단 사건>발표 당시 ‘주범 김정인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난수표, 단파 라디오, 권총 등 각종 장비들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했으나, 판결문의 압수물품 목록에 기재된 것은 간첩장비는 전혀 없고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석달윤), 반지(김정인), 머플러 뿐이었다. 수사기관은 재판도 청구하기 전 애초 이들과는 무관하고 압수물품에도 포함되지 않은 간첩장비들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보도하여 혐의사실을 단정지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의 ‘반공’ 경각심을 부채질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 함으로써 여론에 의한 재판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사건관련자들은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간첩’, ‘불순분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이미 여론재판에 의해 간첩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다름아닌 것이다.

143) 「한겨레신문」, 1992.10.7.

3) 피의사실 공표와 인격권침해

형법은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¹⁴⁴⁾는 공판 청구전 피의사실을 공표 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기소도 되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이로인해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론재판에 의해 유죄로 단정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보도는 반공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의 우위에 서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감안 할 때 피의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된다. 피의자와 그 주변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기소 전 사건발표 관행에 대해 법원은 여러차례에 걸쳐 ‘기소전 피의사실 유포’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①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북한 접촉 혐의’ 보도 - 정현백 교수 사례

1994.10.6. 국가안전기획부는 “외국 유학 시절 북한과의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¹⁴⁵⁾했다. 그러나 정현백교수는 40여시간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안기부에서 북한 장학금이나 기타 북한 자금의 수수여부, 방북 여부에 관해서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② ‘고교에 주사파 침투’ 기사,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 - 고등학생 단체 <샘> 사례

동아일보는 1994.9.9.자 31면에 ‘고교에 주사파 침투’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부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전파하고 이들을 불법 시위 등에 동원한 주사파 조직 <샘>을 적발, 검거된 조직원 9명 중 3명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건 관련자들은 ‘청소년단체 <샘>은 올바른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며 고등학생들의 진로 문제 등 삶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자 만든 단체’라며 정정보도 요구를 요구하였으나, 언론사가 반론게재를 거부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③ 사실확인 없이 북한노동당 입당 보도 - 박창희 교수 사례

1995.4.27. 안기부는 박창희교수를 검찰에 송치하며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박

144)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45) 정현백 교수는 이같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연행 발표에 의한 피의 사실을 KBS-1TV 9시 뉴스(1994.10.6.) 등 3개 방송사와 6개 일간지가 보도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언론중재 신청을 하였고, 정정보도를 거부한 KBS와 SBS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5민사부는 ‘정정보도를 방송하라’고 판결(1995.2.20. 선고 94카합3123 판결)

교수가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며 검찰청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은 이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 5.16. 박씨는 ‘북한 노동당 입당’이 안기부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임을 주장하며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박씨는 중재신청이유에서 “언론은 자신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안기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무책임하게 보도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역사학자로서의 활동과 ‘국민학교 개명운동’ 등도 간첩활동으로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정보도 요청후 각 언론은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였고 이에 박 교수는 정정보도 신청을 취하하였다.

④ ‘기소 전 간첩발표로 명예훼손’ 판결 - 이광철씨 사례¹⁴⁶⁾

2001.7.21. 서울지법(민사합의42부, 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은 1994년 ‘구국전위’ 사건 당시 ‘간첩’혐의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광철씨와 부인, 자녀 등 가족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 없이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 당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가족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94년 7월 ‘구국전위’사건을 발표하면서 이씨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고 언론에 밝힐 당시 확보한 증거는 추후 검찰조사 도중 반복된 류 아무개씨의 진술 외에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 할 경우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에 발표됐다”며 “이는 공표내용과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피의사실의 진실성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¹⁴⁷⁾

⑤ 대법원, 검찰송치 전후 간첩혐의사실 유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¹⁴⁸⁾

2002.9. 대법원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126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

146) ‘구국전위’사건은 지난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파동으로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안기부가 “남민전 사건으로 복역하다 풀려난 안재구씨와 비전향장기수 출신 류낙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인 ‘구국전위’를 결성했다”며 구속자 10명을 포함해 23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씨는 이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97년 2월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뒤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47) 「한겨레신문」, 2001.7.21. 이씨는 판결 선고 뒤 “간첩으로 몰렸을 당시 가족들이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었고 주위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 ‘한국사회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문화 된 피의사실 공표죄가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14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첩 혐의사실을 검찰송치를 전후하여 언론기관에 유출시켜 보도되게 함으로써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으며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간첩혐의사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판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봉만씨 등 5명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¹⁴⁹⁾

라. 접견교통권

접견교통권 보장은 무죄추정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수적이다. 접견교통권은 ‘구속된 피고인 등이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89조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가 변호인 외의 타인과의 접견만을 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가족접견은 물론 변호인의 접견조차 불허되기가 일쑤였다.

수사기관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여러차례에 걸쳐 있었다. 1989년에만도 ‘한미문제연구소’ 사건으로 안기부에 구속돼 있던 문부식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가 위법이라는 서울형사지법의 결정을 비롯해, ‘전국민국민중미술운동연합 건설준비위’ 사건의 홍성담·차일환씨, ‘민자통’ 사건의 김준기씨 등의 접견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잇달았다.¹⁵⁰⁾

뿐만 아니라 1990년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홍성담씨의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일부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¹⁵¹⁾

그리고 1991년 3월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씨에 대한 안기부의 접견불허와 관련해, 서울형사지법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안기부가 즉시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

149) 1997.9. 당시 안기부와 기무사, 경찰 등은 서봉만씨 등 동아대 졸업생과 휴학생, 군복무자 등 1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무더기 구속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학원가에 활동가 조직을 꾸민 ‘동아대 자주대오’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일본유학 중 간첩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1999년 1월 27일, 대법원은 동아대 졸업생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간첩 등)로 구속한 이른바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간첩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150) <1989년~1992년 국가보안법사건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사건>

하여, 변호인 접견불허 조치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대법원 결정으로 못 박았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때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¹⁵²⁾ 이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여기서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고 “그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유로운 접견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나 수사관 등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없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접수일자	사건번호	사건요지	처리내역
1989.7.12	89보1	김준기사건, 주명수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89.7.20	89보2	서경원사건, 홍영기변호사, 서울구치소	취하
1989.8. 3	89보3	문부식사건, 김동현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89.8. 5	89보4	서경원사건, 강철선변호사 외, 서울지검	취소결정
1989.8.14	89보5	홍성담사건, 윤종현변호사 외, 안기부	홍성담인용,차일환기각
1989.9. 1	89보6	임수경사건, 황인철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89.9. 4	89보7	김현장사건, 황인철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91.3.15	91보1	박기평사건, 유선호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91.4.13	91보2	박형기사건, 김한주변호사 외, 치안본부	취소결정
1992.9. 1	92보4	김낙중사건, 박성민변호사 외, 안기부	김낙중 외 3명만 인용
1992.9. 3	92보5	김낙중사건, 임종인변호사, 안기부	김낙중 외 3명만 인용
1992.9.23	92보6	최호경사건, 박성호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92.9.30	92보7	장기표사건, 윤종현변호사 외, 안기부	취소결정
1992.10.1	92보8	황인오사건, 김제완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1992.10.6	92보9	손병선사건, 임종인변호사, 안기부	취소결정

대법원,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1992.10.10.현재, 서울형사지법)>, 1992.10.

151) 1990년 1월 30일 서울형사지법은 대형 걸개그림의 슬라이드를 북한의 평양축전에 보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가 홍성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작성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152) 헌법재판소 결정 1992. 1. 28. 91헌마111

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하거나 심지어는 변호사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¹⁵³⁾하기도 했다. 또한 ‘미리 접견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지연시키며 접견시 수사관 참여하거나 사진을 찍고 접견실에 감시 카메라 설치 등으로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접견도중 들어와 피의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불허 또는 제한, 방해행위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명백히 위헌인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도 검찰은 피의자를 거의 매일 수사관서에 소환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접견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사의 마무리단계에 가서야 접견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①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배석하여 사진촬영 등 - 유상덕씨 사례

유상덕이 1991.6.13.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구속되어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1.6.14. 17시부터 18시 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인 조용환 변호사 및 그의 처 김덕자와의 접견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5인이 접견에 참여하여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대화내용을 듣고 또 이를 기록하기도 하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찍기도 하므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고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니 청구인과 변호인이 따로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대화 내용의 기록이나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무슨 말이든지 마음 놓고 하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¹⁵⁴⁾

② “간첩 용의자에겐 변호인 접견 허용 안 해” - 김낙중씨 사례

1992.8.31.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된 전 민주당대표 김낙중, 그의 처 김남기, 딸 김선주, 김선결 그리고 이우재, 이재오, 장기표씨 등 13명에 관하여 변호인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대공사건이니 협조해 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9.2. 다시

153) 2000.9.1. 국정원 수사관은 소위 ‘민혁당’사건 관련자들을 면회하려던 변호인에게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서약서의 내용은 국정원에서 보고들은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접견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던 변호인은 약 2시간 이상 접견을 하지 못했다.

154) 헌법재판소 1992.1.28. 91헌마111. 결정 참고, 이 결정문에 따르면 ‘구속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때 수사관이 입회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위 김낙중씨 등 7명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¹⁵⁵⁾

③ 변호인 위임장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 거부 - 최진수씨 사례

국정원은 2000.8. 민혁명 사건으로 최진수 씨 등을 구속하였는데, 이들을 접견하려는 변호인(이상희 변호사)에게 변호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주심 윤제식 대법관)은 2003.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정원측은 원고 변호사들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관계를 문서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반드시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하면 된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접견을 거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④ 간첩수사 방해한다며 변호인 접견 방해 - 한단석 교수 사례

한단석 교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연행된 지 3일 후에 이루어졌는데, 첫 접견 때부터 수사관들의 집요한 방해가 계속되었다. 변호인 중의 한 사람인 김기중 변호사가 2000.1.28. 한 교수를 접견하러 갔는데, 수사관들은 선임계를 이유로 1시간을 지체시킨 후, 그 다음은 업무시간이 종료되었기에 접견할 수 없다며 접견을 방해하였고, 결국 법률가단체 등이 거센 항의를 하여 2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접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접견도중 들어와 ‘끝내 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제대로 접견을 할 수 없었다. 김기중 변호사는 1.31. 접견 때도 수사관이 수시로 들어와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간첩수사를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접견을 방해하다가 결국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한 교수를 강제로 끌고 나가버려 접견이 중단되었다. 또 2.1. 최병모, 조용환, 김기중 변호사 등 3인의 변호인이 다시 접견을 하기 위해 홍제동 분실을 찾았다가 서부경찰서로 보냈다는 답변을 듣고 서부경찰서로 접견을 갔으나 홍제동 분실 담당자가 서부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접견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실이 없고 비밀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서성거리는 수사과 사무실에서 눈치를 보며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⑤ 의사검진을 거부한 사례 - 지태환씨 사례

국정원은 2000.5.20. 인터넷상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태환씨를 체포 구속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씨가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등 고문

155) 「동아일보」, 1992.9.8.자 “1992.9.7. 대한변협은 민중당 대표 김낙중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불법연행·감금, 변호인접견방해 등이 이루어진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동 협회 인권위원회소속 변호사 명의로 국가안전기획부장 이상연 및 소속수사관들을 고발하였다.”

을 가했으며, 의사 검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의사의 검진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장경욱 변호사)은 “국정원측의 수진거부 처분은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정원의 수진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지법(판사 김인욱)은 변호인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수진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제한 또는 방해에 대해 위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상 이유’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이러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까닭은, “간첩사건의 경우 접견불허 조치가 불가피하다”¹⁵⁶⁾는 수사기관의 인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더해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여전히 외부교통이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일지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 압수수색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는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제114조 제1항), “일괄영장”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의 거주지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경우 수사기관들은 피의자를 불법 체포 연행하듯이 압수·수색도 영장 없이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영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무작위적으로 컴퓨터, 디스켓, 책자, 유인물 등을 압수하거나 때로는 “백지 영장”, “포괄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한다. 이때, 일단 증거물이 될 만한 것을 모조리 압수하고도 수사기록에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기재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압수된 물품은 수사기관이 원래 의도했던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별건 혐의’를 적용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¹⁵⁷⁾

한편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부당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156) 1992.9.7. 김낙중씨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를 하면서 정형근 당시 안기부수사차장보는 “간첩용 의자에게 변호인접견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수사진행과 보안유지상 큰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

157)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적단체’ 또는 ‘간첩’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과정에서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변경되는 사례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의 조치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먼저 체포, 연행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하므로,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참여를 차단하는 관행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영장 없거나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압수수색은 헌법이 정한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보안법 남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① 한밤중에 자물쇠를 뜯고 압수수색 실시 - 전국연합 압수수색 사례¹⁵⁸⁾

1992.8.31.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사무실에서는 ‘도난’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9시께 조직국장 양제원씨가 출근해 보니 철제문이 열린 채 서랍 안이 뒤죽박죽 돼 있고 컴퓨터 디스켓 등 각종 물건들이 몽땅 없어진 것이다. 이에 양씨 등이 이 빌딩 관리실에 확인해 본 결과 청소원 문효순씨로부터 “오전 7시 40분께 출근해보니 1층 현관의 철제셔터를 잠가둔 자물쇠가 뜯겨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도난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 전국연합 관계자들은 피해물품들을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측과 성토가 오갔다. 그런데 오전 11시께 청소원 문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거짓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지난 29일 밤 9시30분께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야겠다며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물쇠가 뜯겨 있었다고 말하라고 시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결국 경찰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안기부 직원들이므로 밝혀졌다. 안기부가 김낙중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한밤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압수수색 사실의 ‘은폐’를 기도한 것이다.

② 새벽에 술냄새 풍기며 압수수색 - 윤재혁씨 사례

1999.5.31. 새벽 12시 30분경 윤재혁씨의 가족들은 잠을 청하려던 중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윤씨의 여동생이 인터폰으로 상대방과 통화했으나 상대방은 “윤대만”이라는 엉뚱한 사람을 찾아 인터폰을 껐다. 곧이어 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초인종이 계속 울려 대문을 열자 낮선 남자 2명이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왔다. 남자들에게서는 술냄새가 났다. 윤씨의 동생이 강력 항의하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경찰증을 얼핏 제시했다. 동생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수색영장을 보자”며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영장제시도 없이 방 4개를 모두 뒤졌다.

③ “국보법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서준식씨 사례

1998년 1월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상영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구속기소된 서준식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레드헌트> 외에도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소지·보관했다는 혐의가 덧붙여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집이 서준식 씨의 당초 구속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건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158) 「한겨레신문」, 1992.9.1.

별건 혐의 적용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에 있었다.

서씨가 체포되던 날, 경찰은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 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분명 <레드헌트>에 있었지만, 당시 압수수색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하루소식 합본호, 인권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압수해 갔으며, 『참된 시작』도 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¹⁵⁹⁾.

바. 기타

이 외에도 국가보안법 수사절차상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는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국가보안법 사건 내사, 국가보안법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감청 및 통화내역 조회를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또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 제3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실적올리기’를 위해 프락치 공작 또는 민간인사찰 등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프락치 공작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협박, 고문하여 프락치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프락치 공작은 공권력으로 위협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써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일상적으로 사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내사 중인 특정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원가, 민간단체,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인 사찰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미행 또는 감시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드러나지 않은 수사기관의 사찰활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관행은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거나, 수배 중이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사망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의문의 사건으로 남아있다.¹⁶⁰⁾

15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1997.12.19

160) 이러한 사망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 이철규 의문사 사건이다. 1989.5.10. 광주시 청옥동 소재 제4수원지에서 공안합수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 이철규씨가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철규씨는 조선대학교 재학시 1989.1. 교지 「민중조선」 편집위원장을 맡아 1989년 10월 창간호를 발행하고, 창간호에 실린 ‘미제침략사’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조치가 내려진 후 1989.5.3. 후배 생일 축하를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이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가 경찰의 검문을 당하자 도

1)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수사상의 필요’라는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통신제한조치(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허가를 받아 검열과 감청을 하고,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고 있더라도 그 대상자는 자신이 감청이나 검열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더구나 그 대상자 뿐 아니라 대상자와 통화 또는 전자우편을 송수신한 사람들 모두 감청 또는 검열을 받게 되어 있는 등 무제한적인 감청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통화내역조회는 직접 듣는 감청과는 다르지만 특정가입자가 특정시간대에 누구와 얼마동안 통화를 했는지 알 수 있어서 그 당사자 뿐 아니라 통화했던 모든 이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들어 수사기관들은 과거와 달리 고문이나 강압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보다는 감청, 검열 등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감시체계와 대응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① 수배자 검거위해 여자친구 방에 도청장치 설치

1999.1.10. 조계사에서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던 김대성씨의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 혼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김씨의 친구는 이날 방청소를 하다가 책장 뒤편에서 가로 3cm, 세로 6cm 크기의 검정색 물체에서 빨간 램프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장치에는 15cm 가량의 안테나가 달려 있었는데 발견 당시까지 램프가 깜빡인 것으로 보아 작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중이었다.

② 과도한 감청 및 허가서 없는 불법감청 - ‘청춘’ 사건 사례

2000.10.24. 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장안동보안분실)는 인터넷 방송 ‘청춘’의 대표 윤여창, 신봉구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윤씨 등을 체포하기 6개월 전인 6.20.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ID ‘홍대총학’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주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로 들어갔다가 술기운 때문에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수사종결 지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익사판정의 방법으로 사용된 플랑크톤검출법이 익사판정의 방법으로 적당치 않다는 지적을 비롯, 익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선행사인이 무엇인지, 검문직전 이씨의 행적 및 검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사건 당일 이씨를 검문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검문 경찰관들과 이씨를 태우고 갔던 택시 운전기사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많은 의혹을 던져 주었다.

(허가기간 2000.4.17.~2000.7.16. 허가번호 114)를 발부 받아 감청하던 중 재일본 조총련으로 발신한 전자우편을 입수하여, 이에 대한 송·수신 IP주소에 대하여 (주)한국통신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결과 전자우편을 발신한 장소가 윤여창의 집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윤여창의 집에 설치한 전화와 신봉구 명의로 가입한 ID 'chungtv'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허가기간 2000.7.13.~2000.10.12 허가번호181)를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애초 ID '홍대총학' 명의로 발신한 전자우편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이를 확대하여 발신지를 추적하고, 신봉구 명의로 ID와 전화까지 감청한 것은 정보통신에 대한 과도한 감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찰은 (주)한국통신프리텔에 의뢰하여 윤씨와 신씨의 이동전화 통화내역(2000.7.~8.), 신봉구와 통화한 이동전화의 가입자 및 통화내역을 조회하였다. 이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마저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의 정보를 무제한 검열하고 조사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인 것이다.

③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발부 받은 '허가서'를 근거로 감청 - 한단석 교수 사례

2000년 2월, 검찰은 한단석 교수를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한 교수와 최동욱(검찰은 조총련 간부라고 주장함)의 전화통화내역과 내용을 주요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는 한 교수와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유진식을 대상으로 하여 발부 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근거로 하여 취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4항¹⁶¹⁾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청구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유진식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 그의 주거지 전화를 감청의 대상으로 정한 후, 한 교수를 '관련자'로 하여 한 교수의 통화내용을 동시에 감청 할 수 있도록 감청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사, 통신제한조치를 관련자 형태로 허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유진식과 한 교수 사이의 전화감청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데, 한 교수와 최동욱의 통화내역을 감청 한 것은 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불법 감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²⁾

④ 일상적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검열 - 정명아씨 사례

2001.12.4. 경찰청 보안국(남영동 분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및 판매 혐의로

161)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4항 '통신제한조치청구서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62) 이 사건 변호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 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유진식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로 한 교수의 전화통신에 대한 독자적인 감청 등을 실시하여 얻은 자료는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원 정명아, 금수경씨를 체포했다. 정씨에 따르면 남영동 분실의 수사관들은 민주노동당 지부게시판을 페이지마다 내려 받아서 가지고 있었으며 몇몇의 글들은 특별히 밑줄까지 그어 놓았다고 했다. 이는 경찰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정씨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는 없었다.

⑤ 의료운동 단체를 4년간 내사하면서 밀착감시 - 진보의련 사례

진보의련 사건 관련으로 2001년 10월8일, 경찰청 보안국(홍제동 보안분실)에 체포되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미 수사관들은 1만여장에 달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진보의련 관련 활동자료 뿐 아니라 다른 의료운동단체의 자료까지 무제한적으로 입수되어 있었고, “4년 전부터 내사를 해왔다”고 밝힌 수사관들은 실제 4년 전 집 앞에서 산책했던 일, 자전거를 잃어버린 일 등 사생활까지 모두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4년동안 단체 회원들에 대한 내사 또는 밀착감시로 인해 확보한 증거는 없었고 다만 개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정도였을 뿐이었다. 수사관들은 한 피의자가 이에 항의하자 “미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폭력배를 만났을 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2) 프락치공작

① 생매장 위협하며 프락치 강요 - 김정환씨 사례

1989.8.28. 김정환씨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8.9. 정체모를 20~30대 남자 6~7명에 의해 차량으로 납치돼 학원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고, 알려 준 전화번호로 김건우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4번에 걸쳐 학내동향을 보고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김씨는 또 이 과정에서 괴한들이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 채 알 수 없는 산으로 끌고 가 소나무에 묶은 뒤 수배중인 국민대 학생들의 거처를 대라고 협박하고 구덩이에 김씨를 넣고 삽으로 흙을 떠 부으며 생매장 위협을 하였다고 밝혔다. 김씨의 이와 같은 양심선언이 있는 후 언론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납치 괴한들이 가르쳐 준 전화번호는 보안사 서빙고 분실의 전화번호이고 납치에 사용한 승용차의 번호는 보안사에 근무하는 근무원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¹⁶³⁾

② 군복무 중 프락치 강요 - 윤석양씨 사례

군복무 중 국군보안사에 연행돼 수사협조를 해오다 탈영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양씨가 1990.10.5. 서울기독교교회관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양심선언과 함께 탈영당시 보안사에서 갖고 나왔다는 각계인사 동향파악대상자 색인표 1천3백장, 개인 신상카드 4장, 개인별 동

163) 대한변호사협회, 「1989년도 인권보고서」, 1990

향파악 내용이 입력된 컴퓨터디스켓 30장을 공개하여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렸다. 윤씨는 90.5.1. 입대하여 군복무 중 7. 30. 사단 보안대 지하실로 불려가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 관련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프락치 활동을 권유받아 혁노맹 조직원 검거 등 수사협조를 해 왔다고 밝혔다. 윤씨는 보안사로 연행될 때부터 "너는 행운아다. 우리는 너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 함께 일해보자"는 권유를 받았으며, 그 뒤에도 "수사관으로 일하겠다면 조기 제대시켜 6급 군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 6개월 정도 현장에서 감각을 익히고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라"는 프락치 활동권유를 3~4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이병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야당 의원등 정치인을 비롯하여 추기경, 연세대 총장, 교수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이병은 보안사에 있는 동안 수사관들로부터 "만약 양심선언 같은 행동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간다. 이 조직이 무시무시한 곳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¹⁶⁴⁾

③ 안기부 프락치 활동 양심선언 통해 밝혀 - 백홍용씨 사례

1994.10.31. 백홍용씨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안기부의 프락치로 활동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백씨는 "안기부가 사건을 지휘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으며, TV뉴스 등에서 대대적으로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생각에 공포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상태에 빠져 있다"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교포들의 도움을 받아 '녹색당' 주최로 베를린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백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¹⁶⁵⁾

백홍용씨는 1991.11. 제작한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16밀리미터 영화를 1992.5.경 미국 등지에서 상영하고 귀국하자마자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미국에서의 활동에 관하여 철야조사를 하면서 "이내창이 왜 죽었는지 아느냐"는 등 협박을 하며, "수배중인 네 큰형을 언제라도 잡을 수 있다" 협박과 회유를 하였다. 백씨는 이에 못이겨 프락치 활동을 하게되었다. 그후 2일 간격으로 안기부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운동권의 동향, 개인적으로 접촉한 운동권 인사들의 사생활을 보고하고, 안기부 직원들의 지시에 의해 일본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조총련 및 한통련 등의 간부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했다. 1993.7.경 안기부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백씨에게 "지금 너와 내가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다. 하루속히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상은 김삼석, 김은주가 가능하다. 그러니 네가 잘 해주기 바란다"며 프락치 활동을 사주하였다. 김과장은 '조총련계 영화사업가한테 북과 관련된 책들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책을 전달할 사람을 김은주와 연결 시키라'거나 '북한관련 책자를 김은주를 통해서 한총련 간부에게 전달하고 김은주와 한총련 재정국을 연결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과장은 "이번 일만 잘 성공시

164) 「한겨레신문」, 1990.10.5.자 15면/ 「한국일보」, 1990.10.5.자 19면 참조

165) 이 내용은 민변의 대표로 베를린에 파견되어 백홍용씨를 만나 4박5일간 이 사건을 조사한 이기욱 변호사가 1995.2.16.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키면 윗분들이 너에게 장가갈 밑천으로 집 한 채의 포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993.9.8. 김과장이 아침에 백홍용씨를 불러내어 김은주씨가 근무하는 강남터미널 건너편 반포상가의 지하다방에서 만났는데, 김 과장은 “일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책을 갖고 오는데 조금 있으면 네가 부탁한 대로 김은주가 나갈 것이다. 김은주가 너한테 뽀뽀를 치면 연락하지도 말고 혼자 나가게 내버려 두라”고 했다. 오후 1시쯤, 안기부 요원이 다방으로 들어와 일이 잘 되었다고 과장한테 말하자 과장은 백씨에게 사무실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남산 안기부 근처 다방 김과장을 만났는데 그는 “김은주를 어제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런데 김은주가 모두 네가 시켰다고 말하니까 잠시 직원과 함께 피신해 있어라”고 지시했으며 그때부터 과장 지시에 따라 안기부 직원과 함께 대구와 경북 성주 등지로 피신하였다.

④ 취업 등 도움을 주겠다며 프락치 강요 - 강성석씨 사례

사범대생이던 강성석씨는 교생실습 첫날인 1999.5.10. 학교 선배의 소개로 국정원 직원 이○○를 만난 이후 한달 여에 걸쳐 ‘정보원’으로 활동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는 학교 선배임을 내세워 강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강씨에게 졸업 후 취업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학생회 주변 인물들의 활동 등을 알아내려 하였는데, 이미 강씨의 가족과 주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었다. 또한 강씨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접근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5.14. 이씨는 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학생회 간부, 주변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캐내려 했는데, 이씨의 집에는 학생들의 수첩, 각 동아리의 공동 일기장, 강의노트 등이 복사물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20~30명에 달하는 학생의 이름을 거론하여 강씨와의 관계와 활동 등을 추궁하였다. 그리고 용돈이라며 25만원 가량의 돈을 주려 했으나 강씨가 받지 않으려 하자 선배를 통해 쫓다. 이씨의 강요에 대해 강씨가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히자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과정을 강씨는 공개적으로 밝혔다.

⑤ 수배자 검거를 위해 프락치 공작 - 김준배씨 사례

전남지방경찰청 형사 도○○는 김준배 사망 3, 4개월 전 김준배의 선후배인 최○○와 전○○를 소개받은 뒤, 이들에게 김준배의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금 1300만원 내지 1500만원 가량을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으며, 도○○는 김준배의 은신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전○○에게 먼저 현금 500만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최○○과 전○○에게 금500만원 내지 금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전○○는 이후 김준배를 아파트로 유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였으며 김준배는 위 아파트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사망하였다.¹⁶⁶⁾

16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의문사위는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지명수배를 받아 은신 중, 같은 해 9.15. 전남도경의 추적을 받다가 광주 청암아파트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케이블선을 타고 도주하다가 4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고사한 것으로 내사 종결 된 김준배 사건에 대하여, 김준배의 검거가 경찰의 프락치 공작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⑥ 정보통신 업자에게 프락치 요구

2001.12. 경찰이 정보통신업자를 통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빼달라며 '프락치' 활동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연합 홈페이지 호스팅을 하고 있는 '인스정보통신'의 대표 변창수씨에 따르면, 한 남자에게서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장안동으로 갔다. 하지만 장안동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자신을 '경찰'이라 밝힌 뒤, 변 씨를 차에 태워 인근 건물로 데려갔다. 경찰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변씨에게 약 1시간 반 동안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실린 각종 자료들을 조사 중"이라는 말과 함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로그 파일을 넘겨 달라", "돈을 줄 테니까 전국연합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국연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넘겨달라"는 사실상의 '프락치' 요구를 했다. 변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력자 인적사항 카드'를 작성하게 했고, 변씨는 인적사항을 적어준 뒤에야 그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변씨의 설명에 따르면 변씨를 조사한 곳은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장안동 분실로 추정된다.

3) 민간인사찰

① 한총련 배후세력 척결하려고 운동권출신 5천여명 사찰¹⁶⁷⁾

서울지방경찰청이 2000년 4·13 총선 후인 4월 중순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정보과에 공문을 보내 서울소재 대학에서 80년 이후 운동권 간부를 지낸 인사들의 신상을 파악토록 지시, 5월말까지 취합 했던 것으로 2000.7.3. 확인됐다. 조사대상에는 서울시내 44개 대학의 역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총학생회 간부, 단과대 학생회장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전대협, 한총련 등은 물론 삼민투, 애학투 간부들까지 망라돼 모두 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찰 자료에는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현직 여야의원 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규모 사찰은 명백한 민간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일체의 사찰활동을 중단했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준 사건이었다.

167) <운동권출신 5천명 사찰...경찰 4월부터 한달간-사회부 사건팀>, 「국민일보」, 2000.7.5.자, "경찰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총련의 배후세력을 척결하려는 목적으로 80년대 이후 대학가 운동권에서 핵심 간부를 지낸 386세대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년연석회의는 7.10. 서울경찰청 앞에서 '불법사찰 규탄집회'를 열고 "현정부 들어 불법 민간사찰을 진행하기 위한 핑계로 '청년연석회의'를 한총련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것은 반인권적 작태"이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린 시점에서 불법사찰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찰규모와 이유를 정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선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은 “충선 직후 시경 정보관리부에서 1장짜리 공문이 왔다”면서 “80학번부터 현재까지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신상자료를 파악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는데 이 신상자료에는 운동권 간부 출신들의 재학 당시 사상적 성향과 직책은 물론 현 직업 및 직장과 거주지, ‘반미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총련 관여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월초 386세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청년연석회의’가 한총련의 배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신상을 파악토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② 국정원의 노래패 <우리나라> 사찰

2001년 8월 27일 오후4시 30분경, 서울 마포 서교동에 있는 노래패 <우리나라> 사무실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던 한 남자가, 사진 플래쉬 터지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우리나라> 단원에 의해 붙잡혔다. 단원들은 그 남자에게 신원과 사진촬영의 이유를 물었으나 그 남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필름을 뽑아 햇빛에 노출시켜 버렸다. 그런데 그 남자가 떨어뜨린 담배갑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한 단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와 <우리나라>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메모되어 있었다고 한다. 단원들은 그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서교 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 파출소에서 그 남자의 이름은 이○○이며 ‘대양왕산’이라는 회사의 영업과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사실과 회사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단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전화 통화 끝에 “회사 이름은 알려줄 수 없으나 이○○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번호가 서울시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의 전화번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국정원의 <우리나라>에 대한 ‘사찰’사건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를 포착, ‘내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이었다.¹⁶⁸⁾

168) 이에 <우리나라>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소속 단원에 대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했다”며 이○○ 등을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다.

2-2.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검찰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진 상급의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검찰은 국정원(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을 묵인 또는 방조해 왔다.

국가보안법 피의자 대부분은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될 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되지만, 검사를 대면하는 순간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85.12.2.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이근안 등에 의해 고문을 당한 뒤 1986.2.28. 검찰로 송치된 김성학씨는 검사를 대면하는 순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형사들은 나를 검찰청 유치장에 처넣으며 ‘며칠 있다가 올테니까 잘 이야기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이제 내가 당한 모든 것을 폭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들뜨기 시작했다...여기서는 무언가 말할 수 있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검사의 태도는 너무 냉랭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검사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자백을 하고 전향하시오’ 순간 나는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었다.”¹⁶⁹⁾

수십일 동안 밀실에서의 고문과 그로 인한 허위자백을 호소해도 귀기울여 듣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에서의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에 맞닥뜨려야 하는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예”, “아니오”만을 요구하는 신문을 진행하고 결국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공소장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가. 검찰에 의한 가혹행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을 해도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다시 보낸다는 협박을 일삼았으며 실제 직접 고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① 검사와 고문수사관들이 공조하여 협박 -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사례

1982.7.9. 임○○ 검사가 구치소로 조사 왔을 때 입북사실을 부인하니까, 3일 후인 12일 구치소에 안기부에서 수사했던 4명 중 박모 계장 등 3명이 와 “너 왜 검사 앞에서 부인하느냐. 자백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려고 상사들과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하느냐. 다시 가서 조사 받아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자백

169) <간첩사건에서 무죄로 풀려난 김성학씨의 고발-간첩으로 조작된 72일간의 고문>, 「신동아」, 1988년 10월호 참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그때 임 검사가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임 검사한테 그렇게 말하겠
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옆방에 가서 검사가 문자 다시 부인하였다고 한다. 그때 검사
가 또 수사관 박모 계장을 불러, “이 사람 또 부인한다. 이야기 좀 잘 해주지”라고 했다는
것이다.¹⁷⁰⁾

② 경찰 수사관들, 검찰조사시 입회 - 함주명 사례¹⁷¹⁾

함주명씨는 경찰에서의 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완성된 후인 1983.4.21. 검찰에 송치되었
으나, 그 송치과정에서도 그를 고문했던 수사관 이근안과 두 명의 경찰관이 따라와서 송
치된 날에 1회 검사신문조서가 작성될 때까지 함씨의 고문에 대한 공포는 계속되었다. 또
한 이근안은 검사에게 함씨를 송치하기에 앞서 조서내용을 모두 암기하게 한 후에 검사가
공소보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이때 무조건 잘못하였다고 자백하여야 용서를 받을 수 있
고, 만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공분실로 돌려보내어 “장례를 치르게 될 줄 알라”고
희유와 협박을 하였다.

③ 담당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데려가라” - 이장형 사례

담당검사인 이○○ 검사는 “내가 제주지점에 있어봐서 제주사정에 밝다”면서 이장형씨를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조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
가 “살려달라,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자 검사는 180도 태도를 돌변하더니 어딘가로 전
화연락을 했다. 이 검사가 수화기에 대고 “왜 저렇게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느냐” “빨리
와서 데리고 가시오”하는 말에 이씨는 다시 치안본부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눈앞이 캄캄하여 무의식적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④ 검사마저 자백 강요 - 김성학 사례¹⁷²⁾

86년 2월28일 형사들은 나를 법원 유치장에 처넣으며 ‘며칠 있다가 올 테니 잘 이야기 하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이제 내가 당한 모든 것을
폭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들뜨기 시작했다. 물론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다
만 깨끗한 사무실로 끌려가기에 여기서는 무언가 말할 수 있겠지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

170) 서중석, <한국판 25시, 송씨일가간첩단사건의 전말>, 「신동아」, 1988.8.호, 412쪽, 이 사건은
검사가 구치소에서 조사할 무렵 안기부 수사관들이 구치소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서울구치소
면담기록부에 나타났고, 이 면담기록부에는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옥박지르는 대목도 나왔다고
한다. 또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이 안기부에 연행되어 1주일간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
기도 하였다고 한다.

171) 1999.11.10. 강금실 변호사 등이 함주명 사건의 가해자인 이근안을 불법감금 독직폭행죄와 위
증죄로 서울지방법검찰청에 고발한 <고발장>

172) <간첩에서 무죄로 풀려난 김성학씨의 고발, 간첩으로 조작된 72일간 고문>, 신동아, 1988.10.호
참고

와는 달리 검사의 태도는 너무 냉랭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검사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다. ‘자백을 하고 전향하시오’ 순간 나는 온 몸에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애써 잡은 지푸라기를 놓쳐 버린 듯 마음이 허전해지며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나는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내가 당한 무자비한 고문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검사는 계속해서 자백만을 강요할 뿐이었다.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 데 고문이 없을 수가 있나? 약간의 고문은 있었겠지’, ‘내가 내용을 다 훑어 봤는데 안 했다는 건 말도 안돼. 만약에 경찰이 허위로 사건을 조작하여 간첩을 만들면 경찰들은 승진되고 포상도 받겠지만 내가 당신에 관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시간을 줄테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였다.

⑤ 검사가 직접 고문 지시 - ‘깃발사건’ 최용석 사례¹⁷³⁾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김○○ 검사를 만났을 때 검사는 몇 가지를 물어봤다. 검사는 당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서의 출처와 ‘깃발’의 주모자라는 황모씨의 소재를 물었다. 그래도 대답이 시원치 않았는지 형사들에게 ‘안되겠구만, 아래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그때 느낌이 이상했다. 공포감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수사관들이 남부지청 지하로 나를 끌고 갔다. 그곳은 주차장처럼 넓은 곳이었는데, 양동이와 주전자도 여러 개 눈에 띄었다. 형사들이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는 빗자루를 중간에 걸어 대롱대롱 매달았다. 그리고 물수건을 두른 다음, 주전자로 물을 부었다. ‘맞냐, 아니냐’고 묻는데 ‘맞으면 발가락을 까딱까딱하라’고 명령했다. 소위 ‘통닭구이’라는 고문이 그것이었다. 수사관들은 맛이 좀 약한 모양이라면서 고춧가루까지 부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다. 2~3시간 고문을 당하고 다시 검사실로 올라갔다. 내심 검사가 고문당한 것에 대해 알아채고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온몸이 물에 빠진 생쥐처럼 돼 있었는데도 검사는 아무 것도 묻지도 않았다. 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 늘어놓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넌 혐의가 없어서 나가지만 앞으로 주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끌려간 지 20여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다.

⑥ 검사의 폭행 및 협박 - 김양기 사례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검찰에서는 사실의 진상이 드러나 저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었기에 나를 죽이겠다고 고문하던 수사관들이 검찰에까지 따라와서 저의 진술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저는 조서내용은 고문과 폭행으로 꾸며진 것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부인하려면 보안대에서 부인하지 왜 여기 와서 부

173) 지난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용석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985년 이른바 서울대 ‘깃발 사건’ 관련자로 체포돼 검찰에 조사를 받던 중 당시 담당검사였던 김○○ 검사가 수사관인 김모 경사 등에게 직접 고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 검사는 1985년 당시 서울지검 남부지청 소속 검사로 주로 공안사건을 담당하다가 서울대 ‘깃발 사건’의 주임 검사로 수사를 벌였으며,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직접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는 것이다.

인하느냐, 조서내용대로 시인 안하면 다시 보안대로 돌려보내서 죽여 버리도록 하겠다. 너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죽여 버릴 수 있다. 평생을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며 양쪽 뺨을 후려치고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꿰어앉히고 옆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이 같은 검사의 행위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움이었고 무서움이었으며 절망으로서 2개월 동안 보안대 지하실 속에서의 공포 속에 떨어왔던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¹⁷⁴⁾

⑦ 검사가 다시 돌려보내 고문 - 정삼근 사례¹⁷⁵⁾

어느 날 목욕을 시키고 이발도 하게 하더니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가더니 오늘 좋은 사람 만나러 가니까 얘기를 잘 하면 집에 빨리 보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냐니까 검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만난다니까 “아! 검사한테는 내가 모질게 당한 걸 다 얘기하고 그동안의 조서 내용 같은 것은 다 거짓이다. 고문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고 될 것 같아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자하게 굴던 검사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면서 “이 새끼 정신이 덜 들었군. 가서 정신교육 좀 더 받고 와야겠어” 그러더니 다시 보안대로 보내져서 약 12일 동안을 확인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발바닥을 활을 정도로 치욕적이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⑧ 검찰에서 10여일간 철야조사 - 방양균 사례

연행 22일후 검찰에 송치는 되었으나, 구치소에 수감시키지도 않고 검찰청에서 10여일 동안 철야조사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수갑을 채운 채 밥 먹고 잠자고 대소변을 보게 하는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이적행위를 한 적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 하자 검사는 “거짓말하지 마라” 10여차례 구둣발로 차는 등 고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74) 김양기, <상고이유서>, 1987.3.26. 그러나 대법원(1987년 6월3일자 판결)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과 검찰의 폭행에 대해 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심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검찰에서의 폭행·협박이나 사법경찰관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75) 정삼근(1968년 납북되어 148일만에 귀환하여 살아오던 중 18년이 지난 1985년 5월 불법 연행되어 54일간 고문당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선고) 사례

나. 검찰의 기소과정

검찰의 공소장은 대체로 하급수사기관이 올린 의견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물론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빠지거나 보태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흔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과거 안기부 또는 보안사 등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시절에는 이들 수사기관이 올린 ‘의견서’의 내용을 틀린 글자까지 베낄 정도로 그대로 공소사실로 인용해왔다. 또한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기소가 강제되기도 했는데 이는 1964년 8월의 인혁당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¹⁷⁶⁾

① 안기부의 의견서와 꼭 같은 검찰 공소장 - 강용주 사례¹⁷⁷⁾

저는 순진하게도 안기부에서 조작된 것을 검사에게 말하면 억울함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걸 더하다만요. 조서나 자술서가 아니라 안기부가 만들어 보낸 ‘의견서’라는 것만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고, 내가 부인하면 조서작성을 중단한 채 ‘안기부로 다시 갈 것 이냐’면서 압박질했습니다. 모든 조서는 검찰청이 아닌 구치소에서 꾸미는 중이고 가족면 회도 안되는 데다가 안기부의 수사로 인한 위축감과 자포자기 심정인지라 검사의 협박은 무엇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서 검사가 ‘의견서’를 보면서 불러주는 대로 대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소장이 안기부가 작성한 ‘의견서’와 글자 한자도 틀 리지 않고 똑같다는 게 내가 ‘간첩’이 되어있다는 사실만큼 놀라웠습니다.

② “중정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 검찰관의 증언
검찰수사는 중앙정보부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하였는데, 당시 검찰관인 이 원무는 “제가 검찰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정에서 제공한 증거 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관은 한마디로 바지저고리여서 권한이 없었습니다. 중정 에서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조서를 꾸며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내가 검찰관으로서 들은 사실은 중정에서 받은 대로 조서를 받아내라는 것이었고”라고 진 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¹⁷⁸⁾

176)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른바 ‘인민혁명당사건의 죄상’을 발표하고 도예종 등 4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그런데 그해 8월 17일 이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지검 공안부 이용훈 부장검사, 장원찬 검사 등이 자백에 임의성이 없으며 기소할 혐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내버린 사태가 일어났다. 검찰고위층은 담당검사들을 설득하다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검사로 하여금 일단 기소하게 하고 서울고검 한옥신 검사로 하여금 재수사케 하였다.

177) 위 강용주씨 사례

178)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 천주교인권위원회/인혁당사건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위한 대책위원회

다. 10여년전이나 똑같은 공소장 모두(冒頭)사실

검찰의 태도는 국민의 정부 들어 변화양상을 띠게 된다. 국정원 등 공안수사기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이에 반해 검찰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온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화해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관과 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인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적으로 주도해 가게 된다. 이로인해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뿐만 아니라 공안분야의 정책 조정 기능까지 갖게 되었고, 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안’의 잣대에 의한 강경한 대처를 초래하게 된 배경이 된다. 결국 검찰의 역할 가운데 공안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공안적 논리와 관행을 양산하게 된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냉전적인 인식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북한을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규정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조직된 불법조직 된 반국가단체”¹⁷⁹⁾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이러한 인식은 구속·기소를 남용하는 결과를 빚게 되고 그로인해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179) 2003.11.19. 서울지검, 공소장 모두사실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 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남한의 노동자·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하여 청년학생·지식인·중소상인 등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고,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한편...”

2-3. 재판절차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공판심리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법원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객관자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어야만 수사단계에서 행해진 인권침해가 구제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의해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되어 수십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무죄를 입증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에게 사법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현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왔다.¹⁸⁰⁾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 있어 법관이 사상적 예단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유죄의 예단을 갖고 사상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 공세를 퍼거나 때로는 ‘간첩’ 운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함에도(형사소송법 제280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때로는 포승을 묶은 채로 공판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상 보장된 모두진술(형사소송법 제286조), 최후진술(형사소송법 제303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통해 공판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 방청을 제한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이 행사되기도 하였다.

검사는 수사권 등 막강한 공권력을 활용하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위증혐의로 소추하겠다는 위협을 하거나, 증언 내용을 바꾸려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검사의 행위에 대해 법관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이를 묵인, 방조하기도 했다.

180) 적어도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초 발생하여 유죄와 무죄를 오가며 2년 이상을 끌어온 사건이 결국 무죄로 확정되고 말았던 ‘송씨일가간첩사건’에서도 우리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송기복씨를 포함한 이른바 ‘송씨일가간첩사건’ 관련자들은 최소 75일, 최대 116일간 불법구금된 채 안기부에서 고문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1982.3.초 관련자들이 불법연행된 지 6개월만인 9.10. “80년대 최대의 간첩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2년 이상을 끄는 재판과정에서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2심에서는 공소장이 축소변경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법원은 두 번에 걸쳐 무죄판결 취지로 최고 사형판결까지 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모두 대법원판결에 어긋나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되올리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세 번째 고법 판결 결과 최고 징역 7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민변,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가. 비공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은 ‘형사피고인은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공개주의는 공판절차의 심리과정과 재판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감시시켜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청객을 검문하고 방청을 제한하는가 하면 사전에 방청을 제한함으로써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참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주요한 공안사건의 경우 재판당일 법원 주위에서 전투경찰이 법원 출입자들을 검문하며 방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귀가하도록 강권하고, 법정 안에는 수많은 경찰관이 자리를 차지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나머지 빈자리에 수용할 수 있는 일반 방청객들만의 입장을 허용하는 수가 많다. 또한 비공개 재판을 할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있는 증인을 법정으로 부르지 않고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등에서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공중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도 있다.”¹⁸¹⁾

이러한 비공개 재판은 50일간¹⁸²⁾ 수사기관의 지배하에 놓여있었고, 때로는 장기간 불법 감금된 채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이 처음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재판과정은 그렇지 않아도 권위적인 공판정의 분위기 더해 피고인을 주눅들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① 보안사 요원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 재판 - 이상철 사례

재판은 가족들도 볼 수 없었고 보안사 요원이 형님 곁에 붙어서 감시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결백을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안사 수사관들이 작성한 의견서와 똑같은 내용이 공소장이 되고 판결문이 되어 형님은 간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형님 얼굴을 1심 판결이 끝난 후 볼 수 있었는데, 2달여만에 본 형님의 얼굴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¹⁸³⁾

② 밧줄로 묶인 채 재판 - 김태룡 사례

우리가 재판 받으러 갈 때 12명 가족이 모두 온몸을 시뻘건 밧줄로 줄줄이 묶여 다녔어

181) 민변·KNCC, 「한국인권의 실상 -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역사비평사, 1992

182) 국가보안법의 경우 제19조 구속기간연장 규정에 의해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기간에 더해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183) 이상철씨 동생의 이상수씨의 증언

요. 밧줄에다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누린 가족을 대서 치감아 꿈쩍도 못하게 했지요. 우리는 재판정에서 말은커녕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재판이라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러면 재판이 끝나는 건가'하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자신이 사형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한 집안에 징역이 몇백년이나”고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조금만 알았다라면, 이렇게 무식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모두 한탄했습니다.¹⁸⁴⁾

③ 가족에게도 방청이 제한된 비공개 비밀재판 - 인혁당 사건 사례

재판은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해서 구성된 비상군법회의의 공판정에서 열렸는데 재판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가족에게까지도 방청이 극히 제한된 비공개 비밀재판이었고, 재판정은 무장한 헌병들로 뺑뺑하게 들어차 살벌한 분위기였다. 변호사의 반대심문이나 피고인들의 자기변호가 검사나 판사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발언에 의해서 번번히 제지당했으며, 증인신청이나 증거물 보전 신청 등이 모두 기각 당했다.¹⁸⁵⁾

④ 전경 및 사복경찰관들로 법정 장악 - 임수경씨 사례

임수경씨와 문규현신부의 밀입북사건 5차공판이 열린 8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대법정 주변은 지금까지의 이 사건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법원과 검찰청사 주변 곳곳에는 10여대씩의 전경버스가 진을 치고, 청사출입문마다 방패와 곤봉을 든 전경들이 수십명씩 배치돼 출입자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다. 지금까지 주요시국 공안사건 재판이 열리던 때와 조금도 다른 모습이었다. 법정 안은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그 동안 4차례 열린 재판에선 그래도 일반 방청객들이 50여명 이상씩 나와 재판을 지켜봤지만 이날은 임씨의 가족 한 두명을 제외하곤 일반인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사복경찰관 등 '질서유지요원' 30여명만이 넓은 방청석 맨 뒤쪽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 법정 한 가운데는 텅 비어 있었다.¹⁸⁶⁾

184) 김태룡씨 누이 김순자씨의 증언

185)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담당교도관으로 있었던 전병용씨의 기록>, 「사법살인 : 1974년 4월의 학살」, 2001/ 2002.9.1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다”며 인혁당 사건이 ‘사법살인’임을 공식 발표하며, “재판을 담당했던 군사법원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부인한 혐의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거나 불법적 고문수사에 항의하는 발언을 기록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판조서를 허위 작성했으며, 피고인들의 증인 신청을 단 한 차례도 받아주지 않거나 가족도 피고당 단 한명만 방청을 허락하는 등 재판과정을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186) 김랑기 기자, <기자수첩>, 「조선일보」, 1990.1.9.자 3면

나.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불법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방지는 현실적으로 사법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수사절차의 불법관행들은 사법절차의 요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법원이 불법수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결과의 진실성을 배척한다면 대부분의 불법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 법원은 국정원(안기부), 경찰, 검찰이 불법관행을 통해 획득한 ‘자백’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에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게다가 법정에서도 사실상 자백이 강요되며 진술거부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불리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헌법 제12조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자백이 고문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증거능력을 배제’(제309조)하며, 또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강증거’를 요구(제310조)하고, ‘수사기관의 조서와 피고인의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제’(제312조, 제313조, 제316조)하며, ‘피고인 및 제3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17조)고 규정하여 엄격한 증거법칙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보안법 공판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무색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2항)으므로 이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국정원(안기부) 등 수사기관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한 경우 그로인한 억압된 심리상태가 검찰 송치 시까지 계속되어 검사 앞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인해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유죄인정을 위해서는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가 아니고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하

다”¹⁸⁷⁾고 보강증거를 확대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고문에 의해 인정한 특징인이 북한 또는 외국에 실존하고 있’거나 영사관에서 작성한 ‘영사증명서’¹⁸⁸⁾ 등이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로 인정되는 동시에,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듯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여러명을 조직으로 묶어 자백을 받을 경우 그 자백들이 서로 보강증거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자백’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법원이 자백을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백을 얻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문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사건의 확대, 왜곡, 조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이념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① 고문 폭로는 무시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로 인정 - 구명우씨 사례

제 남편은 1986년 9월초 느닷없이 기관원들에게 연행되어 남영동 보안대에서 40여일간 조사를 받은 끝에 줄지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혐의는 일본에서 조총련계 인사에게 ‘민방위 훈련은 한달에 1번 한다’는 것과 ‘싸이렌의 종류’, ‘한강대교 등의 경비사항’을 파악해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그 모두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달에 한 번 모든 국민이 참가하는 민방위 훈련이 ‘국가기밀’이란 말입니까? 또한 한강대교, 강화대교 등의 경비상황 파악이라는 것도 연애시절 저와 함께 데이트할 때 버스를 타고 여행할 때 파악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의 증거나 증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40일간의 조사를 통해 남편이 했다는 진술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치소에서 2개월만에 만난 남편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고문에 의한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습니니다. 남편은 남영동에서 40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집단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은 물론이고 실제로 죽일 것처럼 목을 매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지 증언이 무슨 근거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판사는 재판정에서 이런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물며 남아있던 고문 상처마저 증거로 보여도 증거가 전혀 없는 고문 조작된 조사내용만을 인정하였습니다.¹⁸⁹⁾

② 고문에 못이긴 것이든 어쨌든 자백으로 인정되므로, 항소하라 - 차풍길씨 사례

187)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도1730 판결

188) 영사증명서란, 영사가 해외에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평가하는 확인서를 말하는데 이러한 영사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동포단체와 개인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할 때, 그 단체나 개인이 반국가단체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마는 것이다.

189) 구명우씨(1986년 불법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 구명우씨 부인의 증언

마지막 1심 재판 날이 3월28일이었는데, 3월31일자로 연기된 공고를 보고, 다시 31일 9시 40분에 도착하니 가족도 없이 재판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재판시간은 10시였습니다.) 부장님께서 피고인에 대해 “큰 죄는 찾을 길이 없고 혐의사실도 없지만 다만 고문에 못 이긴 것이든 어쨌든 서류를 볼 때 순수한 자백으로 인정하고, 어떤 처지든 간에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으므로...”하시며, 증거도 없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10년이나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하라는 것입니다.¹⁹⁰⁾

③ 고문, 협박, 유도심문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 - 이병설 교수 사례

제자들이 선생과 일년에 두 세 차례 만났는데 선생이 일본을 자주 드나드니까 조총련을 만나는 간첩인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조작극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유죄의 유일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고문에 의해 만든 선생인 저와의 대화 내용들입니다. 말한 사실이 없는 내용을 저에게는 “제자들은 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했다고 하느냐”면서 시인을 강요하고 제자들에게는 “이 선생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했다고 하느냐”면서 구타,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재판이 열릴 때까지 제자와 저는 한 번도 대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진술서는 제자들의 진술내용을 모아 편집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재판 시, 제자들이 고문과 기망을 당한 사실이 다 폭로되었으며 공소장 내용 중 60여 군데가 부인되었는데도 판결문은 오자마저 똑같이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고문과 협박, 공갈에 의해 검찰에 가서 진술내용을 반복하지 못하게 해 놓고 고문하지 않은 검사 앞에서 시인한 진술서의 임의성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¹⁹¹⁾

④ 영사증명서만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 인정 - 홍성담씨 사례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990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된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공동의장 홍성담씨에게 원심파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출판된 책자 등을 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간부에게 보내고, 대형결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 등으로 간첩·회합·이적표현물제작·찬양 등 7개의 죄목으로 구속 기소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럽민협 간부인 성낙영씨가 북한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낙영 목사는 유럽민협의 국제부장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라는 내용의 주 서독대사관 서기관 작성 영사증명서¹⁹²⁾를

190) 차풍길씨(1982.8. 불법 연행되어 66일간 장기구금당 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의 사례

191) 이병설씨(1986.9. 서울대교수 간첩단 사건, 이른바 진달래사건으로 구속)의 사례

192) 사설 <간첩죄 요건과 강요된 자백>, 「한겨레신문」, 1990.9.27. “...또한 그 작성경위와 작성자의 공정성에 의문의 여지가 남는 영사증명서만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 인정한 사실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간첩’이 되고 해외동포

인정하여 성낙영 목사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 인정하였다.

이렇듯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 그리고 보강증거로 제3자의 진술¹⁹³⁾ 또는 '영사증명서'등이 유일한 경우에도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는 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으며, 수사과정에 '고문 또는 구속의 장기화 등의 사정 때문에 임의성 없이 자백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백을 검사 앞에서 한 번 더 되풀이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것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¹⁹⁴⁾했다.

결국 법원의 이러한 재판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중형선고

위와 같은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는 국가보안법 피고인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형량으로 이어졌다.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형이 마구 선고되었다.

아래 표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통해 본 1심 형사공판사건의 사형선고 인원이다. 이 통계자료는 1970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사건의 사형선고 인원과 반공법사건의 사형선고 인원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사형선고 인원의 14.3%, 5.1%를 각 차지함으로써, 이른바 사상범의 사형선고 비율이 19.4%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숫자로 보면 95명이다.

와 그 단체들이 '국제적 미야'가 되어 온 것이다..."

193) 대법원, 1983.11.8. 83도2436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일 뿐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한 것이다.

194) 대법원, 1984.11.27. 선고84도2252판결,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원에 의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적게는 75일, 많게는 116일의 장기 불법구속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 ...검사가 위 구치소에 임하여 피고인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위 수사원들이 피고인들을 면접한 점 등의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검사에 대한 자백은 부당하게 장기화한 신체구속 후에 또 다시 신체상의 고통을 받거나 않을 까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상태 하에서 한 임의성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사형선고 인원수¹⁹⁵⁾ (단위 : 명)

연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전체
전체	37	45	39	24	27	33	32	14	17	18	32	33	35	19	18	25	23	18	489
국보	7	11	13	2	7	8	5	1	-	1	2	1	6	4	1	1	-	-	70
반공	-	13	1	2	1	-	-	2	-	2	3	-	1	-	-	-	-	-	25

위 표에 따르면 정치범, 즉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혐의자에 대한 사형선고 건수가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그보다 축소된 범위 내에서의 사형이 선고된다. 그러다 19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사형선고가 비교적 많은 해는 1971년, 1972년, 1975년, 1982년 등으로 대체로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높았던 시기이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선 정부가 그 기반을 다지고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의 하나”로서 형벌권을 강화한 시기와 합치된다.¹⁹⁶⁾

또한 이러한 사형선고는 재판의 적법절차도 보장하지 않은 채 진행되기도 했는데, 재심의 기회마저 박탈한 채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16직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이었다. ‘인혁당’사건의 경우는 1975년 4월8일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바로 다음날 새벽 사형수 8명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형 확정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피고인의 재심의 기회를 박탈한 사법부의 폭거라 하겠다.

① 자유당정권이 간첩누명 씌워 - 진보당 조봉암 사건

제4대 민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1958.1.12. 서울 시경 형사대는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과 김달호, 박기출 등 간부 6명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후 조봉암 김기철 등을 추가로 구속하였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조봉암이 평화통일방안을 주장함으로써 북한 괴뢰 집단과 야합, 남북연립정부수립을 기도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10월 25일 고법에서 사형이 언도되었고 재심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59년 7월 30일 이를 기각하고 그로부터 17시간 후인 31일 상오 11시 사형이 집행되었다.¹⁹⁷⁾ 진보당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이후 제3의 정치세력으로 떠올랐

195)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0~1990년

196)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579쪽 참조

197) 「경향신문」, 1990.6.14.자, 6월 13일 공판에서 조인구 부장검사는 조봉암과 양명산에게 사형, 윤길중에게 무기징역, 박기출 김달호 이동화 김기철에게 각각 20년씩을 구형했다. 그러나 7월 2일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병진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간첩혐의를 인정치 않고 보안법 위반만 적용, 조와 양에게 각각 징역 5년씩 언도하고 나머지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부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공판건을 보고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자세를 무색케할 정도로 1심 판결법관을 맹렬히 비난했다.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

으며 조봉암은 일약 이승만의 강력한 정적으로 부상하여 4대 민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오던 중이었다.¹⁹⁸⁾

② 진보적 일간지 「민족일보」 사건

민족일보는 4·19 혁명 이후 혁신계 인사들이 모여 1961년 2월 창간한 진보적 일간지로 부정부패를 고발하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분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한다는 사시 아래 한국의 중립화 및 정치적 평화통일에 앞서 남북협상과 경제·서신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을 적극 주장하였다. 5·16쿠데타 이후 7월 23일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이 일본에서 북한 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돼 신문은 폐간되고 '혁명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어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확인 절차로 형이 집행되었다.

③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 집행 -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4년 중앙정보부가 “도예중 등 23명이 인혁당 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3명 중 8명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7명), 징역 15~20년(8명)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 뒤인 75년 4월 9일 형이 집행됐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법살인이자 증거인멸이었다.

한편 반드시 사형이 아니라도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사건에서는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 표는 1970년부터 1987년까지 형사사건 대비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건 무기징역 선고 비율이 8%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 지 모르겠다.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198) 「경향신문」, 1991.10.26.자, 1991.10.25. 윤길중 민자당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86명은 59년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된 죽산 조봉암 전 국회부의장(2대)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조봉암은 일제시 항일 투사였으며 초대농림부장관과 제헌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을 뿐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면서 “그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유당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죄누명을 쓰고 비명에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당 정부는 조봉암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내통,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고 간첩죄를 범했다고 했으나 당시 평화통일론은 절대 다수 국민의 공통된 의사였으며 그는 결코 간첩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기징역(금고) 선고 인원수¹⁹⁹⁾

연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전체	42	44	73	47	64	62	65	60	68	60	59	68	90	83	105	104
국보	4	10	13	8	7	4	3	1	-	2	2	5	7	3	4	5
반공	-	-	3	2	2	1	-	3	-	3	2	-	1	-	-	1

<표>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기형(징역·금고) 선고 인원수²⁰⁰⁾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9	00	01
전체	88	81	65	70	150	121	91	109	76	82	113	105	133	117	105
국보	4	-	1	-	-	1	1	4	-	-	-	-	-	-	-
반공	1	-	-	-	-	-	-	-	-	-	-	-	-	-	-

국가보안법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되기까지 공판과정 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주심판사로 이른바 조작간첩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주심이었던 나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 하나가 있다. 1987년 8월, 29세의 강아무개라는 청년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광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이었다. 그는 17세 때 일본으로 밀항하여 조총련계 조선고급중학교를 다닌 것, 그것을 발단으로 하여 평생을 감옥살이해야 했다. ‘22세 때 북한에 다녀오기 위하여 공작선을 탔으며, 이틀 후 평양에 도착하고 당일 노동당에 입당하며, 그로부터 12월 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범죄사실은 ‘국내에 드나들며 북한을 찬양하고 비슷한 사안에서처럼 기밀탐지 등을 하여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물증이라는 것이 ‘평양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 1개와 겨울쉐타 1벌’인데, 문제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제1심 법원의 법정에서도 국선변호인 앞에서 범죄사실을 모조리 자백한 것이다. 항소심에 와서 비로소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자백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았다. 북한에 가서 머문 동안의 행적에 관하여 하루세끼 밥반찬 종류는 물론 노동당 수첩의 번호 198097까지 한 구절 오차없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까지 되풀이하며 자백한 것이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옳겠다고 생각한 것은 공소사실 자체에서 내다보이는 조작성 때문이었다. 북한에 다녀오고 말고는 고사하고 국내에서의 간첩활동이라는 것도 어디에 발전소가 있고 군부대가 있고 하는 것을 탐지했다는 등 판에 박은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리가 없었다. 상고기각의 판결이 불가피하고 보니 항소심 재판에 부아가 치밀었다. 사형 다음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그렇게 아무 감정도 고뇌의 흔적도 느낄 수 없는 것은 처음

199) 내무부, <국정감사 보고자료>, 1988.10. 684쪽

20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6~2002년

보았다. 그 재판장이란 사람이 원망스러웠다. 그 사건은 상고기각이 되어 법률상 틀림없는 재판으로 확정되고 말았지만 두고두고 꺼림칙해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²⁰¹⁾

라. 사상재판

한편, 무죄추정과 증거중심의 대원칙을 누구보다 앞장서 견지해야 할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예단’에 의한 ‘사상재판’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사건에 관한 법관의 재판진행은 편파성과 선입관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① 사건과는 관련없는 비방 발언 - 김진엽씨 사례

1990. 5. 25. 열린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은 김진엽씨가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김일성이는 우리 국민을 수백만명을 죽게 했으면서도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현 정부가 어째서 독재정권이나”, “피고인의 아버지도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가”, “피고인같이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로운 재판이나”는 등 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²⁰²⁾

② 판사가 재판정에서 ‘간첩 놈’이라는 등 욕설과 예단발언 - 장창호씨 사례

1993년 5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고등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민족해방애국전선(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장창호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장씨가 모두진술 도중 최근 슬롯머신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여 “공안검사들 역시 권력지향형 검사”라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나무라며 퇴정을 지시했다. 이에 장씨가 재판장의 시종일관되는 반말에 항의하며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자, 판사는 “간첩 놈에게 어디 박수를 치냐”며 예단발언을 하였다.²⁰³⁾

201) 박우동, 「회고 에세이 - 판사실에서 법정까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 158~160쪽 참조

202) 대한변호사협회, 「1990년도 인권보고서」

20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위와 관련하여 ‘심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가 첫 재판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해보지도 않고 ‘간첩’이라는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③ 재판장이 반성 강요 - 김낙준씨 사례

1999년 9월 8일, 서울고법 합의2부는 김낙준에 대한 항소심 심리에서 모두진술을 요청하는 김씨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으며, 그마저도 10초만에 중단시켜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한 진술을 가로막으며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느냐?”, “장남인데 가족을 부양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젊은 사람이 왜 그래?”라고 하는 등 사건과는 무관한, 주로 개인의 사상문제만을 거론하며 심리를 진행했다. 또한 김씨가 최후진술을 하는 도중 “알아듣기 힘들다”며 중단시키고 직원들에게 끌고 나가도록 했다. 한편 선고일인 9월 22일에는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어머니를 생각해라”며 선고를 10월 13일로 연기했다. 10월 13일에는 김씨가 법정에 들어설 때 방청인들이 박수를 치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10월 27일로 다시 재판을 연기하며, 다시 한번 ‘반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2-4.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

가.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

사상전향제도는 한 국가나 권력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 인간내면의 세계를 직접적인 폭력이나 제도적인 억압장치를 동원해 강제로 바꾸는 제도로, 이때 전향이란 소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일정한 생각이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은 잘못되고 사악한 것이며 앞으로는 체제에 충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에서 사상전향을 할 때에는 이것을 문서로 표시해야 하며 안기부요원 한명과 교도소 간부들로 구성되는 '전향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전향이 확정된다.²⁰⁴⁾

사상전향제도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구 교정누진처우규정, 제정 1969.5.13, 법무부령 제111호)의 독소조항에 기인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수형자의 작업성적, 소내 생활, 복역연수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승급케 함으로써 처우를 완화하고 가석방의 특전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확심범으로써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를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위 법령 제2조 5항²⁰⁵⁾에 의해 비전향수는 감형도 없이 영원한 무급수로 남아 끝없는 감옥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확심범을 제외시키는 누진처우제도를 반체제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왜곡시킨 것은 제국주의로 치닫던 일본이다. 일제는 이 제도를 정치범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합법화해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가혹하고 엄격한 구금의 성격으로 변질시켰다. 이 왜곡된 규정이 한국의 행형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상과 양심의 탄압하는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²⁰⁶⁾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기존의 전향제도는 유명무실해 지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좌우 갈등이 격화된 1949년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보도구금 조항을 삽입했고, 1956년에는 법무부장관령에 따라 사상전향을 공식 제도로 확립했다.²⁰⁷⁾ 이때부터 비전향 장기수의 전향 여부는 관계당국의 주된 관심 사항이 되었고, 관계 당국은 전향을 유도하는 각종 행형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지시했다. 이는 '공산주의 포회(抱懷) 수형자의 교정 교화에 관한 건'²⁰⁸⁾이라는 당시 행정국장(오늘날 법무부 교정국장)의 공문과 1969년의 <좌익수형자 사

204) 서준식, <반민주적 전향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장기복역양심수 실태자료」, 민가협 장기수가 족협의회, 1992. 105쪽

205)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제5항은 1992.3.23. 법개정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바뀌었고, 이후 1998년 사상전향제의 폐지에 따른 1999.5.20. 법개정시 삭제됨.

206) 서준식, 앞의 책, 1992. 93쪽

207) 최정기,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 책세상, 2002. 56~69쪽 참조

상전향 심사방안>에서 잘 드러난다.²⁰⁹⁾

이러한 전향 공작은 교회사(전향을 전담하는 교도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소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정보당국의 요원이 장악하고 있었다.²¹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비전향 장기수 전원에 대한 강제전향공작이 시작됐다. 1973년 3월경 전향공작교회사가 공개채용 되었으며, 1973년 7월에 전향공작전담교회사가 각 교도소에 배치되었다.²¹¹⁾ 1973년 6월 비전향 장기수가 수감되어 있던 4개 교도소(대전, 대구, 전주, 광주)에 '좌익수형자 전향 공작 전담반'이 만들어지고, 동년 8월2일 법무부 예규 제108호로서 '좌익수형수 전향공작 전담반 운영 지침'이 시달되면서 전향 공작은 본격화되었다.²¹²⁾

당시 진행된 전향 공작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을 통한 테러였는데, 전향공작반 요원들이 직접 행하기도 했지만, 폭력배 출신의 일반 수형자가 동원되기도 하였다.²¹³⁾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전향수들이 전향공작 테러를 견디다 못해 강제 전향을 하거나, 그 과정에

208) 「행형관계법령예규집」, 1958, 교화13 ; 최정기, 앞의책 각주 66 재인용

209) 이 문서는 단계적인 전향 공작 방법까지 기술하고 있다. 즉 비전향수를 대상으로 공작하는 5 단계-반성촉구, 전향공작, 공작결과 및 동정 파악, 전향심사, 전향문 발표-를 구별하고, 각 단계별 필요조치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는 독거 수용에서 감시하는 방법, 전방, 소장 면접까지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다.(법무부, 「교정예규」, 1978, 507~417쪽), 심지어 비전향수가 발병하여 그 가족이 면회를 신청한 경우에도 전향에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하여 면회를 허가하라는 내용도 있다.(법무부, 「교정예규집」, 847~848쪽) ; 최정기, 앞의책, 각주67 재인용

210) <좌익 수형자의 사상 전향 심사 방안>(1964년 1월11일)이라는 공문에는 전향심사를 할 때 각 지구의 중앙정보부에 의뢰하여 관계관이 참석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법무부, <교정예규집>, 712~715쪽) ; 최정기, 앞의책, 66쪽

211) 2002.8.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법무부와 중앙정보부가 함께 추진한 ‘전향공작과정’에서 비전향 장기수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중간발표를 하면서, “1974.6.5. 중앙일보에 실린 신직수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무원 공채시험 공고’가 표면상 ‘재소자 교화·교육 담당’을 모집하고 있지만, 이는 전향공작 전담요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당시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무원 공채 공고’문(1974.6.5.자 중앙일보 2면)을 공개했다. 당시 중정은 전향공작전담반 50명을 선발하여 비전향장기수 500명이 수감된 광주, 대전, 대구, 전주 등 4개 교도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2) 1978년 대구 교무과장이 비전향 장기수를 모아놓고 “너희들에게는 전향이나 죽음이냐는 선택 밖에 없다”(서승, <서승의 옥중 19년>, 137쪽)고 했다는 것은 전향공작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

213)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은 좌익수형자를 전향시키기 위해 일반수형자 중 전향시책에 동조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대전교도소 특별사동(좌익수형자 수용사동)의 사방청소부 직책을 부여하였다. 사방청소부들은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의 묵인 하에 좌익수형자를 폭행하면서 전향을 강요하였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도자료, ‘장기수형자 전향공작 중 폭행으로 사망’, 2002.8.29.)

서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부분이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1) 전향공작 중 사망

전향 공작은 알몸구타, 물고문, 무차별 구타, 강제급식, 침속(針束)으로 전신 찌르기 등 직접적인 폭력행사에서부터, ‘엄정 독거’, ‘기아 급식’, ‘운동시간 말소’, ‘추위엔 독거, 더위엔 혼거’, ‘병자에게 약 지급 중단’, 위협, 공갈, 신경전, 책 압수에 이르기까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자행²¹⁴⁾되었으며, 이러한 전향테러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체계 뿐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아갔다.

① 강제전향공작 항의하며 단식투쟁 중 강제급식으로 인해 옥중사망 - 손윤규씨 사례

손윤규씨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 1976.3.말경 동료들과 단식하다가 8일만에 병사로 옮겨져 4월 1일 세 번째 강제급식을 받고 2시간만인 19:20경 사망하였다. 손윤규는 대구교도소에서 수형생활 기간 중인 전향공작 전담반 요원인 박○○에 의해 1974.6. 전향서를 강제로 작성한 후, 이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실시, 3회에 걸쳐 강제급식을 당하였고 전향처리 되지 않았다. 1976.3.24. 대구교도소 전향공작전담반 요원인 박○○로부터 강제전향 공작을 받고, 다음날 아침부터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교도소 측에서는 3월 27일과 30일에 2차례 강제급식을 실시하였고, 4월 1일 죽물 2그릇을 강제급식하였다. 강제급식 이후 약물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부소장 배○○이 ‘형집행정지 건의하고 가족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여, 17:40경 대구지방법원 검사 김○○로부터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손윤규는 17:20경 사망하였다.²¹⁵⁾

② 대전교도소 수감 중 강제전향공작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 - 최석기씨 사례

최석기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74.4.4. 20:05경 5사동(가병사 특수방) 독거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대전교도소 ‘좌익수전향공작반’은 1973.8.6. 교무과장 김○○을 중심으로 유○○, 나○○, 이○○ 등 3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반에 교회사와 교회사보 등 2명씩 배치되었다. 교무과장 김○○은 주재회의를 통하여 각 반에 비전향좌익수형자를 약 30명씩 A, B, C급으로 분류하여 최석기를 나○○ 조에 배당하였고, 전향좌익수형자들도 전향 후 추수지도라는 동향관찰을 위해 배당되었다. 좌익수전향공작반은 폭력전과자 조○○을 동원하여 강제전향공작을 진행하였으며, 조○○은 1973.8.30.부터 9.20.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안○○ 등을 전향시켰다. 조○○ 등 2명은 1974.4.4. 격리 1방에서 최씨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바닥에 눕혀 놓은 후 전향을 강요하며 폭행하였다. 한 명은 가

214)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장기복역양심수 실태자료」, 1992. 132쪽

21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였다.(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손윤규 사건(진정 제52호, 1976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III」, 2003.2.12.)

슴 쪽에 올라타고, 다른 한 명은 다리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배 등 몸 전체를 마구 폭행하여 결국 20:05분에 최씨를 사망하게 하였다.²¹⁶⁾

③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기고 자결 - 박용서씨 사례

박용서씨는 1974.7.20. 자신의 거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대전교도소 ‘좌익수전향공작반’은 1973.8.6. 교무과장 김○○의 지휘하에 3개반으로 운영되었으며, 박씨는 유○○조의 김호남에게 배당되었다.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은 일반수형자 중 전향시책에 동조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특별사동의 사방청소부 직책을 부여하였다. 사방청소부들은 대전교도소 전향공작반의 묵인 하에 좌익수형자를 폭행하면서 전향을 강요하였다. 1974.7.19. 사방청소부 이○○과 교도관 김○○은 박씨를 격리사동 1방으로 전방 한 후 13:00~15:00까지 장부보다 약품 개수가 적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김○○은 주먹으로 박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이○○은 박씨의 전신을 발로 차거나 바늘로 찌르면서 답변을 강요하였다. 박씨는 16:00경 이○○의 부축을 받아 자신의 거실인 8사동 6방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22:00경 옆방 양○○에게 ‘바늘로 온몸이 찔렸다. 정말 이렇게 살아 있으면 무엇하나, 교도소의 만행이 너무 한다’고 말하였다. 박씨는 1974.7.20. 01:00~03:00 사이에 작은 유리파편으로 자신의 좌측충경동맥과 우측대퇴동맥을 절단하였고, 05:30경 실혈사로 사망하였다. 거실 벽에 세로 방향으로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겼다.²¹⁷⁾

2) 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1992년 2월15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 장기수 42명은 사상전향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온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조항이 사상범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내포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수형자들처럼 행형성적이 우수해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도소 내에서의 제반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그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사상범 또는 확신범을 일반 수형자와 달리 처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²¹⁸⁾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규정은 민주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심지어 사상전향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

21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였다.(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최석기 사건(진정 제56호, 197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III」, 2003.2.12.)

2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였다.(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박용서 사건(진정 제57호, 197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차(2000.10~2002.10) III」, 2003.2.12.)

218) 민가협,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자료집」, 1992.

장하였다.²¹⁹⁾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난 1995년 5월25일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나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 하였다.’²²⁰⁾

3) 전향제도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95년 한국을 방문 조사하여 작성, 제출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유엔 공식문서로 채택되었다. 1995년 11월2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상전향제도가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약)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죄수는 교정당국에 의해 그 신념을 포기하도록 요구받는다. 재소자들이 이러한 사상전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제재를 당한다. 즉 가석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면대상이 되지 않으며, 서신왕래와 면회에 관한 그들의 권리가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목적에 관계없이 이러한 관행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규정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기존 질서에 적대하거나 반감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알려진 수감자들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한다.”²²¹⁾고 권고하였다.

219) 헌법재판소 92헌마32,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본건 규정의 목적은 청구인들에게 사상전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로부터 다른 일반 재소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민주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들과 같은 확신범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파괴하려는 사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본건 규칙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본건 규정으로 인한 간접적인 결과라 하겠습니까.”

220) 이 헌법소원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제2조 제1항 제5호(“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는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한 것인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된 날(1991.4.14.)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청구했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소원의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그 사상을 포기’하기만 하면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나 현재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이므로 헌법 소원 제기 기간은 매 시점마다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묵살하였다.(민주화실천가죽운동협의회, 보도자료 “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해 유엔제소”, 1998.6.8.)

221)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 문서번호 E/CN.4/1996/39/Add.1 1995년 11월21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 씨가 유엔 인권위 결의안 1993/45에 의거하여 한국방문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

4) 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

1998년 정부는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였다. 당시 법무부는 '전향제도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준법서약' 또한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로 또 다른 형태의 전향제도'에 다름이 아니었다. 당시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향제도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전향제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전향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공안사범들에게 서약을 받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전향제도의 존속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양심수에 대하여 석방을 미끼로 서약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의 행위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그 어떠한 제도도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상황에 큰 관심을 갖는 인권단체로서 모든 정치범에서 그러한 반성문을 전제로 해서 석방하겠다는 정권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원래 전향제도가 일제의 잔재이며,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므로 이는 다른 제도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철폐해야 하는 것이다." (222)

위와 같이 준법서약제는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아울러 그 집행과정에서도 인권을 침해해 왔다.

① 준법서약제도 철폐요구 농성 중 가석방 취소, 재수감된 사건 - 송계호씨 사례

1999.10.6. 송계호씨가 법무부의 가석방취소로 재수감되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최경원)는 1998.11.16. 의정부교도소의 송계호씨에 대한 가석방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취소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취소 이유를 '한총련과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명동성당에서 1998.10.16.부터 1999.1.까지 준법서약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바로 이 농성 중에 송씨는 가석방 취소를 당했고, 농성을 끝내고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던 중 순천지검에 체포, 순천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23)

222)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연대성명, 1998.7.1.

223) 송씨는 1998년 8.15 특사조치 당시 준법서약에 사인을 하고 잔여형기 7개월 19일을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석방 뒤 준법서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98년 10월 준법서약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이 농성은 준법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석방된 정 선씨와 김태완씨가 자신들이 한 준법서약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준법서약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진행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송씨가 뒤늦게 참가한 것이었다. 이를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재수감된 것이다. 준법서약제도 폐지 등 법 제도의 개선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의

이러한 전향제도에 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제78차 회의(2003년 7월15일)에서 대한민국의 ‘사상전향제도’가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B규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1998년 5월 수감중인 강용주씨를 대리하여 조용한 변호사가 개인통보를 제출(제소;Communication)한 것에 대한 결정으로,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정문을 통해 “사상전향제도의 강압적 성격에 주목”하고, “이런 제도는 피수용자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차별적 관행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적 기초 위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인권규약 제26조(평등권), 제18조 1항(사상·양심의 자유), 제19조 1항(표현의 자유)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사상전향제도는 1998년 6월 폐지되고 준법서약제도 대체되었으며, 이 제도는 강제로 운용되지 않으며, 석방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한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사상전향제도의 강압적 성격은 그 뒤에 나온 준법서약제도에서도 유지된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준법서약제도 역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되는 제도임을 재확인하였다.²²⁴⁾

이렇듯 국내외로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아왔던 준법서약서 또한 2003년 8월 폐지되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준법서약서를 규정한 법무부 훈령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은 법 자체로써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 또는 보안관찰 면제 결정시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은 여전히 ‘사상전향’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나. 장기구금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사상을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는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아래는 복역횟수가 30년이 넘는 장기구금자들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²²⁵⁾

사표현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재수감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인신을 구속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24)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 제78차 회기 관련, 통보번호 878/1999, 결정번호CCPR/C/78//D/878/1999. 결정문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강씨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문제되는 위반사항들의 가혹함에 상응하는 배상을 강씨에게 제공해야 하며, △장래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해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대한민국 관보에 실을 것을 요구했다.

일반수의 경우 15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조치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전향수의 경우 감형, 가석방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3,40년 초장기구금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례적인 가석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풀려났던 것이며, 대부분이 한두가지 이상을 병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수감중 사망한 경우도 있다.²²⁶⁾

<표> 장기수들의 복역년수

이름	체포일	출소일	복역년수	이름	체포일	출소일	복역년수
김선명	1951.10.15	1995. 8.15	43년10개월	최수일	1965. 3. 5.	1999. 2.25.	33년11개월
안학섭	1953. 3.	1995. 8.15.	42년 5개월	리경찬	1965.11.12	1999. 2.25.	33년 3개월
이종환	1951.10.	1993. 3. 6.	41년 5개월	왕영안	1958.	1991. 5.25.	33년
우용각	1958. 7.12.	1999. 2.25.	40년 7개월	김동기	1966. 5.18.	1999. 2.25.	32년 9개월
김우택	1952. 2.25.	1991. 2.25.	39년	장 호	1958. 7.25.	1991. 2.25.	32년 7개월
윤용기	1959. 7. 3.	1998. 3.13.	38년 8개월	임병호	1959. 9.27.	1991.12.24.	32년 3개월
한장호	1957.11.20.	1995. 8.15.	37년 9개월	박완규	1967. 9. 9.	1999. 2.25.	31년 5개월
방재순	1953. 8.	1991. 2.25.	37년 6개월	이공순	1967.12.10.	1999. 2.25.	31년 2개월
장병락	1962. 4. 4.	1999. 2.25.	36년10개월	박봉현	1960. 2.19.	1991. 2.25.	31년
홍명기	1962. 4.22.	1999. 2.25.	36년10개월	신인영	1967. 3. 9.	1998. 3.13.	31년
이경구	1952.11. 7.	1989. 6. 9.	36년 7개월	홍경선	1967. 9.17.	1998. 3.13.	30년 6개월
안영기	1962. 8.12.	1999. 2.25.	36년 6개월	윤수갑	1967. 9.	1998. 3.13.	30년 6개월
최선묵	1962. 8.12.	1999. 2.25.	36년 6개월	김종호	1961. 5.25.	1991. 5.25.	30년
류한욱	1955.	1991. 2.25.	36년	김익진	1969. 6.10.	1999. 2.25.	29년 8개월
최하중	1962. 3. 5.	1998. 3.13.	36년	김창원	1969. 6.12.	1999. 2.25.	29년 8개월
홍문거	1957. 5.20.	1993. 3. 6.	35년10개월	양정호	1969. 6.16	1999. 2.25.	29년 8개월
양희철	1963. 4.24.	1999. 2.25.	35년10개월	오 형식	1969. 6. 5.	1999. 2.25.	29년 8개월
김명수	1957. 7.28.	1993. 3. 6.	35년 8개월	이재룡	1970. 6.19.	1999. 2.25.	29년 8개월
허영철	1955. 7.	1991. 2.25.	35년 7개월	김은환	1969. 9. 8.	1999. 2.25.	29년 5개월
김인수	1962. 8. 9.	1998. 3.13.	35년 7개월				

225) 30년 이하의 장기구금자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 표로 정리하지 못했다.

226) 비전향장기수는 1999.12.말 손성모, 신광수씨가 출소함으로써 전원 석방되었고, 이 가운데 63명은 2000.9. 복으로 송환되었다.

다. 그 외 차별적 처우(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처우를 중심으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수형자들에게 사회복귀에 대한 희망을 주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행형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처우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수형자들은 차별적인 처우를 당해왔으며, 특히 1998년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이 규정이 사상전향제도의 법률적 근거였던 만큼 이 규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비전향장기수였다. 위 규칙 제2조제1항제5호²²⁷⁾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를 D급에 분류하여 모든 처우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뿐만아니라 사상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특정 교도소에 수용하였으며, 이와함께 ‘전향반, 공작반을 설치하여 전향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좌경의식을 포기하도록 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하게 한다’는 명분에 따라 구금생활에서도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1992년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들 41명은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구금과정에서의 불이익 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²²⁸⁾

1) 독방구금

행형법에는 독거수용을 2년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보안법 수형자들은 위 분류처우 규칙에 의해 제외됨으로써 3~40년이 넘도록 무기한 장기독거수용을 강요당하고 있다. 행형법에는 독거수용을 2년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전향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 수용자는 3, 40년 무기한 장기 독거 수용을 강요당하였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기만씨 등 2명은 오랜 독거생활과 물리적 정신적 고민에 의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였으나 89년 전향하여 석방될 때까지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외 혼자서 거의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도 모두 독거수용 되었다.

2) 형기의 문제

소내취업을 하는 일반무기수의 경우 대략 16년에서 18역을 복역하면 모두 석방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수형자들은 ‘엄중독거’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역을 나갈 수 없고

227)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1969.5.13. 법무부령 제111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교정누진처우규정」이었으나 1991년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으로 개칭하였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조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제2조 제5호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를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2.3.23. 규칙이 일부 개정 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 그 내용이 변화되었고, 이 규정은 1999.5.20. 개정시 제36조(급외)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다가 2003년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228) 민가협, 「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자료집」, 1992

따라서 행형 소각점수를 소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해 감형, 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3, 40년의 초장기 구금자가 발생하고 있다.

3) 소내 취업 금지

출역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작업이 금지됨으로 단계별 승급이 불가능하여 처우의 완화가 가석방, 감형의 대상에서 어김없이 제외된다.

4) 의료 처우문제

1976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최한식씨는 심장병과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사로의 전방을 요구했으나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약반입을 불허시키고 동료들의 병수발 요청까지 불허하여 결국 1976년 5월에 병사했다. 대구교도소에서는 1968년에서 1975년 사이에 오랜 옥고와 영양실조, 고문에 기인한 불치병을 앓던 김대섭씨를 비롯한 8명의 비전향수가 독방에서 병사했다. 1986년 대전교도소 최주백씨는 위암 3기로 죽음을 선고받은 위급한 상태에서 임○○교회사로부터 계속 전향을 종용받다가 끝내 외진 한 번 받지 못하고 10월에 병사했다. 대전교도소 최재필씨도 전향을 하지 않고 엄중 독거수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진이 불허돼 87년 5월 병사했다. 1986년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있던 이선우씨는 폐암 3기의 진단을 받고난 뒤 전향을 하지 않으면 외진을 받을 수 없다는 회유에 울며 겨자먹기로 전향을 하고 광주 모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미 때가 늦어 입원한 지 얼마 안돼 사망하였다.

5) 기타 소내 처우상 문제

70년대 후반까지 대전교도소 비전향수들은 방사형 공간에 한사람씩 격리되어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5분에서 10분 사이에 운동을 끝내야 했다. 그리고 5.16쿠데타에서부터 1980년 초반까지 비전향수는 직계가족과도 서신을 할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 허가된 서신에 한해서도 글자수를 200자 내로 제한시켰으며 한글자라도 넘으면 시정할 기회도 주지않고 그대로 폐기시켜 버렸다. 가족이외에 일체의 서신왕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많은 비전향수는 수십년간 편지 한통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비전향수는 원칙적으로 직계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되었고 전향공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만 허가하였다. 또한 소장이나 순열관과의 면담을 신청할 경우 당연히 허가가 되어야 하나 거의 불허되었다. 1974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권낙기씨는 순시 나온 보안과장에게 소내처우의 개선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는데 건방지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하실로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 다시 1975년 7월30일에서 8월27일까지 28일간 소장접견을 요구하며 죽음을 무릅쓴 단식농성을 한 끝에 힘들게 소장면담을 할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의학서적, 스포츠 잡지, 중고등 학교 교과서류를 제외하고 모든 서적이 거의 불허되었다. 소지할 수 있는 책의 수도 제한을 해서 사전류를 제외하고 3권 이상 넘을 수 없었으며 1973년에서 1975년은 모든 책을 강제적으로 압수 당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필기도구 소지가 금지되었고 검방 때 연필 등이 발견되면 혹심한 구타를 당했고 징벌을 살아야 했다.

2-5. 석방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침해 실태(보안관찰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은 징역형을 선고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안관찰법인데, 이 법은 소위 ‘사상범’을 공식적인 통제장치에 가둬두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²²⁹⁾

이러한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안전법은 유신독재가 한창이었던 1975년 7월16일 제정된 것으로, 일제가 만들어낸 사상범에 대한 세가지 보안처분제도를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것으로 소위 ‘재범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①보안감호처분, ②주거제한처분, ③보호관찰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을 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내려 무한정 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직후인 1975년 8월19일 처음으로 감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명이었으며, 이후 1989년 이 법이 폐지될 때까지 감호소에 수감된 사람은 모두 155명에 이른다. 또한 감호소 수용 중 사망한 사람이 15명에 이른다.²³⁰⁾

① ‘사회안전법 폐지’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제급식 중 사망 - 김용성씨 사례

김용성씨는 사회안전법에 적용되어 청주보안감호소 수감중 ‘사회안전법 폐지와 피보안감호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단 단식농성 과정에서 1980.7.11. 감호소측의 강제급식으로 사망하였다. 김씨는 1964.6.7. 간첩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7.6.10.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에 사회안전법에 의해 2년의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고, 1978.11.18.부터는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1979.4.27. 보안감호처분 기간이 갱신되었다. 김씨는 ‘이미 주어진 형량을 다 치르고 만기출소한 사람인데 이렇게 구금시켜 놓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서적압수 조치를 계기로 1980.7.9.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참여하였다. 1980.7.11. 이○ 청주보안감호소장은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호과장 오○○와 의무과장 오○○를 호출, 강제급식을 지시하였고, 감호과 사무실에서 강제급식이 실시하였다. 김씨는 19:30경 강제급식 중 갑자기 ‘억!, 억!’ 소리를 내다가 고개를 옆으로 떨구면서 쓰러졌고 19:50경 사망하였다.²³¹⁾

229) 국가인권위원회,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2002, 213쪽

230) 사회안전법 피해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 「빼앗긴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 사회안전법 위헌소송 자료집」, 1991, 참고

23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김용성 및 그 유족

② 고무호수를 입에넣고 진한 염수를 퍼넣는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 - 변형만씨 사례
 변형만씨는 1958.5.14.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3.3.1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사회안전법 감호처분 2년을 확정받아 1975.8.16.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1977.2. 갱신되어 청주보안감호소로 이감되었다. 변씨는 청주보안감호소 수용 중 감호소 측의 부당한 처우에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단식으로 항의하다 1980.7.11. 감호과장 오○○의 지휘하에 교도관들이 피보안감호자들을 감호과로 연행하여 고무호수를 입안에 집어넣고 소금이 엉켜있는 진한 염수를 퍼넣는 강제급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변씨는 ‘다시 수용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사회안전법이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서적압수 조치를 계기로 1980.7.9.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참여하였다. 1980.7.11. 이○○ 감호소장은 강제로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해 감호과장 오○○와 의무과장 오○○를 호출, 강제급식을 지시하였고, 감호과사무실에서 강제급식이 실시되었다. 변씨는 19:15경 강제급식을 받던 중 의식을 잃은 후 피를 토하였다. 의무실로 옮겼으나 22:30경 사망하였다.²³²⁾

이러한 사회안전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일사부재리의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89년 5월29일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은 보안감호처분만 삭제되었을 뿐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나 ‘주거제한처분’은 그대로 남겨 놓고 있으며, 사회안전법이 법원의 판결없이 행정처분만으로 10년 이상씩 감옥에 가둔 것이라면, 보안관찰법은 주거지에 가두는 “창살없는 감옥살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제4조, 5조, 6조, 9조 등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형기를 선고받은 자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법무부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피보안관찰자가 되는 자는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처분은 2년에 걸쳐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결국 무제한적으로 일생을 감시와 통제 속에 갇혀 지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대상자는 출소 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를 통해 각종 사생활 자료를 당국에 보고해야하고, 그 신고기간(7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²³³⁾

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함.(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진정 제 58호 김용성 사건)

23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변형만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함.(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진정 제 54호 변형만 사건)

233)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이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종교, 가입단체 등을 신고한

이와 같은 보안관찰제도는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재범”이라는 행위가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이미 형을 집행 받은 자에게 출소 후 보안관찰법을 적용,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부의 행정처분만으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리게 되며, 보안관찰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지위 해제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 죽을 때까지 보안관찰 처분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다.

보안관찰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할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²³⁴⁾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보안관찰법의 목적은 사회 재적응을 위한 것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위한 수단”인 보안관찰법이 전제로 하는 것은 ‘북한 공산집단’의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보안관찰법은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사상통제법이라 하겠다.

보안관찰법이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보안관찰처분의 주된 근거는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거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릴 때, ‘주거지가 인적이 드물고, 북과 가까운

후, 3월 간의 주요활동사항, 자신이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일시 장소 및 내용, 3개월 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찰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법제18조)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찰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거주 및 여행 예정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와 회합·통신을 금지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장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재범방지조치(법제19조)를 할 수 있다. 한편 보안관찰법은 벌칙조항(법제27조)을 두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벌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법제27조2항)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안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안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8 <합헌·각하> 1997.11.27.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간첩 접선 및 침투 간첩 은신, 간첩 거점확보 등이 용이하다'거나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와 흡사하다. 게다가 보안관찰 '면제결정'을 받고자 하여도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이라는 요건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보안관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꺼내 보이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19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뒤 실시한 8.15 사면 직후 당시 법무부장은 '석방된 공안사범들 보안관찰법에 의해 계속 관찰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출소자에 대해 보안관찰법 적용을 강화하여 사면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했다.²³⁵⁾ 이는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이 감옥에서는 전향제도나 준법서약서로, 출소한 사람에게는 보안관찰제도란 형태로 적용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사상통제 장치로서의 보안관찰법은 또 다른 이름의 국가보안법이다.

235) <박상천 법무부장관 인터뷰 '석방된 公安사범들 보안관찰법에 의해 계속 관찰하겠다'>, 「월간 조선」, 1998. 9월호, 박 장관은 사면 출소자에 대해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사면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공언하였다. "출소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공안부 검찰 나름의 심사를 거쳐 석방한 것"이라며 이에 덧붙여 "보안관찰법에 의해 사후(事後) 관찰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준법서약 때문에 공안에 허점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6. 그 외 - 연좌제 등

헌법은 제13조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연좌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는 예외였다. 국가보안법에 연루되는 순간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며,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기도 한다.

가족 중 누군가가 국가보안법 사건 특히 간첩 사건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족들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직간접의 횡포에 시달려야 하고 때로는 이를 견디다 못해 살던 곳을 떠나야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뿐만아니라 공직에로의 진출이 제한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국회 및 사회 각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나 사회적 불이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① 동네 아이들이 ‘빨갱이 자식’을 총살한다며 나무에 묶어놓고 놀이 - 인혁당 사례

1975년 4월9일 새벽,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여덟사람 중의 한 사람, 그의 어린 아들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처참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후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그의 어린 아들을 동네 꼬마들이 끌어내어, 목에 새끼줄을 매어 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자식이니 총살한다고 하면서 놀이를 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네아주머니들이 그러한 장면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그저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큰 아이는 소풍을 가서 점심을 먹는데 다른 급우들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밥도 먹지 못하고 결국 한 쪽 가장자리의 나무 뒤에 숨어서 겨우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²³⁶⁾

② 국가보안법 전력이유로 교수임용 거부 - 전승일씨 사례

1996.9.17. 전승일씨는 부산예술학교로부터 ‘교수 신규임용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다. 학교측에 따르면 전씨가 서울대 미대 재학당시 화가 홍성담씨의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측은 이 대학 만화예술과 학과장과 교수,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 신원조회 결과에 상관없이 전씨를 교수로 임용해 달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했다.

③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라는 이유로 교사임용 거부 - 차정원씨 사례

1983년 서울교대에 입학, 95년 8월 학교를 졸업한 차정원씨는 같은 해 12월 초등교사 임

236) 전병용, <사법살인 : 1974년 4월의 학살>,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12.

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사 결과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라는 이유로 1996년 8월 임용을 거부당했다. 차씨는 “교육공무원법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임용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신원특이 사항’을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고법에 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이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²³⁷⁾

④ 사면복권 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이유로 임용거부 - 이우완씨 사례

이우완씨(1999년 경상대 인문대 학생회장, 한총련 대의원)는 1999.10.8.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00년 8월 사면·복권되었다. 이씨는 2002학년도 경남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 진주시 소재 K고등학교를 지원, 2차 면접까지 통과했으나 경찰의 신원조사²³⁸⁾ 기록을 받은 학교측으로부터 인사규정상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이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이미 관계 법률에 정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아 이중의 피해를 본 것’이라며 2002.4.24. K고등학교 교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²³⁹⁾

⑤ 국가보안법 전력이유로 학사사관후보생 시험 불합격 처리

김모씨는 2002.12. 학사사관후보생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국군기무사의 신원조회에서 대학 재학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2003.4.16.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학사장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를 대리해 학생중앙군사학교

237) 1998.9.16.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38) 경찰의 『신원조사 업무처리 규칙』은 사면복권된 형사범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한해서는 전과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9)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K고등학교장이 이씨를 교원으로 임용제청하지 않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된다’며 ‘교장은 빠른 시기에 이사회에 임용 제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 회보에 있어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통보하게 한 관행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정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며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정한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2002 진차 47)

장을 상대로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소장에서 “학사사관후보생 모집공고의 결격사유에는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경우’등만 명시됐는데도 국방부가 군인사법 10조1항의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²⁴⁰⁾

240) 「연합뉴스」, 2003.4.16.

3. 소결

이 장에서는 헌법과 국제규약이 정하는 형사절차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볼 목적으로 첫째, 국가보안법 상 특별형사소송규정을 통해 법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둘째, 체포·구속·수사·재판 및 구금, 석방 이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특별형사소송규정’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에서와는 다른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칙 규정은 그 변천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조항이 피의자의 권리보다는 수사상 편의를 우선에 둔 내용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의 적법성 상실로 인해 기본권 제한 법률로서의 적정성 또한 결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제19조(구속기간연장), 제20조(공소보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남용’의 소지가 높아 인신구속의 엄격한 제한을 요하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며(참고인 구인·유치), ‘피의자를 장기간 수사기관의 관리하에 둬’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외부교통권 및 방어권을 제한하며,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구속기간연장),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제나 준법서약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공소보류)으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은 인권의 원칙에 맞게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그 적용절차 즉 체포에서부터 수사, 재판, 이후 복역과정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조작간첩’ 사건 사례는 불법체포, 장기간 불법감금, 고문 수사 등 국가보안법 사건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들 사건 외에도 국가보안법 사건 대부분에서는 영장없는 강제 연행, 불법체포가 관행화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점차 개선된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의동행 형식의 사실상 강제연행, 연행과정에서의 폭력성, 무관한 사람을 연행했다가 풀어주기, 미란다원칙 미 고지 등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영장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긴급체포를 남용함으로써 과도한 인신구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영장에 기재되지 않는 물품을 압수하여 이를 근거로 별건 구속을 남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국가보안법 전담 수사기관들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인신을 구속하고 짜맞추기 수사 등으로 실적을 올리려는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상의 상금,

보로금 등의 조항은 이러한 관행을 부채질하고 있으며,公安관련 분야의 과도한 인력 배치가 이를 증폭시켰음은 이미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셋째,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고문수사 관행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고문에 의해 어떻게 사건이 조작되고, 피의자가 '간첩'으로 만들어지는가를 피해자의 호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기고문, 물고문, 성기고문 등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극한 상태에 이르도록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의자를 철저히 무력화시켰고, 이러한 고문은 수사기관이 원하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다.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착각이 들 정도”가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은 ‘일상적인 행동이 간첩행위로 둔갑’하기까지 자행된 고문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이러한 고문수사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전과 같은 살인적인 고문행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금도 자백위주의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여전히 잠안재우기, 구타, 각종 기합, 협박, 폭언 등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지능적인 고문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러한 고문은 고문 받을 당시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남기고 평생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로 인해 목숨을 끊게 되는 등 그 폐해는 너무도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 고문피해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고문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는 현실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문수사관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고문을 유지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무엇보다公安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고문수사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公安수사기관의 존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넷째, 또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재판을 유도하거나,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언론 역시 사실확인 과정 없이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한 가족은 물론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함으로써 피의자의 외부교통권,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도·감청으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 민간인 사찰, 프락치 강요 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인권침해관행은 인권 수호 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 및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까지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수사기관의 불법과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실적을 올리,公安수사기관의 유지

확대 방편과 더불어 검찰, 사법부가 이에 대한 제동을 걸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법부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는 관행이 이를 부추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위주의 수사를 하기보다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공소장을 작성해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 신문 내용을 부정할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거나 때로는 직접 가혹행위를 지시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검찰의公安적 인식은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태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거나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도리어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대부분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예단에 의한 재판, 사상 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형이 확정된 후 복역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전향공작과 처우상 차별, 장기·독방구금 그리고 감옥 밖에서 마저 보안관찰법을 통한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고통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연좌제와 사회적 차별, 냉대라는 세대에 걸친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인권침해를 이유로 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보안관찰법은 여전히 남아 형기를 마친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국가보안법 관련 당사자가 당하는 피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이데올로기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기검열 시스템’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법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제반 법률, 제도, 관행의 제거와 국민의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5장 국가보안법 개정사

연구 목적 및 방향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법률 제10호로 공포,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만들어지기 5년전, 민법이 만들어지기 10년전의 일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56년 동안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 법의 입법 및 개정 내용과 정치적 배경, 개정절차의 적절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확대, 유지되었고, 제정과 개정의 실질적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확대적용을 원하는 세력의 정치적 성격, 제정과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살펴보는 것은 이 법의 제정과 법 운용상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과정이 될 것이다.

1. 국가보안법 제정(법률 제10호) : 1948.12.1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이후 남로당과 주변 좌익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목표로 한 이승만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비상사국의 비상입법이라는 점과 한시적으로 사용¹⁾할 것을 들어 논쟁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그 근간으로 삼고 졸속 제정되었다.

가. 제정 배경 및 과정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1948년에는 미군정 하에서 남한내 총선거(5월10일)가 실시되고, 헌법이 공포(7월 17일)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8월15일)되었다. 그러나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발생하고, 10월 19일 4·3사건을 재진압하라는 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순천 지구 주둔 제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다.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은 1948년 9월 20일, 김인식 의원 외 33인에

1) 제헌국회 제5회 속기록 중 「제56차 회의록」, 1389쪽, 권승렬 법무부장관 발언 “지금 우리는 건국을 방해하는 사람하고 건국을 유지하려는 사람하고 총·칼이 왔다갔다하고 하루에 피를 많이 흘립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총하고 탄환입니다. …… 이것은 물론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해 신생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9월 29일 제 77차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이송하여 법안 기초작업을 의퇴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 휴회로 기초작업이 중단되었던 ‘내란법안’은 여순사건으로 인해 기초안 작성을 서두르게 된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국회의원들은 10월 27일 외무국방위원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중간보고를 받은 당일 법사위에서 3일안에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의 기초안을 만들어 줄 것²⁾을 동의하여 통과되었다.

법사위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 초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많은 국회의원과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조차도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법사위원장 스스로 “여순사건에 밀려서 여유를 두지않고” 기초한 사실을 자인³⁾, 새로운 안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 사이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김옥주 의원의 47인은 11월 16일 열린 제105차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기론과 제정론이 하루 종일 토론을 벌였으나 폐기동의안은 37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11월 18일 일부자구만 수정된 국가보안법안이 상정되었고,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에서는 신성균 의원 등 20명은 제1조⁴⁾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폐기동의안 때와 같은 격론 끝에 수정동의안 마저 부결되었다. 노일환 의원은 제2조 대해서도 전문 삭제의 구두 수정동의를 제안했으나 자구 수정 정도로, 전문6조로 된 원안이 통과되었다⁵⁾.

이렇게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보고 접수⁶⁾ 되었으며,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애초에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안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법사위 심의를 거치면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명칭이 기존 구형법⁷⁾상의 내란죄와 중복된다는

2) 정광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란법’을 법사위에서 기초해줄 것을 제안했다.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방사능 큰 소요사건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지금은 일반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초조하고 … 그 일에 당하고 있는 경찰 방면에서나 지금 현재의 제도와 법 밑에 있어 가지고는 임무수행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을 누누히 말하고 부탁을 합니다. … 이번에 무엇이든지 시급히 작성하여 이 사태를 수습해서 앞으로 장래의 치안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역사비평사, 1989, 81쪽 재인용

3) 1회 속기록 중 「99차 회의록」, 845쪽. 박원순, 앞의책, 82쪽 재인용.

4) 제정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左)에 의하여 처벌한다.”

5) <제1회 108차 국회본회의, 국가보안법 통과>, 「서울신문」, 1948.11.20

6)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역사비평사, 1989

7)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1912년부터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1953년까지 일본형법을 의용하여 사용한 형법을 현행 형법과 구별하기 위하여 ‘구형법’이라 부른다. 8.15이후 한국에

이유로 10월 27일에 열린 국회 제89차 회의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기 시작하였고 제108차 제2독회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다⁸⁾.

- 9월 29일 김인식외 33인의 의원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동의하는 안건 제출
- 10월 19일 여순사건 발발
- 10월 27일 여순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여순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급하게 ‘내란법’을 법사위에서 기초해 줄 것에 대해 의결
- 11월 9일 국가보안법 초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나 많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재검토하기로 결정
- 11월 16일 김옥주외 47명의 의원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토론 끝에 37대 69로 부결
- 11월 18일 일부 자구만 수정된 법안 상정
- 11월 19일 심의에 들어가자 신성균 의원외 20명에 의해 ‘제1조 삭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고 국가보안법 통과
-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보고 접수됨
-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 시행

이러한 제정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 법이 매우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1948년 9월 20일 제출된 법안이 자구수정까지 마무리된 것은 불과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심의기간 중에 법률전문가의 의견제시나 국민 여론의 반영, 반대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의 토론기회가 모두 박탈되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처리되고 말았다⁹⁾.

진주한 미군은 군정법령 제21호로써 구형법을 그대로 존속시켰고 그 후 대한민국 수립이후에도 제헌헌법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에 의해 그 효력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박원순, 앞의책, 80쪽

8) 제1회 국회 속기록 중 「제108차 회의록」, 993쪽

9) 제정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시의 각계 여론을 담은 보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여론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계 여론>, 「세계일보」, 1948.11.19. “지난 10월에 발생한 전남 폭동사건을 계기로 하여 치안 안정에 급한 나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 5조로 된 국가보안법을 기초하여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안법 상정과 아울러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를 가르쳐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지적하여 맹렬히 반대하였으며 보안법 내용에 있어 추상적인 동시에 대상의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민중은 지난 40년간 지나치게 억압되었었다. 파괴적인 자유를 기대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와 잃었던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으며, 다대한 기대 속에서 탄생한 대한정부는 마땅히 민의를 고루고루 살펴 준비한 법규에 앞서 간소한 헌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하여 마지

또한 초기에 내란행위의 처벌에 중점이 주어졌던 법안이 여순 사건 직후 제정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바뀌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는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조직 형태의 좌익결사 존재 그 자체를 말살 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¹⁰⁾.

이는 제정 국가보안법의 2조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좌익세력의 구체적인 폭동이나 범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좌익단체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하는데 이 법률의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다¹¹⁾.

나. 제정과정과 논란

1) 제정반대 입장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당시 신문 등 여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제출되자 조선일보는 11월 14일 신문에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라는 사설을 실었다¹²⁾.

않는 바이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계 여론은 어떠한가? ▷ 尹在旭의원 : 현재로 보아 이 법이 광범하다면 광범하다 할 수 있고 협소하다면 협소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국제적 체면으로 보아도 그렇고 또 민심수습이 과연 강권으로만 될 수 있을 것이며 당당한 사람에만 잘 통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 이발공 金長씨 : 보안법이라구요? 먼저 모르겠습니다. 굶지 않고 밥이나 먹으면 되죠. 그리고 오너라 가너라 소리 없으면 맘 편안. ▷ 金대법원장 談 : 포고령 2호와 같은 막연한 법령을 폐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현시국에 적합한 법령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기 전에 무어라 말할 수는 없으나 법을 제정할 때는 민중의 여론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중이 요구하는 적합한 법령이 되기 바란다. 여기에는 민중의 소리를 좌우하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크다.”

10) 박원순, 앞의책, 80~81쪽 참조

11) 이러한 이 법의 성격은 제정과정에서도 지적되었다. 다음은 노일환 의원의 발언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의 사상 속에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판단해서 단죄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리가 아닐뿐더러 부당한 처벌이 인민대중한테 내려가기 쉬운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운동을 하고 청년단체 기타 학생단체를 망라해 가지고 독립과정에 있는 이 나라를 자주독립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네들이 추상적인 이 법률에 의해서 얹매이지 않으리라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제107차 회의록」, 995쪽

12)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 점령 지역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위와 그 발전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제헌의회의 소장파로 분류되던 48명의 제헌의원들도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적극 반대하여 11월 16일 국가보안법 폐기안을 제출하였다¹³⁾.

반대의 논거는 첫째 국가보안법으로 공산당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애국지사까지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헌영 의원 “속담에 고양이가 쥐를 못 잡고 씨암탉을 잡는다는 격으로 이 법률을 발표하고 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 놈 시대와 같이 잡아다 물 먹이고 이놈 자식이 그랬지 하면 예예 그랬습니다. 이래서 거기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꼭 써야 하면 분량을 맞추어서 써야 하는데 이 법안은 분량이 맞지 않습니다.”¹⁴⁾

조국현 의원 “우리는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만들자고 했지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만들다가 3천만 민중이 무고한 백성들이 걸리는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손만대에 죄를 우리 자신이 짓고 말 것입니다.”¹⁵⁾

둘째,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같이 국민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던 주동인물로 후에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신성균 의원의 발언이다.

“민주주의 헌법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다수 일어나는 반란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헌법정신은 몰락하고 인민을 극도로 속박하는 법률을 우리 자체가 또 만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¹⁶⁾

제정반대 의견중 셋째는 “사상은 법으로 막을 수 없고 사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있으나, 그러한 직접 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서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여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운의 실체는 일찍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의 제영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 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 「조선일보」, 1948.11.4

13) 폐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동 법은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법과 다름없으며 무고한 인민을 좌익으로 몰아넣어 결국은 더 큰 혼란을 야기케 한다”, “정부가 국민사상의 정화운동도 하지 않고 사상탄압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 “정부에서 하등의 제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의기관인 국회 자체가 민의를 배반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신문」, 1948.11.17

14)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 중 「제99차 회의록」, 847쪽

15) 「제105차 회의록」, 956쪽

16) 「제105차 회의록」, 954쪽

노일환 의원 “머리 속에 있는 사상을 추상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가장 위험한 노릇이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법률로써 각자의 마음을 차단하려는 이 법은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하려는 것보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려는 독재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⁷⁾

넷째,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자의와 남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반대가 있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영될 때 말단행정에서 법안을 만든 의도와 배치되지 않게 운용될 것인가”¹⁸⁾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기존 처벌법규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김옥주 의원 “우리는 내란에 관한 범죄사항에 관한 것을 법률로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으며 그네들의 선동이나 모략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2조, 3조 등을 보더라도 방화, 살인, 파괴자들을 우리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일반 형법에 의하여 탄압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과하면 그네들의 좋은 선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¹⁹⁾

아직 형법이 제정되기 전 일제에 의해 사용되던 일본 형법을 구형법으로 적용하던 상태에서 좌익세력의 폭동이나 내란행위는 그것으로 충분히 규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1조만은 삭제해야 한다²⁰⁾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박윤원 의원 “우리는 과연 오늘날 냉정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얻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완수한 그날이 아니면 우리의 독립은 완전히 달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남북통일만으로 산다는 이러한 지도이념이 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할 때에 천추만대에 원한을 남길 그러한 일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조를 삭제하고……”

2) 국회프락치사건

한편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 중 13명이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²¹⁾으로 구속되었다. 노일환, 김옥주, 김병회, 이문원 의원 등 제정반

17) 「서울신문」, 1948.11.20

18) 「제105차 회의록」, 948쪽, 노일환 의원 발언

19) 「제105차 회의록」, 949쪽

20) 「제108차 회의록」, 996쪽,

21) 당시 권승렬 검찰총장은 국회본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체포경위를 설명했다. 이것을 살펴봐도 당시 국회프락치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어도 심증으로 체포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검찰총장(권승렬) : 국가보안법이 실시된 이후로 좌익계열에서는

대의 주동인물들이 남로당 특수공작원 이삼혁 등과 접선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이다. 수사 기관은 남로당 특수공작원 정재한에게서 압수된 비밀보고문과 지령문으로부터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으며 이들 국회의원이 남로당의 지시를 받아 외국군철퇴, 개헌운동을 벌임으로써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 동 3호와 제3조의 실행·선전·협외·선동 등 위반을 위반했다고 기소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소장파 의원들은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반민법’을 제정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의원들로 친일세력들에게 ‘공산당의 주구’로 공격 받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 역시 반민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반민특위 폐기법안을 제출하는 등 소장파의원들을 견제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은 구속된 의원중 일부가 조작임을 주장하는 점²²⁾, 사건의 단초가 되는 비밀문서를 제공했다는 중요한 증인인 정재한이 끝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고 보았다는 사람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조작과 모함이라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지하운동을 시작했습니다.…금년 3월 중순에는 좌익계열에서 국가에 대한 공작이 있는 느낌을 감수했습니다. (중략) 3월 20일경 내지 4월 초순에 있어서 좌익계열의 사람이 국회의원과 내왕하는 기색이 보여서 모의하는 일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금월 17일 보고가 왔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국회의원 네 분이 어떠한 장소에서 회합을 했고 어떠한 일이 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중략)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이 사건에 대해서 (중략) 18일에는 재판소에 대해서 영장 집행신청을 해 왔습니다. 18일 재판소에서 영장의 허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경찰에서 지시해서 영장을 집행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세분은 구속이 되었고 한 분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중략) 관계자 네 분에 관계된 것을 대략 여쭙면 남로당에 있는 7원칙이 있는데 7원칙을 시인하고 7원칙을 남한에 대해서 쓰는 데 대해서 협의한 것입니다.(중략) 이 사건은 물적 증거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물적 증거만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물적 증거가 박약(薄弱)한 사건 즉 모의사건, 말과 말이 서로 연락해서 의논한 사건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중략)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물적 증거를 붙들기 심히 곤란합니다. 대개 이것은 인적 증거가 관계 있는 이것은 사상에 관한 일이고 좌익계열은 지극히 신출귀몰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유감하나마 구속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중략)” 제3회 국회속기록 제1호, 20~24쪽, [제목] 權承烈 검찰총장, 제3회 1차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 경위를 설명

- 22) 최태규 의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 “나의 양심에 비추어 나는 남로당원도 아니요, 사측을 받은 일도 없고 만약에 이번 사건전반에 있어 좋지 못한 결말을 가져온다면, 이는 민족정의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배중혁 의원 “과거의 일체 사생활을 버리고 민국 발전을 기하여 5·10선거에 나선 내가 어찌 좌익의 사측이나 선동에 휩쓸렸을 리 만무하며 이 억울한 실머리를 가지고 형무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문원 의원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의 착수 태도와 방침에 약간 불평을 가진다. 그 이유는 논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취급하지나 않았는지 하는 점이다.” 「자유신문」, 1950.2.13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발효 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희생자가 된 것이다.

다. 법의 성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순사건을 계기로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제정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 국회에서 벌어졌던 논란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언급되었다. 이 법이 치안유지법을 계승하고 있으며, 사상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며, 집행기관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기존 처벌법규에 의한 대응이 가능한 법이며, 남북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1) 치안유지법의 계승

제정 국가보안법은 1925년 일제치하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²³⁾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치안유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제1조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위 조항들은 서로 다를 것이 없다. 또 모두 치안유지법과 제정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치안유지법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²⁴⁾

2) 현 국가보안법의 원형

전문 6조로 이뤄진 제정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 일곱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25조항으로 이뤄진 국가보안법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부참칭’, ‘국가변란’의 개념은 현재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으로 유지되는 등 제정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의 원형이 되었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매우 급하게, 한시적인 용도로 만들어졌던 법률이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래 오히려 확대, 구체화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3) 사상탄압의 법제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정 국가보안법은 좌익세력 존재 그 자체를 말살하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며, 아무런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정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되어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23) 1925년 4월 22일 일본에서 공포된 법으로 공산주의와 노동 운동이나 사회 운동 등 모든 반정부 운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간 동안 독립운동가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의 패전 뒤 1945년 10월에 폐지되었다.

24)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 94쪽

사상탄압을 목적으로 한 법제인 것이다.

라. 제정 국가보안법의 내용(총6조)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한 목적을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左)에 의하여 처벌한다.

- 1.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3.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정당시 내란행위는 구형법에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제1조의 ‘정부참칭’과 ‘국가변란’이 구형법상 제121조 내란죄의 ‘국헌문란(조헌朝憲 문란)’과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변란’과 ‘국헌 문란’에 대한 구별은 매우 어려워서 사실상 달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1조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수괴와 간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2조의 전항은 범죄행위를 목표로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좌익세력의 폭동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좌익세력의 조직구성을 막음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잘 드러내는 조항이다. 제2조항의 후항부분은 대통령이 단체해산권을 주고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제3조 전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는 치안유지법의 제3조²⁵⁾와 매우 유사하고 협의, 선동, 선전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25) 치안유지법(제3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한 협의 또는 선동을 하거나 또한 그 목적 사항을 선전하거나 기타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 자진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국가안보를 위해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남용될 가능성이 많다.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할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원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제5조의 자수규정은 자수를 권장하기 위해서, 6조는 무고나 위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6조는 제1독회에 제출된 초안에는 없었으나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 나중에 추가되었다.

2.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률 제85호) : 1949.12.19

국가보안법을 제정한지 1년만에 넘쳐나는 좌익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단심제로 개정한다. 게다가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이 신설되고, 경미한 사안의 좌익사범의 사상을 전향시키기 위한 보도구금소를 설치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률이 정한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가. 개정배경

국가보안법의 제정 이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검거·투옥된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²⁶⁾ 당시의 이승만 정권과 정부는 이러한 사건과 재판의 폭주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인상, 인원의 증가, 시설의 확대 등의 방법이 아니라 근대 법치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방법인 단심제, 보도소 설치 등의 안을 내놓았다.²⁷⁾

26)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1949년 한 해에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검거·투옥된 자만도 118,621명이며 그 해 9~10월 사이에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한국현대사연구회, 「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 공동체, 1988, 139-140쪽

27) 당시 좌익사범 수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 폭주를 당시 국회의원 신광균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당국이 국회에 나와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기소건수가 1년에 10만 건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만건 중에서 8할이 좌익분자다 이런 말이었어요. 8할이 좌익분자면 8만 명이 기소건수가 되겠습니다. 8만 명 가운데에 적어도 3할이 상고되는 통계로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8만 명의 3할일 것 같으면 3×8은 24, 2만 4,000명이올

나. 개정내용

1) 단심제 실시

제정당시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별한 심급규정이 없던 국가보안법은 좌익사범의 증가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업무폭주, 수용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1차 개정을 통해 단심제를 도입한다. 단심제를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자 단심제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심했다.²⁸⁾ 단심제 도입을 주장한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이것이 오래면 오래수록 국가에서는 큰 곤란을 보고 또 형무소는 터질 지경이요……물론 이것은 인권옹호의 견지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좌익분자를 속히 없애버리고 건국을 속히 할려면 2심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²⁹⁾

2) 최고 법정형 사형제 도입

	제정 국가보안법	1차 개정법
제1조 제1항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수괴,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당시 법무부장관인 권승렬은 사형제 신설의 필요성을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대하여 사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며 둘째, 좌익사범들이 사면을 기대하고 있어 무서워하는 것은 사형뿐³⁰⁾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개정 국가보안법 제1조와 제2조에 해당하는 수괴, 간부에 대하여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하였다.³¹⁾ 그러나 제정당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에 따른

시다. 그러면 2만 4,000명을 판결을 하려고 할 때에는 참 실로 긴 세월을 요할 것입니다.” 제헌국회 제6회 「제31차 국회속기록」 698~699쪽

28) “국가보안법은 3심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만일 1심제나 2심제로 한다면 사실심을 복심으로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종성 서울변호사회 회장,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건의사항 발표> 「서울신문」, 1949년 11월 30일

29) 제5회 「56차 회의록」, 1389쪽

30) 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82쪽,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 “...국가에 이 국가보안법이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상으로나 실지 운영상으로 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대음모, 대죄악에 대해서는 사형이 없습니다. 사람하나를 죽이는 데에 대해서는 사형을 쓸 수 있으나 나라를 뒤집어엎는 데에는 사형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익사람들은 사형만 하지 않으면 무기라도 좋다, 재판은 얼마나 끌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형뿐입니다.”

사형선고가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의 제1조와 2조에 해당하는 범죄는 내란죄에 이르기 전의 단순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형을 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지 않은 바 있다. 1949년 1차개정에서 도입된 사형제는 그 후로 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3) 보도구금제 설치

보도구금제는 사안이 경미한 사상범의 경우 사상을 전향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교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³²⁾ 많은 좌익 사범중 전향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은 선고를 유예하여 투옥시키는 대신 보도구금소로 보낸다. 구금소에서 일정기간 교화를 시켜 전향을 하여 석방이 된 사람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여야한다. 이 사람은 보도연맹에서 일정기간 관찰을 받게된다. 보도구금제는 ‘투옥’대신 ‘교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상 전향’을 강제하는 제도로써 인간의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4) 소급효인정

“제1장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칙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소급효(遡及效)의 인정은 법률의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사처벌법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3. 국가보안법 2차개정 (법률제128호) : 1950.4.21

제정 국가보안법에 비해 인권적 측면에서 한층 후퇴한 1차 개정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는 좀더 개선된 2차 개정안을 제출했다. 단심제는 폐지되어 심급제로 바뀌고,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심이 확대되었다. 또한 구류갱신에 제한을 두어 구금자의 인권이 보호되게 되었다.

31)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2조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32) 오제도, 「국가보안법 실무제요」, 남광문화사, 1949, 39-40쪽

가. 개정이유

1차개정 국가보안법은 그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도 인권유린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채 시행하고 있지 않던 정부는 개정 2개월 만인 1950년 2월에 1차 개정법률보다 후퇴된 내용을 포함한 2차개정안을 내놓았다.³³⁾ 국회 법사위 역시 1차 개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킨 것에 대한 부담으로 단심제를 폐지하고 원래의 심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정안을 제출했다. 1950년 2월 25일 국가보안법의 2차 개정은 국회 법사위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으나 정부가 국회에 재의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심급제를 다시 도입한 법사위안을 재의결하여 1950년 4월 8일 확정했다.

나. 개정내용

1) 단심제 폐지

1차 개정시 재판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전면적 단심제는 그 위헌성과 반인권성으로 비판이 높았다. 이에 대한 비난을 의식하여 정부는 사형에 한해서만 단심제의 예외를 두어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수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단심제를 철폐하여 원래의 심급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단심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단심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의 찬성입장은 “전시하의 국가”, “비상 시기의 입법”³⁴⁾, “시국의 초비상사태”³⁵⁾ 등을 이유로 하는 국가위기론과 재판지연의 이유로 옹호하였다. 반대입장은 오판 가능성³⁶⁾등 3심제를 보장하는 일반적 형사사법상의 논거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또 국내정세 및 북한정세가 단심제의 옹호근거일 수 없으며³⁷⁾ 단심제에 의한 억울한 희생은 오히려 더 큰 사회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고³⁸⁾, 단심제는 위헌³⁹⁾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심제를 반대했다. 논란 끝에 단심제는 법사위안대

33) 박원순, 앞의책, 113쪽

34) 제헌국회 제6회 「제31차 회의록」, 699-700쪽, 신광균 의원 발언

35) 「제31차 회의록」, 678쪽, 김준연 의원 발언

36) 「제31차 회의록」, 678쪽, 이원홍 의원 발언

37) 「제31차 회의록」, 803쪽, 이진수 의원 발언

38) 「제31차 회의록」, 698쪽, 송봉해 의원 발언

39) 「제31차 회의록」, 680쪽, 유성갑 의원 발언. 한편 권영성 교수에 따르면 당시의 제헌헌법은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에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있어 대법원을 최종법원으로 하지 않는 하위법률은 위헌이 된다. 『헌법학』, 법문사, 1979, 614쪽

로 3심제로 개정되었다.

2) 단독심 확대

국가보안법 공포이후 대량구속으로 인한 전국의 재판지연은 심각하여 형사재판에서 원심은 3개월, 합의부의 경우 1년이 걸린다는 정도였다. 피고인의 상고는 법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고 피고인의 구류기간이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었다.⁴⁰⁾ 재판지연과 구류기간 갱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심제와 지방법원일 경우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안을 제출했고 법사위는 3심제와 4년 이하의 형인 때는 단독판사가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⁴¹⁾ 결국은 법사위안으로 통과되었다.

3) 구류갱신의 제한

앞서 설명한대로 재판지연의 문제로 인한 구류기간의 갱신은 심각한 문제였다.⁴²⁾ 그러나 정부는 구류갱신을 심급마다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⁴³⁾ 규정하여 재판의 신속성을 기하려 한 법사위 수정안을 반대하였다. 이는 재판기한이 촉박해져서 당시의 법원, 검찰의 인원에 비추어 도저히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거 석방해야 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 였다⁴⁴⁾. 하지만 마냥 재판을 지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한 인권침해 였기 때문에 논란 끝에 구법사위 수정안으로 결정되었다.

4) 형집행과 보도구금의 관계명시

보도구금과 형의 집행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기 전에 보도구금소에 보내 일정기간 교화를 받게 하고 보도구금의 집행이 끝났을 때 형의 집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이에 대하여는 그 형만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40) 국가보안법이 공포된 후 1년동안에 구속된 국가보안법 사범은 전체 형사범의 80%에 달했다. 전국의 형무소는 적정인원을 초과해서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무소가 모자라 2개의 형무소를 신설할 지경이었다. 박원순, 앞의책, 122쪽

41) 합의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형사사건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구속자 수가 많은 반면 판사의 수는 적어 합의부 재판을 할 경우 단독재판을 하는 경우에 비해 4/1로 처리능력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으로는 단독심이 재판지연으로 인한 과수용과 장기구금을 줄이는 등 인권보호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었다. 박원순, 앞의책, 122-123쪽

42) 「제37차 회의록」, 798쪽, 이원홍 의원의 서면 의견서에 따르면 대구형무소의 상황은 “몸도 동요할 수 없는 상태로써 동절에는 자연방한이 되나 하절이면 발가벗겨 앉히게 된다. 어느 한 감방에는 68명을 수용하고 그 방 가운데 간수가 총을 들고 밤낮의 구별없이 파수를 보고 있다. 집도 다 헐어진 감방으로서 유사시엔 소리를 치고 열고 나가기 여반장의 상태”라는 것이다.

43) 당시 구류기간은 2개월로 2차례 연기를 하면 6개월까지 구류가능 하였다.

44) 박원순, 앞의책, 124쪽 참조

4. 형법제정(1953년)과 국가보안법

가. 국가보안법 흡수를 전제로 한 형법 조문작업

1953년 형법 제정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제정 국회의원이나 정부인사들조차도 국가보안법 제정당시의 상황이 극도의 비상한 상태이기에 ‘일시적으로’ 비상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은 한시적 법률⁴⁵⁾이라는 것이다. 특히 형법전 제정 당시 그 초안자였던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을 형법속에 흡수할 것을 전제로 충분한 조문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김병로) … 우리 나라에 지금 6.25사변을 당해 가지고 공산도배의 비상한 모략, 그러한 것과 거기에 부수되는 범죄사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아마 국회에서 임시조치로서 제정해 놓고 인정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와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다기 다난한 그러한 것을 없애버리고 이 형법 개정된 것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 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고려해 보았습니다. … 내란죄라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전 일본 내란죄와는 좀 형태를 달리했고, 또 공안에 관한 장이 설치되어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조문을 설치하게 되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국가보안법 조문을 가지고 대조해서 검토해 볼 때, 국가보안법에 대한 범죄사실을, 혹 형에 가서 다소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런지도 모르나, 이 형법전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의 가능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 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했습니다. …

그 외에도 편찬자의 생각으로서는 국가보안법에는 없더라도, 형법전문만 갖더라도 거기 대상이 되는 것은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 형법을 편찬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⁴⁶⁾

위 기록을 통해 보면, 4월 16일 열린 제15회 정기국회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임시조치로서 제정한 법이라는 점과 형법전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45) 예컨대 당시 법무장관 권승렬은 1차 개정이후, 각계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염려는 없다는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와 같은 법률은 영구히 시행될 것이 아니고 다만 잠정적인 비상시의 탄환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서울신문」 1949. 12.9

46) 신동운, 「형사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72~173쪽

나. 국가보안법 폐지가 포함된 형법 부칙

또한 제정 형법 부칙에는 “본법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폐지대상 법령 가운데 열다섯번째로 ‘국가보안법’이 있었다. 이는 이미 형법전을 제정할 당시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윤길중) : “제12조 본법시행 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구형법 시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미군정법령 제19호, 미군정법령 제70호 등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신설안 가운데에 十五로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과 개정법률 그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을, 그것을 또 형법상의 내란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이라든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논의해본 결과, 이것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경우에 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수속적인 문제가 미비된 것이 남아 있는 것도 있어서 이점은 일부의 유력 의견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따로 단독히 폐지하고 거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집어넣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일괄해서 다 폐지하는 것은 좀 수속상 곤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유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5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것을 한번 표결해 주셨으면 조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⁴⁷⁾

한편 윤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음을 보여준다. 즉, 국가보안법을 형법 부칙에 포함시켜 형법 제정과 함께 폐지시킬 것인가, 단일 폐지법안을 통해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국가보안법을 존속하자는 의견(폐지반대 의견)은 법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미칠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의견을 낸 조주영의원의 질문과 법제사법위원장의 답이다.

조주영의원 : ... 보안법이라는 것을 존속해 두는 것이 아주 없애는 것보다도 낫지 않을까 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보안법을 없애지 않아서는 안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현재 모든 치안상태라든지, 모든 점으로 보아서 보안법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모든 점으로 보아서 없어도 괜찮다고 할 만한 특별한 무슨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7) 제16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1953.7.8.

법제사법위원장(윤길중) : “국가보안법을 형법을 통과하면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형법에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이런 죄목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형법에는)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하는 죄 거기에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각 죄가 빠지기 않고 도리어 중형으로 처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존치하므로서 어떤 폐해가 올 것이냐 하는 말씀은 법체계상으로 단일체계의 법률이 국가보안법 관계로 해가지고서 가져 오게 된다. 그런면으로 봐서 단일체계화한 이 형법에다가 전부 밀어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존치해 두는 것은 단순히 그런 법이론적인 문제보다도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을 논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단행법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결정단계에서 심리적 영향이 오히려 별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존치해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유력한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조주영의원 : ... 보안법을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형법을 완성시키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보안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법률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긴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안법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월 8일 열린 제16회 국회(임시회의) 제19차 본회의에서 형법 부칙 제12조 가운데 15호 국가보안법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해 거수표결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적원수 102인중 1차 거수에서는 형법 부칙에 국가보안법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찬성(국가보안법을 폐지에 포함한다) 11표, 2차 거수에서는 10표가 나와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이므로 국가보안법은 형법제정이후에도 존속⁴⁸⁾하게 되었다.

현행 형법은 전시중인 1953년에 제정되었다. 그러기에 형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 및 활동을 보호하는데 매우 역점을 둔 것⁴⁹⁾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삭제(형법으로 흡수)를 전제로

48) 법제사법위원장(윤길중) : ...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대리(조봉암) : 이것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 개정법률 이것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15항에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결합니다.

(거수표결) 재적원수 102인, 가에 11표, 부에는 한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이므로 다시한번 묻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수표결) 재적원수 102인, 가에 10표, 부에는 한표도 없습니다마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국가보안법은 존속하는 것입니다. 위 자료집, 530쪽

49) 이러한 형법전의 성격으로 인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섭, “국가보안법 존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1. 146~147쪽 참조

조문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형법만으로도 국가의 존립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시중 만들어진 형법은 지금껏 개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형법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의 보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⁵⁰⁾

5. 국가보안법 3차개정(법률 제500호) : 1958.12.26

"2·4파동"

1958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농성중이던 국회본회의장에 무술경관들이 난입하여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의원들을 끌어낸 국회에서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3분만에 개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것이 2·4파동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파동이다. 3차개정을 '파동'이라 부르는 것은 여론과 야당의원들의 개정반대 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 의해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절차와 물리적인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저지하고 법안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가 3차 개정안을 내놓은 때는 사사오입개헌, 부정부패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조봉암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당의 지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196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권유지를 고민하던 시기였다.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정치적 반대자와 여론을 탄압할 목적⁵¹⁾으로 제출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제출되자마자 야당의원들과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개정안은 제정당시 전문 6조였던 것에 비해 국가기밀, 정보수집, 편의제공, 언론조향,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특별형사소송규정 등이 신설되어 총 40조로 엄청난 규모로 확대, 강화되었다. 더구나 언론탄압 조향으로 대표되는 인심혹란죄(언론조향),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추가되는 등 건국이라는 '비상시기'에 '한시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제정 명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여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할 목적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이 조향으로

50) 물론 형법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제10조(불고지), 제19조(구속기간연장)등의 조문은 없다. 이 조문들은 모두 인권침해적 법률로 집중적으로 비판받는 조향으로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 강화와 요청에 부응하여 날치기 및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러한 독재강화, 인권유린을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로는 현행 형법으로 충분한 것이다. 한인섭, "국가보안법 존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1. 147쪽

51) "새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간첩개념의 확대규정은 1960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활동을 제약하고 탄압하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지적하고...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52쪽, 2000

인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은 간첩이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행동한사람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었다.

가. 개정배경

1) 자유당정권의 위기 해소방안

당시 정부가 설명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간첩과 국가변란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단속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인권옹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6·25이후 전후복구시기에 북한이 무력 도발할 여건이 아님은 물론 인권옹호 배려 규정 또한 제2조의 주의규정⁵²⁾ 뿐 이어서 정부의 개정취지는 그 의미가 무색하였다. 실제 국가보안법 개정의 배경은 국내적으로 부정선거 이후 민심 이반에 따른 자유당 정권의 정치적 위기와 미국의 원조삭감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자유당 정권이 1960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 및 야당을 제압하기 위해 내린 '극약처방'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언론조항 등의 새로운 규정으로 미루어 정적의 탄압과 언론의 억압을 위한 개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개정법이 통과된 다음해인 1959년, 기사 내용을 문제삼아 경향신문의 기자 2명을 구속하고 신문이 폐간 조치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나. '2·4파동'의 경과

1958년 6월 9일 법무부와 검찰에 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검토가 끝났다는 언론보도⁵³⁾ 8월 9일 자유당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⁵⁴⁾

52) 제2조(주의규정) “본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법을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향유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53) 「동아일보」, 1958.6.12

54)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자 3차개정에 대한 각계의 반발은 심했다. 다음은 「동아일보」 1958년 8월 10일자 보도이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뜯어고친다고 한다. 아니, 전연 성격이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한다. 현행 국가보안법이 공산당만을 잡는 것인 데 반하여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공산당이 아닌 자들도 공산당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까닭 ... 틀림없는 민주주의자인 줄 알면서도 그가 집권당의 정적인 경우에 그를 처치하는 데 신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시키는 것은 현정세하에서 있을 법하다 ... 국가기밀은 공지된 여부를 불문한다고 하였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미운자 싫은 자는 다 걸 수 있게 하자는 것. 특히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자는 데 주지가 있으니 군사 이외의 ...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집권자에 해로운 보도나 논평은 외국정부나 적에게 비밀 보지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몰아대는 것쯤은 다반사로 할 수 있는 노릇이니 신문은 관보 노릇을 하지 않는 한 폐간을 하거나 망하여야 할 것. 집권의 영속화를 강행하려면 집권자에게는 눈앞의 가시니 신문을 꼼짝 못하게 할 필요가 있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원장(자유당)의 개정안 연내 통과방침 발표

11월 7일 자유당과 법무부장관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발표

11월 10일 자유당이 기존의 개정안을 철회하고 좀더 강화된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민주당은 정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하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결의

11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개정안에 대한 시정요구 건의서 국회법사위에 제출⁵⁵⁾

11월 15일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자유당은 '개정안에 대한 비난은 공산당의 술책에 빠지는 것'이라는 요지의 여론 협박성 성명서를 발표

11월 18일 자유당 종전의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하는 언론조항(제17조 제5항) 등이 추가된 강화된 개정안 제출

11월 18일 개정국가보안법을 사전 심의할 위원회를 놓고 벌인 '부서논쟁'⁵⁶⁾ 자유당의 이데올로기 공세인 '국시논쟁'⁵⁷⁾등 격렬한 논쟁이 벌어짐.

11월 21일 신문편집인협회와 민주당이 개정안 제출을 반대하며 결사적 반대투쟁을 벌일 것을 밝히는 성명 발표

11월 27일 민주당소속 81명, 무소속 의원 10명이 규합하여 '국가보안법 개악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새해 예산 심의를 거부한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

12월 5일 국방, 내무, 법사위에서의 병행 심의를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무시한 채 자유당 단독 찬성으로 법사위 심의에 들어감.

12월 11일 법사위에 상정되어 예비심사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의원들의 저지로 주먹다짐과 격심한 논쟁이 오고간 끝에 공청회 개최에 합의.

12월 17일 전국에 중계방송 되는 상태에서 공청회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⁵⁸⁾

으러니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권의 영속화가 된다는 보장이 있겠소? ... 공산당을 잡는다는 미명하에 신문지법이 아닌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신문을 다 관보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헌을 변란하겠다는 것 아닌지?"

- 55) 대한변협은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 있는 점, 심의절차를 신중히 해야 함에도 소송절차를 경시했다는 점”등을 들어 시정을 요구했다. 「동아일보」, 1958.11.12
- 56) 당시 국회법에는 법률안을 사전 심의할 상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적당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법사위, 내무, 국방위원회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자는 주장과 법사위 단독 심의를 주장하는 자유당측이 갈등했으나 표결처리 끝에 자유당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 57)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병옥이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정세로 보아 북진통일론보다 평화통일론이 유익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유당측에서 국시위반이라며 비난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완강히 반대하는 민주당을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내부 분열시키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국가보안법 통과와 물꼬를 터 보자는 속셈에서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양당총무에게 해결을 일임한다며 얻는 것 없이 끝났다.
- 58)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서울지검 검사였던 문인구 검사의 발언이다. “형법상의 간첩개념

심의 저지를 목적으로 민주당 조재천 의원이 3일에 걸쳐 법사위 질문을 함.
 12월 19일 민주당의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자유당 의원만으로 정부안을 만장
 일치로 법사위 통과시킴.
 12월 20일 민주당의원들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무효화를 주장하며 국회본회의 통과 저
 지를 위한 농성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 함.
 12월 24일 야당의원들이 농성 중이던 국회본회의장에 동원된 무술경관 300여명이 난입하
 여 저항하는 야당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냄.⁵⁹⁾ 무술경관들의 호위속에 자
 유당의원만이 참석하여 일부조항의 부분적 요건을 강화하고 구성요건을 좀더
 명확히하여 수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단독 날치기 통과 함.

날치기 통과 이후 야당의원들은 통과무효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 투쟁을 벌였고 여론의
 날치기 개정에 대한 비난도 높았다.⁶⁰⁾

다. 개정법안의 내용

1) ‘국가기밀’조항 신설

형법에서 정하고 있던 국가기밀의 개념은 정치·군사적 기밀⁶¹⁾이었으나 국가보안법 ‘국가
 기밀’ 조항이 신설되면서 국가기밀의 개념이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제4조 (용어례) 본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국가방
 위상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 정부와 적에게 비밀로 보지 할 것을 요하는 문서 도서 기타
 의 물건, 사실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인 ‘적국을 위하여 ...’의 적국에 북한 괴뢰정권은 포함 안된다.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남
 로당의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상황이 변한 오늘날 간첩 처벌을 취
 해서는 이전의 법 가지고는 유추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어주고 빨갱이를 잡아라. 그리
 고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개정에 반대한 이병린 변호사의 반대이유이다.
 “38선 이북에 거주해도 우리 국민인데 적이라는 개념은 안 된다. 국가기밀 등의 개념은 명확하
 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언론은 사회의 거울로서 그 사회 자체를 정화해야지 언론의 탄
 압으로 신문의 정화를 기할 수 없다.”

59) 이날은 아침부터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경비가 강화되었다. 여당의원들이 등원하자 오전 10시를
 기해 국회 경위권이 발동되어 국회 경비원 300명이 농성 중이던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
 내었다. 저항하던 의원 중 12명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의사당 밖으로 끌려나온 의원들은
 지하실복도에 감금되었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국회사』, 1971, 81쪽

60) 「경향신문」, 1959.1.5

61)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간첩) “제2항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항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과 국사의 공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조건임에도 모든 기밀과 정보를 차단하려는 기도는 언론과 사회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더욱이 당시 대법원⁶²⁾이 이미 정치, 경제, 문화상의 모든 기밀을 간첩죄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확대조향을 두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⁶³⁾.

2) 인심혹란죄(소위 언론조항)

이 조항은 신설조항으로 개정안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다. 소위 언론조항으로 불리는데 일본의 전시형법 제105조 2항을 변형하여 형량을 강화하였다.⁶⁴⁾

일본 전시형법 제105조 2항	3차 개정국가보안법 제17조 제5항
인심을 혹란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조연현 문학작가협회 위원은 개정취지로 “반드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석될 수 없는 언론의 폭력”⁶⁵⁾을 규제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취지인 ‘위장 평화통일 공작을 주 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단속’하고자 국가보안법으로 입법하기에는 조항의 당위성이 없다. 더구나 ‘알면서’, ‘고의로’ 라는 요건은 주관적이고 ‘적을 이롭게’ 등의 구성요건은 너무 막연하여 법적용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다.

3) 헌법상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제22조(명예훼손) 제1항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집회하거나 문서, 녹음반, 도서 기타 표현물을 유포하여 공연히 헌법상의 기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항에서 헌법상 기관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말한다.

정부는 “괴뢰정권이 우리 국가원수를 위시한 헌법상의 기관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을 불법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으나 북한과 간첩, 공작원 등 공공연한 활동이 불가능한 당시 상황에서 정작 법 적용을 받게 될 사람은 국민들 혹은 야당이다. 이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2) 대법원, 1957년 9월 20일 선고, 형상 제328호 사건 판결 참조

63) 박원순, 앞의책, 150~152쪽 참조

64) 박원순, 앞의책, 152쪽

65) 법사위,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속기록, 30쪽

4)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건 완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단서조항⁶⁶⁾에 대해 예외를 두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을 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고문과 강요에 의한 자백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가 장려, 조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⁶⁷⁾

5)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문제허용

이 규정은 판사의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즉시 항고로 인해 피의자의 구속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이것은 구속적부심을 인정하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불가능의 규정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6. 4차개정(법률 제549호) : 1960.6.10

가. 개정배경과 경과

4·19혁명 이후 7·27선거를 통해 정권을 승계한 민주당 정권은 4·19혁명의 이념에 부응한다는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헌에 앞서 모든 악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중에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가보안법개정안 기초특별위원회 조재천 위원장이 밝힌 제안설명은 다음과 같다.⁶⁸⁾

“현행 국가보안법은 2·4파동 당시 비정상적 방법으로 통과된 것인데 첫째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량한 국민의 자유·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농후한 조항, 둘째로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그 실익이 별무한 조항, 셋째로 필요하기는 하나 형법, 국방경비법, 해양경비법 또는 형법이론으로써 해결되는 조항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 규정을 개정, 통합, 개편 또는 정비하여 현행법의 전40조 부칙을 전문16조 부칙으로 요약하여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하였다.”

66)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67) 박원순, 앞의책, 154쪽

68) 「한국일보」, 1960.5.13

국회본회의는 국가보안법 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1960년 5월 13일 법사위에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5월 30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6월 1일 공포되었다.

나. 개정 내용과 한계

2·4 파동 당시 통과되었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정보수집죄(제12조), 인심혹란죄(제17조 5항) 등 독소조항이 제거되어 대체로 2·4 파동이전의 2차 개정안과 비슷해졌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에는 법사위 구성원 중 절반인 4명의 의원이 자유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했고, 민주당 또한 2·4 파동당시 자신들의 제약과 피해 때문에 개정반대 입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만을 제거한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적, 반민중적, 반공적, 반인권적 성격은 그대로 존치시켰다. 반국가단체 개념을 그대로 둔 것, 불법지역왕래(제6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존치한 것은 개정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을 엿보게 한다. 또 밀고를 조장하는 불고지죄(제9조)를 신설하고, 선전·선동(제4조)⁶⁹⁾이라는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그대로 두어 반인권성도 나타난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구별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증인으로 소환 받은 사람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하여 경찰서에 유치할 수 있고, 수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1차례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다. 반공임시특별법안

4·19혁명이후 남북교류, 중립화통일을 주장하는 혁신세력의 활발한 활동을 규제할 필요를 느낀 민주당은 1961.3.8 반공임시특별법안 시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혁신정당과 사회단체, 학생들은 데모규제법과 더불어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공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반대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쳤다.⁷⁰⁾ 거센 반발로 인해 정부여당은 특별법안을 철회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3월 30일 국가보안법을 보강⁷¹⁾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

69) 국가보안법 제4조(법률 제1151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전 3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 “2대악법 반대투쟁”은 2월28일 대구에서 1만여 군중이 운집하여 횃불시위를 벌인 것을 시발로 하여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2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민주악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3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악법반대 시민성토 대강연회’가 열렸다. 「동아일보」, 1961.3.23

71) [주요내용] 1.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조장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신설함(제3조 제5호). 2.지체없이 관헌에 신고한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함. 3.반국가단체와 연결된 국외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거나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잠입한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신설함(제6조). 4.이 법의 죄를 범한 자의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집합, 연락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나 역시 혁신세력의 반대투쟁으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5·16쿠데타를 맞았다. 민주당 정권의 반공임시특별법안 제정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반대투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제정시도는 국가보안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반공임시특별법안은 5·16쿠데타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반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가공되어 위력을 발휘하다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되어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법률 제 1151호)

가. 반공법 제정

1) 제정 취지 및 경과

5·16쿠데타로 들어서는 군사정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을 모두 장악한 절대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년 6월 6일) 제22조 제1항⁷²⁾에 따라 반공법 제정을 제안한다. 반공법은 그동안 거센 저항이 많았던 국가보안법보다 처벌범위나 대상, 형량 등이 훨씬 강화되었다.

반공법이 제안될 때 밝혔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일반법보다 무겁게 처벌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혼란 등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제언”⁷³⁾한다는 것이다.

반공법은 1961년 6월 22일 법사위원장에 의해 제안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비판적 입장에서 논의되거나 문제제기 없이 의결되어 7월 3일 법률로 공포된다. 지난 민주당정권이 국민들의 저항으로 입법하지 못했던 ‘반공임시특별법안’은 반공법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2)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반공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적용해왔던 반국가단체와 다를 바 없고, 그 보호법익이나 실질적 내용에서도 두 법률은 경합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완·협동하는 관계에 있다.⁷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안법보다 반공법이 더 우

역에 처하도록 함(제9조의2 편의제공). 5.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제17조 상금 등). 6.벌칙을 강화함(제1조, 제4조, 제6조)

72)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73)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반공법 의안카드」, 1쪽

선적으로 적용되었고 반공법은 외견상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비해 적용이 더 선호되었다.⁷⁵⁾

3) 반공법의 주요내용

반공법은 국가보안법보다 처벌범위나 대상, 형량 등에 있어 훨씬 확대되고 강화⁷⁶⁾된 모습을 가진다. 이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금지·억압을 공식화하고 있다. 제2조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 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반공법의 제정 목적을 제1조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라며 밝히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반국가단체에 공산계열이라는 성격을 부가하였다. 국내의 반국가단체 뿐 아니라 공산계열 전체가 처벌의 범위 속에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공산계열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공산주의계열이라고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⁷⁷⁾

둘째, 제4조의 고무·찬양 조항으로 보안법의 가장 핵심조항이자 남용된 조항이다. 제4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보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찬양·고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행위의 목표와 관계없이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결과만 초래하면 처벌할 수 있게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 등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제5조 회합·통신죄는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애매한 요건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의 여지가 있다. 또 제6조 잠입·탈출의 경우에는 무조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탈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비해 적용이 확대, 강화되었다.

4) 반공법 제정의 절차적 문제점

반공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군인들로 구성된 쿠데타 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42호, 1961년 6월 6일)에 따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만들었다. 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재건

74) 한옥신, 『국가보안법 반공법 개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970, 147쪽

75) 박원순, 앞의책, 197쪽

76) 반공법은 1961년 7월 3일 제정되어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에 흡수되며 폐지될 때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 3차 개정(1963년 10월 8일, 법률 제1412호)에서는 제4조(찬양·고무)에 ‘국외공산계열’을 포함시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77) 박원순, 앞의책, 198쪽

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⁸⁾ 군사쿠데타가 헌정파괴임을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재건최고회의령에 의해 만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다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헌적 요소를 지닌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한 반공법제정 역시 위헌이다.⁷⁹⁾

나. 5차개정 법률 제1151호(1962.9.4)

1) 재범자에 대하여 특수가중·사형제 신설

2·4파동으로 확대, 강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은 4.19이후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배제된 듯 하였으나 사형제 신설 등 여전히 인권침해적인 개정이었다. 반공법을 제정한 군사정권은 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가 1962년 9월에 이르러서 일부 조항을 강화하여 개정했다. 그 내용은 제10조 2항으로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5년 내에 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는 때에는 그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⁸⁰⁾

8. 제6차개정 (법률 제3318호) : 1980.12.31

6차 개정은 계엄상황에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기능을 하게 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과 흡수, 통합하여 이루어 졌다. 반공법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반공법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3차개정 법률의 부활이라 볼 수 있을 만큼 형량 또한 인상되고 처벌범위도 넓어졌다. 무엇보다도 ‘고무·찬양’,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반공법의 처벌조항은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었다. 이렇듯 높은 형량과 넓은 처벌범위를

78) 이외에도 “5·16 군사혁명과업 완수 후에 시행될 총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2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절대권력을 부여하였다.

79) 박원순, 앞의책, 214쪽

80) 위 조항의 신설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에 대하여는 상당히 중한형으로 처벌토록 되어있으나, 아직도 미전향자에 의한 반국가적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여 보다 중하게 다루게 함으로써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국가보안법 의안카드」, 17쪽

가진 6차 개정 국가보안법은 현재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었다.

가. 개정의 배경

1) 개정배경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의 취약으로 인해 강압통치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 12월 29일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으로 제출되면서 5공화국 정권이 밝힌 개정취지는 두 가지였다. 첫째, 비적성국가와의 점진적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두 번째,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중복된 점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은 반공법의 중요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적성국가에 대한 경제교역, 기타 교류에 대한 허용방침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법 제7조 제2항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고 규정하여 국외공산계열에서 비적성국가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이 개정법에 적성 또는 비적성국가의 개념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2) 반공법 폐지이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유용하게 이용하던 집권세력이 반공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시킨 실제적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두 법사이의 중복된 점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려는데 있지 않다. 반공법은 1961년 제정되어 그 적용과정에서 엄청난 남용과 인권의 침해로 말미암아 정치적 악법으로 그 오명을 크게 날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반공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유일의 나라로 지칭되고 있었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반공법을 폐지하는 대신 그 주요 내용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인권 탄압법이었던 ‘반공법’을 폐지하였다는 선전효과를 국내외에서 노린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⁸¹⁾

나. 6차 개정내용⁸²⁾(법률 제3318호) : 1980년 12월 31일

1) 주관적 요건추가

비적성 공산계열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가지고 제6조 3항(잠입·탈출), 제8조 1항(회합·통신)에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건을 추가했다. 이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증대에 따른 법적 해결 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

81) 박원순, 앞의책, 208쪽

82) 박원순, 앞의책, 220쪽

기준이 모호한, 말 그대로 주관적인 요건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

2)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제4조 제1항(목적수행), 제6호⁸³⁾, 제7조 제4항⁸⁴⁾은 신설조항으로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2·4파동 당시의 3차 개정법상의 인심혹란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와도 비슷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닐 수 없다.

3) 수괴처벌을 즉시범에서 상태범으로 확대

기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처벌규정 중 ‘수괴는 사형’이라고 규정했던 부분을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이라고 고쳐 즉시범의 규정형식을 상태범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제1항 제1조) 이로써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4) 형량의 상승

많은 부분에서 형량이 상승하여 엄벌주의로 치닫고 있다.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때는 징역7년 이하에서 2년 이상의 유기형으로(제3조 제2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때에는 징역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제7조 제3항),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나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은 죄의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제8조) 각 형량을 높였다.

5) 원호규정의 확대

반공법상 원호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던 것을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자도 원호대상범위로 포함시켰다.(제23조)

6) 구속기간연장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에 대한 수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구속기간 연장규정⁸⁵⁾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두어 사법경찰관은 1차에 한하여, 검사는 2차에 한하여

83)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4)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5)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로 제한하고(형사소송법 제202조) 다만, 검사에 대해서는 판사의 허가에 의해서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제203조)하고 있다.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개정절차의 문제점

쿠데타 세력은 광주항쟁을 진압한 직후인 5월 31일 비상계엄 하에서 대통령 보좌기구의 형식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은 10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안을 상정, 의결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고⁸⁶⁾ 여기서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해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⁸⁷⁾ 비록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선출에 의한 정당한 대표권을 갖지 못한 이 기구는 5·16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같은 쿠데타 입법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다⁸⁸⁾.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1981년 3월 31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189건의 법률안을 비롯하여 모두 215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법률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제 5공화국 정치권력의 남용에 따라 정치적 악법으로 낙인찍히게 된다⁸⁹⁾. 국가보안법 개정안 1980년 12월 26일 정희택 법사위원장이 제의하고 기초소위원회에서 안을 구성해 법사위원으로 제출되었다. 개정안은 1980년 12월 30일 제14차 국가보위입법회의 본회의에서 5분만에 상정, 제안설명, 가결되었던 것이다.

86) 제5공화국 헌법 제6조 제1항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87) 같은 조 제3항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88) 이처럼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헌법상 입법권이 전혀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법되었으므로 이 행위는 위헌행위이고,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은 무효이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입법, 개정된 법률은 모두 무효이고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되고있다.

89) 박원순, 앞의책, 213~215쪽

9.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7차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

1990년 8월 정부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을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국가보안법이 현실과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히 87년 6월대항쟁이후 반민주 악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노태우 정권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되었다.

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1990.4)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⁹⁰⁾ 현재의 합헌 결정은 7차 개정안 내용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현재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인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경우 “법 운영 당국의 제도외적 오용 내지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태”는 예방할 수 있고, “처벌범위의 불명확성 때문에 생기는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7차 개정안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주의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다.

1) 현재의 결정 내용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⁹¹⁾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처벌범위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법률은 그 처벌가능성을 국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제7조의 경우는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 용어의 의미가 다의적이고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과 일치되는 언행이나 긍정하는 표현까지 모두가 처벌의 대상이 될 뿐 더러 적용하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

90) 헌법재판소, 1990.4.2결정, 89헌가113. 이는 1989년 11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의 위헌심판제청에 따른 결정이다.

91)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 “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헌재는 제7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대부분 인정하였다. 제7조 1항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 ‘이렇게 한’ 등 다섯 용어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적용하면 언론·출판,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고, 법운영 당국에 의해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으며,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점을 스스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을 축소 제한 할 경우 헌법에 합치된다”고 한정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결정한 합헌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조 제1항의 다의성이 전면위헌으로 완전 폐기되어야 할 규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둘째 완전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백과 혼란의 문제, 셋째 완전폐기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 더 크고, 넷째 평화시대를 기조로 한 형법상의 내란죄나 외환죄는 고전적이어서 우리가 처한 국가의 자기안전·방어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2)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

헌재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자 법리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제7조의 모호함과 자의적 법 적용가능성에 대해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은 법리적으로 했으나 위헌여부 결정은 그와 모순되게 정치적으로 했다는 것이다.⁹²⁾

헌재는 제7조가 전면위헌으로 완전 폐지되어야 할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더불어 완전폐지에서 오는 법의 혼란과 공백의 문제, 폐기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폐기함으로써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의 혼란과 공백’이 빚어질 것이고 ‘국가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하면서도 그 검증을 위한 논의를 생략하고 있다.⁹³⁾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는 기본권 보호의 이익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이익을 비교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때만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할 수 있다. 다수 의견은 제7조 제5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⁹⁴⁾의 제한한계를 어겨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

92)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하면서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 조항을 위헌으로 보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선언이다.” 재판을 통해본 90년의 인권, 「1990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1991, 380쪽

93)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토론회 자료집,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천정배 1990년7월16일

94)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였다. 이는 제7조 제5항이 헌법의 형량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법조항의 적용현실에서는 국익의 침해보다는 기본권보호이익의 침해가 더 큰 것이다.⁹⁵⁾ 현재가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결정의 내용은 제7조 1항과 5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서만 제한 해석할 경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는 제한 기준 역시 매우 모호한 것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구성요건에다 또다시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보태는 것이 되어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⁹⁶⁾

현재의 한정합헌결정이 있던 1990년 무렵은 국가보안법이 개혁입법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황으로 개정과 폐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현재의 한정 합헌 결정은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여당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그동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도구이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온 국가보안법을 앞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격이 되었다.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해인 1991년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으로 줄다리기를 해오던 국회는 현재의 한정 합헌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의 법조문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7조 개정을 마쳤다.

나. 국가보안법 7차 개정(법률 제4373호) : 1991.5.31

1) 개정 과정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국가보안법 등을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들 ‘반민주악법’에 대한 개폐요구를 높였다. 6.29선언의 결과로 치뤄진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악법개폐를 공약으로 걸었으나 집권이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사용하기 급급했다. 88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⁹⁷⁾ 정국이 형성되어 6 공화국 출범 초기의 국회는 민주, 평민, 공화 야권3당의 공조와 통일된 정책추진이 이루어졌다. 1988년 6월 24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은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노동관계법 등 주요 ‘반민주악법’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합의안을 이루

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95)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제5항 한정합헌 결정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1990, 129쪽

96) 변정수 재판관의 반대이견, 헌법재판소, 1990년4월2일 결정, 89헌가113

97)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와 13대 국회의원 선거이후 한국의 정당 구도는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으로 구성된다.

었다. 그러나 6공화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때문에 이 법의 본질을 손대지 않고도 국가보안법을 개정했다는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⁹⁸⁾ 북방정책의 변화와 남북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려는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은 국면전환을 노리던 노태우 정부에게는 공안정국을 조성할 좋은 기회가 되었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에도 차이가 드러났다. 평민당은 현행법 폐지 후 국가보안법과 그 본질이 다를 바 없는 ‘민주질서수호법’⁹⁹⁾으로 대체입법을,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 흡수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김영삼 총재가 “문목사 내지 통일문제에 관한 한 재야운동권과 입장 단절”을 천명¹⁰⁰⁾하는 등 여론의 방향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다. 개폐를 주장했던 공화당은 양당의 폐지입장에 반대할 뜻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1990년 3당 합당¹⁰¹⁾이 이루어진 뒤 국가보안법 논의는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평민당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 및 대체입법을 제안하고, 당내 이론이 많았던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해당 조항의 목적범만을 처벌하자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합헌결정(1990년 4월)이 있는 뒤, 1990년 9월 정기국회, 1991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심의와 토론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압력은 거셌다.¹⁰²⁾ 1991년 5월7일 민자당은 종전에 제출한 개정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어서 같은 날 야당인 신민당도 이전 평민당안인 민주질서보호법안을 고친 개정안을 국가보안법 명칭으로 내놓았다. 민자당의 수정안과 신민당의 개정안 제출은 즉각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렀다.¹⁰³⁾ 반면 서울지검 공안부

98) 박원순, 앞의책, 225쪽

99)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은 국가보안법과 그 본질에 있어 다를 바 없고,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명분 대신에 얻는 것은 또 하나의 악법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민주질서보호법안은 당시 문인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협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가칭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법 입법방향-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충입법>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각 정당과 국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에 송부했는데, 이 구상이 나중에 평민당의 ‘민주질서수호법’안에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박원순, 앞의책, 244~257쪽 참조

100) 「동아일보」, 1989.3.30

101)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3명의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은 합당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한다.

1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각 당총재에게 보내는가 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사회와 교육의 민주적 변혁을 촉구하면서 악법개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내세우고 평민당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103) [성명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1.5.8,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존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조금도 억제하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이 몇 개 조문의 형식적인 개정을 힘으로 강행

소속 검사 5명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¹⁰⁴⁾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호도하고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엄청난 변화로 역설했다는 것이라는 재야법조계의 비판을 들었다.¹⁰⁵⁾

5월 7일 민자당은 개혁법안을 협상하는 중에 1차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5월 10일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 되었다. 본회의장 뒤쪽 중앙통로에서 무선 마이크를 든 박준규 국회의장을 민자당 의원들이 방패막이로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을 무력으로 저지하여 국가보안법 수정안을 기습적인 통과시킨 것이다. 안건상정에서 가결선포까지 걸린 시간은 35초였다.¹⁰⁶⁾

개정법은 북한을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 등 사실상 적용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한 것과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 요건에 현재의 한정합헌 결정대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었다. 또한 개정법은 부칙 제2항에서 개정법의 시행일인 1991년 5월 31일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법률(법률 3318호)을 계속 적용하고, 개정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법률 제4373호)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2) 개정내용

① ‘목적’요건의 추가

	구 국가보안법	7차 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차 개정안은 찬양·고무·동조(제7조 제1항), 금품수수(제5조 제2항), 잠입·탈출(제6조 제1항), 회합·통신(제8조 제1항), 국가변란(제7조)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목적요건은 “국

하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정도의 ‘개정’으로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계속 휘두를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인가.”

104) 「동아일보」, 1991.5.8

105) 「한국일보」, 1991.5.9

106) 「한겨레신문」, 1990.5.11

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기준이 없이 막연하고 불명확하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해 비난받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② 국가변란 개념 추가

또한 제7조 개정에서는 그동안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이적)’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하던 것에 더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적용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③ 반국가단체의 개념 축소

	구 국가보안법	7차 개정법
제2조 1항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요건을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강화하였지만 이미 이전의 판례¹⁰⁷⁾에도 단체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용의 남용을 막는 효과는 미비하다.

④ 국가기밀 개념의 특정

	구 국가보안법	7차 개정법
제4조 2항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비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에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7)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157, 87감도15 판결 “...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법안의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 ‘한정된 사람’ 등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종래의 대법원이 국가 기밀이란 ‘적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일체의 사실’이라고 판단해온 것을 입법화 함으로써 남용을 정당화한 개악¹⁰⁸⁾이라는 평가를 듣는 조항이다.

⑤ 불고지죄의 일부 축소

반국가단체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등 간첩관련 범죄에 대한 불고지만 처벌하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불고지인 경우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불고지죄 자체가 반인륜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을 법률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고지죄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⑥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

종전 국가보안법 중 국외공산계열 조항이 3개 삭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제2조 제1항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제7조 제2항 “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제8조 제2항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 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등을 삭제하였다.

10. 국가보안법 7차개정 이후 1997년까지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가장 큰 논의는 1991년 12월 13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표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¹⁰⁹⁾

108) 박원순, 앞의책, 273쪽

109) 1991년 12월 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부문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를 말한다.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장은 남북화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 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한 규정으로 주로 무력 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3장은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와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가. 남북합의서와 국가보안법¹¹⁰⁾

1) 평화통일 의지표명

남북합의서의 체결 목표 따르면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어 그 동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과 현정권을 폭력으로 타도’하여야 한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남북합의서의 서명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이를 포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가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6·25사변 이후의 착잡한 정세 특히 현재 북괴의 전쟁에 의하지 아니한 침략을 의미하는 위장평화통일공작을 주임무로 하는 간첩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충분히 단속’¹¹¹⁾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의 명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반국가단체의 실효성

남북합의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어 남과 북 상호간의 실체를 인정하였다. 더구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으므로 북한을 더이상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나. 7차개정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위헌제청

1995년 1월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7차 개정(1991.5)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였다. 재판부는 “사상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필요적 요건이자 대표적 징표이므로 기본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경우라도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일 때를 제외하고 허용해야하며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은 ‘국가의 변란’이라는 불명확한 개념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의 자의적 적용가능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과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110) 「국가보안법 개폐공청회 자료집」,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1992, 17-20쪽

111) 정부가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취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국가보안법 의안카드」, 9~10쪽

그러나 현재는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개정 국가보안법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적용,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1)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신법 제7조 제1항의 주관적 구성요건 추가는 한정합헌결정(89헌가 113)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이 훨씬 명확히 규정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직도 구법규정의 결함이었던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조금은 남았다”는 모호한 입장을 결정요지의 서두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결국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법의 입법목적에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고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일부 개념도 신설된 구성요건과 하나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고…제한해석을 한다면 이들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제거”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신법 제7조 제1항의 다의성, 적용의 광범성의 여지는 인정하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한 줄의 추가와 법관의 제한해석으로 인해 그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된다는 주장이었다.

2)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¹¹²⁾

한편 합헌에 대한 현재의 다수의견에 대한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은 한정합헌결정이후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현재의 한정합헌(1990.4.2)이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구성원”, “활동”, “동조” 등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구 국가보안법의 문언을 절반이 넘게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란’이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언을 추가하고 있어 위헌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둘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추가로 확대해석의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알고있는 위태성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만 하면, 처벌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이 지적하는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12) 헌법재판소 1996.10.4, 95헌가2

11. 김대중 정부 5년간 국가보안법 논쟁

가. 개관

선거를 통해 야당에서 여당으로 첫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이자 대통령 본인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각계의 기대가 높아졌다. 이 시기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정치권의 의제로 전격 등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의지를 밝히면서 개폐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아울러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¹¹³⁾.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발표한 6·15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할 것, 양측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협력 등 제반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선언은 그동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온 국가보안법 존립 그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고, 국가보안법과 6.15공동선언과의 모순이 지적되면서 국가보안법의 개폐여론이 비등하게 높아졌던 것이다.

국제사회도 국가보안법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보였다. 1998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구속, 유죄판결난 김근태, 박태훈씨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19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한 정부의 국내인권상황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7조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¹¹⁴⁾했다. 특히 “7조 반국가단체 찬양 조항은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안보상 필요 이상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3월에는 국제사면위원회의 국가보안법 개폐 등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한국 캠페인’이 3개월 간 열려¹¹⁵⁾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폭발적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113)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는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가령 한국일보와 한솔엠닷컴이 6월 20일, 21일 018이용자 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9%가 개정을, 12.1%가 폐지를, 8%가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대답이 55.5%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지보다는 개정의견이 훨씬 높은 하나 조사자 92%가 개폐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텔레서베이/국가보안법 개정의견 개정80·폐지12%>, 「한국일보」, 2000년 6월 23일 참조

114) UN DOC CCPR/C/79/Add.114 1 November 1999

115) 「한겨레신문」, 1999.3.25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정치세력간의 입장차이는 명확하여 개폐논의 조차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당내 논의 없이 일관되게 개정반대 입장을 고집하였고 공동여당인 자민련 역시 개정 문제를 두고 국민회의와 다르게 개정에 반대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차례 개정의사를 밝혔으나 공동여당인 자민련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한 채 남은 집권기간을 보냈다.

나. 김대중 정부하의 국가보안법 논의

1)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과정

가) 정권초기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어도 남용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4월 6일 당시 진형구 대검公安부장은 안기부와 경찰 등公安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가진 후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춘 ‘신공안’ 개념을 설명하면서 특히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천 법무장관은 98년 9월 10일,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만나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 “언젠가는 모호한 내용이 정리돼야겠지만 IMF 상황에서 경제회복 문제가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금 이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과도적 조치로 현행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해석 적용함으로써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법무장관 등이 나서서 국가보안법 개폐, 탄력적 적용 등의 언급을 하였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도 여전히 늘어났고,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남용도 여전하였다. “최소한 남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공안 수사기관의 조직정비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염불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 1999년 필라델피아 인권상 수상 이후

1999년 3월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와 ‘이적행위’ 개념을 개정하겠다고 국정보고를 통해 밝혔으나¹¹⁶⁾ 3월 발표 이후 후속 움직임 없이 법무부는 ‘개정 검토 중’, 여당인 국민회의는 법무부가 일차적인 안을 작성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당정회의에서 조정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가진 채¹¹⁷⁾ 상반기는 구체적인 진전 없이 지났다.

116) 「한겨레신문」, 1999.3.25

본격적인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볼 수 있다. 필라델피아 인권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은 수상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밝혔고¹¹⁸⁾ 이어 8.15경축사에서 연내 개정 방침을 구체화하였다.¹¹⁹⁾

대통령의 8.15경축사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은 ‘현정권의 좌경화를 걱정한다’, ‘김 대통령의 현실인식 결여와 잘못된 시국관에 대해 백병전에 들어가는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색깔론을 제기하며¹²⁰⁾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¹²¹⁾

1999년 11월 찬양·고무죄 대폭개정(3항 요건 강화 존치), 불고지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정부참칭 부분 삭제) 등을 내용으로 개정입장을 밝힌 국민회의는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국가보안법 개정 사안을 두고 정책위원회를 열었으나 자민련의 ‘최소한 수정’ 주장에 가로막혀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¹²²⁾ 따로 개정 실무를 진행하기 위한 8인소위를 구성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8인소위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한번도 열리지 못했고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겼다.¹²³⁾

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2000년에 들어서도 정부와 여당은 1999년에 이어 2000년 초까지도 15대 국회 회기 내에

117) “국보법개정 늘 검토중”, 「한겨레신문」, 1999.7.28

118) “김대통령 보안법 개폐 추진”, 「한겨레신문」, 1999.7.5.

119) 「한국일보」, 1999.8.15, “민주화와 인권보장은 제 일생의 변함없는 소신이다…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120) “한나라, 김대통령 주변 좌경화”, 「경향신문」, 1999.8.17

121) [성명서]국가보안법 개정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1999년8월16일 “오늘과 같은 남북대치 현실에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쪽은 잠수정과 무장공비로 도발하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인가. … 우리는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힘과 아울러 김대중 정부의 안보의식 결여를 극히 우려한다.”

122) <2여, 보안법 개정 합의 못해>, 「한겨레신문」, 1999.12.9 “국민회의는 현행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대폭개정, 불고지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을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개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3) 「한겨레신문」, 2000.1.8, “국가보안법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의 제·개정이 결국 15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현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이들 입법들은 16대 국회로 그 처리가 넘겨졌다. 이상수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은 15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6대 국회가 개최된 뒤 다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은 자민련이 개정을 반대해 법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회기 내 개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개폐 요구는 변함없었으나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비등해졌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개폐이전에는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 줄곧 개정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던 자민련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당내 ‘통일문제연구팀’을 구성하고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전향적으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권철현 대변인)도 “시류에 맞지 않는 불고지죄, 반국가단체 개념등 일부 항목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¹²⁴⁾.

그러나 6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남북한 이중성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존재해야 한다”며 폐지불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문제를 논의하는데 찬물을 끼얹었다.

이회창 총재의 개정반대 입장에 대해 한나라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반발하고, 여야를 망라한 소장파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고민하는 의원모임’을 구성하여 토론회 개최 등 당 지도부 입장과 무관한 자체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한 8월 16일 송석찬 의원(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마련, 의원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11월 27일 여야의원 21명 명의로 국정원법, 군사법원법 등 23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삭제제를 명기한 부칙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에 제출¹²⁵⁾하였다.

232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7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를 결성¹²⁶⁾하여 집회, 농성, 자전거 타기 행진,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국가

124) 2000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대한 자세한 경과는 백승헌, <2000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변·민가협·사랑방, 111~125쪽 참조.

125) 폐지법률안과 함께 마련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는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많은 조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부 조항들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상태이다. 연혁적으로 보아도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이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어 평화공존과 번영이 힘차게 추진되는 이 마당에 완전히 폐지하여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계속하여 존립한다면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그 폐지를 제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6)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기존의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회의’와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를 통합, 232개 시민 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이기 위해 결성한 단일한 연대조직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선언문] -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2000.7.21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는 바로 손에 잡히는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과의 한판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12월 28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문제는 다시 정치권 의제로 부각되었지만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는 1999년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8월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혔고, 9월에는 국가보안법 개정기획단을 구성(단장 유재건)하여 개정논의를 본격화 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 확정되자 위상을 높인 인권특위(위원장 정대철)를 구성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인권특위의 개정시안은 제2조 ‘정부참칭’ 부분 삭제, 10조의 불고지죄 폐지, 7조의 경우 3항 ‘이적단체’ 조항을 변형하여 유지하면서, 1항과 5항은 폐지하는 내용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¹²⁷⁾. 그외 18조, 19조, 21조에 대한 개정도 포함되었다.

<표> 민주당 인권향상 특위의 개정시안

조항	내용	개정방향
제2조	정부참칭	삭제
제7조	1항 찬양고무	삭제
	2항 이적단체 구성	변형 존치
	3항 이적 표현물 제작소지	삭제
제10조	불고지죄	삭제
18조 2항	참고인의 구인·유치	삭제(구인장소제한)
19조	구속기간의 연장	삭제
21조 2항 3항	상금	삭제(수사·정보기관 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 삭제)

인권특위 시안의 핵심은 7조였다. 특히 7조 3항 이적단체 조항은 폐지가 아닌, 변형존치로 알려졌는데, “이적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뒤 구체적인 선전·선동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안으로 개정하여 존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안은 즉각 시민사회의 비난을 샀다¹²⁸⁾. 국보폐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민주당 인권향상 특위의 개정안에 대해 “제1항의 ‘찬양·고무’ 조항을 없애면서 ‘찬양·고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적단체) 구성과 가입을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모순이다. 또 ‘이적’의 개념을 남기는 것은 북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침

127) <인권침해 독소조항 우선 삭제>, 「한겨레신문」, 2000.12.7.

128) [논평] <민주당 인권특위의 국가보안법개정시안에 대한 입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0.12.8 국보폐지연대는 “7조3항의 삭제 없는 개정논의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며, 7조3항을 그대로 두거나 변형하여 존치시키는 개정논의는 민주당이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개정의사가 없이 체면치레로 개정시늉이나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맹비난했다.

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떠한 행위를 ‘찬양·고무’로 처벌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하거나 조작해 내는 등 이적단체를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와 같은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비난을 받은 개정안으로도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법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군출신 의원등의 개정반대 의견에 부딪혀¹²⁹⁾ 당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내 이견 뿐 아니라 “제7조의 ‘찬양고무’를 존치하자”는 법무부의 주장과도¹³⁰⁾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결국 민주당은 12월 26일 “한나라당과 자민련,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 개정을 추진키로”¹³¹⁾ 했으며 논의만 무성한 끝에 아무런 결과 없이 다음으로 넘기고 말았다.

결국 2000년 한해동안은 민주당이 당내에 국가보안법 개정 기획단, 인권향상 특위 등을 구성하여 개폐논의를 하였으나, 당초부터 여야 합의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¹³²⁾하면서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실제 당내에서조차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으며, 자민련 역시 6.15 정상회담 직후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폐작업은 선언, 논란만 무성한채 한치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한편 2001년으로 접어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129)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격론> 인터넷한겨레, 2000.12.11,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현행 보안법 2조의 반국가단체 규정 중 ‘정부참칭’ 삭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폐지 및 이적단체 구성죄의 엄격한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군 출신인 장태완 최고위원 등 일부의 강한 문제제기로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정대철 이인제 박상천 장태완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된 7인 소위로 다시 넘겼다. 그러나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7인 소위 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져 당론확정을 유보...”

130) 「한겨레신문」, 2000.12.19.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7인소위에 속한 정대철 당 인권향상특위 위원장과 박상천 최고위원, 이상수 배기선 의원 등과 김정길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조항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의 ‘참칭’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 당정은 아울러 같은 법 제7조 ‘찬양·고무죄’의 경우 이를 폐지하자는 민주당안과 존속시키자는 법무부안이 맞섰으나,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경우’ 처벌하게돼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손질해 ‘민주적 질서를 혼란케하고 국체를 부정하는’ 등으로 처벌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131) 「한겨레신문」, 2000.12.26

132)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8월 25일 ‘국가보안법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여 나가겠다’고 발표, 이러한 발표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여야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발표한 것이다. 백승헌, 앞의 책, 각주8 재인용.

개정 등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다고 다시한번 다짐하였다¹³³⁾. 여당인 민주당은 6월, 국가보안법 개정 6인소위에서 2000년에 상정된 개정시안과 유사한 안¹³⁴⁾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정치권 논의조차 거의 끝나고 말았으며 국가보안법은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한 글자도 고쳐지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2. 소결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7차 개정까지의 과정,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개정논의를 살펴보았는데, 개정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시점은 우리나라가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냉전, 극단적인 좌우대립이 심각했던 시기로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나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한시적인 명분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당시 비상사태는 구체적으로는 여순사건을 지칭하고 실제적으로는 남로당과 그 주변의 좌익세력을 제거해야하는 한민당의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건국당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등 내란상태가 끝나고, 남로당 등 좌익조직이 거의 궤멸됨으로써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음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강화된 형태로 개악되었다. 이는 곧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133) 또한 김대통령은 1월 14일 열린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북한이 노동규약을 고치지 않아도 국가보안법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 했다. <노동당규약 안고쳐도 보안법 개정>, 「한겨레신문」, 2001.1.15.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일부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다’면서 ‘북한이 안하더라도 우리는 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한동 총리와 전 국무위원, 각급 기관장·시·도지사, 민간정책평가위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0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현재 남북관계에서 대부분 국보법 조항을 적용 안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34) 제10조 불고지죄 삭제, 2조 반국가단체 정의에서 ‘정부참칭’ 부분삭제, 18조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 19조 피의자 구속기간연장, 21조 2항 수사기관 포상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7조 가운데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고 선전선동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목적행위를 분명히 하고 형량도 7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2000년에 상정된 개정시안과 유사한데, 7조3항에 대해 좀더 세부적인 안을 마련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 법은 그 동안 일곱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1958년, 1961년, 1980년의 개정에 의하여 현재의 틀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대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이거나 집권세력이 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비상한,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할 정치적 상황과 맞닿아 있다. 집권세력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또한 집권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비판세력을 제거, 억압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개정, 활용하였던 것이다. 가령, 이승만 정권은 정권의 안보를 위해 남로당과 좌익세력 제거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던 과정이 그렇고, 또 악화된 여론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언론탄압용인 ‘인심혹란죄’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을 한 1958년 이른바 2·4파동이 그러했다. 또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계엄중에 아예 반공법을 제정하였고 역시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한 전두환 정권은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하여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민주화의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악법개폐를 공약으로 걸었던 노태우 정권은 당선이후 입장을 바꿔 이전의 국가보안법과 다르지 않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개정했다는 생색만을 냈을 뿐이었다.

셋째, 이러한 개정절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체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 적법성마저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법률이라고 부르기에조차 적당하지 못한 개악의 과정이었다.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낸 후 여당의원만으로 날치기한 2·4파동의 3차 개정이 그렇고, 쿠데타 권력기구에 불과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반공법을 제정하였으며, 1980년 군사쿠데타 이후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대부분 국가보안법으로 수용한 6차 개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1991년 5월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한 야당의원들에게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채 날치기 방법으로 불과 35초만에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한 7차 개정이 그러했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이 매년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제정당시 6개 조문에 불과했던 조항은 40여개로 늘어났으며, 최고형은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제정당시에는 가장 중한 반국가단체 조직죄의 경우에도 이 죄가 형법상의 내란죄에 비추어보면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무기징역이었으나, 1차 개정시 최고법정형이 사형으로 상향되어 이후 그대로 이어져 왔다. 5공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전면 개정시에는 반공법상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제정당시에는 반국가단체 구성, 살인, 방화, 파괴 등의 행위가 처벌대상이었으나, 2·4파동에 의한 개정시에 국가기밀 탐지, 정보수집, 편의제공, 인심혹란,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추가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반공법 제정시 단순 고무, 찬양,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이 첨가되었으며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한 전면 개정시에 허위날조, 유포가 추가되었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조항이 확대, 강화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은 현재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조항이다. 주지하다시피, 제7조는 1960년 반공법 제정당시 만들어져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 반공법이 흡수 통합되는 개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편입되었다. 1991년 7차 개정을 통해 주관적 요건이 강화되는 방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찬양·고무 조항은 그 대상이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인 까닭에 처벌유형이 명확해야 함에도,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높은 조항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7조에 의한 적용이 다른 조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찬양·고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재정권 강화 목적에 부응하여 날치기 및 비상입법의 방법으로 편입되었고,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왔는데, 이러한 7조의 성격은 곧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국가안위가 아닌 정권안보, 특히 정부 비판세력을 향한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사례 찾기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이동화 교수 사건	117
○ 신흥대학 조영식 총장 사건	117
○ 학구적 목적과 '불온서적 소지'에 관한 몇 건의 사건	117
○ 임영천 교수의 반공법 위반사건	119
○ 리영희 교수의 「8억인과의 대화」 사건	119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120
○ 이재화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	121
○ 이진경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	121
○ '아라리연구원'의 「제주4·3민중항쟁」 사건	121
○ 서관모 교수 논문 사건	122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	123
○ 빨치산 글을 문제삼은 방통대 강사 김무용 사건	125
○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126
○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이장희 교수 사건	127
○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강의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 사건	128
○ "만경대" 발언으로 구속되었다가 학회논문까지 보안법 적용된 강정구 교수 사건	130

예술의 자유 / 문학작품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남정현의 「분지」 사건	134
○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弔辭)」 사건	135
○ 김지하의 「고행-1974」 사건	136
○ 박영창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 사건	137
○ 이산하의 장편 서사시 <한라산> 사건	138
○ 집필중이던 공동창작 <어머니의 길>사건	138
○ 황석영의 방북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사건	139
○ 이기형의 시 「지리산」 사건	139
○ 오봉옥의 시 「붉은 산 검은 피」 사건	139
○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사건	140

예술의 자유 / 영화와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이만희 감독의 영화 <7인의 여포로> 사건	141
○ 유현목 감독의 발표문 <은막의 자유> 사건	142
○ 대학가 북한영화 <소금>, <탈출기> 상영사건	142
○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사건	143
○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예정작 <탈출기> 제한상영	144
○ 북한영화 <꽃피는 처녀> 사건	145

예술의 자유 / 미술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깡순이>의 작가 이은홍씨 구속사건 145
-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 145
- 신학철의 <모내기> 사건 146
- <모내기> 부채 제작사건 149
- 2001년도 '노컷전'에 출품예정이던 안성금 화백의 <아! 한반도> 제한 전시 149

예술의 자유 / 음악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 가수 남인수, 계수남 사건 150
-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 만든 작곡가 박종화 사건 150
- 노래패 <희망새> 사건 151
- 노래책 만들었다고 구속된 노래패 꽃다지 사건 152
- 노래패 중 첫 이적단체 적용된 노래패 <천리마>,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 152

언론의 자유 / 제도언론과 국가보안법

- 「동아일보」 오식(誤植) 사건 158
- 대구매일 최석채 주필 사건 159
- 경향신문 폐간조치 및 기자 구속 사건 160
- MBC 황용주 사장 사건 161
- 조선일보 리영희 기자 <남북한 동시가입 제안준비> 기사 사건 162
- 대전 방송국 <송아지> 대본 사건 163
- '간첩사건의 보도'와 관련된 사건 164
-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구속사건 165
- 윤재길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 166
- 몽고 취재중 북한대사 인터뷰 한 KBS PD 2명 보안법 입건 166

언론의 자유 / 대자보와 국가보안법

- 북한관련 정보를 대자보에 실었다가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례 168
-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해 정부발표와 다른 의견을 실은 대자보, 국가보안법 위반 168
- 북한학생의 편지 담은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생 6명 구속 169

언론의 자유 / 교지 및 학보와 국가보안법

- 주체사상 관련 글을 실어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된 대학 교지 및 학보 169
- 고 이철규 씨 추모 행사중 당시 교지 내용 전시한 민주조선 편집장 구속 사례 170
- 무장공비 관련 글 전재하여 국보법 적용된 상지대학보 사건 170
- 무장공비 관련 독자의견 실어 국보법 적용된 동국대 학보사 사건 171

언론의 자유 / 단체 기관지 및 잡지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입장 담은 내용, 회보에 실어 구속된 평불협 법타스님 사건 172

○ 나라사랑청년회 기관지 <장산꽃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국가보안법 적용	172
○ 서청협 기관지 「서울청년」 발행한 대표 구속	172
○ 법원에서 무죄판결난 <미래통신> 사건	173

언론의 자유 / 현수막, 표비 등에 이적표현물 적용한 사례

○ 김일성 주석 사망 조의 표시 현수막, 북한을 동조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	174
○ 비전향장기수 장례의식 문제삼아 장례위원장 국가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	175
○ 학교 대동제 기간에 한반도, 인공기, 태극기를 함께 내건 학생, 유죄판결	176
○ 6.15정상회담 축하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린 현수막에 동조죄 적용	177
○ 빨치산 추모 비문에 이적표현물 적용	177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컴퓨터 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첫 구속사례 - 현철동 사건	179
○ 토론을 돕고자 올린 글에 이적목적이 있다며 이적표현물죄 적용한 통신인 사건	179
○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공산당선언> 올린 네티즌, 법원에서 무죄판결	180
○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김일성 신년사>를 올린 이창렬 구속사건	180
○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린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개인의견 처벌	181
○ 인터넷에 올린 대학교재에 이적표현물 적용	182
○ 영상기록에 대한 이적적용, 인터넷 방송 ‘청춘’ 사건	183
○ 인터넷 공간에 올린 조선일보 비판글, 최후진술문에 이적표현물 적용	183
○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글에 이적표현물 적용	185
○ 수배자 학생 붙잡기 위해 인터넷 카페 내사하던 경찰, 카페 운영자를 구속	186
○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이에게 실형선고	187

‘막걸리 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술 먹고 노상에 누워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3차례, 김정일 만세 2차례	191
○ 술에 취해 버스안에서 “나는 공산당이다 잡아넣어라”고 발언	191
○ 술에 취해 다방안에서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	191
○ 군부대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현역군인 사건	192

출판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1987년 이후 출판사 대표 및 편집부원	197
○ 6·29 선언 이후 출판사 대표 및 직원 구속	198
○ 6공화국 구속된 출판사 대표 및 직원	201
○ 현대사 연구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대동출판사 사건	208
○ 레닌 저서 등 번역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풀무질 출판사	208
○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책갈피 출판사	209
○ 6·15 이후 북한관련 서적 이적표현물 적용 - 살림터 출판사 사건	209
○ 원고청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회합·통신죄 적용 - 자주민보 사건	209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과 인권침해

- 1심, 2심에서 무죄판결난 국가기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황석영 사건 257
- 걸개그림 <민해운사> 평양축전에 보낸 화가 홍성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구속 258
-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현직 시의회 의원 구속 - 이윤정 의원 사건 262
- 공지사실은 국가기밀 아니다 - 강순정 사건 263
- 순창농민회 활동내용을 국가기밀로 기소, 2심에서 무죄판결 - 이광철 사건 264
- 「월간조선」 「신동아」 「말」 「한겨레21」, 법원에서 국가기밀 무죄 판결 265
- 남한작가들의 신상, 비전향장기수 명단이 국가기밀 - '취중월북' 김하기 사건 267
- 한국통신 노조간부, 장기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국가기밀 판결 - 진관스님 사건 267
- 전국연합 전문, 강령, 조직구성 및 연간사업계획서에 국가기밀 판결 - 윤종세 사건 269
- 신문에 실린 기사 등에 국가기밀 적용 - 김경환 사건 269
- 법원, 간첩 또는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편의제공죄' 판결 270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제6조) 사건과 인권침해

- “남북교류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잠입탈출 무죄” 문규현 신부 사건 274
- 선상 반란 선원, 탈출미수죄 적용 구속 275
- 월북 의사 밝힌 금강산 관광객 탈출미수죄로 구속 276
- 전국연합, 범민련 대표 방북 사건 276
- 한총련 대표 방북 및 방조 사건 276
- 북에 가족 만나러 갔다가 잠입·탈출죄 적용받은 미(美) 시민권자 송학삼 사건 278
- '취중월북'으로 탈출죄 적용된 소설가 김하기 사건 280
- 정부승인하에 방북했으나 '탈출'죄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간부 사건 280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8조)과 인권침해

- 똑같은 혐의에 경찰은 남북교류협력법, 검찰은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기소 284
- 북한의 대학에 팩스 보낸 대학생,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 법원에서 무죄판결 284
- 직접 회합통신하지 않았어도 공모공동 했다면 범민족대회남측본부 간부들 구속 286
- “인터넷 간첩”으로 보도했다가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한 이창호 사건 287
- 한총련 대표로 방북한 학생에게 이인모 노인을 만났다면 회합·통신혐의 적용 288
- 범청학련 해외본부와 팩스, 이메일 통신연락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간부 구속 288
- 원고청탁 위해 전화통화한 잡지사 기자, 회합·통신죄로 구속기소 289
- '간첩'혐의로 구속했으나 회합·통신죄로 기소한 한단석 교수 사건 290
- 무장간첩 진술로 회합·통신 구속, 검찰 7조 기소, 끝내 무죄판결난 박충렬 사건 291
-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아 회합·통신죄 무죄판결 292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제9조) 사건과 인권침해

- 후배들을 하룻밤 재워준 일로 편의제공 적용 구속 297
- 한총련 간부에게 통장을 빌려준 학생에게 편의제공죄 적용 297
- 한총련 수배자 숨겨준 일로 편의제공죄 적용 구속 298

○ 한충련 납품업자 편의제공 적용하여 구속	298
○ 농성중인 한충련 수배자들의 활동을 대행해주었다고 편의제공죄로 구속기소	298
○ 범청학련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대학원생, 편의제공 혐의 구속	299
○ 수배중이던 동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편의제공죄 적용	300
○ 재일교포에게 ‘흔글’ 내장된 콤팩트 디스켓 보낸 잡지사 기자 편의제공죄 적용	300
○ 검찰 ‘대남공작원’에게 선물한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 법원은 무죄판결	301
○ 재일교포에게 국내 통일잡지 구독하게 해 준 것에 편의제공죄 적용	301
○ ‘북한동포돕기’ 성금 편의제공죄 기소, 법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로 판결	302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와 인권침해

○ 한옥신 부장검사 사건	306
○ 영문학자 오화섭 교수 사건	306
○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연이은 불고지 논란	309
○ 카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	309
○ 윤재걸 「한겨레신문」 기자 불고지죄 사건	310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황인오씨 부인과 어머니 등 6명 불고지죄 구속	310
○ 부여간첩 김동식 신고하지 않았다고 허인회씨 등 불고지죄 적용 사건	311

영장없는 불법체포 - 임의동행 형식의 강제연행

○ ‘잠깐 얘기 좀 하자’더니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연행 - 손병선씨 사례	403
○ 벨 소리에 현관문 열자 낯선 남자들 들이닥쳐 폭행하며 연행 - 송갑석씨 사례	403
○ 거리에서 30여명에게 강제연행 - 장민성씨 사례	403
○ 자취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이십여명에 의해 끌려감 - 손성표씨 사례	404
○ 면회시켜 준다면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뒤 승용차에 태워 연행 - 전재순씨 사례	404
○ 변호사 사무실서 대담중이던 인권단체 활동가들 강제연행 - 노태훈씨 사례	404
○ 길거리에서 납치하듯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 노래극단 <희망새> 사례	405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긴급구속 남용

○ 범민족 대회 추진을 이유로 전국연합 상임의장 긴급구속 - 이창복씨 사례	406
○ 영장없이 긴급구속후, 조사결과 혐의 없어 이틀만에 귀가조치-정현백 교수 사례	406
○ 13명 긴급구속, 10명 구속영장 신청, 5명 영장기각 - ‘사노맹호남위원회’ 사례	407

체포영장제도 도입 이후 긴급체포 남용

○ 영장 제시 않고 강제연행 - <홍>기획 사례	407
○ 체포, 연행 과정에서 총기발포 - 전재형씨 등 충남대생 사례	408
○ 시내버스를 통제로 연행한 - 김기호씨 등 광운대생 사례	408
○ 의사만류에도 불구하고 척추디스크 수술 환자를 강제연행 - 김한수씨 사례	408
○ 경찰의 무리한 수배자 체포과정에서 사망 - 김준배씨 사례	409
○ 면회 간 부인을 불법구금 - 최명선씨 사례	409

- 수배자 체포위해 애인을 불법 억류한 사례 - 이승은씨 사례 409
- 수배자로 오인하여 시민을 불법연행 - 홍춘호씨 사례 410

고문과 사건 조작

- 죽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결국 수사관들 요구대로 진술서 작성 - 정영 사례 · 415
- 허위자백 한 것을 작성케 하여 세뇌...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들어 -양동화 사례 416
- 안기부에서 2달은 간첩임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기위한 사투의 시간 -황대권 사례 · 416
- 고문으로 시인, 질문, 대답 못하면 고문, 답 가르쳐주고 또 묻고, 고문 -함주명사례 ... 416
- 고문은 수사관들에게 고분고분 응하도록 만드는 수단 -박경준 사례 417
- 수사관이 말해준 것을 물어보고 모르면 고문하고 가르쳐 주고 -김양기 사례 417
- 군사정보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보고써라 시키고 한글자 틀리면 구타 -차풍길 사례 417
- 수사관들이 작성한 조서에 무인을 찍으라며 갖은 고문 -박상은 사례 418
- 통신지령을 도저히 만들 수 없어 수사관에게 마음대로 작성하라고 -김영일 사례 418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고문

- 함주명 씨 사례 421
- 김근태씨 사례 421
- 김성학씨 사례 421
- 이장형 씨 사례 422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고문

- 1987년 발생한 고문사례 423
- 안기부에서 발가벗긴채 구타당해 - 유원호씨 사례 424
- 북한방문 자백 강요하며 고문 - 홍성담씨 사례 424
- 권총위협 고문 - 방양균씨 사례 424
- 코피 흘러 옷이 젖으니 팬티만 입혀놓고 구타 - 장민성씨 사례 425
- 거의 잠 안재우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물구나무 서기 반복고문 -송갑석씨 사례 425
- 연행자 모두 가혹행위 - 사노맹 사건 사례 426
- 하루종일 원산폭격에 졸도, 물고문 협박까지 - 손성표씨 사례 426
- 의사까지 불러 상태 확인하며 고문 -손병선씨 사례 426
- 세 살박이 손주까지 감금한채 온 가족에게 가혹행위- 전재순씨 사례 427
- 성고문 등 고문 폭로하기 위해 자해시도 - 김삼석씨 사례 427
- 현장검증 한다며 끌고 다니며 웃웃 벗겨 집단구타 - 박충렬씨 사례 428

1995년 고문방지협약 가입과 고문

- 연로한 교수 책으로 머리 치고 짓꼭지 비틀어 - 박창희 교수 사례 429
- 물고문 등으로 호흡 일으키며 쓰러져 - 나창순씨 사례 429
- 하루종일 기합받고 구둣발로 짓밟혀 - 민혁당 사건 사례 430
- 성기고문 하고, 의사의 수진신청 거부 - 지태환씨 사례 430

국가보안법 사건과 고문피해 후유증 및 고문으로 인한 사망사례

- 고문 후유증으로 재판도중 기절하고 혀가 굳어 말을 못한 유정식씨 사례 431
- 고문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동씨 사례 431
-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난 문국진씨 사례 432
- 의문사위, '중앙정보부가 강도높은 고문으로 사망케 했다' 발표- 최종길 교수 사례 432

간첩 사건의 대대적인 발표와 피의사실 공표

- 97년 대선전 '고정간첩 사건'으로 발표, 재판결과 간첩혐의 무죄 -고영복 교수 사례 · 437
- 총선 논의 본격화 시점에 총선 출마자 국가보안법 구속 발표 - 허인회씨 사례 437
- 아시안게임 후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 구미유학생 사건 사례 438
- 무려 7개월이 지난 후에 대대적으로 발표 - 나종인씨 사례 438
- 92년 대선 전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438

피의사실 공표와 인격권침해

-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북한 접촉 혐의' 보도 - 정현백 교수 사례 440
- '고교에 주사과 침투' 기사,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 - 고등학생 단체 <샘> 사례 440
- 사실확인 없이 북한노동당 입당 보도 - 박창희 교수 사례 440
- '기소전 간첩발표로 명예훼손' 판결 - 이광철씨 사례 441
- 대법원, 검찰송치 전후 간첩혐의사실 유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441

접견교통권 제한 사례

- 변호인 접견시 수사관 배석하여 사진촬영 등 - 유상덕씨 사례 444
- "간첩 용의자에겐 변호인 접견 허용 안 해" - 김낙중씨 사례 444
- 변호인 위임장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 거부 - 최진수씨 사례 445
- 간첩수사 방해한다며 변호인 접견 방해 - 한단석 교수 사례 445
- 의사검진을 거부한 사례 - 지태환씨 사례 445

압수수색과 인권침해 사례

- 한밤중에 자물쇠를 뜯고 압수수색 실시 - 전국연합 압수수색 사례 447
- 새벽에 술냄새 풍기며 압수수색 - 윤재혁씨 사례 447
- "국보법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서준식씨 사례 447

감청 및 통화내역조회 사례

- 수배자 검거위해 여자친구 방에 도청장치 설치 449
- 과도한 감청 및 허가서 없는 불법감청 - '청춘' 사건 사례 449
-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발부 받은 '허가서'를 근거로 감청 - 한단석 교수 사례 450
- 일상적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검열 - 정명아씨 사례 450
- 의료운동 단체를 4년간 내사하면서 밀착감시 - 진보의원 사례 451

프락치공작 사례

- 생매장 위협하며 프락치 강요 - 김정한씨 사례 451
- 군복무 중 프락치 강요 - 윤석양씨 사례 451
- 안기부 프락치 활동 양심선언 통해 밝혀 - 백홍용씨 사례 452
- 취업 등 도움을 주겠다며 프락치 강요 - 강성석씨 사례 453
- 수배자 검거를 위해 프락치 공작 - 김준배씨 사례 453
- 정보통신 업자에게 프락치 요구 454

민간인사찰

- 한총련 배후세력 척결하려고 운동권출신 5천여명 사찰 454
- 국정원의 노래패 <우리나라> 사찰 455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 검사와 고문수사관들이 공조하여 협박 - ‘송씨 일가 간첩 사건’ 사례 456
- 경찰 수사관들, 검찰조사시 입회 - 함주명 사례 457
- 담당검사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빨리와서 데려가라” - 이장형 사례 457
- 검사마저 자백 강요 - 김성학 사례 457
- 검사가 직접 고문 지시 - ‘깃발사건’ 최용석 사례 458
- 검사의 폭행 및 협박 - 김양기 사례 458
- 검사가 다시 돌려보내 고문 - 정삼근 사례 459
- 검찰에서 10여일간 철야조사 - 방양균 사례 459
- 안기부의 의견서와 꼭 같은 검찰 공소장 - 강용주 사례 460
- “중정 수사기록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인혁당 재건위 사건 담당 검찰관의 증언 460

사법부와 국가보안법 재판

- 보안사 요원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 재판 - 이상철 사례 463
- 밧줄로 묶인 채 재판 - 김태룡 사례 463
- 가족에게도 방청이 제한된 비공개 비밀재판 - 인혁당 사건 사례 464
- 전경 및 사복경찰관들로 법정 장악 - 임수경씨 사례 464
- 고문 폭로는 무시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로 인정 - 구명우씨 사례 466
- 고문에 못이긴 것이든 어쨌든 자백으로 인정되므로, 항소하라 - 차풍길씨 사례 466
- 고문, 협박, 유도심문에 의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 - 이병설 교수 사례 467
- 영사증명서만으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로 인정 - 홍성담씨 사례 467
- 자유당정권이 간첩누명 씌워 - 진보당 조봉암 사건 469
- 진보적 일간지 「민족일보」 사건 470
- 사형선고 20시간 만에 형 집행 - 인혁당 재건위 사건 470
- 사건과는 관련없는 비방 발언 - 김진엽씨 사례 472
- 판사가 재판정에서 ‘간첩 놈’ 이라는 등 욕설과 예단발언 - 장창호씨 사례 472
- 재판장이 반성 강요 - 김낙준씨 사례 473

사상전향과 인권침해

- 강제전향공작 항의하며 단식투쟁 중 강제급식으로 인해 옥중사망 - 손윤규씨 사례 476
- 대전교도소 수감 중 강제전향공작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 - 최석기씨 사례 476
- “전향 강요 말라”는 혈서를 남기고 자결 - 박용서씨 사례 477
- ‘사회안전법 폐지’ 단식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강제급식 중 사망 - 김용성씨 사례 ... 484
- 고무호수를 입에넣고 진한 염수를 퍼넣는 강제급식 과정에서 사망 - 변형만씨 사례 .. 485

그 외 - 연좌제 등

- 동네 아이들이 ‘빨갱이 자식’을 총살한다며 나무에 묶어놓고 놀이 - 인혁당 사례 488
- 국가보안법 전력이유로 교수임용 거부 - 전승일씨 사례 488
-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라는 이유로 교사임용 거부 - 차정원씨 사례 488
- 사면복권 되었으나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이유로 임용거부 - 이우완씨 사례 489
- 국가보안법 전력이유로 학사사관후보생 시험 불합격 처리 489